

연구보고서 2006-24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 승 권
조애저 김유경
도세록 이건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 리 말

정부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해 온 인구증가억제정책을 도입 35년만인 1996년에 폐지하고, 인구자질 향상과 복지증진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은 그간에 이룩된 고도의 경제성장과 가족계획사업 위주의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1987년 이래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출산율과 부인의 피임실천율이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21세기 초에는 노동력 수급문제, 노년인구의 급증에 따른 복지부담, 핵가족화의 촉진과 가구원수의 감소에 따른 가족해체 등 제반 문제를 촉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적극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한편 1980년대부터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와 더불어 새로운 인구문제로 등장해온 출생성비의 불균형을 포함하여 인공임신중절의 만연, 청소년의 성문제, 에이즈의 증가 등 시급한 정책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전환은 인구정책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우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불과 30년 내외의 짧은 기간에 강력한 인구정책에 의해서 주도된 인구전환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우려하는 의견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였다.

특히, 지난 세기 말에 불어닥친 경제위기는 한국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구직난, 소득격감 등은 한국사회에서 결혼연기, 출산연기 등으로 귀결되었고, 이는 합계출산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1999년 1.42명, 2000년 1.47명, 2001년 1.30명으로 낮아졌고, 2002년에는 더욱 낮아져 1.17명으로 저하되었다. 이 때부터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위기’라는 용어가 널리 회자(膾炙)되기 시작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정책적 관심을 두게 되었다. 2003년에는 출산율이 다소 상승하여 1.19명을 나타냄으로써 다소 안정되는 듯 하였으나 2004년에는 다시 1.16명으로

낮아졌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출산력관련 조사로서 20번째 실시되는 본 조사의 특징은 2003년과 유사하다. 즉, 2003년 이전에 실시된 18회의 조사와는 달리 출산율의 저하에 따라 2003년부터 조사대상가구를 12,000가구 기준에서 16,000가구 기준으로 확대하였고, 조사명칭도 출산력과 가족복지와의 높은 상관성을 고려하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로 변경하였다.

본 연구는 당 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김승권 박사의 책임 하에 연구진에 의해 완성되었다.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연구진의 구체적인 연구 및 조사수행과 보고서 집필을 위한 분담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구조정 및 총괄 (김승권)

표본추출 (도세록)

조사관리 및 자료처리 (이건우)

보고서 집필:

제1장 서 론 (김승권)

제2장 가구 및 가족의 제 특성 (김유경)

제3장 임신행태 및 임신종결형태 변화 (김승권)

제4장 출산행태 및 출생아·현존자녀수 변화 (김승권)

제5장 피임수용실태 (김유경)

제6장 인공임신중절실태 (김승권)

제7장 모자보건실태 (이건우·김승권)

제8장 자녀가치관과 혼인가치관의 변화 (김승권·조애저)

제9장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 (조애저)

제10장 기혼여성의 취업실태 (조애저)

제11장 가족생활 및 자녀양육 실태 (김승권)

제12장 출산 및 가족정책 욕구 (김승권·이건우)

제13장 종합 논의 및 정책적 제언 (김승권)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현지조사를 위해 행정적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보건복지부, 각 시·도 및 시·군·구 관계기관과 어려운 여건 하에서 면접조사를 실시한 조사원에게 사의를 표한다. 또한 표본추출을 위해 애써주신 도세록 책임연구원과 자료처리를 도와 준 신창우 선임전문원께 감사를 드린다.

특히 종전의 동 조사보다 조사대상가구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자료의 전산입력 및 오류수정을 짧은 기간동안 성실하게 마무리해 준 관계자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검독하여 주신 장영식 연구위원과 변용찬 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200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목 차

요 약	19
제1장 서 론	93
제1절 조사의 배경 및 목적	93
제2절 조사의 방법 및 내용	97
제3절 출산력관련 조사의 연혁 및 특성 변화	104
제4절 표본설계 개요	106
제5절 현지조사 및 자료처리	112
제6절 응답자의 특성 및 통계해석시 유의사항	115
제2장 가구 및 가족의 제 특성	119
제1절 가구의 특성	119
제2절 가족의 특성	125
제3절 주거 및 가구경제의 실태	129
제4절 가구 및 가족 제 특성의 시사점	151
제3장 임신행태 및 임신종결형태 변화	153
제1절 임신경험 횟수	153
제2절 남아출산노력 경험	156
제3절 임신종결 형태	158
제4절 불임실태	165
제5절 임신행태 및 임신종결형태 변화의 시사점	170
제4장 출산행태 및 출생아·현존자녀수 변화	173
제1절 출산율의 변동	173
제2절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	182
제3절 출생아와 현존자녀의 규모 및 성비	184

제4절	출산간격의 변화	197
제5절	출산행태 및 출생아·현존자녀수 변화의 시사점	200
제5장	피임수용실태	202
제1절	피임실천의 변동추이	203
제2절	피임실천양상	213
제3절	피임실천경험 실태	226
제4절	피임비실천실태	235
제5절	임신노출상태 및 자녀희망 여부별 피임실태	242
제6절	피임수용실태의 시사점	249
제6장	인공임신중절실태	251
제1절	인공임신중절률의 변화	253
제2절	인공임신중절경험 실태	255
제3절	최근 인공임신중절수용부인의 피임실천	272
제4절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	275
제5절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 경험여부	279
제6절	인공임신중절실태의 시사점	281
제7장	모자보건실태	284
제1절	산전 및 산후관리 실태	285
제2절	분만실태	291
제3절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태	305
제4절	수유양상	310
제5절	모자보건실태의 시사점	318
제8장	자녀가치관과 혼인가치관의 변화	322
제1절	자녀가치관의 변화	322
제2절	남아선호가치관의 변화	332
제3절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	342
제4절	혼인가치관의 변화	349
제5절	자녀가치관과 혼인가치관 변화의 시사점	398

제9장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	400
제1절 결혼양상	400
제2절 해혼실태	408
제3절 가족주기	420
제4절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의 시사점	427
제10장 기혼여성의 취업실태	429
제1절 결혼 전·후 취업실태	429
제2절 현 취업실태	431
제3절 생애단계별 취업실태	443
제4절 기혼여성 취업실태의 시사점	454
제11장 가족생활 및 자녀양육 실태	456
제1절 가족생활실태	456
제2절 자녀양육 실태	469
제3절 가족생활 및 자녀양육 실태의 시사점	480
제12장 출산 및 가족정책 욕구	482
제1절 결혼과 가족정책	482
제2절 출산정책과 자녀출산	486
제3절 가족정책 욕구	489
제4절 출산 및 가족정책 욕구의 시사점	498
제13장 종합논의 및 정책적 제언	499
제1절 종합논의	499
제2절 정책적 제언	513
참고문헌	517
부 록	523

표 목 차

〈표 1- 1〉	한국에서의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관련조사의 연혁	106
〈표 1- 2〉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의 표본조사구 추출	108
〈표 1- 3〉	15~59세 조사대상가구의 응답자의 특성	116
〈표 2- 1〉	연도별 가구원수별 분포(1966~2006년)	120
〈표 2- 2〉	연도별 평균 가구원수(1966~2006년)	121
〈표 2- 3〉	가구의 일반특성	123
〈표 2- 4〉	성별 가구의 거주지역 분포	124
〈표 2- 5〉	지역별 가구의 성 분포	125
〈표 2- 6〉	연도별 세대별 구성 비율(1966~2006년)	126
〈표 2- 7〉	지역별 친족가구 및 비친족가구의 유형별 분포	128
〈표 2- 8〉	핵가족의 형태별 분포	128
〈표 2- 9〉	확대가족 구성원의 연령분포	129
〈표 2-10〉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현 거주주택의 유형	131
〈표 2-11〉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현 거주주택의 소유형태	133
〈표 2-12〉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전세·월세인 경우 자가소유 여부	134
〈표 2-13〉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자가인 경우 소유명의	135
〈표 2-14〉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보유재산 규모분포	137
〈표 2-15〉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부채 규모	140
〈표 2-16〉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부채의 주된 원인	142
〈표 2-17〉	소득·소비 규모별 가구분포	144
〈표 2-18〉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구소득 수준분포	145
〈표 2-19〉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구 소비지출 수준 분포	146
〈표 2-20〉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항목	149
〈표 2-21〉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경제적 자립정도	150
〈표 3- 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총 임신횟수의 변화(1994~2006년)	154

〈표 3- 2〉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총 임신횟수 분포(2006년) ……	156
〈표 3- 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전·후 남아출산 노력 경험률 ……	158
〈표 3- 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종결 형태별 평균횟수(1994~ 2006년) ……	159
〈표 3- 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종결형태의 구성비(1994~ 2006년) ……	161
〈표 3- 6〉	15~44세 유배우부인의 지역별 임신종결형태 ……	162
〈표 3- 7〉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임신소모 횟수 분포 ……	164
〈표 3- 8〉	15~44세 유배우부인의 거주지역별 평균 임신소모 횟수 ……	165
〈표 3- 9〉	15~49세 유배우부인 중 임신노력 및 불임진찰률 ……	166
〈표 3-10〉	15~44세 유배우부인의 불임진찰 여부 ……	167
〈표 3-11〉	15~49세 유배우부부의 불임진찰 결과 불임의 원인 ……	168
〈표 3-12〉	15~44세 유배우부인의 불임치료 여부 및 미치료 이유 ……	169
〈표 3-1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을 위한 노력 방법 ……	170
〈표 4- 1〉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1974~2005년) ……	176
〈표 4- 2〉	연령별 출산율의 지역차이(2005년) ……	177
〈표 4- 3〉	합계출산율의 변화(1960~2005년) ……	178
〈표 4- 4〉	합계출산율의 지역차이(2002년과 2005년) ……	180
〈표 4- 5〉	세계 주요 국가의 출생통계 지표 ……	181
〈표 4- 6〉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의 변동추이 ……	183
〈표 4- 7〉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평균 출생아수 ……	186
〈표 4- 8〉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수 분포 ……	189
〈표 4- 9〉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 성비 ……	192
〈표 4-10〉	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 분포(1994~2006년) ……	193
〈표 4-11〉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현존자녀수 분포 ……	195
〈표 4-12〉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현존자녀의 성비 ……	197
〈표 4-13〉	15~49세 초혼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결혼연령과 첫째 아 및 막내 아 출산시 연령 ……	199
〈표 5- 1〉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실태 변화(1976~2006년) ……	205

〈표 5- 2〉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실태	207
〈표 5- 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피임실태	209
〈표 5- 4〉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실천율(1976~2006년)	211
〈표 5- 5〉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방법별 피임실천율	212
〈표 5- 6〉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 및 방법별 피임실천율	214
〈표 5- 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지역, 연령 및 취업여부별 피임실천율 · 216	
〈표 5- 8〉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실천율 및 불임실천율	217
〈표 5- 9〉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목적에 따른 피임실태	219
〈표 5-10〉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단산 및 출산연기 이유	221
〈표 5-11〉	15~44세 유배우 피임실천부인의 피임방법별 피임목적	222
〈표 5-12〉	15~44세 유배우부인 중 비영구적 피임실천부인의 방법별 계속 사용의향 및 변경희망 피임방법	224
〈표 5-13〉	15~44세 유배우 불임수술 실천부인의 결혼에서 불임수술 수용시까지의 소요기간별 분포	226
〈표 5-14〉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 및 피임횟수별 피임실천 경험	228
〈표 5-15〉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 및 총 피임방법수별 피임실천 경험	230
〈표 5-16〉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첫 피임실천 방법	232
〈표 5-17〉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마지막 피임실천 방법	234
〈표 5-18〉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 피임방법	236
〈표 5-19〉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 중 피임중단 및 무경험 비율과 이유 · 238	
〈표 5-20〉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의 향후 실천의향	240
〈표 5-21〉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 중 피임희망부인의 선호 피임방법 · 241	
〈표 5-22〉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 중 피임불원부인의 이유	242
〈표 5-23〉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임신노출상태	244
〈표 5-24〉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보급대상자	246
〈표 5-25〉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자녀추가 희망여부 및 피임실천 · 247	
〈표 6- 1〉	20~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 변동추이	254
〈표 6- 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변동추이	256
〈표 6- 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총 임신 및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 변화 · 258	

〈표 6- 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횟수 분포	259
〈표 6- 5〉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인공임신중절 횟수 분포	261
〈표 6- 6〉	첫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별 분포와 당시 부인연령	265
〈표 6- 7〉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 자녀수 분포	267
〈표 6- 8〉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 자녀의 성	267
〈표 6- 9〉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별 분포와 당시 부인연령	269
〈표 6-10〉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 자녀수 분포	271
〈표 6-11〉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 자녀의 성	272
〈표 6-12〉	2004년 이후 인공임신중절 수용부인의 임신당시 피임실천여부	275
〈표 6-13〉	첫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	277
〈표 6-14〉	최종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	279
〈표 6-15〉	인공임신중절시 태아 성감별 여부	281
〈표 7- 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의 출생분포(2004~2006년)	284
〈표 7- 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산전수진율(1985~2006년)	286
〈표 7- 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임신기간 중 초진시기	287
〈표 7- 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임신기간중 산전수진횟수	289
〈표 7- 5〉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 출산 후 산후수진율	290
〈표 7- 6〉	15~49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시설분만을 및 분만장소	292
〈표 7- 7〉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 분만장소	293
〈표 7- 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제왕절개분만 비율	294
〈표 7- 9〉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 출산시 분만형태	295
〈표 7-10〉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출산시 제왕절개분만 권유자	296
〈표 7-1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출산시 제왕절개분만 이유	297
〈표 7-1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제왕절개분만 권유자별 권유이유	298
〈표 7-1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출산시 분만장소별 분만형태	298
〈표 7-1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출생시 임신 주수	299
〈표 7-15〉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조산 여부	300
〈표 7-16〉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출생시 체중	301
〈표 7-17〉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 체중	302

〈표 7-1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저체중 이유	303
〈표 7-19〉	15~44세 유배우부인의 미숙아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한 인지율 및 지원 받은 경험여부	305
〈표 7-20〉	모자보건사업에 의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종류 및 지급비용 ...	306
〈표 7-2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수검 여부	307
〈표 7-22〉	15~44세 유배우부인 최종출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수검 종류 ...	308
〈표 7-23〉	15~44세 유배우부인 특성별 최종출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추가비용 ...	309
〈표 7-2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선천성대사이상아 정부지원에 대한 인지율 및 수혜 여부	309
〈표 7-2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모유수유 실태	310
〈표 7-26〉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의 생후 15개월간 모유수유양상 ...	311
〈표 7-27〉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의 생후 1개월시 수유양상 ...	312
〈표 7-28〉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의 생후 6개월시 수유양상 ...	314
〈표 7-29〉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의 생후 12개월시 수유양상 ...	315
〈표 7-30〉	15~44세 유배우부인의 모유수유 중단이유	316
〈표 7-3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전혀 모유를 먹이지 않은 이유	316
〈표 7-32〉	15~44세 유배우부인의 모유수유 지원을 위한 필요한 정부정책 ...	318
〈표 8- 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자녀필요성(1991~2006년)	323
〈표 8- 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	326
〈표 8- 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평균 이상자녀수 변동추이	328
〈표 8- 4〉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이상자녀수 분포	330
〈표 8- 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지역별 및 연령별 이상자녀수 분포	332
〈표 8- 6〉	15~44세 유배우부인의 아들 필요성의 변화	333
〈표 8- 7〉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335
〈표 8- 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아들의 필요이유	339
〈표 8- 9〉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이상자녀의 성구별 여부	341
〈표 8-10〉	15~59세 기혼가구의 자녀양육태도	344
〈표 8-11〉	15~59세 기혼가구의 자녀양육 책임한계	348

〈표 8-12〉	여성특성별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351
〈표 8-13〉	여성특성별 이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354
〈표 8-14〉	여성특성별 재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356
〈표 8-15〉	여성특성별 ‘남자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	358
〈표 8-16〉	여성특성별 ‘여자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	359
〈표 8-17〉	남성특성별 ‘남자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	361
〈표 8-18〉	남성특성별 ‘여자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	362
〈표 8-19〉	여성특성별 ‘본인의 결혼연령 적절성’에 대한 태도	363
〈표 8-20〉	남성특성별 ‘본인의 결혼연령 적절성’에 대한 태도	365
〈표 8-21〉	여성특성별 결혼을 빨리한 이유	366
〈표 8-22〉	남성특성별 결혼을 빨리한 이유	367
〈표 8-23〉	여성특성별 결혼을 늦게 한 이유	369
〈표 8-24〉	남성특성별 결혼을 늦게 한 이유	371
〈표 8-25〉	여성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이유(1순위)	373
〈표 8-26〉	여성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이유(2순위)	375
〈표 8-27〉	남성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이유(1순위)	376
〈표 8-28〉	남성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이유(2순위)	378
〈표 8-29〉	기혼남녀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379
〈표 8-30〉	여성특성별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에 대한 의견	381
〈표 8-31〉	남성특성별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에 대한 의견	382
〈표 8-32〉	여성특성별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한 의견	383
〈표 8-33〉	남성특성별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한 의견	384
〈표 8-34〉	여성특성별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한 의견	385
〈표 8-35〉	남성특성별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한 의견	386
〈표 8-36〉	여성특성별 ‘아버지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의 의견	388
〈표 8-37〉	남성특성별 ‘아버지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한 의견	389
〈표 8-38〉	여성특성별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의견	390

〈표 8-39〉	남성특성별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의견	391
〈표 8-40〉	여성특성별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한 의견	392
〈표 8-41〉	남성특성별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한 의견	393
〈표 8-42〉	여성특성별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에 대한 의견	394
〈표 8-43〉	남성특성별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에 대한 의견	395
〈표 8-44〉	여성특성별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의견	397
〈표 8-45〉	남성특성별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가치관	398
〈표 9- 1〉	기혼여성의 지역별 결혼상태	401
〈표 9- 2〉	기혼여성 및 남편의 결혼경력별 분포	401
〈표 9- 3〉	기혼여성 및 남편의 결혼경력별 분포의 비교	402
〈표 9- 4〉	15~49세 기혼여성과 남편의 결혼경력	403
〈표 9- 5〉	남편 및 부인의 특성별 평균 초혼연령	404
〈표 9- 6〉	15세 이상 기혼여성과 남편의 초혼연령별 분포	406
〈표 9- 7〉	15세 이상 기혼여성 및 남편의 교육수준별 분포	407
〈표 9- 8〉	기혼여성의 특성별 평균 혼인지속기간	408
〈표 9- 9〉	사별·이혼·별거부인의 일반특성	409
〈표 9-10〉	사별 및 이혼·별거부인의 해혼유형별 특성	411
〈표 9-11〉	해혼상태별 해혼당시 부인 및 남편의 연령분포	412
〈표 9-12〉	이혼·별거 부인의 특성별 이혼·별거 이유	414
〈표 9-13〉	이혼·별거 부인의 결혼연도별 이혼·별거 이유	415
〈표 9-14〉	해혼부인의 결혼연도별 평균 혼인지속기간	416
〈표 9-15〉	이혼·별거 부인의 특성별 이혼·별거 제외자	417
〈표 9-16〉	이혼·별거 부인의 이혼·별거당시 연령별 18세 미만 자녀수	418
〈표 9-17〉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수별 현재의 18세 미만 자녀수	419
〈표 9-18〉	지역별 현재의 18세 미만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의 동거자	419

〈표 9-19〉	현재의 18세 미만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의 동거자별 양육비 제공자 …	420
〈표 9-20〉	15세 이상 초혼부인의 초혼년도별 출생아 유무 ……………	421
〈표 9-21〉	가족주기 분석대상 부인의 지역별 특성 ……………	422
〈표 9-22〉	가족주기 분석대상 부인의 초혼년도별 특성 ……………	423
〈표 9-23〉	15세 이상 초혼 출산경험 부인의 초혼연도별 특성 ……………	424
〈표 9-24〉	가족주기 각 단계의 시작 및 종결당시 부인의 평균연령 ……………	426
〈표 10- 1〉	15세 이상 기혼여성의 결혼전·후 취업실태 ……………	429
〈표 10- 2〉	15세 이상 기혼여성의 특성별 결혼전 및 현 취업률 ……………	430
〈표 10- 3〉	현 취업부인의 특성별 직종 ……………	432
〈표 10- 4〉	가구 및 남편 특성별 15세 이상 기혼여성의 취업률 ……………	434
〈표 10- 5〉	현 취업부인 및 남편의 특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소득 ……………	435
〈표 10- 6〉	현 취업부인 및 남편의 직종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소득 ……	437
〈표 10- 7〉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일과 가정생활 병행상 어려움 …	438
〈표 10- 8〉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재 일 계속 여부 ……………	439
〈표 10- 9〉	15~49세 기혼여성의 직종별 현재 일 계속 여부 ……………	440
〈표 10-10〉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 취업이유 ……………	441
〈표 10-11〉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비취업이유 ……………	443
〈표 10-12〉	생애단계별 부인의 취업여부 ……………	444
〈표 10-13〉	지역별 부인의 취업유형 ……………	445
〈표 10-14〉	부인의 연령별 취업유형 ……………	446
〈표 10-15〉	부인의 교육수준별 취업유형 ……………	447
〈표 10-16〉	생애단계별 취업부인의 동일 직장 여부 ……………	448
〈표 10-17〉	결혼 전·후 취업을 지속한 부인의 취업직장의 변화 ……………	449
〈표 10-18〉	첫 자녀 출산전·후 취업을 지속한 부인의 취업직장의 변화 …	450
〈표 10-19〉	막내 자녀 출산 전·후 취업을 지속한 부인의 취업직장의 변화 ……	451
〈표 10-20〉	막내 자녀 초교입학 전·후 취업을 지속한 부인의 취업직장의 변화 ……	452
〈표 10-21〉	생애단계별 취업 중단 이유 ……………	453
〈표 11- 1〉	15~59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사분담 형태 ……………	457

〈표 11- 2〉	15~59세 기혼가구의 부부권력관계	459
〈표 11- 3〉	15~59세 기혼가구의 일상생활비 지출에서의 의사결정	461
〈표 11- 4〉	15~59세 기혼가구의 주택매매 및 이사에서의 의사결정	463
〈표 11- 5〉	15~59세 기혼가구의 투자 및 재산증식에서의 의사결정	466
〈표 11- 6〉	15~59세 기혼가구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의 의사결정	468
〈표 11- 7〉	지출항목별 내용	471
〈표 11- 8〉	가구특성별 평균 자녀양육비: 공동비용 중 자녀 몫	472
〈표 11- 9〉	가구특성별 평균 자녀양육아 개인비용 중 자녀 몫	473
〈표 11-10〉	가구특성별 평균 자녀양육비	475
〈표 11-11〉	자녀 1인당 평균 자녀양육비의 구조 가족공동비용 중 개인자녀 몫	476
〈표 11-12〉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의 구조: 자녀 개인비용	478
〈표 11-13〉	가구 및 자녀 특성별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	479
〈표 12- 1〉	15~59세 기혼가구의 혼인장려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책(1순위)	484
〈표 12- 2〉	15~59세 기혼가구의 혼인장려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책(2순위)	485
〈표 12- 3〉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자녀를 (더) 낳을 의향 여부	487
〈표 12- 4〉	아이를 낳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488
〈표 12- 5〉	자녀 출산·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1순위)	491
〈표 12- 6〉	자녀 출산·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2순위)	492
〈표 12- 7〉	자녀를 낳아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여건(1순위)	493
〈표 12- 8〉	자녀를 낳아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여건(2순위)	495
〈표 12- 9〉	15~44세 유배우가구의 입양 고려여부	497

그림 목차

[그림 5-1]	15~44세 유배우부인 중 임신노출상태에 있는 부인의 추가자녀 희망여부별 피임실천상태	248
----------	--	-----

Abstract

The Survey on The National Fertility, Family Health and Welfare in Korea

Despite of rapid demographic transition in Korea, central government cannot shape effective population policies to improve total fertility rate. Central government not takes its responsibility over local governments which suffer destitution but has to face the severe challenges of population structure.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s, this study aimed to offer material for population strategies and to improve family welfare.

This survey divided into three parts including household survey, married women from 15 to 49 survey and married householders from 15 to 49 survey through face to face interview. This study selected 273 restricts and 16,000 households and completion rate was 98.5%.

According to survey result, it described characteristic of household and family, residence, actual condition of household economy. Chapter of pregnancy and end of pregnancy explained the number of pregnancy experience, effort to birth a son and type of pregnancy end. Chapter of birth and the number of babies demonstrated birth rate, the number of babies, present children and the sons to daughters ratio.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actual conditions of contraception acceptance, abortion and mother-child health condition. Perspective on children and marriage, trends of marriage behavior and family life-cycle and employment condition of married women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is study described family support and raising children. Finally, family life and family policies need analyzed family relation, quality of family life and need of family welfare policies.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조사의 배경

-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보임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위기’라는 용어가 널리 회자(膾炙)하였으며, 아울러 ‘고령사회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만연하게 되었음.
 - 소득수준의 향상,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참여 증가, 초혼연령의 상승 등에 기인되어 현재의 저출산 수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조사의 목적

- 부인의 임신행태, 출산행태, 피임행태 등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최근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장단기 인구정책의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함.
- 임신 및 출산 행태의 변화와 부부의 취업, 가족주기, 가족생활, 자녀양육 등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분석하고, 출산율 안정화 방안과 가족복지 증진 방안을 동시에 모색함.
- 불임, 남아선호, 임신소모, 특히 인공임신중절 등 사회병리현상의 실태를 파악하고, 모자보건 수준을 분석하여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함.
- 궁극적으로 출산율 안정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을 지연시키고 가족안정화를 도모하며, 그리고 가족생활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제2절 조사의 방법 및 내용

□ 조사방법

- 본 조사는 본원의 연구진이 설계한 조사표를 기초로 사전 훈련된 전문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직접면접조사」로 이루어짐.
 - 조사는 표본추출된 조사지역 내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가구 조사와 가구 내에 살고 있는 15~59세 기혼가구조사와 15~49세 기혼부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개인조사로 이루어짐.

□ 조사내용

- 가구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구원의 특성, 출생에 관한 사항, 가구에 관한 사항 등임.
- 가족복지의 주요 내용으로는 응답자 부부의 특성과 혼인사항, 가족주기, 가치관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출산 및 가족정책 등임.
- 임신·출산·피임·취업에 관한 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력·출산력·피임력·혼인력·취업력 기록표, 부인과 남편의 취업에 관한 사항, 임신·출산사항 및 입양에 관한 사항, 가족계획실태(피임실태), 불임실태 및 치료에 관한 사항 등임.
- 모자보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산전관리 및 분만에 관한 사항, 산후관리에 관한 사항, 수유에 관한 사항 등임.

제3절 출산력관련 조사의 연혁 및 특성변화

□ 출산력관련 조사의 연혁

- 출산력 및 피임, 가족보건 등과 관련된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는 금번조사

가 20번째로 실시된 것임.

- 1964년부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말부터는 3년 주기로 실시됨.

□ 출산력관련 조사의 특성변화

- 1960년대 조사는 단순히 피임에 관한 지식, 태도, 실천에 관한 내용에 치중되었고, 1970년대 조사는 출산수준 및 행태 변화에 관한 내용이 추가됨.
- 1980년대 조사는 피임 및 출산 관련 내용에 추가하여 모자보건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조사는 출산력 전환과 인구증가억제정책의 폐지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2000년대 조사는 지속적인 저출산의 원인규명과 그 대책강구 및 원인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가족복지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강화되었음.
 - 이는 출산을 저하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증가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대, 그리고 가족복지의 미흡에 기인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제4절 표본설계 개요

□ 기획단계 결정 사항

- 전체 표본조사수를 273개 조사구로 하고 조사구 당 가구수는 60가구로 하여 약 16,380가구를 조사대상 가구로 하였음.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일반조사구의 총조사구수는 264,207개 조사구이며 총가구수는 15,835,032가구로 집계되었음.

□ 표본추출 및 추정방법

- (1) 7대 시의, (2) 기타 시 (3) 군의 읍·면으로 분류하고 각 조사구의 주된 주택 특성에 따라 2가지의 주택형태로 분류하였음.
 - (1) 단독주택,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타 와 (2) 아파트 조사구로 분류하였음.

- 또한 모집단의 각 조사구는 가구수가 동일하지 않음으로 각 조사구의 가구수를 5로 나누어 크기의 측도(MOS: Measure of size)로 사용함.
 - 6개 층(조사구의 지역특성과 주거형태) 내에서 각 모집단 조사구를 행정구역 순으로 정렬하여 지역적으로 골고루 추출되도록 하였음.
 - 행정구역을 분류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지역(시도)별로 층화추출한 효과를 얻도록 하였음.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에서 194개 조사구를 추출한 결과 7대 시에 72개 조사구, 기타 시에 45개 조사구, 읍·면 지역에 45개, 7대시의 아파트 조사구에서 51개 조사구, 기타시의 아파트 46개 조사구, 읍·면의 아파트 14개 조사구가 추출하였음.
 - 조사결과의 각종 통계치는 가중표본합계치(weighted sample total)를 사용함.

제5절 현지조사 및 자료처리

□ 현지조사의 준비 및 지도·감독

- 조사원 모집, 2일간의 조사원 훈련, 1인의 지도원과 3인의 조사원으로 조사팀 구성 등 조사준비를 함.
- 현지조사는 약 3개월간 이루어졌으며, 2006. 6. 5~8. 24일 기간 중 실시됨.
 - 조사초기단계에서는 연구진에 의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졌음.

□ 조사자료 처리

- 조사완료된 자료는 일차적으로 현지에서 지도원에 의해 오류수정을 하였고, 조사를 완료한 후 일부 지도원과 조사원에 의하여 약 3개월간 오류수정과 부호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음.
 - 자료분석을 위한 파일이 재구성되었고, 연구진은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음.

제6절 응답자의 특성 및 통계해석시 유의사항

□ 응답자의 특성

- 본 조사의 대상은 15~59세로 조사결과 9,987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중 동부지역 83.6%(8,472명), 읍·면부지역 16.4%(1,660명)가 거주함.
 - 전체 응답자 중 남자가 13.0%, 여자가 87.0%로 대부분이 여자 응답자이었음.
 - 응답자의 88.0%는 유배우이었으며, 사별 3.8%, 이혼 및 별거는 7.9%로 나타났음.

□ 통계해석시 유의사항

- 가구사항 응답부인 및 남편의 특성, 결혼양상, 가족복지 및 가족가치관에 관한 분석은 전체 가구 또는 15~59세 기혼가구임.
 - 본 조사에서 개인조사는 15~59세 기혼부인, 임신·출산·피임, 모자보건에 관한 분석은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하였음.
- 지역별 구분을 함에 있어 도시와 농촌이 아닌 동부와 읍·면부지역으로 구분하였음.
 - 합계출산율, 연령별출산율, 유배우출산율, 인공임신중절률은 전국의 결과만을 게재하고 지역별, 즉, 동부와 읍·면부를 구분하지 않았음.
- 각 통계표에는 편의상 ‘무응답’ 수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음.

제2장 가구 및 가족의 제 특성

제1절 가구의 특성

□ 가구의 규모

- 가구규모의 변동추이를 보면 4명 이하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는 증가

하는 반면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는 감소하는 추세임.

- 평균 가구원수는 1966년 5.5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1995년 이후 3.3명으로 저하되었고, 본 조사의 시점인 2006년에는 2.9명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 가구주의 특성

- 가구주는 남성 80.9%, 여성 19.1%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혼 및 별거, 사별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최근 우리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임.
 - 가구주의 결혼상태는 유배우가 71.1%, 사별은 11.2%, 이혼·별거는 6.4%, 그리고 미혼은 11.2%이었음.
 - 연령별 가구주 비율은 30대와 40대가 50.3%를 차지하였고, 연령이 높아 질수록 가구주의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가구원의 특성

- 조사완료된 가구의 총가구원수는 41,586명으로 동부지역에 82.2%, 읍·면 부지역에 17.8%가 거주하고 있었음.
 - 전국적으로는 여성가구원의 비율이 약간 높았으며(남성 48.8%, 여성 51.2%),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여성가구원의 비율이 높았음.

제2절 가족의 특성

□ 가족의 세대별 구성

- 가족의 세대별 구성은 2세대 가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1세대 가족은 증가하는 반면, 2세대와 3세대 가족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음.
 - 읍·면부지역에서 1세대 가족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농촌지역 노인층의 부양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형태별 가족유형

- 전체 조사대상가구 중 2인 이상의 혈연가구로 구성된 친족가구는 80.6%, 1인 가구와 비혈연가구로 구성된 비친족가구는 19.4%의 분포를 보였음.
 - 친족가구 중 핵가족의 비율은 87.7%, 확대가족은 7.4%, 기타 친족가구는 4.9%로 구성되어 있음.
 - 비친족가구는 1인 가구가 96.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비혈연가구는 3.7%에 불과함.

제3절 주거 및 가구경제 실태

□ 주거실태

- 조사대상가구의 40.6%가 단독주택에 거주하였으며, 43.3%는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소유형태는 56.7%가 자가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주택소유형태가 자가인 경우 소유명의로는 61.3%가 남편이었고, 부인이 25.7%, 부부공동명의로인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함.

□ 재산보유실태

- 전체가구의 평균 재산 보유액은 1억 5440만원이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가구는 전체의 5.8%에 불과함.
 - 월평균 가구소득과 가구원수가 높을수록 평균재산규모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
 - 평균 재산규모는 여성가구주 가구(7051만원)가 남성가구주 가구(1억 7428만원)보다 훨씬 낮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여성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부채규모

- 부채를 갖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46.9%로 나타났으며, 평균 부채규모는 2,746만원이었음.
- 부채비율 및 부채규모는 읍·면부 지역이,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남성가구가 가구가 높은 경향을 보였음.

□ 부채원인

- 부채원인은 주로 주거비 및 주택마련(50.1%)과 사업자금(27.5%) 때문으로 나타났으며, 생계비 때문도 8.4%로 적지 않은 비율이었음.
-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부채의 주요 원인은 주거비 및 주택마련이 높은 비율을 보였고, 사업자금과 생계비도 높게 나타났음.
-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사업자금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주거비 및 주택마련, 생계비 및 교육비 등 생계비, 의료비 등이 부채원인으로 나타났음.

□ 가구의 소득 및 소비 실태

- 전체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54만원으로, 그중 20.9%는 월 99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수의 가정이 빈곤 상태임을 보여 주고 있음.
- 월소득이 99만원 이하인 가구는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높았으며, 49만원 이하인 경우도 21.1%로 나타나서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음.
- 전체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은 207만원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의 81.5% 수준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99만원 이하를 지출하는 가구는 전국 21.7%, 동부지역 31.7%, 읍·면부지역 28.1%이었음.
- 전체가구의 소비지출규모는 월평균 207만원으로, 그중 21.7%가 월 99만

원 이하의 소비지출을, 300만원 이상의 지출은 22.6%의 분포를 보였음.

- 소득이나 소비수준은 동부지역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3세대 이상의 가구가, 그리고 남성가구주 가구가 높아 가구특성별로 소득소비수준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주관적 경제수준

- 전체가구의 70.8%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29.2% 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음.
 -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은 사교육비(14.6%)이었고, 이 외에도 주거비(12.6%), 자녀양육 및 교육비(10.2%), 각종 공과금(8.7%), 의료비(7.8%) 등이었음.
-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28.8%)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41.9%)으로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제4절 가구 및 가족 제 특성의 시사점

□ 가족구조

- 우리나라의 가구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있음.
 - 이는 한 가구내 평균가구원수의 감소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원인은 출산율 감소, 핵가족화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음.
- 세대구성이 변화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던 2세대, 3세대 가족이 감소하는 대신에, 1세대 가족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성인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한 미혼가구의 증가, 노인부부가족의 증가, 평균수명의 차이에서 비롯된 노인여성단독가구의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높은 사회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

□ 가구주의 변화

-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임.
 - 이와 함께 가구주의 결혼상태로 유배우 가구주는 감소하는 반면 사별 및 이혼·별거 등의 해체가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해체가족을 결손가족의 개념에서 다양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이데올로기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가족의 경제

- 자가소유율은 높아져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이루고 있으나, 농촌지역은 오히려 자가비율이 감소하여 지역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주거정책이 지역 및 가족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계획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
- 부동산과 동산을 합친 전체 재산의 규모는 농촌가구와 여성가구주 가구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수준이었으나, 반대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부채규모는 평균보다 훨씬 적은 편이었음.
 - 이는 정책지원 대상으로 재산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재산과 부채를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부채원인도 주택마련부터, 기본적인 생계비 및 의료비 때문 등 다양하게 나타나서 지역 및 가족유형별로 차별화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 도시지역과 남성가구주 가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이 주로 자녀와 관련된 양육 및 교육비 부담 그리고 각종 공과금으로 나타남.
 - 따라서 가족의 경제적 지원은 지역, 가족유형 및 가족주기별로 다양하게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3장 임신행태 및 임신 종결형태 변화

제1절 임신경험횟수

□ 임신경험횟수의 변화

- 2003년 조사에서는 2회의 임신경험을 가진 부인의 비율이 30.3%로 가장 높았고, 4회 이상 임신경험부인은 26.5%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는데, 2006년 조사에서는 차이를 보임.
 - 즉, 2006년의 임신횟수 분포는 2회의 임신을 경험한 부인이 3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회 이상 25.9%, 4회 18.9% 등의 순이었음.
-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조사대상 부인의 평균임신횟수는 1994년의 3.0회에서 1997년에는 2.8회로 낮아졌고, 2000년과 2003년에는 2.7회로 낮아졌으며 2006년에 다시 2.5회로 낮아졌음.

제2절 남아출산노력

□ 남아출산 노력경험률

- 남아출산을 위한 노력을 한 경험률은 6.1%로 2003년의 6.0%와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사회에 여전히 남아선호의식이 남아있음을 의미함.
- 남아출산을 위한 노력의 유형별 경험률을 살펴보면, 자연요법이 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초음파검사 1.9%이었음.
 - 또한 양수검사 0.5%, 융모막검사 0.1% 등이 있었음.

제3절 임신종결 형태

□ 임신종결 형태의 변화

- 전체 임신횟수 중 정상출생이 1994년 조사에서는 1.80회이었으나 2000년 조

사에서는 1.72회로 감소하였고, 2006년 조사에서는 1.69회로 계속 감소함.

- 정상출생 다음으로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은 1994년 조사에서는 0.84회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 조사에서 0.48회이었음.
 - 사산과 자연유산은 1994년 조사에서 각각 0.01회, 0.24회에서 2006년 조사에서는 각각 0.01회, 0.23회로 감소하였음.
- 2003년 조사와 비교하여 2006년 조사에서는 총임신과 정상출생, 인공임신중절, 자연유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임신소모가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됨.
- 그렇지만 임신소모의 다른 형태인 사산의 절대횟수는 감소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건의료적 측면의 관심이 요구됨.

□ 임신종결 형태

- 정상출생으로 종결되는 경우는 1994년 조사의 61.0%에서 1997년 조사에서는 62.9%, 2000년 조사에서는 63.8%, 그리고 2003년 조사에서는 65.5%, 그리고 2006년 조사에서는 39.0%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양상을 보였음.
 - 이는 임신소모로 종결되는 경우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임신소모로 종결되는 경우는 1994년 조사의 36.9%에서 1997년 조사에서는 35.5%, 2000년 조사에서는 34.0%, 2003년 조사에서는 32.9%, 그리고 2006년 조사에서는 29.0%로 지속적인 감소양상을 보였음.
- 전체 임신의 29.0%가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부인의 임신소모의 수준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의미함.

제4절 불임실태

□ 불임부부가 증가

- 15~49세 전체 유배우부인 중 임신을 위하여 노력한 비율은 7.9%이었고,

임신노력 부인 중인 부부가 불임진찰을 받은 비율은 54.2%로 나타났다.

- 결과적으로 전체 유배우부인의 4.26%가 임신을 원하지만 불임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겠음.
- 15~44세 유배우 부부 중 불임진찰 결과 불임의 원인은 부인의 경우에는 원인불명이 4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배란장애가 21.2%, 나팔관 장애가 15.8% 등의 순이었음.
- 남편의 경우는 원인불명이 81.0%로 부인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정자무력증 6.8%, 희소정자증 6.1%, 무정자증 5.4% 등의 순이었음.
- 임신을 하기 위한 노력 경험이 있는 15~49세 유배우부인 중 불임진찰을 받았다는 경우는 54.2%이었음.
- 부부가 모두 불임진찰을 받았다는 경우는 51.1%, 부인만 받았다는 경우는 47.9% 이었고, 남편만 받았다는 경우는 1.0%로 낮았음.

제5절 임신행태 및 임신종결형태 변화의 시사점

□ 2006년 조사결과

- 전반적으로 임신소모는 감소하고 정상출생으로 종결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으나, 여전히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임신소모는 높은 수준에 있으며, 자연유산과 사산에 의한 임신소모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됨.
- 따라서 인구자질 및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임신전 건강관리와 임신부 관리에 많은 취약점을 지닌다고 하겠음.
- 일부 계층에서는 여전히 남아출산을 위한 노력이 비과학적인 자연요법에 의하여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다음은 초음파검사와 양수검사에 의하여, 심지어는 융모막검사까지 실시되고 있었음.
-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회제도와 사회구조에서 남성

중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판단됨.

□ 시사점

- 전체 임신 중 임신소모로 종결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임신의 29.0%가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부인의 임신소모 수준이 높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의미함.
-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임신소모는 감소되고 있으나 높은 피임실효율에도 불구하고 전체 임신의 19.2%, 임신소모의 약 70%가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피임실효의 사각지대가 넓게 존재하고 있다고 사료됨.
 - 아직까지 불임임신의 예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불임임신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결과라 판단됨.
- 사산과 자연유산은 많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회적 및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부인의 건강상태가 임신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것임.
 - 미혼청소년 및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홍보계몽을 강화하고 철저한 임신부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한 경우에 자연유산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불임임신의 예방을 위한 효과가 높은 피임방법의 사용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임신을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 부인 중 불임진찰을 받은 경우가 높았음은 저출산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받아들여짐.
 - 본 조사에서는 불임진찰을 받은 경우 원인불명이 가장 많았음은 불임에 대한 심층연구가 국가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임신 당사자인 여성과 그 배우자의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정책차원에서 홍보·계몽이 적극 이루어져야 함.

- 임신 전·후에 필요한 올바른 정보가 많이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실천하는 개인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만이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임.

제4장 출산행태 및 출생아·현존자녀수 변화

제1절 출산율의 변동

□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

- 출산율의 저하는 1974년 이후 1987년까지는 40~44세 연령층을 제외한 전체 연령층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전체기간동안 25~29세 연령층이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았음.
 - 25~29세 연령층의 합계출산율에의 기여율은 1990년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었음.
- 1974년 이후 연령별 출산율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20~24세 연령층과 25~29세 연령층에서 보여준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임.
 - 여자 1,000명당 출생아수는 20~24세 연령층의 경우 159명에서 19명으로, 25~29세 연령층에서는 276명에서 94명으로 큰 저하를 보여주었음.
- 최근 한국사회 출산율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30~34세 연령층의 출산율이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저하를 멈추고 상승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1980년대 초반의 수준으로 높아졌음.
 - 1974년 동 연령층의 연령별 출산율은 164이었으며, 점차 저하하여 1987년에는 39수준으로 최저점에 있었다. 그러나 점차 상승하여 1990년 50, 1993년 64, 1996년 83이었으며, 1999년에는 75로 다시 저하하였으나 2002년에는 83, 2005년에는 87로 재상승하였음.
- 전술한 셋째와 넷째의 이유에 근거하여 25~29세 연령층과 30~34세 연령층의 출산율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점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

- 1974년 연령층의 연령별 출산율은 25~29세 276, 30~34세 164로 큰 격차(112의 차이)를 보였으나 2005년에는 25~29세 94, 30~34세 87로 나타나 미미한 차이(7)만을 보였음.
- 35세 이상에서 출산하는 ‘고령출산’이 1980년 초반 이후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
- 35세 이상 연령별 출산율의 합이 1974년 106이었고, 1982년에는 26으로 낮아졌으며, 1990년 최저점(8)에 도달한 이후, 2005년에는 18로 정점에 달하고 있음.
- 1996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늦둥이 출산(40대 출산)이 미미하나마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증가하고 있음.
- 40~44세 연령층의 출산율은 1974년 29에서 점차 저하하여 1984년에는 1에 불과하였으나, 1996년에는 늦둥이 출산이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고 2005년에는 1996년의 수준을 회복하였음.
- 가임여성은 15~49세이지만 한국사회에서 45~49세 연령층이 출산하지 않는 경향은 지난 1982년 이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합계출산율의 변화

- 합계출산율은 1960~'87년 기간 중 6.0명에서 1.6명으로 감소하여 OECD 평균 수준에 도달되었다. 그 후에도 동일한 수준의 출산율이 약 10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음.
- 비록 1993년에는 1.75명 수준으로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1% 수준으로 저하된 1989년 이후 정부가족계획사업의 급격한 축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음.
- IMF 관리체제 하에서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게 되자, 출산율은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였음.
- 1998년부터 합계출산율은 급속히 저하하기 시작하였는데, 1999년 1.43명

으로 감소하였고 2002년에는 1.17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낮아졌으며,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5년의 합계출산율은 1.09명으로 한국 역사상 가장 낮은 출산수준을 다시 갱신하게 되었음.

□ 출산율의 국제비교

- 인구 천명당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이 한국은 2004년 9.8명에서 2005년 9.0명으로 감소하였음.
 -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국가는 일본, 프랑스, 영국, 스웨덴, 독일, 뉴질랜드 등이었음.
 - 반대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국가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체코 등이었음.
 - 조출생률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로는 일본, 독일 등이었으며, 높은 국가는 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체코, 호주, 뉴질랜드 등이었음.
- 합계출산율이 한국은 저하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저하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국가는 일본, 독일, 그리스, 뉴질랜드 등이었음.
 - 반대로 상승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국가는 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체코, 호주 등이었음.

제2절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

□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특징

-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의 합(합)은 1990년을 최저점으로 1996년까지는 점차 상승하였으나, 1999년부터는 다시 저하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
- 유배우출산율의 전반적 변화를 살펴보면, 저연령층일수록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낮아지는 특징을 보였음.

- 이는 연령별 출산율이 25~34세 연령층이 높고 그 외의 연령층은 현저히 낮은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으며, 결혼율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 판단됨.
- 2005년 25~29세 연령층의 유배우출산율이 231로 가장 높았으며, 24~25세 연령층은 202, 30~34세 연령층은 108이었음.
- 3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현저히 저하하여 35~39세 연령층에서는 17, 40~44세 연령층에서는 4 수준을 보여주었음.
- 이는 주출산연령층이 25~34세이고, 20~24세 연령층은 결혼한 여성은 많지 않지만 결혼후 즉시 출산하기 때문으로 이해됨.
- 20~24세 연령층과 25~29세 연령층의 유배우출산율은 2002년도에 비하여 낮아졌으나 그 외의 연령층에서는 높아졌음.
- 특히, 30~34세 연령층의 유배우출산율은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다만 1999년에는 미미한 수준에서 감소) 1980년의 103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이 특징임.

제3절 출생아와 현존자녀의 규모 및 성비

□ 출생아 규모

- 2006년 조사결과, 15~44세 유배우부인의 평균 출생아수는 1.7명으로 2003년보다 0.1명 감소하였음.
- 부인의 제 특성별 출생아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부인 중 2명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이 가장 많은 57.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1명을 가진 부인이 22.6%, 3명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 9.8%, 그리고 출생아가 없는 부인이 9.8% 등의 순이었음.
- 15~44세 유배우부인의 89.4%가 2명 이하의 출생아를 가졌음.

□ 출생아의 성비

- 15~44세 유배우부인의 평균 출생아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아 0.90명, 여아 0.81명으로 부인의 누적된 출생아 성비는 111로 나타났다.
- 2000년 조사의 출생아 성비 111과 같은 수준이었으며, 2003년 조사의 출생아 성비 113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음.

□ 현존자녀수

- 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 분포는 2003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1명 이하의 자녀를 가진 비율은 증가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비율은 감소하였음.
- 자녀가 0~1명인 부인은 32.2%이었고, 3명 이상인 부인은 11.0%이었으며,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56.8%로 나타났다.
- 결과적으로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현존자녀수 분포와 평균 현존자녀수는 이들 부인의 출생아수 분포와 평균 출생아수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였음.
- 이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재혼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대상의 부인이 유배우상태의 경우만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영아사망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해석됨.
- 그러나 최근 이혼율과 재혼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경향은 변화될 가능성이 전망됨.

□ 현존자녀의 성비

- 15~44세 유배우부인의 평균 현존자녀수는 1.70명이었으며, 남아 0.89명, 여아 0.81명으로 부인의 현존자녀수의 성비는 110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03년 조사의 현존자녀 성비 112보다 완화된 것이다. 또한 동 수

준은 2006년 누적 출생아의 성비 111과 유사한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미혼모, 재혼 등의 사회현상이 미미하여 자녀규모 및 성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됨.

제4절 출산간격의 변화

□ 부인의 출산기간

- 15~49세 초혼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결혼연령은 24.1세이었고, 첫째 아 출산연령은 25.3세, 막내 아(추가자녀를 원하지 않는 상태)를 출산하거나 단산한 연령은 28.4세로 나타났음.
- 결혼 후 첫째 아 출산까지의 기간은 1.2년, 첫째 아 출산부터 막내 아 출산까지의 기간은 3.1년이 소요되어 결혼부터 막내 아 출산까지의 전체기간은 4.3년이었음.
- 2003년과 비교하면, 결혼연령은 0.2세가 연장된 것이며, 첫째 아 출산시 부인연령은 0.3세가 연장되었고, 막내 아 출산시 부인연령은 0.2세가 늦어졌음.

제5절 출산행태 및 출생아·현존자녀수 변화의 시사점

□ 출산율 저하의 원인에 대한 해석

- 1997년 말 이후 경제위기에 따른 취업난, 실업 등에 기인하여 나타난 불투명한 미래와 가족경제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결혼을 지연하거나 출산을 연기하는 경향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사회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양성불평등적 사회 및 가족 구조, 자녀양육 부담, 그리고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사회

적 지원의 미흡 등에 의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향후 인구정책의 방향

- 인구정책은 적정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강구에 초점을 모아야 함과 병행하여 저출산의 지속에 따른 제반 사회경제적 현상을 분석하고 총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저출산율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과 낮은 출산율은 피할 수 없는 현상임을 인식하여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인구자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측면으로서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청소년 성 보건사업 등 생식보건 관련사업의 체계화 및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함.
- 미미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30대 후반과 40대 연령층의 늦둥이 출산은 모자보건 및 인구자질 측면에서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5장 피임수용실태

제1절 피임실천의 변동추이

□ 피임실천수준율의 변화

-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실천율은 79.7%로 2003년에 비하여 4.9%포인트가 감소한 수준이었음.
 - 1989년 이후 가족계획사업예산이 대폭 감액되고, 1996년 인구증가억제 정책이 폐지된 이후에도 피임실천율이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그동안 피임실천이 안정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임.

□ 부인특성별 피임실천율의 변화

-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이 각각 79.8%, 78.2%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결과는 2003년의 경우 동부지역이 84.8%로 읍·면부지역 82.5%보다 2.3%포인트 높았던 것과 비교할 때 동부지역의 피임실천율의 감소는 읍·면부지역 보다 빠르게 진행됨.
-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반대로 피임비실천 부인의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였음.
- 현존자녀수가 많을수록 피임실천율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
 - 자녀가 1명인 부인의 경우 피임실천율은 61.5%,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92.2%로 급격히 상승하였고,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부터는 비슷한 피임실천수준을 보였음.
- 자녀출산이 종료되는 30대 후반 연령층에서는 피임실천율이 정점을 보였으며, 교육수준에 따라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피임실천율은 낮았음.

□ 연도별 피임실천율의 변화

- 지역별로는 1976년 이후 1988년까지 동부지역이 계속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1991년 이후부터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높아지면서, 지역간 차이가 줄어들었다. 2003년에는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을 상회하면서 지역간 차이가 약간 벌어졌으며 2006년에는 소폭의 감소를 보였음.
- 1997년에는 다시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다가 2003년에는 일부 연령층을 제외하고 감소하였으며, 2006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현존자녀수별 피임실천율 역시 계속 상승하다가 1994년에는 1~3명의 자녀를 둔 부인의 피임실천율이 저하되었다가, 1997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다시 증가되었고, 2003년에는 자녀수가 3명 이하에서는 증가하였음.

- 1976년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피임실천율도 높았으나, 1980년대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여 1988년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피임실천율이 낮아져서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경향은 1997년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여 2000년 이후에는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 않음.

□ 피임방법별 피임실천율의 변화

- 난관수술은 1988년까지 큰 폭의 증가를 하다가 1991년부터 감소하였으며, 2006년에는 2003년보다 1.4%포인트가 감소하였음.
- 먹는 피임약의 실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7년에는 1.8%까지 떨어졌으나, 2000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하다,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6년에는 1.4%로 나타났음.
- 정관수술 실천율은 1994년에 일시적인 감소를 보인 외에 계속 상승하여 2006년에 24.8%까지 증가하였음.
- 콘돔 실천율은 꾸준히 증가하다 2003년에 일시적인 감소를 보인 후에 2006년에는 다시 24.2%까지 증가하였음.
- 자궁내장치와 기타 방법의 실천율은 1988년까지 계속 감소하다 1991년부터 난관수술이 감소하면서 사용이 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각각 18.8%와 16.6%의 실천율을 보였음.

제2절 피임실천양상

□ 부인의 특성 및 피임방법별 피임실천

- 부인의 거주지역에 따라 피임방법별 실천율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동부지역의 경우 정관수술, 콘돔, 살정제, 월경주기법 및 기타방법 등이 높은 피임 실천율을 보였고, 난관수술, 자궁내장치, 먹는 피임약 등은 읍·면부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음.

-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영구적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율이 높았으며, 젊은 연령층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일시적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율이 높았음.

□ 피임실천 목적

- 15~44세의 유배우부인이 피임을 하는 목적은 69.7%가 단산으로 나타났고, 출산연기 목적의 피임실천부인은 9.7%, 기타 등으로 피임을 하고 있는 경우는 0.2%에 불과하였음.
 - 피임방법별로는 일시적 피임방법의 경우 티울조절 뿐만 아니라 단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서, 적절한 피임사용법에 대한 홍보계몽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

□ 현사용 피임방법에 대한 계속 사용의향 및 선호피임방법

- 비영구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부인 중에서 현 피임방법을 계속 사용할 의향을 가진 부인은 66.5%, 변경할 의향을 갖고 있는 부인은 27.8%이었음.
 - 피임방법별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비율은 자궁내장치 수용부인이 79.4%로 가장 높았으며, 살정제의 경우 57.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음.
- 향후 변경의향을 가진 부인 중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정관수술이 7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궁내장치가 10.9%, 난관수술이 6.7%, 콘돔 2.3%의 순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향후 부인이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사용상의 불편 및 실패임신의 위험이 낮은 정관수술과 자궁내장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결혼에서 불임수술 수용시까지의 소요기간

- 결혼 후 불임수술 수용시까지의 기간별 분포를 보면 불임수술수용 부인 중 68.4%가 5년 이내에 불임수술을 받았으며, 26.3%는 5~9년 사이에, 4.4%는 10~14년 사이에, 15년 이상 소요된 부인은 0.9%이었음.

- 결혼 후 불임수술 수용시까지의 기간은 평균 3.7년이었음.
- 불임수술 방법별로 결혼 후 불임수술 수용시까지의 소요기간은 난관수술과 정관수술 간에 미미한 차이를 보였음.
 - 기간별 분포를 보면 난관수술을 수용한 경우는 결혼 후 5년 이내인 부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3.6%, 5~9년이 23.3%의 분포를 보인 반면, 정관수술은 5년 이내가 66.3%, 5~9년이 27.6%이었음.
- 결혼 후 수용시까지의 기간은 난관수술은 평균 3.3년, 정관수술은 3.8년이 소요되어 난관수술과 정관수술은 0.5년의 차이에 불과하였음.
 - 이를 2000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결혼 후 불임수술을 수용한 기간은 난관수술은 평균 5.1년, 정관수술은 평균 5.6년으로 난관수술과 정관수술 모두 결혼 후 수용시기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제3절 피임실천경험 실태

□ 피임횟수별 피임경험

- 15~44세 유배우 부인의 특성별로 총 피임횟수 분포를 보면 피임횟수가 2회 이하인 부인의 비율은 40.8%, 3회는 25.3%, 4회 이상은 33.9%로 부인의 과반수 이상이 총 3회 이하의 피임횟수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평균 피임횟수도 3.1회로 조사결과를 반영하고 있음

□ 피임방법별 피임경험

- 부인이 사용한 총 피임방법수를 보면 2가지 이하의 피임방법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부인은 70.0%로 3분의 2에 해당되었고, 3가지 이상의 피임방법을 사용한 부인은 29.9%이었음.
 - 평균 피임방법수는 2.1가지로 조사결과를 반영하고 있음.
- 피임실천 경험이 있는 부인이 처음으로 사용한 피임방법은 콘돔이 32.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월경주기법이 24.4%, 자궁내장치 16.1% 순으로

높았음.

- 정관수술, 기타 방법, 난관수술, 살정제 등은 미미한 비율을 보였음.
- 피임실천 경험이 있는 부인이 마지막으로 사용한 피임방법은 콘돔이 2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정관수술이 23.7%, 자궁내장치가 16.7%, 월경주기법이 16.4% 순으로 높았음.
- 난관수술, 먹는피임약, 살정제, 기타 방법 등은 미미한 비율을 보였음.

제4절 피임비실천실태

□ 피임중단시 사용했던 피임방법

- 피임비실천 부인 중 과거에 피임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부인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피임방법을 보면, 콘돔이 4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월경주기법 20.5%, 자궁내장치 14.9%, 기타 피임방법 12.0%의 순이었음.
- 이 외에 불임수술을 사용했던 부인은 극히 미미하였음.

□ 피임중단 및 무경험 이유

- 과거에 피임을 실천한 경험이 있으나 조사당시 피임을 중단한 상태에 있는 부인의 피임중단 이유는 임신을 원하기 때문에 중단한 비율이 60.3%로 피임의 중단 원인이 자녀를 갖는데 있었음.
- 이 외에도 피임을 중단한 이유는 피임의 일시적인 불필요 13.6%, 피임의 영구 불필요 8.7%, 실패임신 7.3%, 사용상 불편이 4.5%, 부작용 2.9%, 기타 2.8% 등으로 나타났음.
- 2003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피임을 중단한 이유로 임신을 원하거나 자연배출, 피임 영구 불필요, 부작용 등은 감소한 반면, 실패 임신, 사용상 불편, 피임 일시 불필요, 기타 등의 이유는 증가하였음.
- 피임경험이 전혀 없는 부인의 피임 무경험이유로는 자녀를 원하기 때문이 7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

- 자연불임인 경우가 14.6%, 피임이 일시적으로 불필요하기 때문에 응답한 부인은 7.8%이었음.
- 2003년과 비교하면 자녀를 원하거나, 피임지식이 부족한 경우 등은 감소한 반면, 자연불임, 피임 일시 불필요 등인 경우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 향후 피임실천 의향 및 선호 피임방법

- 피임비실천 부인 중 57.8%가 실천할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22.6%는 실천할 의향이 없었고, 아직 그 의향을 결정하지 못한 부인은 19.6%이었음.
 - 과거에 피임을 실천한 경험이 있는 부인이 피임무경험부인보다 향후 실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피임을 실천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실천할 의향을 갖고 있는 부인이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정관수술이 34.0%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콘돔이 23.8%, 자궁내장치 10.8%, 월경주기법 8.8%, 난관수술 4.5% 등의 순이었음.
 - 향후 피임실천 의향은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부인도 13.5%로 나타났음.

제5절 임신노출상태 및 자녀희망 여부별 피임실태

□ 임신노출상태

- 15~44세 유배우부인 중 임신불가능상태에 있는 부인은 34.4%, 임신가능상태에 있는 부인은 65.6%로 나타났음.
 - 임신이 불가능한 부인은 불임수술을 수용한 부인이 31.0%, 자연불임인 부인 3.2%, 임신이 불가능한 부인이 0.2% 등이었음.
 - 임신가능부인은 일시피임실천 중에 있는 부인이 48.6%, 피임비실천중인 부인 10.3%, 현재 임신 중인 부인이 6.7% 등으로 나타났음.
- 임신노출상태를 2003년과 비교하면, 임신 불가능한 부인은 2003년에 비해

여 0.1%포인트가 증가한 반면, 임신가능상태에 있는 부인은 65.6%로 2003년과 동일함.

□ 자녀희망여부별 피임실천여부

- 자녀를 원하기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17.3%이었으며,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는 3.5%로 나타났다.
- 반면 더 이상 자녀를 원치 않기 때문에 피임을 하는 경우는 64.7%, 자녀를 원하지만 피임을 하는 경우는 14.5%이었음.
- 자녀를 원치 않으면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부인에 대한 집중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인공임신중절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제6절 피임수용실태의 시사점

□ 피임실천율

- 15~44세 유배우 부인의 피임실천율은 2006년 79.6%로 2003년보다 4.9%포인트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불임이 증가하면서 오는 영향으로 이해됨.
-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임신중인 경우와 폐경, 자연불임 등과 같이 피임이 불필요한 경우 등이 있어 피임실천율의 한계를 약 80% 전·후로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이와 같이 1989년 이후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감액되고, 1996년 6월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는 등 인구자질정책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 높은 수준의 피임실천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혼부부 사이에 피임실천이 상당히 보편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임.

□ 피임실태와 관련된 특징

- 여성피임방법인 난관수술에서 남성피임방법인 정관수술로 피임방법이 전환되는 추세임.
 - 이는 양성 평등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음.
- 영구적인 피임방법에서 일시적인 피임방법으로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음.
 - 일시적 피임방법은 터울조절의 경우에는 유용하지만 단산을 한 부인의 경우에 일시적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율이 높다는 것은 피임실패의 가능성이 예상되어 피임실천의 질적인 측면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함.

제6장 인공임신중절실태

제1절 인공임신중절률의 변화

□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의 연도별 변화추이

- 가장 높은 인공임신중절률을 보여주고 있는 20~24세 연령층은 1990년에 186을 기록한 후 급격히 떨어져 1999년 53으로 최저수준에 달하였다가 2002년에는 다시 74로 상승하였음.
 - 본 조사에서는 59로 다시 감소하였음.
- 25~29세 연령층의 인공임신중절률은 1984년의 146을 정점으로 저하하기 시작하여 1987년 103에서 1990년에는 112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그 후 급격히 떨어져 1999년에는 33 수준에 머물렀고, 2002년에 38로 다소 반등하였음.
 - 본 조사에서는 15로 큰 폭으로 저하함.
- 30~34세 연령층은 1975년 158수준으로 매우 높았으나 지속적으로 저하되었으며, 1993년 일시적인 상승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어

2005년에는 19로 나타났다.

- 2005년에는 저하의 폭이 25~29세 연령층보다 작아 인공임신중절률은 30~34세 연령층에서 더 높았음.
- 35~39세와 40~44세 연령층의 인공임신중절률도 급격히 저하하여 1975년 153과 79에서 1999년 12와 1로 큰 폭의 저하를 보였으나, 2002년에는 다소 상승하였음.
- 본 조사에서는 각각 7, 5로 저하하여 자녀의 출산종료 후 보다 효과적인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을 하거나 고령출산 또는 늦둥이 출산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됨.

제2절 인공임신중절경험 실태

□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1980~1990년대 초반에는 50% 이상 수준에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2000년 39%, 2003년 40%, 그리고 2006년에는 34%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음.
-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이 점차 낮아지다가 2003년 조사에서는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6년 조사에서는 다시 하락세임.

□ 총 임신 중 인공임신중절 종결률

- 본 조사결과 총 임신 2.46회 중 임신소모로 종결된 경우는 0.71회이었고,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경우는 0.47회이었음.
- 총임신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은 19.1%로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도 66.2%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
-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은 66.2%로 지속적 저하를 보였음.

□ 인공임신중절 경험횟수

- 인공임신중절을 2회 이상 반복경험한 부인은 1994년 조사에서는 20.9%이었으나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0년 17.1%, 2003년 15.8%, 2006년 10.1%이었음.
- 이러한 결과로 인공임신중절의 평균 경험횟수도 1994년의 0.8회에서 2000년 0.7회, 2003년 0.6회, 2006년 0.5회로 지속적인 저하를 보였음.

□ 인공임신중절 수용시 임신순위 및 부인연령

-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인공임신중절이 부인의 첫 번째 임신인 경우가 21.4%, 두 번째 임신인 경우가 36.4%, 세 번째 이상의 임신순위인 경우가 42.2%를 차지하였음.
-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 부인의 평균연령은 27.3세로 나타났음.
-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이 부인의 첫 임신인 경우가 13.6%, 두 번째 임신인 경우가 26.3%, 세 번째 이상의 임신순위인 경우가 60.1%를 차지하였음.
-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보다는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가 높았으며, 인공임신중절 당시 부인의 평균연령은 28.5세로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보다는 1.2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제3절 최근 인공임신중절수용부인의 피임실천

□ 임신중절 수용부인의 임신특성

- 전체 임신의 43.5%는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신이었고, 56.5%는 실패임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실패임신은 2000년 조사결과(52.3%)와 2003년의 조사결과(45.8%)에 비하여는 감소한 것임.

□ 실패임신의 피임유형

- 실패임신의 유형은 기타 방법으로 여러 방법을 혼용한 경우와, 일시적인 방법이 2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월경주기법이 13.5%, ‘콘돔+월경주기법’ 9.5%, 콘돔 7.0%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불임시술과 자궁내장치의 경우도 각각 1.0%, 1.5%가 실패임신을 발생시켰음.

제4절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

□ 첫 번째 임신중절의 수용이유

- 부인의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는 자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30.0%로 가장 높았음.
- 다음은 터울조절 16.4%, 경제적 곤란 13.4%, 임부의 건강과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경우가 10.0%, 혼전임신 7.9%, 태아이상 5.0% 등의 순이었음.
- 모자보건법상에 제시된 이유에 의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은 15.0%에 불과하였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불법적 인공임신중절인 것으로 추정됨.

□ 마지막 임신중절의 수용이유

- 15~44세 유배우부인이 수용한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이유는 터울조절 11.7%로 가장 높았음.
- 그 외에도 임부의 건강상 또는 자궁외 임신 10.4%, 혼전임신 5.4%, 태아이상 4.6%, 태아가 딸이어서 2.3%, 취업중이어서 2.1%, 가정문제 1.1%, 약물 및 식품복용으로 태아이상의 우려가 추측되거나 태아가 아들 또는 딸일 것으로 추측되어 등이 있었음.

제5절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 경험여부

□ 인공임신중절시의 태아 성감별

-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 태아 성감별을 실시한 부인은 2.5%로 2003년의 2.1%보다 0.4%포인트 증가하였음.
-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태아 성감별 경험률은 2.6%로 2003의 2.5%보다 0.1%포인트 증가하였음.

□ 태아 성감별시 자녀의 성

- 인공임신중절 수용당시의 아들과 딸의 규모에 의하여 태아 성감별을 한 비율은, 아들이 없는 경우에 태아 성감별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많았음.
 - 아들이 없는 경우,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에는 8.3%,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에는 9.6%가 태아 성감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에 아들이 한 명 있는 경우에 태아 성감별을 한 부인은 첫 번째와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0.1%에 불과하였음.
- 딸이 3명 이상 있는 경우에 태아 성감별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많았음.
 - 딸이 3명 이상 인 경우,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에는 16.7%,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에는 21.1%가 태아 성감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딸이 두 명 있는 경우에도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에는 13.1%,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에는 13.3%가 태아 성감별을 하였음.

제6절 인공임신중절실태의 시사점

□ 피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 인공임신중절이 현저히 감소하지 않는 것은 이를 피임의 한 방법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됨.

- 피임은 원하는 자녀규모를 원하는 시기에 갖기 위한 것이며,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여 부인의 건강을 도모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임.

□ 효과적 피임방법 사용 필요

- 원치 않는 임신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효과적인 피임보급과 피임방법에 대한 정확한 사용방법의 교육이 적극 이루어져야 함.
 -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임보급이 무료로 이루어져야 하며,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양성 평등적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제7장 모자보건실태

제1절 산전 및 산후관리 실태

□ 산전관리실태

- 산전수진율은 1985년 82.4%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1994년 이후 99%를 상회하여, 2006년에는 99.9로 나타났음.
- 평균 초진시기는 임신 후 5.32주였으며, 전체 부인의 93.9%가 임신 후 8주 이내에 초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평균 산전수진 횟수는 13.24회였으며, 임신기간 중 총 11회에서 15회 수진한 경우가 58.4%로 가장 많았음.

□ 산후관리실태

-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아 출산후 산후수진율은 1988년 52.3%에서 1997년 81.0%, 2003년 90.9%, 2006년에는 91.9%로 높아졌음.
- 읍·면부지역거주 부인이(93.2%)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산후수진율(91.6%)에 비하여 다소 높았음.
-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산후수진율이 높았으며, 30~34세 부인의 산후수진율이 93.4%로 가장 높았음.

제2절 분만실태

□ 분만장소

- 15~44세 유배우부인의 시설분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 최종출생아의 시설분만율은 1997년 99.7%, 2000년에 99.9%였으나 2003년도에는 다소 감소하여 99.3%로 이었고, 2006년도에는 99.9%로 다시 증가하였음.
- 시설분만장소는 병원이 5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원 34.3%, 종합병원 14.3%의 순이었으며, 조산소나 보건소에서 분만한 경우는 0.1%로 극히 적었음.

□ 분만형태

-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제왕절개분만율은 1997년 35.9%, 2000년의 37.7%, 2003년 39.2%로 계속 증가하다가, 2006년 35.2%로 다소 감소하였음.
 - 읍·면부에 거주하는 유배우부인의 제왕절개분만율(37.5%)이 동부에 거주하는 유배우부인(35.1%)에 비하여 약간 높았음.
- 최종출생아의 출산시 제왕절개분만을 본인이 선택한 경우는 18.4%에 불

과하였고, 가족이 권유한 경우(3.0%)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의사의 권유(78.6%)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제왕절개 분만의 주요 이유는 첫 출산이 제왕절개이기 때문이 3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태아이상 26.0%이었음.
 - 이 밖에 산모의 이상으로 인한 경우가 16.0%, 산모의 건강상·노산 때문이 11.8%, 양수조기파열 6.0%, 자연분만에 대한 두려움 5.7% 등 심리적 요인으로 제왕절개를 선택한 경우는 5.7%에 불과하였음.
- 분만장소별 제왕절개율을 살펴보면, 제왕절개율이 35.1%인 것과 비교하여 종합병원과 의원에서 분만한 경우에 제왕절개율이 각각 45.2%와 33.6%로 높았음.

□ 출생시 임신 주수 및 조산 여부

-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의 출생시 임신 주수는 정상분만으로 보는 37주 이상이 95.2%이었고, 32주 이하가 0.8%, 33~36주 이하가 4.0%이었음.
 - 따라서 전체 출생아 중 4.8%는 조기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상출생은 남아가 95.5%로 여아의 95.2%보다 약간 높았고, 조기출생은 여아가 5.2%로 남아의 4.5%보다 높았음.

□ 신생아 체중

- 2004년 1월 이후부터 2006년까지 8월까지 15~49세 유배우부인에게서 태어난 최종출생아의 출생시 평균체중은 3,253.4g이었는데, 남아의 평균체중이 3,315.0g으로 여아의 평균체중 3,182.6g에 비해 다소 높았음.
 - 출생시 체중이 1,000~1,500g 미만의 극저체중아 비율은 0.1%이었는데, 여아가 0.2%로 남아의 0.0%에 비해 높았음.
 - 1,500~2,000g 미만인 비율은 전체 출생아의 0.8%였는데, 남아가 0.8%로 여아인 경우 0.9% 비해 다소 낮았음.

- 출생시 4,000g 이상인 과체중의 비율은 5.5%이었고, 남자는 6.9%로 여아의 3.8%보다 현저히 높았음.

제 3절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태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비율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비율은 1994년 35.7%에서, 1997년 73.6%, 2000년 88.8%, 2003년 89.7%, 그리고 2006년 95.8%로 증가하였음.
- 선천성대사이상검사율은 동부지역이 96.2%로 읍·면부지역 93.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인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동 비율이 높았음.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수검 종류

- 선천성대사이상검사의 수검종류는 정부의 지원항목인 6종 검사만을 한 경우 27.5%, 정부지원 6종에 추가검사를 실시한 경우 62.5%로 나타났음.

제4절 수유양상

□ 최종출생아 수유방법

- 2004년 1월~2006년 8월까지 출생한 최종출생아의 모유수유율은 24.2%로 2003년보다 7.7%포인트 증가하였음.
- 출생후 1개월 시의 수유양상은 전체 모유수유율이 58.0%이었음.
- 출생직후 6개월 시의 수유양상은 전체 모유수유율은 14.1%로 낮게 나타났음.
 - 이의 결과는 생후 6개월 이상인 출생아의 경우에는 모유만으로는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보충식을 함께 하는 경우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

□ 모유수유 중단 및 못한 이유

- 최종출생아에게 모유수유를 중단한 이유로는 ‘모유량이 부족해서’가 49.4%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산모 또는 출생아의 건강상의 이유가 각각 9.7%와 3.9%로 나타났음.
- 취업 때문에 중단한 경우는 2003년도 조사결과보다 4.2%포인트 증가한 12.0%이었음.
- 최종출생아에게 전혀 모유를 먹이지 않은 이유로는 ‘모유량이 부족해서’가 50.8%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아기가 모유를 싫어하거나 빨지 않아서 등이 각각 24.6%와 15.4%로 나타났음.

□ 모유수유를 위한 정부 지원

- 공공장소의 모유수유실 의무적 설치가 4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임산부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철저한 교육 홍보 21.1%, 직장에서 모유수유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 12.1%, 직장 내 모유수유실 의무 설치 12.0% 등의 순이었음.

제5절 모자보건실태의 시사점

□ 산전후 관리의 중요성

- 산전관리는 임신의 진행과정에서 검사와 진찰을 통하여 이상임신 및 임신 합병증 등을 조기에 발견하며, 임산부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임신, 분만 및 산육에 관한 보건교육 등을 제공하여 분만의 안전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함.
- 산후의 건강향상과 모체 및 태아의 임신소모를 예방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할 수 있음.
- 2006년도 전국 기혼부인의 산전수진율은 99.9%로 거의 모든 여성이 산전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산후관리는 해부학적으로 생식기가 비 임신 상태로 복구되며 자궁을 비

못한 복부 모든 기관과 조직 등을 본래 상태로 원상회복시키고, 아기 역시 이 세상 첫발을 안전하게 시작하게 하는 것으로 중요함.

- 산후의료기관을 이용한 산후검진율은 91.9%로 나타나 8.1%의 부인이 산후관리를 적절히 받지 않았음.
- 우리나라의 제왕절개율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분만형태의 시사점

- 제왕절개율은 35.2%로 2003년도(39.2%)에 비하여 4.0% 포인트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부적절한 제왕절개시술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출생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왕절개의 실시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신생아체중의 시사점

- 의료적 주의와 관찰을 필요로 하는 저체중아 및 소아비만이나 소아당뇨 등 각종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과체중아의 출생은 태아와 산모의 건강상의 이유와 생활습관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 저체중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3.2%를 차지하였고, 과체중 출생아는 5.5%였음.
- 신생아의 저체중 또는 과체중을 예방하기 위한 산모의 건강관리 및 임신 중 생활습관 관리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음.

□ 선천성대사이상검사의 시사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장애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생아를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모든 출생아에 대하여 실시되어야 함.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수검률은 95.8%로 과거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음 (2000년 88.8%, 2003년 89.7% 등).
- 산모의 교육수준이 낮을 경우 전체 수검률보다 낮게 나타나, 이들 계층에 대한 적극적 교육·홍보 및 검사실시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모유수유의 실태에 따른 시사점.

- 우리나라에서도 모유수유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어, 2006년도 모유수유실천율은 24.2%로 나타났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실천율은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 신생아의 건강 및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모유수유를 희망하는 여성이 어려움 없이 모유수유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8장 자녀가치관과 혼인가치관의 변화

제1절 자녀가치관의 변화

□ 자녀가치관

-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한 부부가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파악한 결과, 1991년 90.3%, 1997년 73.7%, 2000년 58.1%, 2003년에는 54.5%, 그리고 2006년에는 53.8%로 수준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임.
-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부인이 1997년 9.4%, 2000년 41.5%, 2003년 44.9%, 그리고 2006년에는 34.1%로 증가하고 있음.

□ 이상자녀수

- 15~44세 유배우부인의 2006년 이상자녀수는 2.3명으로 2003년보다 높게 나타났음.
- 이상자녀수는 1976년의 2.8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5~88년에는 2.0명이었고, 다시 조금씩 증가하여 1997년에는 2.3명이었으며, 2000년과 2003년 2.2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06년에는 2.3명으로 증가하였음.

제2절 남아선호가치관의 변화

□ 아들 필요성

- 유배우부인 중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부인은 1991년 40.5%, 1994년 26.3%, 1997년 24.8%, 2000년 16.2%, 2003년 14.1%, 그리고 금번 조사에서는 10.2%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음
- 대략적으로 아들이 많을수록 아들 선호도가 높고, 아들이 적을수록 아들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아들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강도는 현저히 낮아졌으며, 향후에도 이 경향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아들의 필요이유

- 15~44세 유배우부인들의 아들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는 심리적 만족이 67.1%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2003년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72.9%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아들선호 이유는 ‘가정행복’으로 51.2%이었는데, 이 또한 2003년의 조사결과인 56.6%보다 낮은 결과임.
- 따라서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정신적 만족을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상자녀수의 성 선호

- 이상자녀수를 성 구별 없이 원한다는 부인은 74.4%로 나타나 2003년의 64.3%보다 10.1%포인트 증가하였음.
 - 성 구별하여 이상자녀수를 원한다는 경우는 25.6%로 2003년의 35.6%보다 10.0%포인트 감소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부인의 25.6%가 남아선호에 기초한 이상 자녀수를 제시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응답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심각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3절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

□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 15~59세 자녀가 있는 기혼가구 중 부모들의 자녀양육태도를 살펴본 결과 78.7%가 ‘자녀들을 적극 지원하며, 부모의 규칙을 설명하여 이해하고 따르도록 함’이라고 응답하였음.
 - 이어서 ‘뚜렷한 자녀양육방법이 없으며, 지나친 자율성 부여’가 11.6%, ‘규칙을 만들어 자녀들을 통제, 자율성 거의 없음’ 8.5%, ‘그냥 내버려 두며, 자녀들에게 요구도 반응도 보이지 않음’ 이 1.1% 등의 순이었음.
- 적절한 자녀양육태도가 가장 높긴 하지만 부적절한 자녀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12.7%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됨.

□ 자녀양육 책임

- 15~59세 기혼가구 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부모들의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대학 졸업 때까지가 4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혼인할 때까지 27.0%, 취업할 때까지 11.9% 등의 순이었음.

- 대부분의 한국가족은 자녀양육의 책임을 대학 졸업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제4절 혼인가치관의 변화

□ 혼인가치관

- 15세 이상 기혼여성들의 결혼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를 살펴보면, ‘반드시 해야 한다’ 27.9%, ‘하는 편이 좋다’ 29.8%로 57.7%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음.
- 이 외에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38.2%, 그리고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부정적인 태도는 4.0%이었음.

□ 이혼가치관

- 부인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는 ‘가급적 또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비율이 2000년에는 52.8%이었으나 2003년에는 50.4%로 감소하였고 2006년에는 50.8%로 약간 증가하였음.
-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는 이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은 2000년 30.2%, 2003년 30.3%, 그리고 2006년 34.8%로 증가하였음.
-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와 ‘이유가 있으면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03년에는 18.6%로 3.1%포인트 증가하였으며, 2006년 13.8%로 2003년에 비해 4.8%포인트 감소하였음.
- 전체적으로 이혼을 수용하는 부인의 비율은 2000년 45.7%에서 2003년 48.9%로, 그리고 2006년 48.6%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음.

□ 재혼가치관

- 재혼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전체 부인의 18.3%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는 적극적 또는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52.1%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

- 그 외 26.2%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음.

□ 남녀별 적정 결혼연령

- 15세 이상 기혼가구의 여자응답자의 남자의 적정 결혼연령은 30~34세가 55.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25~29세로 41.8%이었음.
 - '결혼적령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응답도 미미하나마 나타났 다(0.1%). 여자응답자가 생각하는 남자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은 30.09세 이었음.
- 여자의 적정 결혼연령은 25~29세가 77.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30~34세가 16.1%로 남자의 적정 결혼연령 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결혼적령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남자 적정 결혼연령 과 마찬가지로 0.1%이었고, 여자응답자가 생각하는 여자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은 27.69세 이었음
- 15세 이상 기혼가구의 남자응답자가 인식하고 있는 남자의 적정 결혼연령 은 25~29세가 58.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그 다음은 30~34세로 38.8%이었음.
 - 남자응답자가 생각하는 남자의 평균 적정결혼연령은 29.78세 이었음.
- 여자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하여는 25~29세가 74.6%로 가장 높은 비율이 었고, 그 다음은 24세 이하 16.8%, 30~34세 8.2% 등의 순이었음.
 - 여자의 평균 결혼적령은 27.28세이었음.

□ 본인 결혼연령의 적절성 여부 및 그 이유

- 여성응답자는 본인의 결혼연령 적절성에 대하여, '적절했다'는 응답은

44.2%이었으며, ‘빨랐다’고 응답한 경우는 36.2%, 그리고 ‘늦었다’ 19.5% 등이었음.

- 남자응답자는 본인 결혼연령의 적절성에 대하여, 39.8%가 본인 결혼연령이 ‘적절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은 ‘늦었다’ 36.3%, ‘빨랐다’ 23.5% 순이었음.

□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하는 이유

- 여자응답자의 경우 결혼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제1순위는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가 29.9%로 가장 높았음.
 - 다음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갖기 어려워서’ 18.6%, ‘결혼에 따른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14.8%,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12.7% 등의 순이었음.
- 남자응답자의 경우 결혼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제1순위로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갖기 어려워서’(30.9%)가 가장 높았음.
 -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23.1%),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14.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여자응답자와 차이를 보였음.

□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에 대해 찬성하는 경우가 72.8%이었으며, 별로 또는 전혀 찬성하지 않는 경우는 27.2%이었음.
 - 전체적으로 찬성한다가 높게 나타나 결혼을 하는 경우 개인보다는 가족간의 관계를 보다 우선시 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음.
-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경우가 42.1%이었고, 찬성하지 않는다는 57.9%로 자녀가 있을 경우 이혼에 찬성하지 않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54.6%가 찬성하였고, 45.4%가 찬성하지 않았음.
- ‘아버지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해서는 24.5%만이 찬성하였고, 나머지 75.6%는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83.5%가 찬성하지 않음으로써 자녀는 결혼을 통해서만 가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보여주었음.
-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해서는 59.9%가 찬성하고 있어 자녀입양에 관한 태도는 어느 정도 허용적임을 알 수 있음.
-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에 대해서는 62.3%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혼전동거에 대해서는 비허용적임을 알 수 있음.
-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해서는 32.8%가 찬성하는데 비해 67.2%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을 통해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전통적 성의식이 강하게 있음을 알 수 있음.

제5절 자녀가치관과 혼인가치관 변화의 시사점

□ 혼인가치관의 시사점

-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점차 약화되고, 결혼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반드시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점차 많아지고 있음.
 - 불행한 결혼을 지속하기 보다는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혼의 필요성은 강조되어 가족의 불안정은 증대되며, 한편으로는 이혼의 증가에 따라 재혼의 필요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음.
- 결혼, 이혼 및 재혼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는 가족의 안정성 측면에서 뿐

만 아니라 결혼이나 출산 등 가족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바람직한 결혼관 형성을 위한 학교와 사회교육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가치관확립을 위한 사회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자녀양육가치관의 시사점

-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높은 책임성은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지만 자녀양육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의 발단이 되었음.
- 이는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 교육정책의 오류 등에 기인된 것임.

제9장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

제1절 결혼양상

□ 결혼상태

- 15세 이상 기혼부인 9,710명의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유배우 부인이 91.3%, 사별 3.6%, 이혼·별거 5.0%이었음.
- 결혼경력별로는 대부분의 부인이 초혼(96.9%)으로서 재혼부인의 비율은 극히 낮은 수준(3.1%)이었음.
- 2003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경우 초혼은 0.9%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재혼 비율은 0.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남녀 특성별 초혼연령

- 남편과 부인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편 27.36세, 부인 24.02세로 남녀간에 3.34세의 차이를 보였음.
-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자가 읍·면부지역 거주자 보다 남녀 모두 초

혼연령이 높았으나, 남녀간의 초혼연령 차이는 읍·면부지역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동부 3.28세, 읍·면부 3.70세).

- 연령별 초혼연령은 남편은 39세 이하까지 높아지다가 40세 이후부터 점차 낮아지고, 부인은 34세 이하까지는 증가추세이나 35세 이상부터 차츰 감소하여 연령이 많을수록 초혼연령은 낮아졌음.
- 교육수준별로는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혼연령은 높아졌으며, 남녀간의 차이는 고학력일수록 감소하였음.

□ 남녀 특성별 결합형태

- 부인과 남편의 초혼연령별 결합형태를 보면, 아직도 남자가 연상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나 점차 남녀 동갑이거나 여자가 연상인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19세 이하 여성의 경우 20~24세 이하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이 43.6%, 20~24세에 결혼한 여성은 25~29세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이 64.6%로 가장 높았음.
 - 25~29세에 결혼한 여성은 같은 연령층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이 64.5%이었으며, 30~34세에 결혼한 여성은 같은 연령층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이 59.1%, 그리고 35세 이상에 결혼한 여성은 같은 35세 이상 연령층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이 80.8%에 달했음.
 - 학력이 높아질수록 동일한 학력간의 결합률이 높게 나타나 고등학교 학력의 부인이 동일한 학력의 남성과 결합한 비율은 64.2%이었으며, 대학 이상 부인의 동일학력 남성과의 결합률은 더욱 높아 89.2%에 이룸.

□ 혼인지속기간

- 본 조사에서 부인의 평균 초혼기간은 17.46년으로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이 17.05년인데 비해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들은 19.67년으로 읍·면부지역 거주 부인의 결혼지속기간이 2.62년 더 길게 나타났다.

- 이러한 경향은 부인의 연령 및 학력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 연령이 높을수록, 저학력일수록, 그리고 초혼연도가 빠를수록 결혼지속기간은 길었으며, 또한 동부지역 거주부인들보다는 읍·면부지역의 거주부인들이 더욱 길었음.

제2절 해혼실태

□ 해혼부인의 일반특성

- 본 조사결과에서도 사별한 부인이 전체 응답대상 부인 중 3.6%, 이혼·별거 부인은 5.0%로 전체의 8.6%가 해혼부인 이었음.
 - 연령별 분포는 30대까지는 17.3%에 불과하나 40대 이후는 82.7%(40대 38.5%, 50대 44.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해혼비율은 높아졌음.
 - 지역별로는 40대 이하는 동부지역이, 50대 이상은 읍·면부지역의 비율이 더 높았음.
 -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학력층에서 해혼비율이 가장 높았으며(40.8%), 특히 동부지역이 높은 비율(43.3%)이었고, 읍·면부지역은 초등학교 이하의 부인들의 해혼비율이 가장 높았음(41.3%).
- 해혼부인 중 취업부인은 69.0%로서 읍·면부지역 해혼부인들의 취업률이 75.0%로 동부지역 해혼부인들의 취업률(67.7%) 보다 높았음.

□ 해혼시기

- 사별부인은 사별당시 40대였던 경우가 35.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30대로서 34.5%, 그리고 50대가 19.7%이었음.
 - 그러나 이혼·별거 부인의 경우는 30대가 49.6%, 40대가 29.4%로 30~40대에서 이혼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이들의 해혼당시 평균연령은 사별부인은 40.97세, 이혼·별거 부인은 36.78세이었음.

- 남편의 경우도 사별은 40~50대(65.5%)에서, 그리고 이혼·별거는 30~40대(81.6%)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음.
- 해혼당시 남편의 평균연령은 사별은 45.78세, 이혼·별거는 40.21세이었음.

□ 해혼이유

- 이혼·별거한 부인만을 대상으로 한 해혼이유는 성격차이 25.4%, 경제문제 24.6%, 배우자의 외도 21.2%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 지역별로는 학대·폭력과 기타에 의한 해혼은 읍·면부지역에서의 비율이 높았고, 그 외 이유는 모두 동부지역에서 비율이 높았음.
- 이혼·별거 당시 부인의 연령별 해혼이유를 보면,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별거가 가장 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은 경제문제, 배우자의 외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40대는 경제문제가 해혼의 주요 이유가 되고 있어 다른 연령층과의 차이를 보였음.
- 부인의 교육수준별 이혼·별거의 이유를 보면, 초등학교 이하 학력수준의 부인은 성격차이(21.2%), 중학교 학력수준의 부인은 경제문제(28.2%), 고등학교 학력수준의 부인들은 성격차이(26.7%), 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의 부인들은 성격차이(34.7%)가 가장 높았음.
- 부부의 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인 부인은 성격차이에 의한 해혼비율 26.9%, 10년~20년 미만인 부인은 외도 29.5%, 20년 이상인 부인은 경제문제 30.0%로 가장 높았음.
- 해혼당시 18세 미만의 자녀유무에 따른 이혼·별거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가 없는 부인은 성격차이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자녀가 있는 부인은 경제문제가 가장 높았음.

□ 해혼부인의 평균 결혼지속기간

- 이들 해혼부인들의 평균 결혼지속기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15.59년으로 이 중 사별부인은 18.75년, 이혼·별거부인은 13.28년으로 사별부인의 결혼지속기간이 긴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이혼·별거부인보다는 사별부인이 고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하겠음.

□ 이혼·별거 제의자

- 이혼·별거 제의자는 남편 24.4%, 부인 72.0%, 그 외 시부모나 친정부모 등에 의한 비율이 3.6%로 남편보다는 부인의 이혼·별거 제의율이 높았음.
- 해혼당시 연령별로는 전체적으로 부인의 제의율이 높았으며, 40대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50세 이상부터 약간 낮아지는 추세이었음.
-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학력 소지자가 가장 높았음.
-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수별 부인에 의한 이혼·별거 제의율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부인에 의한 이혼·별거 제의율이 높았으나, 18세 미만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인의 이혼·별거 제의율은 낮아졌음.

□ 이혼·별거부인의 자녀양육

-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수를 살펴보면, 29세 이하에 이혼·별거한 부인들의 경우 6.8%가 아직 자녀를 두지 않은 상태이었으며, 나머지 93.2%는 자녀를 둔 상태이었음(1명 43.2%, 2명 이상 50.0%).
- 30대에 이혼·별거한 부인은 자녀를 두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아 91.6%이었으며, 40대에 이혼한 부인은 64.8%, 50세 이상은 15.4%이었음.

□ 자녀와의 동거자 및 양육비 제공자

-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의 동거자는 74.3%가 자녀의 모, 그리고

20.4%는 자녀의 부로서 대부분이 부모 중 한 쪽과 동거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5.3%만이 조부모 등 기타 친척 등과 동거하고 있었음.

-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 제공자를 보면, 자녀의 모 71.2%, 부 33.1%, 국가 19.4%, 조부모 9.3%, 기타 친척 2.0%, 기타 2.4% 등의 순이었음.

제3절 가족주기

□ 가족주기 분석대상의 특성

- 전체 조사대상 부인 중 93.8%가 자녀출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초혼년도별로 보면, 1970년대까지 결혼한 부인들은 98.8%가 출산경험이 있는 부인들이었으며, 1980년대 결혼한 부인들은 98.7%, 1990년대는 97.5%, 그리고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 중에서는 68.4%가 출산경험이 있었음.
- 이들의 초혼년도별 평균연령은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53.43세로 고령층에 속하였으며, 1980~'8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44.86세, 1990~'9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36.48세, 그리고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30.30세이었음.
 - 평균 출생아 수는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들은 2.60명, 1980~198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2.07명, 1990~199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1.97명, 그리고 2000년 이후에 결혼한 부인들은 1.39명이었음.
- 평균 현존자녀수는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들은 평균 2.53명, 1980~198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2.05명, 1990~199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1.96명, 그리고 2000년대에 결혼한 부인들은 1.38명이었음.
 -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출산완료율이 낮았으며 추가희망자녀수는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많았음.
- 결혼한 자녀를 둔 부인은 연령이 높고 결혼년도가 빠를수록 비율이 높아 1979년 까지 결혼한 부인은 66.9%, 1980~1989년에 결혼한 부인은 1.0%에

불과하였음.

- 평균 결혼자녀수 역시 결혼연도가 빠른 부인일수록 많아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들은 1.65명, 1980~1989년 결혼한 부인은 1.08명, 그리고 199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아직 자녀의 연령이 어려 결혼한 자녀가 없었음.

□ 가족주기의 변화

- 가족주기의 첫 단계인 형성기의 시작시점인 초혼연령은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21.66세, 1980~1989년 결혼한 부인은 23.60세에, 1990~1999년 결혼한 부인은 24.95세, 그리고 2000년 이후에 결혼한 부인은 26.34세에 이었음.
- 확대기의 시작시점인 첫째 아 출산시 부인연령은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은 22.98세이었고,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은 27.65세이었음.
- 확대기의 종료시점이면서 확대완료기의 시작시점인 막내 아 출산시 부인연령은 1979년 까지 결혼한 부인은 27.23세, 1980~1989년 결혼한 부인은 28.29세로 높아졌음.
 - 1990~1999년에 결혼한 부인은 29.25세, 2000년대 결혼한 부인은 29.88세에 출산을 완료할 것으로 추정됨.
- 확대완료기의 종료시점이며 축소기의 시작시점인 자녀결혼 시작시 부인연령은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상승하는 추세로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의 경우 50.88세이었음.
 -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55.55세로 추정됨.
- 축소기의 종료시점이며, 축소완료기의 시작시점인 자녀결혼 완료시 부인연령은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은 55.13세,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은 57.78세로 추정됨.
- 해체기의 시작시점인 남편사망시 부인연령은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69.66세,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76.84세로 추정되었음.

- 해체기의 종료시점인 부인사망시 연령은 같은 기간에 결혼한 부인들 간에 각각 72.78세에서 80.94세로 추정되었음.

제4절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의 시사점

□ 결혼행태 변화의 시사점

- 최근 교육기회의 증대로 인한 교육수준의 향상, 취업률의 상승, 자아성취 욕구 증대와 함께 결혼의 필요성 약화 등으로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있음.
 - 남녀의 결혼연령별 결합 형태도 점차 남녀가 동갑이거나 여자가 연상인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임.
- 가부장제적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가족가치의 변화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족해체가 발생하고 있음.
- 이혼가족의 문제는 개인 및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주요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이혼가족을 위한 사회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들 이혼가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정책이 요구됨.

□ 가족주기 변화의 시사점

- 최근의 초혼연령의 상승,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자녀규모의 축소, 그리고 사망률 개선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각 단계별 기간의 변화양상이 뚜렷함.
 - 이러한 가족주기 단계별 기간의 변화양상은 가족주기단계 구분에 있어 주요 출발점과 종료시점이 되고 있는 자녀수의 감소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볼 때 결혼부터 남편 사망시까지 부부의 결혼기간은 길어지고 있음.

- 가족주기의 후기단계인 축소완료기 및 해체기가 연장됨으로써 노인부부 가구 및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성별 평균수명의 차이로 인해 남성보다 여성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제10장 기혼부인의 취업실태

제1절 결혼 전·후 취업실태

□ 기혼여성의 결혼 전·후 취업실태

- 결혼 전에 비취업 중이었던 부인 중 현재 취업중인 부인은 전체의 47.3%, 결혼 전 취업경험이 있는 부인 중 현재 취업중인 부인은 전체의 54.9%이었음.
- 결혼 전 취업경험이 없는 부인과 있는 부인과의 현재취업에는 7.6%포인트의 차이를 보였음.

□ 기혼여성의 특성별 취업률

- 전체 부인의 결혼전 취업률은 74.8%, 현 취업률은 53.0%로 그 차이는 21.8%포인트나 되었음.
-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에서 보다 동부지역에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동부지역 24.0%포인트, 읍·면부지역 9.8%포인트).
- 연령별로는 혼전취업률은 24세 이하를 제외할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이었고, 현 취업률은 30대 초반에 다소 낮아지다가 35세 이후 다시 상승하였고, 45세 이후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음.
- 교육수준별 혼전 취업률은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현 취업률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 결혼 전과 후의 취업률간의 차이를 보였음.

- 결혼상태별 결혼전 취업률에 있어서는 유배우부인의 취업률(75.7%)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사별부인이었으며(69.0%), 이혼·별거부인의 혼전 취업률(60.4%)이 가장 낮았음.
- 현 취업률은 유배우부인(51.5%)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이혼·별거부인(72.8%), 사별부인(73.0%)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제2절 현 취업실태

□ 현 취업부인의 취업직종

- 현재 취업중인 15~49세 부인들의 직업 분포율은 서비스·판매직이 39.0%로 가장 높았고, 전문가·기술공·준전문가 19.8%, 단순노무직 14.4%, 사무직 14.1% 등의 순이었음.
- 2003년 조사결과에 비해 전문직이나 사무직의 비율이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서비스·판매직 종사율이나 단순노무직 종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혼여성의 취업이 여전히 임금수준이나 고용지위 등이 낮은 직종에 편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주당 평균 근무시간 및 월평균 소득

- 현 취업부인과 남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부인은 48.4시간, 남편은 54.8시간으로 남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부인보다 6.4시간 더 많았음.
- 부인, 남편 모두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초과하고 있음.
- 부인과 남편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비교해 보면, 부인은 118.2만원, 남편은 248.6만원으로 남편의 근로소득을 100으로 봤을 경우 부인의 근로소득은 47.5%에 불과함.

□ 현재의 일과 가정생활 병행상의 어려움

- 일과 가정생활 병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가사부담이 2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녀양육 부담 22.9%,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15.5% 등의 순이었음.
-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 있는 취업부인들의 자녀양육 및 가사부담을 완화 시켜줄 수 있는 지원방안이 요구됨.

□ 현 취업 계속여부

- 현 취업부인들의 경우, ‘현재의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경제적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정년 등으로 일할 수 없을 때 까지 등의 순이었음.

□ 기혼여성의 취업 및 비취업 이유

- 본 조사결과 15~49세 취업부인의 취업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주요 이유인 경우가 40.8%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25~29세 연령층 부인이,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생활비 보탬을 위해 취업 중인 경우가 많았음.
- 다음으로 제시된 이유로는 생계유지 26.5%, 사회활동·자기발전 15.7%, 자녀교육비 충당 12.3%, 노후대책 마련 4.4% 등의 순이었음.

□ 비취업 이유

- 15~49세 이하 비취업 기혼부인들의 비취업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양육(57.3%)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음.
- 자녀양육으로 인한 비취업은 부인연령이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인 경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 연령대의 경우 자녀가 어린 경우가 많고, 따라서 자녀양육의 책임이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맡겨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제3절 생애단계별 취업상태

□ 생애단계별 취업여부

- 결혼 직전에 74.8%이었던 취업률이 결혼 직후 37.3%로 37.5%포인트 감소하였고, 첫째 아 출산전에 29.7%이었던 취업률은 첫째 아 출산 후 21.3%로 8.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막내 아 출산 전에 25.0%이었던 취업률이 막내 아 출산 후 21.8%로 감소하였음.
- 막내 아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44.6%로 증가하였고, 막내 아 초등학교 입학 후는 47.0%로 더욱 높아짐.
 - 이는 결혼과 자녀출산이 부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생애단계별 취업부인의 직장 변화

- 결혼직전과 직후 모두 취업한 부인의 경우 동일직장이 76.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직장을 다니다가 자영업을 하게 된 경우 8.6%,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 7.8%, 자영업에서 자영업으로 옮긴 경우 7.0%이었음.
- 첫째 자녀 출산 전후 동일직장에 근무한 경우는 64.1%이었으며, 막내자녀 출산 전후에는 57.8%, 그리고 막내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는 57.0%이었음.

□ 생애단계별 취업중단 이유

- 결혼직전 취업 중이었다가 결혼직후 중단한 이유는 결혼때문이 81.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첫째 아 출산 전 취업 중이었다가 출산 후 중단한 경우는 자녀양육 때문이 72.2%로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한 취업중단이 주를 이루었음.
- 막내 아 출산 전 취업 중이었다가 출산 후 중단한 경우 역시 자녀양육 때문이 76.7%로 첫째 아 출산 후 중단한 경우보다 더 많은 부인들이 취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음.

제4절 기혼부인 취업실태의 시사점

□ 취업부인의 직장생활과 가족생활

- 대부분의 취업여성들이 결혼과 자녀출산 및 집중적인 양육기에 취업률이 낮았음.
 - 비취업 부인들의 비취업 이유로 자녀양육이 가장 높았으며, 자녀출산 및 집중 양육기에 있는 34세 이하 부인들에게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녀양육이 기혼부인들의 취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기혼여성의 각 생애단계별 취업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결혼 전 보다 결혼 후에, 첫째 아 출산 전 보다 출산 후에, 막내 아 출산 전 보다 출산 후에 취업률이 저하되고 있으며, 막내 아가 초등학교 입학 후에야 입학 전보다 취업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 등이 기혼여성의 취업률에 상당한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 정책

- 일과 가정의 양립주체는 남녀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남녀가 함께 하는 출산문화를 조성하도록 함.
 -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육아휴직 요건 완화, 육아휴직 급여 등의 인상, 육아휴직 중 대체인력 채용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금 인상,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근로형태 유연화,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의 적극적인 시행 및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해야 할 것임.

- 기업이 출산 및 가족친화적 경영을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가족친화적 기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아울러 기업이 가족친화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출산 및 가족친화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도록 함.

제11장 가족생활 및 자녀양육 실태

제1절 가족생활 실태

□ 가사분담 형태

- 부부의 가사분담 형태를 살펴보면,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고,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가 32.2%로 가장 높았음.
 -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인의 취업여부를 떠나서 양육과 가사는 주로 부인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여성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것이며,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출산율의 저하와도 직결될 것임.
- 양성 평등적 측면에서 가사분담을 하는 경우라 할 수 있는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는 7.4%에 불과하였음.
 - 이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부부권력 관계

- 일상생활비 지출을 살펴보면, 대체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40.2%,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가구 29.0%,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 25.1%로 나타났다.
- 자녀양육 및 교육은 부부공동 결정이 57.7%로 가장 높았으나,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는 3.1%에 불과하였으며,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39.3%나 되었음.
 - 일상생활비 지출은 주로 부인이, 자녀양육 및 교육도 부부공동 또는 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매매 및 이사는 부부공동 결정이 74.7%로 가장 높았고,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는 14.2%,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11.2%이었음.
- 투자 및 재산증식도 부부공동 결정이 67.8%로 가장 높았고,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결정이 16.1%,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결정이 16.1%가 있었음.

제2절 자녀양육 실태

□ 가구의 자녀양육비의 구조 및 규모

- 가족공통비용 중 자녀 몫은 전체적으로는 61만 8천원으로 2003년의 55.6천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구소득과 자녀양육비용은 정비례 관계를 보여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일 수록 자녀양육 비용도 점차 증가하였음.
- 자녀의 개인비용은 96만 7천원으로 2003년의 80만 2천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지출항목별로는 자녀 사교육비(35만 2천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식료품비(26만 8천원), 자녀 공교육비(22만 7천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자녀의 교육비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할 경우 57만 9천원으로 전체 자녀개인비용의 59.9%나 차지하였음.

□ 가구의 자녀양육비 규모

- 전체 가구의 월평균 자녀양육비는 158만 5천원으로 2003년의 135만 8천원보다 증가하였음.
 - 가구원 공통비용 중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지출비의 자녀관련 비용은 61만 8천원으로 2003년의 55만 6천보다 증가하였고, 자녀만의 비용은 96만 7천원으로 80만 2천원 보다 증가하였음.
-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41만 4천원, 소비지출액은 282만 2천원으로 2003년의 290만 2천원, 236만 5천에 비하여 증가하였음.
 - 소득대비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6.4%로 2003년의 46.8%보다 감소하였고, 가구소비규모 중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6.0%로 2003년의 57.4%보다 감소하였음.

□ 개별아동의 자녀양육비 구조 및 규모

- 가족공동 지출비목 중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는 35만 6천원으로 2003년의 29만 4천원에 비해 6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 타 소비지출이 15만 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교통통신비 10만 6천원, 주거 및 광열수도비 5만 6천원, 교양오락비 2만 6천원,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1만 1천원 등이었음.
 - 특히, 주목해야 할 지출항목으로는 교양오락비가 2003년에 비하여 많이 증가하였다는 점이지만 절대금액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가구 및 자녀특성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양육비를 살펴보면, 가족공동 경비 중 개인자녀의 몫은 35만 6천원으로 2003년 29만 4천원보다 많았음.
 - 자녀개인비용은 55만 6천원으로 2003년의 45만 4천원에 비하여 10만 2

천원이 증가되었음.

- 결과적으로 자녀 1인당 총 양육비는 91만 2천원으로 2003년의 74만 8천원에 비하여 16만 4천원이 증가한 수준이었음.
- 이는 불과 3년만에 18.0%의 자녀양육비 증가를 나타내는 것임.

제4절 가족생활 및 자녀양육 실태의 시사점

□ 가족생활 실태의 시사점

- 가족생활에서 가사분담 형태는 여전히 가부장제적 가치관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음.
 - 부부권력관계 측면에서는 주택매매 및 이사와 투자 및 재산증식은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어 발전적인 양상이라 하겠음.
- 일상생활비 지출과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는 기혼여성이 주로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이는 가사와 자녀양육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음.
 - 따라서 민주평등,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남성의 노력이 있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임.

□ 자녀양육 실태의 시사점

- 자녀양육에 지출되는 과도한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본 연구에서는 뚜렷이 보여 주었음.
 - 가구소득에서 많은 몫을 차지하고 있는 자녀양육비, 특히 사교육비 및 공교육비는 저출산 사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됨.
-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 중·고등학생을 위한 자녀양육비 지원, 자녀양육비 세제혜택 등이 사회제도적으로 강력히 추진되지 않는다면 출산율의 뚜렷

한 반전(反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제12장 출산 및 가족정책 욕구

제1절 결혼과 가족정책

□ 혼인장려를 위한 국가정책

- 혼인장려정책으로 ‘청년실업 해소’를 제시한 응답자가 전체의 3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18.6%, ‘서민층 주택 용자’ 15.5% 등의 순이었음.
- 이 외에도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 8.8%, ‘건전혼례 문화 조성’ 5.8%,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 5.7%, ‘결혼비용, 주택자금 등의 소득공제’ 4.0%, ‘결혼자금 용자 확대’ 3.8% 등이 있었음.
- 혼인장려를 위해 국가정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은 청년실업 해소,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서민층 주택 용자,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 등이라 하겠음.
- 우선순위로 제시된 정책은 아니지만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결혼비용 및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결혼자금 용자 확대 등도 병행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음.

제2절 출산정책과 자녀출산

□ 출산정책과 추가자녀 출산

- 향후 자녀출산계획이 없었던 부인 중 7.6%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자녀를 (더) 낳을 것이라고 하였음.
- 이 중의 대부분(92.9%)이 1명을 (더) 낳겠다고 하였고, 일부(7.1%)만이 2

명을 낳겠다고 하였음.

- 자녀가 없으면서도 자녀출산의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부인 중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비율이 20.6%로 매우 높았음.
 - 이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부부의 출산결정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음.

□ 필요한 출산지원정책의 유형

- ‘아이를 낳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대하여 ‘자녀양육비 지원’이 85.4%로 절대적으로 높은 정책육구로 나타났음.
 - 다음은 ‘보육시설 확충’ 7.4%,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확충’ 4.5%, 그리고 ‘출산지원금 지급’ 2.1% 등의 순이었음.

제3절 가족정책 육구

□ 자녀의 출산·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

- 자녀출산,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으로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시설 확충’이 22.8%이었고, 다음은 ‘영유아 보육비 지원’ 12.0%, ‘아동 양육수당 지급’ 9.1% 등이었음.
 -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을 요구하고 있음을 볼 때 현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보육·육아지원시설에 문제점이 있음을 짐작케 하며, 아직도 우리사회의 보육·육아지원 시설의 서비스가 낫다는 것을 의미함.
- 반면, 자녀 출산,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의 2순위에 대하여는 영유아 보육비 지원이 1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질 높은 보육·양육지원 시설 확충(12.5%), 아동 양육수당 지급(10.7%), 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9.8%) 등의 순이었음.

□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적 여건

- 자녀를 낳아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여건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25.2%가 ‘사교육비 경감’을 제시하였으며, 다음은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18.4%, ‘공교육 강화’ 11.4%, ‘경기활성화(고용안정)’ 10.3%, ‘질 높은 교육’ 10.0% 등의 순이었음.
- 두 번째의 자녀양육의 바람직한 사회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들었음.
 -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원인이 사교육비 등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에 의한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음을 짐작케 함.
 - 다양한 가족정책 및 가족단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욕구에 부합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사회, 그리고 가족 모두가 협력해야 할 것임.
- 자녀를 낳아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여건의 2순위로는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이 1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사교육비 경감’ 15.8%,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15.2%, ‘복지수준 향상’ 13.0%, ‘경쟁적 사회지양’ 11.5% 등의 순이었음.

□ 입양정책

- 15~44세 유배우가구를 대상으로 ‘입양 고려여부’를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입양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경우가 전체 응답부인의 85.7%이었고, 고려한 적이 있으나 포기하였다는 경우는 10.3%, 적극 고려하고 있음이 4.0%, 그리고 입양한 경우는 0.1%로 나타났음.

제4절 출산 및 가족정책 육구의 시사점

□ 건강한 가족을 위한 국가의 역할

-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에 직면해 있는 한국가족에게 적절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출산지원정책

-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실업 해소, 자녀양육비 지원,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조성,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서민층 주택 용자,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 등 다양하게 나타났음.
 - 따라서 현재의 저출산 대책을 포함한 사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임.

제13장 종합논의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종합논의

□ 임신과 출산

- 수년간 정체를 보이던 부인의 임신경험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전체 임신 중 정상출생 비율은 증가하였고, 임신소모로 종결되는 임신은 점차 감소하여 바람직한 양상을 보였음.
 - 높은 피임실천율과 장기간에 추진된 모자보건사업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 자연유산, 사산 등의 임신소모가 뚜렷이 존재하고 있음은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임.

- 198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던 합계출산율이 IMF 관리체제 하에서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게 되면서 낮아졌고,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수준을 보임으로써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최근 출산력의 저하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고용기회의 확대, 초혼연령의 상승, 소자녀관의 형성에 따른 피임실천율의 증가, 인공임신중절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음.
- 남아를 출산하기 위한 노력이 일정수준에서 지속되고 있음으로 보아 한국 사회에서 가부장제적이고, 전통적이라 비판하는 남아선호의식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이는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함.

□ 피임과 불임

- 2006년의 피임실천율은 79.6%로 2000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고, 2003년 보다는 다소 낮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 등의 임신소모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은 효과적인 피임방법의 사용에 의한 피임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임.
- 유배우부인 중 임신이 안 되어 노력하고 있는 경우는 7.9%, 이 중에서 불임진찰을 받은 경우는 54.2%로 높았음.
 - 특별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거나 아이를 갖기 위한 비용부담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으므로 원인규명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함.

□ 인공임신중절

- 최근 우리나라 부인의 인공임신중절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었으며,

2003년 조사에서는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06년 조사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여 바람직한 양상을 보여 주었음.

- 그렇지만 가장 비중이 높은 임신소모로서의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불원임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과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한국사회에서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주요 이유는 자녀불원과 태울조절이었음.
- 태아의 성감별후 여아인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시키는 행위를 직접 경험한 경우가 첫 인공임신중절의 2.5%,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2.6%로 나타났음.
- 이는 가부장제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가치관의 발로(발로)라 판단되며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불법행위이므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임.

□ 모자보건

- 최근 3년간의 출생아를 분석한 2006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설분만율은 100%이었으며, 이 중에서 0.1%만이 조산소에서 분만하였고 나머지 99.9%는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분만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
- 그렇지만 제왕절개율이 35.0%로 2003년보다 다소 낮았지만 여전히 OECD의 권고수준인 5~15%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 문제점으로 지적됨.
- 저체중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3.2%를 차지하였고, 과체중 출생아는 5.5%이었음.
- 따라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임.
- 모유가 아기의 건강이나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 최근 모유수유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바람직한 양상을 보였음.

- 그렇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고, 1980년대의 약 50% 수준보다는 현저히 낮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가치관

- 자녀가치관은 약화되고 있었으며, 소자녀관의 정착뿐만 아니라 자녀의 불필요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었음.
 - 또한 남아선호 가치관도 약화되어 양성평등사회로 점차 이행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음.
- 적절한 자녀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74.8%)가 많으나 부적절한 자녀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25.2%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됨.
 - 또한 대부분의 한국가족은 자녀양육의 책임을 대학 졸업 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녀양육부담은 소자녀관 정착에 일조를 한 것으로 판단됨.
-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기혼여성들은 57.7%이었으며, 소극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42.2%로 나타났음.
 - 따라서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혼 및 가족주기

- 이혼·별거당시 평균 1.34명의 18세 미만 자녀를 두었는데, 이혼·별거 가정의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대책이 적극 강구되어 건전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부인의 결혼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족주기의 전체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음.

제2절 정책적 제언

□ 임신과 출산

- 자연유산이 더욱 감소될 수 있도록 임신전 관리, 산전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발전적으로 자연유산의 발생원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임.
- 임신소모의 다른 형태인 사산의 절대횡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건의료적 측면의 관심이 요구됨.
 - 사산의 이유를 규명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임.
- 부인의 임신소모율을 획기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함.
 - 인공임신중절물은 생명존중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회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됨.
- 미혼청소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홍보계몽을 강화하고 철저한 임산부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불원임신의 예방을 위한 효과가 높은 피임방법의 사용을 홍보함.
 - 임신 전·후에 필요한 올바른 정보가 많이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실천하는 개인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만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피임과 불임

- 보다 효과적, 효율적, 양성평등적 측면의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함.
 - 피임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임목적에 적합한 피임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계몽과 상담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불임대책은 불임부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복지적 관점과 불임을 질병으

로 간주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보건의료적 측면에서도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불임에 대한 심층연구가 국가차원에서 추진되고, 불임치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인공임신중절

- 경제적 이유, 소자녀관 정착 등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적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피임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홍보계몽이 강화되어야 함.
- 원치 않는 임신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효과적인 피임보급과 피임방법에 대한 정확한 사용방법의 교육이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피임보급이 있어야 함.
- 자궁내장치의 교체시기 등에 대한 홍보계몽이 적극 이루어져야 함.
-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성 평등적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모자보건

- 제왕절개의 실시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OECD의 권고수준인 5~15%선으로 낮추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신생아의 저체중 또는 과체중을 예방하기 위한 산모의 건강관리 및 임신 중 생활습관 관리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모유수유는 건강한 모체를 유지하고,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단순히 출산여성과 신생아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전체와 사회가 함께 지지하고 노력하여야 함.
- 취업여성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의 모유수유실 의무설치, 모유수유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 직장내 모유수유실 의무설치 등과 같은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가치관

- 결혼, 이혼 및 재혼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는 가족의 안정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출산 등 가족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혼관 형성을 위한 학교와 사회교육을 강화하고 양성평등가치관확립을 위한 사회교육을 강화해야 함.
- 가족친화적인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의 인식 및 태도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재혼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생활교육,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 보급하여야 할 것임

□ 결혼과 가족주기

- 이혼가정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 경제활동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준의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등의 지원과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고용문화 조성, 질 높고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혼가족의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위해 상담서비스 제공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여성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

원칙이 강화되어야 함.

- 노후생활 보장책으로서 경제적인 지원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증대 및 장기 요양보호 서비스 등의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조사의 배경 및 목적

한 사회의 인구변동은 제반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출산력 변동을 포함한 제반 인구변동은 한편으로는 사회경제적 변화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는다(김승권 외, 2000, 2004).

1960년의 총인구는 25,012천명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계출산율은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인구증가율은 3.2%로 높아 향후 인구증가로 인한 부담은 엄청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높은 출산율로 인해 유년부양비는 무려 77.3%에 달하여 총 부양비(82.6%)의 약 94%에 달하였다. 이와는 달리 자연 자원이 부족하고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하여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로 최빈국 수준이었다. 가을 추수에 의해 겨울은 겨우 넘길 수 있었으나 봄이 되면 끼니를 때우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소위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겨나기 까지 하였으니 얼마나 어려운 시절인지 짐작이 간다.

이와 같은 인구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가는 1960년대 초부터 강력한 인구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즉,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1962년부터 경제개발계획과 병행하여 추진된 가족계획사업 중심의 인구증가억제정책이 그 효시라 하겠다.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산업화 초기단계의 높은 출산율 및 높은 사망률(高出産率·高死亡率)을 뒤따르는 높은 인구증가율로 인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높은 인구증가율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연평균 8%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하

였고, 이에 따라 국민소득의 향상, 교육수준의 향상, 가족계획사업의 목표달성 등에 힘입어 합계출산율은 1960년의 6.0명에서 1983년에는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함으로써 2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출산율이 안정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국민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이 변화되는데 힘입어 합계출산율은 1987년에 1.6명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서구 선진국의 출산율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988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 오던 가족계획사업의 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저소득층 중심'의 피임보급사업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출산율 전환은 불과 25년이라는 단기간에 이룩된 것으로 서구 선진국에서 100여 년이 소요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세계에서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높은 성과로 평가되었다. 합계출산율이 서구 선진국 수준에서 약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을 유지하게 되자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노동력 부족과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른 복지부담이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난 출생성비의 불균형, 인공임신중절의 증가 등 『인구자질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즉, 인구증가억제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구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1995년 3월 보건복지부 산하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정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1996년 6월 그간 추진되어온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철폐하고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정책결정을 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출산력 저하는 전적으로 정부의 인구증가억제정책에 의해서만 이룩된 것이 아니고 그 간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발전에 따른 사업외적 요인과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상호작용에 의해 단기간 내에 높은 성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동 정책의 핵심은 모자보건의 증진, 성비불균형의 시정, 인공임신중절의 예방,性病 및 AIDS의 예방, 청소년 성문제의 예방 등에 의한 인구자질의 향상에 두는

것이였다. 또한 가족계획사업의 추진방식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하되, 사업초기부터 답습되어온 정부지원에 의한 무료피임보급은 저소득주민 등의 취약계층에 국한하고 일반대상자는 의료보험 및 상업망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유도함과 동시에 소자녀 규범과 피임실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각종 규제 및 보상제도는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는 선진국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면서 인구자질 향상과 가족복지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였다고 사료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전환에 대해서 사회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즉, 서구 선진국의 출산력 전환은 사회·문화적 발전과 병행하여 장기간에 걸쳐 성취한 것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정부의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정책에 의한 단기간의 성과이기 때문에 정책전환으로 인하여 그 동안 이룩한 높은 피임실천율과 안정된 출산율은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이였다. 그런데 이는 기우(杞憂)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7년 말에 불어닥친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하의 경제위기와 함께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급락하게 되었다.

즉, 경제적 어려움, 구직난, 소득격감 등은 한국사회에서 결혼연기, 출산연기 등으로 귀결되었고, 이는 합계출산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1999년 1.42명, 2000년 1.47명, 2001년 1.30명으로 낮아졌고, 2002년에는 더욱 낮아져 1.17명으로 저하되었다.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보임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위기’라는 용어가 널리 회자(膾炙)하였으며, 아울러 ‘고령사회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급락한 합계출산율이 2003년에는 출산율이 다소 상승하여 1.19명을 나타냄으로써 다소 안정되는 듯 하였으나 2004년에는 다시 1.16명으로 낮아졌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이와 같은 출산율의 지속적 저하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대량 발생한 기업의 도산 및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실업자 급증, 소득격감, 개인파산, 불투명한 장래 등으로 젊은 연령층의 결혼연기와 기혼부부의 출산기피 또는 출산지연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김승권 외, 1998, 2002, 2003). 더군다나 소득수준의 향상,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참여 증가, 초혼연령의 상승 등에 기인되어 현재의 저출산 수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참여정부는 2003년 10월 2일 제7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통합기획단 내에 인구고령사회대책팀 설치 대책을 발표하였고, 대통령훈령을 개정하여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의 설치근거를 마련, 동년 10월 24일 Task Force(TF) 형태의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설치하였다.주1)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은 2004년 1월 15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35회 국정과제회의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수립하여 보고하였는데, 이는 4대 분야, 20개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비전으로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고령사회를 제시하였으며, 4대 정책분야별 목표로 ① 가족친화적 인구대책을 통한 출산안정 도모, ②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기반 강화, ③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보장, 그리고 ④ 고령친화적 재정·산업정책을 설정하고 구체적 정책추진과제 20개를 포함한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어서 ‘인구·고령사회 대책팀’은 2004년 2월9일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마련하고, 위원회 내에 자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등 조직면모를 갖추어 동년 3월5일 대통령직속의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가 출범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또한 2005년 4월 26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 9월 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결과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종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고, 이에 힘입어 ‘새롭고 희망찬 출산에서부터 노후생활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라는 의미와 ‘미래와 행복이 가득한 사회를 새로 맞이한다’는 의지를 동시에 표현하는 ‘새로마지플랜’으로 명명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주1) 인구고령사회대책팀에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의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으로 부터 대책수립을 위한 실무 전문인력이 파견되는 등 10명 수준의 상근인력이 참여하여 고령사회대책 마련에 들어가게 되었음.

그렇지만 기본계획의 추진에 의한 효과 거양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는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더군다나 사회문화, 가치관 등의 영향을 받는 ‘출산’이 단기간의 정부 정책에 의해 상승할 수 있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행태와 출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는 다양한 변인들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1964년 이래 20번째 실시된 본 조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 첫째, 부인의 임신행태, 출산행태, 피임행태 등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최근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장단기 인구정책의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 둘째, 임신 및 출산 행태의 변화와 부부의 취업, 가족주기, 가족생활, 자녀양육 등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분석하고, 출산율 안정화 방안과 가족복지 증진방안을 동시에 모색한다.
- 셋째, 불임, 남아선호, 임신소모, 특히 인공임신중절 등 사회병리현상의 실태를 파악하고, 모자보건 수준을 분석하여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 넷째, 궁극적으로 출산율 안정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을 지연시키고 가족안정화를 도모하며, 그리고 가족생활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제 2 절 조사의 방법 및 내용

1. 조사방법

본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진이 설계한 조사표를 기초로 사전 훈련된 전문조사원이 조사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직접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가구조사와 개인조사로 구분되었으며, 연구진에 의하여 표본추출된

조사지역 내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주2)}

가구조사의 응답자는 가구주^{주3)}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렇지만 가구주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생활을 잘 파악하고 있고 가구내의 모든 가구원의 개인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가구원을 응답자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후자의 경우에는 주로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조사는 가구 내에 살고 있는 15~59세 기혼가구조사과 15~4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5~59세 기혼가구조사의 응답자는 가구주나 그 배우자이고, 15~49세 기혼여성 조사의 응답자는 기혼여성 당사자이며, 그리고 가구 내 기혼여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만, 기혼여성을 만날 수 없어 개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남편, 가구 내 다른 기혼여성, 성인자녀 등을 대리응답자로 하여 가능한 한 조사를 완료토록 하였다.^{주4)} 그렇지만 가치관에 관한 조사문항과 본인이 직접 응답하여야 하는 문항이지만 가구방문시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원이 전화로 직접 설문토록 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정확도를 최대한 높였다.

2. 조사내용

본 조사에서는 여성의 임신 및 출산의 행태, 피임행태, 인공임신중절, 가족 및 자녀가치관 등에 관련된 내용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 아울러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가족보건 영역과 가족복지 영역에서 주요한 모자보건실태, 가족생활, 자녀양육 등의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다. 특히 본 조사는 과거에 실시된 조사자료의 분석결과와 시계열적 비교를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인구관련 제 연구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출산력 전환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대응방안과 가족

주2)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중 273개 표본조사지역을 추출함.

주3) 가구주는 '가족의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사실상의 가구주'로 정의하였으며, 서류상의 가구주, 세대주 또는 호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주4) 극히 일부가구에서 발생하였으며, 남편 또는 시어머니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대리응답자를 통하여 응답을 받아냄으로써 조사불가 또는 무응답을 감소시켰음.

복지의 변화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내용을 주요 영역별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가. 가구조사

가구조사는 조사대상지역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즉, 개인조사에 해당되는 가구가 아닐지라도 조사구내에 있는 모든 가구는 가구조사를 수행하게 되므로 가구원과 가구의 특성과약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가구원의 특성

가구주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의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 생년월일, 교육정도 및 졸업여부, 취업여부, 직업직종, 종사상 지위, 혼인상태 등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출생에 관한 사항

2004년 1월 이후 출생아의 출생년월일, 성, 출생시 모(母)의 연령, 생존여부 및 사망일시, 출생아 및 모의 현 동거여부 및 비동거 이유, 생존기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내용들은 출산율을 산출하는데 중요하므로 출생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다.

3) 가구에 관한 사항

집의 유형, 집의 소유, 가구소득, 저축액, 가구소비, 재산, 부채, 부채의 원인, 경제적 어려운 점, 경제적 자립수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특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가족소유가 아닐 경우 따로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가구소득의 세부 내용을 근로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사회보장수혜, 기타(민간단체의 지원금, 장학금 등) 등으로 파악하였다.

나. 가족복지에 관한 사항

가족복지에 관한 사항은 15~59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1) 응답자 및 배우자의 일반특성과 혼인사항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현 결혼의 결혼시기, 혼인당시 연령, 초혼여부 등이다. 아울러 이혼·별거·사별 가정에 대하여는 해혼시 남편 및 부인의 연령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혼·별거 가정에 대하여는 이혼·별거의 이유, 먼저 제의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혼·별거 당시 미성년 자녀의 존재여부, 자녀와의 동거자, 양육비 제공자 등이 조사내용으로 포함되었다.

2) 가족주기에 관한 사항

현재 초혼인 부인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조사문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자녀출생에 관한 사항이며, 다른 하나는 자녀혼인에 관한 사항이다. 전자는 첫째와 막내 아의 생년월일과 현재 연령, 이들 자녀의 성별에 관한 것이며, 후자는 부인이 출산한 자녀의 첫 결혼과 마지막 결혼에 대한 것으로 혼인자녀와 미혼자녀를 파악하였다. 특히 후자는 자녀의 첫 결혼과 마지막 결혼 당시의 자녀연령과 모(母)의 연령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3) 가치관 및 가족관계

가치관 및 가족관계는 혼인, 이혼, 재혼에 관한 태도와 결혼 및 가족에 관한 태도, 자녀가치관 및 남아선호에 대한 태도,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등으로 구분되어 조사문항이 개발되었다. 혼인, 이혼, 재혼에 관한 태도는 수용도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결혼 및 가족에 대한 태도는 가족관계의 유대감을 파악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녀가치관은 자녀의 필요성, 이상자녀수 등을, 그리고 남아선호가치관은 아들의 필요성과 그 이유, 이상자녀수의 성별 구분 등을 조사문항에 포함하였다.

부부관계에 대한 조사문항은 한부모가정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주요

문항으로는 가사분담, 부부권력관계, 자녀양육태도 등이다. 특히 부부권력관계는 일상생활비 지출, 주택매매 및 이사, 투자 및 재산증식, 자녀양육 및 교육 등에서의 최종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4) 자녀양육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은 가구 내에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와 18세 이상이라도 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부모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출되는 양육비를 조사하도록 문항이 구성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자녀 사교육비 등 과도한 자녀양육비로 인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소자녀관이 정착되어 저출산으로 이어져 사회의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효하며, 구체적으로 자녀 개인에게 지출되는 식료품비, 피복 및 신발비, 보건의료비, 공교육비 관련 비용, 보충교육비(사교육비) 및 관련 비용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5) 출산 및 가족정책

최근 저출산·고령사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출산율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지원과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여건, 혼인장려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책 등의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다. 임신·출산·피임·취업에 관한 사항

임신·출산·피임·취업에 관한 사항은 15~4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는 크게 임신·출산에 관한 사항과 피임에 관한 사항, 취업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된다.

1) 임신력·출산력·피임력·혼인력·취업력 기록표

부인의 현재까지의 임신력·출산력·피임력·혼인력·취업력에 관한 생애이력을 파악하였다. 즉, 기혼여성이 15세가 되는 해부터 혼인, 임신·출산, 피임, 부인취업, 남편취업 등을 현시점까지 조사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는 변동이 있을 시기의 요인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시도한 것으로 향후 저출산 대책을 마련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부인과 남편의 취업에 관한 사항

취업에 관한 사항은 부인의 결혼 직전·후, 첫자녀 출산 직전·후, 막내자녀 출산 직전·후, 막내자녀 초교 입학전·후 등에 관한 사항과 부인과 남편의 현재 취업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된다. 먼저 부인의 결혼 직전·후, 첫자녀 출산 직전·후, 막내자녀 출산 직전·후, 막내자녀 초교 입학전·후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단계마다의 취업여부, 동일직장 여부, 중단 및 전직이유 등이다. 이는 여성들이 결혼과 첫자녀 출산, 막내자녀 출산, 막내자녀 초교 입학등의 주요 생의 주기를 전·후하여 직장을 그만 두게 되는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을 변화와 직접적 관련성을 갖는다.

현재의 취업에 관한 내용으로는 부부의 취업여부, 주당 평균근무시간, 지난 3개월 월평균 근로소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일을 하고 있는 부인에게는 일을 하는 이유, 일에 대한 만족도,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데 있어서 애로점, 일의 계속 여부 등이 조사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부인에게는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개인, 가족, 사회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본 조사에서 취업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출산의 장애요인이 취업이거나 취업의 장애요인이 출산이기 때문이다. 즉, 기혼여성의 취업은 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본 조사문항에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3) 임신·출산사항 및 입양에 관한 사항

이 영역은 기존의 조사자료와 시계열적 비교분석이 가능해야 하므로 기존의 틀을 원칙적으로 유지하였다. 주요 조사문항으로는 현존자녀수, 임신횟수, 정상출생횟수, 사망자녀수, 자연유산 및 사산횟수, 인공임신중절 횟수 및 수용이유, 현 임신여부 및 출산계획, 향후 출산계획,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향후 출산의향, 입양을 고려한 경험 여부 등이다.

4) 가족계획실태(피임실태)

이 영역은 15~44세 유배우부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존의 조사자료와 시계열적 비교분석이 가능해야 하므로 기존의 틀을 원칙적으로 유지하였다. 주요 조사문항으로는 피임실태여부 및 목적, 피임수용방법 및 이유, 피임방법의 만족여부, 현 피임방법의 계속사용여부 및 원하는 변경방법, 현 방법의 사용시기, 비용부담 또는 구입처, 과거 사용한 피임방법 및 중단이유, 피임무경험 이유 및 향후 계획 등이다.

5) 불임실태 및 치료에 관한 사항

최근 불임부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로 저출산 시대에 불임부부의 지원을 통하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문항으로 새롭게 포함되었다.

임신을 위해 사용한 방법, 양방병원에서의 불임진찰 여부, 검사의 주체, 불임원인, 불임치료경험 유무, 받지 않은 이유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라.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산경험이 있는 부인 중 최종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는 크게 산전관리 및 분만에 관한 사항, 산후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유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분된다.

1) 산전관리 및 분만에 관한 사항

2004년 이후 출생아 중 최종아에 대한 산전진찰여부 및 횟수, 출산장소, 분만 형태, 제왕절개의 권유자 및 이유, 최종 출생아의 임신기간, 아기 체중, 저체중 이유, 미숙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의 인지 등이 조사문항으로 포함되었다.

2) 산후관리에 관한 사항

최종출생아의 산후진찰여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이 주요 조사문항이다. 특히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경험여부, 정부의 지원항목 외 추가검사 실시여부, 추가검사로 인한 비용, 선천성대사이상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의 인지 등이 포함되었다.

3) 수유에 관한 사항

최종출생아의 모유수유, 인공유(분유) 수유 등을 기록표에 의하여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혼합유도 파악하도록 조사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전혀 모유수유하지 이유와 모유를 먹이다가 뎀 이유, 모유수유를 돕기 위한 정부정책 등을 조사문항에 포함하였다.

제 3 절 출산력관련 조사의 연혁 및 특성 변화

출산력 및 피임, 가족보건 등과 관련된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는 이번에 앞서 이미 19회나 이루어졌다. 최초의 조사는 1964년에 실시되었으며, 1970년대 말부터는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이들 조사는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가족계획사업의 발전과 함께 그 특징이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1960년대 전반에 실시된 조사(1964~67년)에서는 가족계획의 지식, 태도 및 실천(KAP)과 출산행태에 관련된 내용이 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가족계획사업이 진전됨에 따라 사업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에

의해 1967년 조사부터는 『출산기록표』에 의한 출산력과 피임수용실태 및 그 부작용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어서 1970년대 조사의 특징은 그간의 인구증가억제정책 및 가족계획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부인의 취업, 모유수유 및 출산계획 등의 조사내용이 추가·보완된 점이 특징적이라 하겠다.

1980년대 조사는 1982년부터 3년 간격으로 3회가 실시되었는데, 정부가족계획사업의 특성 및 정책변화와 함께 종래의 조사에 소자녀 규범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각종 규제 및 보상제도에 대한 인지도, 홍보·계몽, 그리고 모자보건사업 등에 관한 항목이 추가된 점이 특징이다.

1990년대에 3회 실시된 조사는 그간의 성공적인 가족계획사업에 힘입어 저출산율과 높은 피임실천율이 유지되고 있는 여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종전의 조사내용에 추가하여 출산력 저하가 우리 사회와 가족 및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혼여성의 취업과 역할변화, 가족 및 노인문제 등 가족복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김승권 외, 2004).

2000년대에 실시된 두 번의 조사는 1990년대의 조사내용 특성에 더하여 지속적인 저출산의 원인규명과 그 대책강구 및 원인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가족복지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강화되었다. 이는 출산율 저하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증가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대, 그리고 가족복지의 미흡에 기인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김승권 외, 2000, 2004).

종합하면, 1960년대 조사는 단순히 피임에 관한 지식, 태도, 실천에 관한 내용에 치중되었고, 1970년대 조사는 가족계획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출산수준 및 행태 변화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1980년대 조사는 피임 및 출산 관련 내용에 추가하여 모자보건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조사는 출산력 전환과 인구증가억제정책의 폐지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실시된 두 번의 조사는 1990년대의 조사내용 특성에 더하여 지속적인 저출산의 원인규명과 그 대책강구 및 원인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가족복지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강화되었다. 이는 출산율 저하가 자녀양육에 대

한 부담증가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대, 그리고 가족복지의 미흡에 기인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표 1-1〉 한국에서의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관련조사의 연혁

연대	조사년도	조사명칭
1960년대 (5회)	1964	전국 가족계획실태조사
	1965	전국 가족계획실태조사
	1966	전국 가족계획실태조사
	1967	전국 가족계획 및 출산력조사
	1968	전국 출산력조사
1970년대 (6회)	1971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73	가족계획종합실태조사
	1974	한국 출산력 조사
	1976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78	가족계획 및 출산력실태조사
	1979	피임보급실태조사
1980년대 (3회)	1982	전국 가족보건실태조사
	198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8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90년대 (3회)	1991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94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97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2000년대 (2회)	2000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2003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제 4 절 표본설계 개요

1. 기획단계 결정 사항

가. 표본규모

최근의 출산력 감소에 따른 조사가구수의 증가를 고려할 수 있으나 주어진 예산을 감안하여 전체 표본조사수를 273개 조사구로 하고 조사구 당 가구수는 60가구로 하여 약 16,380가구를 조사대상 가구로 하였다.

나. 표본조사구 추출 모집단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자료에서 본 조사의 조사구로 적합하지 않은 시설조사구(기숙사, 사회복지시설, 관광호텔 등)를 제외한 일반조사구 자료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일반조사구의 총조사구수는 264,207개 조사구이며 총가구수는 15,835,032가구로 집계되었다.

2. 표본추출 방법

가. 모집단자료의 정리(표본틀 구축)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지역특성에 따라 (1) 7대 시의, (2) 기타 시 (3) 군의 읍·면으로 분류하고, 각 조사구의 주된 주택특성에 따라 2가지의 주택형태로 분류하였는데, (1) 단독주택,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타 와 (2) 아파트 조사구로 분류하였다. 조사구의 지역특성 및 주거형태에 의하여 전체 모집단 조사구를 6개 층으로 층화하였다.

모집단의 각 조사구는 가구수가 동일하지 않음으로 각 조사구의 가구수를 5로 나누어 크기의 측도(MOS; Measure of size)로 사용하였다. 6개 층(조사구의 지역특성과 주거형태) 내에서 각 모집단 조사구를 행정구역 순으로 정렬하여 지역적으로 골고루 추출되도록 하였다. 행정구역을 분류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지역(시도)별로 층화추출한 효과를 얻도록 하였다.

나. 표본조사구 및 조사대상가구 선정

각 층별 표본조사구수는 층별 가구수에 비례하여 배분되도록 하되 군의 읍·면 지역은 출산력이 감소하고 가임여성수가 줄어드는 상황임으로 1.2배의 가중치를 주었다. 각 층에서의 조사구 추출은 조사구별 가구수에 대한 크기의 측도에 의한 확률비례로 계통추출 하였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중에서 조사구의 가구수가 적은 조사구는 인

접 조사구에서 표본가구를 추가하였다. 즉,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가구수가 55가구 미만인 표본조사구는 인접한 조사구에서 5가구를 추가하여 조사대상가구를 60가구가 되도록 하며, 65가구 이상일 경우는 거처번호 순으로 하여 65가구 이후 거처에 속하는 가구는 조사대상가구에서 제외하였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의 모집단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축된 아파트를 고려 할 수 있으나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시점이 2005년 11월 임으로 신축 아파트는 고려하지 않고 조사구 내에 신축된 일반주택은 조사대상가구에 포함시켰다.

추출결과 7대시의 일반조사구에서 72개 조사구, 기타시의 일반에서 45개 조사구, 읍·면의 일반에서 45개 조사구, 7대시의 아파트 조사구에서 51개 조사구, 기타시의 아파트 46개 조사구, 읍·면의 아파트 14개 조사구가 추출되어 총 273개 조사구에서 조사구 당 60가구를 표본조사 가구로 하여 총 16,38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 하였다(표 1-2 참조).

〈표 1-2〉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의 표본조사구 추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수	가구수	가중치	조사구 추출확률	표본 조사구수
(1) 7대 시의 일반	73,513	4,348,856(27.5)	1	1/1,021	72
(2) 기타시의 일반	45,812	2,726,035(17.2)	1	1/1,018	45
(3) 읍·면의 일반	39,130	2,262,800(14.3)	1.2	1/869	45
(4) 7대 시의 아파트	45,588	3,058,350(19.3)	1	1/893	51
(5) 기타 시의 아파트	44,497	2,759,989(17.4)	1	1/967	46
(6) 읍·면의 아파트	11,667	679,002(4.3)	1.2	1/833	14
계	264,207	15,835,032(100.0)		1/953	273

3. 추정방법

조사결과의 각종 통계치는 가중표본합계치(weighted sample total)를 사용한다. 이는 조사구의 추출된 확률이 동일하지 않고 미방문가구율 및 조사미완율이 조사구마다 다르기 때문이며, 조사결과의 가구수의 가중표본합계치는 전체 조사

완료가구수와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 가구조사 결과의 가중표본합계치

어떤 특성 XY 를 갖는 가구수 및 인구수에 대한 가중표본합계치는 조사완료된 가구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① 가구총수 추정용 승수

$$M_{hi} = \frac{S_h}{n_h S_{hi}} \frac{A_{hi}}{A_{hi}'}, \frac{A_{hi}'}{B_{hi}}$$

$$= \frac{S_h}{n_h S_{hi}} \frac{A_{hi}}{B_{hi}}$$

이 공식에서

M_{hi} = 가구총수 추정용 승수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 $h = 1, \dots, 9$

i = 조사구를 나타내는 첨자

n = 표본조사구수

S = 가구수 크기의 측도

A = 조사결과 조사구내 총가구수(미방문가구수 포함)

A' = 방문가구수

B = 가구조사 완료가구수

② 공식 (1)의 승수를 조사구별 조사완료 가구수에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조사모집단의 총가구수를 추정한다.

$$\hat{B} = \sum_h \sum_i M_{hi} B_{hi} \quad (2)$$

③ 조사완료가구수를 집계

$$B = \sum_h \sum_i M_{hi} B_{hi} \quad (3)$$

④ 공식 (2)의 총가구수 추정치를 (3)의 조사완료 가구수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식 (1)의 총수 추정용 승수를 가중표본합계치 산출용 승수로 변환한다.

$$W_{hi} = M_{hi} \left(\frac{B_{hi}}{\hat{B}_{hi}} \right) \quad (4)$$

⑤ 공식 (4)의 승수를 조사완료 가구수에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가중표본합계치를 산출한다.

$$\hat{Y} = \sum_h \sum_i W_{hi} Y_{hi} \quad (5)$$

이 공식에서

\hat{Y} = 어떤 특성 Y 를 갖는 가구수(인구수)의 가중표본합계

Y = 특성 Y 를 갖는 것으로 조사된 가구수(인구수)

나. 부인조사결과의 가중표본합계치

부인조사 결과에서 어떤 특성 XY 를 갖는 부인수의 가중표본합계치는 조사완료된 부인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⑥ 부인총수 추정용 승수 산출은 가구승수에 부인조사 조사미완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begin{aligned}
 eM_{hi} &= W_{hi} \frac{C_{hi}}{C_{hi}'} \frac{C_{hi}'}{D_{hi}} \\
 &= W_{hi} \frac{C_{hi}}{D_{hi}} \qquad (6)
 \end{aligned}$$

eM_{hi} = 부인총수 추정용 승수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 $h = 1, 2, 3, \dots, 6$

i = 조사구를 나타내는 첨자

n = 표본조사구수

C = 조사결과 조사구내 총부인수(미방문부인수 포함)

C' = 방문부인수

D = 부인조사 완료 부인수

- ⑦ 공식 (6)의 승수를 조사구별 조사완료 부인수에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조사모집단의 총부인수를 추정

$$\hat{D} = \sum_h \sum_i eM_{hi} D_{hi} \qquad (7)$$

- ⑧ 조사완료부인수를 집계

$$D = \sum_h \sum_i eM_{hi} D_{hi} \qquad (8)$$

- ⑨ 공식 (7)의 총부인수 추정치를 (8)의 조사완료 부인수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

식 (6)의 부인총수 추정용 승수를 부인가중표본합계치 산출용 승수로 변환

$$eW_{hi} = eM_{hi} \left(\frac{D_{hi}}{\widehat{D}_{hi}} \right) \quad (9)$$

⑩ 공식 (9)의 가중치를 조사가 완료된 부인에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가중표본합계치를 산출

$$\widehat{X} = \sum_h \sum_i eW_{hi} X_{hi} \quad (10)$$

이 공식에서

\widehat{X} = 어떤 특성 X 를 갖는 부인수의 가중표본합계치

X = 특성 X 를 갖는 것으로 조사된 부인수

제 5 절 현지조사 및 자료처리

1. 현지조사의 준비 및 지도·감독

가. 조사준비절차

1) 조사원 모집

조사원 모집방법은 당 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공고와 종전에 수 차례 연구원의 조사를 수행해 온 조사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통보를 병행하여 활용되었다. 접수된 조사원의 이력서는 연구진에 의하여 검토되었으며 조사원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조사원에 대한 면접은 엄격한 심사와 배점을 거쳐 성적순으로 선발되었다. 연구진은 당초 본 조사를 위해 60명의 조사인력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전문조

사원의 부족, 저렴한 인건비와 장기간의 지방출장, 그리고 본 조사의 어려움을 인식한 일부 조사원이 교육과정에서 탈락하여 최종 선발된 인원은 지도원 12명과 조사원 36명으로 전체 48명이었다.

2) 조사원 교육훈련

조사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당 연구원 대강당에서 당 연구진에 의해 2일간 실시되었다. 조사원 교육훈련을 위해 개발된 조사표, 조사지침서, 양·음력 환산표, 가구명부, 조사지역 요도 등이 활용되었으며, 이들 자료는 조사표와 함께 현지 조사를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3) 조사팀 구성

현지조사를 담당하는 48명의 조사인력은 12개 팀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팀은 지도원 1명과 조사원 3명으로 구성되었다. 과거조사에서도 많은 유사한 경험을 하였지만 특히 조사팀을 4명으로 구성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한 조사지역은 약 60 가구이기 때문에 1명의 조사원이 하루에 약 5~6 가구를 완료한다고 예상할 때 조사팀을 4명으로 할 경우 한 지역을 완료하는데는 약 3일 정도 소요된다. 이 기일은 한 조사지역의 구조와 특징을 익히고 조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가구원이 부재중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사원은 몇 차례까지도 재방문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 조사지역에 최소한 4일 정도는 체류를 하여야 조사미완율을 낮추고 조사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

둘째, 본 조사는 약 16,000가구가 조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여건에서 조사기간이 2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부득이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 이외 지방에서의 조사기간도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조사원의 이동, 숙박 등을 고려할 때 조사팀당 4명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각 조사팀의 인원이 소수일 경우 많은 지도원이 필요하며 실제 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사기간이 늘어나야 하고, 따라

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증가될 수밖에 없다.

넷째, 본 조사에서는 조사표의 오류를 해당 조사지역에서 수정·보완하여야 하므로 지도원과 조사원간의 역할분담이 중요하며, 지도원이 조사완료된 조사표를 해당지역에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조사원 3명이 가장 적당한 규모이다.

나. 현지조사의 운영 및 지도·감독

현지조사는 약 3개월간 이루어졌으며, 2006. 6. 5~8. 24일 기간 중 실시되었다. 특히 조사초기단계에서는 연구진에 의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기 설정된 조사지역의 확인 및 조사지역 내 가구의 증감상태 등은 조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점적 확인사항이었다. 또한 지도원과 조사원의 원만한 관계, 조사팀과 조사지역 행정기관 및 주민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요청이 이루어졌다.

현지조사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부인들이 주간에 부재중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많은 조사원들이 주간에 가구를 방문하여 응답자의 소재와 약속시간을 정한 후 야간에 재방문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2. 조사자료 처리

조사완료된 자료는 일차적으로 현지에서 지도원에 의해 오류수정을 하였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는 완벽한 작업을 기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완료한 후 일부 지도원과 조사원에 의하여 약 1개월간 오류수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한 인력은 모두 조사에 참여한 지도원과 조사원으로 구성되었다. 오류수정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본 조사를 실제로 실시한 인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동 작업은 사전에 연구진에 의해 작성된 「부호화 지침서」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특히 작업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 1일간의 사전교육이 실시되었다.

오류수정 작업이 완료된 조사자료는 입력요원에 의하여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종전과 달리 동 작업은 외부의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되지 않고 연구진

이 숙련된 입력요원을 채용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는 과거 경험에 비추어보아 외부에서 이를 수행한 경우 입력과정에서의 오류가 많이 발생되어 전산화된 자료의 오류수정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다. 전산화된 조사자료는 연구진에 의해 정확도가 검증되었고, 전산화된 자료의 정확한 수정을 위해 전 연구진과 4명의 전문 자료정리요원이 투입되었다.

이어서 자료분석을 위한 파일이 재구성되었고, 연구진은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진이 주로 활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와 SAS 패키지 프로그램이었다.

제 6 절 응답자의 특성 및 통계해석시 유의사항

1.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의 특성은 본 연구의 결과를 이해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는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서 가족보건실태 및 가족복지욕구가 다르고 가족을 둘러싼 제반 환경적 요소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응답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조사의 대상은 15~59세로 조사결과 10,132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중 동부 지역에 83.6%(8,472명), 읍·면부지역에 16.4%(1,660명)가 거주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남자가 13.4%, 여자가 86.6%로 대부분이 여자 응답자이었으며, 지역별로 응답자의 성별비율은 동부는 남자가 13.0, 여자가 87.0%로, 읍·면부의 남자 15.8%, 여자가 84.2%로 동부보다 남자 응답자가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이 15~44세인 비율은 57.1%였으며, 45~49세는 17.2%, 그리고 50~59세 연령층은 25.6%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에는 젊은 연령층이, 읍·면부지역에는 50세 이상의 장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1-3〉 15~59세 조사대상가구의 응답자의 특성

(단위: %)

특성	전국	동부	읍·면부
성			
남자	13.4	13.0	15.8
여자	86.6	87.0	84.2
연령			
15~29세	7.2	7.4	6.3
30~34세	14.4	14.8	12.1
35~39세	17.9	18.3	16.4
40~44세	17.6	18.1	15.1
45~49세	17.2	17.3	16.4
50~54세	13.3	12.8	15.9
55세 이상	12.3	11.2	17.9
결혼상태			
유배우	88.0	88.2	87.0
사별	3.8	3.5	5.7
이혼	6.2	6.3	5.7
별거	1.7	1.7	1.4
기타	0.3	0.3	0.2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1.0	8.8	22.2
중학교	13.7	12.7	18.6
고등학교	46.0	46.8	41.5
대학 이상	29.3	31.6	17.7
현취업여부			
취업	55.1	52.7	67.5
비취업	44.9	47.3	32.5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본인	22.4	21.9	24.8
배우자	77.3	77.8	74.9
기타	0.3	0.3	0.3
계(수)	100.0(8,472)	100.0(1,660)	100.0(10,132)

응답자의 혼인상태는 88.0%가 유배우 이었으며, 사별 3.8%, 이혼 및 별거는 7.9%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유배우가 차지하는 비율과 사별인 응답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읍·면부지역(유배우 87.0%, 사별 5.7%)이 동부지역(유배우 88.2%, 사별 3.5%)보다 높은 반면, 이혼 및 별거인 응답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동부지

역(8.0%)이 읍·면부지역(7.1%)보다 높았다.

교육수준별 응답자의 분포를 보면, 고등학교 학력수준을 가진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인 46.0%의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은 대학 이상의 학력이 29.3%로 나타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75.3%나 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읍·면부지역의 응답부인보다 훨씬 높았다. 즉,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동부지역에서는 21.5%인데 비하여 읍·면부지역에서는 40.8%나 되었고, 반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동부지역 78.4%, 읍·면부지역 59.2%로 현저한 학력격차를 보였다.

응답자의 55.1%가 취업하였으며, 취업한 응답자는 읍·면부지역(67.5%)이 동부지역(52.7%)보다 매우 높았는데, 이는 읍·면부지역은 농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응답자와 가구주와의 관계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가 77.3%로 높았으며, 가구주 본인인 경우는 22.4%였다. 이는 지역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2. 통계해석시 유의사항

본 보고서의 통계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사항 응답부인 및 남편의 특성, 결혼양상, 가족정책 및 가족가치관에 관한 분석은 전체 가구 또는 15~59세 기혼가구이다.

둘째, 본 조사에서 개인조사는 15~59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임신·출산·피임, 모자보건에 관한 분석은 15~44세 유배우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지역별 구분을 함에 있어 도시와 농촌이 아닌 동부와 읍·면부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1996년에 시행된 전국의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종전과 같이 도시와 농촌으로의 구분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부는 도시지역으로, 읍·면부는 농촌지역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넷째, 합계출산율, 연령별출산율, 유배우출산율, 그리고 인공임신중절률을 산출함에 있어서 전국의 결과만을 게재하고 지역별, 즉, 동부와 읍·면부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는 1996년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에 의해 동부지역(도시)은 확대되고, 읍·면부지역(농촌)은 더욱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조사는 표본조사인 관계로 읍·면부지역의 응답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출생아 한 명 또는 인공임신중절 한 건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 통계결과의 제시로 이해를 잘못할 수 있는 지표는 전국 통계치만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각 통계표에는 '무응답' 수가 표시되지 않고 있다. 즉, 제1장과 제2장의 응답자 및 응답가구의 특성 등에서 제시된 수(數)와 각 통계표의 응답자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응답자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하면 된다.

제 2 장 가구 및 가족의 제 특성

제 1 절 가구의 특성

가구는 단순한 거주 단위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주거집단을 말하며, 가족^{주5)}은 혼인, 혈연 및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본단위를 말한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가구의 개념은 주거단위를 기초로 동거형태를 이루면서 일상 생활을 같이 하는 생활공동체로 정의하였다.^{주6)}

가구는 인구변천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직접적으로는 출생률 및 사망률의 저하에 따라 가족규모, 가구구성, 가족형태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인구변천이나 도시화 등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성과 해체, 가족생활의 유형, 가족형태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권태환 외, 1995).

본 절에서는 인구변천과 사회변화의 결과로써 나타난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가구의 규모

최근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및 소가족화의 진전은 가구수의 증가현상과 함께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추세를 가속화시키고 있다(윤중주, 1994). 가구규모의 변동추이를 연도별로 비교하면 4명 이하의 가구원으로 구성

주5) 가족은 주거, 생계 또는 혈연관계에 따라 개념을 달리하는데, 최재석(1985)은 가족을 가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친족집단으로 보며, 김두현(1985)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하는 생활공동체로 정의함.

주6) 이는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조사에서 규정하는 가구개념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는 한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및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로 규정하고 있음(통계청, 1997).

된 가구는 증가하는 반면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즉, 4명 이하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는 1966년 36.0%, 1995년 81.7%, 2000년 86.6%, 2005년 90.0%이었으며, 본 조사의 결과인 2006년에는 91.3%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5명 이상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는 1966년에 64.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5년에는 18.3%, 2000년 13.4%, 2005년 10.0% 그리고 2006년에는 8.8%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지난 30년 동안의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5명 이상의 가구는 55.2%포인트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표 2-1〉 연도별 가구원수별 분포(1966~2006년)

(단위: %)

가구원수	1966 ¹⁾	1975 ²⁾	1985 ³⁾	1995 ⁴⁾	2000 ⁵⁾	2005 ⁶⁾	2006 ⁷⁾
1명	2.8	4.2	6.9	12.7	15.5	20.0	18.5
2명	7.7	8.3	12.3	16.9	19.1	22.1	23.9
3명	11.5	12.3	16.5	20.4	20.9	20.9	21.4
4명	14.0	16.1	25.3	31.7	31.1	27.0	27.5
5명 이상	64.0	59.1	39.0	18.3	13.4	10.0	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2006년은 조사완료된 14,497가구를 분석한 것임.

- 자료: 1) 경제기획원, 『1966년도 인구센서스 보고』 제1권, 전국편, 1969.
 2)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5년도 총인구 및 주택조사』 제1권, 전국편, 1977.
 3) _____, 『1985년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제1권, 전국편, 1987.
 4) 통계청, 『19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제1권, 전국편, 1997.
 5) 통계청,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제1권, 전국편, 2001.
 6) 통계청,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제1권, 전국편, 2006.
 7) 본 조사결과

이와 같은 가구원수 분포의 변화는 평균 가구원수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1966년 5.5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1995년 이후 3.3명으로 저하되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에 3.1명, 2005년과 2006년에 2.9명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 평균 가구원수는 동부지역이 1966년

5.1명, 1995년 3.4명, 2000년 3.2명, 2005년 2.9명, 그리고 2006년에는 2.9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며, 읍·면부지역은 1966년 5.7명, 1995년 3.1명, 2000년 3.0명, 2005년 2.9명, 그리고 2006년에는 2.6명으로 나타나 큰 폭으로 저하하였다. 따라서 1966~2003년 동안의 가구원수는 동부지역이 43.1%의 감소에 그친데 비하여 읍·면부지역은 54.4%나 감소되어 읍·면부지역의 가구원수 감소속도가 동부지역보다 현저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2 참조).

이와 같이 읍·면부지역의 가구규모의 축소는 저출산과 젊은 층의 대규모 이출향도에 의해 나타난 결과이다. 특히 농촌의 젊은 층이 도시로의 이동은 도시에서는 미혼 1인 가구증가를 농촌에서는 노인 단독가구와 노인부부 가구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노인가구의 증가는 노인복지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전체 노인 부양부담을 증가시킬 전망이다.

<표 2-2> 연도별 평균 가구원수(1966~2006년)

(단위: 명)

지역	1966	1975	1985	1995	2000	2005	2006
전국	5.5	5.0	4.1	3.3	3.1	2.9	2.9
동부	5.1	4.8	4.0	3.4	3.2	2.9	2.9
읍·면부	5.7	5.3	4.2	3.1	3.0	2.7	2.6

자료: <표 2-1>과 동일.

2. 가구주의 특성

가구주는 가구를 대표하며 가족의 경제적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주7)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가족의 경제적 부양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가구주로 하였다.

주7) 통계청의 정의를 보면, 가구주란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 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가구주로 하고 있음(통계청, 2001). 다른 정의에 의하면, 가구주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해당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을 가구주로 하기도 함(통계청, 2000).

본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주는 남성 80.9%, 여성 19.1%로 여성가구주 비율은 2003년도의 18.7%보다 0.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⁸⁾, 통계청의 2005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 결과인 남성가구주 가구 78.1%, 여성가구주 가구 21.9%와 비교하면 여성가구주 가구는 2.8%포인트가 낮았는데 이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전수조사 자료인데 반해 본 조사는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본 조사결과 여성가구주 가구가 2003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이혼 및 별거, 사별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최근 우리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가구주의 성별 구성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하였는데, 여성가구주 비율은 읍·면부지역(23.3%)이 동부지역(18.1%)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읍·면부지역에 여성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가구주의 결혼상태는 유배우가 71.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사별은 11.2%, 이혼·별거는 6.4%, 그리고 미혼은 11.2%이었다. 이는 통계청의 2005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에서 전국 가구주의 결혼상태가 유배우 70.0%, 사별 11.5%, 이혼 5.7%, 미혼 12.8%인 것과 비교할 때 유배우와 이혼·별거 가구주는 약간 증가한 반면, 미혼과 사별 가구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배우는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높았고(동부 71.7%, 읍·면부 69.0%), 사별은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매우 높았다(읍·면부 21.4%, 동부 8.8%). 반대로 이혼·별거는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높았고(동부 6.8%, 읍·면부 4.8%), 가구주가 미혼인 경우는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동부 12.8%, 읍·면부 4.9%).

이와 같이 미혼가구와 이혼·별거가구의 비율은 도시지역에서 높고, 사별가구는 농촌지역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미혼가구는 교육이나 취업 등을 위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읍·면부지역보다 동부지역에 많고, 이혼·별거 가구 또한 읍·면부지역보다 동부지역에서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별가구는 동부지역보다 읍·면부지역에 고령층의

주8) 2003년 15,758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남성가구주는 81.3%, 여성가구주는 18.7%의 분포를 보였음(김승권 외, 2003).

인구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연령별 가구주 비율은 30대와 40대가 전체 조사대상가구의 50.3%를 차지하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구주의 비율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대다수의 노인이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능력의 저하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 질 수 있는 기혼 자녀가 가구주가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2-3〉 가구주의 일반특성

(단위: %, 세)

특성	전국	동부	읍·면부
성			
남자	80.9	81.9	76.7
여자	19.1	18.1	23.3
결혼상태 ¹⁾			
미혼	11.2	12.8	4.9
유배우	71.1	71.7	69.0
이혼·별거	6.4	6.8	4.8
사별	11.2	8.8	21.4
연령			
15~19세	0.3	0.3	0.1
20~29세	7.2	8.3	2.7
30~39세	23.1	24.9	15.5
40~49세	27.2	28.8	20.6
50~59세	19.3	19.4	18.8
60~69세	13.2	11.6	20.0
70세 이상	9.8	6.7	22.3
계	100.0	100.0	100.0
(수)	(14,497)	(11,655)	(2,842)
평균연령	48.5	46.7	55.5

주: 1) 15세 이상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미혼에는 미혼모/부 4명이 포함됨.

가구주 연령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40대 이하의 가구주는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50대 이상은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동부지역에서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가구주비율이 낮아졌다. 특히 60대 이상 고

령층에서의 가구주비율은 읍·면부지역(60대 20.0%, 70대 22.3%)이 동부지역(60대 11.6%, 70대 6.7%)보다 매우 높아 젊은 층의 지속적인 이농으로 읍·면부지역에 상대적으로 노년층이 많아졌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가구의 평균연령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연령은 46.7세이었고,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연령은 55.5세로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연령이 동부지역보다 약 9세가 높았다. 이는 2003년에 조사한 가구의 평균연령보다 동부지역 0.6세, 읍·면부지역 1.3세 상승한 것이다.^{주9)}

3. 가구원의 특성

일반적으로 가구는 가구구성원의 성, 연령, 결혼상태에 따라 가구의 형태, 성비, 부양부담 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가구 구성원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사완료된 가구의 총가구원수는 41,586명으로 동부지역에 82.2%, 읍·면부지역에는 17.8%가 거주하였다. 남성은 동부지역에 82.6%, 읍·면부지역에 17.4%가 거주하였고, 여성은 동부지역에 81.8%, 읍·면부지역에 18.2%가 거주하여서 남성이 여성보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표 2-4 참조).

〈표 2-4〉 성별 가구원의 거주지역 분포

(단위: %)

구분	동부	읍·면부	계(수)
전체	82.2	17.8	100.0(41,586)
남자	82.6	17.4	100.0(20,296)
여자	81.8	18.2	100.0(21,290)

주9) 2003년의 가구주 연령은 동부지역 46.1세, 읍·면부지역 54.2세로 나타났음(김승권 외, 2003 참조).

가구의 성별 분포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여성가구의 비율이 약간 높았으며(남성 48.8%, 여성 51.2%),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여성가구의 비율이 더 높았다(표 2-5 참조). 이는 젊은 층의 이농향도에 따른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함께 평균수명의 성별격차로 인해 농촌지역에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노인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2-5〉 지역별 가구의 성 분포

(단위: %)

구분	남자	여자	계(수)
전국	48.8	51.2	100.0(41,586)
동부	49.0	51.0	100.0(34,181)
읍·면부	47.7	52.3	100.0(7,405)

제 2 절 가족의 특성

인구변동의 결과로써의 가족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가족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서 중요하다. 특히 가족이 갖는 세대별 및 형태별 특성은 최근 여성취업의 증대, 자녀양육 및 노인부양문제 등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적 변화와 맞물려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을 위하여 매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서구화 등의 영향에 의한 인구변동과 함께 나타나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세대별 가족유형

앞에서 살펴본 가구규모의 축소는 가족의 세대구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가족유형의 변동추이를 보면, 1세대 가족은 점차 증가하는 데 비해 3세대 이상의 가족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세대 가족도 1980년대 중반부터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체 가구의 50%

이상이 2세대 가족으로 나타나서 핵가족이 일반적인 가족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6〉 연도별 세대별 구성 비율(1966~2006년)

(단위: %)

세대구성 ¹⁾	1966	1975	1985	1995	2000	2006
전국						
1세대	8.1	10.9	16.8	25.7	30.1	37.5
2세대	67.8	68.9	68.1	64.2	61.4	55.5
3세대 이상	24.1	20.2	15.1	10.1	8.5	7.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동부						
1세대	10.9	12.8	16.5	22.7	27.0	33.9
2세대	73.4	72.9	71.2	68.1	65.2	59.8
3세대 이상	15.7	14.3	12.3	9.3	7.8	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읍·면부						
1세대	6.5	9.1	17.3	35.9	41.4	52.2
2세대	64.7	64.9	62.1	51.2	47.8	38.1
3세대 이상	28.8	26.0	20.6	12.9	10.7	9.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1세대에 1인 가구를 포함하였으며, 1975년을 제외한 전체 연도에서 비혈연가구는 제외하였음.

2) 2006년은 전국 14,405가구, 동부 11,568가구, 읍·면부 2,837가구를 분석한 것임.

자료: <표 2-1>과 동일.

가족의 세대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1966년에 8.1%이었던 1세대 가족은 1995년 25.7%, 2000년 30.1%, 2006년에는 37.5%로 증가하였다. 반면 3세대 이상의 가족은 1966년 24.1%에서 1995년 10.1%, 2000년 8.5%, 2006년에는 7.0%로 감소하였다. 또한 2세대 가족은 1966년 67.8%에서 1995년 64.2%, 2006년에는 55.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동부 및 읍·면부지역 모두 1세대 가족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2세대, 3세대 이상 가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동부지역은 2세대 가족이 과반수이상의 비율을 보인 반면, 읍·

면부지역은 1세대 가족과 2세대 가족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가족의 세대별 구성은 2세대 가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1세대 가족은 증가하는 반면, 2세대와 3세대 가족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읍·면부지역에서 1세대 가족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농촌지역 노인층의 부양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2. 형태별 가족유형

가족형태의 일반적 분류는 세대별 가족유형과의 복합적인 관계에서 구분된다. 본 조사에서는 가족을 2인 이상의 혈연가구로 구성된 핵가족, 확대가족, 기타친족 등을 포함하는 친족가구를 말하며, 이 외에 1인가구, 비혈연가구를 비친족가구로 분류하였다. 친족가구 중 핵가족은 1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족과 2세대인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 그리고 편부모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확대가족은 부부와 부모, 부부와 편친 등과 같이 2세대로 구성되었거나 부부와 자녀 및 부모나 편친 등으로 구성된 가족을 모두 포함하였다.^{주10)} 기타 친족가족은 2인 이상의 미혼 형제·자매만으로 구성된 가족을 포함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를 친족가구와 비친족가구로 나누어 볼 때, 친족가구는 80.6%, 비친족가구는 19.4%의 분포를 보였다. 전체 친족가구 중 핵가족의 비율은 87.7%, 확대가족은 7.4%, 기타 친족가구는 4.9%로 구성되어 핵가족이 대부분을 이루었다. 지역별로는 친족가구의 비율은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동부지역 81.8%, 읍·면부지역 75.8%). 또한 핵가족의 비율은 동부지역이 높은 반면, 확대가족은 읍·면부지역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비친족가구는 1인 가구가 96.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비혈연가구는 3.7%에 불과하였다. 비친족가구의 비율은 읍·면부지역에서 높았으며(동부지역

주10) 부부라 함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생존한 경우뿐만 아니라 한 쪽이 사망한 한부모의 경우를 포함한 개념임.

18.2%, 읍·면부 24.2%), 그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읍·면부지역이 높았고, 비혈연 가구는 동부지역이 높았다.

〈표 2-7〉 지역별 친족가구 및 비친족가구의 유형별 분포

(단위: %)

구분	친족가구			비친족가구			
	핵가족	확대 가족	기타 친족	1인 가구	비혈연 가구	계(수)	
전국	87.7	7.4	4.9	100.0(11,551)	96.3	3.7	100.0(2,779)
동부	88.7	6.5	4.8	100.0(9,434)	95.5	4.5	100.0(2,102)
읍·면부	83.5	11.4	5.1	100.0(2,117)	98.5	1.5	100.0(677)

<표 2-8>은 비친족가구인 1인 가구와 비혈연가구를 제외한 친족가구만을 대상으로 가족유형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이 중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핵가족은 66.0%,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24.3%, 그리고 편부모가족은 9.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족형태는 동부지역(70.0%)이, 부부가족은 읍·면부지역(45.1%)이 높았다. 이는 농촌에 젊은 층이 적고 노인부부와 노인단독가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8〉 핵가족의 형태별 분포

(단위: %)

구분	부부	부부+자녀	편부모+자녀	계(수)
전국	24.3	66.0	9.7	100.0(10,135)
동부	19.9	70.0	10.1	100.0(8,367)
읍·면부	45.1	47.3	7.6	100.0(1,768)

확대가족의 구성원은 모두 4,035명으로, 이들의 연령분포는 19세 이하가 25.4%, 기혼자녀로 볼 수 있는 30~40대가 30.3%였으며, 그리고 60대와 70대

연령층이 각각 9.0%, 14.5%로 나타났다(표 2-9 참조). 이는 젊은 미혼 손자녀와 노인이 동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동부지역보다는 읍·면부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 농촌지역의 경우 확대가족과 노인부부 또는 노인단독 가구 등의 가족형태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2-9〉 확대가족 구성원의 연령분포

(단위: %)

연령	전국	동부	읍·면부
0~19세	25.4	25.5	24.9
20~29세	9.2	9.5	8.4
30~39세	16.9	18.1	13.9
40~49세	13.4	13.3	13.9
50~59세	11.5	11.1	12.7
60~69세	9.0	8.8	9.7
70세 이상	14.5	13.7	16.4
계	100.0	100.0	100.0
(수)	(4,035)	(2,904)	(1,131)

제 3 절 주거 및 가구경제의 실태

일반적으로 가족은 경제생활의 기본단위로서 가족의 경제생활은 임신 및 출산 등의 태도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등 가족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조사대상 가구의 주거형태와 부동산, 동산 등에 의한 재산실태, 그리고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 실태, 주관적 경제수준 등을 파악하여 가구의 경제수준현황을 살펴보았다.

1. 주거실태

가족구성원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주요한 조건의 하나는

‘안정된 주거’이다. 따라서 주거형태와 주택소유여부는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중요하다.

가구 및 가족특성별로 현재 거주하는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표 2-10>과 같다. 조사대상 가구 중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40.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43.3%이었다.^{주11)}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에 비해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읍·면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주12)} 이를 전국 15,741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동부지역의 경우 63.3%의 비율을 보여 2003년의 59.7%에 비해 3.6%포인트 증가하였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읍·면부지역의 경우 69.8%로 나타나서 2003년의 75.8%에 비해 6.0%포인트 감소하였다(표 2-10 참조).^{주13)}

단독주택 거주비율은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3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과 50대 이상의 고 연령층의 경우, 그리고 저학력층의 가구주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아파트 거주비율은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30~40대의 가구주의 경우, 그리고 고학력층의 가구주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생활이 안정적인 가구일수록 아파트 거주를 선호하며, 향후 일반적 주거형태로서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주고 있다.

주11) 2006년 본 조사결과와 통계청의 2005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에서 전국의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44.5%, 아파트 거주비율 41.7%(통계청, 2005)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본 조사결과는 단독주택 거주비율은 감소하고, 아파트 거주비율은 증가한 것임.

주12) 2005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에서 단독주택 및 아파트 거주비율은 동부지역이 각각 38.7%, 46.1%, 읍·면부지역은 각각 67.9%, 24.1%이었음. 따라서 아파트의 증가는 동부지역 뿐 아니라 읍·면부지역에서도 나타났는데, 그동안 신규 주택공급이 아파트에 의하여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됨.

주13) 2003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동부지역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36.6%,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59.7%인 반면, 읍·면부지역은 각각 75.8%, 18.1%이었음(김승권 외, 2003).

〈표 2-10〉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현 거주주택의 유형

(단위: %)

특성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계(수)
전체	40.6	43.3	3.2	9.7	3.3	100.0(14,483)
지역						
동부	33.4	48.2	3.5	11.6	3.3	100.0(11,645)
읍·면부	69.8	23.2	1.8	2.0	3.2	100.0(2,836)
월 소득수준						
99만원 이하	65.9	22.2	2.6	7.0	2.4	100.0(2,974)
100~199만원	52.8	28.6	3.4	11.5	3.8	100.0(3,164)
200~299만원	35.8	45.6	3.5	11.7	3.5	100.0(3,040)
300만원 이상	21.2	63.3	3.2	9.1	3.2	100.0(5,057)
가구주 성						
남자	36.5	47.1	3.4	9.9	3.1	100.0(11,719)
여자	58.0	27.2	2.2	8.7	3.9	100.0(2,764)
가구주 연령						
15~29세	58.9	26.8	1.8	8.0	4.4	100.0(1,084)
30~39세	28.9	55.5	2.8	10.5	2.3	100.0(3,339)
40~49세	29.4	53.8	3.6	9.8	3.3	100.0(3,936)
50~59세	40.6	40.1	4.0	12.0	3.3	100.0(2,787)
60세 이상	59.4	26.7	2.8	7.4	3.7	100.0(3,336)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 이하	67.8	19.6	2.8	7.5	2.3	100.0(2,572)
중학교	50.6	28.1	4.7	13.3	3.2	100.0(1,564)
고등학교	38.4	43.2	3.8	11.6	3.0	100.0(5,157)
대학 이상	26.1	59.9	2.3	7.7	4.0	100.0(5,165)

조사대상가구의 현 거주주택의 소유형태를 보면 전체의 56.7%가 자가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전세 19.7%, 전·월세 14.6%, 월세 3.8% 등의 순이었다.주14) 이를 전국 15,741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2006년에는 2003년에 비해 전·월세와 월세는 각각 3.4%포인트, 0.8%포인트 증가한 반면, 자가와 전세는 각각 2.6%포인트, 0.7%포인트 감소한 것이다.주15)

주14) 본 조사결과와 통계청 2005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 결과인 자가소유율 55.6%, 전세율 22.4%와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자가소유율은 높아지고 전세율은 다소 낮아졌음.

지역별 자가소유율은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며(읍·면부 71.3%, 동부 53.1%), 전세율은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에 비해 약 3배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 등으로 인한 도시와 농촌 간 주택공급여건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동부지역은 자가소유 비율은 증가하고, 전세비율과 전·월세 및 월세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읍·면부지역은 자가소유 비율은 감소하고, 전·월세 및 기타 주거소유 형태의 비율은 증가하였다.주16)주17)

따라서 도시지역의 주택공급사정은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농촌은 오히려 주택공급이 악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IMF 경제위기 이후 경기회복의 속도가 지역간에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주택소유형태는 무엇보다 가계 소득수준의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또한 자가소유율은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가구주 연령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난 반면, 전세율은 가구소득수준과는 관련이 없었으며,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와 가구주의 연령이 젊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대체로 주택소유형태가 가구의 경제수준 및 가구주의 경제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가구소득수준이 높음에도 현 주택소유가 전세로 나타난 것은 자녀의 교육 등으로 특정지역에 임시로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부동산 투기의 방편으로 전세를 선호하는 최근의 사회현상 등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된다.

주15) 2003년 15,75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자가소유율이 59.3%, 전세 20.4%, 전·월세 11.2%, 월세 3.0%의 비율을 보였음(김승권 외, 2003).

주16) 2005년 전국 가구의 자가, 전세, 기타 소유형태 구성비율은 55.6%, 22.4%, 22.0%이었으며, 동부지역은 51.6%, 25.4%, 23.0%, 읍·면부지역은 71.7%, 10.2%, 18.1%이었음(통계청, 2005)

주17) 2003년 조사결과를 보면, 동부지역은 자가 소유율이 56.7%, 전세 24.1%, 전·월세 12.5%, 월세 2.7%의 분포를 보인 반면, 읍·면부지역은 자가소유율이 68.5%, 전세 7.5%, 전·월세 6.8%, 월세 4.0%의 비율을 보였음(김승권 외, 2003).

<표 2-11>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현 거주주택의 소유형태

특성	(단위: %)					
	자가	전세	전·월세	월세	기타	계(수)
전체	56.7	19.7	14.6	3.8	5.2	100.0(14,482)
지역						
동부	53.1	22.8	16.1	3.5	4.5	100.0(11,644)
읍·면부	71.3	7.1	8.3	5.1	8.1	100.0(2,838)
월 소득수준						
99만원 이하	54.2	14.7	15.3	7.4	8.4	100.0(2,976)
100~199만원	45.1	19.8	23.4	6.5	5.1	100.0(3,165)
200~299만원	54.1	23.4	15.9	2.5	4.0	100.0(3,039)
300만원 이상	66.7	20.4	7.9	0.8	4.1	100.0(5,056)
가구주 성						
남자	60.5	19.4	12.2	3.3	4.6	100.0(11,718)
여자	40.4	21.1	24.6	6.1	7.7	100.0(2,763)
가구주 연령						
15~29세	13.2	33.4	37.7	9.6	6.1	100.0(1,083)
30~39세	42.6	29.9	18.0	3.4	6.1	100.0(3,338)
40~49세	58.6	19.3	14.5	3.4	4.2	100.0(3,933)
50~59세	70.6	12.8	10.4	3.5	2.7	100.0(2,790)
60세 이상	71.0	11.4	7.3	3.2	7.2	100.0(3,337)

이와 같은 경향은 <표 2-12>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가구의 현 거주주택의 소유형태가 전세·월세인 경우 자가소유비율은 25.3%로 나타나서 조사대상가구의 실제 자가소유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 거주주택이 전·월세인 조사대상가구 중 자가를 소유한 비율은 동부지역의 경우,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또한 가구주의 연령이 젊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로 가족형성기 및 가족확대기에 자녀교육, 배우자의 직장 때문에 가족이 잠시 떨어져 살 경우, 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표 2-12〉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전세·월세인 경우 자가소유 여부

(단위: %)

특성	자가 있음	자가 없음	계(수)
전체	25.3	74.7	100.0(6,234)
지역			
동부	26.7	73.3	100.0(5,426)
읍·면부	15.8	84.2	100.0(808)
월 소득수준			
99만원 이하	10.5	89.5	100.0(1,347)
100~199만원	24.6	75.4	100.0(1,727)
200~299만원	25.6	74.4	100.0(1,388)
300만원 이상	37.3	62.7	100.0(1,678)
가구주 성			
남자	24.5	75.5	100.0(4,599)
여자	27.4	72.6	100.0(1,635)
가구주 연령			
15~29세	51.3	48.7	100.0(932)
30~39세	25.6	74.4	100.0(1,903)
40~49세	19.9	80.1	100.0(1,625)
50~59세	20.6	79.4	100.0(819)
60세 이상	12.3	87.7	100.0(953)

<표 2-13>에서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로 주택의 소유형태가 자가인 경우 소유명의를 살펴보았다. 주택소유형태가 자가인 경우 소유명의를 과반수 이상인 61.3%가 남편이었고, 다음으로 부인이 25.7%, 직계존속 공동명의로 10.4%이었으며, 부부공동명의로인 비율은 2.5%로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주택소유는 소유자의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므로 소유명의를 대부분 부인보다 경제적 능력을 가진 가구주인 남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택소유명의로는 지역, 가구소득수준, 가구주의 성 및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대체로 주택소유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구주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경제능력이 없는 젊은 연령층의 경우 또는 생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인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주택소유가 직계존속 공동명의로인 비율이 높아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택소유가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는 도시지역과 가구소득 수준이 높은 고학력 젊은 연령층에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자가인 경우 소유명의

(단위: %)

특성	남편	부인	부부 공동명의	직계존속공 동명의	계(수)
전체	61.3	25.7	2.5	10.5	100.0(8,187)
지역					
동부	60.4	26.6	3.0	10.0	100.0(6,169)
읍·면부	64.1	22.9	1.0	12.0	100.0(2,018)
월 소득수준					
99만원 이하	52.5	32.9	0.7	13.8	100.0(1,611)
100~199만원	61.7	24.4	1.1	12.8	100.0(1,425)
200~299만원	63.2	23.5	2.7	10.5	100.0(1,642)
300만원 이상	64.5	24.0	3.8	7.7	100.0(3,362)
가구주 성					
남자	69.4	19.3	2.9	8.5	100.0(7,072)
여자	10.1	66.4	0.4	23.2	100.0(1,114)
가구주 연령					
15~29세	38.7	5.6	4.2	51.4	100.0(142)
30~39세	55.4	19.9	6.6	18.1	100.0(1,420)
40~49세	63.6	26.1	2.4	7.9	100.0(2,298)
50~59세	65.9	26.3	1.4	6.4	100.0(1,964)
60세 이상	60.2	29.6	1.0	9.3	100.0(2,362)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 이하	54.1	33.5	0.7	11.8	100.0(1,676)
중학교	67.3	23.9	1.6	7.3	100.0(1,005)
고등학교	63.0	24.0	1.9	11.1	100.0(2,806)
대학 이상	61.7	23.3	4.7	10.3	100.0(2,690)

주: * 실수가 2임.

2. 가구경제실태

가구의 경제수준은 재산보유정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규모와 가구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 가구소득 및 소비규모, 주관적인 경제수준 등을 파악하여 조사대상 가구의 재산보유현황을 살펴보았다.

가. 재산보유실태

재산은 건물, 토지, 임야 등을 포함하는 부동산과 저축, 증권, 채권, 적금 등을 포함하는 동산 등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조사대상 가구의 재산보유현황을 살펴보면 <표 2-14>와 같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가구는 전체의 5.8%에 불과하였다. 1억원 미만의 재산을 가진 가구는 49.3%, 1~2억 미만은 20.2%, 3억원 미만 9.1%, 5억원 미만 7.8%, 그리고 5억원 이상은 7.8%로 나타나 전체 가구의 평균 재산 보유액은 1억 5,440만원이었다. 이는 조사대상가구의 69.5%가 2억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여 조사대상가구의 재산 보유 수준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재산이 전혀 없는 비율은 동부지역이 5.0%인 반면 읍·면부지역에서는 9.1%로 높았다. 2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동부지역 26.0%, 읍·면부지역 19.5%로 동부지역의 재산보유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평균 재산 보유액은 동부지역이 1억 6,145만원, 읍·면부지역은 1억 2,614만원으로 지역간 재산규모는 약 4,000만원 의차이로, 지역간 부동산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재산규모를 살펴보면, 재산이 전혀 없는 비율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99만원 이하가 15.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월평균 가구소득 100~199만원이 8.0%, 200~299만원은 2.3%, 300만원 이상은 0.6%의 분포를 보였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재산규모는 상승하여 2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비율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99만원 이하는 7.5%, 100~199만원은 11.7%, 200~299만원은 16.4%, 300만원 이상은 48.3%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별 평균 재산보유액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99만원 이하가 6,437만원으로 가장 낮았

고, 100~199만원은 8,552만원, 200~299만원은 1억 1,730만원, 300만원 이상은 2억 7,388만원으로 가구소득에 따라 재산규모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재산규모는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재산이 전혀 없는 비율은 2인 이하의 가구를 가진 가구는 10.3%, 3~4인의 가구를 가진 가구는 2.3%, 5인 이상의 가구를 가진 가구는 3.0%로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재산 보유액은 높아져 2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비율은 2인 이하 가구는 15.3%, 3~4인 가구는 30.6%, 5인 이상 가구는 37.7%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별 평균 재산보유액은 2인 이하 가구는 1억 501만원이었고, 3~4인 가구는 1억 8,654만원, 5인 이상 가구는 2억 1,510만원으로 차이가 현저하였다.

〈표 2-14〉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보유재산 규모분포

(단위: %, 백만원)

특성	보유 재산 규모						계(수)	평균 재산 보유액
	없음	1~99	100~199	200~299	300~499	500 이상		
전체	5.8	49.3	20.2	9.1	7.8	7.8	100.0(13,820)	154.40
지역								
동부	5.0	48.5	20.6	9.4	8.4	8.2	100.0(11,058)	161.45
읍·면부	9.1	52.6	18.8	8.0	5.5	6.0	100.0(2,762)	126.14
월 소득수준								
99만원이하	15.6	64.1	12.8	3.5	2.4	1.6	100.0(2,897)	64.37
100~199만원	8.0	65.6	14.7	4.9	4.4	2.4	100.0(3,068)	85.52
200~299만원	2.3	58.4	22.9	7.4	5.5	3.5	100.0(2,951)	117.30
300만원 이상	0.6	24.6	26.6	16.2	14.7	17.4	100.0(4,824)	273.88
가구규모								
2인 이하	10.3	60.3	14.2	5.7	4.6	5.0	100.0(5,872)	105.01
3~4인	2.3	42.4	24.7	11.4	9.6	9.6	100.0(6,737)	186.54
5인 이상	3.0	34.7	24.7	13.0	13.1	11.6	100.0(1,211)	215.10
가구주 성								
남자	4.1	45.2	22.5	10.3	9.0	9.0	100.0(11,170)	174.28
여자	13.1	66.8	10.9	4.0	2.7	2.6	100.0(2,648)	70.51

이와 같이 가구원수에 따른 재산 규모의 차이는 가족주기에 의한 것이 크다

고 생각된다. 즉, 2인 이하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대부분 미혼독신 또는 가족형성 초기의 젊은 부부가구이거나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노인들로 구성된 노인부부가구 또는 노인단독 가구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3인 이상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가족확대기로 경제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재산이 없거나 재산규모가 1억원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남성가구주 가구가 49.3%인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는 79.9%로 훨씬 높았다. 또한, 재산규모가 2억원 이상인 비율도 남성가구주 가구는 28.3%, 여성가구주 가구는 9.3%로 남성가구주 가구가 여성가구주 가구보다 상당히 높았다. 평균 재산 규모는 이와 같은 경향을 잘 반영하여서 여성가구주 가구의 평균 재산보유액은 7,051만원으로 남성가구주 가구의 1억 7,428만원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여성 한부모가족과 여성노인 단독가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 부채실태

가구의 경제수준은 재산규모뿐 아니라 부채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조사대상가구의 부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채규모와 부채원인 등을 살펴보았다.

1) 부채규모

조사대상가구의 부채현황을 살펴보면 <표 2-15>와 같다. 부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가구는 전체의 53.1%이었으며, 나머지 46.9%는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규모가 1억원 미만인 가구는 39.0%이었고, 1억원 이상의 부채규모를 가진 가구는 7.9%로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규모는 2,746만원이었다.

지역별로 부채가 없는 가구의 비율은 동부지역이 53.3%, 읍·면부지역이 52.2%로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 보다 약간 높았다. 부채를 갖고 있는 가구 중

에서 부채규모가 1억원 미만인 비율은 동부지역이 38.5%, 읍·면부지역이 40.9% 이었고, 1억원 이상의 부채규모를 가진 가구의 비율은 동부지역이 8.0%, 읍·면부지역이 6.9%로 나타났다. 지역별 평균 부채액은 동부지역이 2,827만원이었고, 읍·면부지역이 2,417만원으로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부채율은 약간 높았으나, 부채규모는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 보다 높았는데, 이는 도시가 농촌보다 물가 또는 지대 값 등이 높은 데서 오는 가구지출규모의 차이로 해석되며 농촌지역의 부채율과 부채규모는 농촌생활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부채규모를 살펴보면, 부채가 전혀 없는 비율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99만원 이하가 6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100~199만원이 54.3%, 200~299만원은 48.3%, 300만원 이상은 45.3%의 분포를 보였다. 부채를 갖고 있는 비율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99만원 이하는 30.5%, 100~199만원은 45.6%, 200~299만원은 51.7%, 300만원 이상은 54.8%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채를 가진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평균 부채액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99만원 이하가 1,117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100~199만원은 1,853만원, 200~299만원은 2,410만원, 300만원 이상은 4,474만원으로 가구소득에 따라 부채 규모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채비율과 부채규모가 높은 것은 소득수준에 따라 가구경제규모가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부채규모는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부채가 전혀 없는 비율은 2인 이하의 가구원을 가진 가구는 67.7%, 3~4인의 가구원을 가진 가구는 43.4%, 5인 이상의 가구원을 가진 가구는 35.7%의 비율을 보였다. 가구규모별로 부채를 가진 비율은 2인 이하 가구는 32.4%, 3~4인 가구는 56.6%, 5인 이상 가구는 64.0%로 나타났다. 가구규모별 평균 부채액은 2인 이하 가구는 1,572만원이었고, 3~4인 가구는 3,382만원, 5인 이상의 가구는 4,967만원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부채액 규모에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부채율과 부채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가족주기 단계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2인 이하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대부분 가족형성기 또는 가족축소완료기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에 비해 3인 이상 가구원을 가진 가구는 가족확대기 이후에 속하는 가구로 자녀교육, 주택구입, 관혼상제 등으로 가족경제생활에 목돈 등이

상대적으로 필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부채를 갖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남성가구주 가구가 51.0%, 여성가구주 가구는 29.4%로 남성가구주 가구가 여성가구주 가구보다 높았다. 부채규모도 남성가구주 가구는 3,120만원, 여성가구주 가구는 1,171만원으로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훨씬 높았다. 이는 남성가구주 가구와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제규모에서 오는 차이로 생각되며 여성가구주 가구가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경제적인 형편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표 2-15〉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부채 규모

(단위: %, 백만원)

특성	부채규모						계(수)	평균 부채액
	없음	1~99	100~ 199	200~ 299	300 ~499	500 이상		
전체	53.1	39.0	5.0	1.5	0.8	0.6	100.0(14,060)	27.46
지역								
동부	53.3	38.5	5.1	1.5	0.8	0.6	100.0(11,281)	28.27
읍·면부	52.3	40.9	4.1	1.5	0.8	0.5	100.0(2,777)	24.17
월 소득수준								
99만원 이하	69.4	28.2	1.5	0.5	0.1	0.2	100.0(2,938)	11.17
100~199만원	54.3	41.3	2.7	0.8	0.5	0.3	100.0(3,083)	18.53
200~299만원	48.3	45.9	4.2	0.9	0.4	0.3	100.0(2,960)	24.10
300만원 이상	45.2	40.2	8.8	3.0	1.6	1.2	100.0(4,936)	44.74
가구규모								
2인 이하	67.7	28.2	2.5	0.9	0.4	0.4	100.0(6,010)	15.72
3~4인	43.4	46.7	6.4	1.9	0.9	0.7	100.0(6,829)	33.82
5인 이상	35.7	48.9	8.7	3.1	2.4	1.2	100.0(1,221)	49.67
가구주 성								
남자	48.9	42.0	5.6	1.8	0.9	0.7	100.0(11,361)	31.20
여자	70.7	26.3	2.1	0.5	0.4	0.1	100.0(2,697)	11.71

2) 부채원인

부채를 갖게 된 원인을 보면 주거비 및 주택마련이 50.1%, 사업자금이 27.5%

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또한 생계비 때문이 8.4%, 빚보증, 유흥비, 자동차구입비 때문이 7.1%, 교육비 4.0%, 의료비 2.1%, 관혼 상제비 때문이 0.8% 등이었다. 따라서 부채를 지게 되는 것은 대부분이 주거생활과 경제터전의 마련 때문이었다. 특히 생계비가 부채의 원인인 가구도 8.4%가 있어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 부채원인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부채의 주요 원인은 주거비 및 주택마련이 55.0%로 가장 많았고, 이 외에도 사업자금과 생계비 때문이 원인인 경우가 있었다. 반면, 읍·면부지역은 사업자금이 4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주거비 및 주택마련, 생계비 등이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즉, 도시지역은 주로 주거생활안정 때문에 부채를 지고 있으나, 농촌지역은 생활터전 마련 때문에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부채원인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채원인으로 생계비, 사업자금, 의료비, 관혼상제비 그리고 빚보증·유흥비·자동차구입비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대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채원인은 주거비 및 주택마련과 사업자금의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은 사업자금 뿐 아니라 기본생계비와 의료비 때문에 부채를 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의 현실화 방안이 요구된다.

부채원인은 가구원수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모든 가구원수에 서 주거비 및 주택마련, 사업자금, 생계비 등이 공통적인 주요 부채원인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 2인 이하 가구원수로 구성된 가구는 생계비, 의료비 그리고 빚보증·유흥비·자동차구입비 등도 높은 부채의 원인이었다. 반면, 3~4인으로 이루어진 가구와 5인 이상 가구는 교육비가 부채의 원인인 비율이 약간 높았다. 이는 부채를 지게 되는 것이 주로 주거, 생활터전 마련 및 생계비 때문으로 가족주기 및 가족형태와는 밀접한 관련이 없음을 말해준다.

부채원인은 가구의 성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성가구주 가구는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기본 생계비나 교육비, 의료비 때문에 부채를 지

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여성 가구주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들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

〈표 2-16〉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부채의 주된 원인

(단위: %)

특성	생계비	주거비/ 주택마련	교육비	사업 자금	의료비	관혼 상제비	기타 ¹⁾	계(수)
전체	8.4	50.1	4.0	27.5	2.1	0.8	7.1	100.0(6,754)
지역								
동부	8.2	55.0	3.7	23.8	1.7	0.8	6.8	100.0(5,409)
읍·면부	9.5	30.5	5.0	42.4	3.5	1.1	8.0	100.0(1,342)
월 소득수준								
99만원 이하	19.1	29.7	3.5	27.7	7.7	1.4	10.9	100.0(907)
100~199만원	16.0	37.2	5.7	29.8	2.6	1.2	7.4	100.0(1,448)
200~299만원	6.9	53.3	4.5	28.3	0.8	0.9	5.3	100.0(1,570)
300만원 이상	2.0	62.2	2.9	25.5	0.5	0.4	6.5	100.0(2,758)
가구규모								
2인 이하	10.9	41.2	3.7	29.6	4.1	1.4	9.1	100.0(1,984)
3~4인	7.2	54.5	4.1	25.9	1.1	0.6	6.5	100.0(3,966)
5인 이상	8.2	50.5	4.2	30.3	1.5	0.5	4.7	100.0(804)
가구주 성								
남자	7.5	51.7	3.6	28.4	1.5	0.8	6.4	100.0(5,939)
여자	15.3	38.0	6.5	21.1	5.9	1.3	11.8	100.0(815)
가구주 연령								
15~29세	16.2	52.9	7.4	9.3	2.0	1.0	11.3	100.0(204)
30~39세	10.1	59.6	0.6	21.7	1.0	0.5	6.4	100.0(1,761)
40~49세	8.0	49.7	3.8	30.1	1.3	0.3	6.9	100.0(2,299)
50~59세	7.0	43.0	8.8	31.7	1.9	1.3	6.3	100.0(1,466)
60세 이상	7.1	44.3	2.6	29.5	5.7	1.9	9.0	100.0(1,019)

주: 1) 기타에는 빚보증, 유흥비, 자동차구입비 등이 포함됨.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부채원인은 차이를 보였다. 모든 연령층에서 주거비 및 주택마련이 공통적인 주요 부채원인으로 나타났으나, 이 외에 연령별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 3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의 부채원인은 생계비, 교육비 그리

고 빚보증·유홍비·자동차구입비 등이 높은 반면, 30세 이상 연령층은 사업자금이 부채의 원인인 비율이 높았다. 한편 60세 이상 고 연령층의 부채원인으로 의료비의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은 편이었다. 이와 같이 가구의 연령대별로 부채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나서 대상별로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 가구의 소득 및 소비 실태

조사대상가구의 소득 및 소비지출 현황을 통해 가족의 실질적인 경제생활 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가구의 월 소득 및 소비분포를 보면, 전체 가구의 20.9%가 월 99만원 이하이었다. 또한 100~199만원 이하 22.2%, 200~299만원 이하 21.3%, 300만원 이상은 35.5%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254만원이었다. 평균 가구원수 3인을 기준으로 2006년 최저생계비를 적용할 경우 최저생계비는 94만원 수준으로 이와 비교할 때 조사대상가구의 20.6%는 최저생계비 수준이거나 그 이하의 수준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월 99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비율은 2003년도(김승권 외, 2003) 23.3%에 비해 2.4%포인트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다소 경제가 회복된 것에 기인되는 것으로 이해되나, 아직도 다수의 가정이 빈곤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월 가구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월 가구소득이 99만원 이하인 가구는 동부지역 16.3%, 읍·면부지역 40.0%이었다. 100~199만원 이하는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이 각각 22.2%, 22.6%의 비율을 보였고, 200~299만원 이하는 각각 22.4%, 17.3%이었으며, 300만원 이상은 동부지역이 39.3%, 읍·면부지역이 20.2%이었다. 지역간 월평균 가구소득은 동부지역이 약 272만원, 읍·면부지역 약 179만원으로 두 지역간에 93만원 정도의 소득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읍·면부지역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49만원 이하인 경우가 21.1%로 나타났다. 이는 읍·면부지역의 평균가구원수가 2.6명^{주18)}임을 고려할 때 최저생계비에도 크게 미

주18) 본 조사 결과임.

치지 못하는 소득수준^{주19)}으로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촌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7〉 소득·소비 규모별 가구분포

(단위: %, 만원)

구분	전국	동부	읍·면부
월소득			
49만원 이하	9.7	6.9	21.1
50~99만원 이하	11.2	9.4	18.9
100~149만원 이하	11.0	10.8	12.0
150~199만원 이하	11.2	11.4	10.6
200~249만원 이하	12.4	13.0	10.1
250~299만원 이하	8.9	9.4	7.2
300만원 이상	35.5	39.3	20.2
계	100.0	100.0	100.0
(수)	(14,239)	(11,429)	(2,810)
평균 월소득	253.8	272.3	178.5
월소비지출			
49만원 이하	7.9	4.9	20.4
50~99만원 이하	13.8	12.2	20.4
100~149만원 이하	15.5	15.8	14.3
150~199만원 이하	15.5	15.9	13.8
200~249만원 이하	14.9	15.7	11.3
250~300만원 이하	9.8	10.5	7.1
300만원 이상	22.6	25.0	12.6
계	100.0	100.0	100.0
(수)	(14,302)	(11,487)	(2,815)
평균 월 소비지출	206.5	219.6	153.1

가구별 월 소비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가구의 21.7%가 월 99만원 이하의 소비지출을 하였고, 100~199만원 이하는 31.0%, 200~299만원 이하를 지출하는 가구의 비율은 24.7%, 300만원 이상은 22.6%의 분포를 보였다. 전체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은 약 207만원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의 81.5% 수준을 지출하는

주19) 2006년 2인가구 최저생계비는 70만 849원, 3인가구 최저생계비는 93만 9,849원임(보건복지부, 2006).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체가구의 소비지출 규모는 소득수준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가구 소득에 기준하여 소비 및 저축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 소비지출 규모는 월 99만원 이하를 지출하는 가구의 비율은 동부지역이 17.1%, 읍·면부지역이 40.8%이었으며, 100~199만원 이하는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이 각각 31.7%, 28.1%이었다. 또한, 200~299만원 이하는 동부지역이 26.2%, 읍·면부지역이 18.4%이었으며, 300만원 이상은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이 각각 25.0%, 12.6%이었다. 지역간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은 동부지역이 약 220만원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의 80.9%를, 읍·면부지역은 153만원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의 85.5% 정도를 지출하였다.

〈표 2-18〉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구소득 수준분포

(단위: %)

특성	99만원 이하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 이상	계(수)
전체	20.9	22.2	21.3	35.5	100.0(14,241)
지역					
동부	16.2	22.1	22.3	39.3	100.0(11,429)
읍·면부	39.9	22.6	17.3	20.2	100.0(2,811)
가구규모					
2인 이하	42.4	28.8	14.8	14.0	100.0(6,054)
3~4인	5.5	18.4	27.1	49.0	100.0(6,944)
5인 이상	1.9	11.5	21.5	65.1	100.0(1,243)
세대결합형태					
1세대	43.0	27.8	14.7	14.5	100.0(5,323)
2세대	7.0	19.1	26.1	47.8	100.0(7,846)
3세대이상	12.7	17.6	19.3	50.4	100.0(977)
가구주 성					
남자	13.6	21.1	23.4	41.8	100.0(11,515)
여자	51.6	27.0	12.4	9.0	100.0(2,724)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로 월 가구소득의 분포를 보면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높았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3세대 이상의 가구가, 그리고 남성가구주

가구가 여성가구주 가구보다 높은 소득분포를 보였다(표 2-18 참조). 이와 같이 도시가 농촌보다 소득분포가 높은 것은 전술된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수준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가구원수가 적은 가구보다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주20 또한 3세대 이상의 가구가 1세대나 2세대보다 소득이 높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리고 남성가구주 가구가 여성가구주 가구보다 소득이 높은 것은 대체로 여성가구주는 저임금의 비전문직에 편중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2-19〉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구 소비지출 수준 분포

(단위: %)

특성	99만원 이하	100~ 199만원	200~ 299만원	300만원 이상	계(수)
전체	21.7	31.0	24.7	22.6	100.0(14,301)
지역					
동부	17.0	31.7	26.2	25.0	100.0(11,487)
읍·면부	40.8	28.1	18.5	12.6	100.0(2,813)
가구규모					
2인 이하	46.3	36.2	11.2	6.4	100.0(6,063)
3~4인	4.1	29.7	34.8	31.4	100.0(6,986)
5인 이상	1.1	13.7	33.5	51.6	100.0(1,252)
세대결합형태					
1세대	47.6	34.5	10.9	6.9	100.0(5,333)
2세대	5.6	29.5	33.6	31.3	100.0(7,894)
3세대 이상	11.4	23.0	27.5	38.0	100.0(981)
가구주 성					
남자	13.8	31.0	28.2	27.0	100.0(11,568)
여자	55.1	31.1	10.0	3.8	100.0(2,732)

가구 및 가구주 특성에 따른 월 가구소비의 분포는 소득수준과 유사한 경향

주20) 세대구성에서 유추되는 경제활동참여 가구원의 연령별, 직급별 차이 등이 월평균 소득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을 보였다. 즉, 동부지역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3세대 이상의 가구가, 그리고 남성가구주 가구가 높은 소비지출 분포를 보였다(표 2-19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소득규모에 따라 소비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생계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의·식·주 비용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에서도 소비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경우 소득 및 소비지출의 수준이 99만원 이하인 가구의 경우 경제생활의 어려움이 짐작된다. 특히 본 조사결과 농촌지역과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제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어서 이들 가족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라. 주관적 경제수준

조사대상가구의 주관적인 경제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곤란한 항목과 경제적 자립정도를 살펴보았다.

1) 경제적 곤란

<표 2-20>은 조사대상가구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항목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전체가구의 29.2%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반면, 나머지 70.8%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가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은 사교육비가 전체의 1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주거비가 12.6%, 자녀양육 및 교육비는 10.2%이었다. 이 외에도 각종 공과금과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8.7%, 7.8%이었다. 따라서 조사대상가구의 경제생활의 주된 어려움은 사교육비, 자녀양육 및 교육비 그리고 주거비 부담으로 나타났고, 의료비도 가구경제생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비율은 동부지역이 30.1%, 읍·면부지역은 25.4%의 비율을 보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농촌이 도시보다 높았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은 지역간 차이를 보여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는 사교육비, 주거비,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등의 순으로 전

체가구가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는 의료비, 주거비, 자녀양육 및 교육비 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도시지역은 사교육비로, 농촌지역은 의료비 같이 기본적인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비율은 가구원수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여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은 2인 이하 가구원을 가진 가구는 주거비, 의료비, 각종 공과금 등 기본생활에 필요한 항목으로, 3인 이상의 가구원을 가진 가구는 사교육비, 자녀양육 및 교육비, 주거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생활주기로 설명되는데, 2인 이하 가구는 가족형성기 및 가족축소기로 주택구입이나 노인의 만성질환 등에, 3인 이상 가구는 가족확대기로 자녀양육 및 교육비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세대별로는 가구규모와 같은 경향을 보여 3세대 가구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 또한 가구원수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서 1세대 가구는 주거비, 의료비 및 각종 공과금 등 기본 생활비 부문에서, 2세대와 3세대 가구는 자녀양육 및 교육비 등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성별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비율은 남성가구주 가구가 29.4%, 여성가구주 가구는 28.1%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은 남성가구주 가구는 사교육비,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주거비 등에서, 여성가구주 가구는 주거비, 의료비 및 각종 공과금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부문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농촌가구, 노인가구 및 여성가구주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2-20〉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항목

(단위: %)

특성	1) 자녀양육 및 교육비(수업료, 등록금 등) 2) 사교육비(학원, 과외 등) 3) 의복 및 생활용품 구입비 4) 식료품비(주식·부식비 등) 5) 각종 공과금(소득세, 보험료, 각종세금) 6) 의료비 7) 주거비(주택유지비, 집세 및 주택용자금 상환) 8)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등) 9) 자동차유지비 등 교통비 10) 비동거 부양가족 지원 11) 기타(부채상환 및 교제비)											계(수)	
	0	1	2	3	4	5	6	7	8	9	10		11
전체	29.2	10.2	14.6	0.5	4.6	8.7	7.8	12.6	1.9	3.4	0.9	5.7	100.0(14,473)
지역													
동부	30.1	10.5	16.2	0.5	4.4	8.7	5.9	12.7	1.7	3.2	1.0	5.2	100.0(11,635)
읍·면부	25.4	9.0	7.9	0.5	5.1	8.7	15.3	12.3	3.1	4.2	0.8	7.6	100.0(2,836)
가구규모													
2인 이하	36.2	4.1	1.1	0.8	6.6	10.3	13.6	15.6	2.9	3.0	1.1	4.8	100.0(6,141)
3~4인	24.9	14.3	22.7	0.3	3.2	7.9	3.6	10.8	1.4	3.6	0.9	6.4	100.0(7,063)
5인 이상	18.7	17.3	34.8	0.1	2.5	5.0	2.7	8.1	0.5	3.9	0.3	6.1	100.0(1,269)
세대결합형태													
1세대	37.5	3.5	0.5	0.8	6.4	10.1	14.0	15.2	3.0	2.9	1.3	4.8	100.0(5,402)
2세대	24.1	14.2	23.6	0.3	3.4	7.9	3.7	10.9	1.3	3.6	0.8	6.2	100.0(7,980)
3세대 이상	22.0	15.5	20.1	0.1	4.2	7.1	7.0	11.6	1.7	3.6	0.3	6.7	100.0(997)
가구주 성													
남자	29.4	11.3	17.1	0.2	3.8	8.2	6.1	11.0	2.0	3.6	1.0	6.1	100.0(11,711)
여자	28.1	5.8	3.9	1.4	7.6	10.5	14.6	19.3	1.8	2.5	0.5	3.9	100.0(2,760)

2) 경제적 자립정도

조사대상가구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적 자립정도를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은 전체의 41.9%이었고, 보통이라는 인식은, 29.3%, 자립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은 28.8%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다는 비율은 동부지역이 43.8%, 읍·면부지역은 34.2%로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높았다. 이는 농촌지역의 경우 재산규모, 부채규모 및 소득과 소비지출 등에서 나타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다는 비율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높았으며, 반대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높았다. 즉,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다는 비율은 3~4인 가구는 49.0%, 5인 이상은 47.4%, 2인 가구는 32.7% 순으로 높아서 3인 이상 가구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다는 비율은 2인가구가 39.5%, 3~4인은 25.0%, 5인 이상은 20.3% 순이었다. 이는 2인 가구는 가족주기 상으로 볼 때 가족형성기 또는 가족축소기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였거나 소득원이 감소하고, 3인 이상 가구는 가족확대완료기로 접어들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는 시기인 것으로 설명된다.

〈표 2-21〉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경제적 자립정도

(단위: %)

특성	전혀 자립하지 못함	별로 자립하지 못함	보통	약간 자립	상당히 자립하고 있다	계(수)
전체	10.1	18.7	29.3	16.9	25.0	100.0(14,436)
지역						
동부	8.9	17.8	29.5	17.4	26.4	100.0(11,602)
읍·면부	14.9	22.3	28.6	15.0	19.2	100.0(2,834)
가구규모						
2인 이하	18.2	21.3	27.8	13.7	19.0	100.0(6,125)
3~4인	4.2	16.8	30.1	19.5	29.5	100.0(7,043)
5인 이상	3.2	17.1	32.3	17.9	29.5	100.0(1,266)
세대결합형태						
1세대	18.0	20.0	28.0	14.2	19.7	100.0(5,392)
2세대	4.8	17.7	29.9	18.8	28.7	100.0(7,953)
3세대 이상	8.7	19.2	32.4	15.9	23.8	100.0(996)
가구주 성						
남자	6.4	16.9	30.5	18.3	27.9	100.0(11,683)
여자	25.6	26.2	24.3	11.0	12.9	100.0(2,752)

세대별로는 가구규모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 2세대와 3세대 가구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다(2세대 47.5%, 3세대 이상 39.7%)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1세대 가구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38.0%로 높았다.

가구의 성별에 따라서 경제적 자립정도에 대한 인식은 다르게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다는 비율은 남성가구주 가구가 46.2%로 여성가구주 가구 23.9%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다는 비율은 여성가구주 가구가 51.8%로 남성가구주 가구 23.3%에 비해 높았다. 이는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 재산규모, 부채규모 및 소득과 소비지출 등에서 나타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 4 절 가구 및 가족 제 특성의 시사점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서구화 등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가치관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인구학적 요인과 함께 가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가족구조는 가족규모가 감소하면서 세대구성은 단순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1인가구, 노인단독가구, 한부모가구, 여성가구주가구 같은 다양한 가족형태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본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가구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있는데 이는 가구내 평균가구원수의 감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가구규모 감소의 주요 원인은 출산율 감소, 핵가족화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세대구성이 변화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던 2세대, 3세대 가족이 감소하는 대신에, 1세대 가족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성인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한 미혼가구의 증가, 노인부부가족의 증가, 평균수명의 차이에서 비롯된 노인 여성단독가구의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가구의 증가는 노인복지수요와 함께 노인 부양부담을 증가시켜서 높은 사회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가족해체의 증가로 인해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가 변화되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여성가구주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이다. 이와 함께 향후 해체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해체가족을 다양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이데올로기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가족은 경제생활의 기본단위라는 점에서 가족과 경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본 조사결과, 도시지역은 농촌지역에 비하여 자가소유율은 낮은 반면, 전세율은 높아서 주거생활이 불안정함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여성가구주 가구는 자가소유율이 낮아서 안정적이지 못한 주거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거정책이 지역 및 가족유형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농촌가구의 재산규모는 다른 가구에 비하여 훨씬 낮은 편이었으며, 부채규모 또한 평균 부채수준을 상회하여서, 농촌가구의 이중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정책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재산 외에 부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부채원인이 주택마련부터 기본적인 생계비 및 의료비 등 다양하게 나타나서 지역 및 가족유형별로 차별화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월평균 가구소득과 소비수준을 보면 조사대상가구의 월 소비지출은 가구소득의 81.5%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소비하였고, 지역간에도 농촌이 도시보다 평균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과 재산 등 여러 요인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대상가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은 지역 및 가구주 특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도시지역과 남성가구주 가구는 주로 자녀와 관련된 양육 및 사교육비 부담 그리고 주거비 등에서, 농촌지역과 여성가구주 가구는 의료비, 주거비, 각종 공과금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은 가구규모 및 세대결합 형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욕구가 다름을 의미하며, 지역, 가족유형 및 가족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제 3 장 임신행태 및 임신종결형태 변화

본 장에서는 임신행태로서 임신경험횟수와 남아임신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전체 임신의 종결형태와 불임실패를 분석한다. 특히, 임신종결형태는 정상출생과 임신소모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임신소모는 다시 자연유산, 사산, 인공임신중절 등으로 파악한다. 인공임신중절경험이 있는 부인의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와 이유 등을 분석한다.

제 1 절 임신경험 횟수

부인들의 임신횟수에 관한 분포는 큰 변화를 보였는데, 최근 조사에서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는 1997년까지는 조사대상부인의 임신경험은 4회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2000년 조사부터는 2회의 임신경험을 가진 부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사실이다.

즉, 1994년에는 4회 이상 임신경험을 한 부인이 31.7%로 가장 높았고, 이는 1997년 29.2%로 다소 저하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3년 조사에서는 2회의 임신경험을 가진 부인의 비율이 30.3%로 가장 높았고, 4회 이상 임신경험부인은 26.5%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2006년 조사에서의 임신횟수 분포는 2회의 임신을 경험한 부인이 3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회 이상 25.9%, 4회 18.9%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부인의 임신경험횟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 최근에는 다소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조사대상 부인의 평균임신횟수는 1994년의 3.0회에서 1997년에는 2.8회로 낮아졌고, 2000년에서 2003년 동안에는 2.7회가 지속되었고, 2006년에는 다시 2.5회로 낮아졌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부인의 임신경험횟수는 현저한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며, 평균 3회 미만에 머물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총 임신횟수의 변화(1994~2006년)

(단위: %, 회)

연도	총 임신횟수					계(수)	평균 임신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1994 ¹⁾	4.5	13.2	25.6	25.1	31.7	100.0(5,183)	3.0
1997 ²⁾	4.7	13.6	27.6	24.9	29.2	100.0(5,418)	2.8
2000 ³⁾	4.7	15.6	29.5	23.7	26.5	100.0(6,408)	2.7
2003 ⁴⁾	4.6	12.8	30.3	25.8	26.5	100.0(6,596)	2.7
2006 ⁵⁾	5.8	15.9	33.5	25.9	18.9	100.0(5,394)	2.5

자료: 1)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2)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3)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4)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5) 본 조사결과

임신횟수를 조사대상부인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표 3-2>와 같이 제시된다.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들이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들보다 임신횟수가 많았다. 즉, 4회 이상 임신경험이 있는 부인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22.8%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18.2%로 보다 높았고, 반면에 1회 이하의 임신경험이 있는 부인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22.1%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19.4%보다 높았다. 따라서 평균 임신횟수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2.43회,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2.60회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학력층의 부인과 젊은 연령층의 부인이 도시지역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임신횟수 분포는 부인의 연령에 따라서 약 3배 정도의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즉, 4회 이상 임신경험이 있는 부인은 15~24세의 낮은 연령층에서는 2.4%에 불과하였으나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점차 높아져 35~39세 연령층은 21.8%, 40~44세 연령층은 30.3%로 나타났다. 반면에 1회 이하의 임신경험이 있는 부인은 15~24세 저연령층에서는 69.1%로 높았으나 연령증가에 따라 점차 낮아져 35~39세 연령층 부인은 11.6%, 40~44세 연령층 부인은 7.3%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평균 임신횟수는 15~24세 연령층 부인은 1.14회로

낮았으나 35~39세 연령층 부인은 2.73회, 40~44세 연령층 부인은 3.02회로 높았다. 이와 같이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임신횟수가 많음은 결혼기간과 관련되는 것으로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으면 임신횟수가 많았고, 교육수준이 높으면 임신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4회 이상의 임신경험을 가진 부인이 초교 이하의 학력층에서는 28.8%로 높았으나 대학 이상의 학력층에서는 13.1%로 약 절반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1회 미만의 임신경험을 가진 부인은 초교 이하의 학력층에서는 13.6%에 불과하였으나 대학 이상의 학력층에서는 30.7%로 두 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교육수준별 평균 임신횟수는 초교 이하 부인은 3.04회로 많았으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적어져 대학 이상의 부인은 2.15회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소자녀관 정착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원임신을 적절히 예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되며, 아울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젊은 부인들이 많아 늦은 결혼과 이에 의한 임신가능 기간이 절대적으로 짧은데서 오는 결과이기도 하다.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임신횟수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4회 이상 임신을 한 경우가 취업부인 21.0%, 비취업부인 16.8% 이었고, 반면에 1회 이하 임신을 한 경우는 취업부인 21.3%, 비취업부인 22.2%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부인의 취업여부별 평균 임신횟수는 2.48회, 비취업부인이 2.38회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상으로 부인특성별 임신횟수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부인의 임신횟수와 부인연령은 정비례하고, 임신횟수와 부인의 교육수준과는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별 임신횟수의 차이도 이와 같은 결과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부인의 학력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경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영아사망률의 감소, 피임실천의 생활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향후 부인의 임신경험은 소자녀관의 정착과 원하지 않는 임신의 감소로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지속적인 저하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총 임신횟수 분포(2006년)

(단위: %, 회)

특성	총 임신횟수							평균 임신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계(수)	
전체	5.8	15.9	33.5	25.9	12.5	6.5	100.0(5,396)	2.46
지역								
동부	5.9	16.2	34.0	25.6	12.0	6.2	100.0(4,608)	2.43
읍·면부	4.9	14.5	30.2	27.5	14.8	8.0	100.0(788)	2.60
연령								
15~24세	28.6	40.5	23.0	5.6	1.6	0.8	100.0(126)	1.14
25~29세	19.8	41.2	25.8	9.7	2.7	0.8	100.0(636)	1.37
30~34세	7.0	20.4	39.6	21.5	8.7	2.9	100.0(1,431)	2.14
35~39세	1.7	9.9	34.8	31.8	14.6	7.2	100.0(1,663)	2.73
40~44세	1.4	5.9	30.4	31.9	18.5	11.8	100.0(1,537)	3.02
교육수준								
초교 이하	4.5	9.1	28.8	28.8	10.6	18.2	100.0(66)	3.04
중학교	2.6	7.5	28.7	31.7	17.7	11.7	100.0(265)	2.96
고등학교	4.4	11.7	33.2	28.6	14.7	7.4	100.0(2,862)	2.63
대학 이상	8.0	22.7	34.6	21.7	9.0	4.1	100.0(2,198)	2.15
취업여부								
취업	7.5	13.8	30.7	27.0	13.5	7.5	100.0(2,665)	2.48
비취업	4.1	18.1	36.2	24.8	11.4	5.4	100.0(2,729)	2.38

제 2 절 남아출산노력 경험

한국사회에서 잔존하고 있는 남아선호의식은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이 임신과정에서 남아출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이는 후술하는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로 임신중절로 이어지는 양상이 발생시키기도 한다. 물론 법적으로 성감별을 위한 의료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나 임신당사자 자신의 방법에 의하여 또는 일부 의료인의 협조에 의한 음성적 성감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원한 임신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임신과정에서의 개인적 노력에 의하여 임신중절 형태가 결정되어진다고 하겠다.

본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남아출산을 위한 노력을 한 경험률은 6.1%로 나타나 2003년의 6.0%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지역별 남아출산 노력 경험률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5.9%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7.0%보다 낮았다. 연령별로는 15~24세 연령층 부인의 남아출산 노력 경험률은 1.1%이었으나,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점차 높아져 35~39세 연령층 부인은 6.9%, 40~44세 연령층 부인 8.6%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부인의 남아출산을 위한 노력 경험률은 각각 1.6%, 7.1%이었으나 고등학교 학력의 부인은 6.0%, 대학 이상 학력의 부인은 6.2%로 대체로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남아출산 노력 경험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부인이 비취업부인 보다 남아출산 노력경험률이 다소 높았다.

남아출산을 위한 노력의 유형별 경험률을 살펴보면, 자연요법이 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초음파검사 1.9%이었다. 그 외에도 양수검사 0.5%, 융모막 검사 0.1% 등이 있었다. 자연요법에 의한 노력은 동부지역 거주부인(3.6%)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5.1%)보다 낮았고, 연령별로는 35~39세 연령층 부인(4.8%)이 가장 많았으며, 학력별로는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4.1%)이 가장 많았고, 비취업부인(3.9%)이 많았다.

자연요법 다음으로 높은 남아출산 노력 경험률을 보인 초음파검사는 동부지역 거주부인(1.9%)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2.4%)보다 낮았으며, 연령별로는 40~44세 연령층 부인(3.5%)이 가장 많았으며, 학력별로는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부인(3.1%)이 가장 많았고, 취업부인(2.4%)이 많았다.

〈표 3-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전·후 남아출산 노력 경험률

(단위: %, 명)

특성	노력 없음	노력유형별 경험률 ¹⁾						(분석 대상수)
		소계	자연 요법	양수검사	음모막 검사	초음파 검사	기타	
2003년	94.0	6.0	3.6	0.5	0.1	2.5	0.6	(6,296)
2006년	93.9	6.1	3.8	0.5	0.1	1.9	1.0	(5,081)
지역								
동부	94.1	5.9	3.6	0.4	0.1	1.9	1.0	(4,333)
읍·면부	93.0	7.0	5.1	0.9	-	2.4	0.8	(748)
연령								
15~24세	98.9	1.1	-	-	-	1.1	-	(90)
25~29세	98.0	2.0	2.0	-	-	0.2	-	(511)
30~34세	95.9	4.1	2.7	0.2	0.1	1.1	0.7	(1,332)
35~39세	93.1	6.9	4.8	0.4	0.2	1.8	1.2	(1,634)
40~44세	91.4	8.6	4.4	1.1	0.1	3.5	1.4	(1,513)
교육수준								
초교 이하	98.4	1.6	1.6	-	-	-	-	(63)
중학교	92.9	7.1	2.7	1.6	-	3.1	0.8	(255)
고등학교	94.0	6.0	3.7	0.5	0.1	2.4	0.8	(2,736)
대학 이상	93.8	6.2	4.1	0.4	0.1	1.2	1.2	(2,022)
취업여부								
취업	93.5	6.5	3.7	0.7	0.1	2.4	1.0	(2,465)
비취업	94.3	5.7	3.9	0.3	0.1	1.5	1.0	(2,616)

주: 1) 임신경험이 있는 부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 비율임.

자료: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제 3 절 임신종결 형태

모든 임신은 원한 임신과 원치 않은 임신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원하였든 원치 않았든 모든 임신은 어떤 형태로든 종결될 수밖에 없다. 즉, 어떠한 과정을 겪든 모든 임신은 정상출생과 임신소모라고 하는 사산,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으로 종결된다. 물론 임신의 종결형태는 본인의 의도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원한 임신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원하지 않은 임신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임신소모로 종

결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출산으로 종결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임신의 종결은 그 사회의 경제수준, 문화적 배경, 보건의료수준, 양성평등의 정도와 부부 또는 출산당사자의 사회경제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본 절에서는 부인이 경험한 임신규모와 이들 임신이 어떠한 형태로 종결되는지를 시계열적 분석에 의하여 규명한다. 부인의 임신종결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5~44세 유배우부인들이 경험한 모든 임신의 종결형태를 현재 임신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94년, 1997년, 2000년, 2003, 그리고 2006년의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응답부인이 경험한 전체 임신 중 정상출생은 1994년 조사에서는 1.80회이었으나 1997년 조사에서는 1.78회, 2000년 조사에서는 1.72회, 2006년 조사에서는 다시 1.69회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출생 다음으로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은 1994년 조사에서는 0.84회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 조사에서는 0.48회이었다. 사산과 자연유산은 1994년 조사에서 각각 0.01회, 0.24회이었으며, 사산은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였으나, 자연유산은 1997~2003년 조사에서는 0.26회로 증가하였고, 2006년 조사에서는 다소 감소하여 0.23회에 머물렀다(표 3-4 참조). 그렇지만 총임신흐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사산과 자연유산이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後術)한다.

<표 3-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종결 형태별 평균횟수(1994~2006년)

(단위: 회)

연도	총임신	출생	사산	자연유산	임신중절	현임신
1994 ¹⁾	2.96	1.80	0.01	0.24	0.84	0.06
1997 ²⁾	2.83	1.78	0.01	0.26	0.74	0.04
2000 ³⁾	2.69	1.72	0.01	0.26	0.65	0.06
2003 ⁴⁾	2.72	1.78	0.01	0.26	0.63	0.04
2006 ⁵⁾	2.46	1.69	0.01	0.23	0.47	0.05

자료: <표 3-1>과 동일

2003년 조사와 비교하여 2006년 조사에서는 총임신과 정상출생, 인공임신중절, 자연유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임신소모가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그렇지만 임신소모의 다른 형태인 사산의 절대횟수는 감소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건의료적 측면의 관심이 요구된다. 즉, 사산의 이유를 규명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임신종결 형태별 경험횟수의 변화를 전체 임신경험횟수를 감안하여 살펴보는 것은 임신종결형태의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전체 임신 대비 정상출생으로 종결되는 경우는 1994년 조사의 61.0%에서 1997년 조사에서는 62.9%, 2000년 조사에서는 63.8%, 2003년 65.5%, 그리고 2006년 조사에서는 69.0%로 최근에 올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임신소모로 종결되는 경우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양상이라 하겠다. 실제 임신소모로 종결되는 경우는 1994년 조사의 36.9%에서 1997년 조사에서는 35.5%, 2000년 조사에서는 34.0%, 2003년 조사에서는 32.9%, 그리고 2006년 조사에서는 29.0%로 지속적인 감소양상을 보였다(표 3-5 참조).

임신소모의 세부형태별 비율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임신 중 사산으로 종결되는 경우는 1994년 조사의 0.4%에서 1997과 2000년 조사에서는 0.3%로 다소 낮아졌고, 2003년 조사에서는 0.2%로 더욱 낮아졌으나 2006년 조사에서는 0.3%로 다소 높았다. 자연유산은 1994년 조사의 8.2%에서 1997년 조사에서는 9.1%, 2000년 조사에서는 9.7%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 조사에서는 9.6%, 2006년 조사에서는 9.4%로 미미하나마 낮아졌다. 따라서 자연유산이 더욱 감소될 수 있도록 임신전 관리, 산전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다 발전적으로 자연유산의 발생원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임신소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은 1994년 조사의 28.3%에서 1997년 조사에서는 26.1%, 2000년 조사에서는 24.1%, 2003년 조사에서는 23.1%, 그리고 2006년 조사에서는 19.2%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체 임신의 약 1/5이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다는 사실은 인권과 모자보건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뿐만 아니

라 세계 최저의 저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강력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당연히 요구되는 사안이라 하겠다.

<표 3-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종결형태의 구성비(1994~2006년)

(단위: %)					
임신종결형태	1994 ¹⁾	1997 ²⁾	2000 ³⁾	2003 ³⁾	2006 ⁴⁾
정상출생	61.0	62.9	63.8	65.5	69.0
임신소모	36.9	35.5	34.0	32.9	29.0
(사산)	(0.4)	(0.3)	(0.3)	(0.2)	(0.3)
(자연유산)	(8.2)	(9.1)	(9.7)	(9.6)	(9.5)
(인공임신중절)	(28.3)	(26.1)	(24.1)	(23.1)	(19.2)
현 임신	2.1	1.6	2.1	1.6	2.0
계(수)	100.0(15,316)	100.0(15,311)	100.0(17,241)	100.0(17,920)	100.0(13,256)

자료: <표 3-1>과 동일

2006년 조사에서 나타난 임신종결 형태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정상출생으로 종결된 임신은 읍·면부 거주부인이 69.3%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69.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임신소모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약간 높았다.

이와 같은 지역별 임신종결 형태를 임신소모의 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사산은 동부가(0.2%)로, 읍·면부(0.5%) 보다 낮았고, 자연유산은 동부와 읍·면부가 각각 9.5%로 같았다. 인공임신중절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19.2%로 읍·면부 거주부인의 18.6% 보다 높았다(표 3-6 참조). 이러한 결과는 2003년의 지역별 임신종결형태주21)에 비하여 많이 개선된 것이기는 하지만 지역별 피임실천율의 차이가 미미한 점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큰 차이가 있는 수준이다.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의 임신소모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경우보다 높은 것은 주로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부지역 부인의 전체 임신 대비 인공임신중절의 비율은 19.2%이었으며, 읍·면부지역 부인은 18.6%이었음에서

주21) 2003년 조사에서는 정상출생으로 종결된 임신이 동부지역 65.1%, 읍·면부지역 67.5%, 임신소모는 동부지역 33.3%, 읍·면부지역 30.9%이었음.

알 수 있다.주22)

〈표 3-6〉 15~44세 유배우부인의 지역별 임신종결형태

(단위: %)

임신결과	전국	동부	읍·면부
정상출생	69.0	69.0	69.3
임신소모	29.0	28.9	28.6
(사산)	(0.3)	(0.2)	(0.5)
(자연유산)	(9.5)	(9.5)	(9.5)
(인공임신중절)	(19.2)	(19.2)	(18.6)
현 임신	2.0	2.1	2.1
계(수)	100.0(13,256)	100.0(11,208)	100.0(2,048)

이와 같은 임신종결형태 중 임신소모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임신소모를 경험을 하지 않은 부인은 52.4%이었고, 경험한 부인은 47.6%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임신소모 비경험부인은 2003년 조사의 45.8%보다 6.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높이 평가된다. 또한 전체 부인 중 임신소모를 1회 경험한 부인이 3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회 12.3%이었으며, 전체 부인의 평균 임신소모횟수는 0.71회이었다(표 3-7 참조).

동부지역 거주부인 중 임신소모를 경험을 하지 않은 부인은 52.8%이었고, 경험한 부인은 47.2%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동부지역 거주부인 중 임신소모를 1회 경험한 부인은 3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회 12.2%이었으며, 전체 부인의 평균임신소모횟수는 0.71회이었다.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중 임신소모를 경험을 하지 않은 부인은 49.8%이었고, 경험한 부인은 50.2%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중 임신소모를 1회 경험한 부인은 3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회 13.0%이었으며, 전체 부인의 평균임신소모횟수는 0.75회이

주22) 2003년의 임신소모를 2000년의 임신소모와 비교하여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의 임신소모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경우보다 높은 것은 주로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것이었음. 즉, 동부지역 부인의 전체 임신 대비 인공임신중절의 비율은 23.5%이었으며, 읍·면부지역 부인은 21.0%로 나타났다(김승권 외, 2004).

었다. 따라서 부인의 거주지역별 임신소모의 분포와 평균횟수는 유사한 수준에 있다고 하겠다.

부인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임신소모 경험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소모 경험률은 15~24세 연령층 부인이 22.2%, 25~29세 연령층 부인이 22.1%로 가장 낮았다. 30~34세 연령층 부인 38.8%, 35~39세 연령층 부인 54.3%, 그리고 40~44세 연령층 부인 61.3% 등이었다. 따라서 임신소모 경험은 35세 이상 부인들이 현저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부인의 평균 임신소모 횟수는 15~24세 연령층 부인은 0.31회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35~39세 연령층 부인은 0.81회, 40~44회 연령층 부인은 1.0회로 높았다.

연령과 교육수준은 대체로 반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와 같은 양상은 임신소모 횟수에서도 나타났다.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부인들의 임신소모 경험률은 39.4%이었고, 평균 횟수는 0.56회이었으나 그 외의 교육수준을 가진 부인들의 임신소모 경험률은 약 51.5~58.7%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평균 임신소모 횟수도 약 0.80~0.94회나 되었다. 따라서 임신소모의 경험은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졌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임신소모 경험 및 평균 횟수는 다소의 차이가 있음을 뿐이며 현저하지는 않았다. 즉, 취업부인의 임신소모 경험률은 51.1%이었고, 비취업부인의 경험률은 44.2%이었으며, 따라서 평균 임신소모 경험횟수는 취업부인 0.78회 비취업부인 0.65회로 나타났다. 결국 임신소모는 부인의 취업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인의 특성별 임신소모 분포와 평균 횟수를 요약정리하면, 부인의 거주지역과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인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임신소모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그로인하여 소자녀를 선호하며, 때로는 자녀를 원하지 않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여성의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불원임신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홍보·계몽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이와 같은 정책은 출산이 완료되는

시기인 35세 전·후를 대상으로 해야 만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 3-7〉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임신소모 횟수 분포

(단위: %, 회)

특성	총 임신소모 횟수							평균 임신소모 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계(수)	
2003년	45.8	29.9	16.7	5.5	1.3	0.8	100.0(6,598)	0.94
2006년	52.4	30.6	12.3	3.4	0.8	0.4	100.0(5,395)	0.71
지역								
동부	52.8	30.3	12.2	3.4	0.8	0.4	100.0(4,608)	0.71
읍·면부	49.8	32.4	13.0	3.8	0.8	0.3	100.0(785)	0.75
연령								
15~24세	77.8	16.7	4.0	0.8	0.8	-	100.0(126)	0.31
25~29세	77.9	17.7	3.6	0.5	0.3	-	100.0(637)	0.28
30~34세	61.2	28.2	8.2	1.8	0.3	0.2	100.0(1,432)	0.52
35~39세	45.7	34.9	14.7	3.7	0.8	0.3	100.0(1,663)	0.81
40~44세	38.7	34.7	17.9	6.1	1.6	1.0	100.0(1,537)	1.00
교육수준								
초교 이하	48.5	28.8	13.6	4.5	1.5	3.0	100.0(66)	0.92
중학교	41.3	35.2	15.2	5.3	2.3	0.8	100.0(264)	0.94
고등학교	47.2	32.8	14.5	4.1	1.0	0.5	100.0(2,862)	0.80
대학 이상	60.6	27.4	9.1	2.4	0.5	0.2	100.0(2,197)	0.56
취업여부								
취업	48.9	31.5	14.4	3.9	0.9	0.4	100.0(2,665)	0.78
비취업	55.8	29.8	10.3	3.0	0.8	0.4	100.0(2,730)	0.65

전술한 임신소모의 평균 횟수를 부인의 거주지역별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5~24세와 40~44세 연령층의 평균 임신소모는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많았으나, 25~39세 연령층에서는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평균 임신소모가 많았다. 또한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평균 임신소모는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많았으나, 대학 이상이 학력을 가진 여성의 평균 임신소모는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평균 임신소모가 많았다. 비취업여부의 경우는 거주지역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취업여

성의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여성이 동부지역 거주여성보다 평균 임신소모가 많았다.

〈표 3-8〉 15~44세 유배우부인의 거주지역별 평균 임신소모 횟수

(단위: 회)

특성	(분석대상 수)	동부	읍·면부	전체
2003년	(6,598)	0.9	0.9	0.9
2006년	(5,395)	0.71	0.75	0.71
연령				
15~24세	(126)	0.33	0.17	0.31
25~29세	(637)	0.26	0.36	0.28
30~34세	(1,432)	0.51	0.59	0.52
35~39세	(1,663)	0.79	0.89	0.81
40~44세	(1,537)	1.00	0.94	1.00
교육수준				
초교 이하	(66)	1.28	0.53	0.92
중학교	(264)	0.96	0.88	0.94
고등학교	(2,862)	0.81	0.76	0.80
대학 이상	(2,197)	0.54	0.71	0.56
취업여부				
취업	(2,665)	0.77	0.83	0.78
비취업	(2,730)	0.65	0.64	0.65

제 4 절 불임실태

사회가 점차 발달함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불임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더군다나 불임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비용부담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어 최근에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저출산 사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부정책이 조성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을 지닌다. 즉, 불임부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복지적 관점과 불임을 질병으로 간주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보건의료적 측면에서도 접근되어야

할 사항이다.

한국사회에서 불임의 정확한 실태가 시계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본 조사연구에서 불임실태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인 15~49세 전체 유배우부인 중 임신을 위하여 노력한 비율은 7.9%이었고, 임신노력 부인 중인 부부가 불임진찰을 받은 비율은 54.2%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체 유배우부인이 불임진찰을 받은 비율은 4.26이라고 하겠다.

부인의 연령층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임신이 잘 안되어 노력하고 있는 비율은 35~39세 연령층이 가장 높은 9.4%이었고, 다음은 40~44세 연령층 8.5%, 30~34세 연령층 8.0% 등의 순이었다. 또한 45~49세 연령층에서도 6.3%가 있다는 점도 관심을 두어야 할 점이다. 그런데 연령상승과 불임률간의 관계가 정(+)을 보이지 않는 것은 본 연구에서는 임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인을 대상으로 불임여부를 판단하였고, 임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은 부인(예를 들면, 출산완료 또는 불임으로 임신을 포기한 경우 등)은 불임여부의 판단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3-9〉 15~49세 유배우부인 중 임신노력 및 불임진찰률

(단위: 명, %)

연령	전체 유배우 부인수(A)	임신노력 부인수(B)	부부가 불임진찰 받은 수(C)	임신노력 부인 중 부부 불임진찰률 (C/B*100=C)	임신을 원하는 여성의 불임진찰률 (C/A*100)
전체	6,846(100.0)	539(7.9)	292	54.2	4.26
24세 이하	127(100.0)	2(0.4)	2	100.0	1.57
25~29세	637(100.0)	43(6.8)	21	48.8	3.29
30~34세	1,432(100.0)	114(8.0)	58	50.9	4.05
35~39세	1,662(100.0)	157(9.4)	90	57.3	5.42
40~44세	1,536(100.0)	131(8.5)	69	52.7	4.49
45~49세	1,452(100.0)	92(6.3)	52	56.5	3.58

임신을 원하는 전체 유배우부인이 임신이 되지 않아 진찰을 받은 비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5~39세 연령층이 5.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44세

연령층 4.49%이었다. 그렇지만 24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 1.57%, 45~49세 고연령층 3.58%가 있었다는 사실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영역일 것이다.

임신을 하기 위한 노력 경험이 있는 15~49세 유배우부인 중 불임진찰을 받았다는 경우는 54.2%이었고, 이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54.3%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53.2%에 비하여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부가 모두 불임진찰을 받았다는 경우는 51.1%, 부인만 받았다는 경우는 47.9% 이었고, 남편만 받았다는 경우는 1.0%로 낮았다. 그러나 부부가 모두 불임진찰을 받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아 최근 들어 불임을 부부공동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가치관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인만 불임진찰을 받았다는 경우가 47.9%를 차지해 아직도 부인의 책임으로만 여기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0〉 15~44세 유배우부인의 불임진찰 여부

(단위: %)

구분	전국	동부	읍면부
불임진찰 받음	54.2	54.3	53.2
본인	47.9	25.9	52.6
남편	1.0	0.8	2.6
부부 모두	51.1	51.8	44.7
불임진찰 받지 않음	55.8	45.7	46.8
계(수)	100.0(539)	100.0(468)	100.0(71)

주: 임신을 하기 위해 노력한 부부를 분석대상을 함.

15~49세 유배우 부부 중 불임진찰 결과 불임의 원인은 부인의 경우에는 원인불명이 4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배란장애가 21.2%, 나팔관장애가 15.8% 등의 순이었다. 남편의 경우는 원인불명이 81.0%로 부인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정자무력증 6.8%, 희소정자증 6.1%, 무정자증 5.4% 등의 순이었다(표 3-11 참조).

거주지역별로는 원인불명으로 불임인 경우에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48.1%,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57.1%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높게 나타났으며, 배

란장애의 경우에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높았다(동부지역 21.8%, 읍·면부지역 17.1%). 나팔관장애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20.0%로 동부지역 거주부인 15.2%보다 높았다.

남편의 경우에는 원인불명은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남편이 83.8%로 읍·면부지역 거주 남편의 61.1%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정자무력증, 희소 정자증, 무정자증 등은 읍·면부지역 거주남편이 동부지역 거주남편에 비해 높았다.

〈표 3-11〉 15~49세 유배우부부의 불임진찰 결과 불임의 원인

(단위: %)

구분	전국	동부	읍·면부
부인			
원인불명	49.3	48.1	57.1
나팔관장애	15.8	15.2	20.0
배란장애	21.2	21.8	17.1
염색체이상	-	-	-
자궁경관장애	1.1	1.2	-
자궁내막장애	6.8	7.0	5.7
조기폐경	0.4	0.4	-
습관성유산	1.4	1.6	-
기타	4.0	4.5	-
계(수)	100.0(278)	100.0(243)	100.0(35)
남편			
원인불명	81.0	83.8	61.1
무정자증	5.4	4.7	11.1
희소정자증	6.1	5.4	11.1
정자무력증	6.8	6.2	11.1
염색체이상	-	-	-
기타	0.7	-	5.6
계(수)	100.0(147)	100.0(129)	100.0(18)

불임부부의 대부분이 원인을 모르는 불임부부로 나타난 것은 아무 이상도 없이 임신이 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며, 따라서 불임의 원인을 신체적인 이상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찾아내어 원인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15~49세 유배우부인의 경우, 불임치료를 받았다는 경우가 71.7%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경우 28.3%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불임치료를 받은 비율이 74.7%로 높았으나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51.4%로 낮았다(표 3-12 참조). 따라서 전체 부인의 28.3%, 특히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48.6%에 달하는 부인이 아이를 원함에도 불임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아이를 원함에도 불임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는 기타를 제외하고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가 21.0%로 가장 높았고, 한방 또는 민간요법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경우가 18.5% 이었으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라는 경우가 9.9%, 시간이 없어서 3.7% 등이었다.

거주지역별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치료를 받지 않은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19.4%,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26.3% 이었고, 한방 또는 민간요법을 이용하려고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14.5%,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31.6% 이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9.7%,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10.5%이었다.

〈표 3-12〉 15~49세 유배우부인의 불임치료 여부 및 미치료 이유

(단위: %)

구분	전국	동부	읍·면부
받았다	71.7	74.7	51.4
받지 않았다	28.3	25.3	48.6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9.9	9.7	10.5
시간이 없어서	3.7	4.8	-
직장 때문에	1.2	-	5.3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21.0	19.4	26.3
한방 또는 민간요법을 이용하려고	18.5	14.5	31.6
기타 ¹⁾	45.7	51.6	26.3
계(수)	100.0(290)	100.0(253)	100.0(37)

주: 1) 기타에는 배란날짜를 맞추면 되서, 정상이여서, 의사가 기다려 보자고 해서, 치료시점에서 이혼함, 치료받기 싫어서, 배우자가 반대해서 등이 포함됨.

15~49세 유배우부인 중 임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치료’가 59.8%로 가장 많았고, 이는 읍·면부 거주부인이 60.6%로 동부 거주부인의 59.7% 비하여 높았다. 다음은 ‘일반 병원에서 치료’ 39.9%, ‘불임 전문 병원에서 치료’ 35.4% 등의 순이었다(표 3-13 참조).

〈표 3-13〉 15~49세 유배우부인의 임신을 위한 노력 방법

(단위: %)

구분	전국	동부	읍·면부
불임전문 병원에서 치료	35.4	36.2	29.6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치료	59.8	59.7	60.6
일반 병원에서 치료	39.9	40.1	38.6
약국의 양방약재 복용	8.0	7.9	8.5
일반 건강원의 약재 복용	5.7	5.3	8.5
민속요법	8.1	7.9	9.9
식이요법	7.0	6.8	8.5
기타	4.6	4.7	4.2
(분석대상 수)	(540)	(469)	(71)

주: 임신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 부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 비율임.

제 5 절 임신행태 및 임신종결형태 변화의 시사점

본 장에서는 15~44세 유배우부인이 경험한 전체 임신과 이들 임신의 종결형태, 그리고 불임실태를 논의하였다. 기본적으로 출산을 원하는 경우에만 임신을 하고 임신된 경우는 모두 정상출산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지만 본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로 비추어 보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된 경우가 있었고, 원하지 않은 임신임에도 정상출생한 경우가 있었던 반면, 원하지 않은 임신이었기에 인공임신중절 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원한 임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유산, 사산 등으로 종결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다. 더군다나 임신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2006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임신소모는 감소하고 정상출생으로

종결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임신소모는 높은 수준에 있으며, 자연유산과 사산에 의한 임신소모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인구자질 및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임신전 건강관리와 임신부 관리에 많은 취약점을 지닌다고 하겠다.

그런데 일부 계층에서는 여전히 남아출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려된다. 이러한 측면은 거주지역, 부인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었지만 비과학적인 자연요법에 의하여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다음은 초음파검사와 양수검사에 의하여, 심지어는 융모막 검사까지 실시되고 있었다.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회제도와 사회구조에서 남성중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회적 측면에서의 개선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부부간의 양성평등 의식과 임신당사자인 여성의 성평등의식을 제고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인의 임신종결 형태를 분석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전체 임신 중 임신소모로 종결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임신의 29.0%가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부인의 임신소모 수준이 높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임신소모는 감소되고 있으나 높은 피임실천율에도 불구하고 전체 임신의 19.2%, 임신소모의 약 70%가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피임실천의 사각지대가 넓게 존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즉, 아직까지 불원임신의 예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불원임신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결과라 판단된다.

셋째, 사산과 자연유산은 많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회적 및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부인의 건강상태가 임신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

는 결과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임신소모는 흡연, 음주, 약물복용 등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미혼청소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홍보계몽을 강화하고 철저한 임신부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한 경우에 자연유산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불임임신의 예방을 위한 효과가 높은 피임방법의 사용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는 남녀, 기혼·미혼을 불문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임신을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 부인 중 불임진찰을 받은 경우가 높았음은 저출산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본 조사에서는 불임진찰을 받은 경우 원인불명이 가장 많았음은 불임에 대한 심층연구가 국가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아울러 불임치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 임신 당사자인 여성과 그 배우자의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정책 차원에서 홍보·계몽이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 임신 전·후에 필요한 올바른 정보가 많이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실천하는 개인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만 이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제 4 장 출산행태 및 출생아·현존자녀수 변화

한 사회의 출산행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수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출산율’이라는 약칭(略稱)으로 사용된다. 합계출산율의 개념을 살펴보면,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출산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가임기 연령인 15~49세 여성을 산출기준으로 하여 한 여성이 생애동안 출산하는 자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합계출산율을 산출하는데 사용되는 ‘연령별 출산율’(Age Specific Fertility Rate, ASFR)을 먼저 논의하고, 이어서 ‘합계출산율’ 수준을 먼저 검토하며, 그리고 결혼한 부인의 출산수준 검토에 유용한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Age Specific Marital Fertility Rate, ASMFR)’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들이 출산한 자녀수와 그들의 성비를 분석하고, 현존자녀수의 규모와 성비를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출산간격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출산과 관련한 일련의 분석을 시계열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출산행태가 어떠한 변화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향후 변화전망도 가능할 것이다.

제 1 절 출산율의 변동

출산력의 변동추이는 합계출산율에 의하여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연령별 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의 시계열적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최근 주요 국가의 출산수준을 출생통계지표인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에 의하여 비교한다. 이어서 유배우부인의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은 결혼율이 높은 한국사회에서의 출산수준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큰 의미를 가진다.^{주23)}

1.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

연령별 출산율은 합계출산율을 산출하는 부인연령인 15~49세를 5세 간격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는 여성 1,000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고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연령별 출산율을 산출하였으며 시계열적 변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출산율의 저하는 1974년 이후 1987년까지는 40~44세 연령층을 제외한 전체 연령층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전체기간동안 25~29세 연령층이 전체 출산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았다. 그렇지만 25~29세 연령층의 합계출산율에의 기여율은 1990년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즉, 25~29세 연령층이 합계출산율에서 차지하는 기여율은 합계출산율이 3.8명이었던 1974년에는 38.5%이었으며,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이었던 1984년에는 44.8%로 상승하였다. 그런데 합계출산율의 기여율은 합계출산율이 1.6명이었던 1990년에는 60.5%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3년에는 55.9%, 1996년 52.8%, 1999년에는 49.8%, 2002년에는 47.2%, 그리고 2005년에는 42.9%로 점차 낮아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출산연령층이 25~29세 연령층에서 서서히 30대 초반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는 최근 30~35세 연령층의 출산율이 타 연령층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속도가 늦거나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에서 엿볼 수 있다.

둘째, 1974년 이후 연령별 출산율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20~24세 연령층과 25~29세 연령층에서 보여준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이다. 즉, 여자 1,000명당 출생아수는 20~24세 연령층의 경우 159명에서 19명으로, 25~29세 연령층에서는 276명에서 94명으로 큰 저하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을 것이나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고용기회의 확대, 초혼연령의 상승, 소자녀관의 형성에 따른 피임실천율의 증가, 인공임신중절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23)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점차 미혼율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는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에 의한 전체 여성의 출산수준 파악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셋째, 최근 한국사회 출산율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30~34세 연령층의 출산율이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저하를 멈추고 상승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1980년대 초반의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1974년 동 연령층의 연령별 출산율은 164이었으며, 점차 저하하여 1987년에는 39수준으로 최저점에 있었다. 그러나 점차 상승하여 1990년 50, 1993년 64, 1996년 83이었으며, 1999년에는 75로 다시 저하하였으나 2002년에는 83, 2005년에는 87로 재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24세 연령층과 25~29세 연령층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과급효과라 여겨진다.

넷째, 전술한 셋째와 넷째의 이유에 근거하여 25~29세 연령층과 30~34세 연령층의 출산율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점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74년 연령층의 연령별 출산율은 25~29세 276, 30~34세 164로 큰 격차(112의 차이)를 보였으나 2005년에는 25~29세 94, 30~34세 87로 나타나 미미한 차이(7)만을 보였다.

다섯째, 35세 이상에서 출산하는 '고령출산'이 1980년 초반 이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35세 이상 연령별 출산율의 합이 1974년 106이었고, 1982년에는 26으로 낮아졌으며, 1990년 최저점(8)에 도달한 이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에는 18로 정점에 달하고 있다.

여섯째, 1996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늦둥이 출산(40대 출산)이 미미하나마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증가하고 있다. 즉, 40~44세 연령층의 출산율은 1974년 29에서 점차 저하하여 1984년에는 1에 불과하였으나, 1987년 잠깐 상승하던 1990년과 1993년에는 다시 낮아졌다. 그러나 1996년에는 늦둥이 출산이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고 2005년에는 1996년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체 출산율이나 인구구조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정책 차원에서 관심을 둘 정도는 아니지만 모자보건 측면에서 산전 및 산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일곱째, 가임여성은 15~49세이지만 한국사회에서 45~49세 연령층이 출산하지 않는 경향은 지난 1982년 이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전술한 바

와 같이 초혼연령의 지속적인 상승과 늦등이 출산의 징후가 이 연령층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45~49세 연령층은 실제 출산층은 아닌 것이다.

〈표 4-1〉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1974~2005년)

(단위: 명/여자 1,000명당)

연령	1974	1982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15~19세	11	12	7	3	3	3	3	2	1	1
20~24세	159	161	162	104	62	71	62	50	24	19
25~29세	276	245	187	168	188	195	181	142	110	94
30~34세	164	94	52	39	50	64	83	75	83	87
35~39세	74	23	8	6	7	15	10	13	13	14
40~44세	29	3	1	3	1	1	4	3	2	4
45~49세	3	-	-	-	-	-	-	-	-	-

- 자료: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가족계획연구원, 『1974년 한국출산력조사』, 1977.
 2) 문현상 외, 『1982년 전국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3) 문현상 외,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4) 문현상 외, 『1988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5)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6)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7)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8)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9)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10) 본 조사결과

이상에서 연령별 출산율의 시계열 변화와 최근 특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25~29세 연령층의 출산율이 지역에 관계없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읍·면부지역의 동 연령층 출산율은 143을 차지하여 전체 출산율의 약 47%, 동부지역의 이 연령층 출산율은 88로서 전체 출산율의 약 42%로 높았다. 따라서 25~29세 연령층의 출산율이 동부지역보다 읍·면부지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40세 이하의 전체 연령층의 출산율이 동부지역 거주여성보다 읍·면부

지역 거주여성들에게서 모두 높았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합계출산율이 읍·면부지역에서 높는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모두 높다는 점은 큰 특징이라 하겠다.

셋째, 15~19세 연령층의 출산율은 읍·면부지역 거주여성에게서만 나타났다. 이는 최근 들어 나이 어린 외국 신부를 맞이하여 출산을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서 기인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되며, 동부지역의 경우에는 만혼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자리잡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넷째, 20~24세 연령층의 출산율이 동부지역보다 읍·면부지역이 현저하게 높았다. 즉, 동 연령층의 동부지역 출산율은 17에 불과하지만 읍·면부지역은 33으로 약 2배에 달하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읍·면부지역의 초혼연령이 동부지역에 비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다섯째, 40~44세의 출산율은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이 4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늦둥이 출산을 원하였거나, 만혼으로 인해 출산이 늦어짐에서 기인된 것이라 생각된다.

〈표 4-2〉 연령별 출산율의 지역차이(2005년)

(단위: 명/여자 1,000명당)

연도	동부	읍·면부	차이
15~19세	-	7	7
20~24세	17	33	16
25~29세	88	143	55
30~34세	85	101	16
35~39세	14	18	4
40~44세	4	4	0
45~49세	-	-	-

2. 합계출산율의 변화

우리나라의 출산력 변천은 1960년 이후 약 30년간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이 동시에 추진된 성과로서 나타났다고 하겠다. 1960~2005년 기간의 약 45년간 한 여성이 평생동안 출산하는 자녀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의 변화추이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960~1970년대의 출산율 저하는 주로 홍보교육과 피임보급 활동에 의해서, 그리고 1980년대는 소자녀 규범의 형성을 위한 각종 사회지원시책 등 인구증가 억제시책의 강화에 의해 급격한 저하가 이루어진 것이다(김승권 외, 2004). 이러한 결과에 힘입어 합계출산율은 1960~1987년 기간 중 6.0명에서 1.6명으로 감소하여 OECD 평균 수준에 도달되었다. 그 후에도 동일한 수준의 출산율이 약 10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비록 1993년에는 1.75명 수준으로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1% 수준으로 저하된 1989년 이후 정부가족계획사업의 급격한 축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1996년 6월에 정부차원의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1993년 1.75명에서 1996년 1.71명으로 안정적이었음에서 가능하다.

그런데 IMF 관리체제 하에서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게 되자, 출산율은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 1998년부터 합계출산율은 급속히 저하하기 시작하였는데, 1999년 1.43명으로 감소하였고 2002년에는 1.17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어서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5년의 합계출산율은 1.09명으로 한국 역사상 가장 낮은 출산수준을 다시 갱신하게 되었다. 동 수준은 ‘인구동태통계 자료’에 기초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5년의 합계출산율 1.08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표 4-3〉 합계출산율의 변화(1960~2005년)

(단위: 명/여자 1명당)

연도	1960 ¹⁾	1974 ¹⁾	1982 ²⁾	1984 ³⁾	1987 ⁴⁾	1990 ⁵⁾	1993 ⁶⁾	1996 ⁷⁾	1999 ⁸⁾	2002 ⁹⁾	2005 ¹⁰⁾
합계출산율	6.0	3.6	2.7	2.1	1.6	1.6	1.75	1.71	1.43	1.17	1.09

자료: <표 4-1>과 동일

이와 같은 결과는 출산력 변천이 종료되고 저출산 행태가 정착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저출산 위기현상’이 한국사회에 도

래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저변에는 ‘저하하기는 쉽지만, 상승하기는 어려운’ 출산력의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IMF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증대, 소득격감,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활난과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이 야기되었고, 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결혼 및 출산을 연기 또는 기피하게 하였으며, 그리고 이에 기인된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향후 현재의 낮은 출산율이 계속될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어떻게, 얼마나 변화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기회복과 함께 연기된 결혼 및 출산이 이루어진다면 다소의 출산율 상승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출산율이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출산율의 반전은 한계가 있을 것이며,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출산억제정책과는 달리 출산장려정책은 사회정책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출산율의 획기적인 반등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재정에 의한 사회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견된다.^{주24)}

합계출산율의 지역차이는 1994년 이전에 실시된 출산력 관련 조사에서는 제시되었지만, 1997년과 2000년 조사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다.^{주25)} 그렇지만 저출

주24) 이러한 측면에서 김승권(2004)은 저출산을 일찍 경험한 서구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정책의 추진에 한계가 있어 선진국보다 더 낮은 출산율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젊은 미혼남녀의 가치관이 개인주의화 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출산율 회복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주장함. 따라서 향후 출산율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과적 정책을 펴고, 대국민 홍보계몽의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10년 후에야 약 1.6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IMF 경제위기가 닥치기 전의 출산수준이며, OECD 국가의 평균에 해당하는 출산수준이라고 예견하였음.

주25) 과거조사(1997년과 2000년)에서 제시되지 않은 이유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종전에 도시와 농촌에 의해 지역구분을 하여 왔으나 1996년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에 의해 도시와 농촌에 의한 지역구분은 동부와 읍·면부에 의한 구분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동부지역은 확대되고, 읍·면부지역은 더욱 축소되었음. 결과적으로 행정구역개편에 따

산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학적으로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실태를 파악하여 참고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고에서는 2003년 조사결과에 이어 제시한다.

합계출산율의 지역간 격차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합계출산율의 지역별 차이는 강하게 나타났다. 지역은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으로 구분하였는데, 합계출산율은 동부지역 1.04명, 읍·면부지역 1.53명으로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출산율이 0.49명 더 높았다. 이를 2003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격차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읍·면부지역의 출산율 감소폭(0.12명)이 동부지역(0.06명)보다 더 컸음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동부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규명하여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읍·면부지역의 출산율이 더 큰 폭으로 저하되는 이유도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4-4〉 합계출산율의 지역차이(2002년과 2005년)

(단위: 명/여자 1명당)

연도	동부	읍·면부	차이
2002년	1.10	1.65	0.55
2005년	1.04	1.53	0.49

3. 출산율의 국제비교

전 세계적으로 합계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상이기 때문에 인구증가가 지속되고 있음이 사실이며, 인구증가 속도는 완화될 지라도 향후 수십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

라 지역별 출산율 자료는 과거와의 시계열적 비교가 어렵고, 교통이 발달된 현 상황 하에서 읍·면부를 별도로 한 지표를 산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음; 둘째, 본 조사는 표본조사이므로 이들 조사가구 중 읍·면부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아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지표인 '출산율'의 지역별 산출결과를 출생아 한 명이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표설명에 오류를 가져올 수 있으며, 현지조사의 완벽정도에 따라 그 수준이 크게 달라질 우려가 있음.

망된다. 그러나 각 국가별 출산수준은 그 사회의 문화적 차이, 경제발전의 수준, 그리고 출산율을 저하 또는 상승시키기 위한 정부정책의 강도 및 효과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 주요 국가의 출생통계 지표를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인구 천명당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한국이 2004년 9.8명에서 2005년 9.0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이와 같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국가는 일본, 프랑스, 영국, 스웨덴, 독일, 뉴질랜드 등이었다. 이와는 상반되게 조출생률이 증가하는 국가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체코 등이었다. 또한 조출생률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로는 일본, 독일 등이었으며, 반대로 높은 국가는 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체코, 호주, 뉴질랜드 등이었다.

〈표 4-5〉 세계 주요 국가의 출생통계 지표

국 가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명)		합계출산율(명)	
	2004	2005	2004	2005
한국	9.8	9.0	1.16	1.09
일본	8.8	8.5	1.29	1.26
미국	14.0	14.0	2.05	2.10
프랑스	12.7	12.6	1.90	1.94
영국	12.0	11.9	1.74	1.80
스웨덴	11.2	10.4	1.75	1.77
스페인	10.6	10.9	1.32	1.34
이탈리아	9.7	9.9	1.33	1.34
독일	8.6	8.4	1.37	1.34
그리스	9.2	9.4	1.29	1.28
체코	9.6	10.0	1.23	1.28
호주	12.8	12.8	1.77	1.81
뉴질랜드	14.29	14.08	2.01	2.00

자료: 후생노동성, 「평성15년 인구동태통계월보연계(개수)」(www.mhlw.go.jp); NCHS, 「National Vital Statistics Reports」 Vol.52(www.cdc.gov); Eurostat, 「First results of the demographic data collection for 2002 in Europe」(www.europa.eu.int); Series FM1, no.31, 「Birth statistics」(www.statistics.gov.uk); 「3301.0 2002 Births」(www.abs.gov.au); 「Key Statistics」(www.stats.govt.nz); 본 조사

또 다른 출생통계지표인 합계출산율이 한국은 저하하고 있는데, 같은 경향을 보이는 국가는 일본, 독일, 그리스, 뉴질랜드 등이었으며, 반대로 상승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국가는 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체코, 호주 등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조출생률은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최근 짧은 기간에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저출산 수준이 지속될 경우 조출생률도 동시에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

한 사회의 출산행태 및 그 수준의 변화는 전술한 합계출산율과 후술하는 출생아수 및 현존자녀수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기혼여성(ever-married women)의 배우 출산율에 의해서도 파악될 수 있다. ‘배우 출산율’은 결혼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 즉, 유배우부인, 사별, 이혼 및 별거 부인의 출산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실제 가정을 이루었거나 또는 현재 이루고 있는 여성의 출산행태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라 하겠다.

특히, 한국사회는 서구 국가에 비하여 결혼율이 높기 때문에 배우출산율에 의한 출산수준 측정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 본 분석에서는 기혼여성 중 결혼상태가 이혼 및 별거 또는 사별인 경우는 제외하고 유배우 부인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출산력관련 조사 및 분석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주로 유배우 부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의 합(합)^{주26)}은 1990년을 최저점으로 1996년까지

주26) 유배우출산율의 합(합)은 통계학적 의미가 없어 제시하지 않았으며,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명함.

는 점차 상승하였으나, 1999년부터는 다시 저하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표 4-1>의 연령별 출산율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주27)}

둘째, 유배우 출산율의 전반적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저연령층일수록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낮아지는 특징을 보였다.^{주28)} 이는 연령별 출산율이 25~34세 연령층이 높고 그 외의 연령층은 현저히 낮은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는데, 결혼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2005년 25~29세 연령층의 유배우출산율이 231로 가장 높았으며, 20~24세 연령층은 202, 30~34세 연령층은 108이었다. 그러나 3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현저히 저하하여 35~39세 연령층에서는 17, 40~44세 연령층에서는 4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는 주출산연령층이 25~34세이고, 20~24세 연령층은 결혼한 여성은 많지 않지만 결혼후 즉시 출산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4-6>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의 변동추이

(단위: 명/유배우부인 1,000명당)

연령	1960 ¹⁾	1970 ¹⁾	1980 ¹⁾	1990 ²⁾	1993 ³⁾	1996 ⁴⁾	1999 ⁵⁾	2002 ⁶⁾	2005 ⁷⁾
20~24세	447	450	458	306	320	377	386	313	202
25~29세	351	356	292	234	237	264	224	250	231
30~34세	298	223	103	53	65	88	86	106	108
35~39세	232	122	28	7	15	11	14	16	17
40~44세	117	53	7	1	1	4	4	2	4
45~49세	22	8	1	-	-	-	-	-	-

자료: <표 4-1>과 동일

넷째, 20~24세 연령층과 25~29세 연령층의 유배우출산율은 2002년도에 비하여 낮아졌으나 그 외의 연령층에서는 높아졌다. 특히, 30~34세 연령층의 유

주27) 1994년 조사결과인 1993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연령별 출산율과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은 다른 연도의 결과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 이러한 변화추이에 의하여 설명되지 못함.

주28) 25~29세 연령층의 유배우 출산율이 20~24세 연령층보다는 다소 높으나 전체 연령으로 본다면 이들 연령층이 이보다 높은 연령층보다 낮다고 이해될 수 있음.

배우출산율은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다만 1999년에는 미미한 수준에서 감소) 1980년의 103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이 특징이다. 이는 초혼연령의 상승에 의한 결과로 받아들여지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제 3 절 출생아와 현존자녀의 규모 및 성비

1. 출생아의 규모와 성비

가. 출생아 규모

한 사회의 출산수준은 전술한 연령별 출산율, 합계출산율, 연령별 유배우출산율 외에도 한 부인이 출산한 총 출생아수(children ever-born)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한다. ‘출생아’란 부인이 낳은 모든 아이를 의미하는데, 이 때 ‘아이’는 혼인중의 출산이든, 혼외 출산이든, 성장과정에서 사망하였든, 입양시켰든 모두 포함된다. 또한 재혼부인인 경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도 그 아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여기서의 출생아에 포함된다. 물론 쌍태아 또는 삼태아인 경우도 2명 또는 3명의 출생아로 계산된다. 그렇지만 현재 부부의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가 다른 여자에게서 낳아 데리고 온 아이는 제외되며, 입양된 아이도 제외된다.

간략히 말해 현재 본인의 자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와의 관계에서 임신이 되었든, 그리고 아이의 생사여부에 관계없이 부인 본인이 생애동안 출산한 모든 아이는 출생아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다.

2006년 조사에서 나타난 15~44세 유배우부인의 평균 출생아수는 1.7명으로, 2003년보다 0.1명이 감소되었고, 2000년의 결과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은 평균 1.8명을 출산하였으나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은 1.7명을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조

사결과에서 나타난 동부지역,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출생아수는 2003년보다 각각 0.1명 감소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 평균 출생아수가 2003년 이전에는 약 0.3~0.4명의 격차가 있었으나 2003년과 2006년에는 0.1명만의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부지역 거주부인들의 소자녀관 선호행태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들에게도 파급되고 있는 측면과 최근 저출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소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부인의 평균 출생아수는 연령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24세 연령층 부인의 평균 출생아수는 0.6명에 불과하였으나, 연령상승과 함께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35~39세 연령층 부인은 1.9명, 40~44세 연령층 부인은 2.0명으로 35세 이후에는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즉, 35세 이전까지 출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상은 연령별 출산율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지만 2003년과 비교하면, 15~24세 연령층을 제외한 전체 연령층에서 2006년에는 출생아수가 다소 줄어들었다.

부인의 평균 출생아수는 연령과는 달리 교육수준과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학력수준과 평균출생아수의 관계를 시계열로 살펴보면, 초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출생아수는 2003년 2.3명에서 2006년 2.1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중학교 학력을 가진 부인은 1994년 이후 2003년까지 동일한 수준인 2.1명을 유지하였으나 2006년 조사에서는 2.0명으로 다소 낮아졌다. 고등학교학력을 가진 부인의 출생아수는 1994년 이후 다소 상승추세를 보였으며, 2006년에는 2003년과 동일한 수준인 1.8명이었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평균 출생아수는 1994년 이후 증가하여 2003년에는 1.6명이었으나 2006년에는 다시 1.5명으로 감소하였다.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의 격차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과 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의 출생아수의 차이는 1994년 1.2명, 1997년 1.0명, 2000년과 2003년에는 0.7명, 2006년 0.6명으로 지속적으로 좁혀졌다.

출생아수에 미치는 교육수준의 위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문화 생활권에서 살고 있고 소자녀관이 전 계층에 걸쳐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사회 전반적으로 학력차이가 감소할 경우 완화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4-7〉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특성	1994 ¹⁾	1997 ²⁾	2000 ³⁾	2003 ⁴⁾	2006 ⁵⁾
전체	1.8	1.8	1.7	1.8	1.7
지역					
동부	1.7	1.7	1.7	1.8	1.7
읍·면부	2.1	2.0	2.0	1.9	1.8
연령					
15~24세	0.7	0.7	0.8	0.6	0.6
25~29세	1.2	1.2	1.1	1.1	0.9
30~34세	1.8	1.8	1.7	1.7	1.6
35~39세	2.1	2.1	2.0	2.0	1.9
40~44세	2.5	2.5	2.1	2.1	2.0
교육수준					
초교 이하	2.6	2.5	2.2	2.3	2.1
중학교	2.1	2.1	2.1	2.1	2.0
고등학교	1.6	1.7	1.7	1.8	1.8
대학 이상	1.4	1.5	1.5	1.6	1.5

자료: 1)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2)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3)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4)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5) 본 조사결과

부인의 제 특성별 출생아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부인 중 2명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이 57.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1명을 가진 부인이 22.6%, 3명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 9.8%, 그리고 출생아가 없는 부인이 9.8%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15~44세 유배우부인의 89.4%가 2명 이하의 출생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²⁹⁾ 반면에 3명 이상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은 10.6%로 2003년

12.4%보다 1.8%포인트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2명 이하의 출생아를 두고 있는 부인이 동부지역 거주부인 90.3%,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84.4%로 나타났다. 특히 1명 이하의 출생아를 둔 부인은 동부지역 32.9%, 읍·면부지역 29.5%로 지역간 차이가 3.4%포인트로 과거연도보다 좁혀졌다.^{주30)} 그리고 3명 이상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은 동부지역 9.7%, 읍·면부지역 15.6%로 지역간 차이가 6.0%포인트로 좁혀졌다.^{주31)} 이러한 결과는 지역에 따른 부인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과거보다는 출생아수에 주는 영향이 크지는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인의 출생아수는 그들의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15~24세 연령층의 부인은 1명의 출생아를 가진 경우 39.7%, 출생아를 전혀 가지지 않은 경우 48.4%나 되어 1명 이하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이 무려 88.1%나 되었다. 이는 초혼연령의 상승과 첫 출산이 점차 늦어진 데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25~29세 연령층 부인 중 1명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은 42.4%, 2명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은 21.5%로 이 연령층 부인의 63.9%가 1~2명의 출생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출생아를 가지지 않은 부인도 34.1%나 되었는데 이는 15~24세 연령층 부인의 출생아수에 대한 설명에서와 마찬가지로 초혼연령의 상승과 첫 출산이 늦어진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29세 이하 연령층 부인과는 대조적으로 30세 이상 연령층 부인의 출생아 분포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29세 이하 연령층 부인들은 1명의 출생아를 가진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30세 이상 연령층 부인들은 2명의 출생아를 가진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30세 이상 연령층 부인들은 2명 이상의 출생아를 가

주29) 2000년의 조사결과에서는 전체 부인 중 2명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은 57.0%, 1명을 가진 부인 23.2%, 그리고 출생아가 없는 부인 8.0%로 전체 부인의 88.2%가 2명 이하의 출생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2003년의 조사결과에서는 전체 부인 중 2명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은 60.4%, 1명을 가진 부인 19.1%, 그리고 출생아가 없는 부인 8.1%로 전체 부인의 87.6%가 2명 이하의 출생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음(김승권 외, 2004).

주30) 2003년 조사에서의 지역간 격차는 3.8%이었음(김승권 외, 2004).

주31) 2003년 조사에서는 동부지역 11.1%, 읍·면부지역 19.9%로 지역간 차이가 8.8%포인트에 달하였음(김승권 외, 2004).

진 경우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부인연령이 높아질수록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 이상의 출생아를 가진 경우는 35~39세 연령층 부인 0.8%, 40~44세 연령층 부인 2.0%로 극히 낮았다.^{주32)}

여기서 특히 관심을 가질 것은 30세 이상 연령층 부인 중 출생아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즉, 30~34세 부인의 11.4%, 35~39세 부인의 3.4%, 그리고 40~44세 부인의 1.8%가 출생아가 없었다. 이는 2003년의 조사결과^{주33)}에 비하여 높은 수준인데, 자녀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만혼에 의하여 첫 출산이 늦어진 경우일 수도 있으며,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재혼부인이 전처의 자녀를 고려하여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의도적인 경우가 아니라 비의도적인 경우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즉, 출산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늦어지거나, 자연불임이 된 경우, 그리고 자연유산이 반복되는 경우 등도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부인의 교육수준과 출생아수는 반비례하고 있었는데, 물론 모든 교육수준에서 2명의 출생아를 가지고 있는 부인이 가장 많았지만 그 다음으로 많은 출생아수 분포를 차지하는 것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3명 이상의 출생아를 가진 비율이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1명의 출생아수를 가진 비율이 높았다. 특히, 0~1명의 출생아를 가진 경우가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부인은 26.3%인데 비하여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42.2%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낮은 학력수준의 부인이 일반적으로 고연령층에 분포되어 있고, 반대로 높은 학력수준의 부인은 보다 젊은 연령층에 분포되어 있음에 따른 결

주32) 200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4명 이상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은 30~34세 연령층 0.6%, 35~39세 연령층 1.5%, 그리고 40~44세 연령층의 부인은 3.5%로 2003년의 조사결과가 낮았으며, 2003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4명 이상의 출생아를 가진 부인은 30~34세 연령층 0.4%, 35~39세 연령층 1.6%, 그리고 40~44세 연령층의 부인은 2.3%로 2006년의 조사결과가 낮았음. 따라서 최근에 이를수록 4명 이상의 출생아를 가진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김승권 외, 2004).

주33)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30~34세 부인의 7.7%, 35~39세 부인의 3.0%, 그리고 40~44세 부인의 1.8%가 출생아가 없었음(김승권 외, 2004).

과일 것이지만, 대체로 이는 2003년 조사결과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고학력층의 부인은 원하는 자녀수도 적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주34)}

〈표 4-8〉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수 분포

(단위: %, 명)

특성	출생아수					평균 출생아수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2003년 ¹⁾	8.1	19.1	60.4	11.2	1.2	100.0(6,601)	1.8
2006년 ²⁾	9.8	22.6	57.0	9.8	0.8	100.0(5,394)	1.7
지역							
동부	10.0	22.9	57.4	9.1	0.6	100.0(4,607)	1.7
읍·면부	8.4	21.1	54.9	13.9	1.7	100.0(787)	1.8
연령							
15~24세	48.4	39.7	11.9	-	-	100.0(126)	0.6
25~29세	34.1	42.4	21.5	2.0	-	100.0(637)	0.9
30~34세	11.4	29.4	52.6	6.6	-	100.0(1,430)	1.6
35~39세	3.4	16.5	67.2	12.1	0.8	100.0(1,663)	1.9
40~44세	1.8	13.4	68.6	14.1	2.0	100.0(1,537)	2.0
교육수준							
초교 이하	7.6	16.7	48.5	18.2	9.1	100.0(66)	2.1
중학교	4.5	14.4	61.7	15.9	3.4	100.0(264)	2.0
고등학교	7.5	18.8	61.9	11.2	0.6	100.0(2,862)	1.8
대학 이상	13.4	28.8	50.4	6.9	0.5	100.0(2,197)	1.5
취업여부							
취업	11.4	19.8	58.0	9.9	0.9	100.0(2,665)	1.7
비취업	8.2	25.4	56.1	9.6	0.7	100.0(2,729)	1.7

자료: 1)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2) 본 조사결과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출생아수의 분포는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3명 이상의 출생아를 가진 경우가 취업부인 10.8%, 비취업부인 10.3%로

주34)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 중 0~1명의 출생아를 가진 경우는 37.8%로 이었음.

차이가 없었던 반면, 1명의 출생아를 가진 경우가 취업부인 19.8%, 비취업부인 25.4%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주35)} 아직 출생아가 없는 경우도 취업부인 11.4%, 비취업부인 8.2%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주36)} 이는 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젊은 취업부인’이 출산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나. 출생아의 성비

출생아의 성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가부장제적 가치관이 잔존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출생성비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의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특정년도의 출생남아 100명당 출생여아의 수를 나타내는 출생성비는 통계청의 연도별 「인구동태통계」 자료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출생성비의 시계열적 자료는 남아선호수준, 남녀 결혼대상자 규모 등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출생성비는 이 자료 외에도 부인의 전체 출생아의 성비와 현존자녀수의 성비에 의하여도 파악될 수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리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출생성비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우리나라 부인의 전체 출생아의 성비를 살펴보고 현존 자녀수의 성비는 후술한다. 여기서 논의하는 출생아의 성비는 ‘누적 출생성비’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영아사망률이 저하되어 출생아 성비와 현존자녀수 성비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15~44세 유배우부인의 평균 출생아수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아 0.90명, 여아 0.81명으로 부인의 누적된 출생아 성비는 111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0년 조사의 출생아 성비 111과 같은 수준이었으며, 2003년 조사의 출생아 성비 113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표 4-9 참조). 그렇지만 이들 수준은 정상 출생성비인 103~104 수준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여전히 성비불균형이 있

주35)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평균 출생아수는 취업중인 부인 1.8명,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부인 1.7명이었음(김승권 외, 2004).

주36) 200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취업부인의 10.4%, 비취업부인의 7.1%가 출생아가 없었으며, 2003년 조사결과는 취업부인의 9.5%, 비취업부인의 6.7%가 출생아가 없었음.

음을 알 수 있다. 물론 15~44세 유배우부인의 누적된 출생아의 성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다지 높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3~6년 전의 조사 대상부인 중 고연령층은 본 조사대상에서 빠져나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의 성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출생아 성비를 부인특성에 따라 살펴보는 것은 향후의 출생성비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다. 먼저 지역별로 출생아 성비를 보면,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평균 출생아 1.68명중 남자는 0.89명, 여자는 0.79명으로 출생아 성비는 113을 보였고,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평균 출생아 1.81명중 남자는 0.92명, 여자는 0.89명으로 출생아 성비는 103을 나타냈다. 따라서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이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보다 남자를 많이 출산하지만 동시에 여아도 많이 출산하여 성비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농어촌 거주자가 더 보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도시 거주자가 민주평등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보편적 인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고학력층에서 남아선호의 징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부인연령과 출생아 성비는 일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령층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다. 가장 젊은 연령층인 15~24세 부인의 평균 출생아 0.64명 중 남자는 0.32명, 여아 0.32명으로 100의 정상 출생성비를 보여 주었고, 35~39세 연령층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그렇지만 25~29세 연령층 부인은 출생아 0.91명중 남아 0.50명, 여아 0.41명으로 여아가 많은 성비 불균형을 보였고(출생아 성비 122), 40~44세 연령층의 부인은 111, 30~34세 연령층은 109로 다소 불균형적인 성비를 보였다.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출생아의 성비불균형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출생아 성비가 13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으로 114이었으며,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 수준의 부인은 각각 108, 109로 나타나 불균형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교육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선택적 행위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취업중인 부인의 출생아 성비는 109이었고, 비취업부

인은 113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양성평등 측면에서의 사회제도 개선과 함께 실질적으로 차별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교육홍보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4-9>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 성비

(단위: 명, %)

특성	출생아수			출생아 성비 (A/B)
	소계	남아수(A)	여아수(B)	
2003년 ¹⁾	1.79	0.95	0.84	113
2006년 ²⁾	1.71	0.90	0.81	111
지역				
동부	1.68	0.89	0.79	113
읍·면부	1.81	0.92	0.89	103
연령				
15~24세	0.64	0.32	0.32	100
25~29세	0.91	0.50	0.41	122
30~34세	1.55	0.81	0.74	109
35~39세	1.91	1.00	0.91	104
40~44세	2.03	1.07	0.96	111
교육수준				
초교 이하	2.12	1.20	0.92	130
중학교	2.00	1.04	0.96	108
고등학교	1.80	0.94	0.86	109
대학 이상	1.54	0.82	0.72	114
취업여부				
취업중	1.71	0.89	0.82	109
비취업	1.70	0.90	0.80	113

자료: <표 4-8>과 동일

2. 현존자녀의 규모와 성비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현존자녀’의 개념은 전술한 ‘출생아’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녀를 낳은 사람이 누구

이든, 입양하였든 상관없이 현재 생존하고 있는 자녀를 모두 현존자녀수의 개념에 포함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재혼한 가정의 경우 전처의 자식, 전남편의 자식도 포함되며, 자녀가 결혼을 하여 출가하였더라도 현존자녀에 포함된다. 물론 부부의 자녀이었지만 다른 집에 입양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망한 자녀도 포함되지 않는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현존자녀의 개념 하에서 조사대상인 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들 자녀의 성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현존자녀수

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 분포는 2003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1명 이하의 자녀를 가진 비율은 증가하였고,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비율은 감소하였다. 즉, 자녀가 0~1명인 부인은 32.2%이었고, 3명 이상인 부인은 11.0%이었으며,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56.8%로 나타났다.

따라서 0~1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의 비율은 1994년의 31.6%에서 인구증가 억제정책이 폐지된 1996년 직후의 조사인 1997년에는 29.3%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2000년 조사에서는 31.7%로 증가하였으며, 2003년 27.4%로 감소하였으나 2006년 조사에서는 32.2%로 다시 증가하였다. 반면에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의 비율은 1994년의 15.1%에서 1997년 12.4%, 2000년 10.9%로 감소양상을 보였다가 2003년에는 다시 12.0%로 증가하였으며, 그러나 2006년에는 11.0%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표 4-10 참조).

〈표 4-10〉 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 분포(1994~2006년)

(단위: %)

연도	1명 이하	2명	3명 이상	계(수)	평균자녀수
1994	31.6	53.3	15.1	100.0(5,183)	1.8
1997	29.3	58.3	12.4	100.0(5,419)	1.8
2000	31.7	57.4	10.9	100.0(6,404)	1.7
2003	27.4	60.6	12.0	100.0(6,599)	1.8
2006	32.2	56.8	11.0	100.0(5,395)	1.7

자료: <표 4-7>과 동일

이와 같은 현존자녀수의 분포는 평균 현존자녀수의 시계열적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2006년의 평균 현존자녀수는 1.7명으로 2000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1994년, 1997년, 2003년보다는 0.1명이 감소하여 낮은 출산율이 반영된 것이라 추측된다.

금번 조사에서 나타난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현존자녀수 분포를 거주지역,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취업여부 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지역별로 살펴보면,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읍·면부지역 거주 부인이 16.6%로 동부지역 거주부인 10.1%보다 현저하게 높았으며, 반대로 0~1명의 자녀를 가진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32.6%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29.4% 보다 다소 높았다. 따라서 평균 현존자녀수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1.7명,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1.8명으로 0.1명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술한 <표 4-8>의 출생아수의 지역별 차이(동부 1.7명, 읍·면부 1.8명)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소자녀 규모를 선호하는 고학력의 젊은 연령층 부인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현존자녀수는 출생아수와 마찬가지로 부인의 연령에 정비례하고 교육정도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5~24세와 25~29세 연령층의 부인은 0~1명의 자녀를 가진 비율이 각각 88.1%, 76.3%로 높았고, 30세 이상의 연령층 부인의 동 비율은 현저하게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3명 이상의 현존자녀를 가진 비율은 15~24세 연령층 부인은 없었고, 25~29세 연령층 부인은 2.4%, 30~34세 연령층 부인은 7.4%, 35~39세 연령층 부인은 13.2%, 그리고 40~44세 연령층 부인은 16.8%로 연령에 높아질수록 높아졌다.

또한 0~1명의 자녀를 가진 비율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이 4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고등학교의 학력을 가진 부인이 26.2%이었다. 반면에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비율은 초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이 2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학교 학력의 부인 20.4%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서도 여러 번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저학력 수준의 부인이 연령이 높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부인의 연령이 취업하고 있지 않은 부인보다 연령이 높기 때문에 취업부인이 다자녀인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0~1명의 자녀를 가진 비율은 취업부인이 30.7%, 비취업부인 33.6%이었으나 비취업부인이 다소 높았으나, 3명 이상의 다자녀를 가진 비율은 취업부인 11.6%, 비취업부인 10.5%로 취업부인이 다소 높았다. 그렇지만 평균 현존자녀수는 1.7명으로 동일하게 나타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1〉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현존자녀수 분포

(단위: %, 명)

특성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계(수)	평균 현존자녀수
2003년 ¹⁾	8.2	19.2	60.6	10.7	1.3	100.0(6,599)	1.8
2006년 ²⁾	10.0	22.2	56.8	10.2	0.8	100.0(5,397)	1.7
지역							
동부	10.3	22.3	57.2	9.4	0.7	100.0(4,609)	1.7
읍·면부	8.2	21.2	53.9	15.0	1.6	100.0(788)	1.8
연령							
15~24세	47.6	40.5	11.9	-	-	100.0(126)	0.6
25~29세	34.2	42.1	21.4	2.4	-	100.0(637)	0.9
30~34세	11.5	28.8	52.2	7.3	0.1	100.0(1,432)	1.6
35~39세	3.5	15.9	67.4	12.5	0.7	100.0(1,663)	1.9
40~44세	2.5	13.0	67.8	14.8	2.0	100.0(1,538)	2.0
교육수준							
초교 이하	6.1	19.7	45.5	19.7	9.1	100.0(66)	2.1
중학교	6.0	15.1	58.5	17.4	3.0	100.0(265)	2.0
고등학교	7.9	18.3	61.5	11.8	0.6	100.0(2,864)	1.8
대학 이상	13.5	28.1	50.8	7.1	0.5	100.0(2,198)	1.5
취업여부							
취업	11.7	19.0	57.7	10.7	0.9	100.0(2,667)	1.7
비취업	8.4	25.2	55.8	9.8	0.7	100.0(2,729)	1.7

자료: <표 4-8>과 동일

결과적으로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현존자녀수 분포와 평균 현존자녀

수는 이들 부인의 출생아수 분포와 평균 출생아수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재혼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대상의 부인이 유배우상태의 경우만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영아사망도 현저히 감소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근 이혼 및 재혼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경향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전망케 한다.

나. 현존자녀의 성비

15~44세 유배우부인의 평균 현존자녀수는 1.70명이었으며, 남아 0.89명, 여아 0.81명으로 부인의 현존자녀 성비는 110으로 나타났다(표 4-12 참조).^{주37)} 이는 2003년 조사의 현존자녀 성비 112보다 완화된 것이다. 또한 동 수준은 2006년 누적 출생아의 성비 111과 유사한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미혼모, 재혼 등의 사회현상이 미미하여 자녀규모 및 성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현존자녀수의 성비를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지역별로는 동부지역과 읍·면부 거주부인의 성비는 각각 113과 104로 출생아의 성비 113, 103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부인의 연령별 현존자녀수 성비는 25~29세 연령층 부인이 122로 가장 높았고, 15~24세 연령층 부인은 97로 여아가 오히려 많은 성비불균형을 보였다. 이는 출생아의 성비와 유사한 양상이다.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현존자녀수의 성비는 초등학교 이하 학력수준의 부인이 1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이 114이었으며,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108로 가장 낮았다.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현존자녀수의 성비는 비취업부인이 114로 높았고, 취업부인은 109로 낮았는데, 이는 출생아의 성비에서와 유사한 양상이었으며, 부인의 연령 및 교육수

주37) 2003년의 조사결과는 평균 현존자녀수 1.78명이었으며, 남아 0.94명, 여아 0.84명으로 현존자녀수의 성비는 112이었음(김승권 외, 2004).

준에 따른 차이로 이해된다.

〈표 4-12〉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현존자녀의 성비

(단위: 명, %)

특성	현존자녀수			현존자녀 성비
	계	남아수(A)	여아수(B)	(A/B)
2003년 ¹⁾	1.78	0.94	0.84	112
2006년 ²⁾	1.70	0.89	0.81	110
지역				
동부	1.68	0.89	0.79	113
읍·면부	1.81	0.92	0.88	104
연령				
15~24세	0.65	0.32	0.33	97
25~29세	0.91	0.50	0.41	122
30~34세	1.56	0.81	0.75	108
35~39세	1.92	1.00	0.92	109
40~44세	2.00	1.06	0.94	113
교육수준				
초교 이하	2.07	1.22	0.85	144
중학교	1.97	1.03	0.94	110
고등학교	1.79	0.93	0.86	108
대학 이상	1.54	0.82	0.72	114
취업여부				
취업중	1.71	0.89	0.82	109
비취업	1.69	0.90	0.79	114

자료: <표 4-8>과 동일

제 4 절 출산간격의 변화

첫 자녀 출산에서부터 막내자녀 출산까지의 기간을 ‘출산기간’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기간은 부인의 결혼연령, 부부의 첫 자녀 출산시기, 그리고 막내자녀의 출산시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물론 출산을 종료하는 시기의 결정은 부부, 특히 출산당사자인 부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

임이 되었거나 불임시술에 의한 영구피임을 한 경우 등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결혼, 첫째 아 출산시 부인연령, 막내 아 출산시 부인연령에 의하여 결혼~막내 아 출산까지의 전체 기간을 산출하고자 한다.^{주38)}

15~49세 초혼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결혼연령은 24.1세이었고, 첫째 아 출산연령은 25.3세, 막내 아(추가자녀를 원하지 않는 상태)를 출산하거나 단산한 연령은 28.4세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 후 첫째 아 출산까지의 기간은 1.2년, 첫째 아 출산부터 막내 아 출산까지의 기간은 3.1년이 소요되어 결혼부터 막내 아 출산까지의 전체 기간은 4.3년이였다. 따라서 결혼 후 약 4년 만에 출산을 완료하였으며, 자녀규모가 결정된다고 하겠다.^{주39)}

이와 같은 2006년 조사결과를 2003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결혼연령은 0.2세가 연장된 것이며, 첫째 아 출산시 부인연령은 0.3세가 연장되었고, 막내 아 출산시 부인연령은 0.2세가 늦어졌다. 첫째 아 출산~막내 아 출산까지의 기간은 2003년 조사에서는 3.0년이었으나 2006년 조사에서는 3.1년으로 0.1년이 연장되었다. 따라서 결혼~막내 아 출산까지의 기간은 2003년 조사와 본 조사에서는 4.3년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주40)}

이러한 결과는 최근 우리나라 부인의 결혼연령의 상승, 첫째 자녀의 출산지연, 그리고 막내 자녀의 출산지연 등이 순차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주38) 재혼부인은 결혼연령, 첫째 아 및 막내 아의 출산이 전 남편과 현 남편의 자녀 등의 여건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는 관계로 우리나라 부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혼여성의 출산간격 분석에 오류를 줄 우려가 있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주39) 2003년의 조사결과는 결혼 후 첫째 아 출산까지의 기간은 1.3년, 첫째 아 출산부터 막내 아 출산까지의 기간은 3.0년이 소요되어 결혼부터 막내 아 출산까지의 전체기간은 4.3년이었음. 2003년의 조사결과는 결혼 후 약 4년만에 출산을 완료하였음(김승권 외, 2004).

주40) 2003년 조사에 의한 분석결과를 2000년 조사의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결혼연령은 0.5세가 연장된 것이며, 첫째 아 출산시 부인연령은 0.2세가, 막내 아 출산시 부인연령은 0.6세가 연장되었음. 다시 말해 결혼~첫째 아 출산까지의 기간은 2000년 조사에서는 1.2년이었으나 2003년 조사에서는 1.3년으로 0.1년이 연장되었고, 첫째 아 출산~막내 아 출산까지의 기간은 2000년 조사에서는 2.7년이었으나 2003년 조사에서는 3.0년으로 0.3년이 연장된 것임. 따라서 결혼~막내 아 출산까지의 기간은 2000년 조사에서는 3.9년이었으나 2003년 조사에서는 4.3년으로 0.4년이 연장되었음(김승권 외, 2004).

것이라 하겠다.

〈표 4-13〉 15~49세 초혼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결혼연령과 첫째 아 및 막내 아 출산시 연령

(단위: 세, 년)

특성	결혼연령 ¹⁾	첫째 아 출산시 연령 ¹⁾	막내 아 출산시 연령 ²⁾	결혼~막내 아 출산까지의 기간
1997년	23.2	24.5	27.6	4.4
2000년	23.7	24.9	27.6	3.9
2003년	23.9	25.2	28.2	4.3
2006년	24.1	25.3	28.4	4.3
지역				
동부	24.3	25.4	28.4	4.1
읍·면부	23.3	24.4	28.0	5.0
연령				
15~24세	20.7	21.4	22.0	1.3
25~29세	24.4	24.9	26.0	1.6
30~34세	25.3	26.3	28.4	3.1
35~39세	24.9	26.2	29.1	4.2
40~44세	24.4	25.7	29.0	4.6
45~49세	23.5	24.7	27.9	4.4
교육수준				
초교 이하	21.4	22.6	25.7	4.3
중학교	22.2	23.6	26.9	4.7
고등학교	24.1	25.3	28.1	3.7
대학 이상	25.8	27.0	29.5	
결혼코호트				
1979년 이하	21.6	23.0	27.2	5.6
1980~'89년	23.6	24.9	28.2	4.6
1990~'99년	25.1	26.4	29.2	4.1
2000~'03년	26.4	27.7	28.8	2.4
2004~'06년	27.2	27.7	27.7	0.5

주: 1) 출산경험이 없는 부인은 제외함.

2) 출산경험이 없는 부인과 경험이 있어도 추가자녀를 원하는 부인은 제외함.

자료: 1)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2)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3)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4) 본 조사결과

결혼~막내 아 출산까지의 전체기간을 부인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한국여성의 전반적 출산행태를 알고 향후의 출산행태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혼 후 첫 자녀 출산까지의 기간은 부인의 특성에 따라 약 0.5~1.4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41)} 결혼~막내 아 출산까지의 기간은 약 0.5~5.6년으로 부인특성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났다.

부인특성에 따른 결혼연령, 첫째 아 및 막내 아 출산연령, 그리고 결혼~막내 아 출산까지의 전체 기간 등을 부인의 결혼코호트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결혼~출산종료까지의 기간이 1979년까지의 결혼에서는 5.6년이나 되었으나 1980~1989년에 결혼한 부인은 약 4.6년으로 감소하였고, 1990~1999년의 결혼부인은 4.1년으로 더욱 감소하였으며, 그리고 최근(2000년대)에 결혼한 부인 중 2000~2003년 기간에는 2.4년으로 감소하였고, 2004~2006년 결혼한 부인은 더욱 감소하여 0.5년에 불과하였다. 특히, 2006년의 결혼~막내 아 출산까지의 기간이 0.5년에 불과한 것은 한 아이만 출산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제 5 절 출산행태 및 출생아·현존자녀수 변화의 시사점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에 관한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 합계 출산율,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출생아수, 현존자녀수, 출산간격 등 다양하게 살펴보았다. 본 조사결과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된 가족계획사업, 산업화에 따른 사회·경제발전,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등이 동시에 수반되어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수준은 현저하게 저하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는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 같다. 즉, 인구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 이하에서 약 20년간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저출산 기조는 결코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주41) 여기서 첫 자녀의 출산이 결혼 후 10개월 미만(약 0.8년 미만)인 경우는 조산 또는 혼전임신에 의한 출산으로 이해됨.

다. 따라서 비록 출산율이 상승하는 다행스러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극히 제한된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최근의 출산율 저하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하나는 1997년 말 이후 경제위기에 따른 취업난, 실업 등에 기인하여 나타난 불투명한 미래와 가족경제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결혼을 지연하거나 출산을 연기하는 경향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김승권 외, 2003). 또 다른 견해는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사회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양성불평등적 사회 및 가족 구조, 자녀양육 부담, 그리고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미흡 등에 의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인구정책은 적정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강구에 초점을 모아야 함과 병행하여 저출산의 지속에 따른 제반 사회경제적 현상을 분석하고 총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다른 선진국에서의 인구전환은 100년 이상의 장기간 진행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단기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인구구조 측면에서 심각한 왜곡현상을 보이고 있음도 직면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저출산율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인구정책은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과 낮은 출산율은 피할 수 없는 현상임을 인식하여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인구자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측면으로서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청소년 성 보건사업 등 생식보건 관련사업의 체계화 및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겠다. 더군다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0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율 증가와 동시에 미미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30대 후반과 40대 연령층의 늦둥이 출산은 모자보건 및 인구자질 측면에서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5 장 피임수용실태

피임이란 임신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피임방법은 수용자의 성별, 피임효과의 영구성과 지속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수용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피임방법과 여성피임방법으로 분류된다. 남성피임방법으로는 정관수술, 콘돔,주42) 질외사정법 등이 있으며, 여성피임방법으로는 난관수술, 자궁내장치,주43) 먹는 피임약,주44) 살정제주45) 등이 있다. 피임효과의 영구성 측면에서는 불임시술인 정관수술, 난관수술과 비영구적인 효과를 갖는 자궁내장치, 콘돔, 먹는 피임약 등이 있다. 또한 피임효과의 지속성에 따라서는 피임효과가 가장 높은 정관수술과 난관수술 같은 불임수술과 이 보다는 효과가 낮으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자궁내장치,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효과적인 피임방법으로 분류되는 콘돔, 먹는 피임약, 살정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피임방법의 선택은 수용자의 특성, 피임목적, 접근의 용이성, 비용 및 부작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피임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는 1961년 이후 가족계획사업에서 시작되었다. 가족계획사업의 주된 목적은 인구증가억제를 위해 가임기의 부인에게 피임을 권장하여 출산력을 저하하는 데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소자녀의 이점과 피임사용 방법 등을 교육하면서 피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된 이후 약 30년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되자 1989년부터 정부의 피임보급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1996년에는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어 정부차원의 피임보급은 극히 일부계층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정부의 피임보급물량의 감소는 피임실천율에 변화를 주게 될 우려가 있고, 이는 불원임신

주42) 수정 즉, 난자와 정자의 결합상태를 저지시키는 방법임.

주43)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방법임.

주44) 배란 자체를 억제시키는 방법임.

주45) 정자의 활동력 감소 내지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방법임.

을 증가시켜 인공임신중절을 높여 인구자질 측면에서 여성의 생식보건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 급속히 진행된 저출산으로 인하여 출산장려정책이 고려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피임보급의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주46)}과 관련하여 최근 기혼여성의 피임실천행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장에서는 15~44세 유배우부인 5,395명 중 무응답 2명을 제외한 5,393명을 분석대상으로 피임수용실태를 다음의 네 가지 측면으로 살펴본다. 첫째, 조사당시를 기준으로 2006년의 피임실천상태를 파악하고, 둘째 피임실천부인을 대상으로 부인특성별 및 피임방법별 피임실천율, 피임실천 목적을 분석한다. 셋째, 피임비실천 부인을 대상으로 피임중단 및 무경험이유, 향후 피임실천 의향 및 선호피임방법 등을 파악하고, 넷째는 현재 피임노출 상태 및 자녀희망여부별 피임실태를 분석한다.

제 1 절 피임실천의 변동추이

가임기에 있는 유배우부인은 피임의 필요성에 의해서 실천이 이루어지므로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즉, 일정 시점에서 볼 때 피임을 실천하는 상태와 피임을 실천하지 않은 상태로 구분되고, 피임을 실천하지 않은 상태는 다시 과거에 피임을 실천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와 피임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피임실천 양상을 4가지 유형 즉, 피임실천부인, 피임비실천부인으로 나누고, 피임비실천부인은 다시 피임경험부인, 피임무경험부인으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파악하며, 또한 부인특성에 따라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 지를 살펴본다.

주46) 최근 지속되는 저출산과 함께 남아선호관은 출산행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즉, 기혼여성의 남아선호관은 성감별을 통하여 인공임신중절 등이 행하여질 것이 예측되어 출산저하뿐 아니라 성비불균형이라는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1. 피임실천율의 변화

연도별로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실천상태를 살펴보면, 1976년의 피임실천율은 44.2%로 점차 증가하여 1985년 70.4%, 1991년에는 79.4%에 이르렀으며, 1994년에는 77.4%로 저하되었으나, 1997년에 다시 증가하여 80.5%의 높은 피임실천율을 나타냈다. 2000년에는 1997년에 비하여 1.2%포인트가 감소한 79.3%에서 2003년에는 5.2%포인트가 상승한 84.5%의 높은 피임실천율을 보였으며 다시 2006년에는 4.9%포인트가 감소한 79.6%로 200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고연령층의 경우, 임신희망으로 피임 불필요, 각종 스트레스, 인스턴트 식생활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불임의 증가로 인한 영향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피임실천율의 변화는 가족계획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1961년 이후 가족계획사업으로 피임보급물량이 지원됨에 따라 피임실천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9년 이후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감액되고, 1996년 6월을 기점으로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는 등 인구정책이 인구자질 및 복지정책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피임실천율이 소폭으로 증감을 계속하면서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그동안 피임실천이 안정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높은 피임실천 수준은 피임실천이 상당히 보편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피임비실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990년대에 이르러서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1976년 55.8%에서 1991년에는 20.6%까지 감소하였고, 1994년에는 22.6%로 증가하였으며, 1997년에는 다시 19.5%로 감소하였고, 2000년에는 20.7%로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15.5%로 감소하다가 2006년에는 다시 20.4%로 증가하였다. 이를 과거경험이 있으나 현재 실천하지 않은 부인과 피임경험이 전혀 없는 무경험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과거경험이 있으나 현재 피임실천을 하지 않은 부인은 1976년 18.7%에서 2006년에는 9.9%로 감소하였고, 피임무경험부인은 각각 37.1%에서 10.5%로 감소하여, 피임무경험부인의 경우 급격한 속도로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1>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실태 변화(1976~2006년)

(단위: %)

연도	실천	비실천			계
		소계	과거경험	무경험	
1976 ¹⁾	44.2	55.8	18.7	37.1	100.0
1979 ²⁾	54.5	45.5	21.5	24.0	100.0
1982 ³⁾	57.7	42.3	23.0	19.3	100.0
1985 ⁴⁾	70.4	29.6	13.3	16.3	100.0
1988 ⁵⁾	77.1	22.9	11.4	11.5	100.0
1991 ⁶⁾	79.4	20.6	9.6	11.0	100.0
1994 ⁷⁾	77.4	22.6	11.1	11.5	100.0
1997 ⁸⁾	80.5	19.5	9.7	9.8	100.0
2000 ⁹⁾	79.3	20.7	10.1	10.6	100.0
2003 ¹⁰⁾	84.5	15.5	8.5	7.0	100.0
2006 ¹¹⁾	79.6	20.4	9.9	10.5	100.0

자료: <표 4-1> 참조

일반적으로 피임은 출산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주47) 피임실천율과 합계출산율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1997년 80.5%로 정점을 이루었던 피임실천율은 2006년에 79.6%로 소폭으로 감소하는데 그쳤으나, 합계출산율은 1989년 정부피임보급 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에 증감을 반복하다가주48) 1996년에 1.71의 수준으로, 2005년에는 1.08의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피임실천율이 낮아질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부인 가운데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주47) 최근 각국의 조사자료에 의한 합계출산율과 피임실천율과의 관계를 보면, 피임실천율이 10% 증가하는데 따라 합계출산율은 0.7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UN, 1997).

주48) 1989년 이후 출산수준이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듯 1990년의 합계출산율은 1.6이었으나 1993년의 합계출산율은 1.75로 0.15가 높은 수준이었음. 그러나 1996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71수준으로 다시 낮아져 1993년의 출산율 증가를 일시적인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음.

2. 부인특성별 피임실천율의 변화

유배우부인의 특성별로 피임실천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이 각각 79.8%, 78.2%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3년의 경우 동부지역이 84.8%로 읍·면부지역 82.5%보다 2.3%포인트 높았던 것과 비교할 때 동부지역의 피임실천율의 감소는 읍·면부지역 보다 빠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표 5-2 참조).^{주49)}

피임비실천부인 중 과거경험이 있었던 부인은 2003년에 동부지역이 8.6%, 읍·면부지역이 8.0%에서, 2006년에는 각각 9.7%, 11.2%로 3년 동안 피임실천율이 소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과거경험이 있는 부인의 비율은 증가하여 동부지역은 1.7%포인트, 읍·면부지역은 3.2%포인트 높아졌다. 그리고 피임무경험부인의 비율은 반대의 경향을 보여서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3년간 과거에 경험이 없었던 피임비실천 부인의 비율은 동부지역은 3.9%포인트, 읍·면부지역은 1.1%포인트가 높아졌다(표 5-2 참조).^{주50)}

결과적으로 과거경험이 있는 부인 및 과거에 전혀 경험이 없는 부인의 피임비실천율은 동부 및 읍·면부지역 모두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은 과거경험이 있는 부인은 읍·면부지역이, 피임무경험 부인은 동부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큰 증가폭을 보였다.

주49) 2000년 15~44세 유배우부인 6,4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동부지역은 피임실천율이 79.2%, 비실천율이 20.8%이었으며, 읍·면부지역은 피임실천율이 80.2%, 비실천율이 19.8%의 분포를 보였음(김승권 외, 2000).

주50)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동부지역은 피임비실천 부인 중 과거 경험이 있는 부인의 비율이 8.6%, 피임무경험 부인은 6.6%인 반면 읍·면부지역은 각각 8.0%, 9.5%이었음(김승권 외, 2003).

〈표 5-2〉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실태

(단위: %)

특성	실천	비실천			계(수)
		소계	과거경험	무경험	
전체	79.6	20.4	9.9	10.5	100.0(5,395)
지역					
동부	79.8	20.2	9.7	10.5	100.0(4,607)
읍·면부	78.2	21.8	11.2	10.6	100.0(786)
연령					
15~24세	43.3	56.7	17.3	39.4	100.0(127)
25~29세	51.3	48.7	22.5	26.2	100.0(637)
30~34세	74.2	25.8	13.8	12.0	100.0(1,432)
35~39세	88.0	12.0	5.5	6.5	100.0(1,661)
40~44세	90.3	9.7	5.3	4.4	100.0(1,535)
교육수준					
초교 이하	81.8	18.2	10.6	7.6	100.0(66)
중학교	85.2	14.8	6.1	8.7	100.0(264)
고등학교	81.6	18.4	8.9	9.5	100.0(2,860)
대학 이상	76.2	23.8	11.8	12.0	100.0(2,198)
현존자녀수					
0명	35.4	64.6	23.9	40.7	100.0(540)
1명	61.5	38.5	18.8	19.7	100.0(1,195)
2명	92.2	7.8	4.8	3.0	100.0(3,060)
3명	91.5	8.5	5.8	2.7	100.0(553)
4명 이상	90.9	9.1	6.8	2.3	100.0(44)

부인연령에 따른 피임실천 수준을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반대로 피임비실천 부인의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였다. 피임비실천 부인 중 과거경험부인의 비율은 20대 후반에서 증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계속 감소하고 있다. 또한 피임무경험부인의 비율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30대 초반까지 자녀출산을 종료한 후 30대 후반에는 단산을 위하여 피임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수준별 피임실천율은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보다는 최근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연령에 의한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즉, 15~44세 유

배우부인의 교육수준별 평균연령을 보면 초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평균 연령은 40.4세, 중학교 학력의 부인은 39.9세, 고등학교는 36.1세, 대학 출신의 부인은 34.5세로 나타나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수는 부인의 연령과 정비례의 관계로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현존 자녀수는 많았으며, 현존자녀수가 많을수록 피임실천율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조사결과, 자녀가 1명인 부인의 경우 피임실천율은 61.5%,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92.2%로 급격히 상승하였고,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부터는 비슷한 피임실천수준을 보였다. 이는 소자녀 가치관의 정착 때문으로 두 자녀가 일반화됨에 따라 그 이상의 자녀를 둔 부인의 경우는 대부분이 피임을 실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수준별 피임실천율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별로 교육수준에 따른 피임실천상태를 <표 5-3>에 제시하였다. 15~24세 연령층의 경우 중학교 이하 학력의 피임실천율은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의미가 적으며 대체로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 학력의 피임실천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결혼시기가 빠른 경우 임신·출산 행태가 결혼 후 단기간 내에 일어나며 이와 같은 현상은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연령층에서는 각각 고등학교와 중학교 학력을 가진 부인의 피임실천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피임실천율이 가장 낮았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부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부인보다 결혼연령이 높은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임신시기가 늦어지는 데서 오는 영향으로 이해된다.

자녀출산이 종료되는 30대 후반 연령층에서는 피임실천율이 정점을 보였으며, 교육수준에 따라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피임실천율은 낮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여성의 고학력화, 취업기회 확대 및 자아성취 욕구의 증대 등으로 인한 결혼연령의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피임실태

(단위: %)

특성	실천	비실천			계(수)
		소계	과거경험	무경험	
15~24세					
초교 이하 ¹⁾	-	-	-	-	-
중학교	33.3	66.7	11.1	55.6	100.0(9)
고등학교	41.9	58.1	23.0	35.1	100.0(74)
대학 이상	44.2	55.8	9.3	46.5	100.0(43)
25~29세					
초교 이하 ¹⁾	-	-	-	-	-
중학교	50.0	50.0	16.7	33.3	100.0(6)
고등학교	56.7	43.3	20.2	23.1	100.0(268)
대학 이상	47.7	52.3	23.8	28.5	100.0(361)
30~34세					
초교 이하 ¹⁾	-	-	-	-	-
중학교	81.2	18.8	6.3	12.5	100.0(16)
고등학교	74.3	25.7	12.9	12.8	100.0(703)
대학 이상	74.2	25.8	14.8	11.0	100.0(709)
35~39세					
초교 이하	100.0	-	-	-	100.0(10)
중학교	89.4	10.6	4.2	6.4	100.0(47)
고등학교	88.6	11.4	4.9	6.5	100.0(943)
대학 이상	87.0	13.0	6.5	6.5	100.0(659)
40~44세					
초교 이하	85.7	14.3	10.2	4.1	100.0(49)
중학교	88.6	11.4	5.4	6.0	100.0(184)
고등학교	90.8	9.2	5.2	4.0	100.0(872)
대학 이상	90.4	9.6	5.1	4.5	100.0(426)

주: 1) 34세 이하 연령층의 경우, 초교 이하의 분석대상 수는 5명 미만으로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여 제시하지 않았음.

연도별 피임실천율의 변화를 유배우부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4 참조). 지역별로는 1976년 이후 1988년까지 동부지역이 계속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1991년 이후부터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높아지면서, 지역간 차이가 줄어들었다. 2003년에는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을 상회하면서 지역간 차이가 약간 벌어졌으며 2006년에는 소폭의 감소를 보였다. 1991년 이후 지역

간 차이가 줄어든 것은 피임에 대한 지식 및 생활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3년에 다시 동부지역의 피임실천율이 높아지면서, 지역간 차이가 약간 벌어지는 것은 유배우부인의 출산종료시기가 과거에 비해 빨라지면서 피임을 실천하는 연령층이 낮아지는데서 오는 영향으로 이해된다.

부인의 연령 및 현존자녀수에 따른 피임실천율은 비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모든 연령층에서 계속 상승추세를 보였던 피임실천율은 가족계획사업이 축소되던 시기인 1991년을 기점으로 연령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1991년의 경우 25~34세 연령층의 피임실천율은 저하하였고, 나머지 15~24세, 35~44세 연령층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94년에 40~44세 연령층의 피임실천율은 상승하였으나, 이 연령층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저하하는 경향을 보였다. 1997년에는 다시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다가 2003년에는 일부 연령층을 제외하고 감소하였으며, 2006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현존자녀수별 피임실천율 역시 계속 상승하다가 1991년부터 자녀수별로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4년에는 1~3명의 자녀를 둔 부인의 피임실천율이 저하되었다가, 1997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다시 증가되었고, 2003년에는 자녀수가 3명 이하에서는 증가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자녀수 5명 이상인 경우만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정부에서 피임시술 보급량을 크게 축소하기 시작한 시점인 1989년 이후에 피임실천율이 일시적인 저하를 보였으나, 피임실천의 보편화로 피임실천율이 계속 증가하다가 2006년에 오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피임실천은 안정화되었으나 우리나라 여성의 결혼연령이 늦어지는데서 오는 영향으로 이해되며 여성의 생식보건과 관련하여 질적인 관리에 집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5-4〉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실천율(1976~2006년)

(단위: %)

특성	1976	1979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전체	44.2	54.5	57.7	70.4	77.1	79.4	77.4	80.5	79.3	84.5	79.6
지역											
동부	48.0	55.1	58.7	71.5	77.7	79.3	77.1	80.5	79.2	84.8	79.8
읍·면부	40.2	53.6	55.7	67.7	75.5	80.0	78.4	80.7	80.2	82.7	78.2
연령											
15~24세	15.4	18.3	22.5	35.8	44.4	45.6	40.6	45.2	43.5	56.8	43.3
25~29세	31.9	40.9	44.6	60.8	65.4	61.4	60.1	60.6	57.0	64.8	51.3
30~34세	55.8	68.5	71.7	84.2	86.8	84.4	81.3	82.5	81.3	80.8	74.2
35~39세	61.5	71.9	79.9	87.2	89.6	93.7	89.6	91.1	89.3	90.8	88.0
40~44세	45.1	53.3	62.3	69.6	81.6	87.2	87.4	89.6	87.7	91.5	90.3
교육수준											
무학 ¹⁾	39.3	50.9	57.6	70.2	78.8	-	88.0	-	68.8	71.4	-
초등학교	42.8	54.2	60.3	74.1	80.9	86.4	84.9	88.4	86.2	89.1	81.8
중학교	44.2	52.9	55.5	69.0	79.6	84.7	81.7	86.3	88.9	89.4	85.2
고등학교	50.9	58.0	54.6	66.8	74.0	75.3	74.8	78.2	78.4	85.3	81.6
대학 이상	51.8	61.1	64.6	78.2	73.5	72.8	74.2	78.6	75.4	81.3	76.2
현존자녀수											
0명	4.6	7.0	11.0	13.8	21.0	20.4	23.0	26.1	29.3	38.7	35.4
1명	18.2	20.7	24.3	44.7	58.1	61.8	58.7	62.0	58.7	67.0	61.5
2명	44.0	58.2	66.7	82.5	89.3	91.4	90.2	92.5	92.7	94.5	92.2
3명	59.0	69.0	76.4	84.5	90.5	92.8	91.4	91.4	90.7	93.4	91.5
4명	60.4	68.9	70.8	80.1	87.6	88.0 ²⁾	88.4 ²⁾	94.2 ²⁾	93.8	91.4	89.7
5명 이상	47.2	58.5	64.2	76.3	83.8	-	-	-	94.1	92.9	100.0

주: 1) 교육수준이 무학인 경우 분석대상 수가 5명 미만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여 피임실천율을 제시하지 않았음.

2) 현존자녀수 5명 이상 포함.

자료: <표 5-1>과 동일

교육수준별 피임실천율은 연도별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 1976년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피임실천율도 높았으나, 1980년대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여 1988년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피임실천율이 낮아져서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향은 1997년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여 2000년 이후에는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임실천의 초기단계에서는 고학력층을 중심으로 피임실천이 이루어졌으나, 피임이 보편화되고 여성의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기가 늦어지면서 원하는 자녀수를 가진 후 피임을 수용하는 경향이 정착됨에 따라 고학력층 여성의 피임실천율이 낮아진 것으로 이해된다.

피임방법별 피임실천율은 1991년을 정점으로 뚜렷한 변화를 보여준다(표 5-5 참조). 난관수술은 1988년까지 큰 폭의 증가를 하다가 1991년부터 감소하였으며, 2006년에는 2003년보다 4.3%포인트가 감소하였다. 반대로 먹는 피임약의 실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7년에는 1.8%까지 떨어졌으나, 2000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하다,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6년에는 1.1%로 나타났다. 정관수술 실천율은 1994년에 일시적인 감소를 보인 외에 계속 상승하여 2006년에 19.7%까지 증가하였으며, 콘돔실천은 꾸준히 증가하다 2003년에 일시적인 감소를 보인 후에 2006년에는 다시 19.2%까지 증가하였다. 한편, 자궁내장치는 또한 1988년 까지 증감을 계속하다 199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6년에는 2003년보다 1.0%포인트가 감소하였다. 기타 방법은 1988년까지 계속 감소하다 1991년부터 난관수술이 감소하면서 사용이 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각각 18.8%와 16.6%의 실천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콘돔 실천율의 증가는 먹는 피임약 및 기타 피임방법의 감소에 의한 영향으로 이해된다.

〈표 5-5〉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방법별 피임실천율

(단위: %)

피임방법	1976	1979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난관수술	4.1	14.5	23.0	31.6	37.2	35.3	28.6	24.1	18.3	15.6	11.3
정관수술	4.2	5.9	5.1	8.9	11.0	12.0	11.6	12.7	13.0	15.7	19.7
자궁내장치	10.5	9.6	6.7	7.4	6.7	9.0	10.5	13.2	13.7	16.1	15.0
먹는 피임약	7.8	7.2	5.4	4.3	2.8	3.0	1.8	1.8	2.1	2.0	1.1
콘돔	6.3	5.2	7.2	7.2	10.2	10.2	14.3	15.1	16.5	8.5	19.2
기타	11.3	12.1	10.3	11.0	9.2	9.9	10.6	13.6	15.7	26.6	13.3

자료: <표 5-1>과 동일

따라서 가족계획사업의 활성화 시기에는 정부정책의 목표가 여성으로 난관수술이 주도 하였으나, 정부의 피임보급이 감소함에 따라 난관수술의 의존도가 떨어졌으며, 오히려 남성피임법인 정관수술과 반영구적 피임방법인 자궁내장치, 콘돔에 의한 실천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피임방법의 변화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피임방법이 여성피임방법인 난관수술에서 탈피하여 남성피임방법인 정관수술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성 평등적인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둘째, 영구적인 피임방법에서 자궁내장치, 콘돔 등 반영구적 피임방법 및 일시적인 피임방법으로 점차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피임효과가 불확실한 피임방법의 사용증가로 인공임신중절에 노출되어 여성의 생식보건을 저해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제 2 절 피임실천양상

본 절에서는 가임기에 있는 유배우부인 중 현재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부인을 중심으로 피임실천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부인특성별로 피임방법별 피임실천, 피임을 실천하는 목적 및 현사용 피임방법에 대한 계속 사용의향 및 선호하는 피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부인의 특성 및 피임방법별 피임실천

유배우부인의 특성 및 사용하는 피임방법에 따른 피임실천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6 참조). 지역별로 보면,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정관수술, 콘돔, 살정제, 월경주기법 및 기타 방법 등의 피임방법에서 높은 피임실천율을 보였고, 난관수술, 자궁내장치, 먹는 피임약 등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높았다. 따라서 동부지역에서는 주로 남성용 피임방법이, 읍·면부지역에서는 여성용 피임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남성의 경우 동부지역보다 피임방법의 선택이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측면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한 동부지역보다는 읍·면부지역이 정부의 피임보급량의 감소로 인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임시술 보급량의 감소는 그 속도를 완만하게 하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표 5-6〉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 및 방법별 피임실천율

(단위: %)

특성	실 천										계(수)
	소계	난관수술	정관수술	자궁내장치	먹는피임약	콘돔	살정제	월경주기법	기타방법	비실천	
전체	79.6	11.3	19.7	15.0	1.1	19.2	0.2	7.9	5.2	20.4	100.0(5,395)
지역											
동부	79.8	10.7	20.3	14.5	0.9	20.0	0.2	8.0	5.2	20.2	100.0(4,607)
읍·면부	78.2	14.9	16.2	17.6	2.0	14.9	-	7.6	5.0	21.8	100.0(786)
연령											
15~24세	43.3	-	0.8	6.7	3.3	17.5	-	8.3	6.7	56.7	100.0(127)
25~29세	51.3	1.5	3.7	6.3	1.3	25.5	-	6.7	6.3	48.7	100.0(637)
30~34세	74.2	5.7	14.5	12.3	1.0	24.3	-	9.0	7.4	25.8	100.0(1,432)
35~39세	88.0	11.0	26.5	17.6	1.0	17.9	0.1	8.4	5.5	12.0	100.0(1,661)
40~44세	90.3	21.4	25.2	18.8	0.8	14.2	0.4	7.0	2.5	9.7	100.0(1,535)
교육수준											
초교 이하	81.8	44.0	9.4	15.7	-	4.8	-	6.3	1.6	18.2	100.0(66)
중학교	85.2	28.8	13.8	22.0	2.4	11.1	0.4	4.3	2.4	14.8	100.0(264)
고등학교	81.6	13.4	20.3	17.4	1.1	15.7	0.2	7.8	5.7	18.4	100.0(2,860)
대학 이상	76.2	5.2	20.1	10.7	1.0	25.6	0.1	8.5	5.0	23.8	100.0(2,198)
현존자녀수											
0명	35.4	1.3	0.7	3.5	2.4	18.2	-	5.4	3.9	64.6	100.0(540)
1명	61.5	2.8	6.3	9.5	1.3	25.5	0.1	8.8	7.2	38.5	100.0(1,195)
2명	92.2	15.0	25.8	18.3	0.8	19.2	0.2	8.1	4.8	7.8	100.0(3,060)
3명	91.5	17.1	31.9	18.7	1.2	10.4	-	7.2	5.0	8.5	100.0(553)
4명 이상	90.9	23.9	19.2	21.5	-	9.5	-	12.0	4.8	9.1	100.0(44)

부인연령 및 피임방법별로 피임실천율을 보면, 난관 및 정관수술 등의 영구적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율은 부인연령이 높을수록 상승하였다. 반영구적 피임

방법인 자궁내장치는 40~44세 연령층에서 피임실천율이 가장 높았으며, 먹는 피임약, 콘돔, 기타방법 등의 일시적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율은 젊은 연령층 부인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나이가 많은 연령층에서는 이미 원하는 자녀를 갖고 단산을 원하기 때문에 불임수술을 수용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은 것이며, 젊은 연령층에서는 아직 원하는 자녀를 모두 출산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터울조절이 가능한 일시적 피임방법의 사용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피임방법의 지도는 부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여 관리 될 때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피임방법별 실천율을 보면,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난관수술 및 먹는피임약에 의한 피임실천율이 높았고, 정관수술, 일시적 피임방법인 콘돔, 월경주기법 및 기타방법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천율이 높았으며, 자궁내장치 등은 학력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수준과 연령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학력과 피임방법의 관계만으로 단순히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존자녀수 및 피임방법별 실천율은 부인의 연령에 따른 피임방법 실천율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자녀수가 많을수록 난관수술과 정관수술 같은 영구피임방법과 자궁내장치 같은 반영구피임방법을 실천하는 비율이 높았고, 자녀수가 적을수록 먹는 피임약, 콘돔, 월경주기법, 기타방법 등의 일시적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인의 취업여부는 피임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출산 및 자녀양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피임실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피임실천율을 살펴보면 <표 5-7>과 같다. 취업한 부인의 경우 피임실천율은 82.8%로 비취업상태에 있는 부인의 피임실천율인 76.5%보다 6.3%포인트가 높았다. 지역별 피임실천율도 취업부인이 비취업부인보다 피임실천율이 높아서 전체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피임실천율의 수준은 취업부인은 지역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비취업부인은 지역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이 읍·면부지역

에 거주하는 부인보다 피임실천율이 높았다.

취업에 따른 연령별 피임실천율은 연령층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대 이하와 35~39세 연령층에서는 취업부인과 비취업부인의 피임실천율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30~34세와 40~44세 연령층은 피임실천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취업부인과 비취업부인의 피임실천율의 차이는 40~44세 연령층이 11.2%포인트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이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연령별 피임실천율은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취업부인과 비취업부인 간의 피임실천율의 차이는 동부지역보다 읍·면부지역의 경우에 더 컸다.

〈표 5-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지역, 연령 및 취업여부별 피임실천율

(단위: %)

취업여부	실천						비실천	계(수)
	소계	15~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전국								
취업	82.8	0.7	5.6	17.0	28.1	31.4	17.2	100.0(2,664)
비취업	76.5	1.3	6.5	22.3	26.2	20.2	23.5	100.0(2,729)
동부								
취업	82.4	0.7	6.0	17.1	28.1	30.5	17.6	100.0(2,230)
비취업	77.4	1.2	6.2	22.6	26.2	21.2	22.6	100.0(2,376)
읍·면부								
취업	84.3	0.7	3.2	16.6	28.1	35.7	15.7	100.0(434)
비취업	70.5	1.7	8.5	20.9	26.3	13.1	29.5	100.0(353)

대체로 취업부인과 비취업부인의 피임실천경향은 출산가능시기인 젊은 연령층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출산종료 시기인 40대 연령층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취업한 부인은 짧은 시기 안에 출산행위를 종료하는 것에 비해, 비취업부인은 터울을 두고 출산을 조절하고 있으며, 또한 취업부인이 비취업 부인보다 소자녀 출산의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지역간 차이를 보면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이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보다 취업이 출산태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인의 연령 및 현존자녀수별로 피임실천율 및 불임수술실천율을 살펴보면 <표 5-8>과 같다. 자녀가 없는 부인의 피임실천율은 35.4%이고, 불임수술실천율은 2.0%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15~24세 연령층의 피임실천율은 44.3%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았는데, 이는 2003년도 조사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15~24세 연령층의 피임실천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결혼 초기에 젊은 부부의 출산계획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표 5-8>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실천율 및 불임실천율

(단위: %)

구분	15~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전체
2003년 ¹⁾						
피임실천율	56.8	64.8	80.8	90.8	91.5	84.5
불임수술실천율	4.2	10.9	22.5	39.8	54.8	37.1
2006년 ²⁾						
피임실천율	43.3	51.3	74.2	88.0	90.3	79.6
불임수술실천율	0.8	5.2	20.2	37.5	46.6	31.0
0명						
피임실천율	44.3	32.4	37.3	27.1	40.5	35.4
불임수술실천율	-	-	-	8.3	13.5	2.0
1명						
피임실천율	35.3	53.0	61.3	67.3	72.9	61.5
불임수술실천율	2.2	0.9	3.5	13.5	27.0	9.1
2명						
피임실천율	66.7	75.7	88.4	94.8	94.4	92.2
불임수술실천율	-	16.7	31.3	40.5	51.3	40.8
3명						
피임실천율	-	73.3	82.7	93.8	94.3	91.5
불임수술실천율	-	44.0	34.2	56.7	48.3	49.0
4명 이상						
피임실천율	-	-	-	100.0	90.0	90.9
불임수술실천율	-	-	-	66.7	32.4	43.1

주: 1) 30~34세 연령층에서 현존자녀수가 4명인 경우의 불임수술실천율은 분석대상 수가 1명으로 조사되어서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여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1)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2) 본 조사결과

그리고 35~39세 연령층 부인은 피임실천율이 낮았는데, 이는 불임에 의한 영향이거나 자녀가 없을 경우 자녀를 원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인의 불임실천율은 30대 후반부터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35~39세와 40~44세의 불임실천율은 자녀출산을 완료하고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로 이해된다.

자녀를 1명 가진 부인들의 경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피임실천율과 불임실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가 2명인 부인의 경우는 1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에 비하여 피임실천율과 불임실천율이 훨씬 높았다. 연령별로는 35세 이상 연령층에서 90% 이상의 높은 피임실천율을 보였고, 불임수술실천율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40~44세 연령층의 경우 51.3%로 가장 높았다.

자녀가 3명인 부인은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보다 전 연령층에서 피임실천율이 낮은 반면, 불임실천율은 40~44세 연령층을 제외하고 25세 이상 연령층에서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보다 높았다.

2. 부인의 특성별 피임실천 목적

부인의 피임실천목적은 출산행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표 5-9>와 같다. 우리나라 15~44세의 유배우부인의 69.7%가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였고, 출산연기 목적의 피임실천부인은 9.7%, 그리고 기타 등으로 피임을 하고 있는 경우는 0.2%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임실천부인의 약 88%가 단산을 목적으로, 나머지 약 12%는 건강이나 취업 또는 경제적인 이유, 가족수발, 자녀양육 등의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임신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였다(표 5-10 참조).

지역별로는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는 부인의 비율은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0.7%포인트, 출산연기는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 보다 0.9%포인트가 높았으며, 기타는 지역간에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피임을 실천하는 목적은 지역간 차이 없이 단산에 집중되었다. 또한 젊은 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부지역은 읍·면부지역보다 건강이나 취업 또는 경제적인 이유, 가족수발, 자

녀양육 등의 이유로 출산연기를 위해 피임을 하는 경우가 다소 많아 다양한 피임행태를 보여주었다.

〈표 5-9〉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목적에 따른 피임실태

(단위: %)

특성	실천				비실천	계(수)
	소계	단산	출산연기 ¹⁾	기타 ²⁾		
2003년	84.5	74.8	9.4	0.3	15.5	100.0(6,598)
2006년	79.6	69.7	9.7	0.2	20.4	100.0(5,395)
지역						
동부	79.8	69.8	9.8	0.2	20.2	100.0(4,607)
읍·면부	78.2	69.1	8.9	0.2	21.8	100.0(786)
연령						
15~24세	43.3	10.2	33.1	-	56.7	100.0(127)
25~29세	51.3	23.5	27.6	0.2	48.7	100.0(637)
30~34세	74.2	57.6	16.3	0.3	25.8	100.0(1,432)
35~39세	88.0	84.1	3.8	0.1	12.0	100.0(1,661)
40~44세	90.3	89.8	0.5	-	9.7	100.0(1,535)
교육수준						
초교 이하	81.8	80.3	1.5	-	18.2	100.0(66)
중학교	85.2	83.3	1.9	-	14.8	100.0(264)
고등학교	81.6	74.1	7.3	0.2	18.4	100.0(2,860)
대학 이상	76.2	62.1	14.0	0.1	23.8	100.0(2,198)
현존자녀수						
0명	35.4	6.0	29.4	-	64.6	100.0(540)
1명	61.5	40.0	21.3	0.2	38.5	100.0(1,195)
2명	92.2	88.7	3.4	0.1	7.8	100.0(3,060)
3명	91.5	89.7	1.4	0.4	8.5	100.0(553)
4명 이상	90.9	90.9	-	-	9.1	100.0(44)

주: 1) 2003년의 출산연기는 터울조절만을 말함.

2) 기타에는 건강이나 취업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이 포함됨.

자료: 1)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2) 본 조사결과

부인의 연령별로는 15~24세, 25~29세 연령층의 출산연기를 위한 피임실태

율은 각각 33.1%, 27.6%로 2003년의 41.8%, 35.4%에 비하여 감소한 반면, 30~34세 연령층은 16.3%로 2003년의 12.3%에 비해 4.0%포인트가 증가하였다(표 5-9 참조). 이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자아성취 등의 욕구 등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젊은 연령층에서 계획출산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15~29세 연령층에서는 출산연기를, 35세 이상 연령층의 부인은 주로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 피임실천목적도 교육수준이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연령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저연령층에 속해있는 고학력 수준의 부인일수록 출산연기 목적의 피임실천이 많았던 반면, 고연령층의 저학력 부인은 단산목적의 피임실천이 많았다. 즉,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14.0%는 출산연기를 목적으로, 초등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부인의 80.3%는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였다.

현존자녀수는 부인의 연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인의 연령에 따른 피임실천목적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자녀가 없는 부인은 주로 출산연기를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였고, 1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단산과 출산연기를 목적으로, 그리고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의 경우는 단산을 주목적으로 피임실천을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인은 1명의 자녀를 출산한 후부터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였으며,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의 대다수도 피임을 통하여 단산하고 있어서 저 출산의 실태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편 피임실천부인만을 대상으로 피임목적을 보면 부인의 87.6%가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였고, 12.4%만이 출산연기를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1 참조). 따라서 우리나라 부인의 대부분은 원하는 자녀를 모두 출산한 후 피임을 실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단산 및 출산연기 이유¹⁾

(단위: %)

특성	저소득	고용 상태 불안정	자녀양육비용 부담	자녀 돌볼 사람 또는 시설 없음	출산으로 인한 직장차별	사회 활동 지장	부부중심의 생활	가정내 가사 및 양육의 불평등 부담	가족 수발	터울 조절	기타 ²⁾	계(수)
전체	8.3	1.2	49.0	6.0	-	4.8	7.7	1.1	0.5	2.5	18.9	100.0(4,261)
지역												
동부	8.0	1.3	49.0	6.2	0.1	4.8	7.8	1.2	0.5	2.5	18.7	100.0(3,648)
읍·면부	10.0	0.8	48.9	4.4	-	4.7	7.2	0.8	0.8	2.4	19.9	100.0(613)
연령												
15~24세	26.8	7.1	16.1	5.4	-	8.9	14.3	-	-	14.3	7.1	100.0(56)
25~29세	10.9	2.5	40.6	9.7	0.3	7.2	5.3	0.9	0.3	14.1	8.1	100.0(320)
30~34세	8.2	1.6	50.9	9.6	-	5.8	6.6	1.7	0.5	4.2	11.0	100.0(1,053)
35~39세	7.1	0.4	53.4	5.0	0.1	3.9	7.2	1.2	0.3	0.6	20.9	100.0(1,453)
40~44세	8.3	1.1	46.3	3.4	-	4.1	9.5	0.7	0.9	-	25.7	100.0(1,376)
교육수준												
초교 이하	12.7	1.8	52.7	1.8	-	-	5.5	-	1.8	-	23.6	100.0(55)
중학교	22.8	1.8	50.0	0.9	-	1.3	2.7	-	0.4	0.4	19.6	100.0(224)
고등학교	9.1	1.1	55.4	3.6	-	2.8	6.3	1.0	0.6	1.3	18.8	100.0(2,316)
대학 이상	5.1	1.1	39.9	10.1	0.1	8.3	10.4	1.4	0.5	4.5	18.7	100.0(1,659)
현존자녀수												
0명	16.1	4.3	15.6	5.9	0.5	20.4	24.2	-	0.5	0.5	11.8	100.0(186)
1명	10.4	1.8	32.9	11.6	-	7.0	8.2	1.9	1.1	11.9	13.2	100.0(730)
2명	7.0	0.9	54.9	5.3	-	3.4	7.3	1.0	0.5	0.5	19.2	100.0(2,798)
3명	8.3	1.0	52.0	2.0	-	3.6	3.6	1.2	0.2	0.8	27.4	100.0(504)
4명 이상	20.5	-	46.2	2.6	-	-	5.1	-	-	-	25.6	100.0(39)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1.3	2.7	49.3	4.0	-	-	5.3	-	4.0	-	13.3	100.0(75)
100~199만원	20.9	2.7	51.2	2.0	-	2.9	5.4	0.4	0.5	2.5	11.4	100.0(551)
200~299만원	12.2	1.6	54.0	4.3	-	2.6	4.6	1.0	0.4	4.3	14.9	100.0(1,152)
300만원 이상	3.3	0.6	46.1	7.9	0.1	6.4	9.7	1.4	0.5	1.6	22.5	100.0(2,433)

주: 1) 피임목적이 '단산 및 출산연기'라고 응답한 부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에는 건강이나 취업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이 포함됨.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부인들이 사용하는 피임방법은 그 목적이 단산인지 또는 출산연기인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일시적 피임방법의 경우, 출산연기 뿐만 아니라 단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서 피임실패의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피임목적에 따라 적절한 피임사용법에 대한 홍보계몽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5-11〉 15~44세 유배우 피임실천부인의 피임방법별 피임목적

(단위: %)

피임방법	단산	출산연기	기타	계(수)
전국	87.6	12.2	0.2	100.0(3,859)
난관수술	99.5	0.4	0.2	100.0(549)
정관수술	99.0	1.0	-	100.0(958)
자궁내장치	92.3	7.3	0.4	100.0(725)
먹는 피임약	71.7	28.3	-	100.0(53)
콘돔	74.8	25.1	0.1	100.0(932)
살정제	100.0	-	-	100.0(7)
월경주기법	80.9	19.1	-	100.0(384)
기타	75.3	24.3	0.4	100.0(251)
동부	87.5	12.3	0.2	100.0(3,304)
난관수술	99.5	0.5	-	100.0(443)
정관수술	98.9	1.1	-	100.0(843)
자궁내장치	92.8	6.7	0.5	100.0(601)
먹는 피임약	66.7	33.3	-	100.0(39)
콘돔	74.2	25.7	0.1	100.0(826)
살정제	100.0	-	-	100.0(7)
월경주기법	81.5	18.5	-	100.0(329)
기타	75.5	24.1	0.5	100.0(216)
읍·면부	88.4	11.4	0.2	100.0(555)
난관수술	99.1	-	0.9	100.0(106)
정관수술	99.1	0.9	-	100.0(115)
자궁내장치	88.7	11.3	-	100.0(124)
먹는 피임약	85.7	14.3	-	100.0(14)
콘돔	79.2	20.8	-	100.0(106)
살정제	-	-	-	100.0(0)
월경주기법	76.4	23.6	-	100.0(55)
기타	74.3	25.7	-	100.0(35)

그리고 피임실천 목적에 대한 지역간 차이를 보면, 출산연기 목적의 피임실천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12.3%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11.4%보다 0.9%포인트가 높았다. 피임방법별로는 동부지역에서는 먹는 피임약(33.3%), 콘돔

(25.7%), 기타방법(24.1%) 등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읍·면부지역에서는 기타 방법(25.7%), 월경주기법(23.6%), 콘돔(20.8%) 등을 선호하였다.

3. 현사용 피임방법에 대한 계속 사용의향 및 선호피임방법

<표 5-12>는 비영구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부인 중에서, 향후 사용의향 및 앞으로 피임방법을 바꾸려는 부인이 선호하는 피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향후 부인이 선호하는 피임방법을 살펴보는 것은 출산 및 여성의 생식건강과도 관련이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 피임방법을 계속 사용할 의향을 가진 부인은 66.5%이었으며, 다른 피임방법으로 변경할 의향을 갖고 있는 부인은 27.7%,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부인은 5.8%이었다. 피임방법별로는 자궁내장치 수용부인의 79.4%가 계속 사용하겠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살정제를 사용하는 부인은 57.1%만이 계속 사용하겠다고 응답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피임방법을 변경하겠다고 응답한 부인은 살정제를 사용하는 부인이 42.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기타방법을 사용하는 부인이 37.2%, 콘돔을 사용하는 부인은 32.4%이었고, 이 외에 먹는 피임약 및 월경주기법 사용부인도 각각 32.1%, 27.9%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궁내장치를 사용하는 부인은 17.7%만이 변경하겠다고 응답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다른 방법으로 바꾸겠다는 의향을 가진 부인의 바꾸고자 하는 피임방법은 정관수술이 7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궁내장치 10.9%, 난관수술 6.7%, 콘돔 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방법은 낮은 비율을 보여 향후 부인이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사용상의 불편 및 실패임신의 위험이 낮은 정관수술과 자궁내장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재 사용중인 피임방법별로 향후 사용을 희망하는 피임방법을 보면, 현재 사용하는 모든 피임방법에서 정관수술로 바꾸고자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즉, 자궁내장치를 사용 중인 부인의 74.2%, 먹는 피임약 58.8%, 콘돔 76.4%, 살정제 66.7%, 월경주기법 62.5%, 기타 방법을 사용하는 부인은 67.7%로 다른

방법에 비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 외에 현재 먹는 피임약, 월경주기법 및 기타 방법을 사용하는 부인의 경우 자궁내장치로 바꾸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자궁내장치 및 먹는 피임약을 사용하는 부인은 난관수술로 바꾸고자 하는 비율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상의 번거로움이 따르는 일시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부인의 경우 향후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안정성이 높고, 사용상의 불편함이 적은 영구적 및 반영구적 피임방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 15~44세 유배우부인 중 비영구적 피임실천부인의 방법별 계속 사용의향 및 변경희망 피임방법

(단위: %)

구 분	현 사용 피임방법						전체
	자궁내장치	먹는 피임약	콘돔	살정제 ¹⁾	월경주기법	기타	
향후 계속사용 의향							
계속 사용하겠음	79.4	58.5	60.5	57.1	64.6	56.8	66.5
바꾸겠음	17.7	32.1	32.4	42.9	27.9	37.2	27.7
생각해보지 않았음							
/모르겠음	2.9	9.4	7.1	-	7.6	6.0	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724)	(53)	(930)	(7)	(384)	(250)	(2,348)
변경희망 피임방법 ²⁾							
난관수술	12.9	11.8	5.7	-	2.9	5.4	6.7
정관수술	74.2	58.8	76.4	66.7	62.5	67.7	71.9
자궁내장치	-	29.4	9.8	-	18.3	17.2	10.9
먹는 피임약	0.8	-	-	-	2.9	-	0.6
콘돔	2.4	-	0.3	-	4.8	6.5	2.3
살정제	-	-	-	-	-	-	-
월경주기법	0.8	-	-	-	1.0	1.1	0.5
기타	1.6	-	1.4	-	1.9	1.1	1.4
미결정	7.3	-	6.4	33.3	5.8	1.1	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24)	(17)	(296)	(3)	(104)	(93)	(63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2) 현재 사용중인 피임방법을 바꾸겠다고 응답한 부인을 대상으로 함.

4. 결혼에서 불임수술 수용시까지의 소요기간

결혼 후 불임수술 수용시까지의 기간별 분포를 보면 불임수술수용 부인 중 68.4%가 5년 이내에 불임수술을 받았으며, 26.3%는 5~9년 사이에, 4.4%는 10~14년 사이에, 15년 이상 소요된 부인은 0.9%로 조사되었다. 결혼 후 불임수술 수용시까지의 기간은 평균 3.7년이였다. 따라서 불임수술에 의한 피임실천자의 대부분이 결혼 후 10년 이내에 불임수술을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5-13 참조).

불임수술 방법별로 결혼 후 불임수술 수용시까지의 소요기간은 난관수술과 정관수술 간에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기간별 분포를 보면 난관수술을 수용한 경우는 결혼 후 5년 이내인 부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3.6%, 5~9년이 23.3%의 분포를 보인 반면, 정관수술은 5년 이내가 66.3%, 5~9년이 27.6%로 조사되었다. 결혼 후 수용시까지의 기간은 난관수술은 평균 3.3년, 정관수술은 3.8년이 소요되어 난관수술과 정관수술은 0.5년의 차이에 불과하였다. 이를 200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결혼 후 불임수술을 수용한 기간은 난관수술은 평균 5.1년, 정관수술은 평균 5.6년으로 난관수술과 정관수술 모두 결혼 후 수용시기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의 결혼에서 불임수술 수용시까지의 기간은 전체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동 기간은 평균 3.6년이였다. 난관수술은 결혼 후 5년 이내 수용한 부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5.0%, 5~9년이 22.5%이었고, 정관수술은 5년 이내가 66.5%, 5~9년이 22.5%로 나타났다. 결혼 후 불임수술을 수용시까지의 기간은 난관수술은 평균 3.2년, 정관수술은 3.8년으로 난관수술의 수용시기가 정관수술보다 0.6년 빠르게 조사되었다.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의 결혼에서 불임수술 수용시까지의 기간별 분포를 보면 결혼 후 5년 이내에 불임수술을 수용한 부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5.3%, 5~9년은 26.8%로 조사되었으며, 동기간은 평균 3.9년이였다. 난관수술은 결혼 후 5년 이내에 수용한 부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66.3%, 5~9년은 27.7%이었고, 정관수술은 5년 이내가 64.6%, 5~9년이 26.2%로 조사되었다. 결혼 후

불임수술 수용시까지의 기간은 난관수술은 평균 3.8년, 정관수술은 4.1년으로 난관수술의 수용시기가 정관수술보다 0.3년 빠르게 조사되었다.

2000년도와 비교하면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결혼 후 불임수술을 수용한 기간이 1.5년이 단축되었고,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1.7년이 단축되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동부지역 거주부인보다 0.1년 빠르게 수용하였다. 난관수술을 수용하는 기간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1.9년이 짧아졌고,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1.8년이 짧아졌다. 정관수술 또한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1.5년,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1.3년이 단축되어 결혼 후 난관수술과 정관수술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다소 수용시기가 빨랐다.

〈표 5-13〉 15~44세 유배우 불임수술 실천부인의 결혼에서 불임수술 수용시까지의 소요기간별 분포

현 피임방법	5년 이내	5~9년	10~14년	15년 이상	계(수)	(단위: %)
						평균 소요기간
전국	68.4	26.3	4.4	0.9	100.0(3,752)	3.7
난관수술	73.6	23.3	2.5	0.5	100.0(1,101)	3.3
정관수술	66.3	27.6	5.2	1.0	100.0(2,651)	3.8
동부	68.9	26.3	4.2	0.7	100.0(3,297)	3.6
난관수술	75.0	22.5	2.2	0.3	100.0(917)	3.2
정관수술	66.5	27.7	4.9	0.9	100.0(2,380)	3.8
읍·면부	65.3	26.8	6.2	1.8	100.0(455)	3.9
난관수술	66.3	27.7	4.3	1.6	100.0(184)	3.8
정관수술	64.6	26.2	7.7	1.5	100.0(271)	4.1

제 3 절 피임실천경험 실태

1. 총 피임횟수별 피임실천경험

15~44세 유배우 부인의 특성별로 총 피임횟수 분포를 보면 피임횟수가 2회 이하인 부인의 비율은 40.8%, 3회는 25.3%, 4회 이상은 33.9%로 부인의 과반수 이상이 총 3회 이하의 피임횟수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피임횟

수도 3.1회로 조사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총 피임횟수가 3회 이하인 비율은 66.2%, 4회 이상은 33.8%이었고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3회 이하인 비율이 65.4%, 4회 이상이 34.7%이었다. 평균 피임횟수는 동부지역이 3.1회, 읍·면부지역이 3.0회로 지역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연령별로는 총 피임횟수가 3회 이하를 경험한 비율은 부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난 반면, 4회 이상을 경험한 부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평균 피임횟수도 이와 같은 경향을 반영하여 15~24세 연령층은 2.0회, 25~29세 2.1회, 30~34세 2.7회, 35~39세 2.2회, 40~44세는 3.5회로 연령이 높을수록 총 피임횟수가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총 피임횟수가 3회 이하인 부인의 비율은 초교 이하를 제외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았으나 4회 이상을 경험한 부인의 비율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평균 피임횟수도 일정하지 않았다.

결혼기간별로는 총 피임횟수가 3회 이하인 부인은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높았으며, 4회 이상을 경험한 부인은 결혼기간이 20년 이상을 제외하고 결혼기간이 오래될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평균 피임횟수는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은 1.9회, 5~9년 2.8회, 10~14년 3.2회, 15~19년 3.6회, 20년 이상은 3.4회로 대체로 결혼기간이 길수록 총 피임횟수가 높았다. 현존자녀수별로는 총 피임횟수가 3회 이하인 비율은 현존자녀수가 적을수록 높았으나, 4회 이상은 현존자녀수가 많을수록 높아서 평균 피임횟수는 현존자녀수가 0명은 1.7회, 1명 2.4회, 2명은 3.2회, 3명 이상은 3.9회로 이와 같은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15~44세 유배우 부인이 경험한 총 피임횟수는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기간이 길수록, 현존자녀수가 많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지역 및 교육수준별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결혼 후 일정기간 동안은 자녀태울 조절 등을 위하여 피임행위를 실천하나 자녀출산을 종료한 후에는 단산을 위하여 피임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연령 및 결혼기간에 따라 피임횟수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기간이 오래될수록 일시적 피임방법에서 영구적 피임방법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해된다.

〈표 5-14〉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총 피임횟수 경험

(단위: %, 회)

특성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계(수)	평균 피임횟수
전체	14.2	26.6	25.3	17.1	16.8	100.0(11,169)	3.1
지역							
동부	13.9	26.5	25.8	17.0	16.8	100.0(9,594)	3.1
읍·면부	16.1	27.4	21.9	18.1	16.6	100.0(1,575)	3.0
연령							
15~24세	40.7	34.7	16.1	3.4	5.1	100.0(118)	2.0
25~29세	35.6	35.6	17.3	5.8	5.8	100.0(762)	2.1
30~34세	16.4	31.8	29.5	13.2	9.0	100.0(2,665)	2.7
35~39세	10.1	26.4	25.3	21.2	17.0	100.0(3,880)	3.2
40~44세	11.7	21.0	24.2	18.4	24.7	100.0(3,742)	3.5
교육수준							
초교 이하	26.7	26.7	11.2	19.8	15.5	100.0(116)	2.7
중학교	18.5	21.7	20.0	13.8	26.1	100.0(545)	3.2
고등학교	13.0	24.8	24.9	17.8	19.4	100.0(6,202)	3.2
대학 이상	14.8	29.8	26.9	16.5	12.0	100.0(4,302)	2.9
결혼기간							
5년 미만	40.1	38.2	15.3	3.2	3.2	100.0(1,238)	1.9
5~9년	13.0	32.2	31.4	15.2	8.2	100.0(2,696)	2.8
10~14년	9.8	25.5	25.9	21.8	17.0	100.0(3,379)	3.2
15~19년	9.2	18.9	24.9	19.2	27.8	100.0(2,944)	3.6
20년 이상	14.3	23.2	20.0	17.9	24.5	100.0(909)	3.4
현존자녀수							
0명	62.2	21.2	8.3	3.9	4.4	100.0(410)	1.7
1명	26.2	39.8	18.7	7.3	8.0	100.0(1,728)	2.4
2명	10.4	26.9	27.8	18.6	16.3	100.0(7,291)	3.2
3명 이상	7.0	13.4	25.3	23.6	30.7	100.0(1,740)	3.9

2. 피임방법별 피임경험

15~44세 유배우 부인의 특성별로 피임실천 경험이 있는 부인이 사용한 총 피임방법수를 보면 2가지 이하의 피임방법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부인은

70.0%로 3분의 2에 해당되었고, 3가지 이상의 피임방법을 사용한 부인은 29.9%이었으며, 평균 피임방법수는 2.1가지로 조사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2가지 이하의 피임방법을 사용한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69.5%,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72.9%이었고, 3가지 이상의 피임방법을 사용한 부인은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이 각 30.4%, 27.0%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약간 높았다. 평균 피임방법수는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이 각각 2.1가지로 지역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연령별로는 2가지 이하의 피임방법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부인의 비율은 부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난 반면, 3가지 이상의 피임방법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부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평균 피임방법수도 이와 같은 경향을 반영하여 15~24세와 25~29세 연령층은 각각 1.7가지, 30~34세 2.0가지, 35~39세와 40~44세 연령층은 2.2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총 피임방법수가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피임방법수의 분포나 평균 피임방법수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결혼기간별로는 2가지 이하의 피임방법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부인은 결혼기간이 20년 이상을 제외하고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높았으며, 3가지 이상의 피임방법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부인은 결혼기간이 오래될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평균 피임방법수는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은 1.7가지, 5~9년 2.0가지, 10~14년 2.2가지, 15~19년 2.3가지, 20년 이상은 2.2가지로 대체로 결혼기간이 길수록 총 피임방법수가 많았다.

현존자녀수별로는 총 피임방법수가 2가지 이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부인의 비율은 현존자녀수가 적을수록 높았으나, 3가지 이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부인은 현존자녀수가 많을수록 높아서 평균 피임방법수는 현존자녀수가 0명은 1.2가지, 1명 1.8가지, 2명은 2.1가지, 3명 이상은 2.4가지로 이와 같은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피임방법별로는 2가지 이하의 피임방법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부인은 난관수술과 정관수술 등의 영구피임과 자궁내장치 같은 반영구피임방법을 사용한 비율이 낮은 반면, 먹는피임약, 콘돔, 자궁내장치, 살정제, 월경주기법 등 일시적 피임방법을 사용한 비율이 높았다.

〈표 5-15〉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 및 총 피임방법수별 피임실천 경험
(단위: %)

특성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이상	계(수)	평균 피임방법수
전체	26.6	43.4	23.1	6.0	0.8	100.0(11,166)	2.1
지역							
동부	26.6	42.9	23.6	6.1	0.7	100.0(9,592)	2.1
읍·면부	26.7	46.2	19.9	5.8	1.3	100.0(1,574)	2.1
연령							
15~24세	47.0	36.8	16.2	-	-	100.0(117)	1.7
25~29세	46.5	39.1	11.9	2.5	-	100.0(763)	1.7
30~34세	32.5	43.4	21.3	2.3	0.5	100.0(2,666)	2.0
35~39세	23.0	44.8	23.8	7.8	0.7	100.0(3,879)	2.2
40~44세	21.6	43.1	26.2	7.7	1.4	100.0(3,740)	2.2
교육수준							
초교 이하	36.8	46.2	13.7	3.4	-	100.0(117)	1.8
중학교	26.9	42.1	25.8	3.3	1.8	100.0(546)	2.1
고등학교	25.3	41.9	24.9	6.9	1.0	100.0(6,201)	2.2
대학 이상	28.2	45.7	20.5	5.1	0.4	100.0(4,298)	2.0
결혼기간							
5년 미만	47.1	41.9	9.8	1.1	-	100.0(1,239)	1.7
5~9년	31.4	44.3	21.5	2.0	0.8	100.0(2,697)	2.0
10~14년	23.1	42.8	26.2	7.5	0.4	100.0(3,378)	2.2
15~19년	19.1	42.9	26.6	9.9	1.5	100.0(2,941)	2.3
20년 이상	21.8	46.6	23.5	6.6	1.5	100.0(910)	2.2
현존자녀수							
0명	53.9	36.6	8.0	1.5	-	100.0(410)	1.6
1명	38.3	42.3	16.8	2.3	0.2	100.0(1,729)	1.8
2명	24.1	45.0	24.3	6.0	0.6	100.0(7,286)	2.1
3명 이상	19.1	39.3	28.1	11.0	2.4	100.0(1,741)	2.4
마지막피임방법							
난관수술	24.0	40.1	26.8	6.9	2.2	100.0(1,100)	2.2
정관수술	8.3	42.1	35.8	12.4	1.5	100.0(2,651)	2.6
자궁내장치	29.9	35.5	26.9	7.7	-	100.0(1,867)	2.1
먹는피임약	29.7	43.2	14.8	6.8	5.5	100.0(236)	2.2
콘돔	29.3	52.2	15.4	2.6	0.6	100.0(2,784)	1.9
살정제	35.7	50.0	14.3	-	-	100.0(28)	1.8
월경주기법	36.0	47.1	16.0	0.9	-	100.0(1,818)	1.8
기타방법	56.5	29.7	11.0	2.8	-	100.0(680)	1.6

세 가지 이상의 피임방법수를 사용한 부인은 반대의 경향을 보여 영구피임과

반영구피임방법을 사용한 비율이 높았고, 일시적 피임방법을 사용한 비율은 낮았다. 평균 피임방법수도 동일한 경향을 보여 난관수술은 2.2가지, 정관수술은 2.6가지, 자궁내장치는 2.1가지인 반면, 먹는피임약 2.2가지, 콘돔 1.9, 살정제와 월경주기법은 각 1.8가지로 조사되었다.

요약하면, 15~44세 유배우 부인이 사용한 총 피임방법수는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기간이 길수록, 현존자녀수가 많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지역 및 교육수준별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영구적 및 반영구적 피임방법을 사용한 부인의 경우에 피임방법수가 많았다. 이는 결혼 후 일정자녀수를 갖기까지는 1~2가지의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자녀출산을 완료한 후에는 다양한 피임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결혼 초기에는 일시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가 출산을 완료한 후에는 일시적 피임방법과 영구적 피임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15~44세 유배우 부인의 특성별로 피임실천 경험이 있는 부인이 처음으로 사용한 피임방법은 콘돔이 32.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월경주기법이 24.4%, 자궁내장치 16.1% 순으로 높았으며, 그리고 정관수술, 기타 방법, 난관수술, 살정제 등은 미미한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정관수술, 콘돔, 기타 방법 등 남성피임방법을 사용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난관수술, 자궁내장치, 먹는피임약 등 여성용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부부의 양성평등의식이 피임방법 선택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되며 도시지역이 농촌보다 양성평등의식이 높음을 말해준다. 연령별로는 부인이 처음으로 사용한 피임방법은 연령이 높을수록 난관수술, 정관수술 등의 영구적피임방법과 자궁내장치 같은 반영구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먹는 피임약, 콘돔 등의 일시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관수술, 콘돔 등의 남성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난관수술, 먹는피임약 등의 여성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교육수준과 양성평등의식 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5-16〉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첫 피임실천 방법

(단위: %)

특성	난관 수술	정관 수술	자궁내 장치	먹는 피임약	콘돔	살정제	월경 주기법	기타 방법	계(수)
전체	5.2	9.0	16.1	4.2	32.8	0.5	24.4	7.8	100.0(11,164)
지역									
동부	4.9	9.2	15.7	3.9	33.5	0.5	24.4	8.0	100.0(9,590)
읍·면부	7.3	7.7	18.4	6.1	28.7	0.5	24.3	7.0	100.0(1,576)
연령									
15~24세	-	0.8	9.3	12.7	39.0	-	28.0	10.2	100.0(118)
25~29세	1.0	2.6	8.4	5.5	44.6	0.3	25.0	12.6	100.0(763)
30~34세	2.7	7.1	12.9	3.5	36.8	-	27.4	9.6	100.0(2,665)
35~39세	4.5	10.6	17.1	3.7	30.0	0.4	25.0	8.7	100.0(3,877)
40~44세	8.7	10.1	19.1	4.7	30.2	1.1	21.4	4.6	100.0(3,741)
교육수준									
초교 이하	26.7	5.2	15.5	9.5	13.8	1.7	21.6	6.0	100.0(116)
중학교	14.5	6.8	25.0	6.1	25.6	0.7	15.3	6.1	100.0(544)
고등학교	5.9	8.9	18.1	5.0	28.5	0.7	24.2	8.8	100.0(6,201)
대학 이상	2.4	9.3	12.2	2.7	40.5	0.3	25.9	6.7	100.0(4,299)
결혼기간									
5년 미만	2.1	3.1	8.2	6.9	45.0	0.1	23.6	11.1	100.0(1,239)
5~9년	3.3	8.4	12.1	2.8	35.9	0.1	27.5	9.9	100.0(2,696)
10~14년	4.8	10.2	18.0	3.5	29.5	0.4	25.3	8.3	100.0(3,376)
15~19년	5.7	10.5	20.0	4.4	30.7	1.3	23.2	4.1	100.0(2,942)
20년 이상	14.9	9.2	19.2	6.7	25.7	0.7	16.5	7.0	100.0(910)
현존자녀수									
0명	1.7	1.0	8.8	10.0	45.0	0.2	23.4	10.0	100.0(411)
1명	1.7	4.0	11.0	5.7	40.3	0.3	27.0	9.9	100.0(1,727)
2명	5.9	10.2	17.0	3.5	31.8	0.6	23.7	7.2	100.0(7,288)
3명 이상	6.4	10.6	19.0	4.2	26.6	0.5	25.0	7.8	100.0(1,740)

결혼기간이 오래될수록 영구적 피임방법과 반영구적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먹는피임약, 콘돔 등의 일시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현존자녀수별로도 결혼기간과 동일한 경향을 보여서 현존자녀수가 많을수록 영구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현존자녀수가 적을수록 일시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연령, 결혼기간 및 현존자녀수에 따른 피임방법의 선택은 자녀출산시기와 관련이 높음을 말해준다. 즉, 자녀 출산이 종료되기 전에는 일시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을 높은 데 반해 자녀 출산 완료 후에는 영구적피임방법과 반영구적피임방법으로 변경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15~44세 유배우 부인의 특성별로 피임실천 경험이 있는 부인이 마지막으로 사용한 피임방법은 콘돔이 2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정관수술이 23.7%, 자궁내장치가 16.7%, 월경주기법이 16.4% 순으로 높았으며, 난관수술, 먹는피임약, 살정제, 기타 방법 등은 미미한 비율을 보였다. 피임경험이 있는 부인이 처음으로 사용한 피임방법과 비교할 때 일시적 피임방법은 감소한 반면, 영구적 피임방법과 반영구적 피임방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출산시기와 피임방법이 관련이 높음을 시사한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정관수술, 콘돔 등의 남성피임방법과 월경주기법을 마지막 피임방법으로 사용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난관수술, 자궁내장치, 먹는피임약 등 여성용 피임방법과 기타 방법을 마지막 피임방법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성평등의식은 지역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부부의 양성평등의식은 피임방법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연령별로는 부인이 마지막으로 사용한 피임방법은 연령이 높을수록 난관수술, 정관수술 등의 영구적 피임방법과 자궁내장치 같은 반영구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먹는 피임약, 월경주기법 등의 일시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관수술, 콘돔 등의 남성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난관수술 같은 여성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육수준과 양성평등의식 간에 관련이 높음을 말해준다.

결혼기간이 길수록 영구적 피임방법과 반영구적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먹는피임약, 콘돔, 월경주기법 등의 일시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경향은 현존자녀수별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부인의 연령, 결혼기간 및 현존자녀수에 따른 피임방법의 선택은 자녀출산과 관련이 높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한 피임방법을 처음으로 사용한 피임방법과 비교할

때 부인의 특성별로도 공통적으로 일시적 피임방법은 감소한 반면, 영구적 피임방법과 반영구적 피임방법은 증가하여서 전체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표 5-17〉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마지막 피임실천 방법

(단위: %)

특성	난관 수술	정관 수술	자궁내 장치	먹는 피임약	콘돔	살정제	월경 주기법	기타 방법	계(수)
전체	9.9	23.7	16.7	2.1	24.9	0.2	16.4	6.1	100.0(11,189)
지역									
동부	9.6	24.8	16.1	1.9	25.0	0.2	16.5	5.9	100.0(9,614)
읍·면부	11.7	17.2	20.6	3.6	23.9	0.2	15.8	7.1	100.0(1,574)
연령									
15~24세	-	0.8	10.2	10.2	36.4	-	31.4	11.0	100.0(118)
25~29세	1.6	7.5	10.0	3.1	43.8	-	21.8	12.3	100.0(763)
30~34세	5.7	18.5	13.6	2.5	30.8	-	20.1	8.8	100.0(2,666)
35~39세	9.0	28.8	17.4	1.5	21.9	0.1	15.1	6.3	100.0(3,880)
40~44세	15.7	26.2	19.7	2.0	19.6	0.7	13.6	2.5	100.0(3,763)
교육수준									
초교 이하	36.8	9.4	21.4	2.6	7.7	-	18.8	3.4	100.0(117)
중학교	23.1	18.2	24.0	3.3	16.5	0.7	10.1	4.0	100.0(545)
고등학교	11.7	23.5	18.9	2.0	21.7	0.2	15.3	6.6	100.0(6,201)
대학 이상	4.8	25.1	12.4	2.0	31.0	0.3	18.8	5.7	100.0(4,323)
결혼기간									
5년 미만	3.0	6.1	9.1	4.8	42.9	-	22.8	11.3	100.0(1,239)
5~9년	5.6	21.4	13.6	1.8	30.4	-	19.9	7.3	100.0(2,696)
10~14년	9.7	26.9	17.4	1.6	21.7	0.1	15.8	6.8	100.0(3,398)
15~19년	12.0	30.3	20.2	1.5	19.5	0.7	13.1	2.7	100.0(2,945)
20년 이상	25.5	21.3	22.1	3.1	13.3	0.4	10.5	3.7	100.0(910)
현존자녀수									
0명	2.9	1.5	11.5	7.3	45.4	-	21.5	10.0	100.0(410)
1명	3.0	7.9	11.7	3.2	39.4	0.2	25.0	9.8	100.0(1,728)
2명	11.0	26.6	17.9	1.4	23.0	0.3	14.6	5.2	100.0(7,309)
3명 이상	13.5	32.5	17.9	2.6	13.7	-	14.3	5.4	100.0(1,740)
현 피임실천									
실천	10.6	25.7	16.9	1.8	23.5	0.3	15.5	5.7	100.0(10,303)
비실천	1.2	0.3	14.1	6.0	41.6	-	26.0	10.8	100.0(865)

제 4 절 피임비실천실태

본 절에서는 가임기에 있는 유배우부인 중 현재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부인을 중심으로 피임비실천 양상을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피임중단 및 무경험자로 구분하여 피임중단시 사용했던 피임방법, 피임중단 및 무경험 이유, 그리고 향후 피임실천 의향 및 선호하는 피임방법 그리고 피임불원부인의 이유 등을 살펴본다.

1. 피임중단시 사용했던 피임방법

피임비실천 부인 중 과거에 피임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부인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피임방법을 보면, 콘돔이 4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월경주기법 20.5%, 자궁내장치 14.9%, 기타 피임방법 12.0%의 순이었다. 이 외에 불임수술을 사용했던 부인은 극히 미미하였다(표 5-13 참조).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피임방법은 정관수술, 먹는 피임약 및 월경주기법 등이었다.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에 비하여 난관수술, 자궁내장치, 콘돔 및 기타 피임방법 등을 사용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15~24세 연령층에서는 콘돔 및 월경주기법을 사용했던 부인이 29.4%이었고, 먹는 피임약 23.5%, 기타 피임방법도 17.6%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먹는 피임약, 월경주기법 및 기타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25~29세 연령층에서는 콘돔이 54.5%로 가장 높았고, 또한 월경주기법 21.1%, 기타 피임방법이 13.8% 순으로 높았으며,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콘돔 사용자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30~34세 연령층에서는 콘돔이 45.6%로 전체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자궁내장치는 14.8%, 월경주기법 21.9%, 기타 피임방법은 12.4%로 전체보다 낮았다.

〈표 5-18〉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 피임방법

(단위: %)

특성	난관 수술	정관 수술	자궁내 장치	먹는 피임약	콘돔	살정제	월경 주기법	기타	계(수)
2003년 ¹⁾	0.7	0.7	18.1	12.1	20.4	1.8	22.0	24.2	100.0(554)
2006년 ²⁾	1.0	0.4	14.9	7.1	44.1	-	20.5	12.0	100.0(471)
지역									
동부	1.0	0.5	14.1	7.1	43.8	-	21.9	11.6	100.0(397)
읍·면부	1.4	-	18.9	6.8	45.9	-	13.5	13.5	100.0(74)
연령									
15~24세	-	-	-	23.5	29.4	-	29.4	17.6	100.0(17)
25~29세	-	-	4.9	5.7	54.5	-	21.1	13.8	100.0(123)
30~34세	-	0.6	14.8	4.7	45.6	-	21.9	12.4	100.0(169)
35~39세	-	1.2	22.9	4.8	42.2	-	18.1	10.8	100.0(83)
40~44세	6.4	-	25.6	12.8	30.8	-	17.9	6.4	100.0(78)

자료: 1)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2) 본 조사결과

35~39세 연령층은 콘돔이 4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궁내장치가 22.9%, 월경주기법이 18.1%, 기타 피임방법이 10.8% 등의 순이었으며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정관수술을 사용한 비율이 높았다. 40~44세 연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콘돔 30.8%, 자궁내장치 25.6%, 난관수술은 6.4%로 높았고, 먹는 피임약, 월경주기법, 기타피임방법은 각각 12.8%, 17.9%, 6.4%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24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의 경우, 콘돔, 월경주기법 및 먹는 피임약에 편중되었으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궁내장치와 불임수술 등의 방법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는 콘돔, 월경주기법 및 기타 방법 등을 사용했던 반면,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은 자궁내장치, 먹는 피임약 및 불임수술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피임중단 및 무경험의 이유

본 조사결과, 피임을 실천하지 않은 부인의 비율은 20.4%로 이 중 과거에 피임을 실천한 경험이 있으나 중단한 부인은 9.9%, 그리고 피임경험이 전혀 없는 부인은 10.5%이었다. 과거에 피임을 실천한 경험이 있으나 조사당시 피임을 중단한 상태에 있는 부인의 피임중단 이유는 임신을 원하기 때문에 중단한 비율이 60.3%로 피임의 중단 원인이 자녀를 갖는데 있었다. 이 외에도 피임을 중단한 이유는 피임의 일시적인 불필요 13.6%, 피임의 영구 불필요 8.7%, 실패임신 7.3%, 사용상 불편이 4.5%, 부작용 2.9%, 기타 2.8% 등으로 나타났다.

2003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피임을 중단한 이유로 임신을 원하거나 자연배출, 피임 영구 불필요, 부작용 등은 감소한 반면, 실패 임신, 사용상 불편, 피임 일시 불필요, 기타 등의 이유는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임신희망, 사용상 불편 등의 이유로 피임을 중단한 경우가 많았던 반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실패임신, 피임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불필요, 부작용 등으로 중단한 경우가 높았다. 이는 앞서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경우, 과거에 주로 사용했던 피임방법이 피임효과가 불확실한 일시적 피임방법일 가능성이 높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피임경험이 전혀 없는 부인의 피임 무경험이유로는 자녀를 원하기 때문이 7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자연불임인 경우가 14.6%, 피임이 일시적으로 불필요하기 때문으로 응답한 부인은 7.8%이었다. 이를 2003년과 비교하면 자녀를 원하거나, 피임지식이 부족한 경우 등은 감소한 반면, 자연불임, 피임 일시 불필요 등인 경우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5-19〉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 중 피임중단 및 무경험 비율과 이유
(단위: %)

구분	전국		동부	읍·면부
	2003년	2006년		
전체 부인 중 피임중단	8.5	9.9	9.7	11.2
부인의 비율(수)	(561)	(536)	(448)	(88)
피임중단 이유				
임신 원함	62.9	60.3	62.2	50.0
실패 임신	5.0	7.3	7.0	9.1
자연 배출	0.4	-	-	-
사용상 불편	2.3	4.5	4.7	3.4
피임 영구 불필요	11.9	8.7	7.7	13.6
피임 일시 불필요	10.6	13.6	12.8	17.0
부작용	4.9	2.9	2.9	3.4
기타	2.0	2.8	2.7	3.4
계	100.0	100.0	100.0	100.0
전체부인중 피임 무경험	7.0	10.5	10.5	10.6
부인의 비율(수)	(463)	(565)	(482)	(83)
피임무경험 이유				
자연 불임	14.0	14.6	14.4	16.9
자녀 원함	82.3	76.0	77.3	68.7
피임 일시 불필요	2.2	7.8	6.7	13.3
피임지식 부족	0.6	0.4	0.4	-
기타	0.9	1.3	1.3	1.2
계	100.0	100.0	100.0	100.0

지역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피임무경험 이유로 자녀희망, 피임지식부족, 기타 등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자연불임, 피임이 일시적으로 불필요하기 때문등의 비율이 높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과거에 피임을 실천하였으나 현재 피임을 중단한 부인 또는 과거에 전혀 피임을 실천한 경험이 없는 부인의 경우도 현재 피임을 비실천하는 이유로 불임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심각한 국가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과 관련하여 불임으로 임신을 못하는 부인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와 불임치료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3. 향후 피임실천 의향 및 선호 피임방법

현재 피임비실천상태에 있는 부인들의 향후 피임실천 의향을 살펴보면 <표 5-20>과 같다. 피임비실천 부인 중 57.8%가 실천할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22.6%는 실천할 의향이 없었고, 아직 그 의향을 결정하지 못한 부인은 19.6%이었다. 2003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실천하지 않겠다는 부인의 비율은 31.4%로 2006년에 8.8%포인트가 감소한 반면, 실천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51.5%로 6.3%포인트가 증가하였다.

향후 피임실천의향을 과거에 피임실천 경험이 있는 부인과 피임실천 경험이 없는 부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천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경우는 피임 중단 부인이 67.8%, 피임 무경험부인이 49.3%로 피임중단부인이 피임 무경험부인보다 18.5%포인트나 높았다. 또한 실천할 의향이 없는 경우는 피임 중단부인이 16.7%, 피임무경험부인이 27.6%로 무경험부인이 10.9%포인트 높아서, 과거에 피임을 실천한 경험이 있는 부인이 향후 피임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임실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부인의 비율은 피임중단부인의 경우 15.5%, 피임무경험부인은 23.1%로 피임실천에 있어서 과거 피임경험자보다는 피임무경험자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향후 피임실천 의향은 동부지역이 58.9%, 읍·면부지역이 51.3%로 동부지역이 약간 높았다. 과거 피임경험이 있는 피임중단부인과 경험이 없는 비실천부인으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피임중단부인의 경우 실천할 의향을 갖고 있는 부인은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1.9%포인트(동부지역 68.1%, 읍·면부지역 66.2%)의 높은 비율을 보였고, 피임무경험부인도 읍·면부지역보다 동부지역이 12.4%포인트(동부지역 51.0%, 읍·면부지역 38.6%)가 높았다. 반면 실천할 의향이 없는 경우는 읍·면부지역이 약간 높았다(동부지역 22.4%, 읍·면부지역 23.7%).

피임을 중단한 부인 중 피임을 실천할 의향이 없는 비율은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5.3%포인트(동부지역 17.5%, 읍·면부지역 12.2%) 높았으나, 피임무경험부인은 읍·면부지역이 7.2%포인트(동부지역 26.5%, 읍·면부지역 33.7%)가

높았다. 그리고 피임실천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비율은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6.2%포인트(동부지역 18.8%, 읍·면부지역 25.0%)가 높았으며, 피임중단부인과 피임무경험부인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은 읍·면부지역보다 높은 피임실천의지를 보인 반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피임실천여부에 대하여 소극적이었다.

〈표 5-20〉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의 향후 실천의향

(단위: %)

향후 피임실천의향	전국			동부			읍·면부		
	중단 부인	무경험 부인	전체	중단 부인	무경험 부인	전체	중단 부인	무경험 부인	전체
실천할 예정	67.8	49.3	57.8	68.1	51.0	58.9	66.2	38.6	51.3
모르겠음/생각해 보지 않았음	15.5	23.1	19.6	14.3	22.5	18.8	21.6	27.7	25.0
실천하지 않겠음/피 임할 필요 없음	16.7	27.6	22.6	17.5	26.5	22.4	12.2	33.7	2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79)	(563)	(1,042)	(405)	(480)	(885)	(74)	(83)	(157)

피임비실천부인 중 향후 피임실천의향을 가지고 있는 부인의 선호하는 피임방법을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피임관리를 위하여 중요하다. 피임을 희망하는 부인의 선호하는 피임방법을 살펴보면 <표 5-21>과 같다.

현재 피임을 실천하지 않으나 향후 실천할 의향을 갖고 있는 부인이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정관수술이 34.0%로 가장 높아서 정관수술 수용률이 향후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콘돔이 23.8%, 자궁내장치 10.8%, 월경주기법 8.8%, 난관수술 4.5%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향후 피임실천 의향은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부인도 13.5%나 있었다.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부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경향을 보였다. 즉, 두 지역 모두 가장 선호하는 피임방법은 남성피임방법인 정관수술과 콘돔이었으며 또한 자궁내장치 및 월경주기법도 선호하였다. 이 외에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은 난관수술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현재 정관수술에 의한 피임실천율은 24.8%에 불과하나 피임비실천자의 정관수술 이용희망률이 34.0%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며, 향후 정관수술의 수요가 급증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5-21〉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 중 피임희망부인의 선호 피임방법
(단위: %)

선호피임방법	전국	동부	읍·면부
난관수술	4.5	3.5	10.7
정관수술	34.0	34.9	28.0
난관 혹은 정관	1.2	1.0	2.7
자궁내장치	10.8	11.2	8.0
먹는 피임약	1.4	1.2	2.7
콘돔	23.8	23.9	24.0
살정제	-	-	-
월경주기법	8.8	8.4	10.7
기타	2.1	1.8	4.0
방법미결정	13.5	14.1	9.3
계	100.0	100.0	100.0
(수)	(565)	(490)	(7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부인이 선호하는 피임방법으로 불임수술 및 자궁내장치 등으로 효과적인 피임방법의 선호도가 높다는 사실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피임실패의 우려가 있는 콘돔 및 월경주기법 등을 이용하겠다는 부인도 적지 않아서 주목된다. 따라서 이들 일시적 피임방법을 선호하는 부인과 아직 피임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부인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피임사용법에 대한 홍보 및 계몽이 강화되어야 하며, 피임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피임을 실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피임을 실천할 의향이 없는 부인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자연불임이 73.3%로 가장 높았고, 폐경, 습관성 유산, 자연피임, 성생활 안함 등 기타의 이유는 22.8%이었으며, 자궁적출, 폐경, 양측나팔관 제거 등

으로 피임이 불필요한 경우는 3.9%에 불과하였다. 즉, 전체 피임비실천부인 중 피임을 실천하지 않겠다는 부인(22.6%)의 73.3%가 임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임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22 참조).

〈표 5-22〉 15~44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 중 피임불원부인의 이유 (단위: %)

이유	전국	동부	읍·면부
피임 불필요 ¹⁾	3.9	4.1	2.6
자연불임 ²⁾	73.3	72.6	76.3
기타	22.8	23.4	21.1
계	100.0	100.0	100.0
(수)	(235)	(197)	(38)

주: 1) 자궁적출, 양측 나팔관 제거; 2) 3년 이상 임신 안됨; 3) 기타에는 폐경, 성생활안함, 습관성 유산, 자연피임, 생리불규칙, 사용상 불편 등이 해당됨.

피임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자궁적출이나 폐경, 양측나팔관 제거 등으로 피임이 불필요한 경우는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각각 4.1%, 2.6%로 동부지역이 1.5%포인트가 높았다. 그러나 자연불임으로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76.3%)이 동부지역 거주부인(72.6%)보다 약간 높았다.

제 5 절 임신노출상태 및 자녀희망 여부별 피임실태

1. 임신노출상태

가임능력이 있는 유배우부인들의 임신가능여부는 일정 시점에서 임신불가능부인과 임신가능 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부인은 다시 불임수술에 의하여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자궁적출, 폐경, 양측나팔관 제거 등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 일정기간 임신이 되지 않은 자연불임상태의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신가능상태에 있는 부인은 현재 임신중

인 부인, 현재 일시적 피임방법을 사용중인 부인, 또한 임신은 가능하나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부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노출상태를 살펴보면 <표 5-23>과 같다. 임신불가능상태에 있는 부인은 34.4%, 임신가능상태에 있는 부인은 65.6%이었다. 임신이 불가능한 부인은 불임수술을 수용한 부인이 31.0%, 자연불임인 부인 3.2%, 임신이 불가능한 부인이 0.2% 등이었으며, 임신가능부인은 일시피임실천중에 있는 부인이 48.6%, 피임비실천중인 부인 10.3%, 현재 임신 중인 부인이 6.7%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임신에 노출되어 있는 부인은 전체 부인의 10.3%로 이는 현재 임신이 가능하면서 피임을 실천하고 있지 않은 부인이다. 그러나 이들 부인 가운데 실제로 피임이 필요하지만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방임상태에 있는 부인은 훨씬 낮은 수준이라 하겠다. 이는 현재 피임비실천 부인 중 68.4%가 자녀를 원하기 때문에^{주51)} 피임을 중단하거나 피임을 실천하지 않았으며, 일시적으로 피임이 불필요한 부인도 10.6%^{주52)}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피임이 필요 하면서 피임을 하지 않는 ‘방임부인집단’은 극히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주51) 피임중단부인의 60.3%가, 피임무경험부인의 76.0%가 자녀를 위하여 피임을 하지 않았음.

주52) 피임중단부인의 13.6%가, 피임무경험부인의 7.8%가 일시적으로 피임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었음.

〈표 5-23〉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임신노출상태

(단위: %)

특성	임신불가능			임신가능			계(수)
	불임수술 수용	임신 ¹⁾ 불가능	자연 ²⁾ 불임	현재 임신중	피임 실천중	피임 비실천	
2003년 ¹⁾	31.1	1.0	2.2	4.2	52.7	8.7	100.0(6,645)
2006년 ²⁾	31.0	0.2	3.2	6.7	48.6	10.3	100.0(5,392)
지역							
동부	31.0	0.2	3.1	6.4	48.8	10.5	100.0(4,606)
읍·면부	31.1	0.1	4.6	7.7	47.1	9.4	100.0(786)
연령							
15~24세	0.8	-	0.8	23.9	42.5	32.0	100.0(127)
25~29세	5.2	-	1.3	20.4	46.1	27.0	100.0(637)
30~34세	20.2	0.1	2.2	9.6	54.0	13.9	100.0(1,432)
35~39세	37.5	0.2	3.7	2.9	50.5	5.2	100.0(1,661)
40~44세	46.6	0.3	4.6	0.2	43.7	4.6	100.0(1,536)
현존자녀수							
0명	2.0	-	9.2	23.3	33.4	32.1	100.0(541)
1명	9.1	0.4	6.6	11.8	52.4	19.7	100.0(1,195)
2명	40.8	0.1	2.3	2.4	51.4	3.0	100.0(3,061)
3명	49.0	0.2	3.5	1.7	42.5	3.1	100.0(552)
4명 이상	43.1	-	-	-	47.8	9.1	100.0(43)

주: 1) 자궁적출, 폐경, 양측 나팔관 제거; 2) 3년 이상 임신 안됨.

자료: 1)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2) 본 조사결과

임신노출상태를 2003년과 비교하면, 임신 불가능한 부인은 2003년에 비하여 0.1%포인트가 증가한 반면, 임신가능상태에 있는 부인은 65.6%로 2003년과 동일하였다.

이를 부인의 특성별로 살펴본다. 지역별로는 불임수술수용의 경우,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31.1%로 동부지역 거주부인보다 0.1%포인트가 높았던 반면, 일시적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1.7%포인트가 높았으며, 피임비실천중인 경우도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1.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임신노출상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임

신 불가능한 상태의 부인이 증가하고, 임신가능상태에 있는 부인의 비율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15~24세 연령층에서는 임신 가능한 상태에 있는 부인이 98.4%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25~29세 연령층에서 임신 가능한 상태에 있는 부인의 비율이 93.5%로 나타났다. 반면, 35~39세 연령층에서는 불임수술수용 부인이 37.5%, 임신 불가능이 0.2%, 자연불임이 3.7%로 임신 불가능 상태에 있는 부인은 41.4%의 비율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40~44세 연령층에서는 임신 불가능한 부인의 비율이 51.5%, 임신 가능한 부인이 48.5%로 임신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부인의 증가로 임신 가능한 상태에 있는 부인 간의 간격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존자녀수별 임신노출상태는 자녀수가 연령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대체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임신이 불가능한 부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피임보급대상 부인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피임보급 및 관련 홍보·계몽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피임실천상태를 피임실천과 피임비실천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피임비실천 상태에 있는 부인의 피임비실천 이유는 현재 임신중인 부인이 6.7%, 자연불임인 부인이 3.2%, 자녀를 원하기 때문이 10.0%, 임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0.2%, 기타이유는 0.3%이었다. 따라서 현재 임신노출상태에 있는 부인의 비율은 자녀를 원하거나 기타 이유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로 10.3%에 해당된다(표 5-24 참조).

그런데 이 중 자녀를 원하는 경우는 피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상이므로, 결과적으로 피임보급 대상자는 기타 이유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0.3%의 부인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산후무월경기간으로 피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인, 남편의 해외출장, 장기입원 등의 이유로 피임이 불필요한 부인을 제외하면 피임이 필요하나 피임을 하고 있지 않는 부인은 0.3%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이다. 피임보급대상 부인은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0.1%포인트 정도 높았으며, 연령이 높은 부인인 경우, 현존자녀수가 많은 경우 피임보급대상자의 비율이 높았다.

〈표 5-24〉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보급대상자

(단위: %)

특성	피임실천		피임비실천 이유					계(수)
	불임수술 수용	일시적 피임방법 수용	임신 ¹⁾ 불가능	자연 ²⁾ 불임	현재 임신중	자녀 희망	기타	
전체	31.0	48.6	0.2	3.2	6.7	10.0	0.3	100.0(4,002)
지역								
동부	31.0	48.8	0.2	3.1	6.4	10.2	0.3	100.0(3,446)
읍·면부	31.1	47.1	0.1	4.6	7.7	9.2	0.2	100.0(555)
연령								
15~24세	0.8	42.5	-	0.8	23.9	32.0	-	100.0(103)
25~29세	5.2	46.1	-	1.3	20.4	27.0	-	100.0(504)
30~34세	20.2	54.0	0.1	2.2	9.6	13.8	0.1	100.0(1,068)
35~39세	37.5	50.5	0.2	3.7	2.9	4.9	0.3	100.0(1,206)
40~44세	46.6	43.7	0.3	4.6	0.2	4.1	0.5	100.0(1,121)
현존자녀수								
0명	2.0	33.4	-	9.2	23.3	31.9	0.2	100.0(489)
1명	9.1	52.4	0.4	6.6	11.8	19.3	0.4	100.0(903)
2명	40.8	51.4	0.1	2.3	2.4	2.8	0.2	100.0(2,180)
3명	49.0	42.5	0.2	3.5	1.7	2.8	0.3	100.0(398)
4명 이상	43.1	47.8	-	-	-	4.6	4.5	100.0(31)

주: 1) 자궁적출, 폐경, 양측 나팔관 제거; 2) 3년 이상 임신 안됨.

2. 자녀희망여부별 피임실천여부

<표 5-25>는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노출상태에서 추가자녀 희망여부와 피임실천과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대상은 불임수술 수용(31.0%), 임신불가능(0.2%), 자연불임(3.2%), 현재 임신중(6.7%)인 부인 등을 제외한 부인(58.9%)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추가자녀 희망여부에 따른 피임실천여부를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표 5-25〉 15~44세 유배우부인¹⁾의 특성별 자녀추가 희망여부 및 피임실천
(단위: %)

특성	자녀희망 피임실천 (A)	자녀비희망 피임실천 (B)	자녀희망 피임비실천 (C)	자녀비희망 피임비실천 (D)	계(수)
전체	14.5	64.7	17.3	3.5	100.0(1,891)
지역					
동부	14.5	64.6	17.1	3.8	100.0(1,643)
읍·면부	14.6	64.8	19.0	1.6	100.0(247)
연령					
15~24세	43.7	12.7	42.3	1.4	100.0(71)
25~29세	33.8	24.5	37.9	3.8	100.0(314)
30~34세	19.0	55.6	21.0	4.5	100.0(601)
35~39세	3.8	84.9	8.3	3.0	100.0(529)
40~44세	0.8	94.4	2.1	2.7	100.0(375)
현존자녀수					
0명	40.1	3.6	56.0	0.4	100.0(277)
1명	25.5	43.5	26.3	4.7	100.0(533)
2명	2.6	90.8	3.2	3.4	100.0(938)
3명	3.1	90.1	1.5	5.3	100.0(131)
4명 이상	-	84.6	7.7	7.7	100.0(13)
교육수준					
초교 이하	-	87.5	12.5	-	100.0(8)
중학교	3.4	79.7	15.3	1.7	100.0(59)
고등학교	9.9	71.0	15.4	3.6	100.0(907)
대학 이상	19.9	57.2	19.5	3.4	100.0(914)

주: 1) 15~44세 유배우부인 중 임신불가능(0.2%), 불임상태(3.2%), 불임수술을 받은 경우(31.0%) 및 현재 임신 중인 경우(6.7%) 등을 제외한 부인, 즉, 임신의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일시적인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부인(58.9%)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임신의 위험에 노출된 부인의 추가자녀 희망여부 및 현재 피임실천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5-1]과 같이 요약된다. 앞으로 자녀를 원하기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17.3%이었으며,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는 3.5%로 나타났다. 반면 더 이상 자녀를 원치 않기 때문에 피임을 하는 경우는 64.7%, 자녀를 원하지만 피임을 하는 경우는 14.5%이었다.

따라서 자녀를 원치 않으면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부인에 대한 집중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인공임신중절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1] 15~44세 유배우부인 중 임신노출상태에 있는 부인의 추가자녀 희망여부별 피임실천상태

		추가자녀희망여부		
		희망(+)	비희망(-)	
피임 실천 여부	실천(+)	A(14.5%)	B(64.7%)	79.8%
	비실천(-)	C(17.3%)	D(3.5%)	20.2%
		31.8%	68.2%	100.0%

이와 같은 A, B, C, 그리고 D 집단을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 5-25>와 같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피임보급대상인 자녀를 원치 않으면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비율이 3.8%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1.6%)보다 약간 많았다.

연령별로는 15~24세 연령층은 자녀를 희망하면서 터울조절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는 부인층에 집중되었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자녀를 원치 않기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는 부인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자녀를 원치 않으면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30~34세 연령층이 4.5%로 가장 많았고, 30~34세 연령층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였다. 따라서 25~34세 연령층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존자녀수별로는 연령과 대체로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나, 자녀를 희망하지 않으면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인 피임보급대상자층은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을 제외하고 대체로 현존자녀수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3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의 5.3%,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의 7.7%가 관리대상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를 원치 않기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는 부인의 비율이 높은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를 희망하면서 터울조절 때문에 피임을 실천하는 경우와 자녀를 희망하기 때문에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보였다. 이는 고학력일수록 결혼이 늦어짐에 따라 출산기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특히 자녀를 희망하지 않으면서 피임을 하지 않는 관리대상은 고등학교의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이 3.6%로 가장 높았다.

제 6 절 피임수용실태의 시사점

우리나라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실천율은 2006년 79.6%로 2003년보다 4.9%포인트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여성불임 증가의 영향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임신 중인 경우와 폐경, 자연불임 등과 같이 피임이 불필요한 경우 등이 있어 피임실천율의 한계를 약 80% 전·후로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감액되고,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는 등 인구자질정책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 높은 수준의 피임실천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혼부부 사이에 피임실천이 보편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장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임실태와 관련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피임방법별 실천율의 변화로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하나는 여성피임방법인 난관수술에서 남성피임방법인 정관수술로 피임방법이 전환되는 추세이다. 이는 양성 평등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다른 하나는 영구적인 피임방법에서 일시적인 피임방법으로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일시적 피임방법은 터울조절의 경우에는 유용하지만 단산을 한 부인의 경우에 일시적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율이 높다는 것은 피임실패의 가능성이 예상되어 피임실천의 질적인 측면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피임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임목적에 적합한 피임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계몽, 상담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시적 피임방법의 사용은 출산 가능성이 높은 젊은 연령층에서 많았는데, 이들 연령층의 피임 실패는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지며, 이는 여성의 생식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부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피임방법의 지도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피임비실천 부인 중 피임을 비실천하는 이유로 불임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불임부부는 1990년 25만쌍에서 2003년 64만쌍으로 156% 증가하였다. 또한 2000년도 우리나라 유배우 가임여성의 불임발생률은 13.5%로 우리나라 부부 7쌍 중 1쌍이 적극적인 불임치료 대상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불임률은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추가자녀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부인은 임신에 노출되어 있는 방임부인집단으로 인공임신중절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부인을 대상으로 피임지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는 고연령층 부인의 임신은 그 비율이 높지 않더라도 바로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고연령층 부인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부인의 생식보건을 증진시키고 인구자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제 6 장 인공임신중절실태

인공임신중절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기간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로서 인공유산(人工流産) 또는 낙태(落胎)라고도 한다. 인공임신중절은 자연유산, 사산 등과 함께 임신소모(妊娠消耗)의 한 형태이지만, 자연유산과 사산은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결과임에 반하여 인공임신중절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결정되는 임신중절의 형태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

1994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CPD)에서는 여성의 출산권 및 출산건강(Reproductive Health)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출산간격, 출산시기 및 자녀수의 결정, 출산조절을 위한 가족계획 정보의 접촉과 피임방법의 자유로운 선택 등을 여성의 출산권으로 보는 것을 전체 참석국가가 찬성하였다. 하지만 태아는 생성 중에 있는 존중되어야 할 생명체이기 때문에 인공임신중절은 여성의 출산권 및 출산건강의 내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종교단체의 강력한 주장도 제기되었음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또한 2004년 초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UN 회의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을 억제 하자는 미국의 강력한 제기에 대하여 제3세계 국가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이들 제3세계 국가들은 인공임신중절의 폐해는 인정하지만 인공임신중절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공임신중절을 실시하는 국가에 대한 재정적 압박은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음성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증가시켜 국민의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여 시기상조임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인공임신중절의 부정적 인식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이를 정책적으로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각 국가 및 사회의 문화적,

가치관적, 종교적, 경제적,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논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형법의 낙태죄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행위를 불법화하였으나, 많은 여성들은 큰 어려움 없이 이에 의하여 원치 않는 출산을 피할 수 있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하는 당사자와 의료인은 실정법상 위법행위로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큰 정신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1973년 모자보건법을 제정하여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한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의 제한적 허용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둘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셋째,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이 된 경우; 넷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친척 간에 임신된 경우; 마지막으로, 임신의 지속이 보건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억제정책이 시작된 1962년 이래 인공임신중절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출산으로 연결시키지 않기 위한 한 수단이 되어 왔다.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인구증가를 억제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임신초기에 인공임신중절을 원하는 부인에게 월경조절술(Menstruation Regulation, MR)이라는 이름아래 시술비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한국사회에서 인공임신중절은 크게 성행하게 되었으며, 피임실천율의 증가와 초혼연령의 상승과 함께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인공임신중절을 낮은 피임접근성, 비효과적 피임방법의 보급 등으로 인한 피임 실패임신 또는 불원임신의 사후 처리수단으로 악용되었고 이에 힘입어 출산율 저하에 성공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소자녀관의 정착과 함께 태아 성감별을 통한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이 자행되고 있어 인공임신중절 자체의 문제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윤

리적 측면에서 인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것으로 우려되며, 성비 불균형이라는 또 하나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공임신중절률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고, 이어서 부인의 인공임신중절경험횟수, 첫 번째와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 및 당시 부인연령, 수용이유, 그리고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부 등을 부인의 특성에 따라 분석한다.

제 1 절 인공임신중절률의 변화

인공임신중절률은 한 여성이 생애동안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횟수를 일정시점에서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나 과거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20~44세 유배우부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 6-1>은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보여준다. 최근 우리나라 부인의 인공임신중절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었으며, 2003년 조사(2002년 통계)에서는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06년 조사(2005년 통계)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인공임신중절률을 5세 간격별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인공임신중절률을 보여준 20~24세 연령층은 1990년에 186을 기록한 후 급격히 떨어져 1999년 53으로 최저수준에 달하였다가 2002년에는 다시 74로 상승하였으며, 본 조사에서는 59로 다시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20~24세 연령층의 인공임신중절률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20~24세 연령층의 피임실천율이 다른 연령층 보다 낮아 임신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피임방법도 다소 안정성이 낮은 일시적 피임방법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할 가능성이 높음에서 나타나는 결과라 추측된다. 아울러 첫 출산을 지연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인공임신중절을 악용한다고도 짐작된다.

25~29세 연령층의 인공임신중절률은 1984년의 146을 정점으로 저하하기 시작하여 1987년 103에서 1990년에는 112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그 후 급격히 떨어져 1999년에는 33 수준에 머물렀고, 2002년에는 38로 미미하나마 상승하였으나 본 조사결과에서는 다시 15로 큰 폭의 저하를 보였다. 이는 20~24세 연령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설명되어 진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2002년까지는 30~34세 연령층보다 인공임신중절률이 높았던 25~29세 연령층이 2005년에는 처음으로 낮아졌다는 사실이다.

30~34세 연령층은 1975년 158수준으로 매우 높았으나 지속적으로 저하되었으며, 1993년 일시적인 상승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어 2005년에는 19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2005년에는 저하의 폭이 25~29세 연령층보다 작아 인공임신중절률은 30~34세 연령층에서 더 높았다.

〈표 6-1〉 20~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 변동추이

(단위: 회/1000명당)

연령	1975 ¹⁾	1984 ²⁾	1987 ³⁾	1990 ⁴⁾	1993 ⁵⁾	1996 ⁶⁾	1999 ⁷⁾	2002 ⁸⁾	2005 ⁹⁾
20~24세	63	91	102	186	105	79	53	74	59
25~29세	86	146	103	112	94	51	33	38	15
30~34세	158	115	71	60	63	49	33	30	19
35~39세	153	40	29	21	25	16	12	21	7
40~44세	75	20	7	6	1	3	1	6	5

- 자료: 1) 박병태 외, 『197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계획평가조사』, 가족계획연구원, 1978.
 2) 문현상 외,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3) 문현상 외,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4)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5)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6)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7)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8)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9) 본 조사결과

35~39세와 40~44세 연령층의 인공임신중절률도 급격히 저하하여 1975년

153과 79에서 1999년 12와 1로 큰 폭의 저하를 보였으나, 2002년에는 다소 상승하였다. 그렇지만 본 조사에서는 각각 7, 5로 저하하여 자녀의 출산종료 후 보다 효과적인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을 하거나 고령출산 또는 늦둥이 출산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제 2 절 인공임신중절경험 실태

우리나라 부인이 얼마나 많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고 있는지는 앞에서 살펴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률과 함께 이들의 인공임신중절경험률, 인공임신중절횟수 분포 및 평균 인공임신중절횟수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들 통계를 시계열과 부인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전체 부인 중 인공임신중절을 1회 이상 경험한 부인의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공임신중절의 경험여부를 중요시하고 반복경험은 감안하지 않게 된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1980~'90년대 초반에는 50% 이상 수준에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2000년 39%, 2003년 40%, 그리고 2006년에는 34%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1997년과 2003년의 조사^{주53)}에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높았으나, 이와는 달리 2000년과 2006년의 조사에서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동부지역 거주부인보다 높았다. 그렇지만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지역간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의 차이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53) 1994년 조사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없었고, 2000년 조사에서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41%)이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경험률(3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3년 조사에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경험률(41%)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경험률(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김승권 외, 2004).

부인연령에 따른 연도별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의 차이와 변화를 살펴본다. 먼저 연령별 차이를 보면, 연도에 관계없이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이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결혼생활의 길이와 불원임신의 가능성이 비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그렇지만 2006년 조사에는 15~24세의 연령층이 25~29세 연령층보다 경험률이 높았음은 추가분석 없이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시계열적으로 연령별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15~24세 연령층에서는 1991년을 정점(29%)으로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여 1994년과 1997년에는 동일한 수준인 21%이었으며, 2000년에는 13%로 저하하였다. 그러나 2003년과 2006년 조사에서는 다시 15%로 상승하였다. 25~29세 연령층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1985년을 정점(42%)으로 저하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17%로 낮아졌다. 그렇지만 2003년 조사에서는 23%로 큰 폭의 증가를 보여 우려되었으나, 2006년 조사에서는 11%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표 6-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변동추이

(단위: %)

특성	1976	1985	1988	1991 ¹⁾	1994	1997	2000	2003	2006
전체	39	53	52	54	49	44	39	40	34
지역									
동부	46	55	54	55	49	45	39	41	34
읍·면부	29	48	47	49	49	39	41	38	35
연령									
15~24세	16	22	27	29	21	21	13	15	15
25~29세	27	42	41	40	36	27	17	23	11
30~34세	46	61	57	55	51	45	35	34	24
35~39세	50	63	63	60	58	52	50	46	40
40~44세	45	67	62	65	60	53	52	50	48

주: 1) 1991년은 15~49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함.

자료: <표 6-1>과 동일

30~34세 연령층 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1985년을 정점(61%)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3년에는 34%이었고, 다시 2006년 조사에서는 24%로 큰

폭 하락하였다. 35~39세 연령층 부인은 1985년과 1988년 63%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저하추세를 보였으며, 2003년 46%, 2006년 40%로 최저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40~44세 연령층 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1985년을 정점(67%)으로 계속 저하하여 2003년에는 50%, 2006년에는 48%로 최저점을 차지하였다(표 6-2 참조).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이 점차 낮아지다가 2003년 조사에서는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6년 조사에서는 다시 하락세로 이어져 매우 다행스럽다. 이는 인공임신중절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고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공감하거나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2. 총 임신 중 인공임신중절 종결률

조사완료 부인의 전체 임신횟수와 임신소모로 종결된 횟수, 그리고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횟수를 지난 10여 년간의 조사결과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본다. 전반적으로 전체 임신 중 인공임신중절로 소모된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고, 출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15~44세 유배우부인의 총 임신 중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경우는 28.4%였고,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은 77.1%이었다. 그러던 것이 1997년 조사결과에서는 전체 임신 중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경우는 26.1%였고,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은 73.3%로 나타나 1994년도에 비하여 임신소모는 다소 낮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과 2003년 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2000년 조사에서는 전체 임신 중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경우는 24.1%,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은 70.7%로 낮아졌고, 2003년에 조사에서도 전체 임신 중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경우는 23.2%이었고,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은 70.0%로 지속적 저하를 보였다(표 6-3 참조).

본 조사에는 총 임신 2.46회 중 임신소모로 종결된 경우는 0.71회이었고,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경우는 0.47회이었다. 따라서 총임신 대비 인공임신중절비

율은 19.1%로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 비율도 66.2%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되는 임신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라 판단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임신소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 보건의료적 측면, 그리고 생식보건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반성과 대책이 요구된다.

〈표 6-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총 임신 및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 변화
(단위: 회, %)

연도	총임신 (A)	임신소모 (B)	인공임신중절 (C)	총임신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 (C/A)	임신소모 대비 인공임신중절비율 (C/B)
1994 ¹⁾	2.96	1.09	0.84	28.4	77.1
1997 ²⁾	2.83	1.01	0.74	26.1	73.3
2000 ³⁾	2.70	0.92	0.65	24.1	70.7
2003 ⁴⁾	2.72	0.90	0.63	23.2	70.0
2006 ⁵⁾	2.46	0.71	0.47	19.1	66.2

자료: 1)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2)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3)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4)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5) 본 조사결과

3. 인공임신중절 경험횟수

인공임신중절횟수는 얼마나 많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이다. 따라서 2회 이상 반복 경험한 부인의 경우 실제 경험횟수를 감안하므로 인공임신중절을 얼마나 자주 수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 하겠다.

인공임신중절을 2회 이상 반복경험한 부인은 1994년 조사에서는 20.9%로 높았으나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0년 17.1%, 2003년 15.8%이었다. 본 조사에서는 더욱 낮아져 10.1%가 반복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인공

임신중절의 평균 경험횟수도 1994년의 0.8회에서 2000년 0.7회, 2003년 0.6회, 2006년 0.5회로 지속적인 저하를 보였다(표 6-4 참조).

〈표 6-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횟수 분포

(단위: %, 회)

연도	무경험	유경험			계(수)	평균 경험횟수
		소계	1회	2회 이상		
1994 ¹⁾	50.8	49.2	28.3	20.9	100.0(5,183)	0.8
1997 ²⁾	55.8	44.2	24.9	19.3	100.0(5,420)	0.7
2000 ³⁾	60.8	39.2	22.1	17.1	100.0(6,408)	0.7
2003 ⁴⁾	59.6	40.4	24.6	15.8	100.0(6,597)	0.6
2006 ⁵⁾	66.0	34.0	23.9	10.1	100.0(5,382)	0.5

자료: <표 6-3>과 동일.

일반적으로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경험횟수 분포, 평균 경험횟수는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다. 따라서 본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의하여 이들 지표를 부인의 거주지역, 연령, 교육수준, 현존자녀수, 취업여부 등에 의하여 구분하여 살펴본다.

먼저 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른 결과를 보면, 인공임신중절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부인의 비율이 금번 조사에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 66.3%,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64.7%로 나타나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무경험률이 높았다. 주⁵⁴⁾ 1회 경험한 부인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25.0%)이 동부지역 거주부인(23.6%)보다 다소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2회 이상 경험한 부인의 비율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읍·면부지역 거주부인 10.3%, 동부지역 거주부인 10.1%). 그렇지만 이는 미미한 차이여서 평균 경험횟수는 동부지역 거주부인과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동일한 수준(0.5회)이었다.

15~24세 부인을 제외하고는 인공임신중절 무경험률은 부인연령이 낮을수록

주54) 2003년 조사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이 동부지역 거주부인 59.2%,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61.9%로 나타났다(김승권 외, 2004).

많았고, 경험횟수는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많았다. 즉, 15~24세 연령층의 부인은 2회 이상 반복 경험률은 5.6%이었으나, 25~29세 연령층 부인은 1.6%로 낮은 수준이었고, 연령이 상승할수록 반복경험률도 높아져 30~34세 5.0%, 35~39세 11.3%, 40~44세 17.6%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연령이 상승할수록 평균 경험횟수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주55)} 이와 같이 인공임신중절경험이 부인연령에 비례하여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인의 결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임신력(pregnant history) 기간이 길어져 임신노출 또는 피임실패에 의한 임신의 발생가능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성 경험이 많이 이루어지는 젊은 연령층 부인에 대한 효과적인 피임보급에 역점을 두어야 겠으며, 아울러 원하는 자녀를 모두 출산한 출산종료의 고연령층 부인의 임신은 대부분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부인을 대상으로 피임법 사용에 대한 홍보·교육 및 효과적 피임방법으로의 유도 등을 통한 피임실천의 내실화를 기하여 인구자질향상을 도모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과학분야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나듯이 교육수준과 현존자녀수는 연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대체로 학력이 낮은 부인과 자녀를 많이 가진 부인이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많았다. 다만, 중학교 학력을 가진 부인과 현존자녀수가 4명 이상인 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이 특별히 높았는데, 특별한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부인의 교육수준별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을 살펴보면, 중학교 학력수준

주55) 2003년 조사에서는 15~24세 및 25~29세 연령층의 부인은 각각 86.4%, 78.1%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지 않았고, 2회 이상 반복경험도 각각 3.2%, 6.5%로 낮았으며, 평균 인공임신중절횟수도 0.2회, 0.3회로 타 연령층의 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그러나 30세 이상 연령층의 인공임신중절 경험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30~34세 연령층의 부인은 인공임신중절 무경험률이 66.8%이었으며, 2회 이상의 반복경험은 11.2%로 20대 부인층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평균 인공임신중절경험횟수는 0.5회로 나타났음. 이러한 경향은 부인의 연령이 상승할수록 더욱 심해져 35~39세, 40~44세 연령층 부인의 인공임신중절 무경험률은 각각 53.5%, 49.9%로 감소한 반면, 2회 이상 반복 경험한 비율은 각각 18.2%, 22.3%로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평균 인공임신중절경험횟수는 각각 0.7회, 0.8회로 증가하였음(김승권 외, 2004).

의 부인이 4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고등학교 학력의 부인 40.1%, 초등학교 이하 학력수준의 부인 34.8%이었으며, 그리고 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은 24.2%로 가장 낮았다. 특히, 2회 이상 반복경험을 가진 부인은 중학교 학력의 부인이 16.3%로 매우 높았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5.9%로 현저히 낮았다. 따라서 인공임신중절의 평균 경험횟수는 중학교 학력의 부인이 평균 0.7회로 가장 많았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0.3회로 적었다.

〈표 6-5〉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인공임신중절 횟수 분포

(단위: %, 회)

특성	무경험	유경험		계(수)	평균 횟수	
		소계	1회			2회 이상
전체	66.0	34.0	23.9	10.1	100.0(5,395)	0.5
지역						
동부	66.3	33.7	23.6	10.1	100.0(4,607)	0.5
읍·면부	64.7	35.3	25.0	10.3	100.0(788)	0.5
연령						
15~24세	84.9	15.1	9.5	5.6	100.0(126)	0.2
25~29세	89.0	11.0	9.4	1.6	100.0(636)	0.1
30~34세	76.1	23.9	18.9	5.0	100.0(1,431)	0.3
35~39세	60.2	39.9	28.6	11.3	100.0(1,662)	0.5
40~44세	52.0	48.0	30.4	17.6	100.0(1,537)	0.7
교육수준						
초교 이하	65.2	34.8	24.2	10.6	100.0(66)	0.5
중학교	52.9	47.1	30.8	16.3	100.0(263)	0.7
고등학교	59.9	40.1	27.4	12.7	100.0(2,862)	0.6
대학 이상	75.8	24.2	18.3	5.9	100.0(2,198)	0.3
현존자녀수						
0명	91.1	8.9	6.7	2.2	100.0(540)	0.1
1명	78.4	21.6	16.5	5.1	100.0(1,196)	0.3
2명	59.4	40.6	28.3	12.3	100.0(3,063)	0.6
3명	53.4	46.6	31.0	15.6	100.0(552)	0.7
4명 이상	46.5	53.5	30.2	23.3	100.0(43)	0.9
취업여부						
취업중	61.6	38.4	26.0	12.4	100.0(2,665)	0.6
비취업	70.4	29.6	21.7	7.9	100.0(2,728)	0.4

현존자녀수별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을 살펴보면,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이 53.5%로 가장 높았고, 3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 46.6%,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 40.6%이었으며, 그리고 자녀가 없는 부인과 한명인 부인은 각각 8.9%, 21.6%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회 이상 반복경험한 부인의 비율은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이 23.3%로 가장 높았고, 자녀가 없는 부인은 2.2%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현존자녀수별 인공임신중절 평균 경험횟수는 4명 이상 자녀를 가진 부인이 0.9회로 가장 많았으며, 0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0.1회로 적었다. 인공임신중절 경험과 관련하여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현존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의 경험이 8.9%나 되었으며, 특히 2회 이상 반복경험을 한 부인도 2.2%나 있었다는 점이다. 이 수준은 2003년의 결과보다는 낮은 것이나 2000년의 결과보다는 높은 것으로, 이 연령층에서 인공임신중절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주56)}

이와 같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첫째, 결혼후 가족이 경제적 기반을 잡을 때까지 출산의 부담 없이 취업을 지속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출산을 지연시키기 위함이다. 셋째, 부부만의 신혼생활을 보다 오래 즐기기 위해서 아이 갖는 것을 가능한 한 늦추려는 젊은 세대의 세태이기도 하다. 넷째, 음주, 흡연, 약물복용 등 임신 전·후의 잘못된 행동에 의한 임신결과를 염려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혼전임신을 감추기 위한 방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김승권 외, 2004). 물론 다양한 이유에 의하여 자녀가 없는 부부도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한국사회에서도 서구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DINK(Double Income, No Kids) 또는 SINK (Single Income, No Kids) 가족이 점차 나타나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 아닌가 사료된다(김승권 외, 2000).

주56) 1997년 조사에서는 현존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의 경험은 11.3%이었으며, 특히 2회 이상 반복경험을 한 부인도 4.9%나 되어 이들 부인층의 평균 인공임신중절 경험 횟수는 0.2회이었음; 2000년 조사에서는 현존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비율이 7.5%이었으며, 특히 2회 이상 반복경험을 한 부인은 2.9%이었음. 따라서 자녀가 없는 부인의 평균 인공임신중절 경험횟수는 0.1회로 나타났음(김승권 외, 2004).

다음은 부인이 현재 취업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의 경험률과 경험횟수를 살펴보았다. 경험률은 취업중인 부인이 38.4%로 비취업부인의 29.6%보다 8.8%포인트 높았다. 또한 2회 이상 반복경험한 부인은 취업중인 부인 12.4%, 비취업부인 7.9%로 4.5%포인트의 큰 차이를 보였다.

4. 인공임신중절 수용시의 임신순위 및 부인연령

15~44세 유배우부인이 경험한 인공임신중절이 부인의 임신순위와 당시의 부인연령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인공임신중절의 위해성이 이러한 특징에 따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주 대상층의 파악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인공임신중절이 부인의 첫 번째 임신인 경우가 21.4%, 두 번째 임신인 경우가 36.4%, 그리고 세 번째 이상의 임신순위인 경우가 42.2%를 차지하였다. 또한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 부인의 평균연령은 27.3세로 나타났다(표 6-6 참조).^{주57)} 이들 임신의 일부는 혼전임신일 수도 있겠고, 원하지 않았던 임신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임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쁜 음료와 약물을 음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인공임신중절로 귀결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모든 인공임신중절은 당연히 여성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첫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되었다는 것은 다른 임신순위에서 행해진 인공임신중절 보다 여성건강에 해악을 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의 예방에 보다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미혼남녀, 특히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신랑, 그리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성교육, 가족계획교육, 임신부 관리 등의 서비스가 강화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주57) 2003년 조사에 의하면, 15~44세 유배우부인의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이 부인의 첫 번째 임신인 경우가 24.3%, 두 번째 임신인 경우가 35.3%, 세 번째 이상의 임신순위인 경우가 40.4%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인공임신중절이 높은 임신순위에서 발생하였음. 그리고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당시 부인의 평균연령은 26.9세로 나타났다.

첫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를 부인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젊은 연령층의 부인이, 교육수준이 높은 부인이, 그리고 비취업 중인 부인이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첫 인공임신중절이 첫 임신인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22.0%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18.0%보다 높았다. 첫 인공임신중절시 평균연령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27.4세,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27.2세로 미미하나마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는 첫 인공임신중절이 첫 임신인 경우가 15~24세 부인이 73.7%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낮아져 40~44세 연령층 부인은 14.8%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첫 인공임신중절시 부인의 연령은 15~24세 연령층이 20.4세, 25~29세 연령층은 24.2세로 나타났으며, 35~39세 이상 연령층은 27.7세, 40~44세 연령층은 27.9세 등이었다. 이와 같이 젊은 부인들이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혼전임신으로 인한 영향이거나 출산을 뒤로 늦추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와는 달리 셋째 이상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시킨 경우는 부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이 많은 부인이 임신경험이 많고, 임신경험이 많은 경우 인공임신중절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 이상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의 첫 인공임신중절이 첫 임신인 경우가 23.4%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의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의 경우도 21.0%로 높은 수준이었다. 초교 이하와 고등학교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이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한 비율은 각각 17.4%와 20.5%이어서 다른 학력수준의 부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주58)} 또한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할 당시의 부인연령은 초교 이하의 학력층은 24.4세이었고, 교육수준이 높으면서 점차 상승하여 대학 이상의 학력층은 28.2세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첫 인공임신중절이

주58) 2003년 조사결과는 연령층이 낮을수록 대체로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김승권 외, 2004).

첫 임신인 경우가 많은 고학력층 부인의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 평균연령이 높은 것은 결혼연령이 높아 첫 임신이 늦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첫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되는 경우의 위해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고학력층 부인들이 낮은 학력수준의 부인보다 더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하고 있음은 출산할 경우 직장이 불안정해지거나 혼전임신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표 6-6〉 첫 인공임신중절¹⁾의 임신순위별 분포와 당시 부인연령

(단위: %, 세)

특성	임신순위			계(수)	첫 인공임신중절시 부인의 평균연령
	첫째 임신	둘째 임신	셋째 이상 임신		
2003년	24.3	35.3	40.4	100.0(2,663)	26.9
2006년	21.4	36.4	42.2	100.0(1,832)	27.3
지역					
동부	22.0	36.7	41.3	100.0(1,554)	27.4
읍·면부	18.0	34.9	47.1	100.0(278)	27.2
연령					
15~24세	73.7	26.3	-	100.0(19)	20.4
25~29세	50.7	31.0	18.3	100.0(71)	24.2
30~34세	29.3	32.8	37.8	100.0(341)	26.6
35~39세	19.9	35.0	45.1	100.0(663)	27.7
40~44세	14.8	40.2	45.0	100.0(737)	27.9
교육수준					
초교 이하	17.4	43.5	39.1	100.0(23)	24.4
중학교	21.0	41.1	37.9	100.0(124)	26.2
고등학교	20.5	35.5	44.0	100.0(1,149)	27.1
대학 이상	23.4	36.7	39.9	100.0(531)	28.2
취업여부					
취업중	20.8	36.5	42.7	100.0(1,023)	27.1
비취업	22.2	36.3	41.6	100.0(808)	27.6

주: 1)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자료: 1)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2) 본 조사결과

취업여부에 따라서 살펴보면,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시킨 경우는 비취업 부인이 다소 많았고(취업부인 20.8%, 비취업 부인 22.2%), 셋째 이상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시킨 경우는 취업중인 부인이 많았다(취업부인 42.7%, 비취업부인 41.6%). 따라서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의 평균연령은 취업중인 부인이 27.1세로 비취업 부인의 27.6세 보다 약간 적었다(표 6-6 참조).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자녀수를 살펴보면, 1명의 자녀를 가진 경우가 3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명 37.1%, 자녀가 없는 경우 21.2%이었으며, 3명 이상인 경우는 2.8%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평균 자녀수는 1.22명으로 적었는데, 이는 2003년 조사결과인 1.19명보다 다소 많은 것이다.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자녀수를 부인연령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5~24세의 젊은 연령층 부인들이 첫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할 때의 자녀수는 0.58명에 불과하였고, 25~29세 연령층 부인들의 경우는 1.29명, 그리고 30~34세 연령층 부인은 1.67명, 35~39세 연령층 부인은 1.81명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경우 2명의 자녀를 갖기 이전에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0~44세 부인의 경우는 평균 2.00명의 자녀를 가진 상태에서 첫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 이상자녀수 또는 기대자녀수를 갖기 전에 다양한 이유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원하는 임신 또는 안전한 임신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자녀가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시킨 경우가 15~24세 연령층 부인의 경우 무려 49.9%나 되었고, 25~29세 연령층은 13.7%가 있었으며, 그리고 30~34세 연령층과 35~39세 연령층 부인의 경우도 각각 6.6%, 7.1%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태아이상, 배우자와의 결별, 혼전임신, 자녀불원, 출산연기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첫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할 당시 부인연령별로 당시 자녀수의 성분포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성선택적 인공임신중절과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의미가

있다. 전체적으로 성비는 113이어서 성선호에 의하여 첫 인공임신증절을 수용한 경우도 있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15~24세 연령층과 40~44세 연령층의 자녀성비는 각각 140, 130으로 높아 성선호에 의해 인공임신증절을 수용하였음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표 6-7〉 첫 인공임신증절¹⁾ 당시 자녀수 분포

(단위: %, 세)

당시 부인연령	당시 자녀수				계(수)	첫 인공임신 증절시 자녀수
	0명	1명	2명	3명 이상		
2003년	24.5	36.6	35.1	3.8	100.0(2,663)	1.19
2006년	21.2	38.8	37.1	2.8	100.0(1,828)	1.22
15~24세	49.9	42.8	6.9	0.4	100.0(477)	0.58
25~29세	13.7	45.7	38.8	1.8	100.0(851)	1.29
30~34세	6.6	25.8	61.5	6.1	100.0(392)	1.67
35~39세	7.1	13.1	70.7	9.1	100.0(99)	1.81
40~44세	-	22.2	55.6	22.2	100.0(9)	2.00

주: 1) 첫 번째 인공임신증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증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되었으며, 평균 자녀수는 자녀가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40~44세 연령층의 부인은 실제 숫자가 적어 통계학적으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자료: 1)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2) 본 조사결과

〈표 6-8〉 첫 인공임신증절¹⁾ 당시 자녀의 성

(단위: 명)

당시 부인연령	당시 평균 아들수	당시 평균 딸수	성비
2003년	0.62	0.57	109
2006년	0.82	0.73	113
15~24세	0.66	0.47	140
25~29세	0.79	0.70	113
30~34세	0.91	0.88	103
35~39세	0.96	1.02	94
40~44세	1.13	0.87	130

주: 1) 첫 번째 인공임신증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증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되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1)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2) 본 조사결과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를 살펴보는 것은 특히 인공임신중절의 반복 경험이 있는 부인의 최근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 및 당시 부인연령을 감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이 부인의 첫 임신인 경우가 13.6%, 두 번째 임신인 경우가 26.3%, 세 번째 이상의 임신 순위인 경우가 60.1%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인공임신중절이 높은 임신순위에서 발생하고 있었다.^{주59)} 따라서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보다는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가 높았으며, 인공임신중절 당시 부인의 평균연령은 28.5세로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부인연령보다는 1.2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 및 당시 부인연령을 부인의 특성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 번째 이상 임신의 비율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61.7%)이 동부지역 거주부인(59.8%)보다 높았다. 그렇지만 인공임신중절 당시 부인의 평균연령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28.5세,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28.3세로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별로 부인의 초혼연령 차이에서 나오는 결과라 추측된다. 또한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이 첫 임신인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부인(14.1%)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10.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연령층의 부인은 주로 첫 임신이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인 경우가 많았으나 30대 이상 연령층의 부인들은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30~34세 연령층 부인의 경우는 48.4%가 셋째 이상 임신순위이었으며, 35~39세 연령층은 62.0%, 그리고 40~44세 연령층은 68.3%로 높았다. 따라서 인공임신중절 당시 부인의 평균연령은 젊은 연령층의 부인은 20대 초반이었으며, 연령이 상승할수록 인공임신중절 수용시 부인연령은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상관없이 셋째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학력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주59) 2003년 조사에서는 15~44세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이 부인의 첫 번째 임신인 경우가 11.8%, 두 번째 임신인 경우가 23.9%, 세 번째 이상의 임신순위인 경우가 64.3%를 차지하였음.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부인은 63.2%로 가장 높았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셋째 이상 임신인 비율은 54.3%로 가장 낮았다.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 부인의 평균 연령은 학력이 높을수록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25.9세 이었으며, 중학교 학력을 가진 부인은 27.8세,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부인은 28.3세,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 29.1세로 나타났다.

〈표 6-9〉 마지막¹⁾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별 분포와 당시 부인연령

(단위: %, 세)

특성	임신순위			계(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시 부인의 평균연령
	첫째 임신	둘째 임신	셋째 이상 임신		
2003년	11.8	23.9	64.3	100.0(2,660)	28.5
2006년	13.6	26.3	60.1	100.0(1,827)	28.5
지역					
동부	14.1	26.1	59.8	100.0(1,550)	28.5
읍·면부	10.5	27.8	61.7	100.0(277)	28.3
연령					
15~24세	47.4	31.6	21.1	100.0(19)	21.1
25~29세	40.0	37.1	22.9	100.0(70)	24.4
30~34세	22.0	29.6	48.4	100.0(341)	27.2
35~39세	12.0	26.0	62.0	100.0(661)	28.7
40~44세	7.7	23.9	68.3	100.0(736)	29.5
교육수준					
초교 이하	8.7	34.8	56.5	100.0(23)	25.9
중학교	12.1	31.5	56.5	100.0(124)	27.8
고등학교	12.2	24.6	63.2	100.0(1,146)	28.3
대학 이상	17.2	28.5	54.3	100.0(530)	29.1
취업여부					
취업중	12.3	25.6	62.1	100.0(1,023)	28.3
비취업	15.3	27.2	57.5	100.0(805)	28.7

주: 1)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자료: 1)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2) 본 조사결과

현재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가 셋째 이상 임

신인 경우는 취업 부인인 경우가 62.1%로 비취업 부인의 57.4% 보다 높았으나, 평균 연령은 취업부인이 28.3세로 비취업부인의 28.7세보다 다소 낮았다.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자녀수를 살펴보면, 2명의 자녀를 가진 경우가 4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명 32.6%, 자녀가 없는 경우 15.7%이었으며, 3명 이상인 경우는 4.5%였다. 전체적으로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평균 자녀수는 1.41명에 불과하여 소자녀관의 정착이 가장 최근의 인공임신중절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 부인연령별 자녀수를 살펴보면, 15~24세의 젊은 연령층 부인이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할 때의 자녀수는 0명인 경우가 4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1명 43.8%로 나타나 동 연령층의 평균 자녀수는 0.65명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이 자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녀출산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즉,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25~29세 연령층 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할 당시의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4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명 38.7%, 무자녀 12.6%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동 연령층이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할 당시의 평균 자녀수는 1.39명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는 부인과 자녀를 원하지 않는 부인, 그리고 자녀출산을 지연시키려는 부인 등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이해된다.

30세 이상 연령층 부인들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할 당시의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약 60.7~67.3%로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로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평균 자녀수는 30~34세 연령층 부인이 1.78명, 35~39세 연령층 부인 1.87명, 그리고 40~44세 연령층 부인 1.86명 등으로 출산이 종료한 후에 나타나는 불원임신의 결과로서의 인공임신중절 수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시킨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시킨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비율은 15~24세 연령층 부인은 45.9%나 되었고, 25~29세 연령층은 12.6%, 30~34세 연령

층 부인 4.2%, 35~39세 부인 5.1%, 40~44세 부인 3.6%가 있었다. 물론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이 첫 인공임신중절인 경우도 있겠지만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하였다는 사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윤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불임의 우려, 모성건강, 저출산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려된다.

〈표 6-10〉 마지막¹⁾ 인공임신중절 당시 자녀수 분포

(단위: %, 세)

당시 부인연령	당시 자녀수				계(수)	마지막 인공임신 중절시 평균자녀수
	0명	1명	2명	3명 이상		
2003년	15.1	31.2	47.6	6.1	100.0(2,662)	1.46
2006년	15.7	32.6	47.2	4.5	100.0(1,829)	1.41
15~24세	45.9	43.8	9.7	0.6	100.0(340)	0.65
25~29세	12.6	38.7	46.1	2.6	100.0(799)	1.39
30~34세	4.2	21.4	67.3	7.1	100.0(504)	1.78
35~39세	5.1	15.2	67.7	12.0	100.0(158)	1.87
40~44세	3.6	21.4	60.7	14.3	100.0(28)	1.86

주: 1)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자료: 1)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2) 본 조사결과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할 당시의 부인연령별로 자녀수의 성분포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성선택적 인공임신중절과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의미가 있다. 전체적으로 성비는 110이어서 성선택에 의하여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하였다고는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15~24세와 40~44세 연령층의 인공임신중절 수용당시 자녀성비는 126과 130으로 나타나 강한 남아선호가치관이 영향을 주었다는 견해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짐작케 한다. 남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첫 인공임신중절과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수용당시 부인특성, 자녀수, 자녀성비 등을 살펴보았다. 아직까지도 많은 부인들이 인공임신중절을 피임실패의 한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임신 전·후를 통한 태아건강관리에 소홀한 측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어느 인공임신중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녀출산을 연기하려는 진정

한 이유를 규명하고 안정적 피임방법을 사용토록 정책을 강화하며, 그리고 철저한 산전산후관리를 통한 태아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표 6-11〉 마지막¹⁾ 인공임신중절 당시 자녀의 성

(단위: 명)

당시 부인연령	당시 평균 아들수	당시 평균 딸수	성비
2003년	0.77	0.69	112
2006년	0.87	0.79	110
15~24세	0.82	0.65	126
25~29세	0.86	0.77	112
30~34세	0.91	0.90	101
35~39세	0.98	1.02	96
40~44세	1.13	0.87	130

주: 1)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에는 단 한번의 인공임신중절경험을 가진 경우가 포함됨.

자료: 1)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2) 본 조사결과

제 3 절 최근 인공임신중절수용부인의 피임실천

인공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상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명히 금지되어 있다. 과거와 같이 인공임신중절을 피임의 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던 경향은 피임실천의 생활화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피임실천이 보편화된 1990년대부터는 인공임신중절이 피임의 한 수단이 아니며, 이는 부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준다는 사실에 대하여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진 경우는 결코 적지 않음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피임을 실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실패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이를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한 경우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어떠한 피임방법이 실패가 많은 지를 보여줄 수 있으며, 저출산의 도래로 인하여 피임은 개인에게 말

겨져 있는 현 상태가 지속되어도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2004년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15~44세 유배우부인이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임신이 피임실천 중에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 어떤 피임방법을 사용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전체 임신의 43.5%는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신이었고, 56.5%는 피임을 실천했음에도 임신이 된 ‘실패임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조사결과(52.3%)와 2003년의 조사결과(45.8%)에 비하여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높은 피임실천율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인들의 피임실패임신이 결코 감소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6년 조사에서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한 피임의 유형을 살펴보면, 기타 방법으로 여러 방법을 혼용한 경우와, 일시적인 방법이 2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월경주기법이 13.5%, ‘콘돔+월경주기법’ 9.5%, 콘돔 7.0% 등의 순으로 높았다.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불임시술과 자궁내장치의 경우도 각각 1.0%, 1.5%가 실패임신을 발생시켰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가주계획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불임시술에 의한 피임실천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콘돔 및 월경주기법 등의 일시피임방법에 의한 피임실천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즉, 임신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부인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피임비실천임에도 임신의 비율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임신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임실천의 사각지대에 대하여 정책 차원의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겠다.

부인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부인의 거주지역별 최근 수용한 인공임신중절의 임신당시 피임을 하지 않은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43.8%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41.7%보다 높았다. 그리고 피임실패에 의한 임신인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59.3%로 동부지역 거주부인 56.2%로 보다 높았다. 실패한 피임의 유형을 살펴보면, 월경주기법과 콘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경우 불임시술과 자궁내장치의 실패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각각

1.1%, 1.7%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전혀 없는 것에 비하여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비록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임을 하였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관리가 있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의 사후관리 서비스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부인의 연령별 최근 수용한 인공임신중절의 임신당시 피임을 하지 않은 경우는 15~24세 연령층이 6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25~29세 연령층 부인 65.4%, 40~44세 연령층 부인 61.1%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에, 피임실패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의 비율은 35~39세 연령층 부인이 76.2%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30~34세 연령층 부인이 63.4%로 높았다. 실패한 피임의 유형을 살펴보면, 15~24세 부인은 먹는피임약, 월경주기법, ‘콘돔+월경주기법’, 기타 방법 등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 외의 연령층 부인들도 이들 방법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30~34세 연령층 부인과 35~39세 연령층부인의 경우는 불임기술의 실패 임신이 각각 1.4%, 자궁내장치에 의한 경우가 각각 2.8%, 1.4% 등이었다.

따라서 비록 젊은 연령층 부인이 터울조절 목적의 피임을 수용할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일시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피임사용법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출산이 종료된 연령층의 부인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임방법으로 변경하면서, 정기적으로 피임기구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의료기관에서 검사하여야 할 것이다.

부인의 교육수준별 최근 수용한 인공임신중절의 임신당시 피임을 하지 않은 경우는 대학이상 학력수준의 부인이 4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부인 43.0%이었다. 이와는 상반되게 피임실패에 의한 임신의 경우는 중학교 이하 학력수준의 부인이 60.0%로 높았다. 실패임신을 초래한 피임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월경주기법, 콘돔, ‘월경주기법+콘돔’, 기타 방법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부인의 인공임신중절 당시 자녀수별 임신당시 피임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자녀가 없는 부인이 8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1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 47.8%,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 40.0%, 그리고 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 34.7%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원하는 자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하지 않은 부

인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임을 하더라도 안정성이 높은 방법을 선택하기 보다는 실패가능성이 높은 피임방법인 월경주기법, 콘돔, 기타 방법 등을 선택하는 부인이 전체 연령층에서 많이 있었다.

〈표 6-12〉 2004년 이후 인공임신중절 수용부인의 임신당시 피임실천여부 (단위: %)

특성	비실천	실천								계(수)
		소계	불임 수술	자궁내 장치	먹는 피임약	콘돔	월경 주기법	콘돔+ 월경주기법	기타	
전체	43.5	56.5	1.0	1.5	1.5	7.0	13.5	9.5	22.5	100.0(200)
지역										
동부	43.8	56.2	1.1	1.7	1.1	6.8	13.1	8.5	23.9	100.0(176)
읍·면부	41.7	59.3	-	-	4.2	8.3	16.7	16.7	12.5	100.0(24)
연령										
15~24세	69.2	31.8	-	-	7.7	-	7.7	7.7	7.7	100.0(13)
25~29세	65.4	34.6	-	-	3.8	-	7.7	3.8	19.2	100.0(26)
30~34세	36.6	63.4	1.4	2.8	-	9.9	18.3	9.9	21.1	100.0(71)
35~39세	33.8	76.2	1.4	1.4	1.4	9.9	12.7	9.9	29.6	100.0(71)
40~44세	61.1	39.9	-	-	-	-	5.6	16.7	16.7	100.0(1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0.0	60.0	-	-	20.0	20.0	-	20.0	-	100.0(5)
고등학교	43.0	57.0	-	1.8	1.8	7.9	10.5	11.4	23.7	100.0(114)
대학 이상	44.4	56.6	2.5	1.2	-	4.9	18.5	6.2	22.2	100.0(81)
당시 자녀수										
0명	80.0	20.0	-	-	-	-	4.0	8.0	8.0	100.0(25)
1명	47.8	52.2	-	2.2	4.3	8.7	8.7	8.7	19.6	100.0(46)
2명	34.7	65.3	1.7	1.7	0.8	8.5	18.6	9.3	24.6	100.0(118)
3명 이상	40.0	60.0	-	-	-	-	-	20.0	40.0	100.0(10)

제 4 절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

본 절에서는 15~44세 유배우부인이 수용한 첫 번째 및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가 무엇인지를 규명하였다. 이에 의하여 모자보건법상의 합법적 이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과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부인의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는 자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3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터울조절 16.4%, 경제적 곤란 13.4%, 임부의 건강과 자궁의 임신으로 인한 경우가 10.0% 등의 순이었다. 그 외에도 혼전임신 7.9%, 태아이상 5.0%, 취업 중이어서 2.5%, 성 선택적인 경우(태아가 딸이어서) 2.0%, 가정문제가 1.3% 등이 있었다. 그리고 기타 이유에는 쌍둥이어서, 입덧이 너무 심해, 임신중 약물복용, 혼외임신, 딸일 것 같아서, 아들이어서, 아들일 것 같아, 기형아 우려 등이 있었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상에 제시된 이유에 의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임부의 건강상/자궁의 임신, 태아이상)은 15.0%에 불과하였고, 85.0%는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불법적 인공임신중절인 것으로 추정된다.^{주60)}

첫 인공임신중절의 이유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불원과 터울조절은 과거연도 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자녀불원에 의한 첫 인공임신중절은 2000년 조사의 35.9%, 2003년 조사의 35.3%보다 낮은 30.0%로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경제적 곤란에 의한 첫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은 2000년 조사 6.6%, 2003년 조사 7.5%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13.4%이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출산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이 증가하였음을 짐작케 하며, 결과적으로 저출산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자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29.9%)과 읍·면부지역 거주부인(30.0%)이 유사한 수준이고, 터울조절에 의한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16.5%)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15.8%)보다 다소 높았다. 그리고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은 동부지역 거주부인(15.0%)과 읍·면부지역 거주부인(15.1%)이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혼전임신의

주60) 2003년 조사결과에서는 모자보건법상에 제시된 이유에 의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이 14.0%이었음(김승권 외, 2004).

경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8.2%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6.1%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경제적 곤란으로 첫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15.8%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13.1%보다 많았고, 태아가 딸이어서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경우도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2.2%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2.0%보다 많았다.

〈표 6-13〉 첫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

(단위: %)

인공임신중절 이유	2000년	2003년	2006년		
			전국	동부	읍·면부
자녀불원	35.9	35.3	30.0	29.9	30.0
터울조절	20.5	16.1	16.4	16.5	15.8
임부의 건강상/자궁외 임신	9.5	9.4	10.0	10.0	10.1
태아이상	4.8	4.6	5.0	5.0	5.0
혼전임신	9.5	12.4	7.9	8.2	6.1
가정문제	1.5	1.4	1.3	1.2	1.8
경제적 곤란	6.6	7.5	13.4	13.1	15.8
태아가 딸이므로	1.8	1.7	2.0	2.0	2.2
취업중이어서	-	1.4	2.5	2.6	2.2
기타	9.9	10.2	11.5	11.6	10.8
계(수)	100.0(2,507)	100.0(2,662)	100.0(1,833)	100.0(1,555)	100.0(278)

주: 기타에는 쌍둥이어서, 입덧이 너무 심해, 임신중 약물복용, 혼외임신, 딸일 것 같아서, 아들이어서, 아들일 것 같아, 기형아 우려 등이 포함됨.

15~44세 유배우부인이 수용한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이유 역시 첫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즉, 자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부인은 1994년 58.4%, 1997년 49.7%, 2000년 48.4%, 2003년 45.4%이었고, 2006년 조사에서는 38.4%로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인공임신중절의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그 다음의 주요 이유로는 경제적 곤란이 13.4%로 높았는데, 이는 1994년 3.7%, 1997년 7.3%, 2000년 6.5%, 2003년 8.4%에서

현저하게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하게 된 이유로 터울조절 11.7%, 임부의 건강상 또는 자궁외 임신 10.4%, 혼전임신 5.4%, 태아이상 4.6%, 태아가 딸이어서 2.3%, 취업중이어서 2.1%, 가정문제 1.1%, 약물 및 식품복용으로 태아이상의 우려가 추측되거나 태아가 아들 또는 딸일 것으로 추측되어 등이 있었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에서 명시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은 15.0%에 불과하고 85.0%는 사회경제적 이유와 개인적 추측에 의한 경우로서 불법성이 매우 강하다고 하겠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한국사회에서 정책적으로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경제적 곤란에 의한 경우가 2006년 13.4%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에 의한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15.4%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13.0%보다 높았다.

둘째, 혼전임신으로 인하여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부인은 2006년 5.4%로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여전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미혼여성에 대한 충분한 성교육과 민간차원의 응급피임보급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태아가 딸이어서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을 한 부인은 2006년 2.2%로 낮은 수준에 있으나, 사회발전이 이루어지고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경우가 있음은 우려된다. 특히, 실정법상 태아 성감별을 방지하고 있고 이를 행하는 의사를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이 여전히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녀차별을 철폐하는 사회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이의 남아선호관의 불식을 위한 홍보교육, 산부인과 관계자의 지속,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4〉 최종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

(단위: %)

인공임신중절 이유	1994	1997	2000	2003	2006		
					전국	동부	읍·면부
자녀불원	58.4	49.7	48.4	48.4	38.4	38.5	37.6
더울조절	11.1	11.0	13.1	10.9	11.7	11.8	11.1
임부의 건강상/자궁외 임신	9.7	10.6	10.0	9.8	10.4	10.5	9.7
태아이상	5.1	3.6	4.7	4.1	4.6	4.6	5.0
혼전임신	3.3	4.0	5.1	6.9	5.4	5.5	4.7
가정문제	1.7	1.9	1.1	1.2	1.1	1.1	1.4
경제적 곤란	3.7	7.3	6.5	8.4	13.4	13.0	15.4
태아가 딸이므로	1.7	2.6	2.3	2.1	2.3	2.2	2.9
취업중이어서	-	-	-	1.5	2.1	2.2	1.8
기타	5.3	9.3	8.9	9.7	10.6	10.6	1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541)	(2,394)	(2,508)	(2,663)	(1,833)	(1,555)	(278)

주: 기타에는 약물 및 식품복용으로 태아이상의 우려가 있거나 태아가 아들 또는 딸일 것 같아서(추측) 등이 포함됨.

자료: <표 6-3>과 동일

제 5 절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 경험여부

전술한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태아가 딸이어서 첫 번째와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경우가 다소 있었음은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을 직접 경험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태아의 성감별후 여아인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시키는 행위를 직접 경험하였는지를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확인하였다. 즉, 첫 인공임신중절과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 태아 성감별을 실시했는지의 여부이다.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 태아 성감별을 실시한 부인은 2.5%로 2003년의 2.1%보다 0.4%포인트 증가하였고,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경험률은 2.6%로 2003의 2.5%보다 0.1%포인트 증가하였다. 부인의 거주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각각 2.5%, 2.9%로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2.5%, 2.6%과 유사하여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인연령별로는 15~24세 연령층 부인은 첫 인공임신중절이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 태아 성감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25~29세 부인의 경우에는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에만 1.4%가 성감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30~34세 부인의 경우에는 첫 인공임신중절과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 각각 1.5%가 태아 성감별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5~39세 연령층 부인은 각각 2.3%로 나타났다. 또한 40~44세 부인의 경우에는 각각 3.4%, 3.7%의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이를 부인의 교육수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 태아 성감별 비율은 중학교 학력수준의 부인이 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 이상 학력수준의 부인 3.0%, 그 외 대학 이상 학력수준의 부인 3.0%, 고등학교 학력수준의 부인은 2.3%이었다. 그렇지만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태아 성감별 비율은 학력수준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약 2.3~3.2% 수준이었다.

인공임신중절 수용당시의 아들과 딸의 규모에 의하여 태아 성감별을 한 비율을 살펴보면, 아들이 없는 경우에 태아 성감별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들을 갖지 못한 부인이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 8.3%,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 9.6%가 태아 성감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들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태아 성감별을 한 부인은 첫 번째와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이 모두 0.1%에 불과하였다.

또한 딸이 3명 이상 있는 경우에 태아 성감별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첫 인공임신중절은 16.7%,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은 21.1%가 태아 성감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딸이 2명 있는 경우에도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에는 13.1%,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에는 13.3%가 태아 성감별을 하였다. 그렇지만 딸이 한 명인 경우에 태아 성감별을 한 비율은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에는 2.1%,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에는 1.4%로 현저히 낮았다. 따라서 자녀 중에 딸이 한명일 경우에는 태아 성감별에 의한 아들출산을 주장하는 경우가 높지 않았으나, 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 성감별에 의해서라도 추가자녀는 딸이 아닌 아들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5〉 인공임신중절시 태아 성감별 여부

(단위: %)

특성	첫 중절시 태아 성감별		마지막 중절시 태아 성감별	
	(분석수)	실시율	(분석수)	실시율
2003년	(2,663)	2.1	(2,664)	2.5
2006년	(1,830)	2.5	(1,832)	2.6
지역				
동부	(1,553)	2.5	(1,554)	2.6
읍·면부	(277)	2.5	(278)	2.9
당시 연령				
15~24세	(19)	-	(19)	-
25~29세	(71)	1.4	(71)	-
30~34세	(341)	1.5	(341)	1.5
35~39세	(662)	2.3	(662)	2.3
40~44세	(738)	3.4	(738)	3.7
교육수준				
초교 이하	(23)	-	(23)	-
중학교	(125)	4.0	(125)	3.2
고등학교	(1,148)	2.3	(1,149)	2.8
대학 이상	(532)	3.0	(532)	2.3
당시 아들수				
0명	(459)	8.3	(450)	9.6
1명	(798)	0.1	(842)	0.1
2명	(190)	1.1	(251)	0.8
3명 이상	(1)	-	(2)	-
당시 딸수				
0명	(596)	0.3	(592)	0.2
1명	(664)	2.1	(702)	1.4
2명	(176)	13.1	(233)	13.3
3명 이상	(12)	16.7	(19)	21.1

자료: 1)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2) 본 조사결과

제 6 절 인공임신중절실태의 시사점

인공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상에 명시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불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소모되는 경향이 많음은 제3장(임신행태 및 임신종결형태 변화)과 제4장(출산행태 및 출생아·현존자녀수 변화)에서 논의된 바와 같다. 또한 본 장에서 인공임신중절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과거보다는 감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음은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높은 피임실천율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인들에게서 인공임신중절이 사라지지 않음은 임신과 출산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에 노출된 부인이 많고, 아울러 지나치게 안이한 피임실천을 하고 있음이 아닌가 사료된다.

다시 말하면, 피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이다. 즉, 피임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추가자녀를 원치 않거나 터울조절을 원하는 경우에는 피임을 실천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가능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피임방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시피임을 사용할 경우에도 피임사용법을 철저히 숙지하여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1988년 이후 정부 가족계획사업의 물량이 대폭 축소되고, 1996년에는 인구증가억제대책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며, 그리고 최근에는 저출산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피임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인공임신중절이 감소하지 않는 것은 이를 피임의 한 방법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저출산과 인공임신중절이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지 못함은 인공임신중절이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에서 알 수 있다.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일지라도 실제 처벌되지 않고 있는 사문화된 규정 하에서 인공임신중절을 억제하는 것은 출산으로 연결되기 보다는 비의료적인 행위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자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모성건강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행위일 것이다. 이는 피임이 출산을 저하시키기 위해서만 필요하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피임은 원하는 자녀규모를 원하는 시기에 갖기 위한 것이며,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여 부인의 건강을 도모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원치 않는 임신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효과적인 피임보급과 피임방법에 대한 정확한 사용방법의 교육이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피임보급이 있어야 한다. 즉, 안전한 피임방법으로의 전환을 유도함과 동시에 안전한 피임방법 사용자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자궁내장치의 교체시기 등에 대한 홍보계몽이 적극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성건강의 유지와 인구자질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태아도 생명체라는 인명중시의 가치관에 대한 홍보계몽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성 평등적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마스크를 통한 국민계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성 차별적 사회제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의료계의 자정노력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단체가 상호협조하여 감시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 7 장 모자보건실태

본 장에서는 2004년 1월 이후 출생한 현존자녀를 가진 부인을 대상으로 현존 자녀 중 최종아의 산전·산후 관리, 분만실태, 수유 등에 대하여 제시하므로, 모체와 출생아의 건강을 위한 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4년 1월 이후 출생한 최종아는 전체 955명이며, 이 중 2004년 40.0%, 2005년 39.2%, 2006년 20.9%를 차지하고 있다. 최종아에 대한 출생분포를 거주지역, 출생시 모의 연령, 최종아의 출생순위, 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제시하며 <표 7-1>과 같다.

<표 7-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의 출생분포(2004~2006년)
(단위: %, 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계(수)
전체	40.0	39.2	20.9	100.0(2,075)
지역				
동부	41.1	37.8	21.0	100.0(1,745)
읍·면부	33.6	46.4	20.0	100.0(330)
출생시 모의 연령				
20세 이하	37.4	47.1	15.5	100.0(155)
25~29세	42.5	37.0	20.5	100.0(697)
30~34세	40.3	39.8	19.9	100.0(939)
35세 이상	34.8	37.6	27.7	100.0(282)
최종아의 출생순위				
첫째 아	36.4	45.3	18.2	100.0(653)
둘째 아	43.8	35.2	21.1	100.0(1,024)
셋째 아 이상	35.9	39.4	24.6	100.0(398)
모의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4.1	25.6	10.3	100.0(39)
고등학교	38.2	40.2	21.6	100.0(966)
대학이상	40.7	38.7	20.5	100.0(1,071)

제 1 절 산전 및 산후관리 실태

1. 산전관리실태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의 참가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출산연령이 연장되고 이로 인하여 모와 출생아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소자녀관이 정착됨으로 태아기부터 건강한 아기를 출생하고자 하는 관심이 높아져 산전진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따라서 거의 100%에 달하는 산전진찰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태아기부터 아기의 건강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에 태아와 임산부에게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는 자연유산이나 사산 등 비정상적인 임신종결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숙아 또는 장애아의 출생으로 인하여 가족은 물론 개인에게도 평생 동안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하며, 많은 사회비용의 지출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출산과정의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태아의 장애발생을 예방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전관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전관리의 주요 내용에는 임신의 조기진단과 임산부의 뇨검사,^{주61)} 혈액검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관리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03).

또한 보건복지부는 현재 산전진찰에 소요되는 임신부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태아 때부터 노년까지 국가가 건강관리를 해주는 '국가비전 2030 건강 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내년 시행될 전망이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산전 진찰과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초음파 검사, 기형아 검사와 같은 산전에 꼭 받아야 하는 검사 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며, 임신부의 건강 상태에 따라 검사 종류나 횟수가 다른 것을 감안해 무료 검진 범위와 지원 금액을 정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2006).

본 분석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의 기간동안 자녀를 출산한 15~49

주61) 임산부의 뇨검사를 통하여 단백질 대사이상과 당뇨 징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혈액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혈청매독정성 및 간염검사 등을 수행하게 됨.

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최종출생아의 임신기간 중 산전관리를 위하여 보건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은 경험 유무로 산전수진율을 구하였으며, 출생시까지 총 몇 회의 산전수진을 받았는지 등을 파악하였다.

산전수진율의 전국 평균은 99.9%로 조사대상 부인의 특성 즉,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과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의 부인은 산전수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산전수진율은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가 처음 실시된 1985년 82.4%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것이며, 1994년 조사이후에는 전국적으로 9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도 조사결과에서는 99.9%로 거의 모든 산모가 산전수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부에 거주하는 부인의 산전수진율이 100.0%인 것에 비하여 읍·면부에 거주하는 부인의 산전수진율은 99.3%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산전수진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7-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산전수진율(1985~2006년)

(단위: %)

구분	1985년 ¹⁾	1988년 ²⁾	1991년 ³⁾	1994년 ⁴⁾	1997년 ⁵⁾	2000년 ⁶⁾	2003년 ⁷⁾	2006년 ⁸⁾
전체	82.4	88.5	94.4	99.2	99.6	100.0	99.8	99.9
동부	86.7	92.1	95.3	99.5	99.6	100.0	99.9	100.0
읍·면부	70.9	78.1	90.5	97.6	99.3	100.0	99.6	99.3

주: 1985년 자료는 1980~'85년, 1988년 자료는 1983~'88년, 1991년 자료는 1987~'91년, 1994년 자료는 1990~'94년, 1997년 자료는 1995~'97년, 2000년 자료는 1998~2000년, 2003년 자료는 2001~'03년의 조사시점까지의 최종출생아를 분석대상으로 함.

- 자료: 1) 문현상 외,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2) 문현상 외,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
 3)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4)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5)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6)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7)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8) 본 조사결과

2004~2006년 기간동안 출생한 자녀를 가진 부인이 산전관리를 위해 초진을

받은 평균시기는 임신 후 5.32주였으며, 특히 임신 5~8주 시기에 초진을 받은 부인이 전체 조사대상의 49.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임신 4주 이전이 44.1%를 차지하여, 전체 부인의 93.9%가 임신 후 8주 이내에 초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태아가 모체에 안전하게 착상하는 시기인 16주가 넘어선 17주 이후에 초진을 받은 부인이 전체의 0.7%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7-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임신기간 중 초진시기

(단위: %, 명, 주)

구분	최종출생아 임신기간 중 초진시기					계(수)	평균 초진시기
	4주 이전	5~8주	9~12주	13~16주	17주 이후		
전체	44.1	49.8	4.7	0.6	0.7	100.0(952)	5.32
지역							
동부	42.8	51.4	4.7	0.5	0.6	100.0(811)	5.32
읍·면부	51.8	40.4	5.0	1.4	1.4	100.0(141)	5.4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1.5	30.8	7.7	-	-	100.0(13)	4.66
고등학교	46.2	44.5	7.0	1.0	1.3	100.0(398)	5.55
대학 이상	42.2	54.1	3.0	0.4	0.4	100.0(540)	5.18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46.4	41.1	8.9	-	3.6	100.0(56)	5.92
25~29세	47.2	46.6	5.5	0.7	-	100.0(307)	5.13
30~34세	42.4	52.6	3.4	0.5	1.1	100.0(439)	5.34
35세 이상	41.1	51.0	5.3	2.0	0.7	100.0(151)	5.51
최종아 출생순위							
첫째 아	42.7	52.5	3.7	0.4	0.7	100.0(457)	5.26
둘째 아	45.7	49.0	4.3	0.5	0.5	100.0(396)	5.21
셋째 아 이상	44.4	40.4	11.1	2.0	2.0	100.0(99)	6.15

부인의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평균 초진시기는 5.32주, 읍·면지역 거주부인은 5.49주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약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주 이전에 초진을 한 부인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51.8%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42.8%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진시기가 8주 이

내인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94.2%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92.2%에 비해 약간 더 많았다.

부인의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 부인의 초진시기가 가장 빨라 평균 초진시기가 4.66주이었고, 대학 이상 학력 부인 5.18주, 고등학교 학력부인 5.55주 이었다. 출산시 부인연령에 따른 평균 초진시기는 25~29세 부인이 가장 빨라 5.13주 이었고, 다음은 30~34세 부인 5.34주, 35세 이상 부인 5.51주, 24세 이하 부인 5.92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4세 이하 부인의 경우에는 임신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낮아 빨리 임신의 징후를 느끼지 못해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 35세 이상 부인의 경우에는 두 번째 이상의 임신이기 때문에 일찍 초진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최종아의 출생순위에 따른 평균 초진시기는 둘째 아인 경우 가장 빨라 5.21주 이었으며, 다음은 첫째 아 5.26주, 셋째 아 이상 6.15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모체가 연령이 높아졌음에도 초진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체와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출산순위가 높아도 초진시기가 빨라야 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004년 최종출생아의 임신기간 동안 보건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전검진을 받은 횟수를 <표 7-4>에 제시하였다. 전체 평균 산전검진 횟수는 13.24회였으며, 임신기간 중 총 11회에서 15회 산전검진을 받은 경우는 58.4%로 가장 많았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따르면 임신기간 중 최소 7회 이상의 산전검진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7회 미만 산전검진을 받은 경우는 3.7%로 나타나 2003년의 5.9%에 비하여 낮아졌으나, 임산부는 물론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모든 임산부가 정기적인 산전검진을 최소한 7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이 요구된다.

임신기간 중 수진횟수를 부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에 거주하는 부인의 경우 13.32회인 반면, 읍·면부에 거주하는 여성은 12.78회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에 따라서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소지한 부인은 13.92회, 고등학교 학력을 소지한 부인은 12.88회,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부인은 13.49회로 나타났다. 출산연령에 따

라서는 25~29세 부인이 13.47회로 가장 많았고, 15~24세 이상 부인이 12.56회로 가장 적은 산전수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종출생아의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산전수진 횟수가 감소하여 첫째 아가 13.63회인 것과 비교하여, 둘째 아는 13.15회, 그리고 셋째 아 이상은 11.78회로 나타났다.

〈표 7-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임신기간중 산전수진횟수

(단위: %, 명, 회)

구분	수진횟수					계(수)	평균 수진횟수
	1~5회	6~10회	11~15회	16~20회	21회 이상		
전체	1.4	22.8	58.4	14.7	2.7	100.0(948)	13.24
지역							
동부	1.2	21.8	59.9	14.0	3.0	100.0(806)	13.32
읍·면부	2.1	28.2	50.0	18.3	1.4	100.0(142)	12.7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	14.3	57.1	28.6	-	100.0(14)	13.92
고등학교	1.8	27.8	53.8	14.4	2.3	100.0(396)	12.88
대학 이상	1.1	19.4	62.0	14.5	3.0	100.0(537)	13.49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	25.9	64.8	7.4	1.9	100.0(54)	12.56
25~29세	0.3	22.9	56.9	16.7	3.3	100.0(306)	13.47
30~34세	1.4	19.6	61.9	14.4	2.7	100.0(438)	13.32
35세 이상	4.0	31.3	49.3	14.0	1.3	100.0(150)	12.78
최종아 출생순위							
첫째 아	0.4	18.4	62.6	15.8	2.8	100.0(457)	13.63
둘째 아	1.3	23.7	59.3	13.2	2.5	100.0(393)	13.15
셋째 아 이상	6.1	40.4	35.4	16.2	2.0	100.0(99)	11.78

2. 산후관리실태

산후관리는 임신과 분만으로 인하여 약해진 체력과 허약해진 심신을 휴식과 올바른 섭생을 통하여 본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간호와 교육을 통해 지원을 하는 것이다. 특히 해부학적으로 생식기가 비임신상태로 복구되며 자궁을 비롯한 복부 모든 기관과 조직 등을 본래 상태로 원상회복시키고, 아기 역시 이 세상 첫발을 안전하고 기분 좋게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산후 3~4주는 생식기인 자궁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기간으로 생식기의 급격한 변화속에 복부 장기와 뼈마디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간으로 이 기간동안 자궁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 하혈과 감염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산후 지원이 최소한 4주 동안의 지원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산후검진을 받은 비율은 1988년 52.3%, 1997년 81.0%, 그리고 2000년에는 85.0%, 2003년 90.9%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91.9%로 나타났다. 산후검진을 받은 비율은 동부에 거주하는 부인이 91.6%로 읍·면부에 거주하는 부인 93.2%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산후수진율이 높았다. 즉,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소지한 부인은 87.5%, 고등학교 학력을 소지한 부인 90.0%,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부인은 93.5%로 나타났다.

〈표 7-5〉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 출산 후 산후수진율

(단위: %)

구 분	1988년 ¹⁾	1997년 ²⁾	2000년 ³⁾	2003년 ⁴⁾	2006년 ⁵⁾			
					전체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이상
전체	52.3	81.0	85.0	90.9	91.9	93.5	91.3	86.9
지역								
동부	57.5	81.7	85.6	91.7	91.6	93.3	90.6	87.3
읍·면부	37.3	77.8	78.4	87.4	93.2	95.3	95.1	81.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0.8	74.3	79.5	85.4	87.5	77.8	100.0	100.0
고등학교	64.0	80.0	82.3	89.3	90.0	92.6	89.4	85.7
대학 이상	75.3	84.2	89.6	93.4	93.5	95.2	92.8	85.7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48.7	78.7	77.0	93.7	87.5	90.7	76.9	-
25~29세	54.1	81.6	86.8	89.8	90.6	92.3	87.9	80.0
30~34세	52.4	81.1	85.9	92.1	93.4	95.9	92.0	89.4
35세 이상	-	-	-	88.9	92.2	95.0	95.8	83.3

자료: 1) 문현상 외,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2)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3)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4)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5) 본 조사결과

한편, 부인의 연령에 따라서는 산후수진율이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15~24세 부인의 산후수진율이 87.5%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가장 낮게 나타나 우려된다. 특히 이 연령층은 젊은 연령층으로 다시 임신할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으로 특히 산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25~29세 부인의 산후수진율은 90.6%, 30~34세 부인의 산후수진율은 93.4%로 나타났다. 또한 35세 이상 고령 임신부의 산후수진율은 92.2% 이었으며, 특히 동 연령층 부인의 셋째 아 이상 출산인 경우에는 산후수진율이 83.3%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전수진율과 같은 수준으로 산후수진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분만실태

1. 분만장소

최근 적은 수의 자녀를 출산함으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임산부가 신중하게 선택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분만장소는 대부분의 산모의 인식이 의료기관에서 분만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이는 2006년의 조사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2004년 이후 출생한 출생아의 경우 100%가 시설분만이었으며, 그중 0.1%만이 조산소에서 분만하였고 나머지 99.9%는 의료기관에서 분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의 분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며, 분만 중 예기치 않은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다.

최종출생아의 시설분만율은 1997년 이후 99%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1997년에는 99.7%, 2000년에 99.9%, 2003년 99.3%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99.9%로 나타났다. 2006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설분만의 장소로는 병원이 51.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원 34.4%, 종합병원 14.2% 등의 순이었으며, 조산소에서 분만한 경우는 0.1%로 거의 없었다. 종합병원에서의 분만은 1997년 39.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에는 31.5%, 이어서 2003년에는 22.4%, 2006년 14.2%까지 낮아졌다. 반면, 병원분만의 경우 1994년 21.3%에서 1997년 28.2%, 2000년 43.1%, 2003년 48.6% 2006년 51.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병원에서의 분만이 증가하는 이유는 종합병원과 분만시설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수중분만, 그네분만 등 다양한 분만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병원이 증가하면서 이용이 번거로운 종합병원에서의 분만을 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7-6〉 15~49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시설분만을 및 분만장소

(단위: %, 명)

구 분	1985년	1988년	1991년	1994년	1997년	2000년	2003년	2006년
비시설분만	24.8	12.3	1.9	1.2	0.3	0.1	0.7	-
시설분만	75.2	87.8	98.1	98.8	99.7	99.9	99.3	99.9
종합병원	17.8	23.6	-	31.8	39.0	31.5	22.4	14.2
병원	45.8 ¹⁾	53.4 ¹⁾	91.0 ²⁾	21.3	28.2	43.1	48.6	51.3
의원	-	-	-	43.1	31.1	24.6	28.3	34.4
조산소	9.1	7.4	5.1	2.0	1.1	0.3	-	0.1
보건소	2.5	3.4	2.0	0.7	0.3	0.4	-	-
계(수)	100.0 (3,451)	100.0 (2,843)	100.0 (2,151)	100.0 (1,932)	100.0 (1,163)	100.0 (1,338)	100.0 (1,106)	100.0 (953)

주: 1) 의원 포함; 2) 종합병원, 의원 포함.

자료: <표 7-2>와 동일

부인의 특성별 분만시설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거주지역 별로는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이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에 비하여 종합병원(14.8%)과 병원(50.3%)에서 분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이 의원에서 분만하는 경우가 읍·면부지역에 비하여 높았다(동부 34.8%, 읍·면부 31.7%) 이는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에 비하여 병원 및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7-7〉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 분만장소

(단위: %, 명)

구분	시설분만			기타 ¹⁾	계(수)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전체	14.3	51.3	34.3	0.1	100.0(953)
지역					
동부	14.8	50.3	34.8	0.1	100.0(811)
읍·면부	11.3	57.0	31.7	-	100.0(14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4.3	35.7	50.0	-	100.0(14)
고등학교	10.8	49.2	39.9	-	100.0(398)
대학 이상	16.7	53.3	29.8	0.2	100.0(540)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10.7	62.5	26.8	-	100.0(56)
25~29세	9.4	53.9	36.7	-	100.0(308)
30~34세	13.7	50.7	35.4	0.2	100.0(438)
35세 이상	27.3	44.0	28.7	-	100.0(150)
최종아 출생순위					
첫째 아	12.2	55.0	32.8	-	100.0(458)
둘째 아	15.9	49.4	34.4	0.3	100.0(395)
셋째 아 이상	17.0	42.0	41.0	-	100.0(100)

주: 1) 조산소, 보건소 등 포함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경우 의원(50.0%)에서 분만한 경우가 병원(35.7%)이나 종합병원(12.4.3%)을 이용한 경우보다 높았으며,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는 병원에서 분만한 경우가 53.3%로 가장 높았고, 의원(29.8%)에서 분만한 경우도 종합병원(16.7%)에서 분만한 경우보다 높았다. 한편, 연령에 따라서는 35세 이상 연령층 부인의 경우 종합병원에서 분만하는 비율(27.3%)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았는데, 이는 고령임신으로 야기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분만을 위하여 종합병원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아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첫째아의 경우에는 병원에서의 분만이 55.0%, 둘째 아는 49.4%, 셋째 아 이상은 42.0%로 출생순위가 높아질수록 낮았다. 의원에서의 분만은 첫째 아는 32.8%, 둘째 아 34.4%, 셋째 아 이상은 41.0%로 출

생순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다. 종합병원에서의 분만은 첫째 아 12.2%, 둘째 아 15.9%, 셋째 아 이상 17.0%로 출생순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다.

2. 분만형태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제왕절개율은 37.7%로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하는 미국의 27.6%보다도 높고, 가장 낮은 스웨덴의 15.4%에 비하여는 약 2배가 넘는 수치이다(KBS, 2006). 또한 2005년 상반기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모의 10명 중 4명꼴로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5).

우리나라에서의 제왕절개율이 특히 높은 이유로는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만이 아닌 다른 요인이 개입되어 그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법적, 사회적, 재정적 요인이 포함되는데, 의료인의 ‘방어적 의료’(자연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함), 진료비 및 재정, 의사의 편리성, 의료인 및 산모의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의 변화, 신체적 변화 등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관 및 행태를 예방하여 OECD의 권고수준인 5~15% 선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표 7-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제왕절개분만 비율

(단위: %)

구분	1982년 ¹⁾	1988년 ²⁾	1991년 ²⁾	1994년 ²⁾	1997년 ²⁾	2000년 ²⁾	2003년 ²⁾	2006년
전체	4.4	11.9	17.3	31.5	35.9	37.7	39.2	35.0
동부	5.8	13.4	17.9	31.9	36.1	36.9	39.1	35.1
읍·면부	2.1	7.7	14.8	29.2	34.8	46.8	39.8	34.5

자료: 1) 문현상 외, 『1982년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2) <표 7-2>와 동일

2006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최종출생아의 제왕절개율은 35.0%로 나타나, 1997년 35.9%, 2000년의 37.7%, 2003년 39.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03년에 비해 4.2%포인트 감소하였다. 거주지역별로 제왕절개율을 비교해보면,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35.1%,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34.5%로 동부지

역에 거주하는 부인의 제왕절개 분만이 읍·면부지역 거주하는 부인에 비하여 약간 높았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 출산시 분만형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자연분만이 65.0%, 제왕절개 35.0%인 반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자연분만이 65.5%, 제왕절개가 34.5%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자연분만율이 약간 높았다.

부인의 교육수준별로는 자연분만율은 대학이상의 학력소지부인이 가장 높아 67.3% 이었고, 제왕절개율은 고등학교 학력소지 부인이 가장 높아 37.8% 이었다. 출산시 부인연령에 따라서는 자연분만율은 젊은 연령층일수록 높았고, 제왕절개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았다. 이는 고연령층일수록 분만시 위험이 높아 그 위험을 미리 제거하는 차원에서 제왕절개 분만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종아의 출생순위별로는 자연분만은 첫째 아인 경우에 가장 높아 68.6%이었고, 제왕절개율은 둘째 아인 경우에 가장 높아 38.9% 이었다.

〈표 7-9〉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 출산시 분만형태
(단위: %, 명)

구 분	자연분만 ¹⁾	제왕절개	계(수)
전체	65.0	35.0	100.0(953)
지역			
동부	64.9	35.1	100.0(811)
읍·면부	65.5	34.5	100.0(14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3.6	36.4	100.0(14)
고등학교	62.2	37.8	100.0(399)
대학 이상	67.3	32.7	100.0(541)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76.8	23.2	100.0(56)
25~29세	70.5	29.5	100.0(308)
30~34세	64.9	35.1	100.0(439)
35세 이상	49.0	51.0	100.0(151)
최종아 출생순위			
첫째 아	68.6	31.4	100.0(458)
둘째 아	61.1	38.9	100.0(396)
셋째 아 이상	62.6	37.4	100.0(99)

주: 1) 유도분만 포함

최종출생아의 출산시 제왕절개분만을 본인이 선택한 경우는 18.4%에 불과하였고, 가족이 권유한 경우(3.0%)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의사의 권유(78.6%)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본인의 의사에 의한 제왕절개분만은 동부에 거주하는 부인이 20.2%로 읍·면부에 거주하는 부인의 경우인 8.0%보다 다소 높았다. 반면 의사의 권유로 제왕절개를 선택한 경우는 동부에 거주하는 부인이 76.6%인 반면 읍·면부에 거주하는 부인은 90.0%로, 읍·면부 의료진의 제왕절개 권유가 동부에 비하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과거의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본인의 의사에 의한 제왕절개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의사의 권유에 의한 제왕절개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7-10〉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출산시 제왕절개분만 권유자

(단위: %, 명)

권유자	1997년 ¹⁾	2000년 ²⁾	2003년 ³⁾	2006년 ⁴⁾		
				전체	동부	읍·면부
본인의사	21.9	20.7	20.6	18.4	20.2	8.0
가족의 권유	-	4.1	2.4	3.0	3.2	2.0
의사의 권유	78.1	75.0	77.0	78.6	76.6	90.0
기타	-	0.2	-	-	-	-
계(수)	100.0(417)	100.0(508)	100.0(431)	100.0(332)	100.0(282)	100.0(50)

자료: 1)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2)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3)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4) 본 조사결과

제왕절개 분만의 주요 이유는 첫 출산이 제왕절개이기 때문이 3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태아이상 26.0%이었다. 이 밖에 산모의 이상으로 인한 경우가 16.0%, 산모의 건강상·노산 때문이 11.8%, 양수조기파열 6.0%, 자연분만에 대한 두려움 5.7% 등 심리적 요인으로 제왕절개를 선택한 경우는 5.7%에 불과하였다.

〈표 7-1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출산시 제왕절개분만 이유

(단위: %, 명)

제왕절개 이유	1997년 ¹⁾	2000년 ²⁾	2003년 ³⁾	2006년 ⁴⁾		
				전체	동부	읍·면부
산모이상	24.5	23.1	23.8	16.0	16.7	12.2
태아이상	13.1	20.2	19.0	26.0	25.5	28.6
양수조기파열	6.8	5.5	5.9	6.0	5.7	8.2
자연분만에 대한 두려움	3.4	7.3	3.6	5.7	6.4	2.0
첫 출산이 제왕절개	23.4	25.1	30.2	30.5	30.9	28.6
산모의 건강상·노산	16.7	10.8	8.9	11.8	11.0	16.3
기타	12.1	8.0	8.6	3.9	3.9	4.1
계(수)	100.0(417)	100.0(508)	100.0(431)	100.0(332)	100.0(282)	100.0(50)

주: 1) 가족, 기타 포함.

자료: <표 7-10>과 동일

한편 제왕절개분만을 권유한 사람에 따라서 제왕절개분만을 결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 제왕절개를 선택한 경우 자연분만에 대한 두려움 때문과 첫 출산이 제왕절개였기 때문이 각각 27.9%로 가장 높았고, 산모의 이상 때문과 산모의 건강상 때문이 각각 16.4%, 양수조기파열 때문이 6.6% 등의 순이었다. 가족이 제왕절개를 권유한 이유로는 산모의 이상과 태아이상, 자연분만에 대한 두려움, 첫 출산이 제왕절개 등의 이유가 22.2%로 동일하였다.

마지막으로 의사의 권유로 제왕절개가 이루어진 경우는 첫 출산이 제왕절개인 경우가 30.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태아의 이상 25.8%, 산모의 이상 16.1%, 산모의 건강상 12.1% 등의 순이었다.

본인이나 가족의 권유로 자연분만에 대한 두려움이 27.9%, 22.2%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산모와 그 가족에게 출산이 신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사의 권유 이유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첫 출산이 제왕절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첫 출산이 제왕절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둘째 아 출산시 자연분만이 가능하며, 위험이 적다라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산모나 그 가족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표 7-1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제왕절개분만 권유자별 권유이유

구 분	(단위: %, 명)			
	본인	가족	의사	전체
산모이상	16.4	22.2	15.8	16.1
산모의 건강상	16.4	-	11.5	12.1
태아이상	4.9	22.2	30.8	25.8
양수조기파열	6.6	-	6.2	6.1
자연분만에 대한 두려움	27.9	22.2	-	5.8
첫 출산이 제왕절개	27.9	22.2	31.5	30.6
기타	-	11.1	4.2	3.6
계(수)	100.0(61)	100.0(9)	100.0(260)	100.0(330)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에 대한 분만장소별 제왕절개율을 살펴보면, 제왕절개율이 35.1%인 것과 비교하여 종합병원과 의원에서 분만한 경우에 제왕절개율이 각각 45.2%와 33.6%로 높았다. 반면 병원에서 분만한 경우, 제왕절개율은 33.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종합병원 분만시 제왕절개율이 45.2%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환자가 많아 손쉽게 분만을 유도하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여 우려된다.

〈표 7-1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출산시 분만장소별 분만형태

구 분	(단위: %, 명)		
	자연분만	제왕절개	계(수)
전체	64.9	35.1	100.0(952)
종합병원	54.8	45.2	100.0(135)
병원	66.7	33.3	100.0(489)
의원	66.4	33.6	100.0(327)
기타	100.0	-	100.0(1)

3. 출생시 임신 주수 및 조산 여부

출생아의 임신 주수(週數)는 정상아를 분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산모의 신체상 질병이나, 그밖에 스트레스, 피로, 영양결핍 등이

원인이 되어 아기를 정상분만하지 못하고 조기에 출산을 하게 된다. 조산아의 경우에는 체중미달, 완전하지 못한 발육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출생하게 된다. 따라서 산전진찰은 조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아기를 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의 출생시 임신 주수는 정상분만으로 보는 37주 이상이 95.2%이었고, 32주 이하가 0.8%, 33~36주 이하가 4.0% 이었다. 따라서 전체 출생아 중 4.8%는 조기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남아와 여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정상출생은 남아가 95.5%로 여아의 95.2%보다 약간 높았고, 조기출생은 여아가 5.2%로 남아의 4.5%보다 높았다.

〈표 7-1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출생시 임신 주수

(단위: %, 명, 주수)

구 분	남아	여아	전체
~32주	0.8	0.9	0.8
33~36주	3.7	4.3	4.0
37주~	95.5	94.8	95.2
계(수)	100.0(509)	100.0(443)	100.0(952)
출생시 평균 주수	39.21	39.17	39.19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의 조산여부는 거주지역별로는 동지역 거주부인은 5.2%, 읍·면지역 거주부인은 2.8%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약 2배 정도 조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조산비율이 높게 나타나 중학교 이하 학력을 소지한 부인이 14.3%로 조산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학 이상 학력소지 부인이 3.7%로 낮았다. 출산시 부인연령에 따라서는 35세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8.0%이었으며, 30~34세 연령층이 가장 낮아 2.7%이었다. 최종아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둘째 아가 가장 높아 5.8%이었고, 셋째 아 이상이 5.1%, 첫째 아가 3.9% 이었다.

〈표 7-15〉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의 조산 여부

(단위: %, 명)

구 분	조산	만기출산	계(수)
전체	4.8	95.2	100.0(952)
지역			
동부	5.2	94.8	100.0(810)
읍·면부	2.8	97.2	100.0(14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4.3	85.7	100.0(14)
고등학교	6.0	94.0	100.0(399)
대학 이상	3.7	96.3	100.0(539)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5.5	94.5	100.0(55)
25~29세	6.2	93.8	100.0(308)
30~34세	2.7	97.3	100.0(439)
35세 이상	8.0	92.0	100.0(150)
최종아 출생순위			
첫째 아	3.9	96.1	100.0(457)
둘째 아	5.8	94.2	100.0(396)
셋째 아 이상	5.1	94.9	100.0(99)

주: 1) 조산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임.

4. 신생아 체중

신생아의 체중은 태내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였는지 여부를 반영하는 것으로, 2,500g 미만을 저체중아라고 한다. 저체중아는 엄마가 임신 전에 너무 야위거나 임신 중 체중 증가가 7Kg 미만일 때 태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저체중아로 태어난 아기는 순환기 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에 걸릴 우려가 있다.

2004년 1월 이후부터 2006년까지 8월까지 15~49세 유배우부인에게서 태어난 최종출생아의 출생시 평균체중은 3,253.4g이었는데, 남아의 평균체중이 3,315.0g으로 여아의 평균체중 3,182.6g에 비해 다소 높았다. 최종출생아의 출생시 체중이 1,000~1,500g 미만의 극저체중아 비율은 0.1%이었는데, 여아가 0.2%로 남아의 0.0%에 비해 높았다. 1,500~2,000g 미만인 비율은 전체 출생아의 0.8%였는데, 남아가 0.8%로 여아인 경우 0.9% 비해 다소 낮았다.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경우를 저체중, 2,500~4,000g 미만을 정상체중, 그리고 4,000g 이상인 경우를 과체중으로 분류할 경우, 최종출생아의 정상체중 비율은 91.3%이었으며, 여아가 92.8%로 남아의 90.0%보다 높았다. 또한 최종출생아 중 저체중인 비율은 3.2%이었으며, 남아는 3.2%, 여아는 3.4%로 성별차이가 다소 있었다. 출생시 4,000g 이상인 과체중의 비율은 5.5%이었고, 남아는 6.9%로 여아의 3.8%보다 현저히 높았다.

〈표 7-16〉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출생시 체중

(단위: %, 명)

구 분	남아	여아	전체
1,000~1,500g 미만	-	0.2	0.1
1,501~2,000g 미만	0.8	0.9	0.8
2,000~2,500g 미만	2.4	2.3	2.3
2,500~4,000g 미만	90.0	92.8	91.3
4,000g 이상	6.9	3.8	5.5
계(수)	100.0(509)	100.0(444)	100.0(953)
출생시 평균체중	3,315.0	3,182.6	3,253.4

주: 저체중은 2,500g 미만, 정상체중은 2,500~4,000g 미만, 과체중은 4,000g 이상임.

15~44세 유배우 부인의 최종아 출생아의 체중은 저체중아가 전체의 3.2%이었고, 정상체중아는 91.3%, 과체중아는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조사결과에 비하여 저체중아는 감소하였고, 정상체중아와 과체중아는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주62)} 이러한 결과는 산모의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의 출생 시 체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부인의 거주지역별로는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의 최종출생아의 저체중 비율은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의 최종출생아는 3.5%,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의 최종출생아는 3.1% 이었고, 과체중아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최종출생아가 5.9%,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최종출생아는 2.8% 이었다.

주62)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저체중아 4.1%, 정상체중아 90.6%, 과체중아 5.3% 이었음.

부인의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저체중아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중학교 이하 7.1%, 고등학교 3.5%, 대학 이상 2.8%), 정상체중아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중학교 이하 85.8%, 고등학교 89.7%, 대학 이상 92.8%). 한편 과체중아는 저체중아와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중학교 이하 7.1%, 고등학교 6.8%, 대학 이상 4.4%).

출생시 부인연령별로는 저체중아는 25~29세 연령층 부인이 가장 높아 4.9% 이었고, 정상체중아는 30~34세 연령층 부인이 92.7%로 가장 높았으며, 과체중아는 35세 이상 부인이 가장 높은 7.9% 이었다.

〈표 7-17〉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 체중

(단위: %, 명)

구 분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계(수)
전체	3.2	91.3	5.5	100.0(953)
지역				
동부	3.1	91.0	5.9	100.0(810)
읍·면부	3.5	93.7	2.8	100.0(14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1	85.8	7.1	100.0(14)
고등학교	3.5	89.7	6.8	100.0(399)
대학 이상	2.8	92.8	4.4	100.0(540)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1.8	90.9	7.3	100.0(55)
25~29세	4.9	90.9	4.2	100.0(309)
30~34세	1.8	92.7	5.5	100.0(439)
35세 이상	4.6	87.4	7.9	100.0(151)
최종아 출생순위				
첫째 아	2.6	92.1	5.3	100.0(456)
둘째 아	3.5	90.9	5.5	100.0(397)
셋째 아 이상	4.0	89.9	6.1	100.0(99)

최종출생아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첫째 아와 둘째 아의 경우 정상체중으로 출생한 경우가 각각 92.1%와 90.9%인 반면, 셋째 아 이상인 경우에는 정상체중으로 출생한 경우가 89.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출생순위에 따른 저체중아의

비율은 첫째 아 2.6%, 둘째 아 3.5%, 그리고 셋째 아 이상의 경우 4.0%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과체중 아의 비율은 첫째 아가 5.3%, 그리고 둘째 아가 5.5%인데 비하여 셋째 아 이상의 경우에는 6.1%로 첫째 아와 둘째 아에 비교하여 높았다.

한편 저체중아는 전체 출생아 중 3.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저체중의 이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저체중의 이유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조기분만으로 36.7%이었고, 다음은 산모의 건강상의 이유가 36.6%이었으며, 그리고 이유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5.5%이었다. 부인의 특성별 저체중아 분만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표 7-1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저체중 이유¹⁾

(단위: %)

구 분	이유 없음	산모의 약물복용 때문에	조기 분만	산모의 건강상 이유로	기타 ²⁾
전체	15.5	2.9	36.7	36.6	14.1
지역					
동부	16.1	3.1	34.4	38.7	12.5
읍·면부	-	-	66.7	-	33.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	-	-	-	-
고등학교	17.6	-	47.1	29.4	5.9
대학 이상	11.8	5.9	29.4	41.2	23.5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	-	100.0	-	-
25~29세	25.0	-	31.3	43.8	5.9
30~34세	10.0	-	40.0	30.0	30.0
35세 이상	-	14.3	42.9	28.6	14.3
최종아 출생순위					
첫째 아	14.3	-	21.4	50.0	21.4
둘째 아	18.8	-	56.3	18.8	12.5
셋째 아 이상	-	25.0	25.0	50.0	-

주: 1) 중복응답 결과임.

2) 기타는 쌍둥이라서, 태줄이 감겨 영양공급이 안돼 등이었으며, ‘산모의 음주 습관 때문에’, ‘산모의 흡연습관 때문에’는 항목으로 제시하였으나 응답한 사람이 없었음.

지역에 따라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건강상의 이유가 38.7%,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조기분만이 66.7%로 가장 많았다.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소지한 부인의 경우는 저체중아 출생이 없었고, 고등학교 학력을 소지한 부인은 조기분만이 47.1%, 대학 이상 학력을 소지한 부인은 산모의 건강상 이유가 41.2%로 가장 많았다. 출산시 부인연령에 따라서는 15~24세 부인은 조기분만이 100% 이었고, 25~29세 부인은 산모의 건강상 이유가 43.8%, 30~34세 부인과 35세 이상은 조기분만 각각 40.0%, 42.9%로 가장 많았다.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출생순위가 첫째 아와 셋째 아 이상인 경우는 산모의 건강상 이유가 각각 50.0%, 둘째 아인 경우는 조기분만이 56.3%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치료포기 및 치료지연으로 발생하는 장애와 사망을 예방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미숙아의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중 일부금액을 신청할 경우 지원하고 있다.^{주63)}

15~49세 유배우 부인이 2004년 1월~2006년 8월 중 출산경험이 있는 부인 중 미숙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인지율은 25.8%에 불과하였으며, 미숙아를 출생하여 지원을 받은 경험률은 2.5%로 매우 저조하였다. 그러나 이의 결과는 미숙아를 출생한 부인 중 지원받은 경험이 아닌 2004년 1월~2006년 8월 중 출생경험이 있는 부인 중 미숙아에 대한 정부지원을 인지하고 있는 부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경험률이기 때문에 낮은 결과를 보였음을 밝혀둔다.

주63) 미숙아의 경우 출생 시 체중별로 의료비 편차가 극심함을 감안하여 본인부담 의료비중 100만원 미만은 전액지원, 100만원 이상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인당 최고 지원금액은 2,500gm미만~2,000gm 3백만원, 2,000gm미만~1,500gm은 5백만원, 1,500gm미만은 7백만원까지임.

〈표 7-19〉 15~44세 유배우부인의 미숙아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지원 받은 경험여부¹⁾

(단위: %, 명)

구 분	인지여부			지원경험 여부 ²⁾		
	모름	알고 있음	계(수)	받지 않음	받음	계(수)
전체	74.2	25.8	100.0(954)	97.5	2.5	100.0(243)
지역						
동부	74.6	25.4	100.0(811)	98.5	1.5	100.0(205)
읍·면부	72.0	28.0	100.0(143)	92.1	7.9	100.0(3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0.0	-	100.0(14)	-	-	-
고등학교	75.7	24.3	100.0(399)	95.8	4.2	100.0(95)
대학 이상	72.5	27.5	100.0(541)	98.6	1.4	100.0(147)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82.1	17.9	100.0(56)	90.0	10.0	100.0(10)
25~29세	76.0	24.0	100.0(308)	97.2	2.8	100.0(72)
30~34세	71.1	28.9	100.0(439)	98.4	1.6	100.0(125)
35세 이상	76.8	23.2	100.0(151)	97.1	2.9	100.0(35)
최종아 출생순위						
첫째 아	76.0	24.0	100.0(458)	97.2	2.8	100.0(108)
둘째 아	72.0	28.0	100.0(396)	97.3	2.7	100.0(110)
셋째 아 이상	75.8	24.2	100.0(99)	100.0	-	100.0(24)

주: 1) 미숙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알고 있는 사람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제 3 절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태

선천성대사 이상은 선천적으로 대사에 이상이 있어 영아사망 및 장애아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생후 3~7일 이내에 신생아의 발뒤꿈치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이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1985년 국내에 도입되었고, 1995년부터 보건소에서 분만하거나 보건소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신생아, 모자보건 진료기관에서 분만한 저소득층 신생아,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무료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생아 등에 대해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 1997년부터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모든 신생아에게 우리나라에서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페닐케톤뇨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검사를 통해 페닐케톤뇨증 및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생활이 곤란하여 특수분유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특수조세분유를 제공하거나 처방전에 따른 현금지원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6).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위해 2006년부터는 기존에 실시하던 2종 외에 4종(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을 더하여 총 6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그 액수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표 7-20〉 모자보건사업에 의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종류 및 지급비용

(단위: 원)

연도	검사비	사후관리항목
1991	8,000	5종: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히스티딘혈증
1992	14,000	5종: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히스티딘혈증
1993	14,000	5종: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히스티딘혈증
1994	14,000	5종: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히스티딘혈증
1995	8,000	1종: 페닐케톤뇨증
1996	8,000	1종: 페닐케톤뇨증
1997	8,640	2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1998~2005	9,500	2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2006	17,000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자료: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지침』, 각 연도.

2004년 1월 이후부터 2006년 8월까지 출생한 최종출생아 중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받은 비율은 95.8%로 지난 1994년 35.7%, 1997년 73.6%, 2000년 88.8% 그리고 2003년 89.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검

사율을 살펴보면,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96.2%로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93.7%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인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중학교 이하 학력수준인 부인의 최종출생아는 검사율이 71.4%인데 비하여 대학 이상 학력수준 부인의 최종출생아는 97.2%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 이하 학력수준인 부인의 경우 검사를 실시하였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21.4%로 대학 이상 학력수준인 부인의 2.2%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표 7-2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수검 여부 (단위: %, 명)

구 분	1994년 검사율	1997년 검사율	2000년 검사율	2003년 검사율	2006년			계(수)
					하였음	하지 않았음	잘 모름	
전체	35.7	73.6	88.8	89.7	95.8	1.3	2.9	100.0(954)
지역								
동부	35.7	73.4	88.4	89.3	96.2	1.4	2.5	100.0(812)
읍·면부	35.8	74.4	93.0	91.3	93.7	0.7	5.6	100.0(14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1.2	65.7	81.5	79.6	71.4	7.1	21.4	100.0(14)
고등학교	33.5	71.6	86.7	89.5	95.0	1.8	3.3	100.0(399)
대학 이상	43.2	79.0	92.5	91.0	97.2	0.6	2.2	100.0(540)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36.6	70.2	83.3	87.4	94.6	3.6	1.8	100.0(56)
25~29세	33.9	72.7	90.9	89.2	93.8	2.3	3.9	100.0(308)
30~34세	39.3	77.3	87.9	92.6	97.0	0.5	2.5	100.0(438)
35세 이상	-	-	-	85.2	97.3	-	2.7	100.0(150)

자료: <표 7-2>와 동일.

최종출생아 출생시 부인의 연령에 따라서는 35세 이상 부인의 경우 검사율이 97.3%로 가장 높았고, 25~29세 부인의 검사율이 93.8%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15~44세 유배우 부인의 최종 출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수검종류를 정부의 지원항목인 6종 검사만을 한 경우는 27.1%이었고, 정부지원 6종에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62.5%이었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경우에 정부의 지원항목 외에 추가로 검사를 한 경우가 64.8% 이었고, 읍·면부 지역 거주부인은 49.2%로 차이가 있었다.

〈표 7-22〉 15~44세 유배우부인 최종출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수검 종류
(단위: %, 명)

구 분	정부의 지원항목인 6종 검사만	정부지원 6종 + 추가검사	잘 모름	계(수)
전체	27.1	62.5	10.4	100.0(913)
지역				
동부	24.8	64.8	10.4	100.0(781)
읍·면부	40.2	49.2	10.6	100.0(13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0.0	30.0	10.0	100.0(10)
고등학교	29.6	59.1	11.3	100.0(379)
대학 이상	24.6	65.7	9.7	100.0(525)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32.1	60.4	7.5	100.0(53)
25~29세	23.8	67.6	8.6	100.0(290)
30~34세	27.5	61.6	10.8	100.0(425)
35세 이상	30.1	56.2	13.7	100.0(146)
최종아 출생순위				
첫째 아	21.3	68.3	10.3	100.0(436)
둘째 아	31.0	57.5	11.5	100.0(381)
셋째 아 이상	35.4	57.3	7.3	100.0(96)

한편,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의 지원항목 외에 추가검사를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중학교 이하 학력을 소지한 부인의 경우에는 30.0%에 비하여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부인은 65.7%로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대체로 연령층이 낮은 부인의 경우에 정부의 지원항목 외에 추가로 검사를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15~24세 연령층은 60.4%, 25~29세 연령층은 67.6%, 30~34세 연령층은 61.6%, 35세 이상 연령층은 56.2% 이었다.

한편 최종출생아의 출생순위에 따른 검사 종류는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정부의 지원항목 외에 추가로 검사를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출생순위가 첫째 아 인 경우는 68.3%, 둘째 아 57.5%, 셋째 아 이상 57.3% 이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의 추가비용은 10~15만원 미만이 34.3%로 가장 많았고, 3만원 미만이 4.4%로 가장 적었다.

〈표 7-23〉 15~44세 유배우부인 특성별 최종출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추가비용 (단위: %, 명)

구분	3 만원 미만	3~5 만원 미만	5~7 만원 미만	7~10 만원 미만	10~15 만원 미만	15 만원 이상	계(수)
자비	4.4	4.7	13.1	32.5	34.3	11.1	100.0(504)

보건복지부에서는 미숙아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선천성대사이상아에 대해서도 신청시에 지원을 해주고 있다.

〈표 7-2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선천성대사이상아 정부지원에 대한 인지율 및 수혜 여부¹⁾

(단위: %, 명)

구분	인지여부			수혜 여부 ²⁾		
	모름	알고 있음	계(수)	받지 않음	받음	계(수)
전체	85.2	14.8	100.0(953)	99.2	0.8	100.0(119)
지역						
동부	85.2	14.8	100.0(811)	99.0	1.0	100.0(98)
읍·면부	85.2	14.8	100.0(142)	100.0	-	100.0(2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0.0	-	100.0(14)	-	-	-
고등학교	87.0	13.0	100.0(399)	97.7	2.3	100.0(44)
대학 이상	83.5	16.5	100.0(541)	100.0	-	100.0(76)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91.1	8.9	100.0(56)	100.0	-	100.0(4)
25~29세	84.1	15.9	100.0(308)	97.6	2.4	100.0(41)
30~34세	84.1	15.9	100.0(439)	100.0	-	100.0(60)
35세 이상	88.7	11.3	100.0(151)	100.0	-	100.0(16)
최종아 출생순위						
첫째 아	85.6	14.4	100.0(459)	98.1	1.9	100.0(52)
둘째 아	85.4	14.6	100.0(396)	100.0	-	100.0(52)
셋째 아 이상	81.8	18.2	100.0(99)	100.0	-	100.0(16)

주: 1) 선천성대사이상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알고 있는 사람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004년 1월~2006년 8월 중에 출생아를 둔 15~44세 유배우부인 중 정부의 선천성대사이상아에 대한 지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14.8%, 지원을 받은 경험은 0.8%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선천성대사이상아를 갖고 있는 부인 중 수혜율이 아니라 정부의 선천성대사이상아 지원을 인지하고 있는 부인 중 지원 받은 경험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낮게 나타났음을 밝혀둔다.

제 4 절 수유양상

모유가 아기의 건강이나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즉, 모유로 키운 아기는 면역성이 형성되어 병에 잘 걸리지 않고, 모유를 먹인 엄마는 난소암과 유방암 발병률이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모유수유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본 조사에서는 2004년 1월 이후부터 2006년 8월까지 출생한 최종출생아 953명을 대상으로 15개월 미만까지의 수유실태를 파악하여 인공유와 혼합하여 수유한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고, 완전모유수유와 ‘모유+이유식’을 하는 경우를 모유수유를 하는 것으로 보고 실태를 파악한 결과, 모유수유율은 지난 2003년보다 7.7%포인트 증가한 24.2%로 나타났다.

〈표 7-2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모유수유 실태

연도	(단위: %)						
	1985년 ¹⁾	1988년 ²⁾	1994년 ³⁾	1997년 ⁴⁾	2000년 ⁵⁾	2003년 ⁶⁾	2006년 ⁷⁾
모유수유율	59.0	48.1	11.4	14.1	10.2	16.5	24.2

자료: <표 7-2>와 동일

최종아의 월령에 따른 모유수유율^{주64)}을 살펴보면 <표 7-26>과 같다. 최종출생아의 생후 1주 이내 모유수유율은 58.9%로 가장 높았으나 생후 1개월째에는

57.9%로 낮아졌고, 생후 3개월에 43.4%, 생후 6개월 시에는 14.0%로 낮아지면서 영아의 월령 증가와 함께 급속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유수유율이 저하되면서 분유 등을 이용한 인공수유는 월령의 증가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후 1주에 인공수유율은 10.7%에 불과하였지만 생후 1개월 때에는 15.9%로 증가하고 이후 생후 3개월 쯤 33.1% 까지 증가하였다.

〈표 7-26〉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의 생후 15개월간 모유수유양상 (단위: %, 명)

구 분	완전 모유수유	혼합 모유수유 (모유+분유)	혼합식 (모유+이유식)	혼합식 (분유+모유+이유식)	인공수유 /분유	혼합식 (분유+이유식)	완전 이유식	계(수)
생후 1주	58.9	30.2	0.2	-	10.7	-	-	100.0(953)
생후 2주	58.4	28.6	0.1	-	12.8	-	-	100.0(948)
생후 3주	57.3	28.4	0.1	-	14.2	0.1	-	100.0(944)
생후 4주	57.9	25.8	0.1	-	15.9	0.2	-	100.0(938)
1~2월 미만	51.9	22.1	0.1	0.1	25.2	0.5	-	100.0(935)
2~3월 미만	49.6	18.5	0.5	0.2	30.2	1.1	-	100.0(908)
3~4월 미만	43.4	15.4	2.6	0.9	33.1	4.6	-	100.0(857)
4~5월 미만	37.3	11.0	6.9	1.7	32.6	10.5	-	100.0(822)
5~6월 미만	26.8	8.1	16.0	3.7	25.3	20.2	-	100.0(793)
6~7월 미만	14.0	5.5	25.2	5.1	11.8	38.3	-	100.0(747)
7~8월 미만	9.8	4.1	27.8	6.4	8.3	43.7	-	100.0(724)
8~9월 미만	6.9	3.4	28.5	6.0	6.9	48.3	-	100.0(694)
9~10월 미만	5.2	2.2	29.0	5.4	6.1	52.1	-	100.0(663)
10~11월 미만	4.0	1.7	28.6	5.2	4.0	56.1	0.5	100.0(632)
11~12월 미만	3.3	1.4	27.6	5.0	3.6	57.1	2.1	100.0(608)
12~13월 미만	2.6	1.0	23.7	4.6	2.4	57.0	8.8	100.0(579)
13~14월 미만	1.9	0.5	20.1	4.9	2.2	56.3	14.1	100.0(540)
14~15월 미만	1.8	0.4	20.0	4.8	1.7	56.1	15.2	100.0(507)

최종출생아의 출생후 1개월 시의 수유양상은 전체 모유수유율이 58.0%이었고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이 58.1%로 읍·면부에 거주하는 부인의 57.4%보다 다소 높았다. 반면 읍·면부에 거주하는 부인의 인공수유율은 18.4%로 동부

주64) 모유수유율은 완전모유수유를 한 경우만을 말함.

에 거주하는 부인 15.8%에 비하여 높았다. 이는 모유수유의 장애요인의 하나인 제왕절개로 분만한 비율이 동부지역 거주부인에 비하여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에 비하여 높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7-27〉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의 생후 1개월시 수유양상
(단위: %, 명)

구 분	완전모유수유	인공수유/분유	혼합 모유수유	계(수)
전체	58.0	16.2	25.8	100.0(938)
지역				
동부	58.1	15.8	26.1	100.0(797)
읍·면부	57.4	18.4	24.2	100.0(14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2.9	14.3	42.9	100.0(14)
고등학교	57.9	19.6	22.4	100.0(392)
대학 이상	58.5	13.4	28.1	100.0(531)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64.2	18.9	17.0	100.0(53)
25~29세	59.5	13.4	27.1	100.0(299)
30~34세	57.6	17.2	25.2	100.0(436)
35세 이상	54.4	17.4	28.2	100.0(149)
분만형태				
자연분만	61.1	13.0	25.9	100.0(607)
제왕절개	52.4	22.0	25.6	100.0(332)
최종아 출생순위				
첫째 아	56.0	13.9	30.0	100.0(446)
둘째 아	59.4	19.2	21.4	100.0(392)
셋째 아 이상	61.6	15.2	23.2	100.0(99)

또한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생후 1개월시 모유수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중학교 이하 수준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42.9%와 비교하여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부인은 58.5%에 이르렀으며, 이에 반해 인공수유율은 중학교 이하 학력 부인의 경우 14.3% 이었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경우에는 13.4%로 교육수준에 따라 수유양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출산시 부인의 연령에 따라서는 모유수유율은 연령이 낮은 부인일수록 높아

15~24세 부인은 64.2%이었고, 35세 이상 부인은 54.4%이었다. 분만형태에 따라서는 자연분만한 부인의 모유수유율이 61.1%로 제왕절개한 부인의 52.4%에 비하여 높았다. 최종출생아의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모유수유율도 높게 나타나, 첫째아의 모유수유율이 56.0%인데 반하여 셋째 아 이상의 모유수유율은 61.6%이었다.

최종출생아의 출생직후 6개월 시의 수유양상을 살펴보면 <표 7-28>과 같다. 전체 모유수유율은 14.1%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의 결과는 생후 6개월 이상인 출생아의 경우에는 모유만으로는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보충식을 함께 하는 경우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완전 모유수유와 ‘모유+이유식’의 경우를 합하면 39.3%가 모유수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특성별 모유수유율은 완전모유수유와 ‘모유+이유식’을 합한 비율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인의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은 38.1%로 읍·면부 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의 45.9%보다 낮았다. 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학력을 소지한 부인의 모유수유율이 가장 높아 42.1%이었고, 출산시 부인연령에 따라서는 15~24세 연령층의 모유수유율이 가장 높아 48.8%이었다.

모의 취업형태에 따라서는 취업부인의 경우 모유수유율은 13.6%에 불과하였으나, 비취업 상태에 있는 부인의 경우에는 45.4%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최종출생아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셋째 아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아 46.6%이었다.

〈표 7-28〉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의 생후 6개월시 수유양상
(단위: %, 명)

구 분	완전모유 수유	모유+ 이유식	모유+ 인공유 수유	모유+ 인공유+ 보충식	완전 인공유 수유	인공유+ 이유식	계(수)
전체	14.1	25.2	5.5	5.1	11.8	33.3	100.0(746)
지역							
동부	12.1	26.0	5.4	5.5	11.8	39.2	100.0(635)
읍·면부	25.2	20.7	6.3	2.7	11.7	33.3	100.0(11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7	8.3	16.7	-	16.7	41.7	100.0(12)
고등학교	18.2	23.9	5.1	3.5	11.1	38.2	100.0(314)
대학 이상	11.0	26.7	5.5	6.4	12.1	38.3	100.0(420)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24.4	24.4	-	7.3	4.9	39.0	100.0(41)
25~29세	13.8	25.8	4.9	4.0	11.6	40.0	100.0(225)
30~34세	13.9	26.1	6.2	4.5	13.3	36.0	100.0(353)
35세 이상	11.1	22.2	6.3	7.9	10.3	42.1	100.0(126)
취업여부							
취업	10.1	13.5	9.1	4.8	15.9	46.6	100.0(208)
비취업	15.6	29.8	4.1	5.2	10.1	35.2	100.0(537)
최종아 출생순위							
첫째 아	13.9	23.8	6.4	6.1	10.5	39.3	100.0(361)
둘째 아	12.6	26.8	5.5	3.9	12.3	39.0	100.0(310)
셋째 아 이상	21.3	25.3	2.7	5.3	14.7	30.7	100.0(75)

15~44세 유배우 부인의 최종출생아의 12개월시 까지의 수유양상은 완전모유 수유와 ‘모유+이유식’을 합한 비율이 전체 부인의 26.3%이었다. 부인의 특성별 모유수유율은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25.9%,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28.6%이었고,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학력소지 부인이 26.0%, 대학 이상 학력소지 부인이 27.5% 이었다.

출산시 부인연령에 따라서는 15~24세 부인이 26.7%, 25~29세 연령층 부인 27.4%, 30~34세 연령층 부인 25.9%, 35세 이상 부인 25.2% 등이었다.

부인의 취업형태별로는 취업부인이 18.2%로 비취업부인의 29.6%에 비하여

낮았다. 최종아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첫째 아인 경우 23.8%, 둘째 아 29.5%, 셋째 아 이상 24.6% 등이었다.

〈표 7-29〉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의 생후 12개월시 수유양상
(단위: %, 명)

구 분	완전모유수유	모유+이유식	모유+인공유+보충식	모유+인공유수유	인공유+이유식	완전인공유수유	완전보충식	계(수)
전체	2.6	23.7	4.7	1.0	57.1	2.2	8.7	100.0(581)
지역								
동부	2.4	23.5	5.1	0.8	57.9	2.0	8.3	100.0(494)
읍·면부	3.6	25.0	2.4	2.4	52.4	3.6	10.7	100.0(8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	-	9.1	9.1	63.6	-	18.2	100.0(11)
고등학교	3.8	22.2	4.2	1.3	57.7	3.3	7.5	100.0(239)
대학 이상	1.8	25.7	4.8	0.6	55.9	1.8	9.4	100.0(331)
출산시 부인연령								
15~24세	6.7	20.0	6.7	3.3	53.3	3.3	6.7	100.0(30)
25~29세	2.4	25.0	1.8	0.6	58.5	1.8	9.8	100.0(164)
30~34세	2.2	23.7	4.7	0.7	56.8	2.9	9.0	100.0(278)
35세 이상	2.8	22.4	7.5	1.9	56.1	1.9	7.5	100.0(107)
취업여부								
취업	3.5	14.7	4.1	1.2	62.9	2.4	11.2	100.0(170)
비취업	2.2	27.4	4.6	1.0	54.5	2.4	7.8	100.0(409)
최종아 출생순위								
첫째 아	2.9	20.9	4.0	1.1	57.9	2.6	10.6	100.0(273)
둘째 아	2.4	27.1	3.6	0.8	57.0	2.4	6.8	100.0(251)
셋째 아 이상	3.5	21.1	12.3	1.7	50.9	1.7	8.8	100.0(5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 출생아에 대하여 모유를 수유하다가 중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모유수유를 중단한 이유로는 ‘모유량 부족’이 49.4%(동부 49.0%, 읍·면부 52.0%)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2000년 조사와 2003년의 조사에서도 같은 양상이었다. 다음으로는 ‘젖을 땄 시기가 되어서’ 17.0, ‘취업 때문에’ 12.0%, ‘엄마의 건강상 이유로’ 9.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취업

때문에'가 12.0%를 차지하고 있음은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이다.

〈표 7-30〉 15~44세 유배우부인의 모유수유 중단이유

(단위: %)

구 분	2000년	2003년 ¹⁾	2006년		
			전국	동부	읍·면부
모유량 부족	49.3	40.4	49.4	49.0	52.0
엄마의 건강상 이유	9.3	8.1	9.7	9.2	13.3
아기의 건강상 이유	8.7	5.6	3.9	3.7	5.3
아기가 모유를 싫어하거나 젖을 빨지 않아서	6.6	7.3	6.6	6.8	5.3
취업때문에	8.1	7.8	12.0	12.4	9.3
우유가 더 좋다고 들어서	1.4	1.9	0.7	0.9	-
젖을 빨 시기가 되어서	13.4	7.7	17.0	17.6	13.3
기타	3.2	3.3	0.6	0.4	1.3

주: 1) 2003년도 결과는 중복응답 결과임.

모유를 전혀 먹이지 않은 이유로는 50.8%가 '모유량 부족'이라고 응답하였고, 이는 동부지역 거주부인 56.3%,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35.3%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엄마의 건강상 이유' 24.6%, '아기가 모유를 싫어하거나 젖을 빨지 않아서' 15.4% 등이었다.

〈표 7-3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전혀 모유를 먹이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 분	전국	동부	읍·면부
모유량 부족	50.8	56.3	35.3
엄마의 건강상 이유	24.6	25.0	23.5
아기의 건강상 이유	4.6	6.3	-
아기가 모유를 싫어하거나 젖을 빨지 않아서	15.4	8.3	35.3
우유가 더 좋다고 들어서	1.5	2.1	-
기타	3.1	2.0	5.9
계(수)	100.0(65)	100.0(48)	100.0(17)

모유수유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는 공공장소의 모유수유실 의무 설치가 4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임산부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철저한 교육 홍보 21.1%, 직장에서 모유수유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 12.1%, 직장 내 모유수유실 의무 설치 12.0% 등의 순이었다.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은 모유수유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공공장소의 모유수유실 의무설치(43.2%), 임산부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철저한 교육 홍보(21.1%), 직장 내 모유수유실 의무 설치(12.3%), 직장에서 모유수유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12.2%) 등의 순이었고,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공공장소의 모유수유실 의무설치(46.5%), 임산부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철저한 교육 홍보(21.1%), 직장에서 모유수유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11.3%), 직장 내 모유수유실 의무 설치(9.9%) 등의 순이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중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부인은 공공장소의 모유수유실 의무설치(53.8%), 상업지역에 모유수유실 의무설치와 임산부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철저한 교육 홍보가 각각 15.4% 등의 순이었고,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부인은 공공장소의 모유수유실 의무설치(50.1%), 임산부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철저한 교육 홍보(2.4%) 등의 순이었으며, 그리고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부인은 공공장소의 모유수유실 의무설치(38.7%), 임산부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철저한 교육 홍보(19.4%), 직장 내 모유수유실 의무 설치(15.4%), 직장에서 모유수유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14.3%)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교육수준에 따라 모유수유 지원정책의 순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교육수준별 직업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사료된다.

부인의 연령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공장소의 모유수유실 의무설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임산부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철저한 교육 홍보였다.

15~44세 유배우 부인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 취업부인의 경우는 공공장소의 모유수유실 의무설치가 29.4%로 가장 높았고, 비취업 부인은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는 취업부인은 직장 내 모유수유실 의무설치(23.1%)라고 응답한 반면, 비취업부인은 임산부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철저한 교육 홍보(23.1%)라고 응답하였다.

〈표 7-32〉 15~44세 유배우부인의 모유수유 지원을 위한 필요한 정부정책

(단위: %, 명)

구 분	① 공공장소의 모유수유실 의무 설치, ② 상업지역에 모유수유실 의무설치, ③ 직장 내 모유수유실 의무설치, ④ 직장에서 모유수유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 ⑤ 모자동실 할당 배정, ⑥ 임산부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철저한 교육 홍보, ⑦ 기타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43.7	6.4	12.0	12.1	4.3	21.1	0.4	100.0(953)
지역								
동부	43.2	6.2	12.3	12.2	4.7	21.1	0.4	100.0(811)
읍·면부	46.5	7.7	9.9	11.3	2.8	21.1	0.7	100.0(14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3.8	15.4	7.7	7.7	-	15.4	-	100.0(13)
고등학교	50.1	6.0	7.6	9.3	3.0	23.4	0.5	100.0(397)
대학 이상	38.7	6.5	15.4	14.3	5.4	19.4	0.4	100.0(540)
부인연령								
15~24세	54.5	9.1	7.3	3.6	5.5	20.0	-	100.0(55)
25~29세	43.0	4.2	10.1	12.7	4.9	24.1	1.0	100.0(307)
30~34세	42.8	7.7	14.1	12.1	3.9	19.1	0.2	100.0(439)
35세 이상	43.3	6.0	11.3	14.0	4.7	20.7	-	100.0(150)
취업여부								
취업	29.7	5.5	23.0	21.1	4.3	15.6	0.8	100.0(256)
비취업	48.8	6.8	7.9	8.8	4.3	23.2	0.3	100.0(695)

제 5 절 모자보건실태의 시사점

모자보건은 임산부 또는 출생아에게 보건의료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임신초기부터 산전관리를 지원하고, 출생후에도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모성건강과 건강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도모할 수 있다.

산전관리는 임신의 진행과정에서 검사와 진찰을 통하여 이상임신 및 임신합병증 등을 조기에 발견하며, 임산부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임신, 분만 및 산육에 관한 보건교육 등을 제공하여 분만의 안전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산후의 건강향상과 모체 및 태아의 임신소모를 예방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할 수 있다. 2006년도 전국 기혼부인의 산전수진율

은 99.9%로 거의 모든 여성이 산전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아의 경우 임신초기에 유산 등 각종 위험을 산전관리로 예방할 수 있음에도 초진시기가 태아가 안전하게 모체에 착상하는 기간인 16주를 넘어 17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0.7%를 차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의학적으로 임신기간 중의 산전수진 횟수는 최소 7회 이상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전수진이 7회 미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3.7%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전관리가 정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임신에 대한 초진시기가 늦고 산전수진횟수가 적은 임산부에 대한 집중적 관리·보호가 필요하다.

분만 후 산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모체의 이후의 건강이 담보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해부학적으로 생식기가 비 임신 상태로 복구되며 자궁을 비롯한 복부 모든 기관과 조직 등을 본래 상태로 원상회복시키고, 아기 역시 이 세상 첫발을 안전하게 시작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후의료기관을 이용한 산후검진율은 91.9%로 나타나 8.1%의 부인이 산후관리를 적절히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검진율은 2003년 조사결과 90.9%에서 1.0%포인트 증가하였지만, 산후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모든 산모가 산후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산모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시설분만의 경우 분만 후 퇴원과 함께 산후관리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고, 일부 위험증상이 나타나는 산모나 요보호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전문적인 산후관리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산후관리 내용의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조사결과에서 기혼부인의 제왕절개율이 35.0%로 2003년도(39.2%)에 비하여 4.0% 포인트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설분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왕절개분만은 감염 및 출혈 등 출산과 관련된 의료문제의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거나 발생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분만과정에서 산모가 경험하는 고통을 감소시키고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부적절한 제왕절개 시술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출생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왕절개의 실시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OECD의 권고수준인 5~15%선으로 낮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산아는 각종 질병에의 노출 등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조사결과 출생 시 임신 주수가 조산인 36주 이하인 경우가 전체부인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조산의 원인인 임부의 영양부족 및 피로 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임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출생 시 신생아의 체중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향후 건강한 성장·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의료적 주의와 관찰을 필요로 하는 저체중아 및 소아비만이나 소아당뇨 등 각종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과체중아의 출생은 태아와 산모의 건강상의 이유와 생활습관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파악된 저체중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3.1%를 차지하였고, 과체중 출생아는 5.5%이었다. 따라서 신생아의 저체중 또는 과체중을 예방하기 위한 산모의 건강관리 및 임신 중 생활습관 관리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장애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생아를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모든 출생아에 대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본 조사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수검률은 95.8%로 과거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으나(2000년 88.8%, 2003년 89.7% 등), 산모의 교육수준이 낮을 경우 전체 수검률보다 낮게 나타났다(중학교 이하 71.4%). 따라서 이들 계층에 대한 적극적 교육·홍보 및 검사실시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겠다.

모유수유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모유수유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어, 2003년도 모유수유 실천율은 2000년(10.2%)과 비교하여 6.3%포인트 증가한 16.5%로 나타났으며, 2006년에는 더 증가하여 24.2%로 2003년에 비하여 7.7%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모유수유 실천율은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인공수유에 대한 편리성이나 영양학 측면에서의 인공수유에 대한 과잉신뢰, 그리고 모유수유를 실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및 지지 등의 부족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취업모의 경우 외출 및 작업장에 수유를 위한 적절한 공간과 시간을 확보할 수 없어 모유수유를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실제로 생후 6개월시 수유양상을 살펴본 결과, 취업여성의 모유수유실천율은 13.6%로 비취업여성의 모유수유실천율 35.4%보다 21.8% 포인트나 낮았다. 따라서 취업여성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결과 모유수유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으로 공공장소의 모유수유실 의무설치가 43.7%를 차지하고 있고, 직장에서 모유수유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 12.1%, 직장내 모유수유실 의무설치 12.0% 등을 차지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유수유는 건강한 모체를 유지하고,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단순히 출산여성과 신생아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전체와 사회가 함께 지지하고 노력하여야 할 과제이다.

제 8 장 자녀가치관과 혼인가치관의 변화

제 1 절 자녀가치관의 변화

가치(價値)의 의미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상대적 가치(value)와 실제 그 자체가 가진 절대적 가치(worth)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치(value of children)는 상대적 개념이며, 자녀를 가짐으로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을 의미한다(김승권, 2005a). 자녀가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가계계승, 노동력 창출, 노후부양에의 기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녀가 매우 중요시되었고, 재산과 동등한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대 산업사회에서는 많은 수의 자녀는 부부의 자녀부양부담을 증가시키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은 자녀를 노후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등 자녀에 대한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부부중심의 가족생활을 강조함으로써 소자녀관 정착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가족가치관의 한 영역으로서 부인의 자녀가치관을 ‘자녀의 필요성’에 의하여 살펴보고,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잔존하고 있고 출생성비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남아선호 가치관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부부의 가치관이 반드시 자녀의 규모 및 성 구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는 틀림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1. 자녀가치관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부부가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파악한 결과, 1991년 90.3%,^{주65)} 1997년 73.7%, 2000년 58.1%,

주65) 1991년 자료는 15~4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기 때문에 15~44세 유배우부인을 분석대상으로 한 본 조사자료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대략적인 추세는 볼 수

2003년에는 54.5%, 그리고 2006년에는 53.8%로 수준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반대로 자녀를 선택적 사항으로 판단하는 ‘자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없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부인은 1991년 8.5%, 1997년 26.0%, 2000년 41.5%, 2003년 44.9%, 그리고 2006년에는 46.2%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특히,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부인이 1997년 9.4%, 2000년 10.0%, 2003년 12.6%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06년에는 다소 감소한 12.1%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큰 변화가 소자녀관의 정착뿐만 아니라 자녀의 불필요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표 8-1 참조).

<표 8-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자녀필요성(1991~2006년)

(단위: %, 명)

연도	반드시 가져야 함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음			모르겠음	계(수)
		소계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		
1991 ¹⁾	90.3	8.5	-	-	1.2	100.0(7,448)
1997 ²⁾	73.7	26.0	16.6	9.4	0.3	100.0(5,409)
2000 ³⁾	58.1	41.5	31.5	10.0	0.5	100.0(6,363)
2003 ⁴⁾	54.5	44.9	32.3	12.6	0.6	100.0(6,593)
2006 ⁵⁾	53.8	46.2	34.1	12.1	-	100.0(5,386)

주: 1991년은 15~4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하는지 또는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는 지만을 질문함.

자료: 1)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2)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3)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4)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5) 본 조사결과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8-2>와 같다. 자녀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53.4%,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56.0%로 농어촌지역 거주부인이 자녀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하겠음.

필요성을 좀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3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읍·면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인이 동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인보다 자녀의 필요성이 더 많이 저하되었다.^{주66)} 이러한 결과는 2003년과는 다른 양상으로 읍·면부지역이 경제적으로 동부지역에 비하여 어려움이 더 크며 그로 인하여 자녀양육에 많은 부담을 느껴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라 사료된다.

반면에 자녀가 ‘있는 것이 낫다’고 응답한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34.5%,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31.8%로 다소 차이가 있었고,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12.0%,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12.2%로 나타나 지역별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 필요성에 대한 연령별 부인의 태도는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부인은 15~24세 연령층 부인이 58.4%로 가장 높았고, 그 외의 연령층은 약 53.2~54.5%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반면에 자녀가 ‘있는 것이 나음’은 15~24세 연령층 부인이 28.0%로 가장 낮았고, 다른 연령층은 약 33.7~34.6%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경우는 15~24세 연령층 부인이 13.6%로 가장 높았고, 25~29세 연령층 부인이 11.4%로 가장 낮았다.^{주67)}

따라서 15~24세의 젊은 연령층 부인의 자녀 가치관이 ‘중간적 위치’에서 ‘꼭 필요함’으로 다소 변화를 보였다고 하겠다. 이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영향을 다소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주66)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녀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53.0%,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62.5%이었고, 자녀가 ‘있는 것이 낫다’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33.2%,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27.2%이었으며, 반면에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3.1%,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9.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동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인이 읍·면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인보다 자녀 필요성에 대한 비율이 낮았음(김승권 외, 2004).

주67)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녀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5~24세 연령층이 6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34세 연령층으로 55.5%이었으며, 35~39세 연령층은 53.4%로 가장 낮았음. 반면에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경우는 15~24세 연령층이 1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35~39세 연령층이 13.3%이었으며, 40~44세 이상의 연령층은 12.5% 수준이었음(김승권 외, 2004).

가치관이 실제 출산에 얼마나 연결될 것인지의 여부는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여성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제도의 확충에 의하여 좌우될 것으로 사료된다.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가치관은 중학교 학력을 가진 부인이 63.5%로 가장 높았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50.7%로 가장 낮았다. 반면에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경우는 초등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부인이 15.6%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수준의 학력을 가진 부인이 7.6%로 가장 낮았다.^{주68)}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녀가치관은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경우는 취업부인이 54.5%, 비취업부인 53.2%이었고, 반대로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경우는 취업부인 12.2%, 비취업부인 11.9%이었다.^{주69)} 따라서 부인의 취업여부와 자녀가치관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이러한 태도가 현실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육서비스의 내실화, 육아휴직 등 사회제도의 확충 등이 얼마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현존자녀수에 따른 부인의 자녀가치관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경우는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이 65.1%로 가장 높았고, 자녀가 없는 부인이 43.4%로 가장 낮았다. 이와는 상반되는 개념인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부인은 자녀가 적을수록 높아 자녀가 없는 부인은 19.7%로 높았고, 3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9.6%에 불과하였으나,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11.6%로 오히려 높았다. 이는 2003년의 조사결과^{주70)}보다 더 격차를

주68) 2003년 조사결과는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경우는 초등학교 이하 학력의 부인이 61.9%로 가장 높았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51.2%로 가장 낮았음. 반면에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경우는 대학 이상 학력수준의 부인이 1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고등학교 수준의 학력을 가진 부인으로 12.5%이었으며, 초등학교 이하의 저학력층 부인은 12.1%로 가장 낮았음(김승권 외, 2004).

주69) 2003년 조사결과는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경우는 취업부인이 54.8%, 비취업부인 54.2%이었고, 반대로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경우는 취업부인 13.6%, 비취업부인 11.6%이었음(김승권 외, 2004).

주70) 2003년 조사결과,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경우는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이 61.9%로 가장 높았고, 자녀가 없는 부인이 44.1%로 가장 낮았으며, 반대로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

보이는 것으로 4명의 자녀를 둔 부인이 자녀양육을 실제로 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표 8-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꼭 필요함	있는 것이 나음	없어도 상관없음	모르겠음	계(수)
전체	53.8	34.1	12.1	-	100.0(5,387)
지역					
동부	53.4	34.5	12.0	-	100.0(4,603)
읍·면부	56.0	31.8	12.2	-	100.0(784)
연령					
15~24세	58.4	28.0	13.6	-	100.0(125)
25~29세	54.3	34.3	11.4	-	100.0(633)
30~34세	53.2	34.4	12.4	-	100.0(1,431)
35~39세	53.2	34.6	12.2	-	100.0(1,660)
40~44세	54.5	33.7	11.8	-	100.0(1,537)
교육수준					
초교 이하	51.6	32.8	15.6	-	100.0(64)
중학교	63.5	28.9	7.6	-	100.0(263)
고등학교	55.4	31.4	13.2	-	100.0(2,858)
대학 이상	50.7	38.3	11.0	-	100.0(2,194)
취업여부					
취업	54.5	33.3	12.2	-	100.0(2,663)
비취업	53.1	34.9	11.9	-	100.0(2,723)
현존자녀수					
0명	43.4	36.9	19.7	-	100.0(537)
1명	54.5	33.9	11.6	-	100.0(1,191)
2명	54.4	34.3	11.3	-	100.0(3,062)
3명	58.3	32.1	9.6	-	100.0(552)
4명 이상	65.1	23.3	11.6	-	100.0(43)

다'는 경우는 자녀가 적을수록 많아 자녀가 없는 부인은 24.8%,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7.1%에 불과하였음(김승권 외, 2004).

2. 이상자녀수

한 사회 구성원들의 자녀 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는 전술한 자녀 가치관 외에도 ‘이상자녀수’에 대한 가치관이 있다. 실제로 이상자녀수는 자녀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하는 지표이며, 응답자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의 규모(수)’를 의미한다. 물론 이는 응답자가 실제 두고 있는 현존자녀수와 관계없이 몇 명의 자녀를 두면 이상적인가를 묻는 주관적인 자녀규모에 대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현존자녀수와 관계없이 측정되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관이 실제로 한 부부의 자녀수를 결정하는 행동에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향후 자녀출산을 예측할 수 있는 간접지표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사망수준이 높고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전통적 사회에서는 높은 사망률로 인한 자녀의 상실을 보상하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가족 가치가 지배적이다. 그렇지만 인위적인 출산억제를 위한 피임법이 발달하지 않아 실제로 이상자녀수에 대한 가치가 출산력수준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게 된다. 가족규모에 대한 가치가 출산수준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은 개인이 자기의 생각과 결정에 따라 출산조절이 가능하게 되면서 부터이다(김승권, 2005b).

15~44세 유배우부인의 2006년 이상자녀수는 2.3명으로 2003년에 비해 0.1명이 증가하였다. 이상자녀수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면, 1980년대 중반까지는 점차 감소하였고, 그 이후 약 10년간 동일한 수준(0.1명의 미미한 차이)을 유지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약간 상승하는 징후(1997년 2.3명)를 보였으나 2000년은 약간 저하하여 2003년까지 지속되었으며, 2006년 조사에서는 2.3명으로 미미하나마 증가하였다. 즉, 이상자녀수는 1976년의 2.8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5~'88년에는 2.0명이었고, 다시 조금씩 증가하여 1997년에는 2.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과 2003년 2.2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06년에는 2.3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과 이상자녀수가 개발도상국과 선진

국에서 그 내용은 다르지만 반비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료된다. 즉,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출산율이 이상자녀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이상자녀수가 합계출산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김승권 외,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조사에서 보여 준 합계출산율은 더욱 저하하였음을 감안한다면, 이상자녀수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 그 이유를 규명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부인의 연령별 이상자녀수의 차이가 과거년도 조사에서는 0.2~0.8명이었으나 2003년과 2006년 분석결과는 0.1명과 0.2명에 불과하였다. 다시 말해, 이상자녀수는 25~29세 연령층 부인의 경우는 2.1명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은 15~24세와 30~34세 연령층 부인으로 2.2명이었으며, 그리고 35~39세와 40~44세 연령층 부인들은 2.3명으로 가장 높았다.

〈표 8-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평균 이상자녀수 변동추이

(단위: 명)

연령	1976 ¹⁾	1982 ²⁾	1985 ³⁾	1988 ⁴⁾	1991 ⁵⁾	1994 ⁶⁾	1997 ⁷⁾	2000 ⁸⁾	2003 ⁹⁾	2006 ¹⁰⁾
15~24세	2.4	2.1	1.8	1.8	1.8	2.0	2.1	2.1	2.2	2.2
25~29세	2.5	2.2	1.9	1.9	1.9	2.1	2.1	2.1	2.2	2.1
30~34세	2.8	2.5	2.0	2.0	2.1	2.2	2.2	2.2	2.3	2.2
35~39세	3.0	2.6	2.1	2.0	2.2	2.3	2.3	2.3	2.3	2.3
40~44세	3.2	2.9	2.2	2.1	2.3	2.3	2.3	2.3	2.3	2.3
전체	2.8	2.5	2.0	2.0	2.1	2.2	2.3	2.2	2.2	2.3

주: 1991년은 기혼여성을 분석대상으로 함.

- 자료: 1) 박병태 외, 『1976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계획평가조사』, 가족계획연구원, 1978.
 2) 문현상 외, 『1982년 전국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3) 문현상 외,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4) 문현상 외,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 보건연구원, 1989.
 5)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6)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7)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8)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9)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10) 본 조사결과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이상자녀수 분포를 살펴보면 <표 8-4>와 같다. 0~1명의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한 부인은 1997년 10.0%, 2003년 11.5%이었으나 2006년 조사결과에서는 9.5%로 다소 낮아졌다. 또한 3명 이상을 이상자녀수라고 응답한 경우는 1997년 26.5%, 2000년 25.8%, 2003년 28.4%, 그리고 2006년 28.1% 이었다. 또한 2명을 이상자녀수 규모라는 부인이 1997년 62.6%에서 2000년 64.3%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2003년에는 58.8%로 크게 감소하였고, 다시 2006년에는 61.4%로 높아졌다.

2006년의 이상자녀수 분포와 평균 이상자녀수를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거주지역별로는 0~1명 이상자녀수라고 한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9.6%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8.8%보다 다소 높았고, 반면에 3명 이상이라고 한 비율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35.7%로 동부지역 거주부인 26.7%보다 높았다. 따라서 평균 이상자녀수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2.4명으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2.2명보다 0.2명 많았다.

부인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이상자녀수는 많았고, 반대로 부인연령이 낮을수록 이상자녀수는 적었다. 즉, 2명 이하를 이상자녀수라고 한 비율은 15~24세 연령층 부인이 74.4%, 25~29세 연령층 부인 77.7%, 그 외 연령층은 약 70% 전·후였다. 반면에 3명 이상을 이상자녀수라고 한 비율은 40~44세 연령층 부인이 32.9%이었으나 15~24세 연령층 부인 23.2%, 25~29세 연령층 부인 21.2%로 연령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부인의 교육수준별 이상자녀수 분포를 살펴보면, 2명 이하를 이상자녀수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학 이상 학력수준의 부인이 72.5%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학력수준의 부인이 66.3%로 가장 낮았다. 반면에 3명 이상을 이상자녀수라고 한 비율은 중학교 학력수준의 부인이 33.3%로 가장 높았고, 대학 학력수준의 부인이 26.5%로 가장 낮았다. 그렇지만 교육수준에 따른 이상자녀수 분포는 차이가 현저하지 않았으며, 평균 이상자녀수의 차이도 초교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과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이 2.2명, 그 외 학력수준의 부인은 2.3명으로 나타났다.

〈표 8-4〉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이상자녀수 분포

(단위: %, 명)

지역 및 연령	이상자녀수 분포						평균 이상자녀수
	1명 이하	2명	3명	4명 이상	기타	계(수)	
1997년 ¹⁾	10.0	62.6	20.3	6.2	0.9	100.0(5,409)	2.3
2000년 ²⁾	9.3	64.3	20.1	5.7	0.7	100.0(6,361)	2.2
2003년 ³⁾	11.5	58.8	21.7	6.7	1.2	100.0(6,599)	2.2
2006년 ⁴⁾	9.5	61.4	22.6	5.5	1.0	100.0(5,386)	2.3
지역							
동부	9.6	62.5	21.6	5.1	1.0	100.0(4,603)	2.2
읍·면부	8.8	54.9	28.2	7.5	0.5	100.0(783)	2.4
연령							
15~24세	5.6	68.8	18.4	4.8	2.4	100.0(125)	2.2
25~29세	10.7	67.0	19.0	2.2	1.1	100.0(633)	2.1
30~34세	9.4	65.6	20.3	3.8	0.9	100.0(1,431)	2.2
35~39세	8.7	60.5	24.5	5.7	0.7	100.0(1,659)	2.3
40~44세	10.3	55.7	24.6	8.3	1.2	100.0(1,538)	2.3
교육수준							
초교 이하	12.3	56.9	21.5	6.2	3.1	100.0(65)	2.2
중학교	6.8	59.5	26.1	7.2	0.4	100.0(264)	2.3
고등학교	9.9	60.3	23.1	5.7	0.9	100.0(2,860)	2.3
대학 이상	9.3	63.2	21.6	4.9	1.0	100.0(2,193)	2.2
취업여부							
취업	10.2	60.0	22.4	6.4	1.0	100.0(2,663)	2.3
비취업	8.9	62.7	22.8	4.6	1.0	100.0(2,723)	2.2
현존자녀수							
0명	16.0	65.7	15.3	1.1	1.9	100.0(536)	2.0
1명	11.3	65.6	19.6	2.7	0.9	100.0(1,191)	2.1
2명	8.2	61.1	23.9	5.9	0.8	100.0(3,062)	2.3
3명	7.2	50.7	28.9	12.5	0.7	100.0(554)	2.5
4명 이상	2.3	51.2	25.6	18.6	2.3	100.0(43)	2.7

자료: 1)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2)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3)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4) 본 조사결과

2명 이하를 이상자녀수라고 한 비율은 비취업부인이 71.6%, 취업부인은 70.1%로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3명 이상을 이상자녀수라고 한 비율도

취업부인이 28.8%, 비취업부인은 27.4%로 차이가 미미하였다. 따라서 취업여부별 부인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취업부인이 2.3명, 비취업부인이 2.2명으로 0.1명의 차이만을 보였다.

현존자녀수에 따른 부인의 자녀가치관은 현저한 차이를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현존자녀수에 따른 이상자녀수 분포와 평균 이상자녀수도 큰 차이를 보였다. 즉, 0~1명을 이상자녀수라고 한 비율은 무자녀 부인이 16.0%로 가장 높으나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2.3%로 가장 낮았다. 반면에 3명 이상을 이상자녀수라고 한 비율은 무자녀 부인이 16.4%로 가장 낮았으나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44.2%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현존자녀수가 0명인 부인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2.0명으로 가장 적었고,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현존자녀수가 많을수록 다자녀를 이상자녀수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상자녀수에 대한 가치관이 현실로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될 수 있다.

부인연령별 이상자녀수 분포를 부인의 거주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2명 이하의 자녀규모를 이상적이라고 한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자는 25~29세 연령층 부인이 79.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34세 연령층 부인이 76.1%이었다. 읍·면부지역 거주자의 경우, 15~24세 연령층 부인이 7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25~29세 연령층 부인이 69.2%로 나타났다. 반면에 40~44세 연령층 부인은 59.6%로 가장 낮았다.주71)

3명 이상을 이상자녀수라고 한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자의 경우, 40~44세 연령층이 31.6%로 가장 높았고, 읍·면부지역 거주자는 40~44세 연령층이 39.9%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15~24세 연령층 부인은 23.8%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지역에 관계없이 30대 미만의 젊은 연령층 부인은 소자녀 가치관이 강하고, 고연령층에서는 다자녀 가치관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사료된다. 결국

주71) 2003년 조사에서는 2명 이하의 자녀규모를 이상적이라고 한 비율은 동부지역에서는 25~29세 연령층 부인이 77.2%로 가장 높고, 다음은 15~24세 연령층 부인이 73.1%이었으며, 읍·면부지역에서는 15~24세 연령층 부인이 80.0%로 가장 높고, 다음은 25~29세 연령층 부인이 76.5%로 나타났다(김승권 외, 2004).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여성에 대한 자녀의 필요성, 아동의 중요성 등 가치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8-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지역별 및 연령별 이상자녀수 분포

(단위: %, 명)

지역 및 연령	이상자녀수 분포					계(수)	평균 이상자녀수
	1명 이하	2명	3명	4명 이상	기타		
동부							
15~24세	5.8	68.3	18.3	4.8	2.9	100.0(104)	2.4
25~29세	10.7	68.3	18.3	1.7	0.9	100.0(540)	2.2
30~34세	9.5	66.6	19.2	3.7	1.1	100.0(1,232)	2.2
35~39세	8.7	62.0	23.3	5.4	0.7	100.0(1,417)	2.3
40~44세	10.7	56.4	23.8	7.8	1.3	100.0(1,310)	2.4
읍·면부							
15~24세	4.8	71.4	19.0	4.8	-	100.0(21)	2.2
25~29세	9.9	59.3	23.1	5.5	2.2	100.0(91)	2.3
30~34세	8.5	59.0	27.5	5.0	-	100.0(200)	2.3
35~39세	9.0	51.2	31.1	7.8	0.8	100.0(244)	2.4
40~44세	8.3	51.3	28.9	11.0	0.4	100.0(228)	2.4

제 2 절 남아선호가치관의 변화

남아선호 가치관에 대하여 본 조사에서는 ‘아들의 필요성 여부’에 의하여 파악하였다. ‘아들의 필요 이유’를 규명하는 것은 성선호 가치관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두 항목을 중심으로 15~44세 유배우부인의 남아선호가치관의 변화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1. 아들 필요성

유배우부인 중 ‘아들이 꼭 있어야 함’의 의견을 제시한 부인은 1991년 40.5%, 1994년 26.3%, 1997년 24.8%, 2000년 16.2%, 2003년 14.1%, 그리고 2006년 조사

에서는 10.2%로 지속적이고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반대로 ‘아들이 없어도 무관함’의 의견은 1991년 28.0%, 1994년 38.9%, 1997년 39.4%, 2000년 39.5%, 2003년 43.3, 그리고 2006년 조사에서는 49.8%로 증가하였다. 또한 아들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는 것이 좋음’이라는 태도는 1991년 30.7%, 1994년 34.3%, 1997년 35.0%, 2000년 43.2%로 증가하였으나, 2003년에는 41.8%로 처음 감소하였고, 2006년 조사에서도 39.3%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아들이 ‘꼭 있어야 함’과 ‘있는 것이 좋음’에서 ‘없어도 무관함’으로 한국사회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한국사회에는 여전히 아들을 선호하는 가치관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강도는 현저히 낮아졌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가치관이 어느 정도 현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사회구조적 및 제도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느냐에 달렸다고 하겠다.

<표 8-6> 15~44세 유배우부인의 아들 필요성의 변화

(단위: %, 명)

연도	꼭 있어야 함	있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함	모르겠음	계(수)
1991 ¹⁾	40.5	30.7	28.0	0.8	100.0(7,448)
1994 ²⁾	26.3	34.3	38.9	0.5	100.0(5,175)
1997 ³⁾	24.8	35.0	39.4	0.8	100.0(5,409)
2000 ⁴⁾	16.2	43.2	39.5	1.1	100.0(6,350)
2003 ⁵⁾	14.1	41.8	43.3	0.8	100.0(6,599)
2006 ⁶⁾	10.2	39.3	49.8	0.7	100.0(5,386)

주: 1991년은 15~49세 기혼여성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표 8-1>과 동일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살

펴본다. 먼저 부인의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12.4%로 동부지역 거주부인 9.8%보다 높았으며, ‘없어도 무관함’의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50.6%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45.3%보다 높았다.^{주72)} 이와 같은 결과는 동부지역 거주자가 젊은 연령층의 학력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읍·면부지역 거주자는 고연령층의 학력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는 후술하는 교육수준의 차이, 현존자녀수의 차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인의 연령과 아들선호도는 다소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에 따라서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고 차이도 크지 않았다. 즉,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부인은 35~39세 연령층이 8.9%로 가장 낮았으나 15~24세 연령층은 13.6%로 가장 높았다. 반대로 아들이 ‘없어도 무관하다’는 부인은 15~24세 연령층이 46.4%로 가장 낮았고, 35~39세 연령층이 50.2%로 가장 높았다.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라 아들의 선호도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경우는 중학교 이하 학력수준의 부인이 17.8%로 높았고, 대학 이상 학력수준의 부인은 8.0%로 낮았다. 반면에 아들이 ‘없어도 무관하다’는 부인은 대학 이상 학력수준의 부인이 52.6%로 가장 높았고, 그 외 학력수준에서는 41.3~48.7%의 미미한 차이만을 보였다.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경우는 취업부인이 10.7%로 비취업부인의 9.7% 보다 높았고, 반면에 아들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경우는 취업부인이 49.8%, 비취업부인이 49.9%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아들 선호도는 자녀가 없는 부인을 제외하고는 적은 자녀를 가진 부인이 낮았고, 많은 자녀를 가진 부인이 높았다. 즉,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경우는 자녀가 1명만 있는 부인이 9.0%로 가장 낮았고, 현재 자녀가 4명 이상인 부인이 30.2%로 높았다. 반면에 아들이 ‘없어도 무관하다’는 경우는 현재 자녀가 없는 부인이 56.2%로 가장 높았고, 현재 자녀가 4명 이상인 부인은 가장 27.9%로 낮았다.

주72) 2003년 조사에서는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20.5,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13.0% 이었고, ‘없어도 상관없다’는 동부지역 거주부인 44.3%,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38.0% 이었음.

〈표 8-7〉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꼭 있어야 함	있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함	모르겠음	계(수)
전체	10.2	39.3	49.8	0.7	100.0(5,386)
지역					
동부	9.8	38.8	50.6	0.7	100.0(4,603)
읍·면부	12.4	42.0	45.3	0.3	100.0(783)
연령					
15~24세	13.6	39.2	46.4	0.8	100.0(125)
25~29세	11.1	38.5	49.9	0.5	100.0(633)
30~34세	9.4	37.7	51.9	0.9	100.0(1,431)
35~39세	8.9	40.2	50.2	0.7	100.0(1,660)
40~44세	11.6	40.1	47.8	0.5	100.0(1,537)
교육수준					
초교 이하	17.2	34.4	45.3	3.1	100.0(64)
중학교	17.8	40.9	41.3	-	100.0(264)
고등학교	11.0	39.5	48.7	0.8	100.0(2,858)
대학 이상	8.0	39.0	52.6	0.5	100.0(2,195)
취업여부					
취업중	10.7	38.9	49.8	0.6	100.0(2,663)
비취업	9.7	39.7	49.9	0.7	100.0(2,723)
현존자녀수					
0명	10.1	32.0	56.2	1.7	100.0(537)
1명	9.0	35.4	55.2	0.3	100.0(1,191)
2명	9.7	41.2	48.4	0.7	100.0(3,061)
3명	14.1	43.8	41.8	0.4	100.0(553)
4명 이상	30.2	41.9	27.9	-	100.0(43)
현존아들수					
0명	6.6	31.5	61.1	0.9	100.0(1,687)
1명	11.7	43.5	44.1	0.6	100.0(2,644)
2명	12.0	41.2	46.5	0.4	100.0(1,001)
3명 이상	14.5	43.6	41.8	-	100.0(55)

이어서 현재 아들이 몇 명인지에 따라 아들 선호도의 양상을 살펴보면, 대략 적으로 아들이 많을수록 아들 선호도가 높았고, 아들이 적을수록 아들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경우는 아들이 없는

부인이 6.6%로 가장 적었고, 현재 아들이 3명 이상인 부인은 14.5%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아들이 ‘없어도 무관하다’는 경우는 현재 아들이 없는 부인이 61.1%로 가장 높았고, 현재 아들이 1명이라도 있는 부인은 약 41.8~46.5%의 범주에 있었다.

2. 아들의 필요이유

전술한 바와 같이 2006년 조사에서는 아들 선호도가 과거연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았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들 선호 가치관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필요이유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가계계승의 측면에서 ‘가문유지와 제사’를, 자식으로부터의 도움과 관련하여 ‘노후생활과 경제적 도움’을, 정신적 만족감의 측면에서 ‘심리적 만족과 가정행복’, 그리고 ‘기타이유’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주73)}

15~44세 유배우부인이 아들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는 ‘심리적 만족’이 67.1%로 가장 높았다. 그렇지만 이는 2003년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72.9%보다 낮은 수준이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아들선호 이유는 ‘가정행복’으로 51.2%이었는데, 이 또한 2003년의 조사결과인 56.6%보다 낮은 결과이다. 따라서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정신적 만족을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적 만족감’ 다음으로 아들이 필요 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 가계계승’이다. 이를 위한 지표는 ‘가문유지’와 ‘제사상속’인데, ‘가문유지’를 위하여 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부인은 19.0%로 2003년의 23.0%보다 낮았으며, ‘제사상속’을 위하여 아들이 필요한 경우는 5.0%로서 2003년의 7.0%보다 낮았다.

반면에 아들이 필요한 이유가 ‘자식으로부터의 도움’을 받기 위한 측면은 ‘노후생활을 위해서’와 ‘경제적 도움’ 등의 두 지표이다. 이들 지표는 지속적으로

주73) 이 질문항의 분석결과는 복수응답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함. 즉, 한 응답자가 두 가지 이상의 아들 필요이유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음.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전자는 2.6%로 2003년의 5.3%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물렀고, 후자는 1.0%로 2003년의 1.6%보다 낮았다. 따라서 아들이 필요한 이유가 아들로부터의 노후생활의 지원이나 경제적 도움을 거의 기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들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인 ‘정신적 만족감’인 심리적 만족과 가정행복을 제시한 경우를 부인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부인의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두 지표 모두 동부지역 거주부인보다 높았다. 즉, ‘심리적 만족’을 위해 아들이 필요한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71.0%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66.4%보다 높았고, ‘가정행복’을 위해 아들이 필요한 경우도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53.9%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50.0%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인연령별로 살펴보면, ‘심리적 만족’을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5~24세 연령층 부인은 63.1%이었으나 40~44세 연령층 부인은 70.9%로 많았다. ‘가정행복’을 위해 아들이 필요한 경우는 연령에 따라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대체로 높은 연령층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5~24세 연령층 부인은 43.1%로 낮았으나 35~39세 연령층 부인은 53.9%, 35~39세 연령층 부인은 53.0%로 높았다.

아들의 필요성이 ‘정신적 만족감’을 위해라는 비율을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라 비교하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심리적 만족’에 의한 아들 필요성이 높았고, ‘가정행복’을 위한 아들 필요성은 교육수준이 상승할수록 높았다. 즉, ‘심리적 만족’을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초교 이하 학력의 부인이 90.9%로 가장 높았고, 교육수준이 상승할수록 낮아져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61.1%이었다. 또한 ‘가정행복’을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이 27.3%로 낮았고, 교육수준이 상승할수록 높아져 대학이상 학력수준의 부인은 55.6%나 되었다. ‘심리적 만족’을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경우는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 취업부인이 66.9%, 비취업부인이 67.3%이었고, ‘가정행복’을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경우는 취업부인이 52.8%로 비취업부인의 49.5%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현존자녀수별로 ‘심리적 만족’에 의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살펴보면,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이 80.6%로 가장 높았고, 자녀가 없는 부인은 66.2%로 가장 낮았다. 또한 ‘가정행복’을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3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이 58.9%로 가장 높았고, 1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이 47.3%로 가장 낮았다.

현존 아들수와 ‘심리적 만족’을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들이 없는 부인의 경우는 65.6%로 가장 낮았고, 3명 이상의 아들을 가진 부인은 75.0%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실제 아들이 많은 경우, 그 아들로 인해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또한 ‘가정행복’을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들이 많은 부인이 높았으나 정비례하지는 않았다. 즉, 아들이 한명도 없는 부인의 49.7%, 1명의 아들을 가진 부인은 51.9%, 2명의 아들을 가진 부인은 50.8%, 3명 이상의 아들을 가진 부인의 54.8%가 ‘가정행복’과 아들을 연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비율은 정신적 만족감과 같이 높지는 않았지만 ‘가문유지’와 ‘제사’를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고 한 부인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동부지역 거주부인보다 많았으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일관성 있는 비율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15~24세 부인과 중학교 학력의 부인이 가장 많았다.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비취업부인이 취업부인에 비하여 전통적 가계계승을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현존 자녀수에 따라서는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이 가장 높았고, 현존 아들 수에 따라서는 2명의 아들을 가진 부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아들의 필요이유¹⁾

(단위: %)

특성	전통적 가계계승		자식으로부터의 도움		정신적 만족감		기타
	가문유지	제사	노후생활	경제적 도움	심리적 만족	가정 행복	
2000년	23.1	5.7	5.4	2.4	69.8	43.3	0.7
2003년	23.0	7.5	5.3	1.6	72.9	56.6	0.4
2006년	19.0	5.0	2.6	1.0	67.1	51.2	-
지역							
동부	18.7	4.7	2.5	0.9	66.4	50.6	-
읍·면부	20.4	6.3	3.3	1.4	71.0	53.9	0.2
연령							
15~24세	26.2	7.7	-	3.1	63.1	43.1	-
25~29세	22.0	6.1	1.6	1.6	66.9	45.7	-
30~34세	17.8	5.3	3.1	0.7	65.0	53.9	0.1
35~39세	16.4	3.9	3.0	0.9	65.7	53.0	-
40~44세	20.9	4.9	2.3	1.1	70.9	49.7	-
교육수준							
초교 이하	21.2	9.1	3.0	3.0	90.9	27.3	-
중학교	21.4	10.4	8.4	3.9	74.2	45.5	-
고등학교	20.0	5.5	2.2	1.0	70.0	49.2	0.1
대학 이상	17.1	3.2	2.2	0.7	61.1	55.6	-
취업여부							
취업중	18.4	4.4	2.4	1.0	66.9	52.8	-
비취업	19.5	5.5	2.8	1.0	67.3	49.5	0.1
현존자녀수							
0명	19.9	7.1	3.5	2.2	66.2	48.7	-
1명	21.3	4.2	3.2	0.6	68.3	47.3	-
2명	18.8	5.1	2.6	1.0	66.6	51.1	0.1
3명	15.0	4.1	1.3	1.2	67.5	58.9	-
4명 이상	25.8	3.2	-	-	80.6	58.1	-
현존아들수							
0명	18.4	5.6	2.5	0.9	65.6	49.7	-
1명	19.2	4.6	2.4	1.0	66.5	51.9	0.1
2명	19.6	5.3	3.4	1.1	70.2	50.8	-
3명 이상	12.5	3.1	-	3.1	75.0	54.8	-

주: 1)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1)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2)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3) 본 조사결과

3. 이상자녀수의 성 선호

성선호의 수준은 전술한 ‘아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이상자녀수가 성구분 없이 결정되는지, 아니면 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의해서도 측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전술한 이상자녀수에 대한 질문항과 함께 남아 및 여아로 구분한 질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는 남아선호가치관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실제 자녀규모를 결정하는 한 요인^{주74)}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갖기 위하여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하는 등 출생성비 불균형의 원인이고 법적 및 윤리적 측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가치관적 측면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성을 구별해서 원한다고 하여 반드시 남아를 선호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남아를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이상자녀수에 대한 성 구성을 분석한 결과, 이상자녀수를 성구별 없이 원한다는 부인은 74.4%로 나타나 2003년의 64.3%보다 10.1%포인트 증가하였다. 반면에 성 구별하여 이상자녀수를 원한다는 경우는 25.6%로 2003년의 35.6%보다 10.0%포인트 감소하였다. 따라서 상당한 수준에서 양성평등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부인의 25.6%가 남아선호에 기초한 이상자녀수를 제시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응답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심각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구별에 의한 이상자녀수를 제시한 비율을 부인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성 선호적 가치관을 가진 부인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31.6%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24.6%보다 높았다. 부인연령에 따라서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3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 성 선호적 가치관이 높았다. 즉, 40~44세 연령층 부인은 24.1%로 가장 적었으나, 15~24세 연령층 부인은 34.4%로 많았다.^{주75)} 특히, 15~24세 연령층 부인의 성 선호적 가치관이

주74) 딸을 출산한 경우 아들을 갖기 위하여 계속 출산하기도 하여 딸이 여러 명 있고 마지막 자녀는 아들인 경우가 많이 있음.

높아졌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며,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표 8-9>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이상자녀의 성구별 여부

(단위: %, 명)

특성	구별없이	구별해서	기타	계(수)
2000년 ¹⁾	57.3	42.1	0.7*	100.0(6,349)
2003년 ²⁾	64.3	35.6	0.1	100.0(6,509)
2006년 ³⁾	74.4	25.6	-	100.0(5,328)
지역				
동부	75.4	24.6	-	100.0(4,550)
읍·면부	68.4	31.6	-	100.0(778)
연령				
15~24세	65.6	34.4	-	100.0(122)
25~29세	70.6	29.4	-	100.0(626)
30~34세	74.9	25.1	-	100.0(1,415)
35~39세	74.7	25.3	-	100.0(1,648)
40~44세	75.9	24.1	-	100.0(1,517)
교육수준				
초교 이하	74.6	25.4	-	100.0(63)
중학교	68.2	31.8	-	100.0(261)
고등학교	74.2	25.8	-	100.0(2,830)
대학 이상	75.4	24.6	-	100.0(2,170)
취업여부				
취업중	75.4	24.6	-	100.0(2,632)
비취업	73.4	26.6	-	100.0(2,696)
현존자녀수				
0명	75.8	24.2	-	100.0(524)
1명	77.4	22.6	-	100.0(1,177)
2명	74.4	25.6	-	100.0(3,035)
3명	67.2	32.8	-	100.0(549)
4명 이상	69.0	31.0	-	100.0(42)

주: *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부인 포함.

자료: <표 8-8>과 동일

또한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성 선호적 가치관에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주75) 2003년에는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성 선호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5~24세 연령층 부인은 28.6%로 가장 낮았으나, 40~44세 연령층 부인은 37.2%로 가장 높았음.

중학교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이 31.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고등학교 학력수준 부인 25.8%,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 25.4%, 그리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이 24.6%이었다. 취업중인 부인의 성 선호적 가치관의 비율은 24.6%로 비취업부인(26.6%)보다 낮았고, 현존자녀수에 따라서는 대체로 자녀가 많은 부인이 성 선호적 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없는 부인은 24.2%의 성 선호적 가치관을 보였고, 3명의 자녀를 둔 부인은 32.8%,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인은 31.0%로 높았다.

제 3 절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

최근 우리사회에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은 출산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일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자녀양육 가치관은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책임한계에 의하여 파악하였다.

1.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① 규칙을 만들어 자녀들을 통제하며, 자율성은 거의 없음, ② 뚜렷한 자녀양육방법이 없으며, 많은 자율성 부여, ③ 그냥 내버려두며, 자녀들에게 요구도 반응도 보이지 않음, ④ 자녀들을 적극 지원하며, 부모의 규칙을 설명하여 이해하고 따르도록 함 등의 네 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시계열적 분석을 위하여 2003년도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주76)}

주76) 2003년 조사에서는 ‘뚜렷한 자녀양육방법이 없으며, 많은 자율성 부여’가 7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뚜렷한 자녀양육방법이 없으며, 많은 자율성 부여’가 13.5%로 뒤를 이었으며, ‘규칙을 만들어 자녀들을 통제하며, 자율성은 거의 없음’은 9.7%, 그리고 ‘자녀들을 적극 지원하며, 부모의 규칙을 설명하여 이해하고 따르도록 함’은 1.9%로 가장 낮았음(김승권 외, 2004).

15~59세 기혼가구 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부모들의 자녀양육태도를 살펴본 결과 78.7%가 ‘자녀들을 적극 지원하며, 부모의 규칙을 설명하여 이해하고 따르도록 함’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뚜렷한 자녀양육방법이 없으며, 많은 자율성 부여’가 11.6%, ‘규칙을 만들어 자녀들을 통제, 자율성 거의 없음’ 8.5%,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며, 자녀들에게 요구도 반응도 보이지 않음’ 1.1%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적절한 자녀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74.8%)가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다행스러웠다. 그렇지만 부적절한 자녀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25.2%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같이 문제점을 보이는 경우를 중심으로 그 수준을 가구특성과 가구주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지역별로 부적절한 자녀양육태도를 보인 비율이 읍·면부지역 가구가 23.9%로 동부지역 가구의 20.7%보다 높았다. 부적절한 자녀양육태도를 보인 경우가 99만원 이하의 가구는 29.5%로 300만원 이상 가구의 17.4%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2~3세대 가구는 약 19.4~20.6%가 부적절하였으나 1세대 가구는 25.7%가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보였다.

가구주의 특성은 성,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혼인상태 등으로 살펴보았다. 부적절한 자녀양육태도를 보인 비율은 여성가구주가 25.7%로 남성가구주 20.9%보다 높았다. 또한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서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대체로 젊은 연령층에서 적절한 자녀양육태도의 비율이 높았고, 고연령층에서 부적절한 자녀양육태도의 비율이 높았다. 즉, 자녀양육태도가 부적절한 비율은 50~59세 연령층이 25.9%, 60세 이상 연령층이 32.6%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적절한 자녀양육태도를 가진 비율이 높았다. 즉,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의 32.2%, 고등학교 학력수준을 가진 가구주의 20.6%, 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진 가구주의 15.9%가 부적절한 자녀양육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0〉 15~59세 기혼가구의 자녀양육태도

(단위: %, 명)

구분	① 규칙을 만들어 자녀들을 통제, 자율성 거의 없음 ② 뚜렷한 자녀양육방법이 없으며, 많은 자율성 부여 ③ 그냥 내버려두며, 자녀들에게 요구도 반응도 보이지 않음 ④ 자녀들을 적극 지원하며, 부모의 규칙을 설명하여 이해하고 따르도록 함				계(수)
	①	②	③	④	
2003년	9.7	13.5	1.9	74.8	100.0(10,147)
2006년	8.5	11.6	1.1	78.7	100.0(9,426)
지역					
동부	8.5	11.1	1.1	79.3	100.0(7,855)
읍·면부	8.6	14.0	1.3	76.1	100.0(1,571)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9.9	16.3	3.3	70.5	100.0(719)
100~199만원	9.5	15.4	1.7	73.4	100.0(1,849)
200~299만원	8.3	13.0	0.9	77.8	100.0(2,297)
300만원 이상	8.2	8.6	0.6	82.7	100.0(4,399)
가구유형					
1세대	10.7	13.3	1.7	74.3	100.0(988)
2세대	8.4	11.2	1.0	79.4	100.0(7,287)
3세대 이상	7.7	10.9	0.9	80.6	100.0(792)
가구주 성					
남성	8.7	11.2	1.0	79.2	100.0(8,557)
여성	7.4	15.9	2.4	74.3	100.0(869)
가구주 연령					
29세 이하	6.7	8.9	1.7	82.7	100.0(179)
30~39세	7.6	8.0	0.4	84.1	100.0(2,398)
40~49세	7.7	10.9	0.9	80.4	100.0(3,564)
50~59세	9.3	14.9	1.7	74.1	100.0(2,648)
60세 이상	14.0	16.2	2.4	67.5	100.0(636)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3	19.3	2.6	67.7	100.0(1,939)
고등학교	8.3	11.1	1.2	79.4	100.0(3,889)
대학 이상	7.8	7.8	0.3	84.1	100.0(3,581)
가구주 취업여부					
취업중	8.4	11.3	1.0	79.3	100.0(8,422)
비취업	9.9	13.8	2.2	74.2	100.0(1,003)
가구주 혼인상태					
유배우	8.6	10.9	0.9	79.7	100.0(8,325)
사별	7.8	18.5	1.0	72.7	100.0(384)
이혼·별거	8.6	16.2	3.9	71.3	100.0(711)

주: 1) 자녀가 있는 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1)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2) 본 조사결과

가구주의 취업에 따라서는 비취업 가구주가,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없는 가구주가 자녀양육태도의 부적절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주가 취업 중인 경우는 20.7%, 비취업 가구주는 25.8%가 부적절한 자녀양육태도를 보였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는 20.4%가 부적절한 자녀양육태도를 보였고, 사별 또는 이혼·별거 중인 가구주는 이 보다 높은 각각 27.3%, 28.7%가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보였다. 이는 한부모 가정이 아이를 돌보는데 시간적, 정신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 자녀양육 책임

자녀양육 책임의 한계에 대한 부모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최근 자녀양육으로 소자녀관이 정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자녀양육의 책임 한계를 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②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③ 취업할 때까지, ④ 혼인할 때까지, ⑤ 언제(까지)라도 등의 5가지 척도에 의하여 측정하였으며, 응답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⑥ 기타, ⑦ 생각해 보지 않음·모르겠음 등도 답변항으로 제시하였다. 시계열적 분석을 위하여 2003년도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주77)}

15~59세 기혼가구 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파악된 부모들의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대학 졸업 할 때까지’가 4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혼인할 때까지’ 27.0%, ‘취업할 때까지’ 11.9% 등의 순이었다. 이 외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8.6%, ‘언제(까지)라도’ 5.5% 등이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가족은 자녀양육의 책임을 대학 졸업 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수의 자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여 소자녀관이 정착되어 가고 있지 않나 사료된다.

주77) 2003년 조사에서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가 4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혼인할 때까지’ 32.1%, ‘취업할 때까지’ 11.5%,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8.3%, ‘언제(까지)라도’ 6.3% 등의 순이었음(김승권 외, 2004).

이를 가구와 가구주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지역별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는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가 47.5%로 높았으나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는 40.4%로 다소 낮았다. 반면에 ‘혼인할 때까지’를 책임한계라고 응답한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가구가 32.4%로 동부지역 거주가구의 25.9% 보다 높았다. 또한 ‘언제(까지)라도’ 자녀양육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가구가 6.5%로 동부지역 거주가구의 5.3% 보다 높았다.

가구소득별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99만원 이하 소득가구 40.8%, 100만원대의 소득가구 42.6%, 200만원대의 소득가구 47.6%, 300만원 이상 소득가구 47.9% 등이었다. 반면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녀양육의 책임한계가 있다는 응답은 99만원 이하 소득가구 11.8%, 100만원대의 소득가구 10.5%, 200만원대의 소득가구 8.5%, 300만원 이상 소득가구 7.4% 등이었다. 또한 ‘혼인할 때까지’ 자녀양육 책임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99만원 이하 소득가구가 29.4%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대의 소득가구는 25.9%로 가장 적었다. 평생 자녀양육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인 ‘언제(까지)라도’의 비율은 100~199만원 소득가구가 6.4%로 가장 많았고, 200~299만원의 소득가구는 4.8%로 적었다. 따라서 소득이 높으면 자녀양육의 책임이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넓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보편적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자녀양육의 책임을 ‘대학 졸업 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1세대 가구 39.7%, 2세대 가구 47.7%, 3세대 가구 이상 48.4%이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모든 가구유형의 응답자가 ‘혼인할 때까지’(각각 31.1%, 26.5%, 24.2)이었으며, 그리고 ‘언제(까지)라도’ 자녀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경우는 1세대 가구가 5.7%로 가장 높았고, 2세대 5.5%, 3세대 5.0%로 나타나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의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가 4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혼인할 때까지’ 26.9%이었다. 마찬가지로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에도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와 ‘혼인할 때

까지'의 비율이 높아 각각 44.2%, 28.2%이었다. 그리고 언제(까지)라도 자녀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경우도 남성가구주 5.6%, 여성가구주 5.1%로 유사하였다.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서는 대체로 가구주 연령이 높은 경우 자녀양육 책임한계가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혼인할 때까지'를 자녀양육 책임한계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41.8%이었으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라고 응답한 경우는 다른 연령층보다는 낮은 33.5%이었다. 또한 관심을 끄는 연령층은 가구주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을 책임한계로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18.6%나 되었고, 반대로 '취업할 때까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8.1%이었다. 또한 젊은 연령층의 가구주는 '언제(까지)라도' 자녀양육 책임을 가진다는 비율이 다른 어느 연령층보다 높은 8.4%를 나타냈다.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층 가구주의 37.2%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를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라 하였고, 다음으로 '혼인할 때까지'가 36.5%이었다. 반면에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는 49.1%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를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라고 하였고, 23.8%는 '혼인할 때까지'를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언제(까지)라도'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를 제시한 경우는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가구주와 중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가구주가 모두 5.7%이었고,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가구주는 미미하나마 낮은 5.2%이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와 '혼인할 때까지'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라고 응답한 경우는 가구주가 취업중인 경우 각각 47.0%, 26.4%이었고, 가구주가 비취업인 경우는 각각 40.9%, 31.8%이었다. 그리고 '언제(까지)라도' 자녀양육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가구주가 취업 중인 경우는 5.4%이었고, 비취업 중인 경우는 6.5%로 차이를 보였다.

〈표 8-11〉 15~59세 기혼가구의 자녀양육 책임한계

(단위: %, 명)

구분	①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④혼인할 때까지	②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⑤언제(까지)라도	③취업할 때까지 ⑥기타	⑦생각해 보지 않음·모르겠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2003년	8.3	40.2	11.5	32.1	6.3	0.6	1.0	100.0(11,106)
2006년	8.6	46.3	11.9	27.0	5.5	0.1	0.5	100.0(10,117)
지역								
동부	8.7	47.5	11.8	25.9	5.3	0.2	0.6	100.0(8,460)
읍·면부	8.0	40.4	12.3	32.4	6.5	0.1	0.4	100.0(1,656)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1.8	40.8	11.2	29.4	5.4	0.1	1.2	100.0(803)
100~199만원	10.5	42.6	10.7	29.0	6.4	-	0.8	100.0(2,015)
200~299만원	8.5	47.6	12.7	25.9	4.8	0.1	0.4	100.0(2,466)
300만원 이상	7.4	47.9	12.1	26.4	5.6	0.2	0.3	100.0(4,660)
가구유형								
1세대	10.8	39.7	11.6	31.1	5.7	0.3	0.9	100.0(1,515)
2세대	8.0	47.7	11.8	26.5	5.5	0.1	0.4	100.0(7,362)
3세대 이상	8.3	48.4	13.5	24.2	5.0	0.1	0.4	100.0(793)
가구주 성								
남성	8.4	46.6	12.0	26.9	5.6	0.1	0.5	100.0(9,181)
여성	10.3	44.2	11.2	28.2	5.1	0.1	0.9	100.0(935)
가구주 연령								
29세 이하	18.6	42.2	8.1	21.9	8.4	0.3	0.6	100.0(334)
30~39세	13.3	50.1	9.5	19.5	6.6	0.2	0.8	100.0(2,730)
40~49세	7.3	52.7	12.2	23.1	4.1	0.1	0.4	100.0(3,701)
50~59세	5.1	37.4	14.5	36.9	5.5	0.1	0.5	100.0(2,708)
60세 이상	5.7	33.5	11.2	41.8	7.3	-	0.5	100.0(644)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3	37.2	12.8	36.5	5.7	0.1	0.4	100.0(2,016)
고등학교	8.3	48.1	12.4	25.4	5.2	0.1	0.5	100.0(4,131)
대학 이상	9.5	49.1	11.0	23.8	5.7	0.2	0.7	100.0(3,953)
가구주 취업여부								
취업중	8.6	47.0	11.9	26.4	5.4	0.1	0.5	100.0(9,040)
비취업	8.2	40.9	11.8	31.8	6.5	-	0.8	100.0(1,076)
가구주 혼인상태								
유배우	8.3	46.5	12.0	27.0	5.6	0.1	0.5	100.0(8,914)
사별	9.1	37.1	14.5	33.2	5.3	0.3	0.5	100.0(394)
이혼·별거	11.5	48.4	10.0	23.8	4.9	0.2	1.1	100.0(801)

주: 1) 기타에는 아들은 군대 제대까지, 딸은 결혼할 때까지 또는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대학 입학 때까지, 자녀가 원하는 수준의 교육이 끝날 때까지 등이 있음.

자료: <표 8-10>과 동일

가구주가 유배우 상태인 경우에는 자녀양육의 책임한계에 대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가 4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혼인할 때까지’로 27.0%이었다. 가구주의 혼인상태가 사별인 경우에는 자녀양육 책임한계에 대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가 37.1%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혼인할 때까지’로 33.2%이었다. 그리고 가구주의 혼인상태가 이혼·별거인 경우에는 자녀양육 책임한계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가 48.4%로 가장 높았고, ‘혼인할 때까지’는 23.6%로 다른 혼인상태 가구보다 낮았으며, 반면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라고 응답한 경우가 11.5%로 다른 혼인상태의 가구주 가구보다 높았다.

제 4 절 혼인가치관의 변화

결혼에 대한 인식은 그 사회의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 그리고 개인에 따라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결혼형태는 다양성을 지닌다(Kwon, 1997; 이삼식 외, 2006 재인용). 결혼관도 가족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생활능력이 있고 불편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식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양성평등 의식과 기존의 가부장제적 가족의식 사이의 지체현상이 커져 미혼의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통한 가족구성이 더 이상 필수가 아니며, 매력적인 유인도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이 지배적이어서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으며,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욕구와 의사보다는 가족 전체의 유지와 결속을 중시하여 이혼은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었다. 그러나 산업화 사회로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의 증가, 개인주의의 가치관 팽배, 여성의 사회진출 급증 등으로 전통적 가족중심 가치관에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의 약화 등으로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혼의 증가와 함께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점차 변화되어 이혼은 부부갈등을 해결하고, 부부간의 합리적인 삶을 찾는 방법 중의 하나라는 인

식이 증가하고 있다(변화순, 1996). 이와 함께 재혼에 관해서도 허용적인 태도를 보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재혼을 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그에 따른 높은 미혼율, 초혼 연령의 상승 등이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혼인가치관 변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혼인가치관

본 조사결과에 의해 15세 이상 기혼여성들의 결혼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를 살펴보면, ‘반드시 해야 한다’ 27.9%, ‘하는 편이 좋다’ 29.8%로 57.7%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외에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38.2%, 그리고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부정적인 태도는 4.0%이었다. 이를 2000년 및 2003년과 비교하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는 2000년 26.2%에서 2003년에는 25.7%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6년에는 27.9%로 증가양상을 보였고, ‘하는 편이 좋다’는 긍정적 태도는 같은 연도에 29.4%에서 28.7%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29.8%로 증가하였으며,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2000년 38.2%에서 2003년 37.1%로, 그리고 2006년에 다시 38.2%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부정적인 태도는 2000년 5.4%에서 2003년 7.9%로 증가하였다가 2006년 4.0%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부인의 특성별로 보면, 지역별로는 결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 모두 동부지역 보다는 읍·면부지역에서 높았고, 긍정적인 태도와 소극적인 태도는 동부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인의 연령별로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는 30대까지는 점차 감소하다가 40대부터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었으며, 특히 50세 이상은 45.9%나 되었다. ‘하는 편이 좋다’는 긍정적인 태도는 25~29세 연령층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

아도 좋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30대 초반까지는 점차 증가하여 47.0%까지 증가하였으나 35세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하여 50세 이상은 25.8%까지 낮아졌다. 결혼에 대한 강한 부정적 태도인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응답한 부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특히 40대가 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중년 부인의 경우 가사,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의 부담으로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8-12〉 여성특성별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해야 함	하는 편이 좋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됨	하지 않는 편이 좋음	모르 겠음	계(수)
2000년 ¹⁾	26.2	29.4	38.2	5.4	0.8	100.0(10,601)
2003년 ²⁾	25.7	28.7	37.1	7.9	0.7	100.0(11,145)
2006년 ³⁾	27.9	29.8	38.2	4.0	-	100.0(9,693)
지역						
동부	27.1	30.3	38.8	3.7	-	100.0(8,486)
읍·면부	32.2	27.4	35.1	5.3	-	100.0(1,659)
연령						
15~24세	28.5	35.8	35.0	0.8	-	100.0(123)
25~29세	24.4	38.1	35.3	2.2	-	100.0(635)
30~34세	18.0	32.4	47.0	2.6	-	100.0(1,460)
35~39세	16.9	32.1	46.9	4.1	-	100.0(1,779)
40~44세	22.5	31.3	41.2	4.9	-	100.0(1,683)
45~49세	29.9	28.1	37.1	4.9	-	100.0(1,664)
50세 이상	45.9	24.2	25.8	4.1	-	100.0(2,348)
교육수준						
초교 이하	43.4	25.3	25.3	6.0	-	100.0(1,086)
중학교	39.3	26.9	28.6	5.2	-	100.0(1,359)
고등학교	24.7	28.8	42.2	4.3	-	100.0(4,489)
대학 이상	21.6	34.8	41.7	1.9	-	100.0(2,742)
결혼상태						
유배우	28.3	30.6	37.6	3.5	-	100.0(8,862)
사별	39.4	25.0	30.5	5.2	-	100.0(348)
이혼·별거	12.9	19.8	55.6	11.7	-	100.0(480)
현 취업여부						
취업중	28.6	28.3	38.5	4.6	-	100.0(5,033)
비취업	27.2	31.5	38.0	3.3	-	100.0(4,657)

자료: <표 8-8>과 동일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이 높아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이 초등학교 이하 학력의 부인들은 43.4%이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대학 이상 학력의 부인들은 21.6%이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 결혼에 대한 절대적 가치는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학력이 낮은 층에서도 높게 나타나 연령에 따른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결혼상태별로는 결혼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는 사별인 경우 가장 높았고, 이혼·별거의 경우 가장 낮았으며, ‘하는 편이 좋다’는 긍정적인 태도는 유배우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사별, 이혼·별거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적극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태도를 모두 포함할 경우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사별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64.4%)을 보였다. 이 외 ‘해도 좋지 않아도 좋다’와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태도는 이혼·별거의 경우 가장 높아 결혼상태별 결혼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별부인의 경우 고연령층일 가능성이 높아 유배우자나 이혼·별거부인들 보다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혼·별거부인의 경우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본인 결혼의 실패 경험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부인보다 비취업 부인이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소극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는 비취업 부인보다 취업부인이 약간 높았다. 이는 아직까지 기혼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이나 국가의 지원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2. 이혼가치관

이혼이란 법률상으로 완전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당사자인 부와 처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해소시킴으로써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일체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Elliot의 정의에 의하면, 이혼은 결혼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불행한 결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행복한 결혼생활로 대처하려는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다(Lamanna & Riedmann, 1991; 이소희 외, 1998 재인용).

이혼에 대한 태도는 이혼에 관하여 개인이 지향한 가치관 및 관념, 신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혼에 대한 태도는 이혼에 대한 개인의 행위방향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혼태도의 변화에 따라 이혼의 증감을 예측할 수 있다. 이혼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는 결혼해체를 반대하는 힘으로 작용하여 결혼의 결속력을 증가시키며, 이혼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는 결혼해체를 찬성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최근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서 허용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는 이혼증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이소희 외, 1998).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혼의 원인이 가치관의 변화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인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인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는 ‘가급적 또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비율이 2000년에는 52.8%이었으나 2003년에는 50.4%로 감소하였고 2006년에는 50.8%로 약간 증가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는 이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은 2000년 30.2%, 2003년 30.3%, 그리고 2006년 34.8%로 증가하였고,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와 ‘이유가 있으면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03년에는 18.6%로 3.1%포인트 증가하였으며, 2006년 13.8%로 2003년에 비해 4.8%포인트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이혼을 수용하는 부인의 비율은 2000년 45.7%에서 2003년 48.9%로, 그리고 2006년 48.6%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부인의 특성별 이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이유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는 긍정적인 태도는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 보다 높았으며, 반대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동부지역보다 읍·면부지역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이유가 있을 경우 하는 편이 좋다’는 태도가 높았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혼은 ‘가급적 또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태도는 34세 이하 연령층에서 감소하다가 35~39세 연령층부터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

하여 50세 이상 연령층 부인은 64.3%나 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는 태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는 허용적인 태도까지 포함할 경우 초등학교 이하는 32.7%이었으나 대학이상은 54.2%로 학력이 높을수록 이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는 반대로 ‘가급적 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는 학력이 낮을수록 높았다.

〈표 8-13〉 여성특성별 이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이유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음	가급적 해서는 안됨	절대로 해서는 안됨	모르겠음	계(수)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	하는 것이 좋음					
2000년	3.3	12.2	30.2	38.0	14.8	1.4	100.0(10,598)
2003년	3.3	15.3	30.3	36.2	14.2	0.7	100.0(11,145)
2006년	2.2	11.6	34.8	40.8	10.0	0.5	100.0(9,693)
지역							
동부	2.3	11.9	35.4	40.7	9.3	0.5	100.0(8,124)
읍·면부	2.2	10.1	31.4	41.7	14.1	0.6	100.0(1,569)
연령							
15~24세	2.5	13.9	36.1	36.1	9.8	1.6	100.0(122)
25~29세	2.4	14.5	38.0	38.2	6.0	0.9	100.0(634)
30~34세	4.1	12.5	40.2	36.2	6.3	0.6	100.0(1,461)
35~39세	2.2	13.6	41.1	36.6	6.1	0.4	100.0(1,779)
40~44세	2.1	10.9	36.6	40.5	9.1	0.7	100.0(1,685)
45~49세	2.3	11.6	33.5	42.3	9.7	0.5	100.0(1,661)
50세 이상	1.1	9.1	25.1	47.1	17.2	0.4	100.0(2,348)
교육수준							
초교 이하	1.2	8.3	23.2	47.5	19.0	0.8	100.0(1,087)
중학교	1.5	10.4	28.6	45.5	13.7	0.3	100.0(1,359)
고등학교	2.6	11.7	37.2	39.1	8.8	0.6	100.0(4,488)
대학 이상	2.5	13.4	38.3	38.7	6.6	0.5	100.0(2,742)
결혼상태							
유배우	2.1	11.0	34.9	41.4	10.2	0.5	100.0(8,862)
사별	0.9	11.7	25.8	44.7	15.8	1.1	100.0(349)
이혼·별거	6.4	23.1	39.1	27.7	2.9	0.8	100.0(481)
현 취업여부							
취업중	2.6	11.5	34.6	39.7	11.0	0.6	100.0(5,033)
비취업	1.9	11.7	35.0	42.0	9.0	0.5	100.0(4,658)

자료: <표 8-8>과 동일

결혼상태별로도 차이를 보여 이혼에 찬성하거나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이혼·별거부인이 가장 높아 68.6%이었으며, 사별부인의 경우 가장 낮아 38.4%이었다. ‘가급적 해서는 안된다’는 비율과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부정적인 태도는 사별부인이 60.5%로 가장 높았으며, 이혼·별거부인은 30.6%로 가장 낮았다. 이는 사별부인의 경우 고연령층으로 결혼, 이혼 등에 관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며, 또한 이혼·별거부인은 본인들이 이혼을 경험했거나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로 이혼에 대해 유배우나 사별부인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취업여부별로는 비취업부인이 취업부인보다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취업부인의 경우 비취업상태에서 이혼을 했을 경우 부인이 가구의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3. 재혼가치관

재혼은 사별이나 이혼·별거로 인해 결혼의 해체경험이 있는 성인남녀의 재결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혼을 한 경험이 있는 부부 중 한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가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한 것을 의미한다.

재혼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전체 부인의 18.3%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는 적극적 또는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52.1%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외 26.2%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를 2000년과 2003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재혼에 대해 적극적이거나 긍정적 태도는 2000년 16.8%, 2003년 20.7%, 2006년에 18.3%로 감소한 반면, 소극적인 태도는 2000년 46.5%, 2003년 47.2%, 그리고 2006년에는 52.1%로 증가하였다. 부정적인 태도는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낮아지고 있어(2000년 30.3%, 2003년 27.4%, 2006년 26.2%) 재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및 적극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부인의 특성별 재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재혼에 관해 적극

적이거나 긍정적인 태도는 동부지역보다 읍·면부지역이 높았으나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높았다. 이 외 부정적인 태도는 동부지역(25.5%)보다 읍·면부지역(30.0%)이 높았다.

〈표 8-14〉 여성특성별 재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	하는 것이 좋음	해도 되고 안해도 됨	하지 않는 것이 좋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함	모르겠음	계(수)
2000년	0.7	16.1	46.5	23.7	6.6	6.3	100.0(10,590)
2003년	0.8	19.9	47.2	21.5	5.9	4.6	100.0(11,127)
2006년	0.5	17.8	52.1	22.7	3.5	3.5	100.0(9,680)
지역							
동부	0.5	17.4	53.2	22.2	3.3	3.5	100.0(8,114)
읍·면부	0.8	19.6	46.2	25.5	4.5	3.3	100.0(1,566)
연령							
15~24세	0.8	19.5	60.2	13.8	3.3	2.4	100.0(123)
25~29세	0.6	17.8	62.6	12.0	1.4	5.5	100.0(634)
30~34세	0.3	15.4	62.7	15.6	2.7	3.3	100.0(1,458)
35~39세	0.6	14.1	58.4	20.4	2.9	3.6	100.0(1,776)
40~44세	0.4	16.5	52.0	24.8	2.7	3.6	100.0(1,683)
45~49세	0.4	17.4	47.9	27.3	4.2	2.8	100.0(1,661)
50세 이상	0.8	23.2	40.4	27.5	4.9	3.3	100.0(2,344)
교육수준							
초교 이하	0.6	20.1	36.7	32.4	5.7	4.4	100.0(1,087)
중학교	0.6	20.6	42.6	27.9	5.0	3.3	100.0(1,357)
고등학교	0.5	17.0	52.2	23.5	3.5	3.4	100.0(4,481)
대학 이상	0.5	16.7	62.8	15.0	1.8	3.3	100.0(2,741)
결혼상태							
유배우	0.6	18.0	52.7	21.9	3.4	3.5	100.0(8,851)
사별	0.3	16.9	41.8	33.2	4.6	3.2	100.0(349)
이혼·별거	0.2	14.3	48.2	29.1	4.6	3.5	100.0(481)
현 취업여부							
취업중	0.5	17.6	50.5	24.1	3.7	3.6	100.0(5,026)
비취업	0.5	17.9	53.8	21.2	3.2	3.3	100.0(4,654)

자료: <표 8-8>과 동일

연령별로는 재혼에 관해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는

태도는 25~29세 연령층에서는 20.3%이었고, 35~39세 연령층에서는 14.7%로 낮아졌으나, 40세 이후 연령층에서부터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50세 이상 연령층은 24.0%이었다. 그러나 재혼에 대해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졌으며,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태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도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재혼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소극적 태도는 고학력층 일수록 높았으며,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저학력층 일수록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재혼에 대한 적극적, 긍정적인 태도는 유배우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사별, 이혼·별거 등의 순이었다. 재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사별한 부인(37.8%)이 유배우부인(25.3%)이나 이혼·별거중인 부인(33.7%)보다 높았다.

이는 사별부인들이 현재 유배우 또는 이혼·별거중인 부인들 보다 고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혼에 대해서 전통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부인(27.8%)이 비취업부인(24.4%)보다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높았다.

4. 남녀별 적정 결혼연령

15세 이상 기혼가구의 여자응답자의 남자의 적정 결혼연령은 30~34세가 55.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25~29세로 41.8%이었다. '결혼적령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응답도 미미하나마 나타났다(0.1%). 여자응답자가 생각하는 남자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은 30.09세 이었다.

여자응답자의 특성별 남자의 적정 결혼연령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읍·면부지역 모두 30~34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동부지역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9세 이하는 30~34세를 남자의 적정 결혼연령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29세 이하: 65.2%, 30~39세: 63.1%), 25~29세를 지적한 비율은 각각 29세 이하 32.1%와 30~39세 32.6%에 불과하였으나, 40세 이상은 25~29세와 30~34세 간에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는 25~29세가 남자의 적정 결혼연령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1%로 가장 높았으나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는 30~34세가 남자의 적정 결혼연령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고학력자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자와 이혼·별거자는 30~34세를, 사별자는 25~29세를 남자의 적정 결혼연령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현 취업여부별로는 모두 30~34세가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비취업자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았다.

〈표 8-15〉 여성특성별 '남자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세)

특성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기타 ¹⁾	계(수)	평균
전체	0.2	41.8	55.7	2.2	0.1	100.0(8,704)	30.09
지역							
동부	0.2	40.9	56.5	2.3	0.1	100.0(7,314)	30.17
읍·면부	0.2	46.7	51.4	1.7	0.0	100.0(1,390)	29.68
연령							
29세 이하	0.2	32.1	65.2	2.6	0.0	100.0(664)	30.45
30~39세	0.3	32.6	63.1	4.0	0.1	100.0(3,032)	30.45
40~49세	0.2	49.1	49.2	1.3	0.2	100.0(3,060)	29.72
50세 이상	0.3	48.0	48.0	0.7	0.0	100.0(1,951)	30.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2	53.1	45.9	0.8	0.0	100.0(2,087)	29.74
고등학교	0.3	42.5	55.0	2.1	0.1	100.0(4,072)	30.03
대학 이상	0.4	31.3	64.8	3.6	0.2	100.0(2,534)	30.48
결혼상태							
유배우	0.2	41.2	56.3	2.2	0.1	100.0(7,889)	30.00
사별	0.3	53.5	45.3	0.9	0.0	100.0(344)	30.46
이혼·별거	0.2	43.6	53.4	2.8	0.0	100.0(472)	31.28
현 취업여부							
취업중	0.3	43.3	54.3	2.0	0.1	100.0(4,420)	29.97
비취업	0.2	40.2	57.1	2.4	0.1	100.0(4,285)	30.22

주: 1) 결혼적령기 따로 있는 것이 아님

15세 이상 기혼가구의 여자응답자의 여자의 적정 결혼연령은 25~29세가 77.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30~34세가 16.1%로 남자의 적정 결혼연령

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적령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남자 적정 결혼연령과 마찬가지로 0.1%이었다. 여자응답자가 생각하는 여자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은 27.69세 이었다.

여자응답자의 특성별 여자의 적정 결혼연령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읍·면부지역 모두 25~29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읍·면부지역의 경우 비율이 높았다. 30세 이상은 동부지역 16.9%, 읍·면부지역 13.6%로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 보다 여자의 적정 결혼연령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16〉 여성특성별 ‘여자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세)

특성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기타 ¹⁾	계(수)	평균
전체	6.3	77.2	16.1	0.3	0.1	100.0(8,705)	27.69
지역							
동부	0.2	77.0	16.6	0.3	0.1	100.0(7,315)	27.77
읍·면부	0.2	78.3	13.5	0.1	0.0	100.0(1,390)	27.26
연령							
29세 이하	5.0	76.7	18.2	0.2	0.0	100.0(664)	27.74
30~39세	5.1	72.6	21.8	0.5	0.1	100.0(3,032)	27.96
40~49세	7.4	79.1	13.2	0.1	0.2	100.0(3,058)	27.46
50세 이상	7.0	81.8	11.1	0.1	0.0	100.0(1,949)	27.6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9.1	80.9	10.0	0.0	0.0	100.0(2,087)	27.37
고등학교	6.9	78.2	14.7	0.2	0.1	100.0(4,071)	27.59
대학 이상	3.2	72.6	23.4	0.6	0.2	100.0(2,534)	28.12
결혼상태							
유배우	6.1	77.1	16.4	0.2	0.1	100.0(7,890)	27.60
사별	10.2	81.9	7.9	0.0	0.0	100.0(343)	28.13
이혼·별거	6.2	75.4	17.8	0.6	0.0	100.0(471)	28.92
현 취업여부							
취업중	6.7	77.2	15.8	0.3	0.1	100.0(4,420)	27.59
비취업	6.0	77.3	16.5	0.2	0.1	100.0(4,285)	27.80

주: 1) 결혼적령기 따로 있는 것이 아님

연령별로는 전체적으로 25~29세를 여자의 적정 결혼연령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특히 40대 이후 연령층에서 더 높았다. 이에 비해 30세 이상을 여자의 적정 결혼연령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 연령간의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29세 이하를 여자의 적정 결혼연령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고, 30세 이상을 여자의 적정 결혼연령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낮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사별인 경우 25~29세를 여자의 적정 결혼연령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1.9%로 가장 높았으며, 24세 이하까지 포함할 경우 92.1%가 20대 이하가 여자의 적정 결혼연령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비해 유배우자와 이혼·별거는 30세 이후를 여자의 적정 결혼연령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현 취업여부별로는 모두 25~29세가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비취업자는 30세 이후를 여자의 적정 결혼연령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취업자 보다 높은 편이었다.

15세 이상 기혼가구의 남자응답자가 인식하고 있는 남자의 적정 결혼연령은 25~29세가 58.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그 다음은 30~34세로 38.8%이었다. 남자응답자가 생각하는 남자의 평균 적정결혼연령은 29.78세 이었다.

남자응답자의 특성별 남자의 적정 결혼연령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읍·면부지역 모두 25~29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읍·면부지역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9세 이하는 30~34세를 남자의 적정 결혼연령으로 지적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29세 이하 52.1%, 30~39세 49.8%), 40세 이상은 25~29세를 남자의 적정 결혼연령으로 지적인 비율이 가장 높았다(40~49세 54.6%, 50세 이상 66.7%).

교육수준별로는 25~29세가 남자의 적정 결혼연령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저학력층일수록 높았고, 그 다음은 30~34세로 이는 고학력층일수록 점차 높은 비율이었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자, 이혼·별거, 사별 순으로 25~29세를 남자의 적정 결혼연령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현 취업여부별로는 모두 25~29세를 남자의 적정 결혼연령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취업자가 비취업자 보다 약간 높은 비율이었고, 30~34세가 남자의 적절한 결혼연령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취업자 보다는 비취업자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았다.

<표 8-17> 남성특성별 '남자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세)

특성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기타 ¹⁾	계(수)	평균
전체	1.2	58.7	38.8	1.2	0.1	100.0(1,334)	29.78
지역							
동부	0.9	58.5	39.2	1.4	0.0	100.0(1,076)	29.95
읍·면부	2.3	59.7	37.2	0.4	0.4	100.0(258)	29.06
연령							
29세 이하	2.1	45.8	52.1	0.0	0.0	100.0(48)	29.06
30~39세	0.4	47.1	49.8	2.6	0.0	100.0(227)	30.14
40~49세	1.1	54.6	42.7	1.6	0.0	100.0(438)	29.87
50세 이상	1.6	66.7	31.0	0.5	0.2	100.0(622)	29.6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	64.3	33.6	0.5	0.0	100.0(384)	29.65
고등학교	1.1	60.8	36.8	1.3	0.0	100.0(544)	29.47
대학 이상	1.0	50.6	46.4	1.7	0.2	100.0(403)	30.34
결혼상태							
유배우	1.2	59.6	37.9	1.2	0.1	100.0(984)	29.48
사별	0.0	52.5	47.5	0.0	0.0	100.0(40)	29.13
이혼·별거	1.6	56.6	40.5	1.3	0.0	100.0(311)	30.78
현 취업여부							
취업중	1.2	58.9	38.8	1.2	0.0	100.0(1,111)	29.90
비취업	1.3	57.8	39.0	1.3	0.4	100.0(223)	29.16

주: 1) 결혼적령기 따로 있는 것이 아님

다음의 <표 8-18>은 남자응답자의 특성별 여자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해 살펴본 결과이다. 전체적으로는 25~29세가 여자의 적정 결혼연령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74.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그 다음은 24세 이하 16.8%, 30~34세 8.2% 등의 순이었으며 여자의 평균 결혼적령은 27.28세이었다.

남자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읍·면부지역 모두 25~29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24세 이하이었다. 20대 이하를 여자의 적정 결혼연령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높았으며 30세 이상은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 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전체적으로 25~29세를 여자의 적정 결혼연령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0~39세를 제외한 전체 연령층에서 24

세 이하를 여자의 적정 결혼연령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30~39세는 30~34세를 여자의 적정 결혼연령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아 다른 연령층과 차이를 보였다.

〈표 8-18〉 남성특성별 ‘여자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세)

특성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기타 ¹⁾	계(수)	평균
전체	16.8	74.6	8.2	0.3	0.1	100.0(1,333)	27.28
지역							
동부	16.7	74.1	9.0	0.2	0.0	100.0(1,075)	27.44
읍·면부	17.4	76.7	4.7	0.8	0.4	100.0(258)	26.61
연령							
29세 이하	14.9	76.6	6.4	2.1	0.0	100.0(47)	26.69
30~39세	11.5	76.2	11.9	0.4	0.0	100.0(227)	27.42
40~49세	18.5	71.2	9.8	0.5	0.0	100.0(437)	27.32
50세 이상	17.7	76.4	5.8	0.0	0.2	100.0(622)	27.2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8.0	75.2	6.8	0.0	0.0	100.0(383)	27.48
고등학교	20.0	71.5	7.9	0.6	0.0	100.0(544)	26.86
대학 이상	11.1	78.5	9.9	0.2	0.2	100.0(404)	27.69
결혼상태							
유배우	16.7	75.1	7.9	0.2	0.1	100.0(982)	26.99
사별	5.0	85.0	10.0	0.0	0.0	100.0(40)	26.57
이혼·별거	18.6	71.7	9.0	0.6	0.0	100.0(311)	28.28
현 취업여부							
취업중	16.6	74.7	8.4	0.3	0.0	100.0(1,112)	27.35
비취업	17.6	73.9	7.7	0.5	0.5	100.0(222)	26.96

주: 1) 결혼적령기 따로 있는 것이 아님.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29세 이하를 여자의 적정 결혼연령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30세 이상을 여자의 적정 결혼연령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사별인 경우 25~29세를 여자의 적정 결혼연령이라는 비율이 85.0%로 가장 높았으며, 24세 이하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유배우자가 20대 이하를 여자의 적정 결혼연령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현 취업여부별로는 모두 25~29세가 가장 비율이 높았으나, 취

업자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았고, 30세 이후를 여자의 적정 결혼연령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취업자가 비취업자 보다 높은 편이었다.

5. 본인 결혼연령의 적절성 여부 및 그 이유

여성응답자의 특성별 본인의 결혼연령 적절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적절했다’는 응답은 44.2%이었으며, ‘빨랐다’고 응답한 경우는 36.2%, 그리고 ‘늦었다’ 19.5%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은 ‘적절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5.1%로 가장 높았고, 읍·면부지역은 ‘빨랐다’는 비율이 42.4%로 가장 높았다.

〈표 8-19〉 여성특성별 ‘본인의 결혼연령 적절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빨랐음	적절했음	늦었음	모름	계(수)
전체	36.2	44.2	19.5	0.1	100.0(8,743)
지역					
동부	35.0	45.1	19.7	0.1	100.0(7,350)
읍·면부	42.4	39.4	18.0	0.1	100.0(1,393)
초혼연령					
15~19세	86.7	13.3	0.0	0.0	100.0(113)
20~24세	62.6	32.3	5.0	0.1	100.0(1,469)
25~29세	34.2	50.3	15.5	0.1	100.0(5,118)
30세 이상	18.6	39.4	41.8	0.2	100.0(1,96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6.7	36.6	16.6	0.1	100.0(2,102)
고등학교	36.0	44.0	19.9	0.1	100.0(4,087)
대학 이상	28.0	50.8	21.1	0.1	100.0(2,543)
결혼상태					
유배우	35.1	45.0	19.8	0.1	100.0(7,919)
사별	43.0	40.4	16.3	0.3	100.0(349)
이혼·별거	49.8	33.5	16.3	0.4	100.0(478)
현 취업여부					
취업중	37.6	44.1	18.1	0.2	100.0(4,436)
비취업	34.8	44.3	20.8	0.1	100.0(4,307)

초혼연령별로는 19세 이하에 결혼한 여성응답자는 86.7%가, 그리고 20~24세

에 결혼한 응답자의 62.6%가 ‘빨랐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25~29세에 결혼한 여성의 경우에는 50.3%가 ‘적절했다’고 응답하였으며, 30세 이상에 결혼한 여성은 ‘늦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1.8%로 가장 높아 초혼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 학력자는 ‘빨랐다’가 46.7%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학력자와 대학이상 학력자는 ‘적절했다’가 각각 44.0%와 50.8%로 가장 높았다. 즉, 학력이 낮을수록 본인의 결혼연령이 ‘빨랐다’가 높은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늦었다’가 높게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자는 ‘적절했음’(45.0%)이 가장 높았으나, 사별과 이혼·별거자는 ‘빨랐음’이 가장 높았다(사별 43.0%, 이혼·별거 49.8%). 취업여부별로는 ‘적절했다’가 각각 취업자 44.1%, 비취업자 44.3%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남자응답자의 특성별 본인 결혼연령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본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남자응답자의 39.8%가 본인 결혼연령이 ‘적절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은 늦었다 36.3%, 빨랐음 23.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동부지역은 ‘빨랐다’가 읍·면부지역 보다 다소 높았고, 읍·면부지역은 ‘늦었다’가 동부지역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초혼연령별로는 19세 이하에 결혼한 경우에는 모두 ‘빨랐다’고 응답하였으며, 20~24세 결혼한 경우에는 68.1%가 ‘빨랐다’고 하였고, 25~29세는 ‘빨랐다’가 15.4%인데 비해 ‘늦었다’는 29.6%이었으며, 초혼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늦었다’가 82.6%로 매우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의 본인의 결혼연령에 대해 ‘빨랐다’가,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은 ‘적절했다’가 가장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본인의 결혼연령이 ‘적절했다’는 응답이 모두 가장 높아 유배우 41.0%, 사별과 이혼·별거가 각각 36.6%이었으며, ‘늦었다’는 유배우자가, 그리고 ‘빨랐다’는 사별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중인 경우는 ‘적절했다’가, 비취업중인 남성은 ‘늦었다’가 가장 높았다.

〈표 8-20〉 남성특성별 ‘본인의 결혼연령 적절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빨랐음	적절했음	늦었음	모름	계(수)
전체	23.5	39.8	36.3	0.4	100.0(1,343)
지역					
동부	23.8	39.9	36.0	0.4	100.0(1,084)
읍·면부	22.4	39.8	37.5	0.4	100.0(259)
초혼연령					
19세 이하	100.0	0.0	0.0	0.0	100.0(20)
20~24세	68.1	29.6	2.3	0.0	100.0(260)
25~29세	15.4	54.6	29.6	0.4	100.0(751)
30세 이상	1.3	15.8	82.6	0.3	100.0(31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4.7	35.0	39.8	0.5	100.0(389)
고등학교	25.8	39.7	34.4	0.0	100.0(546)
대학 이상	19.7	44.6	35.0	0.7	100.0(506)
결혼상태					
유배우	22.0	41.0	36.9	0.1	100.0(990)
사별	29.3	36.6	34.1	0.0	100.0(41)
이혼·별거	27.4	36.6	34.7	1.3	100.0(314)
현 취업여부					
취업중	23.7	41.3	34.6	0.4	100.0(1,121)
비취업	22.8	32.1	44.6	0.4	100.0(224)

결혼연령이 ‘빨랐다’는 여자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배우자의 요구로’ 36.1%, ‘특별한 이유 없음’ 26.0%, ‘집안어른의 권유’ 24.6%, ‘임신이 되어서’ 11.7%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은 ‘배우자의 요구’ 36.9%, ‘특별한 이유 없음’ 26.4%, ‘집안어른의 권유로’ 23.1%, ‘임신이 되어서’ 12.0% 등의 순이었으나, 읍·면부지역은 ‘배우자의 요구’와 ‘집안어른의 권유’가 각각 32.2%와 31.0%로 높았으며, ‘배우자의 요구’는 동부지역에서, 그리고 ‘집안어른의 권유’는 읍·면부지역에서 더 높았다. 이 외에도 ‘임신이 되어서’가 읍·면부지역보다 동부지역에서 더 높았다.

초혼연령별로는 모두 ‘배우자의 요구’가 조기결혼의 주요 이유이었으며, 20~

24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기결혼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25~29세를 제외한 전체 연령층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이 주요 이유이었으나 25~29세는 ‘집안어른의 권유로’ 이른 결혼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임신이 되어서’도 전체 연령층에서 높았는데, 특히 20~24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21〉 여성특성별 결혼을 빨리한 이유¹⁾

(단위: %, 명)

특성	집안 어른의 권유로	배우자의 요구로	임신이 되어서	특별한 이유 없음	기타	계(수)
전체	24.6	36.1	11.7	26.0	1.6	100.0(3,162)
지역						
동부	23.1	36.9	12.0	26.4	1.6	100.0(2,572)
읍·면부	31.0	32.2	10.7	24.4	1.7	100.0(590)
초혼연령						
19세 이하	19.4	38.8	12.2	26.5	3.1	100.0(98)
20~24세	18.8	39.2	14.2	26.5	1.3	100.0(918)
25~29세	28.5	33.9	10.1	25.9	1.5	100.0(1,744)
30세 이상	22.2	38.6	11.8	25.5	1.9	100.0(36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1.6	27.8	8.1	19.3	3.3	100.0(981)
고등학교	16.3	38.0	15.9	28.8	1.0	100.0(1,470)
대학 이상	18.1	43.5	8.2	29.7	0.6	100.0(708)
결혼상태						
유배우	24.3	35.9	11.6	27.0	1.2	100.0(2,777)
사별	34.0	30.7	10.7	16.7	8.0	100.0(150)
이혼·별거	22.4	40.9	13.9	21.1	1.7	100.0(239)
현 취업여부						
취업중	23.8	37.2	10.6	26.7	1.7	100.0(1,666)
비취업	25.4	34.8	13.0	25.3	1.5	100.0(1,498)

주: 결혼연령이 빨랐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는 ‘집안어른의 권유로’,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은 ‘배우자의 요구’가 이른 결혼의 주요 이유였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와 이혼·별거는 ‘배우자의 요구로’, 사별은 ‘집안어른의 요구’가 가장 높았다. 취업여부

별로는 ‘배우자의 요구’가 취업자, 비취업자 모두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취업자인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음’이, 그리고 비취업자인 경우에는 ‘집안어른의 권유’가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남자응답자의 경우 결혼을 빨리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 없음’이 42.0%로 가장 높았으며, ‘집안어른의 권유’(24.6%), ‘배우자의 요구’(18.3%), ‘임신이 되어서’(11.0%) 등의 순이었고 이 중 ‘특별한 이유 없음’은 여자응답자에 비해 16.0%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배우자의 요구’는 여자응답자에 비해 17.8%포인트 낮은 수준이었다.

〈표 8-22〉 남성특성별 결혼을 빨리한 이유¹⁾

(단위: %, 명)

특성	집안 어른의 권유로	배우자의 요구로	임신이 되어서	특별한 이유 없음	기타	계(수)
전체	24.6	18.3	11.0	42.0	4.7	100.0(258)
지역						
동부	22.9	18.6	11.2	42.6	4.7	100.0(258)
읍·면부	32.2	16.9	10.2	39.0	1.7	100.0(59)
초혼연령						
19세 이하	25.0	10.0	15.0	50.0	0.0	100.0(20)
20~24세	23.7	19.2	14.1	38.4	4.5	100.0(177)
25~29세	26.1	19.1	5.2	46.1	3.5	100.0(115)
30세 이상	0.0	25.0	0.0	75.0	0.0	100.0(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1.9	15.6	8.3	49.0	5.2	100.0(96)
고등학교	24.1	22.0	12.8	38.3	2.8	100.0(141)
대학 이상	29.1	16.5	11.4	39.2	3.8	100.0(79)
결혼상태						
유배우	30.3	17.9	10.1	39.4	2.3	100.0(218)
사별	33.3	33.3	0.0	33.3	0.0	100.0(12)
이혼·별거	9.3	17.4	15.1	50.0	8.1	100.0(86)
현 취업여부						
취업중	24.9	20.8	10.6	40.8	3.0	100.0(265)
비취업	23.5	7.8	13.7	47.1	7.8	100.0(51)

주: 1) 결혼연령이 빨랐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읍·면부지역 모두 ‘특별한 이유 없음’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집안어른의 권유로’이었으며, 특히 읍·면부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초혼연령별로는 29세 이하에 결혼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 없음’, ‘집안어른의 권유로’ 등의 순이었으나 초혼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 없음’과 ‘배우자의 요구로’ 등의 순이어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 주었다. 이 외에도 ‘임신이 되어서’는 초혼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혼전임신으로 인해 결혼이 빨리 이루어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수준별로는 ‘특별한 이유 없음’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이유인 ‘집안어른의 권유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유배우자의 경우에 ‘특별한 이유 없음’, ‘집안어른의 권유로’, ‘배우자의 요구로’ 등의 순이었으나 사별은 각 항목별 비율이 동일하여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혼·별거는 ‘특별한 이유 없음’, ‘배우자의 요구로’, ‘임신이 되어서’, ‘집안어른의 권유로’ 등의 순이었다.

취업중인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 없음’, ‘집안어른의 권유로’, ‘배우자의 요구로’, ‘임신이 되어서’ 등의 순으로, 비취업인 경우는 ‘특별한 이유 없음’, ‘집안어른의 권유로’, ‘임신이 되어서’, ‘배우자의 요구로’ 등의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15세 이상 기혼가구의 여자응답자 중 결혼을 늦게 하였다는 여자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특별한 이유 없음’ 46.9%이었으며, 이 외에도 ‘배우자감이 없어서’ 24.6%, ‘취업에 방해될까 봐’ 11.5%,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 10.1%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특별한 이유 없음’을 제외할 경우 동부지역은 ‘배우자감이 없어서’, ‘취업에 방해될까 봐’,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 등의 순인데 비해 읍·면부지역은 ‘배우자감이 없어서’,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 ‘취업에 방해될까 봐’ 등의 순이었다. 초혼연령별로도 ‘특별한 이유 없음’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배우자감이 없어서’로 이는 초혼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았다. 그 외의 경우는 초혼연령이 20~24세인 경우에는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가, 25~29세와 30세 이상은 ‘취업에 방해될까 봐’가 등의 순이었다.

교육수준별로도 가장 높은 이유인 ‘특별한 이유 없음’을 제외할 경우 ‘배우자

감이 없어서'가 공통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은 중학교 이하는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를, 고등학교 이상은 '취업에 방해될까 봐'가 결혼이 늦은 이유로 제시되었다. 특히, 학력이 높은 경우에는 '배우자감이 없어서'와 '취업에 방해될까 봐'가 높은 반면, 학력이 낮은 경우에는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가 고학력층보다 높게 나타나 교육수준에 따라 결혼이 늦은 이유가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8-23〉 여성특성별 결혼을 늦게 한 이유¹⁾

(단위: %, 명)

특성	취업에 방해가 될까봐	배우자감이 없어서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	특별한 이유 없음	기타	계(수)
전체	11.5	24.6	10.1	46.9	6.8	100.0(1,700)
지역						
동부	11.9	24.8	9.4	47.0	6.9	100.0(1,450)
읍·면부	9.2	24.0	14.0	46.4	6.4	100.0(250)
초혼연령						
19세 이하	-	-	-	-	-	-
20~24세	10.7	18.7	13.3	49.3	8.0	100.0(75)
25~29세	12.8	20.0	9.6	51.2	6.4	100.0(791)
30세 이상	10.5	29.6	10.2	42.6	7.1	100.0(82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3	23.0	19.0	45.4	6.3	100.0(348)
고등학교	12.1	22.4	10.2	49.1	6.2	100.0(812)
대학 이상	14.0	29.1	4.1	44.6	8.2	100.0(536)
결혼상태						
유배우	11.6	24.9	9.8	47.2	6.5	100.0(1,565)
사별	17.5	21.1	12.3	38.6	10.5	100.0(57)
이혼·별거	3.9	22.1	14.3	46.8	13.0	100.0(77)
현 취업여부						
취업중	11.4	22.9	11.3	47.9	6.5	100.0(804)
비취업	11.6	26.2	8.9	46.0	7.2	100.0(897)

주: 1) 결혼연령이 늦었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결혼상태별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는 '특별한 이유 없음', '배우자감이 없어서' 등의 순이었으나 그 다음은 유배우와 사별의 경우, '취업에 방해될까

봐'를 그리고 이혼·별거는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가 높아 결혼상태별 차이를 보였다. 현 취업여부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배우자감이 없어서'는 취업중인 경우보다 비취업중인 경우에,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는 취업중인 경우가 비취업중인 경우보다 높았다.

15세 이상 기혼가구의 남자응답자의 결혼을 늦게 한 이유로는 '특별한 이유 없음' 35.7%이었으며,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 31.2%, '배우자감이 없어서' 19.8%, '취업에 방해될까 봐' 6.6%, 기타 6.6%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특별한 이유 없음'을 제외할 경우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 모두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가 높았으며, 특히 읍·면부지역의 경우 높았다(34.0%). 그 외 읍·면부지역은 '배우자감이 없어서'가 동부지역보다 높았다.

초혼연령별로도 '특별한 이유 없음'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 '배우자감이 없어서', '취업에 방해될까 봐' 등의 순이었으나 모두 초혼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았다.

고등학교 학력 이상은 '특별한 이유 없음'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대학 이상의 고학력층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중학교 이하는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나 학력간 차이를 보였다. 결혼상태별로는 '특별한 이유 없음',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 '배우자감이 없어서', '취업에 방해될까 봐'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특히 '경제형편이 안 좋아서'와 '배우자감이 없어서'는 사별의 경우 높았다.

현 취업여부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는 비취업중인 경우가 취업중인 경우보다 높았고, '배우자감이 없어서'는 취업중인 경우가, 그리고 '취업에 방해될까 봐'는 비취업중인 경우에 더 높았다.

〈표 8-24〉 남성특성별 결혼을 늦게 한 이유¹⁾

(단위: %,명)

특성	취업에 방해가 될까봐	배우자감이 없어서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서	특별한 이유 없음	기타	계(수)
전체	6.6	19.8	31.2	35.7	6.6	100.0(484)
지역						
동부	7.2	19.4	30.5	36.7	6.2	100.0(387)
읍·면부	4.1	21.6	34.0	32.0	8.2	100.0(97)
초혼연령						
19세 이하	-	-	-	-	-	-
20~24세	0.0	0.0	33.3	66.7	0.0	100.0(6)
25~29세	5.9	19.4	29.7	36.5	8.6	100.0(222)
30세 이상	7.9	20.9	32.3	34.6	4.3	100.0(25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9	18.7	48.4	23.9	5.2	100.0(155)
고등학교	6.4	24.6	28.3	35.8	4.8	100.0(187)
대학 이상	9.9	14.2	17.0	48.9	9.0	100.0(141)
결혼상태						
유배우	6.9	19.6	30.3	36.4	6.9	100.0(363)
사별	0.0	21.4	35.7	35.7	7.1	100.0(14)
이혼·별거	7.3	21.1	33.0	33.0	5.5	100.0(109)
현 취업여부						
취업중	5.9	21.1	30.4	35.8	6.7	100.0(388)
비취업	10.1	15.2	33.3	35.4	6.1	100.0(99)

주: 1) 결혼연령이 늦었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6.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하는 이유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결혼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주요 이유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여자응답자의 경우 결혼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제1순위는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가 29.9%로 가장 높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갖기 어려워져서’ 18.6%, ‘결혼에 따른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14.8%,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12.7% 등의 순이었다.

동부지역 거주여성은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가 29.6%로 가장 높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갖기 어려워서’ 18.8%, ‘결혼에 따른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15.0%,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12.9% 등의 순이었고, 읍·면부지역 거주여성은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가 31.0%로 가장 높았으며, 동부지역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갖기 어려워서’ 18.0%, ‘결혼에 따른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13.3%,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12.0% 등의 순이었고,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도 10.7%나 되었다.

전체 연령층에서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29세 이하와 30~39세는 ‘결혼에 따른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이었고, 40세 이후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갖기 어려워서’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이유는 39세 이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갖기 어려워서’이었으며, 40세 이상은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 학력소지자는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26.4%),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갖기 어려워서’(23.3%),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12.9%) 등이 높았고, 고등학교 학력소지자는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31.8%),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갖기 어려워서’(17.7%), ‘결혼에 따른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14.1%)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그리고 대학 이상 학력소지자는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29.5%), ‘결혼에 따른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20.8%),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갖기 어려워서’(16.4%) 등의 순이었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 사별, 이혼·별거 모두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갖기 어려워서’의 순이었으나, 세 번째 이유는 유배우와 이혼·별거 여성은 ‘결혼에 따른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이었으며, 사별여성은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

서'로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와 비취업자 모두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갖기 어려워서', '결혼에 따른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등의 순이었다.

〈표 8-25〉 여성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이유(1순위)

(단위: %, 명)

특성	①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 ②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③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④ 시댁 중심의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 ⑤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⑥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⑦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 ⑧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⑨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수)
전체	18.6	3.9	29.9	2.9	14.8	12.7	3.3	5.2	8.6	100.0(8,724)
지역										
동부	18.8	4.0	29.6	2.9	15.0	12.9	3.3	5.3	8.2	100.0(7,333)
읍·면부	18.0	3.8	31.0	3.0	13.3	12.0	3.2	5.0	10.7	100.0(1,391)
연령										
29세 이하	16.8	7.0	28.5	4.2	17.7	10.0	1.9	5.2	8.5	100.0(667)
30~39세	14.8	4.3	31.6	3.9	19.4	13.4	1.9	4.9	5.8	100.0(3,035)
40~49세	20.4	2.9	31.1	2.4	13.0	13.1	3.1	4.9	9.0	100.0(3,067)
50세 이상	22.6	3.8	25.6	1.8	9.2	12.0	6.2	6.5	12.3	100.0(1,95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3.3	4.1	26.4	2.8	8.7	11.1	4.7	6.1	12.9	100.0(2,089)
고등학교	17.7	4.2	31.8	3.4	14.1	12.7	2.7	5.0	8.5	100.0(4,083)
대학 이상	16.4	3.3	29.5	2.4	20.8	14.2	3.1	5.0	5.4	100.0(2,541)
결혼상태										
유배우	18.5	4.0	29.9	2.9	15.0	12.8	3.3	5.2	8.4	100.0(7,906)
사별	24.2	4.4	26.5	2.3	8.2	11.4	5.8	5.0	12.2	100.0(343)
이혼·별거	17.1	2.1	31.9	3.2	15.6	13.3	1.5	6.1	9.3	100.0(474)
취업여부										
취업중	18.8	4.0	29.5	2.4	15.2	12.3	3.5	5.4	9.0	100.0(4,426)
비취업	18.5	3.9	30.2	3.4	14.2	13.2	3.2	5.2	8.2	100.0(4,299)

결혼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제2순위로 응답한 결과를 보면,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18.6%), '결혼에 따른 각종 의무와 역할

이 부담스러워서'(17.2%),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15.9%),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13.4%) 등의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여성이 읍·면부지역 거주여성에 비해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와 '결혼에 따른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가 더 높았고, 읍·면부지역 거주여성은 동부지역 거주여성에 비해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와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갖기 어려워' 등이 더 높았다.

39세 이하 연령층은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가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특히 30~39세 연령층에서 더 높은 비율이었다. 40세 이상 연령층은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특히 40~49세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이하 여성의 경우,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가, 그리고 대학 이상 여성은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가 가장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와 이혼·별거상태의 여성이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가 가장 높았으며, 사별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가 가장 높았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나 비취업자 모두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 중 취업여성은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가, 비취업자는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가 높았다.

〈표 8-26〉 여성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이유(2순위)

(단위: %, 명)

특성	⑩ 1순위만 응답 ①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 ②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③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④ 시댁 중심의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 ⑤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⑥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⑦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 ⑧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⑨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수)	
전체	2.3	9.6	5.1	15.9	5.0	17.2	18.6	3.2	9.8	13.4	100.0(8,722)
지역											
동부	2.1	9.3	5.1	16.1	5.2	17.3	18.8	3.2	9.6	13.4	100.0(7,333)
읍·면부	3.0	10.8	5.5	14.8	3.7	16.6	17.6	3.1	11.1	13.8	100.0(1,389)
연령											
29세 이하	0.7	8.1	4.9	15.9	7.5	19.8	16.6	3.6	10.8	12.1	100.0(668)
30~39세	1.8	7.5	5.1	16.6	6.8	20.6	18.6	2.1	9.9	11.0	100.0(3,034)
40~49세	2.0	10.2	4.7	16.5	4.0	15.4	20.5	4.0	9.3	13.3	100.0(3,066)
50세 이상	4.0	12.2	5.9	13.8	2.8	13.7	16.2	3.6	10.0	17.9	100.0(1,95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5	12.4	6.6	13.3	3.2	13.0	16.7	2.4	9.7	19.2	100.0(2,089)
고등학교	2.2	9.2	4.9	15.7	5.8	16.9	18.9	3.5	9.6	13.3	100.0(4,081)
대학 이상	1.2	7.9	4.3	18.5	5.1	20.9	19.6	3.3	10.2	8.9	100.0(2,540)
결혼상태											
유배우	2.1	9.5	5.2	15.9	5.1	17.5	18.5	3.1	9.9	13.2	100.0(7,905)
사별	4.1	11.4	5.5	14.6	3.5	11.4	16.0	3.8	11.1	18.7	100.0(343)
이혼·별거	3.2	19.1	3.8	16.5	3.8	16.2	21.3	4.0	7.8	13.3	100.0(474)
취업여부											
취업중	2.3	9.9	5.3	15.4	4.5	16.6	19.2	3.3	10.1	13.4	100.0(4,425)
비취업	2.2	9.2	5.0	16.4	5.4	17.7	17.9	3.1	9.5	13.4	100.0(4,298)

남자응답자의 경우 결혼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제1순위로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갖기 어려워서’(30.9%),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23.1%),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14.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여자응답자와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남성보다 읍·면부지역 남성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갖기 어려워서’가 더 높았고, 그 다음은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로 동부지역보다는 읍·면부지역에서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연령층은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가 34.0%로 가

장 높았으나, 30세 이상 연령층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갖기 어려워서’가 가장 높았다.

〈표 8-27〉 남성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이유(1순위)

(단위: %, 명)

특성	①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 ②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③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④ 시댁 중심의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 ⑤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⑥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⑦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 ⑧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⑨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30.9	5.2	23.1	1.1	7.7	9.7	2.9	4.6	14.7	100.0(1,338)
지역										
동부	30.7	5.5	22.3	1.2	7.9	10.6	2.7	4.2	14.9	100.0(1,082)
읍·면부	32.0	3.5	26.6	0.8	6.6	5.9	3.9	6.6	14.1	100.0(256)
연령										
29세 이하	14.9	17.0	34.0	2.1	6.4	6.4	2.1	0.0	17.0	100.0(47)
30~39세	30.5	7.1	21.7	0.9	11.5	9.3	1.3	3.5	14.2	100.0(226)
40~49세	30.2	5.9	27.0	0.9	7.1	10.8	2.7	2.7	12.6	100.0(437)
50세 이상	33.0	3.0	20.2	1.1	6.9	9.4	3.7	6.6	16.2	100.0(62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3.5	3.6	21.0	1.0	6.8	9.4	3.9	6.2	14.5	100.0(385)
고등학교	28.5	6.3	24.9	1.3	6.6	9.4	2.6	4.2	16.2	100.0(543)
대학 이상	32.3	5.2	22.7	0.7	9.9	10.6	2.5	3.7	12.3	100.0(405)
결혼상태										
유배우	30.6	5.2	23.0	0.9	7.3	9.8	2.8	5.2	15.1	100.0(986)
사별	57.5	2.5	20.0	0.0	5.0	10.0	0.0	2.5	2.5	100.0(40)
이혼·별거	28.5	5.8	23.7	1.6	9.3	9.3	3.5	3.2	15.1	100.0(312)
취업여부										
취업중	30.1	5.5	23.9	1.1	8.1	9.9	2.9	4.5	14.1	100.0(1,118)
비취업	35.6	3.7	19.2	0.9	5.5	8.7	3.2	5.5	17.8	100.0(219)

교육수준별로는 모든 교육수준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갖기 어려워서’가 가장 높았으며, 특히 중학교 이하 학력층에서 가장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갖기 어려워서’가 가장 높았으며, 유배우나 이혼·별거상태의 남성보다 사별남성의 경우 더욱 높았

다(유배우 30.6%, 이혼·별거 28.5%, 사별 57.5%). 취업여부별로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갖기 어려워서’가 취업자와 비취업자 모두 가장 높았으며, 비취업자인 경우 더 높았다.

남자응답자의 경우 결혼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제2순위로는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21.8%),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15.0%),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14.1%),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13.2%)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 거주남성이 모두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가 가장 높았으며(동부 21.1%, 읍·면부 25.0%), 특히 읍·면부지역 거주응답자의 경우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는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가, 30세 이후는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가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하는 주요 이유로 제시되었다.

교육수준별로도 모든 교육수준에서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가 주요 이유였으며, 특히 중학교 이하의 학력층이 높았다. 결혼상태에 관계없이 모두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가 가장 높았으며, 유배우 보다는 사별이나 이혼·별거 상태의 경우 높았다. 취업여부에 따라서도 취업자와 비취업자 모두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가 가장 높았으며, 특히 비취업자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표 8-28〉 남성특성별 만혼 및 비혼의 이유(2순위)

(단위: %, 명)

특성	⑩ 1순위만 응답 ①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 ②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③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④ 시댁 중심의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 ⑤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⑥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⑦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 ⑧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⑨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3.1	13.2	8.1	12.2	2.5	14.1	15.0	2.8	7.2	21.8	100.0(1,338)
지역											
동부	3.0	12.3	8.7	12.7	2.5	14.5	15.2	3.0	7.1	21.1	100.0(1,082)
읍·면부	3.5	16.8	5.9	10.2	2.7	12.1	14.5	2.0	7.4	25.0	100.0(256)
연령											
29세 이하	2.1	12.8	6.4	10.6	4.3	21.3	19.1	4.3	6.4	12.8	100.0(47)
30~39세	1.8	12.8	8.4	13.3	3.5	14.6	15.5	1.8	6.6	21.7	100.0(226)
40~49세	3.4	13.7	8.4	12.5	1.6	13.0	15.3	3.9	6.4	21.9	100.0(439)
50세 이상	3.4	13.1	8.1	11.5	2.7	14.2	14.4	2.2	7.8	22.5	100.0(62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9	15.9	8.3	10.2	2.9	12.2	12.5	1.8	8.3	24.0	100.0(384)
고등학교	3.1	13.4	7.4	11.6	2.0	14.5	15.5	1.8	8.1	22.5	100.0(543)
대학 이상	2.0	10.1	9.4	14.6	2.7	15.3	16.8	5.2	4.5	19.3	100.0(404)
결혼상태											
유배우	2.6	13.8	7.5	12.7	2.8	14.2	15.0	3.2	6.5	21.6	100.0(986)
사별	5.0	10.0	12.5	12.5	0.0	20.0	10.0	2.5	5.0	22.5	100.0(40)
이혼·별거	4.1	11.8	9.9	10.5	1.9	12.7	15.6	1.6	9.6	22.3	100.0(314)
취업여부											
취업중	2.8	13.1	8.4	12.9	2.4	13.6	15.8	2.9	7.0	21.1	100.0(1,116)
비취업	4.5	14.1	7.3	8.2	2.7	16.8	10.9	2.3	7.7	25.5	100.0(220)

7.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를 남녀 응답자 모두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에 대해 찬성하는 경우가 72.8%이었으며, 별로 또는 전혀 찬성하지 않는 경우는 27.2%이었다. 전체적으로 찬성한다가 높게 나타나 결혼을 하는 경우 개인보다는 가족간의 관계를 보다 우선시 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경우가 42.1%이었고, 찬성하지 않는다는 57.9%로 자녀가 있을 경우 이혼에 찬성하지 않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54.6%가 찬성하였고, 45.4%가 찬성하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해서는 24.5%만이 찬성하였고, 나머지 75.6%는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경우와는 달리 아버지가 혼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29〉 기혼남녀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내용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수)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함	22.2	50.6	24.1	3.1	100.0(10,070)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음	2.8	39.3	42.7	15.2	100.0(10,064)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음	5.6	49.0	39.9	5.5	100.0(10,054)
아버지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음	1.9	22.6	52.6	23.0	100.0(10,051)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음	1.3	15.2	38.2	45.3	100.0(10,033)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음	9.9	50.0	31.0	9.0	100.0(9,979)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음	4.2	33.4	36.1	26.2	100.0(10,048)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음	2.0	30.8	39.8	27.4	100.0(10,048)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83.5%가 찬성하지 않음으로써 자녀는 결혼을 통해서만 가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보여주었다.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해서는 59.9%가 찬성하고 있어 자녀입양에 관한 태도는 어느 정도 허용적임을 알 수 있다.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에 대해서는 62.3%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혼전동거에 대해서는 비허용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해서

는 32.8%가 찬성하는데 비해 67.2%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을 통해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전통적 성의식이 강하게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에 대한 의견

응답자의 특성별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에 대해서 여자응답자는 전적으로 찬성 21.7%, 대체로 찬성 50.5%로 72.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로 찬성하지 않음 24.6%, 전혀 찬성하지 않음 3.2%로 전체 응답자의 27.8%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은 찬성율이 72.1%인데 비해 읍·면부지역은 73.2%로 읍·면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결혼에 있어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낮아졌으며,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층일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고, 고학력층일수록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져 고령층의 저학력층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연령층보다는 저연령층이, 그리고 저학력층보다는 고학력층의 경우 가족간의 관계보다 개인을 우선시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사별인 경우 유배우나 이혼·별거인 경우보다 고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통적인 결혼 및 가족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가 비취업자 보다 가족간의 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0〉 여성특성별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수)
전체	21.7	50.5	24.6	3.2	100.0(8,730)
지역					
동부	21.1	51.0	24.8	3.1	100.0(7,337)
읍·면부	25.2	48.0	23.5	3.3	100.0(1,393)
연령					
29세 이하	19.6	52.2	24.3	3.9	100.0(667)
30~39세	21.3	50.6	24.7	3.4	100.0(3,039)
40~49세	22.1	50.1	24.7	3.1	100.0(3,066)
50세 이상	22.5	50.3	24.6	2.7	100.0(1,95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2.8	52.2	22.0	2.9	100.0(2,092)
고등학교	22.3	50.7	23.6	3.4	100.0(4,083)
대학 이상	19.9	48.7	28.4	3.0	100.0(2,542)
결혼상태					
유배우	21.8	50.3	24.7	3.2	100.0(7,911)
사별	22.1	54.4	21.5	2.0	100.0(344)
이혼·별거	20.8	50.2	25.6	3.4	100.0(476)
취업여부					
취업중	22.6	50.1	24.2	3.0	100.0(4,427)
비취업	20.8	50.8	25.1	3.2	100.0(4,303)

남자응답자는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 25.6%, 대체로 찬성 51.0%로 76.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로 찬성하지 않음 20.3%, 전혀 찬성하지 않음 3.1%로 전체 응답자의 23.4%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은 찬성이 77.0%인데 비해 읍·면부지역은 74.6%로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결혼에 있어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여자응답자와는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층일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여자응답자와 동일하게 고연령층보다는 저연령층이, 그리고 저학력층보다는 고학력층의 경우 가족간의 관

계보다 개인을 우선시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여자응답자와는 달리 유배우나 사별인 경우 보다 이혼·별거인 경우에 전통적인 결혼 및 가족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가 비취업자 보다 가족간의 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1〉 남성특성별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수)
전체	25.6	51.0	20.3	3.1	100.0(1,341)
지역					
동부	25.6	51.4	20.3	2.7	100.0(1,081)
읍·면부	25.4	49.2	20.4	5.0	100.0(260)
연령					
29세 이하	17.0	53.2	25.5	4.3	100.0(47)
30~39세	26.8	48.2	21.9	3.1	100.0(228)
40~49세	25.2	51.5	20.2	3.2	100.0(441)
50세 이상	24.3	51.6	19.4	2.9	100.0(62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5.8	54.0	16.4	3.7	100.0(383)
고등학교	26.5	50.5	20.8	2.2	100.0(547)
대학 이상	24.3	48.8	23.0	3.9	100.0(408)
결혼상태					
유배우	25.1	50.5	21.4	3.0	100.0(987)
사별	17.5	57.5	22.5	2.5	100.0(40)
이혼·별거	28.0	52.1	16.4	3.5	100.0(311)
취업여부					
취업중	25.7	51.0	20.6	2.7	100.0(1,116)
비취업	25.0	51.3	18.8	4.9	100.0(224)

나.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한 의견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해 여자응답자는 43.2%가 찬성한 것에 비해 56.8%가 찬성하지 않아 자녀가 있을 경우 이혼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지역보다는 읍·면부지역이,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여성들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표 8-32〉 여성특성별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수)
전체	2.8	40.4	42.6	14.2	100.0(8,727)
지역					
동부	3.0	41.3	42.5	13.2	100.0(7,334)
읍·면부	1.9	35.4	43.0	19.7	100.0(1,393)
연령					
29세 이하	3.8	44.4	40.8	11.1	100.0(665)
30~39세	4.0	44.5	40.8	10.7	100.0(3,036)
40~49세	2.4	41.5	42.2	13.9	100.0(3,065)
50세 이상	1.3	30.9	46.6	21.2	100.0(1,96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5	31.5	47.1	19.9	100.0(2,093)
고등학교	3.2	42.9	40.4	13.5	100.0(4,082)
대학 이상	3.3	43.6	42.3	10.8	100.0(2,539)
결혼상태					
유배우	2.5	39.4	43.6	14.5	100.0(7,906)
사별	0.9	28.0	48.4	22.8	100.0(347)
이혼·별거	8.9	66.5	21.1	3.6	100.0(474)
취업여부					
취업중	3.1	40.5	41.6	14.8	100.0(4,430)
비취업	2.5	40.3	43.5	13.7	100.0(4,298)

이혼·별거인 여성들은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해 75.4%가 찬성하고 있어, 유배우(41.9%)나 사별(28.9%)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

혼·별거를 경험한 여성응답자의 경우 본인의 경험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보다는 비취업자의 경우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남자응답자의 경우에는 34.8%가 찬성하였으며, 65.2%는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응답자에 비해 8.4%포인트 높았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이혼에 있어 보다 전통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8-33〉 남성특성별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수)
전체	2.5	32.3	43.3	21.9	100.0(1,337)
지역					
동부	2.3	33.0	43.7	21.0	100.0(1,076)
읍·면부	3.1	29.5	41.8	25.7	100.0(261)
연령					
29세 이하	0.0	29.8	53.2	17.0	100.0(47)
30~39세	3.1	37.4	42.7	16.7	100.0(227)
40~49세	3.2	39.4	39.0	18.5	100.0(439)
50세 이상	1.8	25.6	46.0	26.6	100.0(62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6	27.3	42.9	27.3	100.0(385)
고등학교	1.5	35.2	42.9	20.5	100.0(546)
대학 이상	3.7	33.2	44.3	18.8	100.0(404)
결혼상태					
유배우	1.2	26.6	46.6	25.7	100.0(986)
사별	0.0	37.5	40.0	22.5	100.0(40)
이혼·별거	6.5	50.0	33.5	10.0	100.0(310)
취업여부					
취업중	2.3	32.3	43.3	22.1	100.0(1,114)
비취업	3.1	32.3	43.5	21.1	100.0(223)

남자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지역보다는 읍·면부지역에서, 연령별로는 30~40대 보다는 20대 이하와 50세 이상에서 찬성하지 않는 비

율이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층일수록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의 경우 유배우나 사별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 이혼·별거자 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남자 56.5%, 여자 75.4%).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중인 경우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비취업자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다.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한 의견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해서 여자응답자는 55.8%가 찬성하였으며, 44.3%만이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4〉 여성특성별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수)
전체	6.1	49.7	38.9	5.4	100.0(8,724)
지역					
동부	6.0	49.3	39.4	5.3	100.0(7,332)
읍·면부	6.3	51.4	36.1	6.2	100.0(1,392)
연령					
29세 이하	8.4	47.8	37.3	6.4	100.0(667)
30~39세	7.5	51.1	35.9	5.5	100.0(3,034)
40~49세	5.6	48.8	40.3	5.4	100.0(3,065)
50세 이상	3.7	49.5	41.8	5.0	100.0(1,96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5	48.4	42.7	5.5	100.0(2,090)
고등학교	6.5	48.6	39.2	5.7	100.0(4,081)
대학 이상	7.3	52.4	35.2	5.0	100.0(2,540)
결혼상태					
유배우	5.6	48.5	40.1	5.7	100.0(7,903)
사별	5.5	59.9	31.4	3.2	100.0(347)
이혼·별거	13.9	60.8	23.2	2.1	100.0(475)
취업여부					
취업중	7.2	51.7	36.7	4.4	100.0(4,424)
비취업	4.9	47.6	41.1	6.4	100.0(4,300)

지역별로는 동부지역보다는 읍·면부지역의 경우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동부 55.3%, 읍·면부 57.7%), 저연령층에서, 고학력층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유배우 여성이 이러한 견해에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고(54.1%), 다음은 사별(65.4%), 이혼·별거(74.7%) 순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해 남자응답자의 경우에는 여자응답자에 비해 찬성하는 비율이 더 낮았고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8-35〉 남성특성별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수)
전체	2.7	44.5	46.8	5.9	100.0(1,330)
지역					
동부	2.6	45.5	46.2	5.7	100.0(1,071)
읍·면부	3.1	40.5	49.4	6.9	100.0(259)
연령					
29세 이하	0.0	39.1	50.0	10.9	100.0(46)
30~39세	3.1	42.0	48.7	6.2	100.0(226)
40~49세	3.7	46.4	44.6	5.3	100.0(435)
50세 이상	2.2	44.4	47.6	5.8	100.0(62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9	44.2	45.8	7.1	100.0(382)
고등학교	2.4	42.2	49.5	5.9	100.0(545)
대학 이상	3.2	48.1	43.9	4.7	100.0(401)
결혼상태					
유배우	2.2	43.7	48.1	6.0	100.0(982)
사별	0.0	50.0	40.0	10.0	100.0(40)
이혼·별거	4.6	46.6	44.0	4.9	100.0(307)
취업여부					
취업중	2.9	43.9	47.5	5.7	100.0(1,109)
비취업	1.8	47.7	43.6	6.8	100.0(220)

지역별로는 여자응답자와는 달리 찬성하는 비율은 동부지역에서, 찬성하지 않

는 비율은 읍·면부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연령에 따른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40대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50.1%), 29세 이하에서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60.9%).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이상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의 경우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보다 비취업자의 경우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라. ‘아버지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한 의견

‘아버지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해서 여자응답자는 23.7%가 찬성하였으며, 76.2%가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보다는 읍·면부지역의 경우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고(동부 75.9%, 읍·면부 78.5%),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으며,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층에서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사별인 경우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83.3%), 취업여부별로는 비취업중인 경우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취업중인 경우 보다 더 높았다.

〈표 8-36〉 여성특성별 ‘아버지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의 의견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수)
전체	1.9	21.8	52.86	23.4	100.0(8,714)
지역					
동부	1.9	22.2	53.1	22.8	100.0(7,326)
읍·면부	1.7	19.8	51.6	26.9	100.0(1,388)
연령					
29세 이하	3.0	27.2	50.6	19.2	100.0(666)
30~39세	3.1	25.7	51.8	19.4	100.0(3,036)
40~49세	1.4	21.3	53.2	24.1	100.0(3,059)
50세 이상	0.2	15.0	54.6	30.2	100.0(1,95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4	14.8	55.7	29.1	100.0(2,088)
고등학교	1.8	22.1	52.2	23.9	100.0(4,074)
대학 이상	3.2	27.2	51.5	18.1	100.0(2,540)
결혼상태					
유배우	1.9	21.9	52.5	23.7	100.0(7,897)
사별	0.6	16.0	60.9	22.4	100.0(343)
이혼·별거	2.5	25.6	52.3	19.5	100.0(472)
취업여부					
취업중	2.0	22.4	52.9	22.7	100.0(4,415)
비취업	1.8	21.2	52.8	24.2	100.0(4,299)

‘아버지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해 남자응답자의 경우에는 여자응답자에 비해 찬성하는 비율이 약간 높았고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더 낮았다. 지역별로는 찬성하는 비율은 동부지역에서,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읍·면부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24.0%).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찬성률도 높아 중학교 이하에서 26.0%이던 찬성률은 고등학교 학력에서는 28.4%로, 그리고 대학이상에서는 34.4%로 증가하였으며,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 24.0%, 사별 40.0%, 그리고 이혼·별거의 경우 45.3%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여부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8-37〉 남성특성별 ‘아버지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수)
전체	2.0	27.5	50.7	19.7	100.0(1,338)
지역					
동부	2.0	28.7	50.5	18.8	100.0(1,078)
읍·면부	1.9	22.7	51.9	23.5	100.0(260)
연령					
29세 이하	2.1	27.7	48.9	21.3	100.0(47)
30~39세	3.5	32.7	48.2	15.5	100.0(226)
40~49세	3.2	30.8	47.6	18.5	100.0(439)
50세 이상	0.8	23.2	53.9	22.1	100.0(62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6	23.4	51.7	22.3	100.0(385)
고등학교	1.8	26.6	51.0	20.6	100.0(545)
대학 이상	1.7	32.7	49.5	16.1	100.0(404)
결혼상태					
유배우	1.3	22.7	54.3	21.7	100.0(986)
사별	0.0	40.0	42.5	17.5	100.0(40)
이혼·별거	4.5	40.8	40.5	14.1	100.0(311)
취업여부					
취업중	2.1	27.4	51.7	18.9	100.0(1,113)
비취업	1.8	27.7	46.4	24.1	100.0(224)

마.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의견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해 여자응답자의 1.2%는 전적으로 찬성, 14.9%는 대체로 찬성한다고 하여 전체 16.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로 찬성하지 않음 38.3%, 전혀 찬성하지 않음 45.5%로 83.8%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며, 특히 읍·면부지역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반대는 낮았고 찬성은 높았다.

〈표 8-38〉 여성특성별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수)
전체	1.2	14.9	38.3	45.5	100.0(8,700)
지역					
동부	1.2	15.0	39.6	44.1	100.0(7,313)
읍·면부	1.2	14.3	31.7	52.8	100.0(1,387)
연령					
29세 이하	2.6	23.4	42.8	31.2	100.0(666)
30~39세	1.4	18.4	41.2	39.0	100.0(3,027)
40~49세	1.2	12.7	37.6	48.5	100.0(3,058)
50세 이상	0.7	10.0	33.5	55.9	100.0(1,94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7	10.5	35.8	53.0	100.0(2,083)
고등학교	1.3	15.0	38.1	45.6	100.0(4,067)
대학 이상	1.6	18.5	40.6	39.3	100.0(2,535)
결혼상태					
유배우	1.2	14.9	38.2	45.7	100.0(7,883)
사별	0.3	10.5	35.2	54.1	100.0(344)
이혼·별거	2.1	17.6	43.5	36.7	100.0(471)
취업여부					
취업중	1.3	14.5	39.0	45.3	100.0(4,412)
비취업	1.2	15.3	37.7	45.8	100.0(4,288)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의 경우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19.7%이었으며, 사별의 경우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89.3%).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중인 경우에 비취업인 경우보다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해 남자응답자의 경우에는 1.5%가 전적으로 찬성, 17.3%는 대체로 찬성한다고 하여 전체 18.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로 찬성하지 않음 37.3%, 전혀 찬성하지 않음 43.9%로 81.2%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응답자에 비해 찬성하는 비율은 2.7%포인트 높은 것이며,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2.6%포인트 낮았다.

〈표 8-39〉 남성특성별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수)
전체	1.5	17.3	37.3	43.9	100.0(1,335)
지역					
동부	1.4	18.0	37.6	42.9	100.0(1,076)
읍·면부	1.9	14.3	35.9	47.9	100.0(259)
연령					
29세 이하	2.1	25.5	42.6	29.8	100.0(47)
30~39세	3.1	20.7	40.1	36.1	100.0(227)
40~49세	1.4	22.0	36.4	40.3	100.0(437)
50세 이상	1.0	12.2	36.5	50.3	100.0(62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8	12.2	36.2	50.8	100.0(384)
고등학교	2.0	19.9	35.0	43.1	100.0(543)
대학 이상	1.5	18.5	41.7	38.3	100.0(405)
결혼상태					
유배우	1.3	16.6	36.5	45.5	100.0(986)
사별	0.0	10.0	45.0	45.0	100.0(40)
이혼·별거	2.3	20.3	38.7	38.7	100.0(310)
취업여부					
취업중	1.3	17.3	38.0	43.4	100.0(1,113)
비취업	2.3	17.1	34.2	46.4	100.0(222)

지역별로도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동부지역 80.5%, 읍·면부지역 83.8%로 상당히 높았으며, 특히 읍·면부지역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 학력에서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의 경우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22.6%이었으며, 사별의 경우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90.0%).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중인 경우에 비취업인 경우보다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바.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한 의견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해서 여자응답자는 전적으로 찬성 9.9%, 대체로 찬성 49.4%, 별로 찬성하지 않음 31.7%, 그리고 전혀 찬성하지 않음 9.0%이었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보다는 읍·면부지역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동부 58.8%, 읍·면부 61.8%), 연령별로는 30대에서 가장 낮은 찬성률을 보였고, 40대 이후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표 8-40〉 여성특별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수)
전체	9.9	49.4	31.7	9.0	100.0(8,660)
지역					
동부	9.5	49.3	32.5	8.7	100.0(7,276)
읍·면부	11.8	50.0	27.2	10.9	100.0(1,384)
연령					
29세 이하	11.2	47.1	32.3	9.4	100.0(660)
30~39세	8.8	46.7	35.3	9.2	100.0(3,023)
40~49세	10.7	50.8	29.9	8.5	100.0(3,042)
50세 이상	9.7	52.3	28.5	9.5	100.0(1,93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3	51.8	29.9	10.0	100.0(2,076)
고등학교	10.2	48.2	31.7	9.9	100.0(4,045)
대학 이상	10.7	49.4	33.1	6.8	100.0(2,527)
결혼상태					
유배우	9.9	49.1	32.0	9.0	100.0(7,845)
사별	6.7	52.6	29.7	11.0	100.0(344)
이혼·별거	12.3	51.9	28.4	7.4	100.0(472)
취업여부					
취업중	10.1	49.7	30.9	9.3	100.0(4,393)
비취업	9.6	49.1	32.5	8.8	100.0(4,267)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에 따른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결혼상태는 유배우 보

다는 사별이, 사별보다는 이혼·별거가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중인 경우 비취업보다 찬성률이 높았다.

이에 대해 남자응답자는 여자응답자에 비해 찬성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고,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더 낮았다. 즉, 여자응답자 보다 입양아도 내가 낳은 자식처럼 잘 키울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표 8-41〉 남성특성별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수)
전체	10.5	54.1	26.2	9.1	100.0(1,319)
지역					
동부	9.7	54.7	26.4	9.2	100.0(1,062)
읍·면부	14.0	51.8	25.7	8.6	100.0(257)
연령					
29세 이하	8.5	76.6	12.8	2.1	100.0(47)
30~39세	9.3	48.9	31.6	10.2	100.0(225)
40~49세	10.9	57.2	24.1	7.9	100.0(432)
50세 이상	10.9	52.0	27.0	10.1	100.0(61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9.6	52.4	26.7	11.2	100.0(374)
고등학교	10.7	55.9	23.8	9.6	100.0(542)
대학 이상	11.2	53.6	28.7	6.5	100.0(401)
결혼상태					
유배우	11.7	54.9	25.2	8.2	100.0(975)
사별	5.0	40.0	45.0	10.0	100.0(40)
이혼·별거	7.6	53.6	27.0	11.8	100.0(304)
취업여부					
취업중	10.9	53.4	26.9	8.9	100.0(1,102)
비취업	8.8	58.1	23.0	10.1	100.0(217)

남자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지역보다 읍·면부지역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29세 이하는 85.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찬성률을 보였으며,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학력층에서, 그리고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 이혼·별거, 사별 순으로 높은 찬성

를 보였다. 특히 사별은 45.0%의 찬성률을 보여 이혼·별거보다 16.2%포인트 낮은 수준이었다. 취업여부별로는 비취업자의 경우 찬성률이 더 높았다.

사.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에 대한 의견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에 대해 여자 응답자는 전적으로 찬성 4.2%, 대체로 찬성 33.3%, 별로 찬성하지 않음 36.2%, 그리고 전혀 찬성하지 않음 26.4%로 찬성은 37.5%, 찬성하지 않음은 62.6%로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8-42〉 여성특성별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수)
전체	4.2	33.3	36.2	26.4	100.0(8,711)
지역					
동부	4.3	33.4	36.5	25.8	100.0(7,325)
읍·면부	3.5	32.7	34.3	29.4	100.0(1,386)
연령					
29세 이하	10.8	46.3	31.4	11.5	100.0(668)
30~39세	5.4	39.8	35.9	18.9	100.0(3,034)
40~49세	3.1	28.3	39.5	29.1	100.0(3,061)
50세 이상	1.7	26.5	33.0	38.7	100.0(1,94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6	31.1	34.5	31.8	100.0(2,078)
고등학교	5.1	34.7	34.8	25.4	100.0(4,078)
대학 이상	4.1	32.8	39.6	23.5	100.0(2,541)
결혼상태					
유배우	4.0	32.9	36.6	26.5	100.0(7,894)
사별	3.2	30.9	33.2	32.7	100.0(343)
이혼·별거	8.2	41.6	30.4	19.7	100.0(473)
취업여부					
취업중	4.4	33.1	37.3	25.3	100.0(4,415)
비취업	3.9	33.5	35.0	27.5	100.0(4,294)

응답자의 특성별로 보면,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찬성하는 비율은 낮아졌으며,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에서 찬성률이 가장 낮았으며,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의 경우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자응답자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찬성 4.7%, 대체로 찬성 34.3%, 별로 찬성하지 않음 35.8%, 전혀 찬성하지 않음 25.2%로 찬성 39.0%, 찬성하지 않음 61.0%이었다. 이는 여자응답자에 비해 혼전 동거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표 8-43〉 남성특성별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가는 것도 좋다'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수)
전체	4.7	34.3	35.8	25.2	100.0(1,337)
지역					
동부	5.3	33.5	36.6	24.6	100.0(1,079)
읍·면부	1.9	37.6	32.6	27.9	100.0(258)
연령					
29세 이하	17.0	44.7	27.7	10.6	100.0(47)
30~39세	6.1	44.7	34.6	14.5	100.0(228)
40~49세	5.7	36.0	37.1	21.2	100.0(439)
50세 이상	2.3	28.5	36.0	33.3	100.0(62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9	36.3	32.1	27.7	100.0(383)
고등학교	3.5	36.4	33.7	26.4	100.0(546)
대학 이상	6.7	29.8	41.9	21.7	100.0(406)
결혼상태					
유배우	4.6	31.2	36.8	27.5	100.0(975)
사별	2.5	30.0	45.0	22.5	100.0(40)
이혼·별거	4.8	44.9	31.7	18.6	100.0(312)
취업여부					
취업중	4.8	35.2	36.1	23.9	100.0(1,113)
비취업	3.6	30.2	34.2	32.0	100.0(222)

남자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지역보다는 읍·면부지역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젊은 층일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 29세 이하는 61.7%, 30~39세 50.8%, 40~49세 41.7%, 그리고 50세 이상은 30.8%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층일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의 경우 가장 찬성률이 높았다(49.7%).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중인 경우 찬성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취업 40.0%, 비취업 33.8%).

아.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의견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해 여자응답자는 전적으로 찬성 1.8%, 대체로 찬성이 29.7%로 찬성률이 31.5%이었으며, 별로 찬성하지 않음 40.3%, 전혀 찬성하지 않음 28.2%로 68.5%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 보다 동부지역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동부 32.4%, 읍·면부 27.0%),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50세 이상은 14.5%인데 비해 29세 이하는 55.9%나 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 중학교 이하는 18.8%, 고등학교 34.7%, 대학 이상은 36.9%이었다.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의 경우 43.3%의 찬성률을 보여 혼전 성관계에 대해 가장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취업여부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표 8-44〉 여성특성별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수)
전체	1.8	29.7	40.3	28.2	100.0(8,712)
지역					
동부	1.9	30.5	40.6	27.0	100.0(7,323)
읍·면부	1.4	25.6	38.7	34.3	100.0(1,389)
연령					
29세 이하	4.6	51.3	34.9	9.1	100.0(667)
30~39세	2.7	39.4	40.1	17.8	100.0(3,034)
40~49세	1.2	25.3	42.7	30.8	100.0(3,059)
50세 이상	0.4	14.1	38.7	46.7	100.0(1,95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7	18.1	39.6	41.6	100.0(2,087)
고등학교	1.9	32.8	39.7	25.6	100.0(4,076)
대학 이상	2.6	34.3	41.9	21.3	100.0(2,536)
결혼상태					
유배우	1.8	29.4	40.6	28.2	100.0(7,895)
사별	1.4	21.9	37.8	38.9	100.0(347)
이혼·별거	1.9	41.4	36.9	19.7	100.0(471)
취업여부					
취업중	2.2	29.3	40.5	28.0	100.0(4,418)
비취업	1.4	30.2	40.2	28.3	100.0(4,294)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해 남자응답자는 전적으로 찬성 3.2%, 대체로 찬성이 38.1%이었으며, 별로 찬성하지 않음 36.6%, 전혀 찬성하지 않음 22.1%로 찬성 41.3%, 찬성하지 않음 58.7%로 여자응답자에 비해 혼전 성관계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 보다 동부지역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동부 42.8%, 읍·면부 34.7%),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29세 이하는 64.6%인데 비해 50세 이상은 28.6%에 불과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 중학교 이하는 30.9%, 고등학교 40.0%, 대학 이상은 47.0%이었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는

37.7%가 찬성하였으나 사별은 40.0%, 그리고 이혼·별거의 경우에는 52.7%의 찬성률을 보여 혼전 성관계에 대해 이혼·별거의 경우 가장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중인 경우에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8-45〉 남성특성별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가치관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수)
전체	3.2	38.1	36.6	22.1	100.0(1,335)
지역					
동부	3.6	39.2	35.9	21.3	100.0(1,076)
읍·면부	1.5	33.2	39.8	25.5	100.0(259)
연령					
29세 이하	10.4	54.2	29.2	6.3	100.0(48)
30~39세	6.1	52.2	31.1	10.5	100.0(228)
40~49세	4.3	43.4	39.0	13.2	100.0(438)
50세 이상	0.8	27.8	37.6	33.8	100.0(62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5	30.4	38.7	30.4	100.0(385)
고등학교	3.1	41.5	34.1	21.3	100.0(545)
대학 이상	5.9	41.1	37.6	15.3	100.0(404)
결혼상태					
유배우	3.4	34.3	37.4	25.0	100.0(985)
사별	0.0	40.0	40.0	20.0	100.0(40)
이혼·별거	3.5	49.2	34.1	13.2	100.0(311)
취업여부					
취업중	3.6	39.0	36.9	20.5	100.0(1,112)
비취업	1.3	33.2	35.4	30.0	100.0(223)

제 5 절 자녀가치관과 혼인가치관 변화의 시사점

본 장에서는 네 가지 유형의 가치관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는 자녀가치관, 남아선호가치관, 자녀양육가치관, 혼인가치관 등이다. 특히 혼인가치관은 결혼가치관, 이혼가치관, 재혼가치관을 포함하였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는 20세기 후

반의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의 변화를 야기하였고, 동시에 사회구성원인 가족 개개인의 의식변화까지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소자녀관의 정착과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의 대두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시대흐름에 따라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점차 악화되고, 결혼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반드시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또한 불행한 결혼을 지속하기 보다는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혼의 필요성은 강조되어 가족의 불안정은 증대되며, 한편으로는 이혼의 증가에 따라 재혼의 필요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혼, 이혼 및 재혼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는 가족의 안정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출산 등 가족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혼관 형성을 위한 학교와 사회교육을 강화하고 양성 평등 가치관확립을 위한 사회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혼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결혼이나 출산,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저해하는 기업 내 각종 관행으로부터도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친화적인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의 인식 및 태도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이혼 및 재혼 가치관 변화에 의해 증가하고 있는 재혼가족은 그 형태가 다양하여 재혼생활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혼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생활교육,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도 요구된다.

한국사회 특유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높은 책임감은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녀양육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물론 이는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며, 높은 사교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 교육정책의 오류 등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남아선호가치관을 제외하고는 후기산업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가치관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개인, 가족, 사회의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9 장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

인간은 결혼을 통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욕구와 의무의 균형 속에 각자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해 가면서 성숙된 인격체로 완성되고, 사회구성원을 생산하며, 그리고 이들을 사회화 시킨다(김혜선 외, 2002).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미혼에 의한 출산율이 극히 낮은 사회에서는 결혼여부가 재생산 가능성을 결정하며, 결혼의 지속여부가 재생산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결혼과 출산력과는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본 장에서는 결혼양상과 해혼실태 등을 살펴보고, 특히 최근 이혼율의 상승으로 인한 가족해체로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혼·별거가족의 자녀의 동거자 및 양육비 제공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출산력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따른 가족주기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결혼양상

1. 결혼상태

본 조사의 15세 이상 기혼여성은 9,710명으로 동부지역 8,138명, 읍·면부지역 1,572명이었다. 이들의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유배우 91.3%, 사별 3.6%, 이혼·별거 5.0%로 대부분의 부인이 유배우 상태이었다. 지역별로는 사별부인의 비율은 동부지역보다 읍·면부지역이 높은 반면, 유배우부인과 이혼·별거 부인의 비율은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높았다. 이는 동부지역은 읍·면부지역보다 젊은 층 부인들의 거주비율이 높고, 읍·면부지역은 고연령층 부인들의 거주비율이 높기 때문이라 하겠다.

〈표 9-1〉 기혼여성의 지역별 결혼상태

(단위: %, 명)

결혼상태	전국	동부	읍·면부
유배우	91.3	91.4	91.1
사별	3.6	3.2	5.6
이혼·별거 ¹⁾	5.0	5.4	3.3
계	100.0	100.0	100.0
(수)	(9,710)	(8,138)	(1,572)

주: 1) 미혼모 포함

결혼경력별로는 대부분의 부인이 초혼(96.9%)으로서 재혼부인의 비율은 극히 낮은 수준(3.1%)이었다. 이를 2003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경우 초혼은 0.9%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재혼비율은 0.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주78).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의 재혼부인 비율이 동부지역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었다(동부 2.8%, 읍·면부 4.6%). 기혼여성 남편의 경우 초혼 비율은 부인의 초혼비율 보다는 낮았고(96.8%), 재혼비율은 부인들보다 높았다(3.2%). 지역별로는 부인과 마찬가지로 초혼은 동부지역에서, 그리고 재혼은 읍·면부지역에서 보다 높았다.

〈표 9-2〉 기혼여성 및 남편의 결혼경력별 분포

(단위: %, 명)

결혼경력	전국	동부	읍·면부
부인			
초혼	96.9	97.2	95.4
재혼	3.1	2.8	4.6
남편			
초혼	96.8	97.2	94.7
재혼	3.2	2.8	5.3
계(수)	100.0(9,707)	100.0(8,136)	100.0(1,571)

부부의 결혼경력별 결합형태를 살펴보면, 부부가 모두 초혼인 경우가 96.0%

주78) 2003년 조사결과 부인의 초혼비율은 97.8%이었으며, 재혼비율은 2.2%이었음(김승권 외, 2003).

이었으며,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 2.2%, 부인 초혼·남편 재혼 1.0%, 그리고 부인 재혼·남편 초혼은 0.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어 여자보다는 남자의 재혼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2000년 및 2003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경우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는 2000년 97.3%에서 2003년 96.9%, 그리고 2006년 96.0%로 다소 낮았으며,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는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2000년 1.5%, 2003년 1.6%, 2006년 2.2%). 또한 남편이 초혼이고 부인이 재혼인 비율은 점차 높아져 최근으로 오면서 전체적인 결혼관의 변화와 함께 여성의 재혼에 대한 태도 등도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9-3〉 기혼여성 및 남편의 결혼경력별 분포의 비교

(단위: %, 명)

결혼경력	2000 ¹⁾	2003 ²⁾	2006 ³⁾
남편, 부인 모두 초혼	97.3	96.9	96.0
부인 재혼, 남편 초혼	0.3	0.6	0.9
부인 초혼, 남편 재혼	0.9	0.9	1.0
남편, 부인 모두 재혼	1.5	1.6	2.2
계(수)	100.0(10,700)	100.0(11,200)	100.0(9,707)

자료: 1)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2)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3) 본 조사자료.

이러한 변화양상은 15~49세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부부간 결혼경력별 결합형태에서 보다 더 잘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녀 모두 초혼인 결합형태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재혼인 결합형태의 비율은 증가추세를 알 수 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에는 98.0%, 2003년에는 97.4%, 그리고 2006년은 96.3%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었으며, 남편 초혼, 부인 재혼 비율은 같은 연도에 0.4%, 0.7%, 그리고 0.9%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었다. 또한 남편 재혼, 부인 초혼인 비율은 2000년 0.6%, 2003년 0.7%, 2006년 0.8%로, 그리고 남편 부인 모두 재혼인 비율은 같은 연도에 1.0%, 1.3%, 2.0%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었다.

〈표 9-4〉 15~49세 기혼여성과 남편의 결혼경력

(단위: %, 명)

부인의 결혼경력	남편의 결혼경력		계(수)
	초혼	재혼	
2000 ¹⁾	98.4	1.6	100.0(7,961)
초혼	98.0	0.6	98.6(7,852)
재혼	0.4	1.0	1.4(109)
2003 ²⁾	98.0	2.0	100.0(8,890)
초혼	97.4	0.7	98.1(8,719)
재혼	0.7	1.3	1.9(171)
2006 ³⁾	97.2	2.8	100.0(7,357)
초혼	96.3	0.8	97.1(7,144)
재혼	0.9	2.0	2.9(213)

자료: <표 9-3>과 동일

이러한 부부간의 결혼경력별 결합형태의 변화양상은 통계청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남편, 부인 모두 초혼인 경우는 2000년 81.8%에서 2003년 77.3%, 2005년 73.9%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었으며, 부인 재혼, 남편 초혼인 경우는 같은 연도에 4.9%, 5.7%, 6.4%로, 부인 초혼, 남편 재혼인 경우는 3.4%, 3.9%, 4.1%로, 그리고 부인, 남편 모두 재혼인 경우는 9.6%, 12.5%, 14.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었다(통계청, 각 년도).

2. 남녀 특성별 초혼연령

남편과 부인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편 27.36세, 부인 24.02세로 남녀간에 3.34세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자가 읍·면부지역 거주자 보다 남녀 모두 초혼연령이 높았으나, 남녀간의 초혼연령 차이는 읍·면부지역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동부 3.28세, 읍·면부 3.70세).

남편의 초혼연령을 보면, 동부지역 거주자는 27.44세, 읍·면부지역 거주자는 26.97세로 0.47세의 차이를 보였으며, 부인의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자는 24.16세, 읍·면부지역 거주자는 23.27세로 부인의 초혼연령의 지역간 차이는 0.89세로 남성보다 여성의 초혼연령이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편은 39세 이하까지 높아지다가 40세 이후부터 점차 낮아지고, 부인은 34세 이하까지는 증가추세이나 35세 이상부터 차츰 감소하여 연령이 많을수록 초혼연령은 낮아졌다. 남편과 부인간의 초혼연령 차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아질수록 높아져 24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0.43세로 남녀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50세 이후의 경우 4.20세의 차이를 보였다.

〈표 9-5〉 남편 및 부인의 특성별 평균 초혼연령¹⁾

(단위: 세)

특성	남편	부인	차이(남편-부인)
전체	27.36	24.02	3.34
지역			
동부	27.44	24.16	3.28
읍·면부	26.97	23.27	3.70
연령			
15~24세	20.95	20.52	0.43
25~29세	25.49	24.43	1.06
30~34세	27.63	25.30	2.33
35~39세	28.08	24.94	3.14
40~44세	27.98	24.45	3.53
45~49세	27.38	23.49	3.90
50세 이상	26.99	22.79	4.20
교육수준			
초교 이하	26.45	21.62	4.83
중학교	26.43	22.41	4.02
고등학교	27.15	24.08	3.07
대학 이상	28.12	25.72	2.40
초혼년도			
1979년 이전	25.91	21.68	4.23
1980~'89년	26.64	23.58	3.06
1990~'99년	28.11	25.04	3.07
2000년대	29.55	26.62	2.93
(분석대상 수)	(8,896)	(9,408)	(-)

주: 1) 남편과 부인 모두 초혼인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교육수준별로는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혼연령은 높아졌으며, 남녀간의 차이는 고학력일수록 감소하였다. 즉,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인 남

편의 초혼연령은 26.45세, 동일한 교육수준의 부인 초혼연령은 21.62세이었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초혼연령도 점차 높아져 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인 남편의 초혼연령은 28.12세, 부인은 25.72세이었으며, 남녀간 차이는 초등학교 이하 학력의 경우 4.83세에서 대학 이상 학력의 경우 2.40세로 감소하였다. 또한 초혼연도별로는 최근에 결혼한 남녀일수록 초혼연령은 높아지고, 남녀별 초혼연령간의 차이는 감소하여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남편의 초혼연령은 25.91세, 부인의 초혼연령은 21.68세로 남녀간의 초혼연령의 차이는 4.23세이었으나 2000년대에 결혼한 남편은 29.55세, 부인은 26.62세로 그 차이는 2.93세로 감소하여 최근에 결혼한 젊은 층일수록 남녀간 초혼연령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남녀 특성별 결합형태

가. 초혼연령별 결합형태

부인과 남편의 초혼연령별 결합형태를 보면, 아직도 남자가 연상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나 점차 남녀 동갑이거나 여자가 연상인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녀의 초혼연령별 결합형태를 살펴보면, 19세 이하 여성의 경우 20~24세 이하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이 43.6%, 25~29세 남성과 결혼한 비율은 38.1%로 대부분(81.7%) 20대의 남성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세에 결혼한 여성은 25~29세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이 64.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같은 연령층인 20~24세 연령층과 결혼한 비율(24.0%)이 높았다. 이에 비해 25~29세에 결혼한 여성은 같은 연령층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이 64.5%이었으며, 30~34세에 결혼한 여성은 같은 연령층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이 59.1%, 그리고 35세 이상에 결혼한 여성은 같은 35세 이상 연령층의 남성과 결혼한 비율이 80.8%에 달했다. 이는 비슷한 연령대에서 결혼하고자 하는 결혼연령상의 동질혼의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남녀 결혼연령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주79). 그러나 부인의 초혼연령

주79) 최근 조사결과에 의하면, 20~44세 미혼남성이 생각하는 남자의 이상적인 평균 결혼연령

이 높아질수록 연하의 남성과 결혼하는 비율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최근의 초혼연령별 남녀 결합형태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표 9-6〉 15세 이상 기혼여성과 남편의 초혼연령별 분포¹⁾

(단위: %, 명)

부인	남편					계(수)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19세 이하	11.5	43.6	38.1	5.8	1.1	100.0(759)
20~24세	0.6	24.0	64.6	10.1	0.7	100.0(4,678)
25~29세	0.0	2.9	64.5	30.2	2.3	100.0(3,330)
30~34세	0.0	1.3	13.7	59.1	25.9	100.0(452)
35세 이상	0.0	0.0	2.7	16.4	80.8	100.0(73)
전체	1.2	16.8	59.4	19.4	3.2	100.0(9,292)

주: 1) 부인, 남편 모두 초혼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함.

나. 교육수준별 결합형태

교육수준은 결혼당사자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의 교육수준별 결합형태에 있어서도 대부분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수준의 상향혼을 선택하는 경향이다. 이는 본 조사대상 부인의 남편과의 교육수준별 결합형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이하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부인의 경우 같은 학력을 가진 남성과의 결합률이 가장 높아 55.8%를 차지하였으나 부인보다 높은 학력의 남편과 결혼한 비율도 44.2%나 되었으며, 중학교 학력의 부인은 고등학교 이상의 남성과의 결합률이 52.1%로 같은 학력의 남성과의 결합률(41.5%)보다 다소 높았다.

그러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동일한 학력간의 결합률이 높게 나타나 고등학교 학력의 부인이 동일한 학력의 남성과 결합한 비율은 64.2%이었으며, 대학 이상

은 30.57세, 여자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27.60세이었으며, 그리고 20~44세 미혼여성이 생각하는 남자의 이상적인 평균 결혼연령은 31.34세, 여자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28.94세로 남녀 미혼응답자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연상인 결혼을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이삼식, 2005).

의 높은 학력의 남성과 결합한 비율은 32.1%이었다. 또한 대학 이상 부인의 동일학력 남성과의 결합률은 더욱 높아 89.2%에 달했다. 반대로 남성보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의 결합비율은 낮은 편으로, 교육수준에 있어서도 동질혼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9-7〉 15세 이상 기혼여성 및 남편의 교육수준별 분포

(단위: %, 명)

부인	남편				계(수)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초등학교 이하	55.8	28.0	14.5	1.7	100.0(868)
중학교	6.4	41.5	46.9	5.2	100.0(1,163)
고등학교	0.7	3.0	64.2	32.1	100.0(4,102)
대학 이상	0.1	0.4	10.3	89.2	100.0(2,613)
전체	6.8	9.8	40.8	42.6	100.0(8,746)

4. 혼인지속기간

본 조사에서 나타난 부인의 평균 혼인지속기간은 17.46년으로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이 17.05년인데 비해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부인들은 19.67년으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혼인지속기간이 2.62년 더 길었다.

혼인지속기간은 부인의 연령, 학력 및 초혼연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 연령이 높을수록, 저학력일수록, 그리고 초혼연도가 빠를수록 혼인지속기간은 길었다. 연령별로는 대부분 20대에서 초혼이 이루어짐으로써 연령이 높을수록 혼인지속기간도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이며,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층일수록 고연령층으로 초혼연령이 빠른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주80). 전체적으로 동부지역보다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들의 혼인지속기간이 길게 나타나는 것은 동부지역은 저연령층 부인들의 비율이 높은 반면, 읍·면부지역은 고연령층 부인들의

주80) 교육수준별 평균 연령과 초혼연령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이하의 부인들의 평균 연령은 52.44세, 초혼연령은 21.67세 이었으며, 중학교 학력의 부인들은 평균 연령 48.84세, 초혼연령 22.48세, 고등학교 학력의 부인들은 평균 연령 40.33세, 초혼연령은 24.15세, 그리고 대학 이상 학력 부인들은 평균 연령 37.06세, 그리고 초혼연령은 25.74세이었음.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은 낮고, 초혼연령도 낮아 혼인지속기간이 길게 나타나는 것이라 하겠다.

〈표 9-8〉 기혼여성의 특성별 평균 혼인지속기간¹⁾

(단위: 년)

특성	전국	동부	읍·면부
전체	17.46	17.05	19.67
연령			
15~24세	2.23	2.26	2.10
25~29세	3.28	3.13	4.21
30~34세	6.93	6.84	7.49
35~39세	11.95	11.90	12.20
40~44세	17.54	17.43	18.20
45~49세	23.37	23.22	24.29
50세 이상	31.14	30.80	32.38
교육수준			
초교 이하	30.78	30.65	31.01
중학교	26.43	26.68	25.60
고등학교	16.22	16.44	14.92
대학 이상	11.40	11.41	11.29
초혼년도			
1979년 까지	31.61	31.44	32.22
1980~'89년	21.26	21.22	21.50
1990~'99년	11.49	11.49	11.49
2000년대	3.22	3.20	3.38
(분석대상 수)	(8,590)	(7,229)	(1,361)

주: 1) 초혼 유배우부인만을 대상으로 함.

제 2 절 해혼실태

1. 해혼부인의 일반특성

최근 중년기 남성의 사망률 증가와 함께 이혼율 상승으로 인한 가족해체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해체를 야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배우자의 사망, 이혼, 별거 등을 들 수 있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전체 응답대상 부인 중 8.6%가 해혼상태이었다(사별 3.6%, 이혼·별거 5.0%).^{주81)} 이들 해혼부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별 분포는 30대까지는 17.3%에 불과하나 40대 이후는 82.7%(40대 38.5%, 50대 44.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해혼비율은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40대 이하는 동부지역이, 50대 이상은 읍·면부지역의 비율이 더 높았다(표 9-9 참조).

〈표 9-9〉 사별·이혼·별거부인의 일반특성

(단위: %, 명)

특성	전국	동부	읍·면부
연령			
29세 이하	1.0	1.0	0.7
30~39세	16.3	17.1	12.2
40~49세	38.5	40.6	28.1
50세 이상	44.2	41.3	59.0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5.2	22.1	41.3
중학교	22.2	22.3	21.7
고등학교	40.8	43.3	28.3
대학 이상	11.7	12.3	8.7
취업여부			
취업	69.0	67.9	75.0
비취업	31.0	32.1	25.0
계	100.0	100.0	100.0
(수)	(840)	(700)	(140)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학력층에서 해혼비율이 가장 높았으며(40.8%), 특히 동부지역이 높은 비율(43.3%)이었고, 읍·면부지역은 초등학교 이하의 부인들의 해혼비율이 가장 높았다(41.3%). 해혼부인 중 취업부인은 69.0%로서 읍·면부지

주81) 이혼은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결혼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 동안에 결합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부부간의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민법 제3장 제5절 제1관 제834호)과 합의가 안된 경우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 소멸시키는 재판이혼(민법 제3장 제5절 제2관)으로 나눌 수 있음(김미숙 외, 2002). 별거는 이혼을 전제로 배우자와 비동거 중인 경우만을 의미하며, 취업이나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부부가 일정기간 떨어져 사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역 해혼부인들의 취업률이 75.0%로 동부지역 해혼부인들의 취업률(67.7%) 보다 높았다. 이와 같이 해혼부인들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주82)} 대부분 생계책임자이던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별거에 따라 가구소득이 감소되거나 상실됨으로써 가구원의 생계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하겠다. 즉, 대부분 가정에서 남성을 통해 가정 내로 경제적인 자원이 유입되고 분배되어 왔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소멸은 해혼부인들에게 있어 직접적인 소득상실로 이어져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을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이다.

해혼유형별 부인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별 분포는 사별부인은 50대가 가장 많아 65.2%이었고, 이혼·별거 부인은 40대가 가장 많아 45.3%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사별부인은 51.09세, 이혼·별거부인은 45.01세로 사별부인이 이혼·별거부인보다 고연령층이었다. 교육수준은 사별부인이 고등학교 이상 비율이 36.3%인데 비해 이혼·별거부인들은 64.2%이었다. 이들의 취업률은 각각 65.8%와 71.3%로 사별부인보다는 이혼·별거부인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었다. 이는 이혼·별거부인이 사별부인보다 젊은 연령층으로 어린 자녀의 양육부담과 생계 및 부양책임자로서 취업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주83)}

주82) 본 조사결과에 의한 유배우 부인들의 취업률은 50.3%이었음.

주83)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 이혼가족의 이혼 전에 비해 이혼 후의 소득 감소는 18.3%에 이른다고 함. 여기서 소득차는 이혼을 전후한 연간 가족소득의 변화량임((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데이터, 1998~2003; 김미숙 외, 2005 재인용).

〈표 9-10〉 사별 및 이혼·별거부인의 해혼유형별 특성

(단위: %, 명, 세)

특성	사별	이혼·별거	전체
연령			
29세 이하	0.0	1.6	1.0
30~39세	5.7	24.2	16.4
40~49세	29.1	45.3	38.5
50세 이상	65.2	28.9	44.1
(평균 연령)	51.09	45.01	47.55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40.6	14.1	25.2
중학교	23.0	21.7	22.3
고등학교	29.5	48.8	40.7
대학 이상	6.8	15.4	11.8
취업여부			
취업	65.8	71.3	69.0
비취업	34.2	28.7	31.0
계	100.0	100.0	100.0
(수)	(352)	(488)	(840)

2. 해혼시기

해혼시기는 성별, 해혼유형별로 차이를 보인다. 본 조사결과에 의한 해혼유형별 해혼시기를 살펴보면, 사별부인은 사별당시 40대였던 경우가 35.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30대로서 34.5%, 그리고 50대가 19.7%이었다. 그러나 이혼·별거 부인의 경우는 30대가 49.6%, 40대가 29.4%로 30~40대에서 이혼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해혼당시 평균연령은 사별부인은 40.97세, 이혼·별거 부인은 36.78세이었다.

남편의 경우도 사별은 40~50대(65.5%)에서, 그리고 이혼·별거는 30~40대(81.6%)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해혼당시 남편의 평균연령은 사별은 45.78세, 이혼·별거는 40.21세이었다(표 9-11 참조).

〈표 9-11〉 해혼상태별 해혼당시 부인 및 남편의 연령분포

(단위: %, 명, 세)

해혼당시 연령	사별	이혼·별거	전체
부인			
15~29세	10.8	15.4	13.5
30~39세	34.5	49.6	43.2
40~49세	35.0	29.4	31.8
50세 이상	19.7	5.6	11.6
계	100.0	100.0	100.0
(수)	(351)	(480)	(831)
평균연령	40.97	36.78	38.55
남편			
15~29세	1.1	6.9	4.4
30~39세	26.4	41.3	35.0
40~49세	37.6	40.3	39.1
50~59세	27.9	10.3	17.8
60세 이상	6.9	1.3	3.7
계	100.0	100.0	100.0
(수)	(348)	(467)	(815)
평균연령	45.78	40.21	42.59

전체적으로 사별의 경우 부인은 40대 초반에서, 남편은 40대 후반에서, 그리고 이혼·별거는 부인은 30대 중반에서, 그리고 남편은 40대 초반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해체의 비의도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배우자 사망에 의한 해혼은 남녀 모두 40대에서, 의도적인 요인인 이혼·별거는 남녀 각각 30대와 40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부인의 경우 20대 이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15.4%에 이르며, 남편의 경우에는 50세 이후가 11.6%나 되어 결혼초기나 황혼기 이혼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주84)}

주84) 각 연도별 이혼 중 동거기간이 20년 이상된 부부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5.3%, 1995년 8.2%, 2000년 14.3%, 2005년 18.7%로 점차 증가추세임(통계청, 각 연도).

3. 해혼이유

이혼·별거한 부인만을 대상으로 해혼이유를 살펴본 결과, 성격차이 25.4%, 경제문제 24.6%, 배우자의 외도 21.2%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학대·폭력과 기타에 의한 해혼은 읍·면부지역에서의 비율이 높았고, 그 외 이유는 모두 동부지역에서 비율이 높았다.

이혼·별거 당시 부인의 연령별 해혼이유를 보면,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별거가 가장 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은 경제문제, 배우자의 외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0대는 경제문제가 해혼의 주요 이유가 되고 있어 다른 연령층과의 차이를 보였다.

부인의 교육수준별 이혼·별거의 이유를 보면, 초등학교 이하 학력수준의 부인은 성격차이(21.2%), 경제문제(19.7%), 외도(19.7%) 순이었고, 중학교 학력수준의 부인은 경제문제(28.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외도(23.3%), 성격차이(19.4%), 학대·폭력(18.4%)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학력수준의 부인들은 성격차이(26.7%), 경제문제(25.8%)등의 순이었으며, 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의 부인들은 성격차이가 34.7로 가장 높았다.

부부의 이혼·별거의 이유는 결혼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여 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인 부인은 성격차이에 의한 해혼비율(26.9%)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경제문제(19.8%)로 인한 해혼비율이 높았다. 결혼기간이 10~20년 미만인 부인은 외도(29.5%), 경제문제(24.2%), 성격차이(21.1%)의 순으로, 그리고 20년 이상인 부인은 경제문제(30.0%), 성격차이(24.7%), 외도(20.0%)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9-12 참조).

해혼당시 18세 미만의 자녀유무에 따른 이혼·별거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가 없는 부인은 성격차이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자녀가 있는 부인은 경제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표 9-12〉 이혼·별거 부인의 특성별 이혼·별거 이유

(단위: %, 명)

특성	외도	학대· 폭력	성격 차이	경제 문제	가족부양 의무 불이행	가족간 불화	기타 ¹⁾	계(수)
전체	21.2	10.1	25.4	24.6	10.1	4.0	4.6	100.0(476)
지역								
동부	21.4	9.9	25.6	25.2	10.4	3.5	4.0	100.0(425)
읍·면부	19.6	11.8	23.5	19.6	7.8	7.8	9.8	100.0(51)
이혼·별거당시 연령								
29세 이하	21.9	9.6	21.9	17.8	17.8	4.1	6.8	100.0(73)
30~39세	21.5	9.4	26.6	23.2	11.2	4.7	3.4	100.0(233)
40~49세	23.2	10.1	25.4	31.2	3.6	2.2	4.3	100.0(138)
50세 이상	15.4	15.4	23.1	23.1	11.5	3.8	7.7	100.0(26)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9.7	15.2	21.2	19.7	13.6	0.0	10.6	100.0(66)
중학교	23.3	18.4	19.4	28.2	3.9	1.0	5.8	100.0(103)
고등학교	23.3	4.7	26.7	25.8	11.9	4.7	3.0	100.0(236)
대학 이상	12.5	11.1	34.7	19.4	9.7	8.3	4.2	100.0(72)
결혼기간								
10년 미만	19.2	8.8	26.9	19.8	15.4	6.0	3.8	100.0(182)
10~19년	29.5	11.6	21.1	24.2	6.3	3.2	4.2	100.0(95)
20년 이상	20.0	10.5	24.7	30.0	7.4	2.1	5.3	100.0(190)
이혼·별거시 18세 미만 자녀유무								
없었음	17.9	12.6	27.4	22.1	8.4	6.3	5.3	100.0(95)
있었음	22.3	9.3	24.9	25.2	10.6	3.2	4.5	100.0(377)

주: 1) 건강상 이유, 가출 등이 포함됨.

이혼·별거 이유는 부부의 결혼연도별로도 차이를 보여 1979년 까지 결혼한 부인들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별거가 26.2%로 다른 결혼연도에 비해 높았으며, 1980년대 결혼한 부인은 경제문제, 성격차이, 외도 순으로, 1990년대 결혼한 부인은 경제문제, 성격차이 그리고 가족부양의무 불이행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2000년대 결혼한 부인들은 성격차이, 가족부양의무 불이행이 주요 원인이었다(표 9-13 참조).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외도로 인한 이혼·별거비율은 낮아지는 반면, 성격차이, 가족부양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이혼·별거비율은 높아지는 추세였다.

〈표 9-13〉 이혼·별거 부인의 결혼연도별 이혼·별거 이유

(단위: %, 명)

결혼연도	외도	학대· 폭력	성격 차이	경제 문제	가족부양 의무 불이행	가족간 불화	기타 ¹⁾	계(수)
1979년 까지	26.2	14.8	23.5	18.1	8.7	2.0	6.7	100.0(149)
1980~'89년	23.3	7.9	27.0	27.5	7.4	2.1	4.8	100.0(189)
1990~'99년	14.2	8.3	22.5	29.2	15.0	8.3	2.5	100.0(120)
2000년대	6.3	0.0	43.8	18.8	25.0	6.3	0.0	100.0(16)
전체	21.3	9.9	25.3	24.7	10.3	3.8	4.6	100.0(473)

주: 1) 건강상의 이유, 가출 등이 포함됨.

4. 해혼부인의 평균 혼인지속기간

이들 해혼부인들의 결혼 시부터 배우자의 사별, 이혼·별거 시까지의 평균 혼인지속기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15.59년으로 이 중 사별부인은 18.75년, 이혼·별거부인은 13.26년으로 사별부인의 혼인지속기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혼·별거부인보다는 사별부인이 고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하겠다. 결혼연도별로는 사별이나 이혼·별거부인 모두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혼인지속기간이 짧았으며, 특히 이혼·별거부인의 혼인지속기간이 짧았다. 1979년 까지 결혼한 부인들 중 사별한 부인은 21.51년 동안 결혼이 지속되었으며, 이혼·별거 부인은 18.77년 동안 지속되었다. 1980~'89년 결혼한 부인들은 각각 14.52년과 13.39년 동안 결혼이 지속되었으며, 1990~'99년 결혼한 부인들은 8.57년과 7.92년 동안, 그리고 2000년대 결혼한 부인들은 4.08년과 2.63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러한 결혼연도별 혼인지속기간의 변화는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젊은 층이며, 저연령층의 경우 사별보다는 이혼·별거에 의한 해혼율이 높기 때문이다.

〈표 9-14〉 해혼부인의 결혼년도별 평균 혼인지속기간

(단위: 년, 명)

결혼년도	사별	이혼·별거	전체
1979년 까지	21.51	18.77	20.45
1980~'89년	14.52	13.39	13.77
1990~'99년	8.57	7.92	8.01
2000년대	4.08	2.63	2.70
전체	18.75	13.26	15.59
(분석대상 수)	(349)	(473)	(823)

5. 이혼·별거 제외자

이혼·별거 제외자는 남편 24.4%, 부인 72.0%, 그 외 시부모나 친정부모 등에 의한 비율이 3.6%로 남편보다는 부인의 이혼·별거 제외율이 높았다. 해혼당시 연령별로는 전체적으로 부인의 제외율이 높았으며, 40대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50세 이상부터 약간 낮아지는 추세이었다. 남편이 제외한 경우는 40대까지는 낮아지는 추세이었으나 50대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전체적으로 부인이 제외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고등학교 학력에서 가장 높았다. 결혼기간별로는 결혼기간이 길수록 부인이 제외한 비율이 높았으며, 남편이 제외한 경우는 결혼기간이 길수록 점차 비율이 낮았다.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수별 부인에 의한 이혼·별거 제외율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부인에 의한 이혼·별거 제외율이 높았으나 18세 미만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인의 이혼·별거 제외율은 낮아졌다. 부부간의 연령차이에 따른 부인의 이혼·별거 제외율은 부부간 연령이 10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부인에 의한 이혼·별거 제외율(96.4%)이 가장 높았다(표 9-15 참조). 이에 비해 남편이 제외한 경우는 부부간 연령차이가 적은 경우에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표 9-15〉 이혼·별거 부인의 특성별 이혼·별거 제의자

(단위: %, 명)

특성	남편	부인	기타 ¹⁾	계(수)
전체	24.4	72.0	3.6	100.0(471)
이혼·별거당시 연령				
29세 이하	27.4	69.9	2.7	100.0(73)
30~39세	24.5	70.8	4.7	100.0(233)
40~49세	21.0	76.1	2.9	100.0(138)
50세 이상	33.3	66.7	0.0	100.0(27)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7.7	67.7	4.6	100.0(65)
중학교	23.5	73.5	2.9	100.0(102)
고등학교	22.6	74.5	3.0	100.0(235)
대학 이상	28.6	67.1	4.3	100.0(70)
결혼기간				
10년 미만	29.3	67.4	3.3	100.0(181)
10~19년	22.1	73.7	4.2	100.0(95)
20년 이상	21.1	76.3	2.6	100.0(190)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수				
없음	22.9	74.0	3.1	100.0(96)
1명	23.9	73.5	2.6	100.0(155)
2명 이상	24.9	70.6	4.5	100.0(221)
부부간 연령차이				
동갑	30.9	65.5	3.6	100.0(55)
1~2세	27.3	69.8	2.9	100.0(139)
3~4세	20.0	76.4	3.6	100.0(110)
5~9세	26.4	69.6	4.0	100.0(125)
10세 이상	3.6	96.4	0.0	100.0(28)

주: 1) 시부모·친정부모 및 기타 가족원

6. 이혼·별거부인의 자녀양육

가.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수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별거는 부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혼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는 자녀의 한 쪽 부모와의 접촉 상실,

이혼 후 함께 사는 부모 자신의 부적응과 비양육적 태도, 이혼가정에 원래부터 있던 가족갈등, 이혼 후 자녀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이혼 후 자녀가 경험하는 이사, 전학, 조부모와의 접촉상실 등과 같은 생활상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Amato, 1993; 조정문 외, 2001 재인용).

본 조사결과에서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수를 살펴보면, 29세 이하에 이혼·별거한 부인들의 경우 6.8%가 아직 자녀를 두지 않은 상태이었으며, 나머지 93.2%는 자녀를 둔 상태이었다. 30대에 이혼·별거한 부인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아 91.6%이었으며, 40대에 이혼한 부인은 64.8%이었다. 그러나 50세 이상에 이혼·별거한 부인 중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비율은 15.4%에 불과하였다.

〈표 9-16〉 이혼·별거 부인의 이혼·별거당시 연령별 18세 미만 자녀수

(단위: %, 명)

이혼·별거당시 연령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수				평균 자녀수
	없음	1명	2명 이상	계(수)	
29세 이하	6.8	43.2	50.0	100.0(74)	1.49
30~39세	8.4	32.6	59.0	100.0(239)	1.60
40~49세	35.2	32.4	32.4	100.0(142)	1.03
50세 이상	84.6	15.4	0.0	100.0(26)	0.16
전체	20.2	33.3	46.6	100.0(481)	1.34

이는 18세 미만의 평균 자녀수에서도 나타났는데, 이혼·별거당시 29세 이하인 부인의 자녀는 평균 1.49명이었으며, 30대는 1.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 40대는 1.03명, 50대는 0.16명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18세 미만 자녀수가 적었다. 이는 부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연령도 높아지고 대부분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결혼을 하였거나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비동거중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혼·별거 당시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인 중 현재에도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인은 전체 이혼·별거 부인 중 58.5%나 되었다. 이혼·별거 당시 18세 미만 자녀수별 현재의 18세 미만 자녀수를 살펴보면, 이혼·별거 당시 1명이었던 부

인 중 현재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부인은 45.0%, 1명은 53.8%, 2명 이상은 1.3%이었으며, 이혼·별거 당시 2명이었던 부인 중 현재 1명도 없는 부인은 38.9%, 1명 15.9%, 2명 이상 45.1%로 현재에도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인은 61.0%이었다.

〈표 9-17〉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수별 현재의 18세 미만 자녀수
(단위: %, 명)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수	현재의 18세 미만 자녀수			계(수)
	없음	1명	2명 이상	
전체	41.5	31.6	26.9	100.0(386)
1명	45.0	53.8	1.3	100.0(160)
2명 이상	38.9	15.9	45.1	100.0(226)

나. 자녀와의 동거자 및 양육비 제공자

조사당시 18세 미만의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의 동거자는 74.3%가 자녀의 모, 20.4%는 자녀의 부로서 대부분이 부모 중 한 쪽과 동거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5.3%는 조부모 등 기타 친척 등과 동거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의 경우 자녀의 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76.2%, 부와 동거하는 비율은 18.8%, 조부모나 기타 친척이 5.0%이었다. 그러나 읍·면부지역의 경우에는 자녀의 모는 58.3%, 부 33.3%, 조부모 8.3%로 동부지역에 비해 부나 조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9-18〉 지역별 현재의 18세 미만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의 동거자
(단위: %, 명)

동거자	전국	동부	읍·면부
부	20.4	18.8	33.3
모	74.3	76.2	58.3
조부모	4.9	4.5	8.3
친척 및 기타	0.4	0.5	0.0
계(수)	100.0(226)	100.0(202)	100.0(24)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 제공자를 보면, 자녀의 모 71.2%, 부 33.1%, 국가 19.4%, 조부모 9.3%, 기타 친척 2.0%, 기타 2.4% 등의 순이었다. 이혼·별거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의 동거자별 양육비 제공자를 보면, 자녀의 부가 동거자일 경우 부가 양육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97.8%이었으나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모가 양육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4.4%에 불과하였다. 또한 모가 동거자일 경우 양육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91.7%이었으며, 비동거중인 부가 양육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16.6%이었다. 그러나 조부모가 어린 손자녀와 동거할 경우 자녀의 부모가 양육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다소 높아 부 27.3%, 모 36.4%이었다.

〈표 9-19〉 현재의 18세 미만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의 동거자별 양육비 제공자¹⁾
(단위: %, 명)

동거자	양육비 제공자							(분석 대상 수)
	부	모	조부모	기타 친척	국가	사회복지 시설	기타	
자녀의 부	97.8	4.4	11.1	-	2.2	-	-	(46)
자녀의 모	16.6	91.7	4.2	1.8	25.4	-	0.6	(168)
조부모	27.3	36.4	70.0	-	-	-	-	(11)
기타 친척	-	-	-	100.0	-	-	-	(1)
국가 및 기타	-	-	-	-	-	-	-	(-)

주: 1) 중복응답 결과임.

제 3 절 가족주기

1. 가족주기 분석대상의 특성

가족주기에 있어서 결혼과 자녀의 출산이 각 가족주기 단계구분의 전환점이 된다는 점에서 본 분석대상은 자녀 출산경험이 있는 초혼부인으로서 유배우이거나 사별 상태인 부인 8,8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부인 중 93.8%가 자녀출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혼연도별로 보면, 1970년대까지 결혼한 부인들은 98.8%가 출산경험이 있는

부인들이었으며, 1980년대 결혼한 부인들은 98.7%, 1990년대는 97.5%, 그리고 2000년대 결혼한 부인들 중에서는 68.4%만이 출산경험이 있었다. 이는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저연령층으로 아직 출산하지 않은 부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9-20〉 15세 이상 초혼부인의 초혼년도별 출생아 유무

(단위: %, 명)

출생아 유무	초혼년도				전체
	1979년 까지	1980~'89년	1990~'99년	2000년대	
없음	1.2	1.3	2.5	31.6	6.2
있음	98.8	98.7	97.5	68.4	9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332)	(2,730)	(2,917)	(1,423)	(9,402)

이들 가족주기 분석대상 부인들의 특성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9-21>과 같다. 연령별로는 동부지역은 40대의 구성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읍·면부지역은 50대의 구성비율이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은 동부지역은 고등학교 학력의 부인 비율(48.2%)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대학 이상인데 비해, 읍·면부지역은 중학교 이하(43.3%)가 동부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되었으며, 그 다음이 고등학교 학력 수준이었다(40.7%). 결혼상태를 보면, 유배우부인은 동부지역이, 사별부인은 읍·면부지역이 높았다. 초혼년도별로 보면, 동부지역은 1990년대에 결혼한 부인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읍·면부지역은 1979년까지 결혼한 부인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출산자녀수는 동부, 읍·면부지역 모두 2명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동부지역은 읍·면부지역에 비해 1명을 출산한 비율이 높았고, 읍·면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2명 이상 출산한 비율이 높았다. 출산완료율은 동부지역이 94.1%로 읍·면부지역(93.9%)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자녀혼인여부는 자녀혼인이 완료된 경우와 자녀결혼이 시작된 경우는 동부지역보다 읍·면부지역에서 높았고, 아직 자녀결혼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는 동부지역이 높았다(동부 86.7%,

읍·면부 76.8%).

〈표 9-21〉 가족주기 분석대상 부인의 지역별 특성¹⁾

(단위: %, 명)

특성	전국	동부	읍·면부
연령			
29세 이하	5.7	5.7	5.7
30~39세	33.9	34.8	29.3
40~49세	35.3	36.1	31.2
50세 이상	25.1	23.4	33.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5.1	21.5	43.3
고등학교	46.9	48.2	40.7
대학 이상	28.0	30.3	16.0
결혼상태			
유배우	95.9	96.3	93.9
사별	4.1	3.7	6.1
초혼년도			
1979년 까지	25.7	23.6	36.3
1980~'89년	30.0	30.7	26.3
1990~'99년	32.7	33.7	27.7
2000년대	11.6	12.0	9.7
출산자녀수			
1명	17.5	18.2	13.9
2명 이상	82.5	81.8	86.1
출산완료 여부			
출산완료	94.1	94.1	93.9
출산 중	5.9	5.9	6.1
자녀혼인여부			
모두 혼인	3.4	3.0	5.1
일부 혼인, 일부 미혼	11.6	10.3	18.1
모두 미혼	85.1	86.7	76.8
계(수)	100.0(8,377)	100.0(7,000)	100.0(1,377)

주: 1) 초혼 유배우이거나 사별이면서 출산자녀 있는 부인만을 대상으로 함.

가족주기 분석대상 부인의 초혼년도별 특성을 살펴보면,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젊은 층의 구성비율이 높았고, 교육수준 역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상태는 최근 결혼한 부인일수록 유배우율이 높았고, 출산아수가 1명인 경우의 비율이 높았으며, 출산완료율은 낮았다. 결혼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전체 분석대상 부인 중 15.0%이었으며, 이 중 자녀의 결혼이 완료된 부인의 비율은 1979년 까지 결혼한 부인의 20.3%와 1980~'89년 결혼한 부인의 0.9%뿐이었다.

〈표 9-22〉 가족주기 분석대상 부인의 초혼연도별 특성¹⁾

(단위: %, 명)

특성	1979년 까지	1980~'89년	1990~'99년	2000년대	전체
연령					
29세 이하	-	-	2.6	41.1	5.6
30~39세	-	6.4	77.5	57.5	34.0
40~49세	14.7	83.1	19.7	1.1	35.3
50세 이상	85.3	10.5	0.2	0.2	25.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6.2	23.0	3.1	1.2	25.1
고등학교	26.8	57.3	55.3	41.1	46.9
대학 이상	6.9	19.7	41.6	57.7	28.0
결혼상태					
유배우	89.6	96.2	99.3	100.0	96.0
사별	10.4	3.8	0.7	-	4.0
출산자녀수					
1명	4.8	11.8	16.6	62.7	17.4
2명 이상	95.2	88.2	83.4	37.3	82.6
출산완료 여부					
출산완료	100.0	100.0	94.4	65.8	94.1
출산 중	0.0	0.0	5.6	34.2	5.9
자녀혼인여부					
모두 혼인	12.9	0.1	0.0	0.0	3.3
일부 혼인, 일부 미혼	44.0	0.9	0.0	0.0	11.6
모두 미혼	43.2	99.0	100.0	10.0	85.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144)	(2,507)	(2,735)	(970)	(8,356)

주: 1) 초혼 유배우이거나 사별이면서 출산자녀 있는 부인만을 대상으로 함.

이들의 초혼연도별 평균연령은 1979년 까지 결혼한 부인들은 53.43세이었으며, 1980~198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44.88세, 1990~199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36.48세, 그리고 2000년대 결혼한 부인들은 30.30세이었다. 이들의 평균 출생아 수는 1979년 까지 결혼한 부인들은 2.60명, 1980~198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2.07명, 1990~199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1.97명, 그리고 2000년대에 결혼한 부인들은 1.39명으로 최근 결혼한 부인일수록 적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평균출생아 수의 감소양상은 자녀관의 변화 등과 함께 소자녀 규범의 정착에 기인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평균 현존자녀수는 총 출생자녀 중 사망자녀를 제외한 자녀수로 1979년 까지 결혼한 부인들은 평균 2.53명이었으나 1980~198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2.05명, 1990~199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1.96명, 그리고 2000년대에 결혼한 부인들은 1.38명이었다. 따라서 평균 출산자녀수와 평균 현존자녀수와의 차이는 그 간의 사망률 개선에 의한 영향으로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가희망자녀수는 출산이 완료되지 않은 부인들이 포함된 1990년대 결혼한 부인들부터 살펴보면, 1990~1999년에 결혼한 부인들은 0.07명, 그리고 2000년대에 결혼한 부인들은 0.49명으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많았고, 따라서 출산완료율은 낮았다(1990~1999년 94.4%, 2000년대 65.8%).

〈표 9-23〉 15세 이상 초혼 출산경험 부인의 초혼연도별 특성

특성	초혼연도			
	1979년 까지	1980~'89년	1990~'99년	2000년대
평균 연령(세)	53.43	44.88	36.48	30.30
평균 출생아수(명)	2.60	2.07	1.97	1.39
평균 현존자녀수(명)	2.53	2.05	1.96	1.38
평균 추가희망자녀수(명)	0.00	0.00	0.07	0.49
출산완료율(%)	100.0	100.0	94.4	65.8
결혼자녀 둔 비율(%)	66.9	1.0	0.0	0.0
평균 결혼자녀수(명)	1.65	1.08	-	-
(분석대상 수)	(2,148)	(2,511)	(2,736)	(969)

주: 1) 추가자녀 희망 여부에서 '생각중'인 경우를 완료에 포함함.

또한 결혼한 자녀를 둔 부인은 연령이 높고 결혼연도가 빠를수록 비율이 높아 1979년 까지 결혼한 부인은 66.9%, 1980~1989년에 결혼한 부인은 1.0%에

불과하였다. 평균 결혼자녀수 역시 결혼연도가 빠른 부인일수록 많아 1979년 까지 결혼한 부인들은 1.65명, 1980~1989년 결혼한 부인은 1.08명, 그리고 1990~2000년대 결혼한 부인들은 아직 자녀의 연령이 어려 결혼한 자녀가 없었다.

2. 가족주기의 변화

가족주기의 각 단계별 시작 및 종료시점을 결정짓는 가족생애사건을 살펴보면, 제1단계인 형성기는 결혼부터 첫째아 출산시점까지, 제2단계인 확대기는 첫째아 출산부터 막내 아 출산시점까지이며, 제3단계인 확대완료기는 막내 아 출산 시부터 자녀의 결혼시작 시까지, 제4단계인 축소기는 자녀의 결혼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자녀의 결혼이 완료된 시점, 제5단계인 축소완료기는 자녀를 모두 결혼시킨 시점에서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로, 그리고 마지막 6단계인 해체기는 배우자사망으로부터 본인 사망 시까지의 기간으로 하였다.

가족주기의 첫 단계인 형성기의 시작시점인 초혼연령은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점점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1979년 까지 결혼한 부인들은 21.66세 이었으나, 1980~1989년 결혼한 부인은 23.6세에, 1990~1999년 결혼한 부인은 24.95세, 그리고 2000년대에 결혼한 부인은 26.34세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가족형성기의 시작시점이 늦어짐을 알 수 있다.

확대기의 시작시점인 첫째 아 출산시 부인연령도 초혼연령 상승의 영향으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높아져 1979년 까지 결혼한 부인은 22.98세였으나 1980~1989년 결혼한 부인은 24.93세, 1990~1999년 결혼한 부인은 26.38세, 그리고 2000년대 결혼한 부인은 27.65세이었다. 확대기의 종료시점이면서 확대완료기의 시작시점인 막내 아 출산시 부인연령은 1979년 까지 결혼한 부인은 27.23세, 1980~1989년 결혼한 부인은 28.29세로 높아졌다. 1990~1999년에 결혼한 부인은 29.25세, 2000년대 결혼한 부인은 29.88세에 출산을 완료할 것으로 추정된다.

확대완료기의 종료시점이며 축소기의 시작시점인 자녀결혼 시작 시 부인연령은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상승하는 추세로 1979년 까지 결혼한 부인들의 경우

50.88세이었으나, 2000년대 결혼한 부인들은 55.55세로 추정된다. 이는 자녀의 결혼연령 상승으로 인해 자녀출산완료 후 자녀결혼 시작 시까지의 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축소기의 종료시점이며, 축소완료기의 시작시점인 자녀결혼 완료시 부인연령은 1979년 까지 결혼한 부인은 55.13세, 2000년대 결혼한 부인은 57.78세로 추정된다. 이는 자녀의 결혼연령이 상승하고는 있으나 과거에 비해 자녀수 감소가 보다 뚜렷하여 출산자녀를 모두 결혼시키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체기의 시작시점인 남편사망시 부인연령은 1979년 까지 결혼한 부인들은 69.66세로, 2000년대 결혼한 부인들은 76.84세로 추정되었으며, 해체기의 종료시점인 부인사망시 연령은 같은 기간에 결혼한 부인들간에 각각 72.76세에서 80.94세로 추정되었다.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 및 남녀간 평균수명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표 9-24〉 가족주기 각 단계의 시작 및 종결당시 부인¹⁾의 평균연령

(단위: 세)

초혼년도	초혼 연령	첫째아 출산	막내 아 출산	자녀결혼 시작	자녀결혼 완료	남편 사망	본인 사망
1979년 까지	21.66	22.98	27.23	50.88	55.13	69.66	72.78
1980~'89년	23.60	24.93	28.29	52.83	56.19	70.69	75.56
1990~'99년	24.95	26.38	29.25	54.28	57.15	74.50	78.73
2000년대	26.34	27.65	29.88	55.55	57.78	76.84	80.94

주: 1) 15세 이상 기혼여성 중 초혼이면서 출산경험이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인의 결혼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족주기의 전체기간은 점점 길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즉, 1979년 까지 결혼한 부인들은 51.20년이었으나 2000년대 결혼한 부인들은 54.66년으로 추정되어 약 30여년 동안 3.46년 정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족주기 전체 기간의 연장은 사망수준의 개선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그에 따른 가족주기 전체기간의 연장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 4 절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의 시사점

최근 교육기회의 증대로 인한 교육수준의 향상, 취업률의 상승, 자아성취 욕구 증대와 함께 결혼의 필요성 약화 등으로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있으며, 남녀의 결혼연령별 결합 형태도 점차 남녀가 동갑이거나 여자가 연상인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결혼경력별 남녀 결합형태도 최근으로 올수록 초혼남녀의 결합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초혼남자와 재혼여자의 결합비율과 재혼남녀의 결합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가부장제적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가족가치의 변화로 인한 부부갈등, 여성의 취업 증가, 여성의 자녀양육권,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등의 이혼의 법적요인의 변화, 그리고 이혼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변화 등에 의해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족해체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이혼부인은 주 생계부양자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자녀양육 문제,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혼가족의 문제는 개인 및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주요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혼가족을 위한 사회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들 이혼가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이혼여성의 경우 생계부양자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됨으로써 이혼 전 보다 이혼 후에 취업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절반 이상이 임시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어 이들의 경제적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 경제활동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준의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등의 지원과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고용문화 조성, 질 높고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혼가족의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위해 상담서비스 제공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족주기는 부부의 결혼에서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을 가족생애 사건발생시기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한 것이다. 최근의 초혼연령의 상승, 출산율의 저

하에 따른 자녀규모의 축소, 그리고 사망률 개선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각 단계별 기간의 변화양상이 뚜렷함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가족주기 단계별 기간의 변화양상은 가족주기단계 구분에 있어 주요 출발점과 종료시점이 되고 있는 자녀수의 감소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결혼부터 남편 사망시까지 부부의 결혼기간은 길어지고 있다. 또한 가족주기의 후기단계인 축소완료기 및 해체기가 연장됨으로써 노인부부가구 및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별 평균수명의 차이로 인해 남성보다 여성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후기 노인들의 지속적인 증가는 생계유지를 위한 노후생활 보장책으로서 경제적인 지원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증대 및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등의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 10 장 기혼여성의 취업실태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구조는 아직도 결혼·출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전통적인 M자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결혼 및 출산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장에서는 기혼 여성의 생애단계별 취업실태를 살펴보고,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 자녀출산 및 양육과 취업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결혼 전·후 취업실태

1. 기혼여성의 결혼 전·후 취업실태

조사대상부인 중 결혼 전에 비취업 중이었던 부인 중 현재 취업중인 부인은 전체의 47.3%, 결혼 전 취업경험이 있는 부인 중 현재 취업중인 부인은 전체의 54.9%로 결혼 전 취업경험이 없는 부인과 있는 부인과의 현재취업에는 7.6%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표 10-1〉 15세 이상 기혼여성의 결혼전·후 취업실태

(단위: %, 명)

결혼전 취업여부	현 취업여부		계(수)
	취업	비취업	
전체	53.0	47.0	100.0(7,324)
취업	54.9	45.1	100.0(5,481)
비취업	47.3	52.7	100.0(1,843)

2. 기혼여성의 특성별 취업률

기혼여성의 특성별 취업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부인의 결혼전 취업률은 74.8%, 현 취업률은 53.0%로 그 차이는 21.8%포인트나 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에서 보다 동부지역에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동부지역 24.0%포인트, 읍·면부지역 9.8%포인트).

〈표 10-2〉 15세 이상 기혼여성의 특성별 결혼전 및 현 취업률

(단위: %, 명)

특성	결혼 전 취업	현 취업
전체	74.8	53.0
지역		
동부	75.6	51.6
읍·면부	70.4	60.6
연령		
15~24세	64.1	30.2
25~29세	83.6	43.0
30~34세	83.4	41.6
35~39세	81.2	52.6
40~44세	71.8	61.2
45~49세	60.8	60.9
교육수준		
초교 이하	62.9	68.9
중학교	60.7	67.3
고등학교	74.1	51.6
대학 이상	81.3	49.1
현 결혼상태		
유배우	75.7	51.5
사별	69.0	73.0
이혼·별거 ¹⁾	60.4	72.8
(분석대상 수)	(7,325)	(7,334)

주: 1) 미혼모 포함

연령별로는 혼전취업률은 24세 이하를 제외할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이었고, 현 취업률은 30대 초반에 다소 낮아지다가 35세 이후 다시 상승하였

고, 45세 이후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결혼후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시기인 30대 초반에 낮아지고, 자녀가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 35세 이후에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은 시기인 45세 이후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취업에 자녀출산 및 양육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교육수준별 혼전 취업률은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현 취업률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 결혼 전과 후의 취업률간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부인의 결혼 후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학력층인 경우, 저학력층에 비해 젊은 연령층^{주85)}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린 자녀가 있을 확률이 높으며, 따라서 자녀양육 부담으로 취업률이 낮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결혼상태별 결혼전 취업률에 있어서는 유배우부인의 취업률(75.7%)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사별부인이었으며(69.0%), 이혼·별거부인의 혼전 취업률(60.4%)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현 취업률은 유배우부인(51.5%)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이혼·별거부인(72.8%), 사별부인(73.0%)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유배우 부인이 가장 젊은 층으로 현재 자녀출산 또는 양육기에 있을 확률이 높고, 해혼부인들의 경우는 가족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주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현 취업실태

1. 현 취업 부인의 취업직종

현재 취업중인 15~49세 부인들의 직업 분포율은 서비스·판매직이 39.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문가·기술공·준전문가 19.8%, 단순노무직 14.4%, 사무직 14.1% 등

주85) 교육수준별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이하는 45.84세, 중학교 44.39세, 고등학교 39.35세, 그리고 대학이상은 36.33세이었음.

의 순이었다.

2003년 조사결과^{주86)}에 비해 전문직이나 사무직의 비율이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서비스·판매직 종사율이나 단순노무직 종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혼여성의 취업이 여전히 임금수준이나 고용지위 등이 낮은 직종에 편재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인의 특성별 직종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는 서비스·판매직, 전문가·기술공·준전문가, 사무직 순으로 높은 비율이며, 읍·면부는 서비스·판매직, 농·축·임업, 단순노무직 순으로 높아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표 10-3〉 현 취업부인의 특성별 직종

(단위: %, 명)

특성	고위공무원·관리직	전문가·기술공·준전문가	사무직 종사자	서비스·판매직	기능관련 근로자	농·축·임업	단순노무직 및 기타	계(수)
전체	0.5	19.8	14.1	39.0	8.7	3.5	14.4	100.0(3,876)
지역								
동부	0.6	21.3	15.0	40.2	8.7	0.6	13.6	100.0(3,233)
읍·면부	0.0	12.3	9.2	33.3	9.2	18.1	17.9	100.0(652)
연령								
15~24세	0.0	22.5	27.5	22.5	17.5	0.0	10.0	100.0(40)
25~29세	0.0	35.1	36.6	20.1	3.6	0.4	4.3	100.0(279)
30~34세	0.3	34.9	24.8	27.6	4.4	1.0	7.0	100.0(613)
35~39세	0.8	24.7	14.7	37.4	8.0	2.0	12.3	100.0(932)
40~44세	0.5	12.9	7.8	46.7	10.4	3.5	18.3	100.0(1,018)
45~49세	0.4	8.6	6.5	45.8	11.5	7.6	19.7	100.0(1,005)
교육수준								
초교 이하	0.0	0.0	0.0	36.4	14.6	18.2	30.8	100.0(198)
중학교	0.0	0.4	1.3	39.9	19.1	8.7	30.6	100.0(471)
고등학교	0.3	5.0	14.5	50.3	10.5	2.8	16.6	100.0(1,969)
대학이상	1.0	53.8	20.5	21.2	1.1	0.4	1.9	100.0(1,239)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은 경우 사무직, 전문가·기술공·준전문가의 비율이 높

주86)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문직 8.4%, 준전문직 7.0%, 사무직 11.6%이었음.

은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서비스·판매직, 기능관련 근로자, 단순노무직 및 기타의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전문가·기술공·준전문가, 사무직 등의 비율이 높은 반면,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단순노무직 비율이 높았다.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는 가구의 특성이나 남편의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특성별로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많은 경우 부인 취업률이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고소득층은 고학력 젊은 부인의 자아성취를 위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인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가구소득에 기여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이 외 가구원 규모가 2인 이하이거나 3세대 이상인 가구, 그리고 현존 자녀수가 없는 가구에서 부인 취업률이 높았다. 이는 가구원 규모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유배우 부부만이 사는 경우이거나, 해혼상태의 부인, 특히 이혼·별거상태의 부인이 많아 생계를 책임져야 하므로 취업률이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3세대 이상 가구의 취업률이 높은 것은 자녀를 돌보아 줄 부모님이 계시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존자녀수가 없을 경우에는 자녀양육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취업하는데 장애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남편의 특성별로는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인 취업률이 높았으며, 남편이 비취업인 경우에도 부인의 취업률은 높게 나타났다. 이 외 가구소득과는 달리 남편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부인 취업률이 낮았다.

〈표 10-4〉 가구 및 남편 특성별 15세 이상 기혼여성의 취업률

(단위: %, 명)

가구특성	취업률	남편특성 ¹⁾	취업률
전체	53.0	전체	51.3
월평균 가구소득		연령	
99만원 이하	42.5	15~29세	43.9
100~199만원	47.4	30~34세	39.0
200~299만원	48.8	35~39세	44.0
300~399만원	53.2	40~44세	55.6
400~499만원	58.7	45~49세	58.6
500만원 이상	62.0	50~54세	60.0
		55세 이상	61.8
가구 규모		교육수준	
2인 이하	63.0	초등 이하	65.2
3~4인	50.2	중학교	70.4
5인 이상	55.2	고등학교	52.1
		대학 이상	47.3
세대결합형태		취업여부	
1세대	61.0	취업	50.9
2세대	50.4	비취업	59.3
3세대 이상	64.4		
현존 자녀수		월평균 근로소득	
없음	57.8	99만원 이하	73.9
1명	46.8	100~199만원	59.1
2명 이상	54.1	200~299만원	52.9
		300~399만원	44.7
		400~499만원	40.2
		500만원 이상	36.0
(분석대상 수)	(7,334)		(6,772)

주: 1) 부인이 있는 남편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주당 평균 근무시간 및 월평균 소득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최저 근로조건의 기준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1주간의 기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 취업부인과 남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부인은 48.4시간, 남편은 54.8시간으로 남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부인보다 6.4시간 더 많았으

며, 부인, 남편 모두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이들의 특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지역별로는 부인, 남편 모두 동부지역 보다는 읍·면부지역의 근로시간이 많았으며, 연령별로 보면, 부인은 24세 이하는 47.8시간이었다가 점차 감소하여 30~34세에 45.4시간으로, 그리고 35세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여 45~49세는 51.3시간에 이른다. 남편의 경우에는 39세 이하까지 점차 감소하다가 40~44세에 56시간으로 가장 근로시간이 길었으며, 그 이후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은 35세 이후부터 근로시간이 증가하는데 비해 남편은 45세 이후 고령층으로 갈수록 근로시간이 감소하여 부인과 차이를 보였다.

〈표 10- 5〉 현 취업부인 및 남편의 특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시간, 만원)

특성	근로시간		근로소득	
	부인	남편 ¹⁾	부인	남편 ¹⁾
전체	48.4	54.8	118.2	248.6
지역				
동부	47.8	54.7	124.2	255.7
읍·면부	51.3	55.1	88.7	214.4
연령				
15~24세	47.8	-	96.4	-
25~29세	45.6	55.6	137.1	183.1
30~34세	45.4	55.0	140.8	230.2
35~39세	46.7	54.9	122.5	261.5
40~44세	49.7	56.0	115.7	264.2
45~49세	51.3	54.9	98.5	261.6
50~54세	-	52.6	-	223.1
55세 이상	-	52.5	-	162.8
교육수준				
초교 이하	53.2	51.0	63.6	127.4
중학교	54.2	56.5	73.0	168.6
고등학교	49.8	57.7	98.4	229.0
대학이상	43.2	52.1	175.9	290.0
(분석대상 수)	(3,874)	(3,335)	(3,841)	(3,279)

주: 1) 부인이 있는 남편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교육수준별로는 부인은 고등학교 이상 보다는 중학교 이하에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이상이 43.2시간으로 가장 적었다. 남편은 고등학교 학력까지는 점차 증가하다가 대학이상에서 52.1시간으로 5.6시간의 감소를 보였다.

부인과 남편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비교해 보면, 부인은 118.2만원, 남편은 248.6만원으로 남편의 근로소득을 100으로 봤을 경우 부인의 근로소득은 47.5%에 불과하였다. 지역별로는 부인, 남편 모두 동부지역이 읍·면부지역보다 근로소득이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부인의 경우 25~29세에 137.1만원으로 남편의 근로소득(183.1만원)의 74.9%에 해당하였으며, 남편 소득에 가장 가까운 수준이었다. 30세 이후부터는 점차 비율이 낮아져 45~49세는 남편 소득의 37.7%에 해당하는 98.5만원에 불과하였다. 이에 비해 남편소득은 40~44세까지는 계속 많아지는 추세이다가 45세 이후부터는 점차 적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부인, 남편 모두 학력이 높아질수록 소득도 많아지는 추세이었으나 부인의 소득은 가장 많은 대학이상을 비교할 경우에도 남편소득의 60.7%에 불과하였다.

다음은 부인, 남편의 직종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으로 부인, 남편 모두 서비스 및 판매직의 근로시간이 가장 길어 부인은 54.4시간, 남편은 63.9시간이었으며, 가장 근로시간이 짧은 직종은 부인은 전문가·기술직·준전문가로 40.0시간이었고, 남편은 단순노무직 및 기타로 47.8시간이었다.

월평균 근로소득은 부인, 남편 모두 고위공무원 및 관리직이 가장 많았으며, 부인의 근로소득이 남편소득의 89.4%를 차지하여 남편의 소득에 가장 근사한 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종 중 가장 소득이 적은 직종은 부인은 농·축·임업으로 18.7만원, 남편은 단순노무직 및 기타로 122.7만원이었다. 이와 같이 부인의 경우 농·축·임업에서의 소득이 적은 것은 대부분 무급가족종사자로서 근로에 따른 소득을 별도로 받지 못하는데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표 10-6〉 현 취업부인 및 남편의 직종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시간, 만원)

직종	근로시간		근로소득	
	부인	남편 ¹⁾	부인	남편 ¹⁾
전체	48.4	54.8	118.2	248.6
고위공무원 및 관리직	47.4	51.2	361.9	404.6
전문가·기술직·준전문가	40.0	49.4	185.5	297.2
사무직 종사자	44.8	48.7	137.2	258.7
서비스·판매직	54.4	63.9	107.1	255.0
기능관련 근로자	51.1	55.5	90.9	206.5
농·축·임업	47.6	55.0	18.7	185.6
단순노무직 및 기타	45.6	47.8	70.8	122.7
(분석대상 수)	(3,874)	(3,293)	(3,841)	(3,247)

주: 1) 부인이 있는 남편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3. 현재의 일과 가정생활 병행상의 어려움

일과 가정생활 병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가사부담이 2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녀양육 부담 22.9%,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15.5%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모두 가사부담과 자녀양육 부담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가사부담과 노부모 부양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연령층은 별 어려움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그 다음 순으로 가사부담과 자녀양육 부담을 지적하였으며, 30대 연령층에서는 자녀양육 부담을, 그리고 40대 연령층에서는 가사부담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층 부인일수록 가사부담을 지적한 비율이, 대학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부인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삼식 외(2005)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20~44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직장과의 병행상의 어려움을 질문한 결과, 자녀양육(46.4%)과 가사부담(39.0%)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자녀출

산 및 양육기에 있는 취업부인들의 자녀양육 및 가사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표 10-7〉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일과 가정생활 병행상 어려움

(단위: %, 명)

특성	없음	자녀 양육 부담	가사 부담	부부공유 시간 부족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직장 생활과 육아병행	노부모 부양	기타	계(수)
전체	20.6	22.9	29.2	4.3	15.5	5.5	0.8	1.1	100.0(3,862)
지역									
동부	20.8	23.0	28.1	4.4	15.9	6.0	0.7	1.1	100.0(3,215)
읍·면부	19.3	22.7	34.8	4.0	13.8	3.1	1.2	1.1	100.0(647)
연령									
15~24세	32.5	20.0	22.5	17.5	0.0	2.5	0.0	5.0	100.0(40)
25~29세	27.8	22.7	23.1	10.1	6.5	8.3	0.0	1.4	100.0(277)
30~34세	12.6	33.9	18.5	3.4	16.2	13.4	0.5	1.3	100.0(610)
35~39세	13.9	31.6	17.8	3.9	24.0	7.9	0.8	0.2	100.0(929)
40~44세	17.6	21.9	35.2	3.3	17.7	2.3	1.0	1.1	100.0(1,011)
45~49세	32.1	9.4	42.4	4.2	8.0	1.0	1.1	1.7	100.0(997)
교육수준									
초교 이하	22.7	11.3	55.2	3.6	6.7	0.0	0.0	0.5	100.0(194)
중학교	29.6	14.4	42.3	2.8	7.1	0.9	1.3	1.7	100.0(466)
고등학교	18.1	24.4	29.9	4.2	17.8	3.4	1.1	1.0	100.0(1,962)
대학 이상	20.5	25.8	19.1	5.2	16.5	11.4	0.2	1.2	100.0(1,233)

4. 현 취업 계속여부

현 취업부인들의 경우, ‘현재의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경제적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정년 등으로 일할 수 없을 때 까지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동부, 읍·면부 거주부인 모두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가 가장 높았으며, 특히 동부지역 거주부인보다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에서 더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이었으며,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에서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24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자녀 출산 시 까지, 쉬고 싶어질 때까지 등의 순이었으나, 25~29세 연령층에서는 정년으로 일할 수 없을 때까지의 비율이 높았고, 30대 이후 연령층에서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더욱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이상을 제외한 모든 학력군에서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가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았다.

〈표 10-8〉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재 일 계속 여부

(단위: %, 명)

특성	당장 그만둘 생각	자녀 출산시 까지	경제적 여건 좋아질 때 까지	정년 등으로 일할 수 없을 때까지	건강 허락할 때 까지	쉬고 싶어질 때 까지	기타	계(수)
전체	1.4	2.4	25.3	18.3	35.4	16.3	0.8	100.0(3,861)
지역								
동부	1.6	2.6	25.5	19.0	33.6	16.7	0.9	100.0(3,213)
읍·면부	0.5	1.4	24.7	14.7	44.1	14.4	0.3	100.0(648)
연령								
15~24세	2.6	30.8	33.3	5.1	2.6	23.1	2.6	100.0(39)
25~29세	3.2	19.1	19.8	24.5	12.2	20.1	1.1	100.0(278)
30~34세	1.3	3.9	24.4	22.6	25.1	21.5	1.1	100.0(610)
35~39세	1.0	0.5	26.6	20.7	33.2	17.3	0.6	100.0(927)
40~44세	0.8	0.0	26.2	16.3	40.1	15.9	0.7	100.0(1,011)
45~49세	1.9	0.0	25.0	14.4	46.8	11.2	0.7	100.0(996)
교육수준								
초교 이하	2.1	0.5	25.6	8.2	56.4	5.6	1.5	100.0(195)
중학교	1.9	0.2	27.4	11.8	49.3	8.8	0.6	100.0(467)
고등학교	0.7	2.0	30.0	14.1	36.9	15.5	0.8	100.0(1,959)
대학 이상	2.3	4.2	16.9	29.1	24.5	22.3	0.7	100.0(1,235)

기혼여성의 직종별로는 고위 공무원·관리직과 전문가·기술공·준전문가 및 사무직에 종사하는 부인은 정년 등으로 일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비스·판매직, 기능관련 근로자, 농·축·임업, 그리고 단순노무직 및 기타 직에 종사하는 부인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농·축·임업은 그 비율이 71.1%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종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사무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부인은 정년시까지 취업을 원하는 반면, 육체적 노동이 주를 이루는 직종에 근무하는 부인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취업을 계속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직종간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표 10-9〉 15~49세 기혼여성의 직종별 현재 일 계속 여부¹⁾

(단위: %, 명)

구분	고위공무원·관리직	전문가·기술공·준전문가	사무직 종사자	서비스·판매직	기능관련 근로자	농·축·임업	단순 노무직 및 기타	전체
당장 그만둘 생각	0.0	1.6	1.5	1.9	0.9	0.0	0.7	1.4
자녀출산시까지	0.0	3.0	6.8	1.8	1.8	0.0	0.2	2.4
경제적 여건 좋아질 때 까지	11.1	12.1	22.9	30.3	25.4	14.1	35.4	25.3
장년 등으로 일할 수 없을 때까지	38.9	37.6	25.7	10.3	13.9	10.4	10.0	18.3
건강 허탈때 까지	33.3	23.1	22.4	38.6	45.9	71.1	41.7	35.4
쉬고 싶어질 때 까지	16.7	21.9	19.4	16.4	11.8	4.4	11.1	16.3
기타	0.0	0.8	1.3	0.8	0.3	0.0	0.9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8)	(763)	(545)	(1,509)	(338)	(135)	(551)	(3,859)

주: 1) 현 취업부인만을 대상으로 함.

장지연 외(2003)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으로 인해 직장생활의 중단과 직장생활 더 잘 하기 위하여 자녀수 조절을 고려한 적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직장중단과 자녀수 조절 모두를 고려한 적이 있다는 경우가 29.5%, 직장중단은 고려하지 않았으나 자녀수나 출산시기 조절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는 경우 17.8%, 직장중단은 고려하였으나 자녀수나 출산시기 조절을 고려한 경험이 없다는 경우 27.6%, 그리고 직장중단과 자녀수나 출산시기 조절 2가지 모두 고려하지 않은 경우^{주87)}는 25.1%로 상당수의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경우 직장과 출

주87) 직장생활중단과 자녀수 조절을 모두 고려한 적이 있다는 경우를 '갈등형', 직장생활중단은

산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갈등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5. 기혼여성의 취업 및 비취업 이유

15~49세 기혼여성 중 취업부인의 특성별 취업 이유를 살펴보면, 생활비 보탬이 주요 이유인 경우가 40.8%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25~29세 연령층 부인이,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생활비 보탬을 위해 취업중인 경우가 많았다.

〈표 10-10〉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현 취업이유

(단위: %, 명)

특성	생계 유지	생활에 보탬	자녀 교육비 충당	노후대책 마련	사회활동 및 자기발전	기타	계(수)
전체	26.5	40.8	12.3	4.4	15.7	0.2	100.0(3,862)
지역							
동부	25.6	40.0	12.9	4.4	16.9	0.2	100.0(3,214)
읍·면부	31.0	44.9	9.6	4.5	10.0	0.0	100.0(648)
연령							
15~24세	39.5	36.8	0.0	0.0	23.7	0.0	100.0(38)
25~29세	15.1	50.4	2.9	4.3	27.0	0.4	100.0(278)
30~34세	20.7	40.5	10.3	5.7	22.8	0.0	100.0(610)
35~39세	24.7	39.3	13.7	4.4	17.7	0.2	100.0(928)
40~44세	25.4	41.1	16.5	4.4	12.5	0.0	100.0(1,012)
45~49세	35.5	39.7	11.1	4.0	9.3	0.3	100.0(997)
교육수준							
초교 이하	45.6	45.1	5.7	3.1	0.5	0.0	100.0(193)
중학교	37.7	42.4	12.8	3.9	3.0	0.2	100.0(467)
고등학교	28.2	43.8	15.6	3.8	8.4	0.2	100.0(1,959)
대학 이상	16.5	35.2	7.9	5.7	34.5	0.2	100.0(1,234)

고려하지 않았으나 자녀수나 출산시기 조정을 고려한 경우 '경력중시형', 직장생활중단은 고려하였으나 자녀수나 출산시기의 조정을 고려한 경험이 없다는 경우 '자녀중시형', 그리고 직장생활중단이나 자녀수 및 출산시기 조정 등 2가지 모두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안정형'으로 구분함(장지연, 부가청, 2003).

다음은 생계유지 26.5%, 사회활동·자기발전 15.7%, 자녀교육비 충당 12.3%, 노후대책 마련 4.4%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동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모두 생활에 보탬, 생계유지 순으로 높았으며, 특히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동부지역 거주부인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15~24세 연령층은 생계유지를, 그리고 25세 이상 연령층은 생활에 보탬이 가장 높았다. 이 외 현재 취업이유의 두 번째는 15~24세 이하 연령층은 생활에 보탬을, 25~34세 연령층은 사회활동 및 자기발전을, 그리고 35세 이상 연령층은 생계유지를 주요 이유로 지적하고 있어, 연령별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부인은 생계유지(45.6%)와 생활에 보탬(45.1%)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고등학교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부인은 생활에 보탬, 생계유지 순으로, 그리고 대학이상의 학력소지부인은 생활에 보탬, 사회활동 및 자기발전 순이었으며, 특히 사회활동 및 자기발전은 34.5%나 되어 고등학교 이하 학력소지의 부인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취업은 생계유지나 생활비 보탬이 주요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취업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고연령층, 저학력층 부인들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15~49세 이하 연령층 비취업 기혼여성들의 비취업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양육(57.3%)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건강상의 이유(13.9%), 일하고 싶지 않아서(7.6%) 등의 순이었으며, 이 외 일자리 찾는 방법을 몰라서(5.0%), 가사(4.7%), 남편·시댁식구의 반대(4.0%)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동부,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모두 자녀양육 때문이 가장 높았고, 연령별로는 45~49세 연령층 부인을 제외한 전체 연령층에서 자녀양육 때문에 취업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25~34세 연령층에서 높았다(25~29세 74.4%, 30~34세 79.1%). 이는 이들 연령대의 경우 자녀가 어린 경우가 많고, 따라서 자녀양육의 책임이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하겠다.

〈표 10-11〉 15-49세 기혼여성의 특성별 비취업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역		연령						전체
	동부	읍·면·부	15~24	25~29	30~34	35~39	40~44	45~49	
일하고 싶지 않아서	7.9	5.4	1.1	4.1	3.0	4.2	8.9	19.7	7.6
건강상 이유로	13.5	16.7	11.2	5.7	6.0	10.8	18.3	29.2	13.9
일자리 찾는 방법 몰라서	5.1	4.7	2.2	0.3	1.6	4.0	7.7	11.3	5.0
기타 개인적인 이유	1.2	0.7	1.1	2.5	0.6	0.7	1.1	1.9	1.1
자녀양육	57.2	57.8	60.7	74.4	79.1	69.0	45.3	14.1	57.3
가사	4.7	4.5	7.9	2.5	1.6	3.1	5.9	10.4	4.7
남편 및 시댁식구의 반대	4.0	4.2	2.2	2.5	2.5	3.8	5.8	5.6	4.0
기타 가족적인 이유	2.2	1.9	11.2	5.4	2.4	0.6	1.4	1.2	2.1
임금	1.0	0.7	1.1	0.8	0.6	0.7	1.1	1.9	1.0
근로시간	1.5	2.1	0.0	1.1	1.6	1.8	2.3	0.9	1.6
학력수준에 맞지 않아서	0.9	0.5	0.0	0.8	0.3	0.7	1.3	1.4	0.8
기타 사회적인 이유	0.9	0.7	1.1	0.8	0.5	0.5	0.9	2.3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9
(수)	(3,019)	(424)	(89)	(367)	(863)	(840)	(640)	(644)	(3,443)

제 3 절 생애단계별 취업실태

본 절에서는 기혼여성의 생애단계별 취업상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혼여성의 특성별로 혼전·혼후, 출산 전·후 취업유형과 막내 아 입학 전·후의 취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각 생애단계별 취업을 지속한 부인의 취업직장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생애단계별 취업여부

생애단계별 기혼여성의 취업률을 보면, 결혼 직전에 74.8%이었던 취업률이 결혼 직후 37.3%로 37.5%포인트 감소하였고, 첫째 아 출산전에 29.7%이었던 취업률은 첫째 아 출산 후 21.3%로 8.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막내 아 출산 전에 25.0%이었던 취업률이 막내 아 출산 후 21.8%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막내 아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44.6%로 증가하였고, 막내 아 초등학교

입학 후는 47.0%로 더욱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혼과 자녀출산이 부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0-12〉 생애단계별 부인의 취업여부¹⁾

(단위: %, 명)

구분	취업	비취업	계(수)
결혼직전	74.8	25.2	100.0(7,324)
결혼직후	37.3	62.7	100.0(7,324)
첫째아 출산전	29.7	70.3	100.0(6,751)
첫째아 출산후	21.3	78.7	100.0(6,751)
막내아 출산 전	25.0	75.0	100.0(6,729)
막내아 출산 후	21.8	78.2	100.0(6,729)
막내아 초교 입학 전	44.6	55.4	100.0(4,557)
막내아 초교 입학 후	47.0	53.0	100.0(4,557)

주: 1) 각 생애단계별 취업부인만을 대상으로 함.

2. 생애단계별 부인의 특성별 취업유형

조사대상 기혼여성 중 취업경험이 전혀 없는 부인은 3.4%이었으며,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 3.5%,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3.0%이었다. 전체 기혼여성 중 첫 번 취업한 시기만을 중심으로 분류할 경우 혼전 취업부인은 88.1%이었으며, 혼후 취업자 1.8%, 출산 후 취업자 6.6%이었다.

부인의 취업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혼전 취업자 중 현재까지 취업을 지속하고 있는 부인은 12.5%, 혼전 취업을 중단한 부인은 29.7%, 혼전 취업 중단 후 재취업하여 현재까지 지속중인 부인은 34.8%, 그리고 혼전 취업을 중단했으나, 재취업 후 다시 중단한 부인이 11.1%이었다(취업지속 47.3%, 취업 중단 40.8%).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경우, 혼전 취업자 88.7%, 혼후 취업자 2.3%, 출산 후 취업자 5.5%이었다. 혼전 취업자 중에서는 혼전 취업을 중단했다가 재취업하여 현재 취업 중인 부인이 3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혼전 취업을 중단한 경우이었다(30.5%). 이 외 혼전 취업을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는 경우(12.5%), 혼전 취업 중단, 재취업, 재중단 한 경우 (11.4%) 순이었다. 혼후 취

업자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며, 혼후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는 부인이 0.7%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출산 후 취업한 부인의 경우, 출산 후 취업하여 현재까지 지속 중인 경우가 3.4%로 가장 높았다.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경우에는 혼전 취업을 중단하였다가 재취업한 후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는 경우가 38.1%나 되었다. 다음은 혼전 취업 중단 25.1%, 현재까지 취업 중 12.0%, 혼전 취업 중단, 재취업, 재중단한 경우가 9.4%이었다. 혼후 취업자의 경우 현재까지 지속 중인 경우가 3.5%로 가장 높았고, 출산 후 취업자 역시 현재까지 지속 중인 경우가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0-13〉 지역별 부인의 취업유형¹⁾

(단위: %, 명)

구분	전국	동부	읍·면부
취업경험 없음	3.4	3.5	3.0
혼전 취업자			
현재까지 취업 중	12.5	12.5	12.0
혼전 취업 중단	29.7	30.5	25.1
혼전 취업 중단, 재취업, 현 취업지속	34.8	34.3	38.1
혼전 취업 중단, 재취업, 중단	11.1	11.4	9.4
혼후 취업자			
혼후 취업, 현재까지 지속 중	1.1	0.7	3.5
혼후 취업 중단	0.6	0.6	0.6
혼후 취업 중단, 재취업, 현 취업지속	0.8	0.6	1.4
혼후 취업 중단, 재취업, 중단	0.5	0.4	0.7
출산 후 취업자			
출산 후 취업, 현재까지 지속 중	3.5	3.4	4.1
출산 후 취업 중단	0.9	0.9	0.9
출산 후 취업 중단, 재취업, 현 취업지속	0.8	0.8	0.8
출산 후 취업 중단, 재취업, 중단	0.4	0.4	0.4
계(수)	100.0(7,314)	100.0(6,243)	100.0(1,071)

주: 1) 취업시작 시기를 중심으로 분류한 것임.

부인의 연령별 취업유형을 보면, 24세 이하 연령층에서 취업경험이 없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13.4%), 다음은 45~49세 연령층(5.7%)이었다. 전체 연령층에

서 혼전 취업자의 비율이 높았으나, 그 중에서 25~34세까지는 혼전 취업 중단 비율이 가장 높았고, 35세 이상은 혼전 취업 중단, 재취업 한 후 현재까지 지속 중인 경우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혼후 취업자는 24세 이하 연령층이 가장 높았으나, 출산 후 취업자는 45~49세 연령층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40~44세 연령층으로 40세 이후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10-14〉 부인의 연령별 취업유형¹⁾

(단위: %, 명)

구분	24세 이하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전체
취업경험 없음	13.4	3.4	2.1	2.5	2.7	5.7	3.4
혼전 취업자							
현재까지 취업 중	19.7	26.8	17.3	10.8	8.6	7.6	12.5
혼전 취업 중단	46.5	47.0	44.4	30.9	21.0	16.0	29.7
혼전 취업 중단, 재취업, 현 취업지속	4.7	14.0	22.5	38.1	45.0	42.7	34.8
혼전 취업 중단, 재취업, 중단	3.9	5.4	9.9	12.3	12.7	12.1	11.1
혼후 취업자							
혼후 취업, 현재까지 지속 중	4.7	0.8	0.3	0.7	1.1	2.1	1.1
혼후 취업 중단	3.1	0.5	0.8	0.3	0.4	0.7	0.6
혼후 취업 중단, 재취업, 현 취업지속	0.8	0.2	0.4	0.7	1.2	0.9	0.8
혼후 취업 중단, 재취업, 중단	0.0	0.0	0.2	0.4	0.5	0.9	0.5
출산 후 취업자							
출산 후 취업, 현재까지 지속 중	2.4	1.5	1.1	2.3	4.2	7.1	3.5
출산 후 취업 중단	0.8	0.2	0.4	0.5	0.8	2.2	0.9
출산 후 취업 중단, 재취업, 현 취업지속	0.0	0.2	0.7	0.5	1.4	1.1	0.8
출산 후 취업 중단, 재취업, 중단	0.0	0.2	0.0	0.1	0.5	0.9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27)	(649)	(1,470)	(1,766)	(1,659)	(1,645)	(7,314)

주: 1) 취업시작 시기를 중심으로 분류한 것임.

교육수준별로는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는 초등학교 이하 학력소지 부인에서 4.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대학이상 학력소지 부인으로 3.9%이었다. 전체 학력군에서 혼전 취업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학력이 높아질수록 혼전

취업률은 점차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교 이하 학력까지는 혼전 취업 중단하였다가 재취업하여 현재까지 지속 중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대학 이상 학력은 혼전 취업을 중단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혼후 취업자 비율은 초등학교 이하에서 가장 높았으며(8.2%), 그 다음은 중학교(6.9%), 대학 이상(2.5%) 고등학교(2.1%) 순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각각 혼후 취업하여 현재까지 지속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다. 출산 후 취업자의 경우에도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았으며, 교육수준 각각 출산 후 취업을 현재까지 지속 중인 경우가 가장 높았다.

〈표 10-15〉 부인의 교육수준별 취업유형¹⁾

(단위: %, 명)

구분	초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전체
취업경험 없음	4.9	3.7	3.0	3.9	3.4
혼전 취업자					
현재까지 취업 중	10.5	6.1	7.0	22.7	12.5
혼전 취업 중단	9.5	10.0	30.8	35.9	29.7
혼전 취업 중단, 재취업, 현 취업지속	42.1	48.6	40.1	22.3	34.8
혼전 취업 중단, 재취업, 중단	13.3	13.6	11.8	9.2	11.1
혼후 취업자					
혼후 취업, 현재까지 지속 중	4.6	3.1	0.7	0.8	1.1
혼후 취업 중단	1.1	0.6	0.4	0.8	0.6
혼후 취업 중단, 재취업, 현 취업지속	2.1	1.6	0.6	0.6	0.8
혼후 취업 중단, 재취업, 중단	0.4	1.6	0.4	0.3	0.5
출산 후 취업자					
출산 후 취업, 현재까지 지속 중	8.4	7.1	2.9	2.7	3.5
출산 후 취업 중단	1.1	1.4	1.0	0.6	0.9
출산 후 취업 중단, 재취업, 현 취업지속	0.7	1.4	1.1	0.2	0.8
출산 후 취업 중단, 재취업, 중단	1.4	1.1	0.3	0.2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85)	(700)	(3,804)	(2,518)	(7,307)

주: 1) 취업시작 시기를 중심으로 분류한 것임.

3. 생애단계별 취업부인의 직장 변화

생애단계별로 취업한 부인들의 동일직장에 근무했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혼직전과 직후 모두 취업한 부인의 경우 동일직장이 76.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직장을 다니다가 자영업을 하게 된 경우 8.6%,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 7.8%, 자영업에서 자영업으로 7.0%, 그리고 자영업이었다가 직장으로 옮긴 경우 0.2%이었다.

첫째 자녀 출산 전후에는 동일직장에 근무한 경우는 64.1%이었고, 자영업에서 자영업으로 옮긴 경우는 32.1%이었다. 이 외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 2.9%, 직장에서 자영업으로 0.8%, 자영업에서 직장으로 0.1% 등이었다. 막내 자녀 출산 전후에는 동일직장에 근무한 경우가 57.8%로 가장 높으나 결혼 전후나 첫째 자녀 출산전후 보다는 낮은 비율이었다.

막내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는 동일직장에 근무한 경우는 57.0%, 자영업에서 자영업으로 옮긴 경우 39.2%로 막내자녀 출산 전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그 비율은 약간씩 낮아졌다.

〈표 10-16〉 생애단계별 취업부인의 동일 직장 여부¹⁾

(단위: %, 명)

구분	동일 직장 여부 ¹⁾					계(수)
	동일 직장	다른 직장	직장→ 자영업	자영업→ 직장	자영업→ 자영업	
결혼직전, 결혼직후	76.3	7.8	8.6	0.2	7.0	100.0(2,527)
첫째아 출산전, 첫째아 출산 후	64.1	2.9	0.8	0.1	32.1	100.0(1,323)
막내 아 출산 전, 막내 아 출산 후	57.8	2.3	0.2	0.1	39.5	100.0(1,342)
막내 아 초교 입학 전, 막내 아 초교 입학 후	57.0	2.3	0.6	0.9	39.2	100.0(762)

주: 1) 각 생애단계별 취업부인 만을 대상으로 함.

가. 결혼 전·후 취업직장의 변화

결혼 전후 취업을 지속한 부인의 직장의 변화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일직장에 다닌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읍·면부지역 거주부인보다 높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직장에서 자영업으로 전직한 경우, 그리고 자영업에서 자영업으로 옮긴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 보다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결혼전후 동일직장인 경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는 24세 이하 젊은 연령층이 가장 높았다. 직장에서 자영업으로, 자영업에서 자영업으로 옮긴 경우는 40세 이후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10-17〉 결혼 전·후 취업을 지속한 부인의 취업직장의 변화

(단위: %, 명)

특성	동일직장	다른 직장	직장→ 자영업	자영업→ 직장	자영업→ 자영업	계(수)
전체	76.3	7.8	8.6	0.2	7.0	100.0(2,527)
지역						
동부	79.2	7.5	7.0	0.2	6.1	100.0(2,185)
읍·면부	57.9	10.2	19.0	0.3	12.6	100.0(342)
연령						
15~24세	76.5	17.6	5.9	0.0	0.0	100.0(34)
25~29세	84.5	9.0	2.6	0.3	3.5	100.0(343)
30~34세	82.8	7.6	4.7	0.3	4.5	100.0(682)
35~39세	79.9	8.0	7.7	0.0	4.5	100.0(666)
40~44세	69.6	8.2	12.2	0.0	10.0	100.0(451)
45~49세	57.2	5.7	19.5	0.6	17.0	100.0(353)
교육수준						
초교 이하	31.9	15.3	23.6	1.4	27.8	100.0(72)
중학교	47.5	10.8	31.7	0.0	10.1	100.0(139)
고등학교	73.8	9.0	10.7	0.2	6.3	100.0(1,058)
대학이상	84.3	6.1	3.5	0.2	6.0	100.0(1,256)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 전후 동일직장인 경우가 높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는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이었다. 이는 혼전에 다니던 직장을 결혼으로 인해 중단하였다가 재취업하는 경우로 학력이 낮을수록 저임

금의 근로자로서 정규직보다는 안정적이지 못한 임시직 등에 근무하게 됨으로써 잦은 이동을 하게 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나. 첫째 자녀 출산 전·후 직장의 변화

첫째 자녀 출산 전후의 직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70.1%, 읍·면부지역 36.9%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높았다. 그러나 결혼전과 후의 동일직장인 경우와 비교하면 동부지역,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모두 낮았다. 자영업에서 자영업으로 옮긴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 25.5%, 읍·면부지역 거주부인 61.4%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동부지역 거주부인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동일직장에 근무하는 비율이 높았고, 자영업에서 자영업으로 옮긴 경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도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동일직장은 고학력일수록, 그리고 자영업에서 자영업으로 옮긴 경우는 저학력으로 일수록 높았다.

〈표 10-18〉 첫 자녀 출산전·후 취업을 지속한 부인의 취업직장의 변화

(단위: %, 명)

특성	동일직장	다른 직장	직장→ 자영업	자영업→ 직장	자영업→ 자영업	계(수)
전체	64.1	2.9	0.8	0.1	42.4	100.0(1,323)
지역						
동부	70.1	3.3	0.9	0.1	25.5	100.0(1,082)
읍·면부	36.9	1.2	0.4	0.0	61.4	100.0(241)
연령						
15~24세	100.0	0.0	0.0	0.0	0.0	100.0(5)
25~29세	85.3	2.7	0.0	0.0	12.0	100.0(75)
30~34세	79.3	4.0	0.4	0.0	16.4	100.0(275)
35~39세	74.6	4.0	1.2	0.3	19.9	100.0(327)
40~44세	60.8	2.2	0.6	0.0	36.4	100.0(319)
45~49세	38.3	1.6	0.9	0.0	59.2	100.0(321)
교육수준						
초교 이하	22.8	2.5	1.3	0.0	73.4	100.0(79)
중학교	26.3	2.3	0.8	0.0	70.7	100.0(133)
고등학교	56.8	4.2	0.7	0.2	38.2	100.0(456)
대학 이상	82.2	2.1	0.8	0.0	14.9	100.0(652)

다. 막내 자녀 출산 전·후 직장의 변화

막내 자녀 출산 전후의 직장 변경에 대해서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동일 직장에 근무한 경우가 64.0%로 가장 높았으나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은 자영업에서 자영업으로 옮긴 경우가 66.7%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동일직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고연령층일수록 자영업에서 자영업으로 옮긴 경우가 많았다.

〈표 10-19〉 막내 자녀 출산 전·후 취업을 지속한 부인의 취업직장의 변화
(단위: %, 명)

특성	동일직장	다른 직장	직장→ 자영업	자영업→ 직장	자영업→ 자영업	계(수)
전체	57.8	2.3	0.2	0.1	39.5	100.0(1,342)
지역						
동부	64.0	2.8	0.1	0.1	33.0	100.0(1,084)
읍·면부	31.8	0.4	0.8	0.4	66.7	100.0(258)
연령						
15~24세	100.0	0.0	0.0	0.0	0.0	100.0(3)
25~29세	82.4	1.4	0.0	0.0	16.2	100.0(74)
30~34세	77.5	2.6	0.4	0.4	19.1	100.0(267)
35~39세	67.3	3.9	0.3	0.0	28.5	100.0(330)
40~44세	50.8	1.6	0.3	0.0	47.3	100.0(315)
45~49세	35.1	1.4	0.0	0.3	63.2	100.0(353)
교육수준						
초교 이하	25.3	2.5	0.0	0.0	72.2	100.0(79)
중학교	25.6	1.3	0.0	0.6	72.4	100.0(156)
고등학교	46.7	3.3	0.2	0.0	49.8	100.0(486)
대학이상	78.8	1.6	0.3	0.2	19.1	100.0(619)

라. 막내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후 직장의 변경

막내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후의 직장 변경에 대해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일직장 근무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에서, 그리고 자영업에서 자영업으로 옮긴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직장변경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

록 동일직장 비율이 낮았고, 자영업 비율이 높아져 45~49세는 50.0%에 이르렀다.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층일수록 동일직장에, 저학력층일수록 자영업에서 자영업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았다.

〈표 10-20〉 막내 자녀 초고입학 전·후 취업을 지속한 부인의 취업직장의 변화

(단위: %, 명)

특성	동일직장	다른 직장	직장→ 자영업	자영업→ 직장	자영업→ 자영업	계(수)
전체	57.0	2.3	0.6	0.9	39.2	100.0(1,945)
지역						
동부	60.9	2.4	0.7	0.8	35.2	100.0(1,564)
읍·면부	41.2	1.8	0.3	1.0	55.6	100.0(381)
연령						
15~24세	-	-	-	-	-	-
25~29세	100.0	0.0	0.0	0.0	0.0	100.0(6)
30~34세	68.5	3.1	0.8	2.3	25.4	100.0(130)
35~39세	65.7	3.5	0.8	0.8	29.3	100.0(516)
40~44세	57.7	1.7	0.5	0.6	39.5	100.0(645)
45~49세	46.8	1.7	0.6	0.9	50.0	100.0(648)
교육수준						
초교 이하	53.5	1.3	0.0	1.3	43.9	100.0(157)
중학교	47.4	2.3	1.0	0.7	48.7	100.0(302)
고등학교	56.3	3.1	0.6	0.9	39.0	100.0(989)
대학 이상	65.1	1.0	0.6	0.8	32.5	100.0(493)

4. 생애단계별 취업중단 이유

조사대상 기혼여성들의 취업 중단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직전 취업 중이었다가 결혼직후 중단한 이유는 결혼때문이 81.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 회사가 안정적이지 못하여, 적성에 안 맞아서, 상시직으로 옮기려고, 일자리가 생겨서 등의 이유가 포함된 기타 9.0%, 배우자나 기타 가족의 반대 3.7%, 회사에서 나가기를 원해서 2.5%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첫째 아 출산 전 취업 중이었다가 출산 후 중단한 경우는 자녀양육 때문이 72.2%로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한 취업중단이 주를 이루었다. 막내 아 출산 전 취업 중이었다가 출산 후 중단한 경우 역시 자녀양육 때문이 76.7%로 첫째 아 출산 후 중단한 경우보다 더 많은 부인들이 취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막내 아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취업 중이었다가 입학 후 중단한 비율은 첫째 아 출산 후 중단(72.2%)이나 막내 아 출산 후 중단 비율(76.7%)보다 각각 11.3%포인트, 15.8%포인트 낮았으며, 그 외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등의 이유가 포함된 기타가 23.2%이었고, 건강이 안 좋아서와 회사에서 나가기를 희망한 비율이 다른 생애단계의 중단 이유보다 높았다.

〈표 10-21〉 생애단계별 취업 중단 이유

(단위: %, 명)

구분	결혼 때문에	배우자, 기타가족 반대	회사에서 나가기를 원해서	자녀양육 때문에	부모, 기타 가족부양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서	기타 ¹⁾	계(수)
결혼직전 취업, 결혼직후 중단	81.1	3.7	2.5	1.8	0.3	1.6	9.0	100.0(2,924)
첫째아 출산 전 취업, 첫째아 출산 후 중단	0.8	1.5	2.3	72.2	0.3	4.8	18.2	100.0(665)
막내 아 출산 전 취업, 막내 아 출산 후 중단	-	1.6	1.3	76.7	-	2.5	17.9	100.0(318)
막내 아 초교 입학 전 취업, 막내 아 초교 입학 후 중단	-	2.9	2.9	60.9	1.4	8.7	23.2	100.0(69)

주: 1)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 회사가 안정적이지 못해서, 적성에 맞지 않아서, 상시적으로 옮기려고, 일 자리가 생겨서, 소득이 적어서 등이 포함됨.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기혼여성의 각 생애단계별 취업을 중단되는 이유는 결혼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배우자나 기타 가족의 반대, 부모 부양부담 등은 낮은 수준이었으며, 건강이 안 좋아서나 기타 등은 각 생애단계별 일관성 있는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으나 막내 아 초등학교 입학 후 중단한 경우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회사에서 나가기를 원해서와 같이 타율적인 취업중단 비율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4 절 기혼여성 취업실태의 시사점

경제이론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혼은 가족 내에서의 분업관계의 형성을 의미하므로 시장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을 제약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가정 내 분업관계에서 출산과 육아를 포함한 가사를 담당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소득획득 기회가 높을수록 결혼으로부터 얻는 상대적 이익은 감소한다. 부부의 출산 결정 역시 시장활동과의 관련 하에서 결정된다. 출산은 가구 전체로 보면 시장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줄이고 소득의 감소를 가져온다. 특히 이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출산의 기회비용에는 결혼, 출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출 및 보육비용 외에도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잠재적 소득상실과 인적자본 손실 등이 있다. 즉, 출산으로 인해 시장활동을 중단할 경우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상실과 경력단절로 인한 인적자본 손실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래 소득상실이 출산의 기회비용의 상당 부분을 구성한다. 따라서 여성의 시장활동 기회의 증가는 출산의 기회비용을 높여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이인재, 2005).

본 조사결과 대부분의 취업여성들이 결혼과 자녀출산 및 집중적인 양육기에 취업률이 낮았고, 현재의 일과 가정생활 병행 상의 어려움으로 가사와 자녀양육의 순으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취업 부인들의 비취업 이유로 자녀양육이 가장 높았으며,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 있는 34세 이하 부인들에게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녀양육이 기혼여성들의 취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혼여성의 각 생애단계별 취업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결혼 전 보다 결혼 후에, 첫째아 출산 전 보다 출산 후에, 막내 아 출산 전 보다 출산 후에 취업률이 저하되고 있으며, 막내 아가 초등학교 입학 후에야 입학 전보다 취업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 등이 기혼여성의 취업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ECD 통계에 의하면,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둘다 낮은 국가가 있는 반면, 출산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국가들도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이 상호 대체하는 정도는 각 사회가 제공하는 경제활동의 기회와 양육지원체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혼여성들의 취업에 장애요인이 되는 자녀출산 및 양육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우선 일과 가정의 양립주체는 남녀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남녀가 함께 하는 출산문화를 조성하도록 한다. 즉,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육아휴직 요건 완화, 육아휴직 급여 등의 인상, 육아휴직 중 대체인력 채용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금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근로형태 유연화,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의 적극적인 시행 및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 출산 및 가족친화적 경영을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기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아울러 기업이 가족친화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출산 및 가족친화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제 11 장 가족생활 및 자녀양육 실태

제 1 절 가족생활실태

1. 가사분담 형태

부부관계는 가사분담 형태와 중요한 집안 사건에 대한 결정방식에 의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부부의 가사분담 형태는 여덟 가지 유형으로 접근하였는데 ①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고, 부인은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②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③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남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④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⑤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⑥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⑦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과 가사를 맡음, 그리고 ⑧ 남편이나 부인 중 집에 있는 사람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등이다. 시계열적 분석을 위하여 2003년도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주88)}

부부의 가사분담 형태를 살펴보면,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고,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가 3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고,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가 29.7%로 높았다. 그리고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도

주88) 2003년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고, 부인은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가 3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가 33.6%로 높았음. 그리고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도 18.4%이었음. 즉,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인의 취업여부만 떠나서 양육과 가사는 주로 부인이 담당하고 있었음(김승권 외, 2004).

24.2%로 높았다.

〈표 11-1〉 15~59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사분담 형태

(단위: %, 명)

특성	①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고, 부인은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②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③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남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④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⑤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⑥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⑦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과 가사를 맡음 ⑧ 남편이나 부인 중 집에 있는 사람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003년	38.6	33.6	0.6	4.2	18.4	0.7	2.4	1.4	100.0(9,882)
2006년	29.7	32.2	0.6	7.4	24.2	0.7	3.9	1.3	100.0(8,905)
지역									
동부	31.1	30.3	0.5	7.4	24.7	0.7	3.9	1.3	100.0(7,466)
읍·면부	22.4	41.8	0.9	7.5	21.3	0.8	4.0	1.4	100.0(1,439)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4.4	17.5	0.9	2.1	47.2	3.3	7.3	7.3	100.0(424)
100~199만원	30.9	23.1	0.6	5.1	31.4	1.3	4.7	2.8	100.0(1,569)
200~299만원	31.7	30.5	0.5	6.2	25.2	0.5	4.2	1.1	100.0(2,262)
300만원 이상	29.8	37.6	0.5	9.3	18.9	0.2	3.2	0.5	100.0(4,491)
응답자 성									
남자	17.8	31.6	1.2	13.5	23.2	3.3	6.5	2.8	100.0(987)
여자	31.2	32.3	0.5	6.6	24.3	0.4	3.6	1.2	100.0(7,913)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34.8	20.4	0.8	11.8	25.6	0.3	5.8	0.4	100.0(706)
30~39세	34.3	29.7	0.5	8.6	22.8	0.3	3.5	0.5	100.0(3,075)
40~49세	26.8	39.5	0.7	7.1	21.3	0.6	3.1	0.9	100.0(3,022)
50세 이상	25.5	29.4	0.5	4.6	29.7	1.6	5.1	3.6	100.0(2,098)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2.2	35.5	0.6	5.3	27.0	1.4	5.0	3.0	100.0(1,957)
고등학교	32.0	32.0	0.5	6.3	24.4	0.5	3.3	1.0	100.0(4,141)
대학 이상	31.6	30.1	0.7	10.4	21.9	0.4	4.2	0.8	100.0(2,788)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5.2	60.0	1.0	13.8	14.7	0.7	3.7	0.9	100.0(4,688)
비취업	57.0	1.3	-	0.2	34.8	0.7	4.2	1.8	100.0(4,211)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인의 취업여부를 떠나서 양육과 가사는 주로

부인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것이며,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출산율의 저하와도 직결될 것이다.

반면에 양성평등적 측면에서 가사분담을 하는 경우라 할 수 있는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는 7.4%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는 경우도 0.7%가 있었음은 특별한 경우라 하겠다. 이들 두 가지 유형의 가사분담 형태는 동부지역 거주가구가, 젊은 부인들이, 그리고 학력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은 사회발전에 따라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부부권력 관계

본 연구에서는 기혼가구의 부부권력관계를 일상생활비 지출, 주택매매 및 이사, 투자 및 재산증식, 그리고 자녀양육 및 교육 등의 지표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응답 항목으로는 전적으로 남편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부부공동 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전적으로 부인결정 등의 5점 척도에 의하였다. 시계열적 분석을 위하여 2003년도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일상생활비 지출을 살펴보면, 대체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40.2%,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가구 29.0%,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 25.1%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양육 및 교육은 부부공동 결정이 57.7%로 가장 높았으나,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는 3.1%에 불과하였으며,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39.3%나 되었다. 따라서 일상생활비 지출은 주로 부인이, 자녀양육 및 교육도 부부공동 또는 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주택매매 및 이사는 부부공동 결정이 74.7%로 가장 높았고,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는 14.2%,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11.2%이었다. 또한 투자 및 재산증식도 부부공동 결정이

67.8%로 가장 높았고,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결정이 16.1%,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결정이 16.1%가 있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일상생활비 지출은 대체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외의 지표인 주택매매 및 이사, 투자 및 재산증식, 자녀양육 및 교육 등은 부부공동 결정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주택매매 및 이사, 투자 및 재산증식 등은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가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보다 약간 많았음에 비하여 자녀양육 및 교육은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현저히 많았다.

따라서 기혼가구의 부부권력관계를 전반적으로 설명하면, 일상생활비 지출과 자녀양육 및 교육은 주로 부인이 결정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동산 등의 재산과 관련된 것은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을 짐작케 한다.

〈표 11-2〉 15~59세 기혼가구의 부부권력관계

(단위: %, 명)

권력관계	전적으로	대체로	부부공동 결정	대체로	전적으로	계(수)
	남편결정	남편결정		부인결정	부인결정	
일상생활비 지출	1.4	4.3	29.0	40.2	25.1	100.0(8,903)
주택매매 및 이사	3.5	10.7	74.7	8.3	2.9	100.0(8,898)
투자 및 재산증식	4.5	11.6	67.8	11.9	4.2	100.0(8,890)
자녀양육 및 교육	0.6	2.5	57.7	31.1	8.2	100.0(8,326)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일상생활비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부간에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가구특성과 응답자의 특성에 의하여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일상생활비 지출은 가구 및 응답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부인이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정도는 특성에 따라서 상이하였다.

먼저 거주지역별로 보면,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일상생활비 지출에 대한 결정은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비율(66.8%)이 읍·면부지역 거주가구(57.9%)보다 높았다. 반면에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4.9%)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9.9%)보다 낮았다.^{주89)}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

우가 많았으며(300만원 이상 계층 68.0%, 99만원 이하 계층 50.2%), 소득이 낮을수록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99만원 이하 계층 15.5%, 300만원 이상 계층 3.9%).

여자응답자가 남자응답자에 비하여 일상생활비 지출의 결정을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여자응답자 66.6%, 남자응답자 54.4%). 일상생활비 지출결정을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한다는 경우는 40대 연령층에서 가장 많았고(68.3%), 29세 이하 연령층에서 가장 적었으며(51.7%), 반면에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한다는 경우는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많았으나(10.0%), 30대 연령층에서 가장 적었다(3.8%).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일상생활비의 지출결정을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하는 비율은 고등학교 학력에서 가장 높았고, 중학교 이하 학력이 낮았다(중학교 이하 62.1%, 고등학교 67.4%). 반대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남편이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높았다(중학교 이하 10.6%, 대학 이상 3.7%).

비취업 응답자가 취업응답자보다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일상생활비 결정을 부인이 하는 경우가 높았으며(취업자 62.2%, 비취업자 68.7%), 반대로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은 취업자가 다소 높았다(취업자 6.7%, 비취업자 4.7%).

많은 응답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기서 취업자는 취업부인이고, 비취업자는 전업주부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이해된다.

주89)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상생활비 지출은 대체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33.6%,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32.5%이었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가구도 27.1%로 나타났다(김승권 외, 2004).

〈표 11-3〉 15~59세 기혼가구의 일상생활비 지출에서의 의사결정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남편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부부공동 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전적으로 부인결정	계(수)
2003년	1.8	5.0	27.1	33.6	32.5	100.0(9,892)
2006년	1.4	4.3	29.0	40.2	25.1	100.0(8,903)
지역						
동부	1.2	3.7	28.3	40.9	25.9	100.0(7,465)
읍·면부	2.5	7.4	32.2	36.8	21.1	100.0(1,438)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4.7	10.8	34.2	29.0	21.2	100.0(424)
100~199만원	2.0	6.3	28.8	37.7	25.2	100.0(1,567)
200~299만원	1.2	4.4	29.2	39.2	26.0	100.0(2,262)
300만원 이상	0.9	3.0	28.1	42.9	25.1	100.0(4,494)
응답자 성						
남자	3.9	9.6	32.1	31.8	22.6	100.0(987)
여자	1.1	3.7	28.6	41.2	25.4	100.0(7,913)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0.9	4.1	43.4	34.8	16.9	100.0(705)
30~39세	0.8	3.0	30.3	43.4	22.5	100.0(3,075)
40~49세	1.2	3.8	26.6	40.9	27.4	100.0(3,022)
50세 이상	2.9	7.1	25.4	36.3	28.3	100.0(2,095)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8	7.8	27.3	35.0	27.1	100.0(1,955)
고등학교	1.3	3.7	27.7	41.0	26.4	100.0(4,142)
대학 이상	0.8	2.9	31.9	42.5	21.9	100.0(2,787)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1.6	5.1	31.1	38.5	23.7	100.0(4,688)
비취업	1.2	3.5	26.6	42.1	26.6	100.0(4,208)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주택매매 및 이사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부간에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가구특성과 응답자의 특성에 의하여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주택매매 및 이사는 가구 및 응답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정도는 특성에 따라서 상이하였다.

먼저 거주지역별로 보면,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주택매매 및 이사에 대한 결

정을 부부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74.9%로 읍·면부지역 거주가구(73.1%)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가구(13.2%)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19.0%)보다 낮았던 반면,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가구(11.9%)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8.9%)보다 높았다.^{주90)}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주택매매 및 이사를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은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았고(300만원 이상 계층 75.2%, 99만원 이하 계층 70.0%),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는 99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이 가장 높았으며(18.5%), 그리고 300만원 이상 소득계층이 가장 낮았다(12.9%). 그러나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소득계층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자응답자가 남자응답자에 비하여 주택매매 및 이사를 부부공동으로 결정한다고 한 비율이 높았으며(여자 75.3%, 남자 69.3%),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한다는 경우는 남자응답자(20.0%)가 여자응답자(13.4%)보다 제법 많았던 반면,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한다는 경우는 여자응답자(11.3%)가 남자응답자(10.6%)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별 주택매매 및 이사에 대한 부부간의 의사결정권한을 살펴보면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은 낮았다(29세 이하 77.6%, 50세 이상 72.1%). 반면에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은 40~49세가 13.1%로 가장 낮았고, 50세 이상 16.0%로 가장 높았으며, 동시에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비율은 29세 이하 7.1%로 가장 낮았고, 40~49세가 13.4%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른 주택매매 및 이사에 대한 결정은 부부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교육수준에 비례하였으나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 즉, 중학교 이하의 학력 소지자는 73.1%이었고, 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들은 76.1%이었다. 반면에

주90)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택매매 및 이사는 부부공동 결정이 74.2%로 가장 높았고,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는 14.5%,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11.3%이었음(김승권 외, 2004).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는 중학교 이하의 학력소지자가 16.3%로 가장 많았고, 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는 13.4%로 가장 적었다.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고등학교 학력소지자가 12.0%로 가장 많았고, 대학 이상 학력소지자가 10.4%로 가장 적었다.

〈표 11-4〉 15~59세 기혼가구의 주택매매 및 이사에서의 의사결정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남편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부부공동 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전적으로 부인결정	계(수)
2003년	4.2	10.3	74.2	6.8	4.5	100.0(9,883)
2006년	3.5	10.7	74.7	8.3	2.9	100.0(8,899)
지역						
동부	3.1	10.1	74.9	8.7	3.2	100.0(7,460)
읍·면부	5.4	13.6	73.1	6.2	1.7	100.0(1,439)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6.4	12.1	70.0	7.1	4.5	100.0(423)
100~199만원	4.2	12.5	73.4	7.1	2.9	100.0(1,565)
200~299만원	3.0	10.9	75.0	8.4	2.8	100.0(2,261)
300만원 이상	3.0	9.9	75.2	8.9	2.9	100.0(4,493)
응답자 성						
남자	5.2	14.8	69.3	8.7	1.9	100.0(985)
여자	3.2	10.2	75.3	8.2	3.1	100.0(7,909)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2.6	12.8	77.6	5.7	1.4	100.0(704)
30~39세	3.4	10.2	76.8	7.2	2.3	100.0(3,074)
40~49세	3.2	9.9	73.5	9.8	3.6	100.0(3,020)
50세 이상	4.2	11.8	72.1	8.6	3.4	100.0(2,093)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4	11.9	73.1	7.4	3.2	100.0(1,952)
고등학교	3.0	10.7	74.4	8.7	3.3	100.0(4,140)
대학 이상	3.5	9.9	76.1	8.1	2.3	100.0(2,787)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3.7	10.9	73.0	9.1	3.3	100.0(4,686)
비취업	3.1	10.5	76.4	7.4	2.6	100.0(4,206)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비취업자가 취업자보다 주택매매 및 이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부부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취업자 73.0%, 비취업자 76.4%). 또한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도 많았고(취업자 14.6%, 비취업자 13.6%), 동시에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도 많았다(취업자 12.4%, 비취업자 10.0%). 이와 같은 현상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므로 결국 취업자는 취업부인이고 비취업자는 전업주부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이해된다. 즉, 취업부인이 주택매매 및 이사에 신경 쓸 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주택매매 및 이사는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가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보다는 미미하나마 약간 많았다. 이는 가구특성과 응답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공통된 현상이었으며, 다만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었다.

투자 및 재산증식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부간에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가구특성과 응답자의 특성에 의하여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술한 주택매매 및 이사의 경우와 같이 이는 가구 및 응답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가구특성과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었다.

먼저 거주지역별로 보면,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투자 및 재산증식에 대한 결정을 부부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67.9%로 읍·면부지역 거주가구(66.9%)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가구(15.4%)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20.3%)보다 낮았던 반면,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가구(16.7%)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12.7%)보다 높았다. 따라서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는 남편 또는 부인이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결정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동부지역 거주가구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주91)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투자 및 재산증식을

주91)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투자 및 재산증식은 부부공동 결정이 69.1%로 가장 높았고,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결정이 16.1%,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결정이 14.8%이었음(김승권 외, 2004).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은 월가구소득 200~299만원인 계층이 69.1%로 가장 높았고,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는 99만원 이하의 소득 계층이 가장 높았으며(19.8%), 200~299만원 소득계층이 가장 낮았다(14.3%). 그러나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았다(99만원 이하 소득계층 13.3%, 300만원 이상 소득계층 17.0%).

여자응답자가 남자응답자에 비하여 투자 및 재산증식을 부부공동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여자 68.3%, 남자 63.5%),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한다는 경우는 남자응답자(22.4%)가 여자응답자(15.4%)보다 많았던 반면,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한다는 경우는 여자응답자(16.3%)가 남자응답자(14.1%)보다 다소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별 투자 및 재산증식에 대한 부부간의 의사결정권한을 살펴보면,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낮았다(29세 이하 70.8%, 50세 이상 67.2%).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은 30~39세 연령층이 15.7%로 가장 낮았고, 50세 이상 연령계층이 16.8%로 가장 높았으며, 동시에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비율은 29세 이하가 12.6%로 가장 낮았고, 40~49세 연령계층이 17.0%로 가장 높았다.

투자 및 재산증식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가장 많았으며, 학력간에는 1.0%포인트 차이에 불과하였다. 또한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도 학력간에 1.0%포인트 차이였고,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도 학력간에 2.2%포인트 차이였다.

비취업자와 취업자가 투자 및 재산증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부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유사한 수준이었다(취업자 67.2%, 비취업자 68.5%). 또한 비취업자가 취업자보다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고(취업자 15.3%, 비취업자 17.1%), 반면에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취업자 17.5%, 비취업자 14.4%). 이와 같은 현상은 많은 응답자가 여성이므로 취업자는 취업부인, 비취업자는 전업주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취업부인이 투자 및 재산증식에 대한 정보를 비취업

부인보다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표 11-5〉 15~59세 기혼가구의 투자 및 재산증식에서의 의사결정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남편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부부공동 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전적으로 부인결정	계(수)
2003년	5.0	11.1	69.1	9.0	5.8	100.0(9,876)
2006년	4.5	11.6	67.8	11.9	4.2	100.0(8,991)
지역						
동부	4.1	11.3	67.9	12.3	4.4	100.0(7,452)
읍·면부	6.7	13.6	66.9	9.9	2.8	100.0(1,439)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7.2	12.6	66.8	8.8	4.5	100.0(419)
100~199만원	4.6	12.1	68.9	10.7	3.7	100.0(1,564)
200~299만원	3.8	10.5	69.1	12.4	4.2	100.0(2,259)
300만원 이상	4.4	12.0	66.7	12.6	4.4	100.0(4,492)
응답자 성						
남자	6.7	15.7	63.5	11.5	2.6	100.0(984)
여자	4.3	11.1	68.3	11.9	4.4	100.0(7,902)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2.8	13.8	70.8	9.8	2.8	100.0(705)
30~39세	4.3	11.4	68.1	12.3	3.8	100.0(3,073)
40~49세	4.7	11.3	67.1	12.1	4.9	100.0(3,017)
50세 이상	5.1	11.7	67.2	11.7	4.2	100.0(2,087)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2	11.4	68.7	10.5	4.2	100.0(1,948)
고등학교	4.2	11.4	67.5	12.2	4.7	100.0(4,139)
대학 이상	4.5	12.2	67.5	12.3	3.4	100.0(2,785)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4.2	11.1	67.1	13.0	4.5	100.0(4,684)
비취업	4.9	12.2	68.5	10.6	3.8	100.0(4,200)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결과적으로 투자 및 재산증식은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가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보다는 미미하나마 약간 많았다. 그렇지만 가구특성과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거주지역과 부인의 취업여부 등에서 나타났다.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부간에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가구특성과 응답자의 특성에 의하여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자녀양육 및 교육은 가구 및 응답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다음은 부인이 결정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그 정도는 가구특성과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서 상이하였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결정을 부부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56.7%로 읍·면부지역 거주가구(62.7%)보다 현저히 적었다. 그러나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가구(40.7%)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31.7%)보다 현저히 높았던 반면,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가구(2.6%)가 읍·면부지역 거주가구(5.6%)보다 낮았다.^{주92)}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자녀양육 및 교육을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은 월소득 99만원 이하의 저소득계층이 61.8%로 가장 높았고,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도 이 소득계층이 가장 많았다(8.0%). 그러나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99만원 이하의 저소득계층은 30.1%이었고, 300만원 이상의 계층은 41.7%로 현저히 많았다.

남자응답자가 여자응답자에 비하여 자녀양육 및 교육을 부부공동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남자 64.9%, 여자 56.8%),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한다는 경우는 남자응답자(7.7%)가 여자응답자(2.6%)보다 많았던 반면,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한다는 경우는 여자응답자(40.6%)가 남자응답자(27.4%)보다 현저히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별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부간의 의사결정권한을 살펴보면,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연령에 따라서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부부공동결정이

주92)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녀양육 및 교육은 부부공동 결정이 59.4%로 가장 높았으나,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는 4.5%에 불과하였으며,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36.0%나 되었음(김승권 외, 2004).

가장 많았고(64.9%),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30대 연령층이 48.3%로 많았으며, 그리고 50세 이상 연령층은 29.7%로 가장 적었다. 이와는 달리 연령이 높을수록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도 높았다(29세 이하 2.2%, 50세 이상 5.5%).

〈표 11-6〉 15~59세 기혼가구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의 의사결정

(단위: %, 명)

특성	전적으로 남편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부부공동 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전적으로 부인결정	계(수)
2003년	1.1	3.4	59.4	24.1	11.9	100.0(9,401)
2006년	0.6	2.5	57.7	31.1	8.1	100.0(8,326)
지역						
동부	0.5	2.1	56.7	32.1	8.6	100.0(6,955)
읍·면부	1.2	4.4	62.7	25.9	5.8	100.0(1,371)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8	6.2	61.8	23.1	7.0	100.0(385)
100~199만원	1.2	3.4	60.8	25.8	8.9	100.0(1,440)
200~299만원	0.3	2.4	57.4	32.1	7.9	100.0(2,109)
300만원 이상	0.5	1.7	56.0	33.5	8.2	100.0(4,246)
응답자 성						
남자	2.0	5.7	64.9	23.1	4.3	100.0(891)
여자	0.5	2.1	56.8	32.0	8.6	100.0(7,432)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0.7	1.5	57.6	32.8	7.4	100.0(460)
30~39세	0.3	1.5	49.9	38.2	10.1	100.0(2,845)
40~49세	0.7	2.2	60.2	28.9	8.0	100.0(2,949)
50세 이상	1.0	4.5	64.9	23.7	6.0	100.0(2,067)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	4.8	64.5	23.5	6.1	100.0(1,911)
고등학교	0.6	2.1	56.7	31.5	9.1	100.0(3,916)
대학 이상	0.4	1.3	53.9	36.1	8.3	100.0(2,483)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0.8	2.9	60.0	28.4	8.0	100.0(4,352)
비취업	0.4	2.1	55.2	33.9	8.4	100.0(3,968)

주: 1) 배우자 없는 가구와 자녀가 없는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결정을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학력이

높을수록 적었고, 학력이 낮을수록 많았다. 반면에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학력이 높을수록 현저히 증가하였으며(중학교 이하 29.6%, 고등학교 40.6%, 대학 이상 44.4%),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는 학력이 높을수록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중학교 이하 5.8%, 고등학교 2.7%, 대학 이상 1.7%).

응답자의 취업여부에 따라 자녀양육 및 교육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부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취업자가 60.0%로 비취업자의 55.2%보다 4.8%포인트 높았다. 그렇지만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비취업자가 취업자보다 많았고(비취업자 42.3%, 취업자 36.4%), 반면에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는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미미하게 많았다(취업자 3.7%, 비취업자 2.5%).

제 2 절 자녀양육 실태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인구학적 측면에서 자녀부양부담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모의 높은 자녀교육열과 자녀의 다양한 복지욕구 등은 자녀를 위한 교육비 및 양육비 등을 증가시킴으로써 오히려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김승권 외, 2003). 특히 한국사회에서 사교육비의 증가^{주93)}는 가계의 전체 소비지출에서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자녀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은 빈곤가족의 부적절한 자녀양육의 주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출산율 저하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자녀의 양육비 규모의 추정은 개별가구 측면에서는 출산과 관련한 각종 의사결

주93)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사교육비의 문제는 학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 교육기회가 차등적으로 주어짐으로써 경제력에 따라 실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양과 질의 차이를 증폭시켜 저소득층의 교육부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남(김승권 외, 2004).

정, 가계예산 수립, 생애주기를 통한 가계재무관리 등의 측면에서 중요하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빈곤이나 소득분배, 공공복지정책 등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자녀양육비 측정은 자녀의 비용과 관련하여 가계의 자녀수 결정 또는 출산과 관련한 경제적 접근의 연구분야, 인적자본 연구분야, 가계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관련한 연구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또한 자녀의 존재는 가계의 총 지출, 지출패턴, 소득배분구조 등 가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모의 취업결정, 시간사용구조 등의 측면에도 영향을 준다(허경옥, 1997).

그러나 자녀양육비 추정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계의 자녀양육비 지출규모와 이러한 자녀양육비 지출규모의 실제 가계의 부담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실제 가구소비 지출 중 18세 미만의 자녀(주94)에게 소비되는 지출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소비지출의 구조별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상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구원 모두의 가구소비지출 항목으로 10개를 분류하였으며, 이는 식료품비, 피복비, 주95) 보건의료비, 교육비, 사교육비,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지출비 등이다(주96). 이 중에서 식료품비, 피복 및 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사교육비는 자녀순위별 지출액을 각각 질문하여 자녀의 소비지출 규모를 파악하였다. 각 소비지출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94) 조사대상 자녀에는 기본적으로 18세 미만의 자녀로 하였으며, 재수생과 대학생은 18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포함하였음.

주95) 일반적으로 피복비라 함은 신발이나 장신구까지 포함되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함.

주96) 가계소비지출은 응답자 가구의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의 합으로 계산되며, 소비지출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입을 위한 지출임.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비소비지출, 즉, 법적 또는 제도에 의한 의무적 지출로써 소득세, 재산세 등의 각종 조세와 기여금,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가구소비 지출조사에서 제외하였음.

〈표 11-7〉 지출항목별 내용

항목	내용
식료품비	• 곡류, 육류, 낙농류, 어패류, 채소, 해조류, 과실류, 조미료, 빵 및 과자류, 외식비(학교급식비 포함), (각종 이유식)
피복비	• 외의, 스웨터, 셔츠, 내의, 직물, 기타 피복, 신발 등(양말, 모자, 운동화, 교복, 종이겨저귀, 세탁비, 수선비 등)
보건의료비	•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안경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비 및 입원비 등)(영양제, 한약제)
교육비	• 유치원비, 초·중·고등학교 납입금, 대학등록금, 교재비(교과서 및 기타 학교교재, 참고서, 학습용 테이프), 문방구비
보충교육비	• 개인과외, 학원과외, 학습지 방문지도, 피아노·미술·기타 예능계 학원 등
주거 및 광열수도비	• 주택설비 및 수선비, 공동주택관리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난방연료비(도시가스, 기름) 등
가구집기·가사용품비	• 일반가구, 가정용기기, 식기 주방용품, 침구 및 직물제품, 실내장식품(커튼 등 포함)
교양오락비	• 신문, 잡지, 도서, 교양오락기구(TV, 오디오, 컴퓨터 등)구입, 극장입장료, 스포츠 관람료, 스포츠시설 이용료, 문화시설 입장료, 교양오락강습료, 사진대, 단체여행비 등(완구, 오락기기 구입)
교통통신비	• 공공교통비, 개인교통비(자동차구입, 연료비, 정비수리비, 자동차보험료 등), 통신비(일반전화, 이동통신, 인터넷 및 PC 통신이용료, 기타 통신(스쿨버스비))
기타 소비지출	• 담배, 술, 이·미용비(목욕비 포함), 장신구(가방, 핸드백 등)구입비, 종교관계비, 회비 및 교제비, 경조금, 기타 잡비(용돈 등)

1. 가구의 자녀양육비 구조 및 규모

가. 가구의 자녀양육비의 구조

가구특성별 가족공통비용 중 자녀 몫은 전체적으로는 61만 8천원으로 2003년의 55.6천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소비지출 항목별로 보면 기타 소비지출이 27만 3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통신비 18만 5천원이었고, 주거 및 광열수도비 9만 7천원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가구가 62만 5천원으로 읍·면부지역 거주가구의 59만 1천원보다 많았다.^{주97)}

주97)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구특성별 가족공통비용 중 자녀 몫은 전체적으로는 55만 6천원이었음. 이를 소비지출 항목별로 보면 기타 소비지출이 26만 2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구소득이 많은 가구일수록 가족공동 비용 중 자녀 몫의 비용도 점차 증가하여 가구소득이 99만원 이하의 가구에서는 30만 4천원, 100~199만원 가구에 서는 32만 4천원, 200~299만원 가구는 44만원, 300~399만원 가구는 56만 4천 원, 400~499만원 가구는 71만 5천원, 그리고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116만 8 천원으로 증가하여 가구소득에 따라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표 11-8〉 가구특성별 평균 자녀양육비: 공동비용 중 자녀 몫

(단위: 가구, 만원)

특성	(분석대상 가구)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교양 오락비	교통 통신비	기타 소비지출	계
2003년	(8,199)	9.1	1.6	3.2	15.5	26.2	55.6
2006년	(6,787)	9.7	1.8	4.5	18.5	27.3	61.8
지역							
동부	(5,780)	9.9	1.8	4.7	18.6	27.5	62.5
읍·면부	(1,006)	8.7	2.0	3.4	18.4	26.6	59.1
가구소득							
99만원 미만	(253)	8.3	1.0	1.6	9.5	10.0	30.4
100~199만원	(1,062)	8.2	1.1	1.5	10.9	10.9	32.4
200~299만원	(1,745)	8.4	1.5	2.5	14.5	17.1	44.0
300~399만원	(1,464)	9.1	1.7	3.5	18.4	23.7	56.4
400~499만원	(922)	10.2	2.0	5.0	22.2	32.1	71.5
500만원 이상	(1,262)	13.4	3.2	11.0	29.8	59.4	116.8

다음의 <표 11-9>는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개인비용을 지출항목별로 제시한 것이다. 자녀의 개인비용은 96만 7천원으로 2003년의 80만 2천원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지출항목별로는 자녀 사교육비(35만 2천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식료품비(26만 8천원), 자녀 공교육비(22만 7천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자녀의 교육비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할 경우 57만 9천원으로 전체 자녀개인비용의 59.9%나 차지하였다. 그 외에도 피복 및 신발비(8만 3천원), 보건의료비(3만 7천원) 등으로 모든 지출항목이 2003년 보다 증

교통통신비 15만 5천원이었으며, 그리고 주거 및 광열수도비 9만 1천원 등의 순이었음(김승권 외, 2004).

가한 것을 알 수 있다.^{주98)}

〈표 11-9〉 가구특성별 평균 자녀양육아 개인비용 중 자녀 몫

(단위: 가구, 만원)

특성	(분석대상 가구)	식료품비	피복비 및 신발	보건 의료비	교육비	사교육비	계
2003년	(8,199)	22.5	6.5	3.0	21.6	26.6	80.2
2006년	(6,787)	26.8	8.3	3.7	22.7	35.2	96.7
지역							
동부	(5,780)	27.3	8.4	3.8	23.2	37.3	99.9
읍·면부	(1,006)	23.9	7.5	3.2	20.0	23.7	78.5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53)	18.5	4.3	1.6	18.6	9.7	52.5
100~199만원	(1,062)	19.8	4.9	2.8	14.7	13.5	55.7
200~299만원	(1,745)	23.2	6.6	3.4	17.6	22.9	73.8
300~399만원	(1,464)	26.8	8.1	3.7	22.4	35.3	96.4
400~499만원	(922)	30.5	9.5	3.8	26.5	45.2	115.5
500만원 이상	(1,262)	36.4	13.4	5.2	34.8	68.5	158.3

자녀양육을 위해 소요되는 개인비용은 동부지역 거주가구가 99만 9천원으로 읍·면부지역 거주가구의 78만 5천원보다 현저히 많았다. 특히, 사교육비에서 차이가 가장 컸는데, 동부지역은 37만 3천원, 읍·면부지역은 23만 7천원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과 자녀양육비용은 정비례 관계를 보여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일 수록 자녀양육 비용도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공통비용과 개인비용 모두에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비의 경우 가장 낮은 소득계층의 사교육비는 9만 7천원이었지만 가장 높은 소득계층은 68만 5천원으로 나타났다. 공교육비의 경우는 사교육비 보다는 차이가 덜 하였으나 약 2배 이상의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전반

주98)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개인비용의 지출항목별 금액은 자녀 사교육비(26만 6천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식료품비(22만 5천원), 자녀 교육비(21만 6천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특히, 자녀의 교육비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할 경우 48만 2천원으로 전체 자녀개인비용의 60.1%나 차지하였음. 그 외에도 피복 및 신발비(6만 5천원), 보건의료비(3만원) 등이 지출되고 있었음(김승권 외, 2004).

적으로 도시지역 가구의 사교육비 부담을 짐작케 하면서도, 이러한 경향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국민들은 심각한 ‘교육 양극화’를 느끼게 될 우려가 있고, 이는 사회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나. 가구의 자녀양육비 규모

본 조사결과 전체 가구의 월평균 자녀양육비는 158만 5천원으로 2003년의 135만 8천원보다 증가하였다. 가구원 공통비용 중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지출비의 자녀관련 비용은 61만 8천원으로 2003년의 55만 6천보다 증가하였고, 자녀만의 비용은 96만 7천원으로 80만 2천 보다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41만 4천원, 소비지출액은 282만 2천원으로 2003년의 290만 2천원, 236만 5천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소득대비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6.4%로 2003년의 46.8%보다 감소하였고, 가구소비규모 중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6.0%로 2003년의 57.4%보다 감소하였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동부지역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50만 8천원, 소비지출액은 288만 1천원으로 소득대비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6.3%이었고, 가구소비규모 중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5.4%나 되었다. 읍·면부 지역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88만원, 소비지출액은 248만 4천원으로 소득대비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7.8%이었고, 가구소비규모 중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5.4%로 지역별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가장 낮은 99만원 이하의 가구는 월평균 가구소득은 57만 7천원, 소비지출액은 141만 3천원이었고, 월소득 100~199만원 이하의 가구는 월평균 가구소득은 149만 2천원, 소비지출액은 158만 2천원으로 이 소득계층에서는 부채에 의하여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살펴보면, 월소득 99만원 이하의 가구는 소득대비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43.7%이었고, 가구소비규모 중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8.7%이었으며, 월소득 100~199만원 이하의 가구는 소득대비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

은 59.0%이었고, 가구소비규모 중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5.7%이었다. 따라서 이들 소득계층에서는 빚을 내어 생활과 자녀양육을 하고 있음을 짐작케 되는데, 추가자녀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계층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소득대비 자녀양육비의 비율이 50.0%로 저하되었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 비율은 낮아 자녀양육부담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대비 자녀양육비의 비율은 소득계층별로 약 55.2~58.7%의 범주에 있었다.

〈표 11-10〉 가구특성별 평균 자녀양육비

(단위: 가구, 만원, %)

특성	(분석대상 가구)	가구 소득 (A)	가구 소비 (B)	자녀양육비			소득대비	소비대비
				소계	공통비용중 자녀몫1)	자녀 개인 비용	자녀양육비 비율 (C/A*100)	자녀양육비 비율 (C/B*100)
2003년	(8,199)	290.2	236.5	135.8	55.6	80.2	46.8	57.4
2006년	(6,787)	341.4	282.2	158.5	61.8	96.7	46.4	56.0
지역								
동부	(5,780)	350.8	288.1	162.4	62.5	99.9	46.3	56.4
읍·면부	(1,006)	288.0	248.4	137.6	59.1	78.5	47.8	55.4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53)	57.7	141.3	82.9	30.4	52.5	143.7	58.7
100~199만원	(1,062)	149.2	158.2	88.1	32.4	55.7	59.0	55.7
200~299만원	(1,745)	235.5	213.3	117.8	44.0	73.8	50.0	55.2
300~399만원	(1,464)	329.9	273.4	152.8	56.4	96.4	46.3	55.9
400~499만원	(922)	426.8	336.3	187.0	71.5	115.5	43.8	55.6
500만원 이상	(1,262)	655.6	478.3	275.1	116.8	158.3	42.0	57.5

주: 1) 가족공통경비를 동거가구원수로 나눈 것임.

2. 개별아동의 양육비 구조 및 규모

가. 개별아동의 자녀양육비 구조

가족공동 지출비목 중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는 35만 6천원으로 2003년의 29만 4천원에 비해 6만 2천원이 증가하였다.^{주99)} 이를 각 지출항목별로 살펴보

면, 기타 소비지출이 15만 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교통통신비 10만 6천 원, 주거 및 광열수도비 5만 6천원, 교양오락비 2만 6천원,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1만 1천원 등이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출항목으로는 교양오락비가 2003년에 비하여 많이 증가하였다는 점이지만 절대금액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표 11-11〉 자녀 1인당 평균 자녀양육비의 구조: 가족공동비용 중 개인자녀 몫
(단위: 명, 만원)

특성	(분석 아동수)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교양 오락비	교통 통신비	기타 소비지출	계
2003년	(14,221)	4.8	0.9	1.7	8.2	13.8	29.4
2006년	(11,816)	5.6	1.1	2.6	10.6	15.7	35.6
지역							
동부	(10,021)	5.7	1.1	2.7	10.7	15.8	36.0
읍·면부	(1,794)	4.8	1.1	1.9	10.3	14.9	33.0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388)	5.4	0.6	1.0	6.2	6.5	19.8
100~199만원	(1,749)	5.0	0.7	0.9	6.6	6.6	19.8
200~299만원	(2,998)	4.9	0.9	1.5	8.4	9.9	25.6
300~399만원	(2,589)	5.1	1.0	2.0	10.4	13.4	31.8
400~499만원	(1,645)	5.7	1.1	2.8	12.4	18.0	40.0
500만원 이상	(2,322)	7.3	1.7	6.0	16.2	32.4	63.7
자녀의 성							
남아	(5,791)	5.3	1.0	2.4	10.2	14.1	33.0
여아	(5,255)	5.2	1.0	2.3	9.9	14.0	32.4
자녀연령							
0~ 2세	(1,259)	5.4	1.3	2.2	9.8	14.1	32.9
3~ 5세	(1,506)	5.2	1.0	2.2	9.1	13.5	31.1
6~11세	(3,557)	5.2	1.0	2.3	9.2	13.3	30.9
12~14세	(1,808)	5.3	1.0	2.3	9.9	14.2	32.7
15~17세	(1,499)	5.3	0.9	2.4	10.7	13.9	33.2
18세 이상	(1,417)	5.4	1.0	3.0	12.7	16.2	38.4

주: 가족공동비용은 모든 가구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가구소득, 자녀의 성 및 연령의 무응답으로 인해 특성별 양육비 오차가 있음.

주99) 2003년의 가족공동 지출비목 중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의 지출 항목별 수준은 기타 소비 지출 13만 8천원, 교통통신비 8만 2천원, 주거 및 광열수도비 4만 8천원, 교양오락비 1만 7천원,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9천원 등이었음(김승권 외, 2004).

거주지역에 따른 자녀 1인당 평균 자녀양육비는 동부지역 거주자가 36만원으로 읍·면부지역 거주자의 33만원에 비하여 높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1인당 가족공통경비의 평균 자녀양육비도 많아져 200만원 미만 소득가구의 경우에는 19만 8천원이었으나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가구는 63만 7천원으로 소득 계층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자녀의 성에 따라서는 유사한 수준이었는데, 남자는 월평균 33만원, 여아는 32만 4천원이었다.

그러나 자녀연령에 따라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 영아(0~2세)가 유아(3~5세)보다 평균 1만 8천원이 더 지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녀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와 자녀의 특성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기타 소비지출과 교통통신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었다.

자녀 1인당 개인비용이 지출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사교육비가 20만 3천원으로 2003년 15만 2천원에 비하여 5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식료품비는 15만 4천원으로 2003년의 12만 7천원에 비해 2만 7천원이 증가하였다. 공교육비는 13만 1천원으로 2003년의 12만 1천원에 비하여 1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외에도 대부분의 지출항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복·신발비(4만 8천원, 2003년 3만 7천원), 보건의료비(2만 1천원, 2003년 1만 7천원)등도 2003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이 자녀개인비용으로 1인당 57만 7천원이 지출되었고, 읍·면부지역은 44만 1천원으로 지역간에 현저한 차이가 났다. 특히, 사교육비는 약 2배의 차이를 보였는데, 동부지역은 자녀 1인당 21만 6천원, 읍·면부지역은 13만 3천원이 지출되었다.

가구소득별 자녀 1인당 개인비용은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99만원 이하의 소득 가구는 34만 3천원을 자녀 1인당 개인비용으로 지출하는 반면, 5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에서는 86만 8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비에서 소득별 격차가 현저하였는데, 99만원 이하 소득 가구의 경우 6만 3천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반면, 5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에서는 37만 6천을 지출하여 약 6배의 격차를 보였다. 자녀교육에서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녀의 성에 따라서는 차이가 미미하여 남아는 53만 8천원, 여아는 52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자녀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개인비용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0~2세 연령을 가진 가구에서는 30만원을 지출하였고, 18세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에서는 83만 8천원을 자녀 1인당 개인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2〉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의 구조: 자녀 개인비용

(단위: 명, 만원)

특성	(분석 이동수)	식료품비	의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사교육비	계
2003년	(14,221)	12.7	3.7	1.7	12.1	15.2	45.4
2006년	(11,816)	15.4	4.8	2.1	13.1	20.3	55.6
지역							
동부	(10,021)	15.8	4.9	2.2	13.4	21.6	57.7
읍·면부	(1,794)	13.4	4.2	1.8	11.2	13.3	44.1
가구소득							
99만원 미만	(388)	12.1	2.8	1.1	12.1	6.3	34.3
100~199만원	(1749)	12.1	3.0	1.7	8.9	8.2	33.9
200~299만원	(2,998)	13.5	3.8	2.0	10.2	13.3	42.6
300~399만원	(2,589)	15.2	4.6	2.1	12.7	20.0	54.5
400~499만원	(1,645)	17.1	5.3	2.1	14.9	25.3	64.7
500만원 이상	(2,322)	20.0	7.4	2.9	19.1	37.6	86.8
자녀의 성							
남아	(5,791)	15.4	4.5	2.2	10.8	20.9	53.8
여아	(5,255)	14.9	4.8	2.1	11.1	20.4	52.9
자녀연령							
0~2세	(1,259)	11.9	6.9	4.3	0.4	6.5	30.0
3~5세	(1,506)	12.7	3.8	2.3	8.9	16.0	43.7
6~11세	(3,557)	14.5	3.8	2.0	2.9	24.4	47.6
12~14세	(1,808)	15.9	4.2	1.7	3.6	29.0	54.3
15~17세	(1,499)	17.5	4.4	1.6	14.8	28.3	66.6
18세 이상	(1,417)	18.9	6.4	1.7	47.7	10.1	83.8

주: 가구소득, 자녀의 성 및 연령의 무응답으로 인해 특성별 양육비 오차가 있음.

나. 개별아동의 자녀양육비 규모

가구 및 자녀특성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양육비를 살펴보면, 가족공동 경비중 개인자녀의 몫은 35만 6천원으로 2003년 29만 4천원보다 많았고, 자녀개인비용은 55만 6천으로 2003년의 45만 4천원에 비하여 10만 2천원이 증가되었다. 결과적으로 자녀 1인당 총 양육비는 91만 2천원으로 2003년의 74만 8천원에 비하여 16만 4천원이 증가한 수준이었다. 이는 불과 3년만에 18.0%의 자녀양육비 증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표 11-13> 가구 및 자녀 특성별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

(단위: 만원)

특성	가족 공동비용 중 개인자녀 몫	자녀 개인비용	계
2003년	29.4	45.4	74.8
2006년	35.6	55.6	91.2
지역			
동부	36.0	57.7	93.7
읍·면부	33.0	44.1	77.1
가구소득			
99만원 미만	19.8	34.3	54.1
100~199만원	19.8	33.9	53.7
200~299만원	25.6	42.6	68.2
300~399만원	31.8	54.5	86.3
400~499만원	40.0	64.7	104.7
500만원 이상	63.7	86.8	150.5
자녀의 성			
남아	33.0	53.8	86.8
여아	32.4	52.9	85.3
자녀연령			
0~2세	32.9	30.0	62.9
3~5세	31.1	43.7	74.8
6~11세	30.9	47.6	78.5
12~14세	32.7	54.3	87.0
15~17세	33.2	66.6	99.8
18세 이상	38.4	83.8	122.2

주: <표 11-12>와 동일
 자료: 1)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양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99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54만 1천을,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는 150만 5천원을 지출하였다.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93만 7천원,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는 77만 1천원을 자녀 1명의 양육비로 지출하고 있어 지역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절대금액만 가지고 비교할 경우 도시지역에서 자녀양육부담이 농촌지역보다 큼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성에 따라서는 양육비 차이가 미미하였으나(남아 86만 8천원, 여아 85만 3천원), 자녀연령별로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 영아(0~2세)는 월평균 62만 9천원이 양육비로 지출되며, 18세 이상의 자녀는 122만 2천원이 지출되어 약 2 배의 차이가 있었다.

제 3 절 가족생활 및 자녀양육 실태의 시사점

본 장에서는 한국가족의 생활 및 자녀양육의 실태를 검토하였다.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가족생활에서 가사분담 형태는 여전히 가부장제적 가치관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부부권력관계 측면에서는 주택매매 및 이사와 투자 및 재산증식은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어 발전적인 양상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일상생활비 지출과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는 기혼여성이 주로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이는 가사와 자녀양육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민주평등,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남성의 노력이 있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한국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녀양육을 살펴보면, 매우 압담한 현실을 느끼게 한다. 즉, 자녀양육에 지출되는 과도한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본 연구에서는 뚜렷이 보여 주었다. 가구소득에서 많은 몫을 차지하고 있는 자녀양육비, 특히 사교육비 및 공교육비는 저

출산 사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 중·고등학생을 위한 자녀양육비 지원, 자녀양육비 세제혜택 등이 사회제도적으로 강력히 추진되지 않는다면 출산율의 뚜렷한 반전(反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제 12 장 출산 및 가족정책 욕구

제 1 절 결혼과 가족정책

한국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는 저출산의 핵심요인에는 결혼연령의 상승과 독신자의 증가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결혼을 부담스러워 하거나 자아육구 충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부 미혼남녀의 가치관 변화와 결혼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결혼을 하지 못하는 미혼남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접근하는 주요 방식일 뿐만 아니라 가족을 형성하여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결혼을 통하여 출산을 하는 것이 여전히 보편적 가치관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결혼은 출산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음이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혼인장려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국가정책’이 무엇인지를 15~59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혼인장려정책으로 ‘청년실업 해소’를 제시한 응답자가 전체의 3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18.6%, ‘서민층 주택 용자’ 15.5%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 8.8%, ‘건전혼례 문화 조성’ 5.8%, ‘양성평등 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 5.7%, ‘결혼비용, 주택자금 등의 소득공제’ 4.0%, ‘결혼자금 용자 확대’ 3.8% 등이 있었다.

이를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응답자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할 정책의 우선순위는 동일하였는데, 혼인장려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책으로 동부지역 거주자의 36.1%, 읍·면부지역 거주자의 35.9%가 ‘청년실업 해소’를 선택하였고, 다음으로는 ‘혼인 및 출산가치관확립’을 동부지역 거주자의 18.9%, 읍·면부지역 거주자의 17.1%가

제안하였으며, 그리고 세 번째 우선정책으로 ‘서민층 주택 용자’를 동부지역 거주자의 15.2%, 읍·면부지역 거주자의 16.8%가 제시하였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모든 소득층에서 ‘청년실업해소’를 혼인장려책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는데,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실업해소’를 제시한 비율이 높았다. 즉, 99만원 이하 소득인 가구는 41.4%나 제시하였으며, 심지어는 300만원 이상 소득가구도 34.7%로 높아 청년실업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짐작케 한다.

응답자의 성에 따라서는 혼인장려책으로 ‘청년실업 해소’를 가장 많이 제시하였고, 다음은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서민층 주택 용자’ 등의 순이었다. 그렇지만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29세 이하에서는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이 2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청년실업 해소’ 21.8%, ‘서민층 주택 용자’ 18.0%,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 12.9% 등의 순이었다. 3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청년실업 해소’를 출산장려책의 우선순위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39세 26.5%, 40~49세 40.1%, 50세 이상 46.7%).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청년실업 해소’를 모든 연령층이 출산장려책으로 가장 많이 제시하였고, 특히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청년실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중학교 이하 43.2%, 고등학교 34.4%, 대학 이상 30.7%).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저학력층 청년의 실업문제가 심각하고, 결혼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됨을 짐작케 한다.

응답자가 취업 중인 경우와 비취업 중인 경우 모두 ‘청년실업 해소’를 가장 중요한 출산장려책이라고 응답하였으며(취업 37.4%, 비취업 34.4%), 다음은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취업 18.3%, 비취업 19.1%), ‘서민층 주택 용자’(취업 15.2%, 비취업 15.7%) 등의 순이었다. 이는 전체 응답형태와 동일한 것이며, 취업여부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우리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과 고용의 불안정 등이 혼인을 지연시키고, 저출산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을 해소 할 수 있는 거시경제적 측면의 정책

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과 서민층을 위한 주택용자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2-1〉 15~59세 기혼가구의 혼인장려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책(1순위)

(단위: %, 명)

특성	1.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2. 건전혼례 문화 조성, 3. 서민층 주택 용자, 4. 청년실업 해소, 5.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 6. 결혼자금 용자 확대, 7. 소득공제(결혼비용, 주택자금), 8.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 9. 기타									계(수)
	1	2	3	4	5	6	7	8	9	
전체	18.6	5.8	15.5	36.0	8.8	3.8	4.0	5.7	1.9	100.0(9,998)
지역										
동부	18.9	5.6	15.2	36.1	8.6	3.8	4.1	5.9	1.8	100.0(8,354)
읍·면부	17.1	6.6	16.8	35.9	9.7	3.8	3.6	4.4	2.1	100.0(1,644)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4.6	4.8	18.3	41.4	8.8	4.2	2.0	3.8	1.9	100.0(785)
100~199만원	13.8	5.6	19.2	37.9	11.0	4.5	3.5	3.2	1.4	100.0(1,991)
200~299만원	16.5	5.5	17.2	35.2	9.9	4.1	4.6	5.2	1.8	100.0(2,435)
300만원 이상	22.4	6.0	12.4	34.7	7.2	3.3	4.3	7.4	2.2	100.0(4,626)
응답자 성										
남자	19.0	5.5	15.5	40.8	7.8	3.8	2.3	3.6	1.7	100.0(1,326)
여자	18.6	5.8	15.4	35.3	8.9	3.8	4.2	6.0	1.9	100.0(8,656)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23.7	4.4	18.0	21.8	12.9	4.2	7.4	5.1	2.5	100.0(721)
30~39세	22.5	5.7	17.3	26.5	9.1	3.2	5.5	8.2	2.1	100.0(3,246)
40~49세	17.3	6.1	14.5	40.1	7.6	3.9	3.4	5.4	1.8	100.0(3,477)
50세 이상	14.1	5.7	13.7	46.7	8.8	4.4	1.9	3.2	1.6	100.0(2,538)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1.1	6.1	17.7	43.2	10.1	4.4	3.2	3.2	1.0	100.0(1,445)
고등학교	19.1	5.7	17.1	34.4	9.4	3.6	4.2	4.4	2.2	100.0(4,591)
대학 이상	24.8	6.1	11.0	30.7	6.9	3.5	4.8	10.2	2.0	100.0(2,939)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18.3	5.9	15.2	37.4	8.3	3.9	3.8	5.4	2.0	100.0(5,497)
비취업	19.1	5.7	15.7	34.4	9.3	3.7	4.2	6.1	1.8	100.0(4,487)

한편 혼인장려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책의 2순위로는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이 전체응답자의 1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청년실업 해소’ 17.2%, ‘서민층 주택 용자’ 16.6%, ‘양성평등 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 10.8%,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혼인장려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책의 1순위와 2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가정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은 청년실업 해소,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서민층 주택 용자,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 등이라 하겠다. 또한 우선순위로 제시된 정책은 아니지만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결혼비용 및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결혼자금 용자 확대 등도 병행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표 12-2〉 15~59세 기혼가구의 혼인장려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책(2순위)

(단위: %, 명)

특성	1.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2. 건전혼례 문화 조성, 3. 서민층 주택 용자, 4. 청년실업 해소, 5.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 6. 결혼자금 용자 확대, 7. 소득공제(결혼비용, 주택자금), 8.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 9. 기타									계(수)
	1	2	3	4	5	6	7	8	9	
전체	10.1	6.6	16.6	17.2	19.9	6.8	9.9	10.8	2.1	100.0(9,298)
지역										
동부	10.2	6.9	16.2	16.7	19.7	6.8	10.0	11.4	2.1	100.0(7,785)
읍·면부	9.6	5.3	18.7	19.8	20.8	6.5	9.0	7.8/	2.5	100.0(1,513)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5.5	5.8	18.3	21.6	25.8	9.0	6.3	6.2	1.4	100.0(709)
100~199만원	7.1	6.0	19.7	18.3	24.0	7.3	9.1	7.5	1.1	100.0(1,812)
200~299만원	9.9	5.8	18.7	16.5	19.0	7.1	10.6	10.0	2.5	100.0(2,282)
300만원 이상	12.4	7.5	14.0	16.3	17.7	6.1	10.4	13.2	2.5	100.0(4,355)
응답자 성										
남자	8.5	6.8	17.6	17.7	22.1	6.0	9.1	10.3	1.9	100.0(1,192)
여자	10.3	6.6	16.4	17.1	19.6	6.9	10.0	10.9	2.2	100.0(8,093)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11.3	5.3	17.5	15.3	16.2	9.5	14.0	9.2	1.7	100.0(698)
30~39세	12.2	7.3	15.3	15.4	15.8	6.5	11.6	13.1	2.7	100.0(3,107)
40~49세	10.0	6.3	16.5	17.0	20.9	5.8	10.1	11.6	1.9	100.0(3,242)
50세 이상	6.9	6.7	18.2	20.6	25.4	7.8	5.8	6.9	1.8	100.0(2,124)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0	4.7	19.2	21.3	27.2	8.0	6.8	5.2	1.6	100.0(1,293)
고등학교	9.4	7.1	17.1	16.7	19.5	6.7	11.2	10.2	2.0	100.0(4,308)
대학 이상	14.4	7.6	13.6	15.1	13.7	5.6	11.0	16.3	2.7	100.0(2,805)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9.6	6.8	17.3	16.9	20.6	6.6	9.5	10.5	2.2	100.0(5,076)
비취업	10.6	6.5	15.8	17.5	19.0	7.0	10.3	11.2	2.1	100.0(4,209)

제 2 절 출산정책과 자녀출산

1. 출산정책과 추가자녀 출산

본 연구에서는 15~44세 유배우 부인 중 향후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는 경우를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자녀를 (더) 낳을 의향’이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향후 자녀출산계획이 없었던 부인 중 7.6%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자녀를 (더) 낳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중의 대부분(92.9%)이 1명을 (더) 낳겠다고 하였고, 일부(7.1%)만이 2명을 낳겠다고 응답하였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자녀를 (더) 낳겠다는 경우는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부인연령에 따라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는데, 젊은 연령층이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추가자녀를 갖겠다고 응답하였다. 즉, 15~24세 연령층 부인의 추가자녀계획은 35.0%로 가장 높았으며, 25~29세 연령층 부인도 27.8%로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35~39세 연령층은 5.0%, 40~44세 연령층 0.9%로 현저히 낮았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 자녀를 더 낳지 않겠다고 결정한 젊은 연령층의 부인들이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추가자녀를 갖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국가정책의 유형에 따라 출산율이 다소 상승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정책적 지원이 있을 경우 추가자녀를 갖겠다고 한 응답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이하의 추가자녀 출산가능성은 1.6%에 불과하였으나 대학 이상의 여성은 8.4%로 높았다. 또한 비취업 부인의 추가자녀 출산가능성은 8.9%로 취업부인의 6.3%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업주부에 대해서도 출산장려정책이 적극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자녀가 없으면서도 자녀출산의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부인 중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비율이 20.6%로 매우 높았다. 이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부부의 출산결정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현재 자녀가 1명 있으면서 추가자녀 출산의향이 없는 여성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을 경우 추가자녀를 낳을 가능성은 14.4%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자녀가 없거나 1명이면서 자녀출산 계획이 없는 부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추가) 출산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책대상의 결정에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표 12-3〉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자녀를 (더) 낳을 의향 여부¹⁾

(단위: %, 명)

특성	소계	낳을 것임		낳지 않을 것임	생각 중임	계(수)
		1명	2명			
전체	7.6	92.9	7.1	87.7	4.7	100.0(4,467)
지역						
동부	7.6	93.4	6.6	87.5	4.9	100.0(3,821)
읍·면부	7.6	90.0	10.0	88.9	3.6	100.0(646)
연령						
15~24세	35.0	64.3	35.7	40.0	25.0	100.0(40)
25~29세	27.8	93.8	6.2	55.7	16.5	100.0(291)
30~34세	14.1	96.1	3.9	76.4	9.5	100.0(1,084)
35~39세	5.0	89.7	10.3	92.5	2.5	100.0(1,540)
40~44세	0.9	92.9	7.1	98.3	0.8	100.0(1,513)
교육수준						
초교 이하	1.6	-	100.0	96.8	1.6	100.0(63)
중학교	3.6	88.9	11.1	94.8	1.6	100.0(248)
고등학교	7.5	91.4	8.6	88.5	4.0	100.0(2,482)
대학 이상	8.4	95.7	4.3	85.1	6.4	100.0(1,669)
취업여부						
취업중	6.3	92.1	7.9	90.2	3.6	100.0(2,223)
비취업	8.9	93.5	6.5	85.2	5.9	100.0(2,244)
현존자녀수						
0명	20.6	92.3	7.7	52.4	27.0	100.0(126)
1명	14.4	87.5	12.5	74.2	11.4	100.0(780)
2명	6.3	95.7	4.3	90.9	2.8	100.0(2,978)
3명	2.6	100.0	-	96.3	1.1	100.0(542)
4명 이상	-	-	-	100.0	-	100.0(42)

주: 15~44세 유배우부인 중 향후에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부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필요한 출산지원정책의 유형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자녀를 (더) 낳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부인 중 ‘아이를 낳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대하여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녀양육비 지원’이 85.4%로 절대적으로 높은 정책욕구로 나타났고, 다음은 ‘보육시설 확충’ 7.4%,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확충’ 4.5%, 그리고 ‘출산지원금 지급’ 2.1% 등의 순이었다.

〈표 12-4〉 아이를 낳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¹⁾

(단위: %, 명)

특성	출산지원금 지급	자녀양육비 지원	보육시설 확충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확충	기타	계(수)
전체	2.1	85.4	7.4	4.5	0.6	100.0(336)
지역						
동부	2.1	85.4	7.7	4.5	0.3	100.0(287)
읍·면부	2.0	85.7	6.1	4.1	2.0	100.0(49)
연령						
15~24세	-	92.3	-	7.7	-	100.0(13)
25~29세	1.3	86.3	8.8	2.5	1.3	100.0(80)
30~34세	2.0	85.6	7.8	4.6	-	100.0(153)
35~39세	1.3	87.0	6.5	3.9	1.3	100.0(77)
40~44세	15.4	69.2	7.7	7.7	-	100.0(13)
교육수준						
초교 이하	-	100.0	-	-	-	100.0(1)
중학교	-	77.8	11.1	-	11.1	100.0(9)
고등학교	2.2	89.2	5.4	2.7	0.5	100.0(186)
대학 이상	2.2	81.3	9.4	7.2	-	100.0(139)
취업여부						
취업중	0.7	83.9	8.8	6.6	-	100.0(137)
비취업	3.0	86.9	6.6	2.5	1.0	100.0(198)
현존자녀수						
0명	-	83.3	16.7	-	-	100.0(24)
1명	4.5	76.8	10.7	6.3	1.8	100.0(112)
2명	1.1	89.8	4.8	4.3	-	100.0(186)
3명	-	100.0	-	-	-	100.0(14)

주: 15~44세 유배우부인 중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다면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응답한 부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필요한 출산장려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양육비 지원’이 아이를 낳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라는 응답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구분없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은 높게 나타나 15~24세 부인이 92.3%로 가장 높았던 반면, 40~44세 부인은 69.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인의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아이를 낳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 ‘자녀양육비 지원’이 77.8~100.0%의 높은 수준을 보였고,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비취업 부인의 86.9%, 취업부인의 83.9%가 ‘자녀양육비 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현존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3명인 부인은 100.0%가 ‘자녀양육비 지원’이 아이를 낳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명의 자녀를 갖고 있는 부인도 89.8%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제 3 절 가족정책 욕구

1. 자녀의 출산·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속도의 급격한 저출산 사회로 전환되었는데,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 용이하지 않고, 또한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과도한 자녀양육비 등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여성의 자아욕구를 충족키 위한 사회제도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는 출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당사자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이 무엇인지를 15~59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녀출산,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으로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

은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시설 확충’이 22.8%이었고, 다음은 ‘영유아 보육비 지원’ 12.0%, ‘아동 양육수당 지급’ 9.1% 등이었다. 이 외에도 소수의견으로서 ‘출산전·후 및 육아시 직장여성에 대한 휴가 제공’ 8.6%,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8.6%, ‘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 8.2%, ‘임신·출산에 드는 비용 지원’ 6.3%, ‘아동의 방과후 교육 지원’ 5.0% 등이 있었다. 자녀 출산·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시책에 대하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을 요구하고 있음을 볼 때 현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보육·육아지원시설에 문제점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즉, 아직도 우리사회의 보육·육아지원 시설의 서비스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육·육아지원 시설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형식적인 평가인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육 서비스의 질적 관리를 담보할 수 있는 보육행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보육장학제도의 도입, 지역사회단위의 보육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의 정보공유와 서비스 연계망 구축 등 다양한 방안에 의하여 가능할 것이다.

〈표 12-5〉 자녀 출산·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1순위)

(단위: %, 명)

특성	1. 임신·출산에 드는 비용 지원, 2. 출산전·후 및 육아시 직장여성에게 대한 휴가 제공, 3.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4.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5. 영유아 보육비 지원, 6. 아동 양육수당 지급, 7. 아동의 방과후 교육 지원, 8. 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 9. 기타									계(수)
	1	2	3	4	5	6	7	8	9	
전체	6.3	8.6	8.6	22.8	12.0	9.1	5.0	8.2	19.3	100.0(10,050)
지역										
동부	6.2	8.9	9.0	23.1	11.8	9.0	5.0	7.9	19.2	100.0(8,404)
읍·면부	6.8	7.2	6.7	21.1	13.0	10.0	5.2	10.2	19.9	100.0(1,646)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7.4	7.8	4.7	17.8	13.9	13.8	3.8	10.2	20.6	100.0(785)
100~199만원	7.2	5.8	6.2	20.6	15.8	10.5	4.6	9.7	19.5	100.0(2,004)
200~299만원	6.8	7.3	7.8	21.2	13.7	9.0	5.3	8.3	20.4	100.0(2,454)
300만원 이상	5.3	10.3	10.8	25.7	9.1	7.8	5.2	7.3	18.5	100.0(4,639)
응답자 성										
남자	8.1	6.8	5.6	21.9	11.5	10.3	4.5	10.8	20.5	100.0(1,329)
여자	6.0	8.9	9.1	22.9	12.0	9.0	5.1	7.9	19.2	100.0(8,708)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14.0	7.6	9.3	18.3	17.4	9.3	2.1	2.9	17.0	100.0(728)
30~39세	6.0	7.8	9.6	23.1	12.7	9.3	7.0	6.0	18.6	100.0(3,260)
40~49세	5.1	10.0	9.3	21.5	9.4	8.0	5.6	10.6	20.5	100.0(3,495)
50세 이상	6.0	7.4	6.4	25.6	13.0	10.5	2.5	9.3	19.4	100.0(2,553)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4	6.9	5.7	23.3	14.4	10.1	3.9	11.0	20.4	100.0(1,449)
고등학교	6.5	8.4	8.2	20.5	11.5	9.4	6.4	9.1	19.9	100.0(4,623)
대학 이상	6.5	10.8	12.1	26.8	10.0	7.7	4.2	4.6	17.4	100.0(2,950)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5.7	9.2	9.4	22.5	11.2	8.5	5.2	8.7	19.7	100.0(5,530)
비취업	6.9	7.9	7.7	23.2	13.0	10.0	4.7	7.7	18.9	100.0(4,507)

주: 1) 기타에는 불임부부의 치료 지원, 태아나 임신부의 건강 지원, 자녀가 아픈 경우 휴가 제공, 자녀양육을 위해 아버지에게 휴가 제공,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다자녀가정을 위해 아파트·국민임대주택 등 우선분양, 직장여성 고용차별 해소,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 아동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다자녀 실직가정 취업지원 등이 포함됨.

2) 15~59세 기혼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반면 자녀 출산,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의 2순위에 대하여는 영유아 보육비 지원이 1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질 높은 보육·양육지원 시설 확충(12.5%), 아동 양육수당 지급(10.7%), 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9.8%) 등의 순이었다.

〈표 12-6〉 자녀 출산·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2순위)

(단위: %, 명)

특성	1. 임신·출산에 드는 비용 지원, 2. 출산전·후 및 육아시 직장여성에게 대한 휴가 제공, 3.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4.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5. 영유아 보육비 지원, 6. 아동 양육수당 지급, 7. 아동의 방과후 교육 지원, 8. 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 9. 기타									계(수)
	1	2	3	4	5	6	7	8	9	
전체	2.6	5.2	8.0	12.5	12.8	10.7	10.2	9.8	28.2	100.0(9,666)
지역										
동부	2.6	5.2	8.5	12.9	12.7	10.6	10.1	9.4	28.2	100.0(8,076)
읍·면부	3.0	4.9	5.8	10.4	13.8	11.3	10.7	12.2	27.8	100.0(1,590)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9	4.1	5.6	9.4	16.6	12.8	8.9	13.2	26.5	100.0(752)
100~199만원	2.9	5.0	5.4	10.4	14.9	13.4	9.3	11.1	27.5	100.0(1,907)
200~299만원	3.0	3.8	7.6	12.1	14.0	11.0	10.1	10.1	28.4	100.0(2,365)
300만원 이상	2.2	6.3	9.8	14.0	11.0	9.1	10.8	8.5	28.4	100.0(4,490)
응답자 성										
남자	3.3	4.9	5.2	12.0	15.3	11.6	7.3	11.9	28.3	100.0(1,258)
여자	2.5	5.2	8.4	12.6	12.5	10.6	10.6	9.5	28.1	100.0(8,394)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5.5	7.2	10.1	13.2	14.1	11.5	5.4	5.5	27.3	100.0(721)
30~39세	2.9	4.2	9.1	12.9	11.0	9.9	13.2	8.4	28.4	100.0(3,205)
40~49세	2.0	5.3	8.0	12.7	10.7	10.1	11.2	10.9	29.1	100.0(3,346)
50세 이상	2.4	5.6	5.8	11.6	18.1	12.3	6.1	11.5	26.5	100.0(2,382)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4	4.6	5.6	8.8	16.8	12.3	8.9	12.9	27.6	100.0(1,361)
고등학교	2.8	4.9	7.4	11.5	12.9	10.2	11.1	10.5	27.7	100.0(4,467))
대학 이상	2.6	6.2	11.2	16.6	9.5	9.5	10.3	6.3	28.38	100.0(2,887)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2.1	5.4	8.3	12.1	13.1	10.4	10.6	10.5	27.5	100.0(5,307)
비취업	3.2	4.9	7.7	13.0	12.6	11.1	9.7	9.0	28.9	100.0(4,346)

주: <표 12-5>와 동일

2.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적 여건

15~59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자녀를 낳아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여건을 파악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25.2%가 '사교육비 경감'을 제시하였으며, 다음은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18.4%, '공교육 강화' 11.4%, '경기활성화(고용안정)' 10.3%, '질 높은 교육' 10.0% 등의 순이었다.

〈표 12-7〉 자녀를 낳아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여건(1순위)

(단위: %, 명)

특성	1.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 2. 공교육 강화, 3. 사교육비 경감, 4. 경기 활성화(고용안정), 5.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6.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7. 복지수준 향상, 8. 경쟁적 사회 지양, 9. 기타									계(수)
	1	2	3	4	5	6	7	8	9	
전체	7.1	11.4	25.2	10.3	18.4	10.0	5.5	4.5	7.6	100.0(10,058)
지역										
동부	6.9	11.3	25.3	10.3	18.4	10.0	5.8	4.4	7.6	100.0(8,410)
읍·면부	8.1	11.9	24.5	10.3	18.6	9.8	4.4	5.1	7.4	100.0(1,648)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9.2	12.5	21.0	16.3	15.5	8.7	6.6	3.9	6.2	100.0(785)
100~199만원	7.5	11.1	25.4	13.2	16.3	9.0	5.7	4.8	7.1	100.0(2,002)
200~299만원	7.2	10.9	27.6	9.4	19.3	8.9	5.5	4.2	6.9	100.0(2,451)
300만원 이상	6.4	11.5	24.8	8.4	19.3	11.4	5.2	4.6	8.2	100.0(4,652)
응답자 성										
남자	9.0	13.8	21.6	16.2	12.4	8.0	6.9	4.0	8.2	100.0(1,336)
여자	6.8	11.0	25.7	9.4	19.3	10.3	5.3	4.6	7.5	100.0(8,707)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5.8	7.7	21.8	6.2	24.1	16.8	6.3	3.2	8.1	100.0(726)
30~39세	5.4	10.3	26.8	6.6	23.4	11.6	4.9	3.7	7.4	100.0(3,266)
40~49세	8.6	13.1	26.1	10.1	15.9	7.6	5.1	4.8	8.6	100.0(3,492)
50세 이상	7.5	11.6	22.9	16.5	13.9	9.2	6.6	5.6	6.2	100.0(2,562)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6	10.2	26.4	15.5	14.4	7.2	5.2	5.7	6.9	100.0(1,443)
고등학교	7.9	11.5	27.7	9.3	18.3	8.5	5.6	4.5	6.8	100.0(4,624)
대학 이상	4.5	11.1	21.0	7.2	22.4	14.4	5.7	4.1	9.7	100.0(2,953)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7.8	12.0	24.8	11.3	17.0	9.6	5.2	4.6	7.8	100.0(5,531)
비취업	6.2	10.7	25.6	9.2	20.1	10.4	6.0	4.4	7.3	100.0(4,512)

주: 1) 15~59세 기혼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이를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모든 응답자가 특성에 상관없이 자녀를 낳아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여건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제시하였다. 물론 특성에 따라 다소의 높낮이는 있지만 이 또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두 번째의 자녀양육의 바람직한 사회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들었는데, 99만원 이하의 가구소득자, 남성응답자, 50세 이상 연령층,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자는 ‘경기 활성화(고용안정)’를 두 번째 필

요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원인이 사교육비 등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에 의한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사교육비 지출감소를 위한 정책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학력위주, 학벌위주의 사회구조를 철폐하고 능력중심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15~49세 기혼가구의 자녀를 낳아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여건의 2순위로는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이 1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사교육비 경감’ 15.8%,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15.2%, ‘복지수준 향상’ 13.0%, ‘경쟁적 사회지양’ 11.5%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적 여건으로 국민들이 제시하고 있는 1순위와 2순위의 정책을 종합하면, ‘사교육비 경감’,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등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정책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공교육 강화’와 ‘경기 활성화(고용안정)’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주요 정책으로 나타났다.

〈표 12-8〉 자녀를 낳아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여건(2순위)

(단위: %, 명)

특성	1.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 2. 공교육 강화, 3. 사교육비 경감, 4. 경기 활성화(고용안정), 5.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6.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7. 복지수준 향상, 8. 경쟁적 사회 지양, 9. 기타									계(수)
	1	2	3	4	5	6	7	8	9	
전체	5.1	8.3	15.8	8.0	17.5	15.2	13.0	11.5	5.7	100.0(9,684)
지역										
동부	5.0	8.3	16.1	7.8	17.0	15.2	13.3	11.6	5.8	100.0(8,117)
읍·면부	5.2	8.0	14.7	8.9	20.2	14.8	11.4	11.2	5.6	100.0(1,567)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5.7	8.3	16.4	10.9	18.6	11.0	11.5	9.2	8.3	100.0(736)
100~199만원	5.9	8.7	17.0	10.4	16.6	14.2	12.8	8.8	5.7	100.0(1,879)
200~299만원	5.6	7.2	17.1	7.9	16.4	15.2	12.6	12.0	6.0	100.0(2,376)
300만원 이상	4.3	8.7	14.6	6.5	18.2	16.3	13.6	12.6	5.1	100.0(4,536)
응답자 성										
남자	5.3	10.6	13.5	10.2	17.1	12.5	13.8	10.5	6.4	100.0(1,259)
여자	5.0	7.9	16.2	7.6	17.6	15.6	12.8	11.7	5.6	100.0(8,414)
응답자 연령										
29세 이하	3.9	6.3	16.0	6.4	17.5	22.4	13.8	8.1	5.7	100.0(719)
30~39세	4.6	6.4	15.7	5.3	19.3	17.3	14.2	11.4	5.8	100.0(3,228)
40~49세	5.9	9.3	15.4	8.4	16.8	11.9	12.5	14.1	5.7	100.0(3,366)
50세 이상	4.9	9.8	16.6	11.3	16.3	14.8	11.7	9.0	5.6	100.0(2,356)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1	9.7	18.0	9.9	16.0	13.5	9.5	11.1	6.2	100.0(1,352)
고등학교	5.4	8.4	16.9	7.4	17.7	13.5	12.8	12.2	5.7	100.0(4,498)
대학 이상	3.9	6.9	13.3	6.0	17.7	19.4	15.6	11.4	5.8	100.0(2,910)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중	5.3	9.0	15.1	8.5	17.1	14.5	12.6	12.0	5.9	100.0(5,310)
비취업	4.8	7.3	16.7	7.2	18.0	16.0	13.4	10.9	5.5	100.0(4,362)

주: 1) 15~59세 기혼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3. 입양정책

한국사회는 혈연중심의 사회로 인식되어질 정도로 결혼과 출산에 의하여 대(代)를 강하게 이어 왔다. 따라서 입양에 대해서 배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많은 아동이 해외로 입양될 정도로 국내입양은 지지부진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양상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한국가족은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음이 사실이다. 해외언론에서는 심각한 저출산 상태에 있

는 한국사회에서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 적도 있을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15~44세 유배우가구를 대상으로 ‘입양 고려여부’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입양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경우가 전체 응답부인의 85.7%이었고, 고려한 적이 있으나 포기하였다는 경우는 10.3%, 적극 고려하고 있음이 4.0%, 그리고 입양한 경우는 0.1%로 나타났다.

이를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부인의 거주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입양을 고려한 적이 있음’은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86.6%로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의 80.1%로 많았고, ‘입양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경우는 동부지역 거주부인이 4.0%, 읍·면부 거주부인이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고려한 적은 있으나 포기하였다’는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16.0%로 동부지역 거주부인의 9.4%에 비하여 높았고, 실제로 입양을 한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부인이 0.3%이었고, 동부지역 거주부인은 없었다.

부인의 연령층별로 살펴보면, 젊은 연령층에서 ‘입양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15~24세 연령층 부인은 93.7%이었고, 40~44세 부인은 84.1%이었다. 그러나 ‘입양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비율은 연령이 상승할수록 높은 비율을 보여 15~24세 연령층 부인은 3.2%이었으나, 40~44세 연령층 부인은 4.8%로 나타났다. 이는 부인의 연령층이 높을수록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 입양을 적극 고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인의 학력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입양을 고려한적 있음’의 비율이 높았다. 즉,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은 90.8%이었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부인은 84.4%이었다. 반면, ‘입양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경우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는데,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부인은 4.8%,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3.1%이었다.

‘입양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비취업 부인 86.3%, 취업부인 85.0%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고, ‘입양을 적극 고려하고 있음’은 취업부인이 4.3%로 비취업 부인의 3.6%보다 미미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부인의 현존 자녀수에 따라서는 ‘입양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경우가 자녀를 가진 부인이

85.9%로 자녀가 없는 부인의 83.1%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고, ‘입양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경우는 자녀가 없는 부인이 7.4%로 자녀가 있는 부인의 3.6%보다 높았다.

따라서 국내입양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누군가가 입양을 원할 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입양아의 권리가 보장되고, 입양가정이 입양아를 적절히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표 12-9〉 15~44세 유배우가구의 입양 고려여부

(단위: %, 명)

특성	고려한 적 있음	고려한 적 있으나 포기하였음	적극 고려하고 있음	입양하였음	계(수)
전체	85.7	10.3	4.0	0.1	100.0(5,375)
지역					
동부	86.6	9.4	4.0	-	100.0(4,592)
읍·면부	80.1	16.0	3.7	0.3	100.0(783)
연령					
15~24세	93.7	3.2	3.2	-	100.0(126)
25~29세	89.8	6.3	3.9	-	100.0(635)
30~34세	86.4	9.9	3.7	-	100.0(1,424)
35~39세	84.3	11.5	4.2	0.1	100.0(1,658)
40~44세	84.1	11.8	4.0	0.1	100.0(1,531)
교육수준					
초교 이하	90.8	6.2	3.1	-	100.0(65)
중학교	88.2	8.8	3.1	-	100.0(262)
고등학교	86.3	10.3	3.4	0.1	100.0(2,855)
대학 이상	84.4	10.7	4.8	-	100.0(2,189)
취업여부					
취업중	85.0	10.7	4.3	-	100.0(2,654)
비취업	86.3	10.0	3.6	0.1	100.0(2,721)
자녀유무					
없음	83.1	9.5	7.4	-	100.0(538))
있음	85.9	10.4	3.6	0.1	100.0(4,836)

주: 1) 15~44세 유배우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제 4 절 출산 및 가족정책 육구의 시사점

본 장에서는 결혼과 가족정책, 출산정책과 자녀출산, 그리고 가족정책 육구 등을 검토하였다.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에 직면해 있는 한국가족에게 적절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특히, 저출산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이 지속될 경우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국가발전뿐만 아니라 개인 및 가족의 생활이 어려움에 빠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볼 때 결혼, 출산, 입양 등에 대한 관심은 각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장에서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추가자녀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출산지원정책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 전반적으로 청년실업 해소, 자녀양육비 지원,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서민층 주택 융자, 최저임금의 보장 및 인상, 양성평등가치관 확립 및 문화조성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저출산 대책을 포함한 사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제 13 장 종합논의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 가족보건, 그리고 가족복지 등의 세 측면에서 다양한 영역의 실태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며, 그리고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분석결과와 그 의미는 해당 분야에서 상세히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분석결과와 그 의미는 해당 분야에서 상세히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분석결과와 그 의미는 해당 분야에서 상세히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분석결과와 그 의미는 해당 분야에서 상세히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분석결과와 그 의미는 해당 분야에서 상세히 제시하였다.

제 1 절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의 종합논의는 임신과 출산, 피임, 인공임신중절, 모자보건, 가치관, 결혼과 가족주기, 여성취업 및 양성평등, 그리고 자녀양육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임신과 출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최근의 관심을 중심으로 종합 논의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수년간 정체를 보이던 부인의 임신경험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전체 임신 중 정상출생 비율은 증가하였고, 임신소모로 종결되는 임신은 점차 감소하여 바람직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높은 피임실천율과 장기간에 추진된 모자보건사업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 자연유산, 사산 등의 임신소모가 뚜렷이 존재하고 있음은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함

을 시사하는 것이다.

부인의 임신횟수가 2000년까지는 4회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1991년 44.9%, 1994년 31.7%, 1997년 29.2%, 2000년 26.5%), 2003년 조사부터는 임신을 2회 경험한 부인의 비율이 30.3%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어 2006년 조사에서는 33.5%로 증가한 반면, 4회 이상 임신한 비율은 18.9%로 대폭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부인의 평균 임신횟수는 1994년 3.0회, 1997년 2.8회, 2000~'03년 2.7회로 감소되었으며, 2006년 조사에서는 2.5회로 저하되었다.

부인의 학력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경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영아사망률의 감소, 피임실천의 생활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향후 부인의 임신경험 횟수는 소자녀관의 정착과 불원(不願) 임신의 감소로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지속적인 저하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임신 대비 정상출생으로 종결되는 경우는 1994년 조사의 61.0%에서 1997년 조사에서는 62.9%, 2000년 조사에서는 63.8%, 2003년 65.5%, 그리고 2006년 조사에서는 69.0%로 최근에 올수록 높아지고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임신소모로 종결되는 경우는 1994년 36.9%이던 것이 1997년 35.5%, 2000년 34.0%, 2003년 32.9%, 그리고 2006년에는 29.0%로 지속적인 감소양상을 보였다.

임신소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은 1994년 조사의 28.3%에서 1997년 조사에서는 26.1%, 2000년 조사에서는 24.1%, 2003년 조사에서는 23.1%, 그리고 2006년 조사에서는 19.2%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체 임신의 약 1/5이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다는 사실은 인권과 모자보건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뿐만 아니라 세계 최저의 저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강력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당연히 요구되는 사안이라 하겠다.

또한 전체 임신 중 사산으로 종결되는 경우는 1994년 0.4%에서 1997과 2000년에는 0.3%로 다소 낮아졌고, 2003년에는 0.2%로 더욱 낮아졌으나 2006년에는

0.3%로 다소 높았다. 자연유산은 1994년 조사의 8.2%에서 1997년 조사에서는 9.1%, 2000년 조사에서는 9.7%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 조사에서는 9.6%, 2006년 조사에서는 9.4%로 미미하게 낮아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인의 임신종결 형태를 분석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전체 임신 중 임신소모로 종결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임신의 29.0%가 소모되고 있다. 둘째,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임신소모는 감소되고 있으나 높은 피임실천율에도 불구하고 전체 임신의 19.2%, 임신소모의 약 70%가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피임실천의 사각지대가 넓게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사산과 자연유산을 감소시키기 위해 미혼청소년 및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홍보계몽을 강화하고 철저한 임신부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첫 임신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한 경우에 자연유산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불원임신의 예방을 위한 효과가 높은 피임방법의 사용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임신을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 부인 중 불임진찰을 받은 경우가 높았음은 저출산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여섯째, 임신 당사자인 여성과 그 배우자의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정책차원에서 홍보·계몽이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198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던 합계출산율이 IMF 관리체제 하에서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게 되면서 낮아졌고,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수준을 보임으로써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1960~'87년 기간 중 6.0명에서 1.6명으로 감소하여 OECD 평균 수준에 도달되었다. 그 후에도 동일한 수준의 출산율이 약 10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IMF 관리체제 하에서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게 되자,

출산율은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 1998년부터 합계출산율은 급속히 저하하기 시작하였는데, 1999년 1.43명으로 감소하였고 2002년에는 1.17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어서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5년의 합계출산율은 1.09명으로 한국 역사상 가장 낮은 출산수준을 다시 갱신하게 되었다.

셋째, 최근 출산력의 저하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고용기회의 확대, 초혼 연령의 상승, 소자녀관의 형성에 따른 피임실천율의 증가, 인공임신중절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IMF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증대, 소득격감,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활난과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이 야기되었고, 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결혼 및 출산을 연기 또는 기피하게 하였으며, 그리고 이에 기인된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향후 현재의 낮은 출산율이 계속될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어떻게, 얼마나 변화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기회복과 함께 연기된 결혼 및 출산이 이루어진다면 다소의 출산율 상승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출산율이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출산율의 반전은 한계가 있을 것이며,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남아를 출산하기 위한 노력이 일정수준에서 지속되고 있음으로 보아 한국사회에서 가부장제적이고, 전통적이라 비판하는 남아선호의식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는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남아출산을 위해 노력한 경험률은 6.1%로 2003년의 6.0%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남아출산을 위한 노력의 유형별 경험률을 살펴보면, 자연요법이 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초음파검사 1.9%이었으며, 그 외에도 양수검사 0.5%, 융모막 검사 0.1% 등이 있었다. 남아출산을 위한 노력은 부인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대체로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그리고 취업부인이 높았다.

2. 피임과 불임

피임과 불임에 대한 최근의 관심을 중심으로 종합 논의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1985년 이래 피임실천율은 7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1997년에는 80%까지 상승하여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006년의 피임실천율은 79.6%로 2000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고, 2003년 보다는 다소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 등의 임신소모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은 효과적인 피임방법의 사용에 의한 피임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결혼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고연령층의 경우, 임신희망으로 피임 불필요, 각종 스트레스, 인스턴트 식생활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불임의 증가 등은 피임실천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실천상태를 살펴보면, 1976년의 피임실천율은 44.2%로 점차 증가하여 1985년 70.4%, 1991년에는 79.4%에 이르렀으며, 1994년에는 77.4%로 저하되었으나, 1997년에 다시 증가하여 80.5%의 높은 피임실천율을 나타냈다. 2000년에는 1997년에 비하여 1.2%포인트가 감소한 79.3%에서 2003년에는 5.2%포인트가 상승한 84.5%의 높은 피임실천율을 보였으며 다시 2006년에는 4.9%포인트가 감소한 79.6%로 나타났다.

그런데 피임방법별 피임실천율은 1991년을 정점으로 뚜렷한 변화를 보여준다. 난관수술은 1988년까지 큰 폭의 증가를 하다가 1991년부터 감소하였으며, 2006년에는 2003년보다 4.3%포인트가 감소하였다. 반대로 먹는 피임약의 실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7년에는 1.8%까지 떨어졌으나, 2000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하다,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6년에는 1.1%로 나타났다.

정관수술 실천율은 1994년에 일시적인 감소를 보인 외에 계속 상승하여 2006년에 19.7%까지 증가하였으며, 콘돔실천은 꾸준히 증가하다 2003년에 일시적인 감소를 보인 후에 2006년에는 다시 19.2%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자궁내장치에 의한 피임실천율은 1988년까지 계속 감소하다 1991년부터 난관수술이 감소하면서 사용이 증가하여 2006년에는 각각 15.0%의 실천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콘돔 실천율의 증가는 먹는 피임약 및 기타 피임방법의 감소에 의한 영향으로 이해된다.

아무튼 최근 피임방법의 변화는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 피임방법이 여성피임방법인 난관수술에서 탈피하여 남성피임방법인 정관수술로 변화되고 있다. 둘째, 영구적인 피임방법에서 자궁내장치, 콘돔 등 반영구적 피임방법 및 일시적인 피임방법으로 점차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피임효과가 불확실한 피임방법의 사용증가로 인공임신중절에 노출되어 여성의 생식보건을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유배우부인 중 임신이 안 되어 노력하고 있는 경우는 7.9%, 이 중에서 불임진찰을 받은 경우는 54.2%로 높았는데, 특별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거나 아이를 갖기 위한 비용부담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으므로 원인규명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며, 불임부부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강화되어져야 한다.

15~44세 전체 유배우부인 중 임신을 위하여 노력한 비율은 7.9%이었고, 임신노력 부인 중인 부부가 불임진찰을 받은 비율은 54.2%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체 유배우부인의 4.26%가 임신을 원하지만 불임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겠다. 불임진찰 결과 불임의 원인은 부인의 경우에는 원인불명이 4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배란장애가 21.2%, 나팔관장애가 15.8% 등의 순이었다. 남편의 경우는 원인불명이 81.0%로 부인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정자무력증 6.8%, 희소정자증 6.1%, 무정자증 5.4% 등의 순이었다

불임치료를 받은 경우는 71.7%이었고,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는 28.3%이었

다. 아이를 원함에도 불임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가 21.0%로 가장 높았고, ‘한방 또는 민간요법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경우가 18.5%이었으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는 9.9%,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3.7% 등의 순이었다.

3. 인공임신중절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최근의 관심을 중심으로 종합 논의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최근 우리나라 부인의 인공임신중절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었으며, 2003년 조사에서는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06년 조사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여 바람직한 양상을 보여 주었다. 그렇지만 가장 비중이 높은 임신소모로서의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불원임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과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인공임신중절률을 보여준 20~24세 연령층은 2006년 조사에서 59로 감소하였다. 25~29세 연령층의 인공임신중절률은 1984년의 146을 정점으로 저하하기 시작하여 연도에 따라 약간의 등락을 보였고 2006년 조사에서는 15로 큰 폭의 저하를 보였다. 30~34세 연령층은 1975년 158수준으로 매우 높았으나 지속적으로 저하되었으며, 1993년 일시적인 상승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어 2006년 조사에서는 19로 나타났다. 35~39세와 40~44세 연령층의 인공임신중절률도 급격히 저하하여 2006년 조사에서는 각각 7, 5로 저하하였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1980~'90년대 초반에는 50% 이상 수준에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2000년 39%, 2003년 40%, 그리고 2006년에는 34%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인공임신중절의 평균 경험횟수도

1994년의 0.8회에서 2000년 0.7회, 2003년 0.6회, 2006년 0.5회로 지속적인 저하를 나타냈다.

둘째,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한국사회에서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한 주요 이유는 자녀불원과 터울조절이었다.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높은 피임실천율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인들에게서 인공임신중절이 사라지지 않음은 임신과 출산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에 노출된 부인이 많이 있고, 아울러 지나치게 안이한 피임수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부인의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는 자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3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터울조절 16.4%, 경제적 곤란 13.4%, 임부의 건강과 자궁의 임신으로 인한 경우가 10.0% 등의 순이었다. 그 외에도 혼전임신 7.9%, 태아이상 5.0%, 취업 중이어서 2.5%, 성 선택적인 경우(태아가 딸이어서) 2.0%, 가정문제가 1.3% 등이 있었다.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수용이유는 ‘자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 1994년 58.4%, 1997년 49.7%, 2000년 48.4%, 2003년 45.4%이었고, 2006년 조사에서는 38.4%로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인공임신중절의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그 다음의 주요 이유로는 경제적 곤란이 13.4%로 높았는데, 이는 1994년 3.7%, 1997년 7.3%, 2000년 6.5%, 2003년 8.4%에서 현저하게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나타내는 결과라 하겠다.

셋째, 태아의 성감별후 여아인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시키는 행위를 직접 경험한 경우가 첫 인공임신중절의 2.5%,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의 2.6%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부장제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가치관의 발로(발로)라 판단되며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불법행위이므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첫 인공임신중절 당시 태아 성감별을 실시한 부인은 2.5%로 2003년의 2.1%

보다 0.4%포인트 증가하였고,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경험률은 2.6%로 2003의 2.5%보다 0.1%포인트 증가하였다.

4. 모자보건

산전·산후 관리, 분만실태, 수유 등 모자보건에 대한 최근의 관심을 중심으로 종합 논의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최근 3년간의 출생아를 분석한 2006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설분만율은 100%이었으며, 이 중에서 0.1%만이 조산소에서 분만하였고 나머지 99.9%는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분만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제왕절개율이 35.0%로 2003년보다 다소 낮았지만 여전히 OECD의 권고수준인 5~15%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최종출생아의 시설분만율은 1997년 이후 99%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1997년에는 99.7%, 2000년에 99.9%, 2003년 99.3%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99.9%로 나타났다. 2006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설분만의 장소로는 병원이 51.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원 34.4%, 종합병원 14.2% 등의 순이었으며, 조산소에서 분만한 경우는 0.1%로 거의 없었다. 종합병원에서의 분만은 1997년 39.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에는 31.5%, 이어서 2003년에는 22.4%, 2006년 14.2%까지 낮아졌다. 반면, 병원분만의 경우 1994년 21.3%에서 1997년 28.2%, 2000년 43.1%, 2003년 48.6% 2006년 51.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최종출생아의 제왕절개율은 35.0%로 나타나, 1997년 35.9%, 2000년의 37.7%, 2003년 39.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03년에 비해 4.2%포인트 감소하였다. 제왕절개분만을 본인이 선택한 경우는 18.4%에 불과하였고, 가족이 권유한 경우(3.0%)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의사의 권유(78.6%)에 의한 것이었다.

둘째, 저체중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3.2%를 차지하였고, 과체중 출생아는

5.5%이었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저체중의 이유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조기분만으로 36.7%이었고, 다음은 산모의 건강상의 이유가 36.6%이었으며, 그리고 이유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5.5%이었다.

출생시 부인연령별로는 저체중아(2,500g 미만)는 25~29세 연령층 부인이 가장 높아 4.9%이었고, 정상체중아(2,500~4,000g 미만)는 30~34세 연령층 부인이 92.7%로 가장 높았으며, 과체중아(4,000g 이상)는 35세 이상 부인이 가장 높은 7.9%이었다.

셋째, 모유가 아기의 건강이나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 최근 모유수유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바람직한 양상을 보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고, 1980년대의 약 50% 수준보다는 현저히 낮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2004년 1월 이후부터 2006년 8월까지 출생한 최종출생아 953명을 대상으로 15개월 미만까지의 수유실태를 파악하여 인공유와 혼합하여 수유한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고, 완전모유수유와 ‘모유+이유식’을 하는 경우를 모유수유를 하는 것으로 보고 실태를 파악한 결과, 모유수유율은 지난 2003년보다 7.7%포인트 증가한 24.2%이었다.

최종출생아의 생후 1주 이내 모유수유율은 58.9%로 높았으나 생후 1개월째에는 57.9%로 낮아졌고, 생후 3개월에 43.4%, 생후 6개월에 14.0%로 낮아지는 등 영아의 월령 증가와 함께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었다.

5. 가치관

가치관에 대한 최근의 관심을 중심으로 종합 논의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자녀가치관은 약화되고 있었으며, 소자녀관의 정착뿐만 아니라 자녀의 불필요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었다. 또한 남아선호 가치관도 약화되어 양성평등사회로 점차 이행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상자녀수는 2.3명으로 미미하나마 증가하였는데, 합계출산율의 저하와는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상자녀수에 대한 가치관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부부가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2006년에는 53.8%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반대로 자녀를 선택적 사항으로 판단하는 ‘자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없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부인은 46.2%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980년대 중반까지는 점차 감소하였고, 그 이후 약 10년간 동일한 수준(0.1명의 미미한 차이)을 유지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약간 상승하는 징후(1997년 2.3명)를 보였으나 2000년은 약간 저하하여 2003년까지 지속되었으며, 2006년 조사에서는 2.3명으로 미미하나마 증가하였다.

‘아들이 꼭 있어야 함’의 의견을 제시한 부인은 1991년 40.5%, 1994년 26.3%, 1997년 24.8%, 2000년 16.2%, 2003년 14.1%, 그리고 2006년 조사에서는 10.2%로 지속적이고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반대로 ‘아들이 없어도 무관함’의 의견은 1991년 28.0%, 1994년 38.9%, 1997년 39.4%, 2000년 39.5%, 2003년 43.3, 그리고 2006년 조사에서는 49.8%로 증가하였다.

둘째, 적절한 자녀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74.8%)가 많으나 부적절한 자녀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25.2%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대부분의 한국가족은 자녀양육의 책임을 대학 졸업 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녀양육부담은 소자녀관 정착에 일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부모의 78.7%가 자녀양육태도로서 ‘자녀들을 적극 지원하며, 부모

의 규칙을 설명하여 이해하고 따르도록 함'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뚜렷한 자녀 양육방법이 없으며, 많은 자율성 부여'가 11.6%, '규칙을 만들어 자녀들을 통제, 자율성 거의 없음' 8.5%,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며, 자녀들에게 요구도 반응도 보이지 않음' 1.1% 등의 순이었다.

15~59세 기혼가구 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파악된 부모들의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대학 졸업 할 때까지'가 4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혼인할 때까지' 27.0%, '취업할 때까지' 11.9% 등의 순이었다. 이 외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8.6%, '언제(까지)라도' 5.5% 등이 있었다.

셋째,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기혼여성들은 57.7%이었으며, 소극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42.2%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치관에 의해 가족을 형성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저출산의 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고 이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인, 가족, 사회의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15세 이상 기혼여성들의 결혼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를 살펴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는 2000년 26.2%에서 2003년에는 25.7%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6년에는 27.9%로 증가양상을 보였고, '하는 편이 좋다'는 긍정적 태도는 같은 연도에 29.4%에서 28.7%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29.8%로 증가하였으며,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2000년 38.2%에서 2003년 37.1%로, 그리고 2006년에 다시 38.2%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부정적인 태도는 2000년 5.4%에서 2003년 7.9%로 증가하였다가 2006년 4.0%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6. 이혼 및 가족주기

이혼 및 가족주기에 대한 최근의 관심을 중심으로 종합 논의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이혼·별거당시 평균 1.34명의 18세 미만 자녀를 두었는데, 이혼·별거 가정의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대책이 적극 강구되어 건전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별거는 부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혼·별거당시 18세 미만 자녀수를 둔 경우가 93.2%나 되었다. 30대에 이혼·별거한 부인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아 91.6%이었으며, 40대에 이혼한 부인은 64.8%이었다.

조사당시 18세 미만의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의 동거자는 74.3%가 자녀의 모, 20.4%는 자녀의 부로서 대부분이 부모 중 한 쪽과 동거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5.3%는 조부모 등 기타 친척 등과 동거하고 있었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 제공자를 보면, 자녀의 모 71.2%, 부 33.1%, 국가 19.4%, 조부모 9.3%, 기타 친척 2.0%, 기타 2.4% 등의 순이었다.

둘째, 부인의 결혼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족주기의 전체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가족주기의 첫 단계인 형성기의 시작시점인 초혼연령은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점점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고, 확대기의 시작시점인 첫째 아 출산시 부인연령도 초혼연령 상승의 영향으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높았으며, 그리고 확대기의 종료시점이면서 확대완료기의 시작시점인 막내 아 출산시 부인연령은 높아졌다. 또한 확대완료기의 종료시점이며 축소기의 시작시점인 자녀결혼 시작 시 부인연령은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상승하였고, 축소기의 종료시점이며,

축소완료기의 시작시점인 자녀결혼 완료시 부인연령은 상승하였으며,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해체기의 시작시점인 남편사망시 부인연령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1979년 까지 결혼한 부인들은 51.20년이었으나 2000년대 결혼한 부인들은 54.66년으로 추정되어 약 30여 년 동안 3.46년 정도 더 연장될 전망이다.

가족주기의 첫 단계인 형성기의 시작시점인 초혼연령은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점점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1979년 까지 결혼한 부인들은 21.66세 이었으나, 1980~'89년 결혼한 부인은 23.6세에, 1990~'99년 결혼한 부인은 24.95세, 그리고 2000년대에 결혼한 부인은 26.34세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가족형성기의 시작시점이 늦어짐을 알 수 있다.

확대기의 시작시점인 첫째 아 출산시 부인연령이 1979년 까지 결혼한 부인은 22.98세였으나 1980~1989년 결혼한 부인은 24.93세, 1990~1999년 결혼한 부인은 26.38세, 그리고 2000년대 결혼한 부인은 27.65세이었다.

확대기의 종료시점이면서 확대완료기의 시작시점인 막내 아 출산시 부인연령은 1979년 까지 결혼한 부인은 27.23세, 1980~1989년 결혼한 부인은 28.29세로 높아졌다. 1990~1999년에 결혼한 부인은 29.25세, 2000년대 결혼한 부인은 29.88세에 출산을 완료할 것으로 추정된다.

확대완료기의 종료시점이며 축소기의 시작시점인 자녀결혼 시작 시 부인연령은 1979년 까지 결혼한 부인들의 경우 50.88세이었으나, 2000년대 결혼한 부인들은 55.55세로 추정된다. 축소기의 종료시점이며, 축소완료기의 시작시점인 자녀결혼 완료시 부인연령은 1979년 까지 결혼한 부인은 55.13세, 2000년대 결혼한 부인은 57.78세로 추정된다.

해체기의 시작시점인 남편사망시 부인연령은 1979년 까지 결혼한 부인들은 69.66세로, 2000년대 결혼한 부인들은 76.84세로 추정되었으며, 해체기의 종료시점인 부인사망시 연령은 같은 기간에 결혼한 부인들간에 각각 72.76세에서 80.94세로 추정되었다.

제 2 절 정책적 제언

1. 임신과 출산

첫째, 자연유산이 더욱 감소될 수 있도록 임신전 관리, 산전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다 발전적으로 자연유산의 발생원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임신소모의 다른 형태인 사산의 절대횡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건의료적 측면의 관심이 요구된다. 즉, 사산의 이유를 규명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부인의 임신소모율을 획기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인공임신중절을 생명존중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회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넷째, 미혼청소년 및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홍보계몽을 강화하고 철저한 임신부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불임임신의 예방을 위한 효과가 높은 피임방법의 사용을 홍보한다. 임신 전·후에 필요한 올바른 정보가 많이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실천하는 개인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만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피임과 불임

첫째, 보다 효과적, 효율적, 양성평등적 측면의 피임방법에 의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피임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임목적에 적합한 피임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계몽, 상담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젊은 연령층의 피임실패는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지며, 이는 여성의 생식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부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피임방법의 지도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불임대책은 불임부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복지적 관점과 불임을 질병

으로 간주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보건의료적 측면에서도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불임에 대한 심층연구가 국가차원에서 추진되고, 불임치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인공임신중절

첫째, 경제적 이유, 소자녀관 정착 등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적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피임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홍보계몽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원치 않는 임신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효과적인 피임보급과 피임방법에 대한 정확한 사용방법의 교육이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피임보급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자궁내장치의 교체시기 등에 대한 홍보계몽이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성 평등적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마스크를 통한 국민계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성 차별적 사회제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의료계의 자정노력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단체가 상호협조하여 감시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모자보건

첫째, 제왕절개의 실시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OECD의 권고수준인 5~15%선으로 낮추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생아의 저체중 또는 과체중을 예방하기 위한 산모의 건강관리 및 임신 중 생활습관 관리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모유수유는 건강한 모체를 유지하고,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단순히 출산여성과 신생아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전체와 사회가 함께 지지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취업여성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의 모유수유실 의무설치, 모유수유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 직장내 모유수유실 의무설치 등과 같은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5. 가치관

첫째, 결혼, 이혼 및 재혼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는 가족의 안정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출산 등 가족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혼관 형성을 위한 학교와 사회교육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가치관확립을 위한 사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가족친화적인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의 인식 및 태도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재혼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생활교육,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6. 결혼과 가족주기

첫째, 이혼가정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 경제활동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준의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등의 지원과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고용문화 조성, 질 높고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혼가족의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위해 상담서비스 제공 등도 함께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노후생활 보장책으로서 경제적인 지원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증대 및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등의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제왕절개 분만 적정성 평가 결과서』, 2005.
- 경제기획원, 『1966년도 인구센서스 보고』, 제1권, 전국편, 1969.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5년도 총인구및주택조사』, 제1권, 전국편, 1977.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가족계획연구원, 『1974년 한국출산력조사』, 1977.
- 고갑석 외, 『1979년 한국피임보급실태조사』, 가족계획연구원, 1980.
-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 금재호, 『여성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
- 김광옥, 「산욕기 산모의 산후간호지식과 자가간호수행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두현,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 김미숙, 원영희, 이현송, 장혜경,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김미숙 외, 『가족의 사회학적 이해』, 학지사, 2002.
- 김세광 외, 「다발성 선천성기형의 산전진단과 위험인자의 분석」, 『대한산부회지』, 제32권 제12호, 1989.
- 김승권, 「자녀의 가치」, 『인구(통계)사전 편찬연구』, 한국인구학회 통계청 용역 보고서, 2005a.
- 김승권, 「이상자녀수」, 『인구(통계)사전 편찬연구』, 한국인구학회 통계청 용역보고서, 2005b.
- 김승권,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율 변화원인과 전망」, 『한국인구학』, 제27권 제2호,

(사)한국인구학회, 2004.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김승권 외,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김태홍·김미경,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2002.

김혜련 외, 『모유수유 실천수준과 모유수유 결정요인』,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의 변화양상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김혜선·박혜인·옥선화, 『가족관계학』,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2002.

김희숙, 『출산여성의 일반 분만과 선택 분만에 따른 출산경험의 지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문현상 외, 『1982년 전국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문현상 외,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문현상 외,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박미숙·김혜원, 『초임부의 산전 자가간호행위와 모성관련 지식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6(1), 2000.

박병태 외, 『197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계획평가조사』, 가족계획연구원, 1978.

박인화·황나미, 『모자보건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03.

- 보건복지부, 『모자보건 사업안내』, 2003, 2006.
- 박천만, 『모유수유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17(3), 2000.
- 변화순,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
- 변화순·조은희, 『다양한 가족 출현에 따른 쟁점과 가족관련법의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3.
- 이광렬 외, 『임신간격이 신생아 체중에 미치는 영향』, 『영남의대학술지』, 16(2), 1999.
- 이무식 외, 『산모의 임신전 비만지수, 임신중 체중증가와 출생아 체중과의 관련성』, 『한국모자보건학회지』, 제3권, 1999.
- 이삼식 외,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이삼식 외,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이삼식 외, 『미래세대의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종합연구』,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이소희 외,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 1998.
- 이연주,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변화와 가정 및 직장의 양립방안』,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200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이인재,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고용활성화 방안』, 『노동리뷰』, 2005년 10월호, 통권 제10호, 한국노동연구원, 2005.
- 이정명,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신생아 선별검사의 재검율, 소환율 및 참고치 설정』,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 장지연 외,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 모성관련 휴가제도를 중심으로』, 2004.

- 장지연·부가청, 『숨겨진 선택: 기혼여성노동자의 일과 자녀양육』, 『여성연구』, 통권 65호, 한국여성개발원, 2003.
- 조정문·장상희, 『가족사회학: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무엇인가』, 대우학술총서, 2001.
-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강식·정진화, 『여성 잠재인력의 활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7.
- 최재석, 『현대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1985.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2000.
- 통계청, 『주로 찾는 통계』, 2004.
- 통계청, 『19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제1권, 전국편, 1997.
- 통계청,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제1권, 전국편, 2001.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각 연도.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층조사연구』, 1999.
- 한영자 외, 『영아사망 사산원인 및 위험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한영자 외, 『저출생체중아 발생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황원주, 『모유수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3.
- 허경옥, 『가계의 자녀양육에서 지출액 측정: 출생부터 18세까지의 양육비』, 『소비자학 연구』, 제8권 제2호, 1997.
-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KBS, 『생로병사의 비밀』, 2006.

Campbell, A.,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Simon & Schuster, 1992.

U. N., *1997 World Population Data Sheet*, Population Reference Bureau Inc, 1997.

WHO, *Health and the Family: Studies on the Demography of Family Life Cycle and their Health Implications*, Geneva, 1978.

부 록

부록 1. 조사지역

부록 2. 조사표

[부록 1] 조사지역

조사구 번호		행정구역	비고
101	서울시	용산구	청파1동
102		용산구	원효로 2동
103		중랑구	면목 6동
104		중랑구	중화 3동
105		성북구	성북2동
106		성북구	안암동
107		강북구	미아 4동
108		강북구	수유 3동
109		도봉구	도봉 2동
110		노원구	월계 2동
111		노원구	상계 5동
112		노원구	상계 10동
113		은평구	불광 3동
114		서대문구	연희 1동
115		서대문구	연희 2동
116		서대문구	남가좌 2동
117		양천구	목 6동
118		양천구	신월 7동
119		양천구	신정 2동
120		강서구	화곡 1동
121		강서구	화곡 6동
122		강서구	화곡 8동
123		강서구	가양 2동
124		강서구	발산 1동
125		구로구	가리봉 2동
126		구로구	오류 2동
127		금천구	독산 2동
128		동작구	사당 3동
129		관악구	신림 본동
130		관악구	신림 1동
131		관악구	신림 5동
132		서초구	잠원동
133		강남구	대치 1동
134		송파구	거여 2동
135		송파구	방이 2동
136		송파구	장지동
137			강동구
소계		37개 조사구	

조사구 번호		행정구역	비고
138	부산시	서구	서대신 1동
139		진구	연지동
140		진구	연지동
141		동래구	온천 3동
142		동래구	안락 2동
143		북구	금곡동
144		북구	만덕 1동
145		북구	만덕 2동
146		해운대구	좌동
147		사하구	괴정 3동
148		사하구	하단 1동
149		연제구	연산 4동
150		수영구	광안 1동
소계		13개 조사구	
151	대구시	남구	대명 2,8동
152		북구	침산 2동
153		북구	북현 2동
154		북구	검단동
155		수성구	황금 1동
156		수성구	황금 2동
157		달서구	두류 2동
158		달서구	두류 3동
159		달서구	장기동
160		달서구	상인 1동
161		달서구	상인 1동
162		달서구	도원동
소계		12개 조사구	
163	인천시	남동구	만수 1동
164		부평구	산곡 1동
165		계양구	작전 2동
166		계양구	작전서운동
소계		4개 조사구	
167	광주시	서구	양동
168		서구	서창동
169		북구	두암 1동
170		광산구	비아동
소계		4개 조사구	

조사구 번호		행정구역	비고	
171	대전시	동구	산내동	
172		서구	월평 2동	
173		유성구	전민동	
174		대덕구	중리동	
175		대덕구	덕암동	
	소계	5개 조사구		
176	울산시	동구	화정동	
177		동구	남목 2동	
178		북구	농소 2동	
179		북구	강동동	
	소계	4개 조사구		
201	경기도	수원/장안구	정자 1동	
202		수원/장안구	정자 2동	
203		수원/권선구	세류 3동	
204		수원/팔달구	우만 1동	
205		수원/팔달구	매탄 3동	
206		성남/중원구	상대원 1동	
207		안양/만안구	석수 2동	
208		안양/동안구	귀인동	
209		부천/원미구	중 1동	
210		부천/소사구	소사본 3동	
211		부천/소사구	송내 2동	
212		부천/오정구	신흥동	
301		평택시	평성읍	
302		평택시	진위면	
213		안산시	대부동	
214		일산구	주엽 2동	
215		과천시	갈현동	
216		과천시	부림동	
217		시흥시	신현동	
218		군포시	대야동	
219		의왕시	내손 2동	
220		의왕시	내손 2동	
221		하남시	풍산동	
303		용인시	수지읍	
304		파주시	월롱면	
222		이천시	창전동	
305		안성시	보개면	
306		김포시	양촌면	
307		화성군	장안면	
		소계	29개 조사구	

조사구 번호		행정구역	비고
223	강원도	춘천시	조운동
224		춘천시	후평 2동
308		원주시	홍업면
225		강릉시	교 1동
226		동해시	천곡동
309		영월군	영월읍
310		정선군	신동읍
311		양구군	양구읍
소계		8개 조사구	
227	충청북도	청주/홍덕구	사창동
228		청주/홍덕구	운천,신봉동
229		청주/홍덕구	복대 1동
230		충주시	가금면
231		충주시	교현,안림동
312		계천시	백운면
313		계천시	동현동
314		영동군	매곡면
315		진천군	진천읍
316		음성군	음성읍
소계		10개 조사구	
232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 2동
233		천안시	봉명동
234		천안시	봉명동
235		공주시	정안면
236		아산시	탕정면
317		서산시	대산읍
318		서산시	인지면
319		서산시	수석동
320		논산시	연무읍
321		논산시	연산면
322		논산시	양촌면
323		논산시	취암동
324		금산군	금산읍
325		금산군	금산읍(신대리)
326		금산군	추부면
327		금산군	추부면(마전3)
328		홍성군	홍성읍
329		예산군	예산읍
330		예산군	광시면
331		태안군	남면
소계		20개 조사구	

조사구 번호		행정구역	비고
237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평화2동
238		군산시	나운 2동
239		익산시	망성면
332		정읍시	농소동
333		임실군	임실읍
소계		5개 조사구	
334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240		여수시	여천동
335		순천시	해룡면
336		순천시	월등면
241		순천시	삼산동
242		순천시	삼산동
337		나주시	공산면
338		광양시	광양읍
339		고흥군	고흥읍
340		고흥군	도양읍
341		강진군	신전면
342		해남군	해남읍
343		해남군	송지면
344		해남군	북일면
345		완도군	급일읍
346		완도군	군외면
소계		16개 조사구	
347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348		김천시	아포읍
349		김천시	어모면
350		김천시	지례면
243		김천시	평화동
351		구미시	도개면
244		구미시	도량동
245		구미시	비산동
246		영천시	서부동
352		경산시	진량읍
353		군위군	부계면
354		청송군	안덕면
355		영덕군	영해면
356		고령군	고령읍
소계		14개 조사구	

조사구 번호		행정구역	비고
247	경상남도	창원시	봉림동
248		창원시	중앙동
249		창원시	사파동
250		창원시	사파동
357		진주시	대곡면
358		통영시	도산면
251		통영시	정량동
252		통영시	도남동
359		사천시	근명면
360		사천시	근명면
361		밀양시	산내면
362		거제시	장목면
363		양산시	웅상읍
364		의령군	대의면
365		고성군	고성읍
366		남해군	창선면
	계	16	
253	제주도	제주시	삼양동
367		제주군	한경면
368		제주군	대정읍
	소계	3개 조사구	

[부록 2] 조사표

532 534 536 538 540 542 544 546 548 550 552

부록 533 부록 535 부록 537 부록 539 부록 541 부록 543 부록 545

부록 547 부록 549 부록 551 부록 553

